2016년도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2016언론관련판결분석보고서_표지_2도.indd 1 17. 6. 26. 오후 7:01

발 간 사

위원회는 언론분쟁과 관련해 법원 판결의 경향을 분석한 내용과 주요 판례를 수록한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2016년 각급 법원이 선고한 언론 분쟁 관련 민사 판결 210건을 분석 대상으로 했습니다.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구성하였습니다. 제1부는 언론 관련 판결을 통계 면에서 분석한 결과를 해석합니다. 우선 분석 대상을 수집한 기준과 내용을 밝혔습니다. 또 심급별, 청구별, 침해 유형별 등 다양한 관점에서 조명한 소송제기 현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했습니다. 소송 결과는 물론이고 언론중재위원회 조정과 법원 판결을 비교·대조한 내용은 향후 언론 분쟁 결과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유용한 근거 자료가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무엇보다 언론 분쟁에 휘말린 당사자들의 가장 큰 관심사인 소송 제기 현황 및 결과와 손해배상청구 사건을 여러 항목으로 세분화해 살펴본 것이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제2부는 분석 대상 민사 판결 가운데 법리나 시의성 면에서 소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사례들을 담았습니다. 사례는 이 보고서를 주로 활용하는 사람들의 편의를 반영해 2015년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부터 적용한 기준을 토대로 구성했습니다. 우선 청구별로 사례를 구분했을 뿐 아니라, 손해배상청구는 법익침해별로 자세한 기준을 적용해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목차에 수록 판결의 상·하급심 사건번호와 판결요지를 함께 기재해 검색이 더 용이하게 하였습니다. 판결서 전문을 수록한 것은 물론입니다.

이번 보고서에 수록한 언론 관련 판결의 특징은 예년에 비해 분쟁 당사자들, 다시 말해 원고와 피고 모두가 언론사인 판결이 많다는 점입니다. 정치·경제·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 점에서 비롯된 갈등의 양상이 언론계에도 투영된 결과로 보입니다. 언론사 간 보도 분쟁에서 눈여겨 볼 점은 사회의 부정과 부패를 감시하는 언론이 비판의 대상이 될 때 감수해야 하는 비판의 수준을 제시한 법원의 견해입니다. 또 정부부처를 포함한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해당 기관이나 단체를 대표하는 사람이 언론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을 주장한 경우의 법원 판단 기준을 함께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의 주된 독자는 언론 관련 분쟁 해결을 담당할 법률가, 언론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이나 단체뿐 아니라 언론인을 포함한 언론사 관계자, 언론법 연구자 등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보고서는 국민 누구나 참고할 수 있는 책자입니다. 언론 관련 분쟁과 그 해결에 관심이 있는 모든 분들에게 이 보고서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2017년 6월

언론중재위원회 교육본부

CONTENTS

제1부 언론 관련 판결 분석

제1장 분석 목적 및 내용

1. 분석 목적 / 3
2. 자료수집 방법 / 3
3. 분석 대상 / 4
4. 분석 내용 / 5
5. 분석을 위한 코딩 항목 및 코딩 방법 / 6

제2장 소송제기 현황

1. 심급별 소송건수 / 9
2. 상소율 / 10
3. 청구별 소송건수 / 10
4. 침해 유형별 소송건수 / 12
5. 원고 유형별 소송건수 / 13
6. 매체 유형별 소송건수 / 14
7. 보도 유형별 소송건수 / 15
8. 직위별 피고 분류 / 16

제3장 소송 결과

1. 심급별 결과 / 18
2. 상소심의 원심 판결 유지여부 / 19
3. 청구별 결과 / 20
4. 침해 유형별 결과 / 21
5. 원고 유형별 결과 / 22
6. 매체 유형별 결과 / 23
7. 보도 유형별 결과 / 25
8. 소송기간 / 26

제4장 손해배상청구 사건

1. 손해배상청구 사건 소송 결과 / 27
2. 청구액 / 28
3. 인용액 / 29
4. 인용액 분포 / 30
5. 침해 유형별 원고 승소율 및 인용액 / 31
6. 원고 유형별 승소율 및 인용액 / 32
7. 매체 유형별 원고 승소율 및 인용액 / 33
8. 공동 피소된 언론인 승소 결과 / 34
9. 손해배상청구 기각 사유 / 35

제5장 정정 · 반론 · 추후보도청구 사건

1. 정정보도청구 사건 소송 결과 / 36
2. 정정보도청구 기각 사유 / 37
3. 반론보도청구 사건 소송 결과 / 38
4. 반론보도청구 기각 사유 / 39
5. 판결 주문에 따른 정정보도등의 형식 / 40

제6장 언론중재위원회 조정과 법원 판결 비교

1. 조정경유 비율 / 43
2.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조정액과 인용액 비교 / 44
3. 조정을 거친 사건의 위원회 조정 결과와 법원 소송 결과 비교 / 44

표 목차

〈표 1〉 코딩 항목 ····· 6

〈표 2- 1〉 심급별 건수 ····· 9
〈표 2- 2〉 상소율 ····· 10
〈표 2- 3〉 청구별 건수 ····· 11
〈표 2- 4〉 청구별 건수(각 청구권별 합산) ····· 11
〈표 2- 5〉 침해 유형별 건수 ····· 12
〈표 2- 6〉 원고 유형별 건수 ····· 13
〈표 2- 7〉 매체 유형별 건수 ····· 14
〈표 2- 8〉 방송 매체의 보도 유형별 건수 ····· 15
〈표 2- 9〉 방송 외 매체의 보도 유형별 건수 ····· 15
〈표 2-10〉 직위별 피고 구성 ····· 16
〈표 2-11〉 직위별 피고 분류(언론사 및 언론인 직위별 합산) ····· 17

〈표 3- 1〉 심급별 결과 ····· 18
〈표 3- 2〉 상소심의 원심 판결 유지여부 ····· 19
〈표 3- 3〉 청구별 결과 ····· 20
〈표 3- 4〉 침해 유형별 결과 ····· 21
〈표 3- 5〉 원고 유형별 결과 ····· 22
〈표 3- 6〉 매체 유형별 소송 결과 ····· 23
〈표 3- 7〉 일간신문 유형별 소송 결과 ····· 24
〈표 3- 8〉 방송 유형별 소송 결과 ····· 24
〈표 3- 9〉 인터넷 매체 유형별 소송 결과 ····· 24
〈표 3-10〉 방송 외 매체의 보도 유형별 소송 결과 ····· 25
〈표 3-11〉 방송 매체의 보도 유형별 소송 결과 ····· 25
〈표 3-12〉 심급별 소송기간 분포 ····· 26
〈표 3-13〉 보도게재청구 사건의 심급별 소송기간 분포 ····· 26

〈표 4- 1〉 손해배상청구 사건 소송 결과 ····· 28
〈표 4- 2〉 손해배상 청구액 ····· 28
〈표 4- 3〉 손해배상 인용액 ····· 29
〈표 4- 4〉 손해배상 인용액 분포 ····· 30
〈표 4- 5〉 침해 유형별 원고 승소율 및 인용액 ····· 31
〈표 4- 6〉 원고 유형별 승소율 및 인용액 ····· 32
〈표 4- 7〉 공적 인물의 손해배상청구 사건 승소율 및 인용액 ····· 32
〈표 4- 8〉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매체 유형별 원고 승소율 및 인용액 ····· 33
〈표 4- 9〉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피고 언론인 승소 여부 ····· 34
〈표 4-10〉 손해배상청구 기각 사유 ····· 35

〈표 5- 1〉 정정보도청구 사건 소송 결과 ····· 36
〈표 5- 2〉 정정보도청구 기각 사유 ····· 37
〈표 5- 3〉 반론보도청구 사건 소송 결과 ····· 38
〈표 5- 4〉 반론보도청구 기각 사유 ····· 39
〈표 5- 5〉 매체별 정정보도등의 인용건수 ····· 40
〈표 5- 6〉 인용된 정정보도등의 보도지면(프로그램) ····· 41
〈표 5- 7〉 인용된 정정보도등의 위치 ····· 41
〈표 5- 8〉 인용된 정정보도등의 보도제목 ····· 42
〈표 5- 9〉 인용된 정정보도등의 본문 길이 ····· 42

〈표 6- 1〉 조정경유 비율 ····· 43
〈표 6- 2〉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위원회 조정액과 법원 인용액 비교 ····· 44
〈표 6- 3〉 위원회와 법원 소송 결과 비교 ····· 45
〈표 6- 4〉 자동 소 제기 사건의 위원회 조정액 및 법원 인용액 비교 ····· 45
〈표 6- 5〉 자동 소 제기 사건 중 손해배상 인용 동일 사건 비교 ····· 46
〈표 6- 6〉 조정을 거친 사건의 소송 결과 전체 목록 ····· 46

분석 판결 목록(민사 210건) ····· 54

제2부 언론 관련 판결 사례

제1장 손해배상청구

명예훼손 사례

1. 소속 기관이 언론조정을 통해 언론사와 부제소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직원들의 명예훼손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A(선정당사자) vs 인천일보 주식회사 외 3명
   인천지방법원 2016. 2. 16. 선고 2015가소454454 판결 ····· 65

2. 취재원 발언의 신빙성 유무에 대해 추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하지 않고 보도했다면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주식회사 A vs 주식회사 이코노믹포스트 외 2명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3. 23. 선고 2015가합560269 판결 ····· 70

3. 시청자들이 '자료화면'의 출연자를 피의자로 지목·암시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개연성이 크다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
   A vs 주식회사 문화방송 외 2명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다25296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나2022774 판결(확정) ····· 79

4. 지방자치단체도 과제 및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최소한의 사회적 신뢰를 필요로 하므로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나 악의적인 비방에 대해 민법상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성남시 vs 이데일리 주식회사 외 1명
   서울고등법원 2016. 5. 27. 선고 2015나2054248 판결(확정) ····· 93

5. 기사 제목이 본문의 흐름과 종합하여 독자들로 하여금 특정인이 위법행위에 직접 관여했다는 인상을 준다면 간접적인 방법에 의한 사실의 적시로 볼 수 있다
   주식회사 A 외 1명 vs 주식회사 씨비에스아이 외 1명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6. 30. 선고 2016가합100578 판결 ····· 103

6. 일반에 개방되어 있는 교회에 관리자의 출입 제한 조치 없이 들어가 취재 사실을 숨기고 촬영한 것은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A(선정당사자) 외 100명 vs 주식회사 에스비에스 외 3명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7. 7. 선고 2015가합3601 판결 ····· 115

7. 제3자의 말을 인용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더라도 간접적인 방법으로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있다면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고 1인의 진술만으로는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A vs B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8. 17. 선고 2015가단5277893 판결 ····· 132

8. 취재원이 아동인 경우 그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주의 깊은 조사가 필요하다
A유치원 외 1명 vs 주식회사 고양신문 외 4명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 8. 22. 선고 2015가합72705 판결 ····· 137

9. 언론사의 보도 내용 및 행태를 분석·비판한 것은 의견표명으로서 정정보도의 대상이 아니다
주식회사 문화방송 vs A(미디어스 발행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1. 20. 선고 2015가합312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9. 9. 선고 2016나2012111 판결(확정) ····· 156

10. 대기업이 회장 일가에게 제공하는 배당금, 보수, 업무용 차량 등에 관한 내용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언론의 자유로운 비판과 관심의 대상이다
주식회사 A vs 주식회사 더팩트 외 3명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11. 3. 선고 2016가합105061 판결(확정) ····· 166

11. 원문보도의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는 내용을 반론기사로 요구하는 것은 청구권 행사의 정당한 이익이 없다
A 외 1명 vs 주식회사 제이티비씨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11. 16. 선고 2015가합38668 판결(확정) ····· 178

12. 형 집행정지 기간이 6년 내내 계속된 것은 아니더라도 6년이란 기간에 걸쳐 있다면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한다
A vs 주식회사 에스비에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1. 23. 선고 2016가합532506 판결 ····· 185

13. 언론조정 결과 반론보도로 합의하였음에도 정정보도로 오인하게 할 만한 기사를 게재한 것은 허위라고 볼 것이다
주식회사 씨비에스아이 vs 주식회사 천지일보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12. 14. 선고 2016가합32131 판결(확정) ····· 192

초상권 침해 사례

14.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은 채 포토라인에 선 것이 곧바로 초상 촬영 및 공표에 대한 묵시적 동의로 볼 수 없다
A 외 1명 vs 한국방송공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12. 1. 선고 2016가합101939 판결 ····· 197

재산권 침해 사례

15. 허위보도한 언론사와 이를 불법마케팅에 활용한 회사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각자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롯데칠성음료 주식회사 vs 한국소비자티브이 주식회사 외 1명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 13. 선고 2013가합16690 판결(확정) ····· 211

16. 다른 언론사가 제작 및 방송한 영상물을 출처표시 없이 인용하거나 과다 인용한 경우는 공표된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주식회사 주권방송 vs 주식회사 조선방송 외 6명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 27. 선고 2015가합513706 판결 ····· 234

제2장 정정 · 반론 · 추후보도청구

1. 언론사 노조의 입장을 보도한 것은 단순한 의견표명으로서 정정보도의 대상이 아니다
주식회사 대전일보사 vs 사단법인 한국기자협회
대전지방법원 2016. 7. 6. 선고 2015가합104743 판결(확정) ····· 251

2. 정부의 업무수행에 관한 비판과 의혹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기재한 '실체가 모호'하다는 표현은 수사적 과장에 불과하다
보건복지부 vs 한겨레신문 주식회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11. 11. 선고 2015가합2270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7. 22. 선고 2015나2070097 판결(확정) ····· 258

3. 국회의원인 원고의 딸이 대기업에 없는 자리까지 만들어 취업해 특혜를 받았다고 보도하였으나 이후 회사에서 추가로 인력을 채용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허위성이 인정된다
A vs 주식회사 시사저널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8. 17. 선고 2015가합4238 판결(확정) ····· 279

4. 인터넷 홈페이지에 기사가 게시되어 있더라도 언론중재법에 따른 제척기간(보도가 있은 후 6개월) 기산시 보도를 계속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대한민국 vs 케이비에스미디어 주식회사 외 1명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9. 28. 선고 2015가합542384, 2015가합552916(병합) 판결 ·· 283

5. 기사의 기초가 된 사료들을 믿을 수 없다는 그 신빙성에 대한 문제제기는 원고의 의견 또는 평가에 불과하여 반론보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A vs 한겨레신문 주식회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0. 26. 선고 2015가합26400, 2015가합26868(병합) 판결(확정) ·· 290

6. 원고 회사가 '블랙리스트 업체다'라는 표현은 의견표명이 아닌 진위를 판명할 수 있는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
주식회사 A vs 주식회사 경향신문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9. 선고 2016가합7369, 2016가합7413(병합) 판결 ····· 295

7. 가분적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면 일부에 대해 벌금 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추후보도청구할 수 있다
A vs 주식회사 경인일보
수원지방법원 2016. 12. 22. 선고 2016가합373, 2016가합380(병합) 판결 ····· 308

제3장 기사삭제청구 등

1. 종교인에 대한 종교적인 비판은 모욕적이거나 인신공격이 아닌 한 폭넓게 허용된다
A 외 1명 vs 뉴스앤조이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1. 14. 선고 2015카합50504 결정(확정) ····· 315

2. 공적 인물의 행위는 공적 관심 사안으로서 그에 관해 의혹을 품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된다
A vs 주식회사 시사저널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5. 10. 선고 2016카합216 결정(확정) ····· 320

3. 언론사는 외부인사의 발언에 대해서도 진위 여부를 조사할 의무가 있고, 외부인사의 발언이 명백히 허위라면 대담형식이라는 이유만으로 면책되지 않는다
A vs 주식회사 조선방송 외 1명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7. 20. 선고 2014가합548118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2. 8. 선고 2016나2059882 판결(확정) ····· 324

4.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가 의혹 사실이 존재한다는 점에 대해 이해관계자의 일방적인 진술 외 객관적인 자료나 근거를 제출하지 못한다면 상당성이 부정된다
의정부지방검찰청 외 1명 vs 주식회사 뉴시스 외 1명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7. 20. 선고 2016가합500622 판결(확정) ····· 344

5. 소송물인 이행청구권이 있음을 주장하는 자에게 원고적격이 있는 것과 같이 정정보도청구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지자체감사위원회는 원고적격이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외 1명 vs 한국방송공사 외 1명
제주지방법원 2016. 8. 18. 선고 2015가합1648, 2015가합1655(병합) 판결 ····· 360

6. 일부의 삭제만을 명하는 경우 본래 기사의 취지가 왜곡되고 잔존 기사가 기사로서의 가치가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 전체 삭제를 명할 수 있다
A vs 주식회사 이엠디 외 B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 9. 25. 선고 2014가합9860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11. 4. 선고 2015나2060748 판결(확정) ····· 368

제1부
언론 관련 판결 분석

제1장 분석 목적 및 내용
제2장 소송제기 현황
제3장 소송 결과
제4장 손해배상청구 사건
제5장 정정 · 반론 · 추후보도청구 사건
제6장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과 법원 판결 비교

제1장
분석 목적 및 내용

1. 분석 목적

언론 관련 판결은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이라는 두 법익이 충돌할 때 사법부가 어떠한 판단기준을 적용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언론 관련 판결을 분석한 데이터는 언론분쟁의 양상과 추이를 파악하는 객관적 자료가 되며, 언론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될 수도 있다.

위원회는 2016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 각급 법원에서 선고된 언론보도로 인한 명예훼손 및 초상권·성명권·사생활의 비밀 등 기타 인격권 침해 소송의 판결을 수집하여 통계적 분석을 시도했다. 구체적으로 소송제기 현황, 소송 결과, 손해배상 인용액 등 판결 내용에 포함된 다양한 정보들을 유목화하여 양적 분석을 실시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언론분쟁 관련 연구의 기초자료가 될 뿐만 아니라 제도 개선의 근거 또는 언론분쟁 예방을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2. 자료수집 방법

분석 대상 판결은 대법원 법원도서관에 마련된 판결문 검색·열람 특별창구를 통해 검색[1]하여 수집했다.

판결 검색 시 ①정정보도 ②반론보도 ③추후보도 ④보도&명예훼손&손해배상 ⑤보도&초상 ⑥보도&음성 ⑦보도&사생활 ⑧보도&성명 ⑨보도금지 ⑩언론중재위원회 등을 검색어로 사용했다. 형사판결을 제외한 민사판결만을 분석대상으로 삼았고, 판결 선고가 아닌 화해권고결정·강제조정·조정성립 등으로 종결된 사건은 분석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1) 법원은 2006년 5월 1일부터 법원이 보유하고 있는 판결문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판결문을 검색·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 분석 대상

가. 2016년도 분석 대상 언론 관련 판결은 민사 210건

분석 대상은 선고 일자를 기준으로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각급 법원에서 선고된 판결 중 언론보도 또는 그 매개로 인한 법익 침해를 이유로 언론사,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포털, 방송사닷컴 등) 또는 언론인을 상대로 제기된 민사소송 판결로서 총 210건이 수집되었다.

나. 분석 대상 판결은 심급, 확정 여부와 관계없어

분석은 심급 및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수집된 모든 언론 관련 판결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다만 선고일을 기준으로 2016년 한 해 동안 선고된 판결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상소심 없이 1심만 존재하거나 1심 없이 상소심만 존재하는 판결[2]도 포함되어 있다.

다. 매체별 분석 대상 총 건수는 324건

다수 매체가 공동으로 피소된 사건의 경우, 매체별로 보도 내용이나 형식 등이 다르고, 이에 따라 법원의 인용 여부 · 인용내용 · 손해배상청구액 및 인용액 등이 다를 수 있다. 이 점을 감안하여 한 사건이더라도 여러 매체가 피고인 경우 매체별로 나누어 분석을 실시하기도 했다. 비록 소송 건으로는 한 건이지만 통계분석의 목적상 매체 수에 따라 여러 개의 사건으로 분할한 결과 분석대상 총 건수는 324건이었다.

라. 청구권별 재분류 총 건수 561건

대부분의 분석 대상 판결들은 하나의 청구가 아닌, 정정보도청구+손해배상청구나 손해배상청구+기사삭제청구와 같이 여러 청구가 병합된 형태를 보였다. 이에 일부 분석 항목에서는 매체별 총 건수 324건을 청구권별로 재분류하여 분석을 시도했다. 이 경우의 청구권별 총 건수는 561건이다.

2) 2016년에 1심 판결이 선고된 후 2017년 현재 상소심 사건이 진행 중인 사건을 의미하거나 2016년 이전에 하급심 판결이 선고된 사건을 의미한다.

4. 분석 내용

본 보고서는 2016년도 언론 관련 판결의 소송제기 현황, 소송 결과, 손해배상청구 및 정정·반론·추후보도청구의 소송 결과, 위원회 조정과 법원 판결의 비교 등에 대한 분석 결과를 담고 있다. 각 항목별 구체적인 분석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소송제기 현황

심급별 소송건수, 상소율, 청구별 소송건수, 침해 유형별 소송건수, 원고 유형별 소송건수, 매체 유형별 소송건수, 보도 유형별 소송건수, 매체별 피고구성

나. 소송 결과

심급별 처리결과, 상소심의 원심판결 유지여부, 청구별 소송 결과, 침해 유형별 소송 결과, 원고 유형별 소송 결과, 매체 유형별 소송 결과, 보도 유형별 소송 결과, 소송기간

다. 손해배상청구 사건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청구액 및 인용액, 인용액 분포, 침해 유형별 원고 승소율 및 인용액, 원고 유형별 승소율 및 인용액, 매체 유형별 원고 승소율 및 인용액, 공동 피소된 언론인 승소 결과, 손해배상청구 기각 사유

라. 정정·반론·추후보도청구 사건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청구 소송 결과,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청구 기각 사유, 판결주문에 따른 보도문의 형식

마.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과 법원의 판결 비교

분석 대상 소송사건 중 위원회 조정을 거친 사건의 비율, 조정을 거친 사건의 위원회 조정 결과와 법원 소송 결과 비교,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위원회 조정액과 법원 인용액 비교

5. 분석을 위한 코딩 항목 및 코딩 방법

가. 코딩 항목

〈표 1〉 코딩 항목

구 분	코딩 항목	
일 반 사 항	01. 판결번호	04. 심급
	02. 접수일자 및 선고일자	05. 청구의 종류
	03. 법원명	06. 침해유형
원 고	07. 원고명	09. 공적인물 분류
	08. 대표 원고 분류	
피 고	10. 사건 피고명	13. 매체별 피고 분류
	11. 사건 피고구성	14. 피고 언론인 개인 승소 여부
	12. 매체명	
매 체 분 류	15. 매체분류	
보도내용 분류	16. 보도내용 분류	
	16-1. 방송 외 기사유형	16-2. 방송 프로그램 유형
청 구 별 처리결과	17. 청구별 처리결과	
	17-1. 정정보도	17-4. 손해배상
	17-2. 반론보도	17-5. 기사삭제
	17-3. 추후보도	17-6. 보도금지
원·상소심 결 과	18. 심급별 결과	
	18-1. 1심	18-4. 환송후심
	18-2. 2심	18-5. 재상고심
	18-3. 3심	
기 타	19. 원고 원심유지 여부	21. 조정신청 결과
	20. 조정청구명	22. 조정을갈음하는결정(직권조정) 결정액
손 해 배 상	23. 사건 청구액	26. 매체별 인용액
	24. 사건 인용액	27. 손해배상 기각사유
	25. 매체별 청구액	
정 정 보 도	28. 정정 기각사유	29. 정정 각하사유
반 론 보 도	30. 반론 기각사유	31. 반론 각하사유
판결주문에 따른 보도형식	32. 보도의 인용 여부	35. 보도위치
	33. 보도시기	36. 보도제목
	34. 보도지면(프로그램)	37. 보도본문 길이

나. 코딩 방법

수집된 판결을 코딩하는 과정에서 개념이 모호하거나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항목은 기존 판결분석 보고서의 분석 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원칙을 적용하여 분류하였다.

1) 대표 원고 분류

① 다수 원고 사건 중 개인 및 단체가 함께 청구한 경우에는 단체로 분류하였다.

② 공인이란 고위 공직자와 공적 인물을 말한다. 판결에서 고위 공직자나 공적 인물이라고 직접 언급하거나 암시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 동안의 판례나 학설에서 꾸준히 공인으로 분류한 인물을 이 범주에 포함시켰다.

③ 고위 공직자는 판결에서 언급된 경우나 「공직자윤리법」 제3조상의 공직자[3]를 말하며, 공적 인물이란 정치인 · 전문인 · 언론인 · 기업인 · 연예인 등 사회적으로 저명한 인물 또는 단체의 대표 등으로서 그 활동 사항이 공적 관심사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④ 공인 여부 판단에서는 현직뿐만 아니라 전직도 고려하였다. 전직이라 함은 원고의 재직 당시 일어난 사건을 보도했지만, 소송이 진행될 당시에는 그 직을 그만둔 경우를 말한다.

⑤ 일반인과 공인이 함께 신청한 경우 공인으로 분류하였다.

2) 매체명 분류

① 오프라인과 별도로 언론사닷컴을 상대로 한 청구(기사삭제 등)가 있거나 오프라인과 함께 언론사닷컴 기사에 의한 피해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언론사닷컴을 별도의 매체로 간주하여 코딩하였다.

예) 사건 피고는 (주)A신문사 단독이나, 청구취지에 A신문, A신문사 홈페이지를 상대로 각 정정보도 등을 청구하였다면 2개의 매체에 대해 각각 코딩함

② 피고가 언론인 개인인 경우 해당 언론인 소속 매체를 기준으로 코딩하였다.

3) 매체별 피고 분류

① 소송에 연루된 언론인들을 직위별로 파악하고자 하는 항목이다.

② 피고의 직위가 대표이사나 부장 등이라도 기사를 직접 쓴 사람이라면 담당으로 분류하였다.

4) 언론인 개인에 대한 판결 결과

언론인이라 함은 피고 중 언론사 대표, 기자, 프로듀서 등을 말한다. 단, 보도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언론사 직원, 외주제작사 직원 등은 언론인에 포함하지 않았다.

---

3) 국무위원 · 국회의원 등 정무직 공무원, 지방의회의원, 4급 이상의 공무원, 법관 및 검사, 대령 이상의 장교 등

5) 방송 분류

① 지상파방송에는 지상파방송사의 지역방송총국 및 계열사를 포함하였다.

② 고발 성격이 짙은 프로그램만을 시사·고발로 분류하였다.

예) 「PD수첩」, 「시사매거진 2580」, 「그것이 알고 싶다」, 「추적 60분」 등

③ 뉴스 프로그램 내의 고발 코너(현장추적 등)는 뉴스로 분류하였다.

④ 다큐멘터리나 생활정보 제공을 주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교양·정보로 분류하였다.

예) 「SBS 스페셜」, 「생방송 오늘아침」 등

6) 청구별 처리결과

① 원고 승소 또는 원고 승소율에는 원고 일부승 사건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원고 일부승 사건 : 손해배상액 또는 정정보도문 등이 청구(항소)취지보다 감액 또는 감축된 경우, 또는 여러 청구 중 일부만 인용된 경우, 즉 1개의 사건에서 손해배상과 정정보도를 청구하여 손해배상만 인용되고 정정보도는 기각된 경우 등)

② 2심의 경우 그 처리결과는 항소기각 또는 원심취소의 형태로 나타나고, 3심의 경우 그 처리결과는 상고기각이나 원심파기의 형태로 나타나지만, 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는지 여부를 기준 삼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것이라면 원고 승소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이라면 원고 패소로 분류하였다.

7) 원고 원심유지 여부

2심의 원심은 1심, 3심의 원심은 2심을 말한다. 상소심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의 취지와 같다면 '승유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의 판단과 달리 상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면 '승번복' 등으로 코딩하였다.

8) 매체별 청구액 및 인용액

① 피고가 다수인 경우 청구취지액 및 주문 인용액을 매체별로 구분하여 청구액 및 인용액으로 기재하였다.

② 매체별로 별도 법인이 있거나 매체별로 각자(연대하여) 지급할 것을 청구 및 인용한 경우에는 매체별로 동일한 금액을 기재하였다.

예) 조선일보 - 조선닷컴 연대하여 2,000만원 → 조선일보 : 2,000만원 / 조선닷컴 : 2,000만원

③ 피고가 단일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매체분류상 2개로 나누어진 경우는 청구취지액 및 주문 인용액을 반분하여 청구액 및 인용액을 각각 기재하였다.

예) (주)경향신문사에 2,000만원 청구한 경우, 경향신문 : 1,000만원 / 경향닷컴 : 1,000만원

④ 피고가 언론인인 경우 소속 매체에 대한 청구액 및 인용액에 합산하였다.

⑤ 항소심과 상고심도 1심의 청구취지액을 기재하되, 상소심에서 청구취지액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된 금액을 기재하였다.

제2장

소송제기 현황

2016년도에 선고된 언론 관련 판결을 대상으로 심급별 소송건수, 상소율, 청구별 · 침해 유형별 · 매체 유형별 소송건수 등 소송 일반 현황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심급별 소송건수

1심 59.5%, 2심 28.6%, 3심 11.9%

분석 대상 판결의 심급별 소송건수를 살펴보면 1심 판결이 125건(59.5%), 2심(환송 후 심리 포함)이 60건(28.6%), 3심이 25건(11.9%)이다.

〈표 2-1〉 심급별 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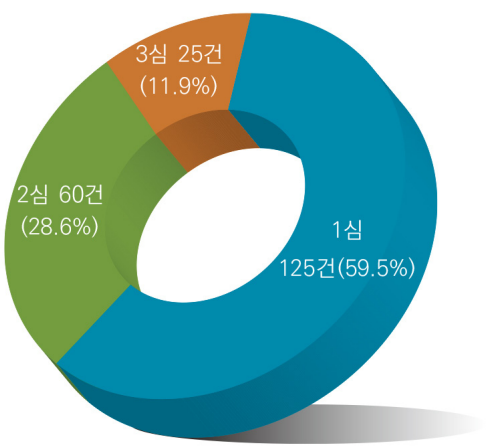

2. 상소율

항소율 60.8%, 상고율 43.3%

분석대상 판결 중 1심 사건과 2심 사건의 경우, 원고 또는 피고가 상소했는지 여부를 조사해 그 비율을 살펴보았다. 1심 판결 125건 중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사건은 76건으로 항소율은 60.8%로 나타났다. 2심 판결 60건 중 대법원에 상고한 사건은 26건으로 상고율은 43.3%였다.

〈표 2-2〉 상소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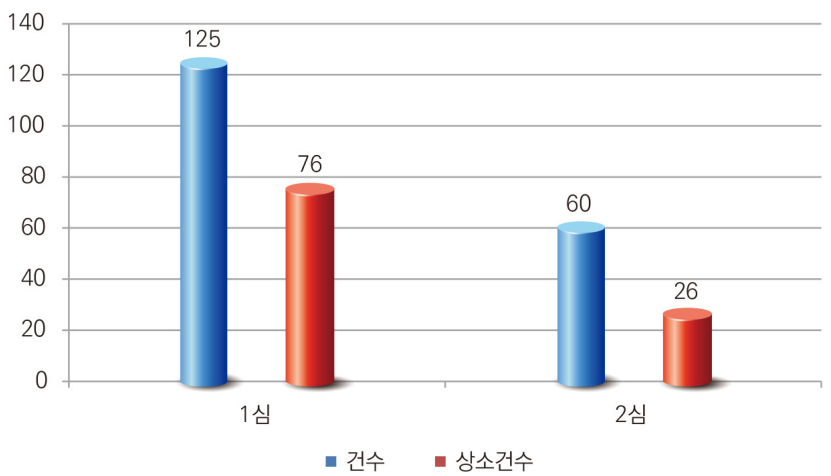

3. 청구별 소송건수

원고가 가장 선호하는 피해구제 방법은 정정보도 · 손해배상청구

소송건수를 매체별로 나눈 후 각 매체별로 원고가 청구한 내용을 분석해 선호하는 피해구제방법에 대해 살펴보았다.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병합해 청구한 경우가 105건(32.4%)으로 가장 많았고, 손해배상을 단독으로 청구한 경우가 101건(31.2%)으로 그 다음을 차지했다.

〈표 2-3〉 청구별 건수

청구명	건 수	비율(%)
정 정	17	5.2
정정/반론	7	2.2
정정/반론/손배	32	9.9
정정/손배	105	32.4
정정/추후/손배	1	0.3
정정/손배/기사삭제	17	5.2
정정/반론/손배/기사삭제	1	0.3
정정/추후/손배/기사삭제	1	0.3
반 론	10	3.1
반론/손배	3	0.9
추 후	4	1.2
추후/손배	3	0.9
손 배	101	31.2
손배/기사삭제	11	3.4
기사삭제	4	1.2
기사삭제/보도금지	2	0.6
보도금지	4	1.2
방송금지	1	0.3
합 계	324	100.0

한 사건에 여러 청구가 함께 제기된 사건을 청구권별로 나누어 재합산해 살펴본 결과, 손해배상청구가 275건(49.0%)으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고, 정정보도청구 181건(32.3%), 반론보도청구 53건(9.4%), 기사삭제청구 36건(6.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2-4〉 청구별 건수(각 청구권별 합산)

청구명	건수	비율(%)
정정보도	181	32.3
반론보도	53	9.4
추후보도	9	1.6

청구명	건수	비율(%)
손해배상	275	49.0
기사삭제	36	6.4
보도금지	6	1.1
방송금지	1	0.2
합 계	561	100.0

4. 침해 유형별 소송건수

침해 유형별 최다 소송 유형은 명예훼손

소송건수를 기준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침해 법익을 유형별로 분류한 결과, 대부분 명예훼손을 주장하는 사건(164건, 78.1%)이었다. 그밖에 명예훼손 및 모욕이 14건(6.7%), 명예 및 신용훼손이 9건(4.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2-5〉 침해 유형별 건수

침해 유형	건수	비율(%)
명 예	164	78.1
명예/신용	9	4.3
명예/모욕	14	6.7
명예/모욕/초상	3	1.4
명예/모욕/초상/성명/사생활	1	0.5
명예/초상	1	0.5
명예/초상/사생활	3	1.4
명예/초상/음성	3	1.4
명예/성명	2	1.0
명예/사생활	2	1.0
명예/성명/음성	1	0.5
명예/재산	2	1.0
명예/신용/재산	1	0.5

침해 유형	건수	비율(%)
저작권	1	0.5
초 상	2	1.0
초상/사생활	1	0.5
합 계	210	100.0

5. 원고 유형별 소송건수

언론소송을 가장 많이 제기하는 원고 유형은 일반인

언론 관련 소송을 제기한 원고의 유형을 살펴보면, 개인이 청구한 사건은 116건(55.2%), 단체가 청구한 사건은 94건(44.8%)이었다. 전체 원고 유형 가운데 일반인이 54건(25.7%)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공적 인물 50건(23.8%), 기업 33건(15.7%), 언론사 22건(10.5%), 종교단체 17건(8.1%)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표 2-6〉 원고 유형별 건수

원고 유형		건수	비율(%)
개인	고위 공직자	12	5.7
	공적 인물	50	23.8
	일 반 인	54	25.7
	소 계	116	55.2
단체	언 론 사	22	10.5
	국가기관	7	3.3
	지 자 체	3	1.4
	기 업	33	15.7
	공공단체	2	1.0
	종교단체	17	8.1
	교육기관	1	0.5
	일반단체	9	4.3
	소 계	94	44.8
합 계		210	100.0

6. 매체 유형별 소송건수

소송이 가장 많이 제기되는 매체 유형은 언론사닷컴

소송건수를 매체별로 나눈 후 매체 유형별 건수(총 324건)를 살펴본 결과, 인터넷 매체가 166건(51.2%)으로 가장 많았고, 방송 70건(21.6%), 일간신문 52건(16.0%), 주간신문 22건(6.8%), 뉴스통신 7건(2.2%), 기타 5건(1.5%), 월간지 2건(0.6%)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표 2-7〉 매체 유형별 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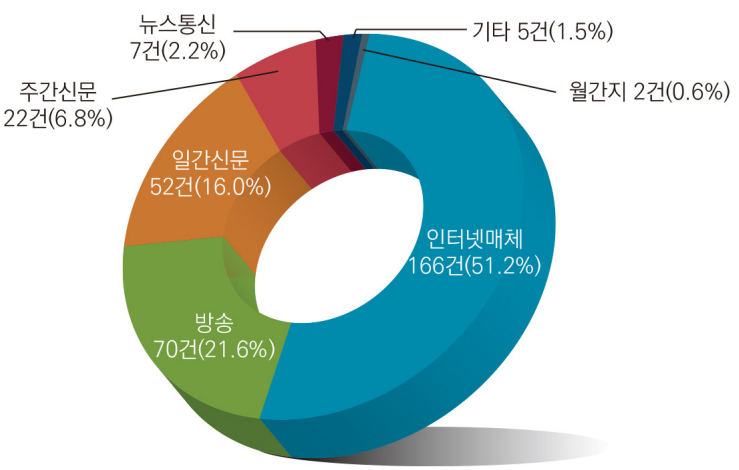

사건 수가 가장 많은 인터넷 매체의 경우, 방송사 홈페이지를 비롯한 언론사닷컴이 98건(59.0%), 인터넷신문 68건(41.0%) 등으로 파악됐고, 방송(70건)은 종합편성채널 등 케이블방송 37건(52.9%), 지상파방송 33건(47.1%)을 각각 차지했다. 일간신문(52건)은 중앙종합일간지 36건(69.2%), 지역종합일간지 12건(23.1%), 스포츠일간지 4건(7.7%)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7. 보도 유형별 소송건수

가장 많이 문제된 보도 유형은 뉴스(방송)와 스트레이트 기사(방송 외 매체)

소송건수를 매체별로 나눈 후 각 매체별로 문제가 된 보도 유형을 살펴봤다. 방송 매체(70건)에서는 뉴스가 47건(67.1%)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교양 9건(12.9%), 고발 8건(11.4%), 토론 3건(4.3%), 오락 2건(2.9%), 뉴스/토론 1건(1.4%) 등이 뒤를 이었다.

방송을 제외한 매체에서는 스트레이트 기사가 238건(93.7%)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표 2-8〉 방송 매체의 보도 유형별 건수

보도 유형	건수	비율(%)
뉴 스	47	67.1
교 양	9	12.9
고 발	8	11.4
토 론	3	4.3
오 락	2	2.9
뉴스/토론	1	1.4
합 계	**70**	**100.0**

〈표 2-9〉 방송 외 매체의 보도 유형별 건수

보도 유형	건수	비율(%)
스트레이트	238	93.7
칼 럼	9	3.5
스트레이트/사설	3	1.2
사 설	2	0.8
스트레이트/칼럼	1	0.4
기 타	1	0.4
합 계	**254**	**100.0**

8. 직위별 피고 분류

언론소송의 피고 구성 언론사 단독이 가장 많아

매체 유형별 건수 324건의 피고들을 직위별로 분류한 결과, 언론사만 피소된 건이 159건(49.1%)으로 가장 많았고, 언론사와 담당 기자(또는 PD)가 함께 피소된 사건 82건(25.3%), 담당 기자(또는 PD)만 단독으로 피소된 사건 12건(3.7%) 등으로 집계됐다.

〈표 2-10〉 직위별 피고 구성

직위별 피고 구성	건수	비율(%)
언론사	159	49.1
언론사/대표	3	0.9
언론사/대표/국장/부장/담당	1	0.3
언론사/대표/담당	6	1.9
언론사/대표/담당/비언론	5	1.5
언론사/대표/비언론	3	0.9
언론사/국장	1	0.3
언론사/국장/담당	4	1.2
언론사/담당	82	25.3
언론사/담당/비언론	7	2.2
언론사/비언론	9	2.8
언론사/기타	4	1.2
언론사/기타/비언론	1	0.3
대 표	9	2.8
대표/국장/담당	2	0.6
대표/국장/비언론	1	0.3
대표/담당	9	2.8
대표/담당/비언론	2	0.6
국장/비언론	1	0.3
담 당	12	3.7
담당/비언론	3	0.9
합 계	324	100.0

직위별 피고 분류를 다시 각 직위별로 나누어 합산한 결과를 살펴보면, 마찬가지로 언론사가 285건(56.2%), 담당 기자(또는 PD) 133건(26.2%), 대표이사 41건(8.1%) 등의 순으로 나타나 언론사 다음으로 담당자에 대한 청구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언론사 소속 직원은 아니지만 보도에 개입한 제보자 또는 인터뷰이, 패널 등 비언론을 대상으로 청구한 사건 수가 32건(6.3%)인 점도 주목할 만하다.

〈표 2-11〉 직위별 피고 분류(언론사 및 언론인 직위별 합산)

직위별 피고 구성	건수	비율(%)
언 론 사	285	56.2
대표이사	41	8.1
국 장	10	2.0
부 장	1	0.2
담당 기자(또는 담당 PD)	133	26.2
기 타	5	1.0
비 언 론	32	6.3
합 계	507	100.0

제3장

소송 결과

이 장에서는 분석 대상 판결의 소송 결과를 중심으로 분석을 시도했다. 구체적으로 심급별, 청구별, 원고 유형 및 매체 유형별, 보도 유형별, 소송기간으로 분류하여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심급별 결과

원고 승소율은 절반에 못 미쳐

2016년도 전체 언론 관련 소송의 원고 승소율은 47.1%로 집계되어 두 건 중 한 건은 원고가 패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심급별로 원고 승소율을 살펴보면, 1심 원고 승소율 40.0%, 2심(환송후심 포함) 53.3%, 3심 68.0%로 1심의 승소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 심급별 결과

심급	원고승	원고패	계
1 심	50 (40.0)	75 (60.0)	125 (100.0)
2 심	32 (53.3)	28 (46.7)	60 (100.0)
3 심	17 (68.0)	8 (32.0)	25 (100.0)
합 계	99 (47.1)	111 (52.9)	210 (100.0)

※ ( )안의 숫자는 %

2. 상소심의 원심 판결 유지여부

상소심에서 원심 판결이 유지되는 비율 87.7%

분석 대상 판결 210건 중 2심 56건(환송후심 4건 제외)과 3심 25건을 합산한 81건을 대상으로 원심 판결 유지 여부를 조사해 보았다. 원고의 청구취지가 인용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일부 인용 포함)으로 승·패소를 분류한 결과, 상소심이 원심의 판결 결과를 그대로 유지한 비율은 87.7%(71건)이었다. 이를 심급별로 살펴보면, 항소심의 원심 판결 유지비율은 85.7%였고, 상고심(대법원)의 원심 판결 유지비율은 92%로 집계되어 상소심에서 원심 판결이 번복되는 비율은 매우 낮았다.

〈표 3-2〉 상소심의 원심 판결 유지 여부

구분	건수	원심판결 유지		원심판결 번복	
		원고승소판결 유지	원고패소판결 유지	원고승소판결 번복	원고패소판결 번복
2 심	56 (100.0)	25 (44.6)	23 (41.1)	4 (7.1)	4 (7.1)
3 심	25 (100.0)	16 (64.0)	7 (28.0)	1 (4.0)	1 (4.0)
합 계	81 (100.0)	41 (50.6)	30 (37.0)	5 (6.2)	5 (6.2)
		71 (87.7)		10 (12.3)	

※ ( )안의 숫자는 %

3. 청구별 결과

원고 승소율은 반론보도청구 사건이 60.4%로 가장 높아

210건의 소송건을 매체별로 우선 분류한 후, 이를 다시 청구권별로 재분류하여 청구별 원고 승소율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반론보도청구 사건(53건)의 원고 승소율이 60.4%(32건)로 가장 높았고, 추후보도청구(9건)는 55.6%(5건), 손해배상청구(275건)는 39.3%(108건), 정정보도청구(181건)는 29.8%(54건), 기사삭제청구(36건)는 13.9%(5건), 보도금지청구(6건)는 16.7%(1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단 한 건에 불과한 방송금지청구 사건은 인용되었다.

〈표 3-3〉 청구별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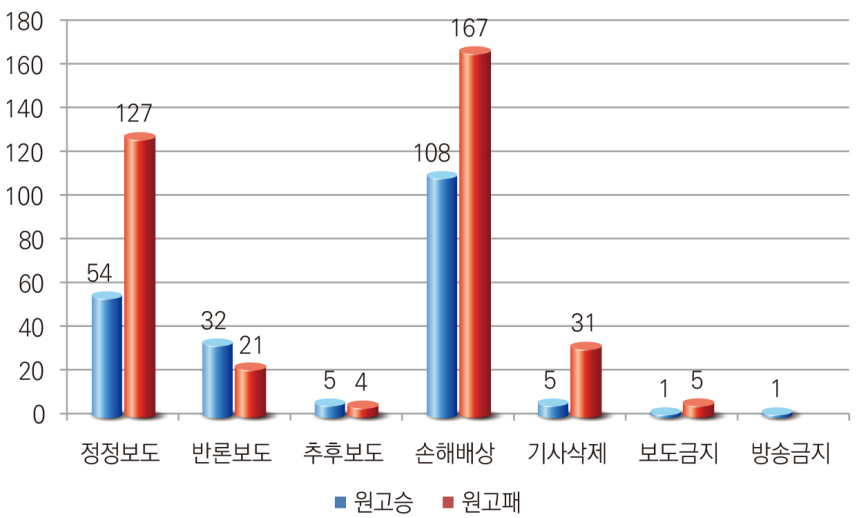

4. 침해 유형별 결과

명예훼손 사건의 원고 승소율은 46.3%

원고의 청구취지를 토대로 원고가 주장했던 침해 유형별 승소율을 분석한 결과, 언론소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명예훼손에서의 원고 승소율은 46.3%로 집계됐다. 명예 · 성명 · 음성이 함께 침해된 경우, 명예 · 초상 · 사생활이 함께 침해된 경우 등 다양한 침해 유형의 원고 승소율이 100%로 나타났지만 해당 건수가 소수에 불과해 유의미한 통계로 보기 어렵다.

〈표 3-4〉 침해 유형별 결과

침해 유형	원고승	원고패	계
명 예	76 (46.3)	88 (53.7)	164 (100.0)
명예/신용	5 (55.6)	4 (44.4)	9 (100.0)
명예/모욕	7 (50.0)	7 (50.0)	14 (100.0)
명예/모욕/초상	2 (66.7)	1 (33.3)	3 (100.0)
명예/모욕/초상/성명/사생활	0 (0.0)	1 (100.0)	1 (100.0)
명예/초상	0 (0.0)	1 (100.0)	1 (100.0)
명예/초상/사생활	2 (66.7)	1 (33.3)	3 (100.0)
명예/초상/음성/사생활	1 (33.3)	2 (66.7)	3 (100.0)
명예/성명	0 (0.0)	2 (100.0)	2 (100.0)
명예/성명/음성	1 (100.0)	0 (0.0)	1 (100.0)
명예/사생활	1 (50.0)	1 (50.0)	2 (100.0)
명예/재산	0 (0.0)	2 (100.0)	2 (100.0)
명예/신용/재산	1 (100.0)	0 (0.0)	1 (100.0)
저작권	1 (100.0)	0 (0.0)	1 (100.0)
초 상	1 (50.0)	1 (50.0)	2 (100.0)
초상/사생활	1 (100.0)	0 (0.0)	1 (100.0)
합 계	99 (47.1)	111 (52.9)	210 (100.0)

※ ( )안의 숫자는 %

5. 원고 유형별 결과

언론사가 원고인 사건의 승소율이 가장 낮아

원고 유형에 따른 승소율은 개인의 경우 고위 공직자 50.0%가 근소한 차이로 가장 높았고, 일반인 44.4%, 공적 인물 44.0% 등이 뒤를 이었다. 단체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유형이 과반을 넘는 승소율을 보인 가운데 언론사가 원고인 사건은 승소율이 22.7%에 불과했다.

〈표 3-5〉 원고 유형별 결과

원고 유형		원고승	원고패	계
개 인	고위 공직자	6 (50.0)	6 (50.0)	12 (100.0)
	공적 인물	22 (44.0)	28 (56.0)	50 (100.0)
	일 반 인	24 (44.4)	30 (55.6)	54 (100.0)
	소 계	52 (44.8)	64 (55.2)	116 (100.0)
단 체	언 론 사	5 (22.7)	17 (77.3)	22 (100.0)
	국가기관	4 (57.1)	3 (42.9)	7 (100.0)
	지 자 체	3 (100.0)	0 (0.0)	3 (100.0)
	기 업	17 (51.5)	16 (48.5)	33 (100.0)
	공공단체	1 (50.0)	1 (50.0)	2 (100.0)
	종교단체	10 (58.8)	7 (41.2)	17 (100.0)
	교육기관	1 (100.0)	0 (0.0)	1 (100.0)
	일반단체	6 (66.7)	3 (33.3)	9 (100.0)
	소 계	47 (50.0)	47 (50.0)	94 (100.0)
합 계		99 (47.1)	111 (52.9)	210 (100.0)

※ ( )안의 숫자는 %

6. 매체 유형별 결과

인터넷 매체 상대 사건의 원고 승소율 47.0%

소송 건수를 매체별로 나눈 건수를 대상으로 매체 유형에 따른 소송 결과를 분석했다. 그 결과 사건 수가 가장 많은 인터넷 매체 사건(166건)의 원고 승소율은 47.0%(78건)로 나타났다. 한편 사건수는 소수이지만, 뉴스통신을 상대로 한 사건(7건)의 원고 승소율은 57.1%(4건)로 가장 높았고, 방송사 노보 등 기타 매체를 상대로 한 사건(5건)의 승소율(20%, 1건)이 가장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표 3-6〉 매체 유형별 소송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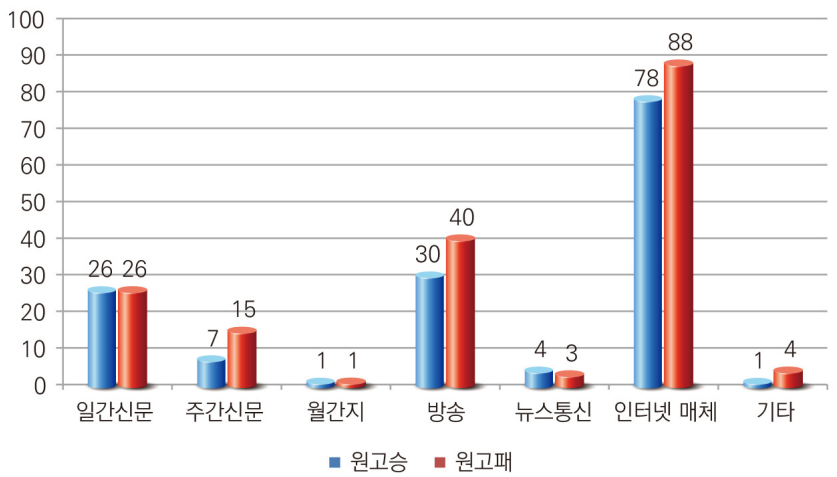

세부 유형별 일간신문(52건)의 원고 승소율을 살펴보면 중앙종합일간신문 41.7%(15건), 지역종합일간신문 75.0%(9건), 스포츠일간신문 50.0%(2건) 순으로 나타났다.

방송의 경우, 지상파방송을 대상으로 한 원고 승소율은 33.3%(11건), 케이블방송은 51.4%(19건)로 나타났다. 사건 수가 가장 많은 인터넷 매체를 상대로 한 사건의 원고 승소율은 인터넷신문 44.1%(30건), 언론사닷컴 49.0%(48건)으로 각 조사됐다.

〈표 3-7〉 일간신문 유형별 소송 결과

일간신문 유형	원고승	원고패	계
중앙종합	15 (41.7)	21 (58.3)	36 (100.0)
지역종합	9 (75.0)	3 (25.0)	12 (100.0)
스 포 츠	2 (50.0)	2 (50.0)	4 (100.0)
합 계	26 (50.0)	26 (50.0)	52 (100.0)

※ ( )안의 숫자는 %

〈표 3-8〉 방송 유형별 소송 결과

방송 유형	원고승	원고패	계
지상파방송	11 (33.3)	22 (66.7)	33 (100.0)
케 이 블	19 (51.4)	18 (48.6)	37 (100.0)
합 계	30 (42.9)	40 (57.1)	70 (100.0)

※ ( )안의 숫자는 %

〈표 3-9〉 인터넷 매체 유형별 소송 결과

인터넷 매체 유형	원고승	원고패	계
인터넷신문	30 (44.1)	38 (55.9)	68 (100.0)
언론사닷컴	48 (49.0)	50 (51.0)	98 (100.0)
합 계	78 (47.0)	88 (53.0)	166 (100.0)

※ ( )안의 숫자는 %

7. 보도 유형별 결과

스트레이트 기사(방송 외)와 뉴스(방송) 상대 원고 승소율 절반에 못 미쳐

분석 대상 판결의 매체별 건수 324건을 방송 외 매체 254건, 방송 매체 70건으로 나눈 후, 각 매체에 따른 보도 유형별 소송 결과를 살펴보았다. 방송 외 매체의 경우, 언론소송이 가장 많이 제기된 스트레이트 기사를 상대로 한 사건의 원고 승소율은 46.6%인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 매체 중 언론소송이 가장 많은 뉴스에 대한 사건의 원고 승소율 또한 46.8%로 집계되어, 각 매체 유형별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보도 유형에 대한 사건의 원고 승소율은 절반에 못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표 3-10〉 방송 외 매체의 보도 유형별 소송 결과

보도 유형	원고승	원고패	계
스트레이트	111 (46.6)	127 (53.4)	238 (100.0)
칼 럼	3 (33.3)	6 (66.7)	9 (100.0)
스트레이트/사설	1 (33.3)	2 (66.7)	3 (100.0)
사 설	0 (0.0)	2 (100.0)	2 (100.0)
스트레이트/칼럼	1 (100.0)	0 (0.0)	1 (100.0)
기 타	1 (100.0)	0 (0.0)	1 (100.0)
합 계	**117 (46.1)**	**137 (53.9)**	**254 (100.0)**

※ ( )안의 숫자는 %

〈표 3-11〉 방송 매체의 보도 유형별 소송 결과

보도 유형	원고승	원고패	계
뉴 스	22 (46.8)	25 (53.2)	47 (100.0)
교 양	2 (22.2)	7 (77.8)	9 (100.0)
고 발	3 (37.5)	5 (62.5)	8 (100.0)
토 론	2 (66.7)	1 (33.3)	3 (100.0)
오 락	1 (50.0)	1 (50.0)	2 (100.0)
뉴스/토론	0 (0.0)	1 (100.0)	1 (100.0)
합 계	**30 (42.9)**	**40 (57.1)**	**70 (100.0)**

※ ( )안의 숫자는 %

8. 소송기간

3개월 이내 판결이 선고된 1심 보도게재청구 사건은 한 건

언론소송은 결과의 승패 외에도 소송 진행의 신속함 역시 중요하다. 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 제29조에서는 "법원은 언론보도 등에 의하여 피해를 받았음을 이유로 하는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7조 제1항에서는 "정정보도청구등의 소는 접수 후 3개월 이내에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법 취지가 실제 소송에서 얼마나 반영되고 있는지를 살피기 위해 소송 개시일로부터 판결 선고일까지의 기간, 즉 소송기간에 대한 분석을 시도했다.[4)]
그 결과 1심과 2심에서의 상당수의 사건들이 6개월을 초과해서 판결이 선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2〉 심급별 소송기간 분포

구 분	3개월 이내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6개월 초과 1년 이내	1년 이상 2년 이내	2년 초과	계
1 심	5 (4.0)	26 (20.8)	60 (48.0)	27 (21.6)	7 (5.6)	125 (100.0)
2 심	1 (1.7)	8 (13.3)	43 (71.7)	7 (11.7)	1 (1.7)	60 (100.0)
3 심	7 (28.0)	12 (48.0)	1 (4.0)	0 (0.0)	5 (20.0)	25 (100.0)
합 계	13 (6.2)	46 (21.9)	104 (49.5)	34 (16.2)	13 (6.2)	210 (100.0)

※ ( )안의 숫자는 %

특히 법률에서 3개월 이내에 판결을 선고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1심 보도게재청구 사건에서도 법정기한을 준수하여 판결을 선고한 경우는 단 1건에 불과했고, 접수일로부터 6개월을 초과하여 선고한 사건이 52건(70.3%)으로 상당수를 차지했다.

〈표 3-13〉 보도게재청구 사건의 심급별 소송기간 분포

구 분	3개월 이내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6개월 초과 1년 이내	1년 이상 2년 이내	2년 초과	계
1 심	1 (1.4)	21 (28.4)	39 (52.7)	11 (14.9)	2 (2.7)	74 (100.0)
2 심	0 (0.0)	3 (8.6)	29 (82.9)	3 (8.6)	0 (0.0)	35 (100.0)
3 심	7 (36.8)	9 (47.4)	0 (0.0)	0 (0.0)	3 (15.8)	19 (100.0)
합 계	8 (6.3)	33 (25.8)	68 (53.1)	14 (10.9)	5 (3.9)	128 (100.0)

※ ( )안의 숫자는 %

4) 이 분석에서는 언론중재법이 아닌 민법 제764조에 따른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의 일환으로 보도문 게재를 청구하는 사건도 대상에 포함하였음을 밝혀둔다.

제4장
손해배상청구 사건

전술한 바와 같이, 분석 대상 판결을 매체별로 나눈 후 다시 청구별로 재분류하여 합산한 건수는 561건이고, 이 가운데 손해배상청구 사건은 273건[5]이다. 이 손해배상청구 사건만을 대상으로 원고 승소율과 청구액 및 인용액, 함께 피소된 언론인에 대한 판결 결과, 손해배상청구 기각 사유 등을 살펴보았다.

이들 분석 유목 중에서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청구액 또는 인용액의 경우, 소수의 최고액 또는 최저액 사건이 전체적인 평균의 상승 또는 감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손해배상 청구액 또는 인용액의 중앙값[6]과 최빈액[7]을 함께 조사하였다.

원고가 다수인 경우에는 원고들 각각의 청구액이나 인용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피고가 다수인 경우에는 피고를 매체별로 구분하여 산출된 매체별 금액을 기준으로 하였다. 또 피고가 언론인인 경우에는 해당 언론인이 소속된 매체의 청구액 또는 인용액에 언론인에 대한 청구액을 합산하였다.

1. 손해배상청구 사건 소송 결과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의 원고 승소율 38.8%

분석 대상 손해배상청구 사건 273건 중 원고가 승소한 사건은 106건으로 원고 승소율은 38.8%로 조사됐다. 이는 전체 언론소송(210건)에서의 원고 승소율(47.1%)보다 다소 낮은 수치다.

5) 손해배상청구 사건 275건 중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한 사건으로 손해배상 액수를 코딩하기 부적절한 2건을 제외하였다.
6) 중앙값이란 사례를 순위대로 배열하여 사례수가 홀수인 경우에는 한 가운데에 위치한 사례의 액수를, 짝수인 경우에는 한 가운데 위치한 두개 값의 평균을 말한다.
7) 최빈액은 전체 사례 중 건수가 가장 많은 값이다.

〈표 4-1〉 손해배상청구 사건 소송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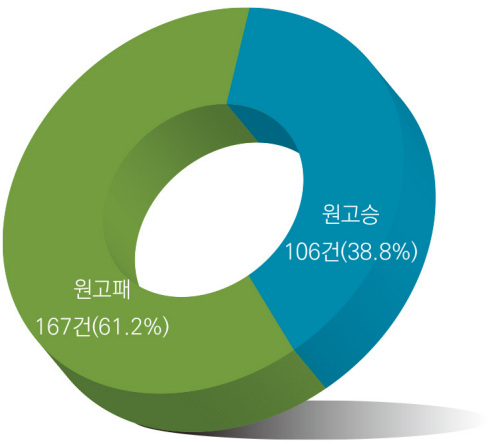

2. 청구액

평균 손해배상청구액 2억 1,239만 원, 중앙값 5,500만 원
청구액 기준 1억 이상 사건 비중 44.7%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원고 청구액을 평균과 중앙값, 최고액, 최빈액 등으로 나눠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청구액 평균은 약 2억 1,239만 원이었고, 중앙값은 5천 5백만 원, 최빈액은 1억 원이었다.

한편 전체 손해배상청구 273건 중 1억 원 이상의 고액 청구 사건이 122건(44.7%)을 차지하였으며, 최고 청구액은 1백억 원, 최저액은 7,844원이었다.

〈표 4-2〉 손해배상 청구액

청구액(원) / 건수	평균값	중앙값	최빈액	최저액	최고액
273	212,396,369	55,000,000	100,000,000	7,844	10,000,000,000

3. 인용액

손해배상 평균 인용액 약 3,843만 원, 인용 최고액 33억 원

손해배상청구 사건(273건) 중 청구가 인용되어 금전배상이 이루어진 건수는 106건(38.8%)이다. 이들 사건의 평균 인용액은 약 3,843만 원, 중앙값은 4백만 원으로 나타났다. 법원이 가장 빈번하게 선고한 액수는 전년과 동일한 3백만 원으로 조사됐다. 손해배상 인용 최고액은 33억 원으로, 허위 제보를 토대로 제작한 시사·고발 프로그램이 원고의 경쟁 업체의 영업 활동에 활용된 데 대해 방송사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건이다.[8)]

한편 손해배상청구 인용 사건 중 2심 판결은 31건, 3심 판결은 13건이었다. 위 상소심 판결 44건을 대상으로 상소심 법원이 원심에서 인용한 손해배상액을 증액 또는 감액했는지를 살펴보았다. 2심 법원이 원심 판결의 인용액을 유지한 경우가 21건이었고, 증액한 경우(원심의 원고 패소판결을 번복한 경우 포함) 4건, 감액한 경우 6건 등으로 나타났다. 3심의 경우 대법원은 13건 모두 원심 인용액을 그대로 유지했다.

〈표 4-3〉 손해배상 인용액

인용액(원) / 건수	평균값	중앙값	최빈액	최저액	최고액
106	38,435,419	4,000,000	3,000,000	1,000,000	3,300,000,000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 13. 선고 2013가합16690 판결

4. 인용액 분포

절반 넘는 사건의 손해배상 인용액은 5백만 원 이하

손해배상청구 사건 중 인용된 사건 106건의 인용액 분포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5백만 원 이하가 64건(60.4%)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5백만 원 초과 1천만 원 이하가 25건(23.6%), 1천만 원 초과 2천만 원 이하가 12건(11.3%), 2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가 3건(2.8%), 5천만 원 초과가 2건(1.9%)으로 나타났다.

〈표 4-4〉 손해배상 인용액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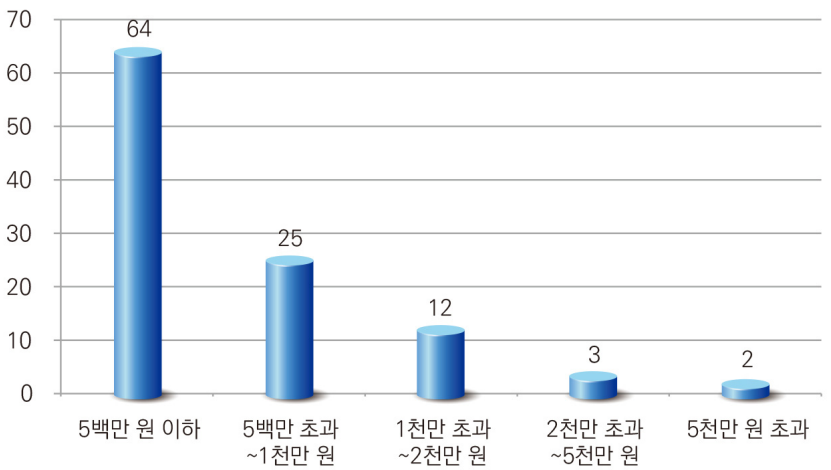

5. 침해 유형별 원고 승소율 및 인용액

명예훼손만이 문제된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원고 승소율 상대적으로 낮아

손해배상청구 사건 273건을 침해 유형별로 분류하여 원고 승소율과 인용액을 분석했다. 침해 유형 중 건수가 가장 많은 명예훼손의 경우, 원고 승소율은 33.7%로 나타났으며, 인용액 중앙값은 5백만 원이었다.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대다수가 명예훼손을 주장하는 사건인 탓에 해당 침해 유형의 낮은 승소율이 손해배상청구 전체 사건의 승소율 저하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명예와 신용이 함께 침해된 경우 원고 승소율은 64.3%, 인용액 중앙값은 350만 원이었고, 명예와 모욕이 함께 침해된 사건의 승소율은 52.9%, 인용액 중앙값은 3백만 원 등 명예훼손만 다룬 사건에 비해 승소율이 다소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표 4-5〉 침해 유형별 원고 승소율 및 인용액

침해 유형	건수	원고승	원고 승소율(%)	인용액 평균값(원)	인용액 중앙값(원)
명 예	208	70	33.7	8,300,777	5,000,000
명예/신용	14	9	64.3	6,444,444	3,500,000
명예/모욕	17	9	52.9	4,111,111	3,000,000
명예/모욕/초상	4	2	50.0	12,500,000	12,500,000
명예/모욕/초상/성명/사생활	2	0	0.0	-	-
명예/초상/사생활	3	2	66.7	3,000,000	3,000,000
명예/초상/음성	4	2	50.0	4,000,000	4,000,000
명예/성명	2	0	0.0		-
명예/성명/음성	1	1	100.0	8,000,000	8,000,000
명예/사생활	2	0	0.0	-	-
명예/재산	3	0	0.0		-
명예/신용/재산	1	1	100.0	3,300,000,000	3,300,000,000
저 작 권	7	6	85.7	7,016,667	5,700,000
초 상	3	2	66.7	3,500,000	3,500,000
초상/사생활	2	2	100.0	1,000,000	1,000,000
합 계	273	106	38.8	38,435,419	4,000,000

6. 원고 유형별 승소율 및 인용액

원고 유형별로 살펴본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원고 승소율은 사건수는 소수이긴 하지만 국가기관, 지자체, 교육기관이 각 100%로 파악됐다. 반면 고위 공직자, 공적 인물, 일반인 등 개인 사건의 승소율은 전부 과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단체 유형 사건 가운데 원고가 언론사인 사건과 종교단체인 사건의 승소율(언론사 34.5%, 종교단체 10.0%)이 다른 원고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여타 명예주체보다 언론사와 종교단체에 대한 비판은 더욱 폭넓게 허용된다는 판례 경향과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표 4-6〉 원고 유형별 승소율 및 인용액

원고 유형		건수	원고승	원고 승소율(%)	인용액 평균값(원)	인용액 중앙값(원)
개 인	고위 공직자	15	7	46.7	9,428,571	6,500,000
	공적 인물	74	25	32.4	7,120,000	5,000,000
	일 반 인	58	25	41.4	6,584,000	3,000,000
단 체	언 론 사	29	10	34.5	5,910,000	4,000,000
	국가기관	1	1	100.0	5,000,000	5,000,000
	지 자 체	5	5	100.0	9,000,000	7,500,000
	기 업	44	20	45.5	173,200,000	3,750,000
	공공단체	3	1	33.3	8,000,000	8,000,000
	종교단체	30	3	10.0	4,333,333	4,333,333
	교육기관	1	1	100.0	43,454,370	43,454,370
	일반단체	13	8	61.5	3,500,000	3,000,000
합 계		273	106	38.8	38,435,419	4,000,000

〈표 4-7〉 공적 인물의 손해배상청구 사건 승소율 및 인용액

공적인물 유형	건수	원고승	원고 승소율(%)	인용액 평균값(원)	인용액 중앙값(원)
정 치 인	14	4	28.6	11,250,000	8,750,000
전 문 인	7	2	28.6	1,500,000	1,500,000
언 론 인	11	3	27.3	15,666,667	5,000,000
연 예 인	7	5	71.4	6,400,000	7,000,000
예체능인	2	2	100.0	3,500,000	3,500,000
기 타	33	9	27.3	4,888,889	4,000,000
합 계	74	25	32.4	7,120,000	5,000,000

7. 매체 유형별 원고 승소율 및 인용액

중앙종합일간신문의 원고 승소율 18.5%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매체 유형별 원고 승소율은 지역종합일간신문이 66.7%로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사건 수가 가장 많은 인터넷신문(41.4%)과 언론사닷컴(41.3%) 등 인터넷 매체의 원고 승소율은 절반에 미치지 못했고, 중앙종합일간신문의 원고 승소율은 최저(18.5%)를 기록했다.

매체 유형별 인용액 평균값은 방송이 약 1억 6,729만 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분석 대상 판결 중 인용 최고액 사건이 포함된 영향인 것으로 분석된다.

〈표 4-8〉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매체 유형별 원고 승소율 및 인용액

매체 유형 \ 인용액		건수	원고승	원고 승소율(%)	인용액의 평균값(원)	인용액의 중앙값(원)
일 간	중앙종합	27	5	18.5	13,100,000	7,500,000
	지역종합	12	8	66.7	5,950,000	3,000,000
	스포츠	4	2	50.0	8,500,000	8,500,000
	소 계	43	15	34.9	8,673,333	5,600,000
방 송	지상파방송	26	6	23.1	9,416,667	6,250,000
	케이블	34	15	44.1	230,440,000	4,000,000
	소 계	60	21	35.0	167,290,476	4,500,000
주간신문		20	7	35.0	6,500,000	7,500,000
월 간 지		2	1	50.0	5,000,000	5,000,000
뉴스통신		7	4	57.1	5,000,000	5,000,000
인터넷	인터넷신문	58	24	41.4	6,125,000	3,500,000
	언론사닷컴	80	33	41.3	6,826,013	3,500,000
	소 계	138	57	41.3	6,271,129	3,500,000
기 타		3	1	33.3	3,000,000	3,000,000
합 계		273	106	38.8	38,435,419	4,000,000

8. 공동 피소된 언론인 승소 결과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의 언론인 승소율은 64.6%

손해배상청구 273건 중 언론인이 공동 피고로 제소된 사건은 147건(53.8%)으로, 두 건 중 한 건은 언론사뿐만 아니라 대표, 담당자 등 언론인을 공동 피고로 제소했다. 이 중 피고 언론인이 면책되어 승소한 경우는 95건(64.6%)이었다. 이는 전체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피고승소율 61.2% 보다 다소 높은 수치이다.

〈표 4-9〉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피고 언론인 승소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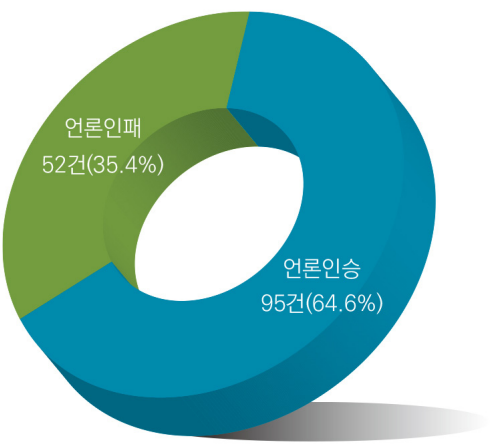

9. 손해배상청구 기각 사유

명예훼손 사건에서 언론사 승소 원인의 상당수는 보도의 공익성과 진실성

손해배상청구 273건 중 기각(원고 패소)된 167건의 침해 유형별 기각 사유를 살펴보았다. 명예훼손의 경우[9], 보도의 공익성 및 진실성이 인정되어 기각한 경우가 59건(35.3%)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과 같은 사실의 적시가 없다는 사유를 포함하여 기각된 사례가 17건(10.2%)이었고, 당사자 특정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가 포함된 경우가 6건(3.6%)이었다.

당사자 불특정으로 기각된 초상권 침해에 관한 사건은 당사자 특정에 관한 원고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사유로 원고 패소했다. 또한 저작권 침해가 문제가 된 1건은 원고 방송사의 영상을 자사 보도에 사용한 것에 대하여 영상물 이용에 관한 원고 방송사의 허락을 구했고, 피고 방송사가 무단으로 사용한 영상물은 저작물로서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표 4-10〉 손해배상청구 기각 사유

기각 사유		건수	비율(%)
명예훼손	불특정	4	2.4
	불특정/공익/진실성	1	0.6
	사실적시 없음	11	6.6
	사실적시 없음/상당성	1	0.6
	사실적시 없음/공익성	1	0.6
	사실적시 없음/진실성	3	1.8
	사실적시 없음/공익성/진실성/상당성	1	0.6
	평가저하 아님	1	0.6
	평가저하 아님/불특정	1	0.6
	공익성	12	7.2
	공익성/진실성	59	35.3
	공익성/진실성/상당성	18	10.8
	공익성/상당성	35	20.9
	공익성/기타	2	1.2
	진실성	12	7.2
	진실성/상당성	1	0.6
	기 타	2	1.2
초상권	불특정	1	0.6
저작권	동 의	1	0.6
합 계		167	100.0

9) 명예를 포함하여 복수의 인격권 침해를 호소한 경우 주된 침해 유형인 '명예훼손'에 분류하여 집계하였다.

제5장

정정 · 반론 · 추후보도청구 사건

1. 정정보도청구 사건 소송 결과

정정보도청구 사건 중 원고 승소율은 불과 29.8%

분석 대상 판결을 매체별로 나눈 후 다시 청구권별로 나눈 건수 561건 중 정정보도청구 사건은 181건이었다. 정정보도청구 사건에서 원고가 승소한 사건은 54건으로 원고 승소율은 29.8%로 나타났다. 이 중 정정보도를 단독으로 청구한 건수는 17건에 불과했고, 대부분 반론보도, 손해배상 또는 기사삭제 등과 병합하여 청구하였다.

〈표 5-1〉 정정보도청구 사건 소송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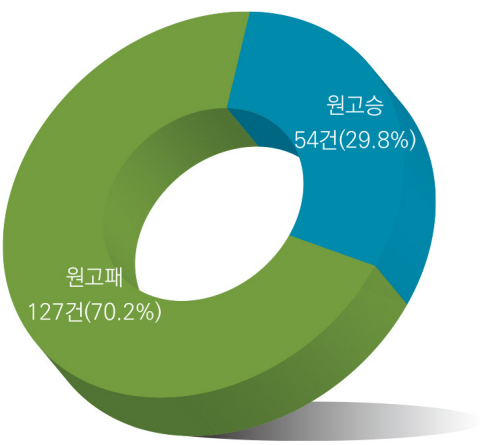

2. 정정보도청구 기각 사유

정정보도청구 사건의 주된 기각 사유는 '보도의 진실성'

정정보도청구 사건 중 원고가 패한 사건(127건)의 사유를 분석한 결과, 보도의 진실성을 인정하여 기각한 사례가 57건(44.9%)으로 가장 많았다. 문제되는 표현이 사실적 주장이 아닐 뿐 아니라 보도가 진실하다는 이유로 기각한 사건이 34건(26.8%)으로 그 다음을 차지했으며, 사실적 주장이 아니라는 사유만으로 기각된 경우가 15건(11.8%)을 차지하여, 주로 보도의 진실성이 인정되거나 문제되는 표현에 대해 사실적 주장이 부정되어 기각된 것으로 파악됐다.

〈표 5-2〉 정정보도청구 기각 사유

기각 사유	건수	비율(%)
개별연관 부정	2	1.6
개별연관 부정/사실주장 아님/진실성	1	0.8
개별연관 부정/진실성	1	0.8
사실주장 아님	15	11.8
사실주장 아님/진실성	34	26.8
사실주장 아님/진실성/지엽말단	5	3.8
사실주장 아님/상당성	1	0.8
지엽말단/진실성/위법한 내용	1	0.8
진실성	57	44.9
상당성	5	3.9
진실성/상당성	2	1.6
기 타	3	2.4
합 계	127	100.0

3. 반론보도청구 사건 소송 결과

반론보도청구 사건의 원고 승소율 60.4%

분석대상 판결 중 반론보도청구 건수는 53건으로, 이 중 원고가 승소한 사건은 32건, 원고 승소율은 60.4%로 나타나, 여타 청구사건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승소율을 보였다. 반론보도만을 단독으로 청구한 사건은 10건에 불과해 대체로 정정보도나 손해배상 등과 병합하여 청구하였다.

〈표 5-3〉 반론보도청구 사건 소송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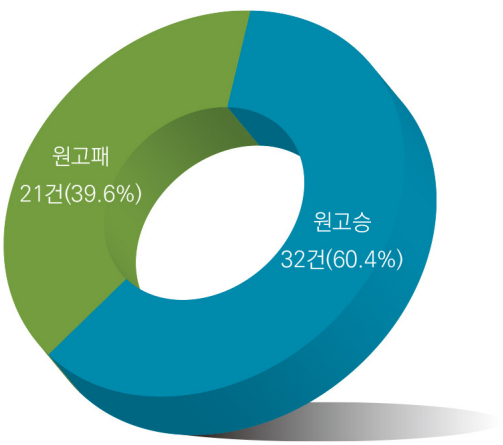

4. 반론보도청구 기각 사유

보도내용이 사실적 주장이 아닌 경우 반론보도청구 기각

반론보도청구 사건 53건 중 기각된 사건은 21건이었다. 기각 사유는 보도내용이 사실적 주장이 아닌 경우와 사실적 주장이 아님과 동시에 반론보도를 구하는 내용이 지엽말단적인 내용에 해당한 경우가 각 4건으로 가장 많았다.

〈표 5-4〉 반론보도청구 기각 사유

기각 사유	건수	비율(%)
공익성/진실성/상당성	1	4.8
사실주장 아님	4	19.0
진실성/지엽말단	1	4.8
사실주장 아님/지엽말단	4	19.0
기 반론행사/위법한 내용	2	9.5
원보도와 같음	1	4.8
원보도와 같음/사실주장 아님	1	4.8
원보도와 같음/지엽말단	1	4.8
원보도와 같음/사실주장 아님/지엽말단	1	4.8
원보도와 무관	2	9.5
원보도와 무관/사실에 반함/지엽말단	1	4.8
광고 목적	1	4.8
기 타	1	4.8
합 계	21	100.0

5. 판결 주문에 따른 정정보도등의 형식

법원에서 정정보도 또는 반론보도, 추후보도(이하 "정정보도등"이라 한다) 게재를 명한 사건은 총 84건으로 조사됐다.[10] 이 중 5건은 정정보도와 반론보도를 동시에 게재하도록 판결한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별로 분류한 기준으로 집계한 보도 게재 건수는 총 89건이다.
이를 매체 유형별로 분류하면 일간신문과 방송이 각 18건, 주간신문 1건, 뉴스통신 4건, 인터넷 매체 47건, 기타 1건[11] 등이다. 인용한 보도의 유형별로는 정정보도가 52건, 반론보도 32건, 추후보도가 5건이었다.

〈표 5-5〉 매체별 정정보도등의 인용건수

매체 유형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	계
일간신문	9	8	1	18
주간신문	1	-	-	1
방 송	11	7	-	18
뉴스통신	2	1	1	4
인터넷 매체	28	16	3	47
기 타	1	-	-	1
합 계	52	32	5	89

한편, 법원이 정정보도 등을 명하는 때에는 보도문의 내용·크기·횟수·게재 위치 또는 방송순서 등을 정하여야 한다(언론중재법 제27조제2항). 이에 따라 판결 주문에서 법원이 인용한 보도문의 위치, 제목, 본문 길이 등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정정보도등의 게재 위치

대부분 원보도와 동일한 위치에 보도하도록 판결

법원이 인용한 정정보도등의 위치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경우 원보도와 같은 지면이나 프로그램에 보도하도록 명한 것으로 조사됐다(76건, 90.5%). 원보도와 다른 지면이나 프로그램에 보도하도록 명한 경우는 3건(3.6%)에 불과했고, 타 매체에 게재할 것을 명한 1건은 피고의 언론사로서의 법적 지위가 인정되지 않은 사유에 따른 것이었다.

10) 보도게재청구가 인용된 사건은 86건이나, 인용 취지로 파기환송한 2건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11) 한국방송공사가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외 3명을 상대로 제기한 사건에서 원고의 사내통신망에 정정보도문을 게재할 것을 선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9. 8. 선고 2015가합6709)

〈표 5-6〉 인용된 정정보도등의 보도지면(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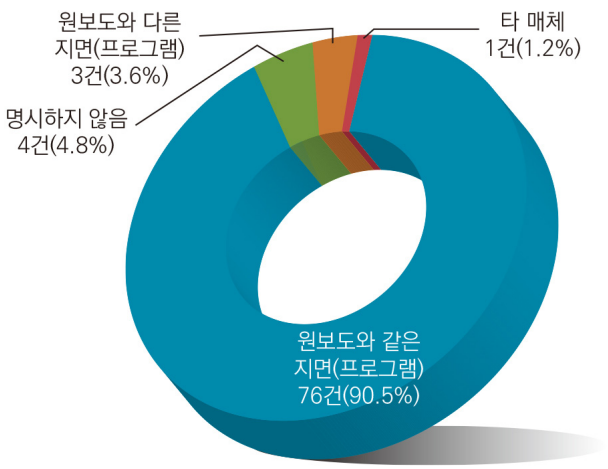

매체 유형 중 '기타' 1건을 제외한 83건의 매체별 보도위치를 조사한 결과, 일간신문, 주간신문 등 정기간행물의 경우 1면 게재가 5건, 방송의 경우 첫머리가 11건, 뉴스통신 및 인터넷 매체의 경우 제목이나 내용의 일부가 초기화면에 게시되도록 한 사례가 39건으로 나타났다.

〈표 5-7〉 인용된 정정보도등의 위치

구분	보도위치	건수	비율(%)
정기간행물	1면	5	26.3
	1면외	14	73.7
합 계		19	100.0
방 송	첫머리	11	64.7
	후반	1	5.9
	명시하지 않음	5	29.4
합 계		17	100.0
인터넷	제목이나 내용의 일부가 초기화면에 노출	39	83.0
	초기화면에 노출되는 것이 없음	8	17.0
합 계		47	100.0

나. 정정보도등의 보도제목, 보도본문 길이

대체로 원보도의 핵심 내용을 함께 기재하는 제목 형식 취해

법원이 인용한 보도문의 제목과 본문 길이 등 형식을 분석하였다. 보도 제목의 경우, '…에 대한 정정보도문'이나 '…에 대한 반론보도문' 형식이 57건(67.9%)으로 집계되었고, 전년도(56.2%)에 비해 다소 그 비율이 상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5-8〉 인용된 정정보도등의 보도제목

보도제목	건수	비율(%)
정정보도문	16	19.0
반론보도문	4	4.8
정정 및 반론보도문	1	1.2
추후보도문	1	1.2
…에 대한 정정보도문	34	40.5
…에 대한 반론보도문	23	27.4
…에 대한 추후보도문	3	3.6
바로잡습니다	1	1.2
일반기사	1	1.2
합 계	84	100.0

보도본문의 길이는 글자 수 기준으로 300자 이하가 43건(51.2%)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300자 초과 400자 이하 17건(20.2%), 700자 초과 11건(13.1%), 500자 초과 600자 이하 8건(9.5%), 400자 초과 500자 이하 3건(3.6%), 600자 초과 700자 이하 2건(2.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5-9〉 인용된 정정보도등의 본문 길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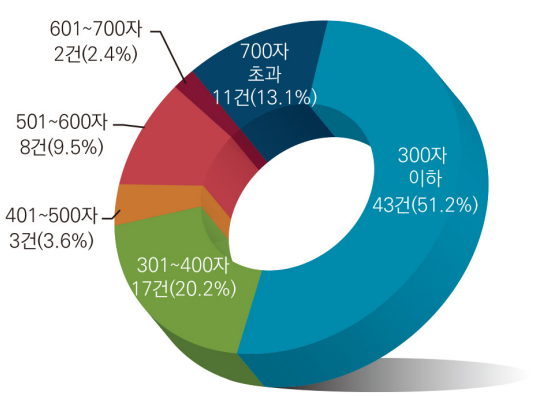

제6장

언론중재위원회 조정과 법원 판결 비교

1. 조정경유 비율

전체 언론분쟁 사건 중 법원에서 처리되는 비율 10%

분석대상 2016년 판결의 매체별 건수 324건을 청구권별로 재분류한 561건 중에서 기사삭제 등을 제외한 나머지 정정 · 반론 · 추후 · 손배 네 가지 청구권 관련 사건(총 518건)을 대상으로 위원회 조정을 거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전체 언론분쟁 중에서 10%의 사건만이 위원회를 통하지 않고 법원에서 처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1〉 조정경유 비율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합 계
전체 언론분쟁 건수 (A+B)	3,285 (100.0)	3,789 (100.0)	3,523 (100.0)	10,596 (100.0)
조정 건수 (A)	2,931 (89.2)	3,319 (87.6)	3,170 (90.0)	9,420 (88.9)
조정을 거치지 않은 판결 건수 (B)	354 (10.8)	470 (12.4)	353 (10.0)	1,177 (11.1)
조정을 거친 판결 건수 (C)	80 (2.4)	104 (2.7)	165 (4.7)	349 (3.3)
법원 판결 건수 (B+C)	434 (13.2)	574 (15.1)	518 (14.7)	1,526 (14.4)

※ ( )안의 숫자는 %

* 건수 산정 : 정정 · 반론 · 추후 · 손배 청구권별 산정 (기사삭제, 게재금지 등 제외)
* 2014년 조정신청 건수의 경우, 총 19,048건 중 대량 사건 제외
* 2015년 조정신청 건수의 경우, 총 5,227건 중 대량 사건 제외
* 전체 언론분쟁 건수 : 판결 수집 건수를 전수조사로 전제한 경우임
* 법원 판결 건수는 기사삭제, 게재금지 청구 등을 포함할 경우 더 많아질 수 있음

2.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조정액과 인용액 비교

위원회 평균 조정액 약 223만 원, 법원 평균 인용액 약 3,843만 원

2016년 위원회가 처리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중 조정성립 등을 통해 금전배상이 이루어진 사건의 조정액과 법원에서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인용액을 비교, 분석해보았다.

그 결과 위원회 평균 조정액은 약 223만 원, 중앙값은 1백만 원이고, 법원 평균 인용액은 약 3,843만 원, 중앙값은 4백만 원이었다.[12] 위원회의 평균 조정액은 전년도(약 160만원)에 비해 소폭 상승한 반면, 법원 평균 인용액은 33억 원의 손해배상 지급을 선고한 고액 인용 사건의 영향으로 전년도(약 1,073만원)에 비해 3배 가량 상승하여 조정액과 인용액 간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 해당 사건을 제외한 105건의 평균 인용액은 약 737만원으로 산출되어 전년보다 다소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표 6-2〉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위원회 조정액과 법원 인용액 비교

구분	건수	평균값(원)	중앙값(원)	최저액(원)	최고액(원)
조정액	70	2,235,000	1,000,000	10,000	30,000,000
인용액	106	38,435,419	4,000,000	1,000,000	3,300,000,000

3. 조정을 거친 사건의 위원회 조정 결과와 법원 소송 결과 비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진 사건의 원고 승소율은 58.6%

2016년 언론 관련 판결 중 위원회 조정을 거친 165건[13]을 대상으로 위원회 조정 결과와 법원 소송 결과를 원고 승소율을 중심으로 비교, 분석해 보았다.

위원회에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직권조정결정)이 내려진 사건은 70건으로 이 사건들에 있어서의 원고 승소율은 58.6%(41건)으로 나타났다. 피신청인이 결정에 불복하여 이의신청한 경우의 원고 승소율은 57.8%(22건)으로 신청인이 이의신청한 경우의 원고 승소율 45.8%(11건)에 비해 다소 높았고, 신청인·피신청인 양 당사자가 모두 이의신청한 사건은 전부 원고가 승소(100.0%, 8건)한 것으로 집계됐다.

12) 손해배상액 산정에 대한 두 기관의 결과 비교가 보다 합리적이기 위해서는 동일한 사건에 대한 차이를 비교, 분석해야 할 것이다. 이 분석은 두 기관이 각기 다른 사건을 심리하여 판단한 결과이므로 분석 결과를 단순 비교하여 위원회와 법원의 손해배상액 차이를 나타내는 지표로 삼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기에 두 기관에서 이루어진 손해배상액의 전체적인 추이를 살펴보는 데 의의가 있다 하겠다.

13) 위원회에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으나 당사자의 이의 제기가 이루어진 경우를 비롯하여 조정불성립결정이나 조정성립, 취하 등 위원회 조정 이후 별도 소송을 제기한 경우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한편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른 사건의 원고 승소율(58.6%)보다 조정불성립결정(90건)에 대한 후속 대응으로 소송을 제기한 사건의 승소율(68.9%, 62건)이 비교적 높았다.

〈표 6-3〉 위원회와 법원 소송 결과 비교

위원회 조정결과 \ 판결 결과		계	원고일부승	원고패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신청인 이의신청	24	11	13
	피신청인 이의신청	38	22	17
	신청인, 피신청인 이의신청	8	8	-
조정불성립결정		90	62	28
합 의		1	-	-
취 하		4	4	-
합 계		165	107	58

손해배상을 명한 자동 소 제기 사건 법원에서도 모두 인용

위원회에서 손해배상을 명하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지만, 분쟁 당사자의 이의신청으로 법원에 소가 자동으로 제기된 사건의 위원회 조정액 및 법원 인용액을 비교, 분석해 보았다.

위원회에서 손해배상을 명하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린 5건 모두 법원에서 인용됐다. 그러나 평균액, 중앙값, 최저액, 최고액 등 모든 항목에서 법원 인용액이 위원회 조정액을 상회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체로 위원회 조정사건에 비해 법원 소송사건에서 보다 높은 인용액이 선고되었다. 특히 위원회가 1백만 원의 조정액을 명한 사건이 법원에서는 2천만 원이 인용되어 가장 큰 격차를 나타내기도 했다.

〈표 6-4〉 자동 소 제기 사건의 위원회 조정액 및 법원 인용액 비교

구분	건수	평균값(원)	중앙값(원)	최저액(원)	최고액(원)
조정액	5	2,200,000	1,000,000	1,000,000	5,000,000
인용액	5	7,000,000	3,000,000	2,000,000	20,000,000

〈표 6-5〉 자동 소 제기 사건 중 손해배상 인용 동일 사건 비교

구분	사건번호	원고	피고	조정액	인용액
1	2015다66298	A	주식회사 강남신문	5,000,000	2,000,000
2	2015가합25575	A	주식회사 매일방송	1,000,000	3,000,000
3	2015나22542	A	주식회사 조선방송	3,000,000	7,000,000
4	2015다33489	A	주식회사 뉴스한국	1,000,000	3,000,000
5	2016나21125	주식회사 한국감정원	주식회사 머니투데이	1,000,000	20,000,000

〈표 6-6〉 조정을 거친 사건의 소송 결과 전체 목록

순번	사건번호 (청구명)	신청인	피신청인	사건개요	위원회 결과	1심	2심	3심	환송후심
1	2014서울조정 1461 (추후)	A	주식회사 중앙일보	신청인이 위조한 판결문을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하여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죄로 고발당할 처지라고 보도하였으나 무죄 판결을 받았다.	추후-직권결정(추후) 손배-기각	**기각 (서울중법 2015가합 17789)**	-	-	-
2	2014서울조정 1483 (추후)	A	주식회사 한국일보사	신청인이 위조한 판결문을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하여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죄로 고발당할 처지라고 보도하였으나 무죄 판결을 받았다.	추후-직권결정(추후) 손배-기각	**기각 (서울중법 2015가합 17789)**	-	-	-
3	2012서울조정 827 · 828 (정정 · 손배)	A 외 139명	주식회사 문화방송	권재홍 앵커가 MBC노조원들의 퇴근 저지를 받는 과정에서 신체 일부에 충격을 받았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불성립	인용 정정 2,000만 원 (서울남법 2012가합 13294)	인용 정정 2,000만 원 (서울고법 2013나 35049)	기각(파기) (대법 2014다 28121)	**인용 반론 (서울고법 2015나 21846)**
4	2014서울조정 4543 · 4544 (정정 · 손배)	A	주식회사 강남신문	신청인이 성형수술한 환자가 부작용이 발생하자 진료기록부를 조작하는 등 의료법을 위반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직권결정 - 정정 · 반론 500만 원	기각 (서울중법 2014가합 62928)	인용 정정 200만 원 (서울고법 2015나 12972)	**인용 정정 200만 원 (대법 2015다 66298)**	-
5	2013경기조정 67 (추후)	A	오비에스 경인티브이 주식회사	신청인이 훔친 차량을 알선하여 체포된 것으로 방송하였으나 무혐의처분 받았다.	불성립	**기각 (부천지원 2015가단 112179)**	-	-	-

순번	사건번호 (청구명)	신청인	피신청인	사건개요	위원회 결과	1심	2심	3심	환송후심
6	2012강원조정 3 · 4 (정정 · 손배)	주식회사 A 외 2명	주식회사 강원신문사	신청인 회사들이 산림훼손, 폐기물 불법매립 등 각종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으며, 기업주인 신청인은 세금포털 등 부당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불성립	인용 정정 3,500만 원 (강릉지원 2012가합 1156)	인용 정정 3,500만 원 (서울고법 – 춘천 2014나 2902)	**인용 정정 3,500만 원 (대법 2015다 74381)**	–
7	2015서울조정 3708, 3709 (각 정정)	A	주식회사 매일방송	애니멀 커뮤니케이터인 신청인이 사기행각을 벌였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직권결정 – 정정 100만 원	**인용 정정 300만 원 (서울중법 2015가합 25575)**	–	–	–
8	2014서울조정 1226 (손배)	A	주식회사 조선방송	경찰의 금수원 진입 관련 보도에서 신청인의 모습이 동의 없이 공개되어 피해를 입었다.	직권결정 – 300만 원 기사수정	인용 700만 원 (서울중법 2014가합 51744)	**인용 700만 원 (서울고법 2015나 22542)**	–	–
9	2014서울조정 1035 · 1036 (정정 · 손배)	주식회사 A	주식회사 채널에이	신청인 업체가 닭을 비위생적으로 해동하여 가공하고 있는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직권결정 – 정정	기각 (서울중법 2014가합 45602, 45619)	기각 (서울고법 2015나 2028423, 2028430)	**기각 (대법 2016다 206529, 206536)**	–
10	2014서울조정 3956 (정정)	보건복지부	주식회사 경향신문사	보건복지부가 지방자치단체에게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생활비 지원을 중단하도록 지시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직권결정 – 반론	**인용 정정 (서울중법 2016가합 269)**	조정성립 (서울고법 2016나 2036506)	–	–
11	2015서울조정 3050 · 3051 (정정 · 손배)	주식회사 문화방송	주식회사 미디어오늘	MBC가 2012년 파업 관련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재판부에 허위 증거자료를 제출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불성립	**기각 (서울남법 2015가합 107480)**	기각 (서울고법 2016나 2040680)	계류 (대법 2017다 219065)	–
12	2013경기조정 175 · 176 (정정 · 손배)	성남시 외 1명	주식회사 디지털 성남일보	성남시 이재명 시장이 성남시의회 의정연수에 참석해 발렌타인 21년산 21병을 선물하고 건배제의를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불성립	인용 1500만 원 (성남지원 2013가합 205057)	**인용 1500만 원 (서울고법 2015나 2020764)**	**인용 1500만 원 (대법 2016다 206925)**	–
13	2014서울조정 500 (손배)	A	주식회사 뉴스한국	신청인이 아내의 종교를 증오해 아내를 폭행하고 아동학대를 저질렀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직권결정 – 반론 100만 원	인용 300만 원 (서울남법 2014가합 6863	인용 300만 원 (서울고법 2015나 4346)	**인용 300만 원 (대법 2015다 33489)**	–
14	2015서울조정 3538 (손배)	A	주식회사 매일방송	강력살인사건 관련 보도에서 이와 무관한 신청인의 초상을 노출해 피해를 입었다.	불성립	**기각 (서울동법 2015가소 287236)**	–	–	–

순번	사건번호 (청구명)	신청인	피신청인	사건개요	위원회 결과	1심	2심	3심	환송후심
15	2015서울조정 3465 · 3466, 3467 · 3468 (각 정정 · 손배)	A	주식회사 에스비에스 외 1명	신청인이 변호인 접견권을 악용해 특별 접견실에서 자유 시간을 보내는 등 편안한 수감생활을 한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불성립	**기각 (서울서법 2015가합 38651)**	-	-	-
16	2014서울조정 839 · 840 · 841, 842 · 843 · 844, (각 정정 · 반론 · 손배)	A	국민일보 주식회사 외 1명	신청인 교단이 이단, 사이비 단체이며, 대학가에 종말론을 유포한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불성립	인용 정정 · 반론 100만 원 (서울남법 2014가합 8593)	**인용 반론 (서울고법 2015나 2032729)**	**인용 반론 (대법 2016다 215745)**	-
17	2015서울조정 4090 · 4091 (정정 · 손배)	주식회사 A	주식회사 씨비에스아이	신청인 회사가 고의로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불성립	**인용 정정 400만 원 (서울남법 2016가합 100578)**	계류 (서울고법 2016나 2048271)	-	-
18	2016서울조정 167 (손배)	A 주식회사	B (에너지신문)	LPG 소형저장탱크를 생산하는 신청인 업체가 비파괴검사 관련 법률을 위반한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불성립	**기각 (서울중법 2016가단 15394)**	-	-	-
19	2015서울조정 4082 (정정)	A	주식회사 문화방송	신청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집단 장염의 원인이 비위생적인 급식 때문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직권결정 - 추후	**기각 (서울서법 2016가합 35)**	-	-	-
20	2014서울조정 882 · 883 · 884, 885 · 886 · 887 (각 정정 · 반론 · 손배)	A	국민일보 주식회사 외 1명	신청인 교단이 시한부종말론을 주장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신자들의 가정이 파괴되고 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불성립	인용 정정 · 반론 100만 원 (서울남법 2014가합 8784)	**인용 반론 (서울고법 2015나 2032736)**	**인용 반론 (대법 2016다 215752)**	-
21	2015서울조정 3980 (정정)	의정부지방 검찰청	주식회사 뉴시스	의정부지방검찰청이 구내식당 운영업체 선정 방식을 바꾼 이유가 기존 업체를 쫓아내기 위한 것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불성립	**인용 정정 · 반론 500만 원 (서울중법 2016가합 500622)**	-	-	-
22	2015서울조정 3944 (정정)	A	주식회사 시사저널사	신청인의 딸이 대기업 변호사 채용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직권결정 - 정정	**인용 정정 (서울서법 2015가합 4238)**	-	-	-
23	2015제주조정 26 · 27, 28 · 29 (각 정정 · 손배)	제주특별 자치도 감사위원회 외 1명	한국방송 공사 외 1명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위원장이 제주도해양수산연구원 감사 관련 기자 질문에 거짓 답변을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직권결정 - 반론	**인용 정정 800만 원 (2015가합 1648, 1655)**	인용 (광주고법-제주 2016나 10546)	계류 (대법 2017다 227929)	-
24	2014경남조정 73,75,77,79, 81,83,85,87, 91,93 (각 손배)	주식회사 일간뉴스경남 외 1명	주식회사 경남도민신문	언론사 대표인 신청인이 업무상 횡령을 한 의혹이 있다고 보도해 명예가 훼손되었다.	불성립	**기각 (진주지원 2014가단 7939)**	기각 (창원지법 2016나 5645)	-	-

순번	사건번호 (청구명)	신청인	피신청인	사건개요	위원회 결과	1심	2심	3심	환송후심
25	2011경남조정 72, 74 (각 손배)	A	주식회사 경남도민신문	신청인이 진주중앙병원의 운영권과 관련, 병원장을 공갈·협박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 – 조정성립 손배 – 취하	**기각 (진주지원 2014가단 9423)**	계류 (창원지법 2016나 5867)	–	–
26	2015서울조정 4203·4204 (정정·손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은행 지부	주식회사 조선경제아이	정년을 맞은 옛 ○○은행 직원들의 퇴직후 재취업 요구와 관련해 사측의 일방적인 주장을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정정-직권결정(반론) 손배 – 취하	**인용 정정 300만 원 (서울중법 2016가합 2043)**	–	–	–
27	2015서울조정 3526 (정정)	한국방송공사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KBS가 이사장의 개인 용무 해외출장에 공금을 집행했고, 이사장의 압력을 받고 이사장 출연 프로그램에 제작비를 투입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직권결정 – 정정·반론	**기각 (서울남법 2015가합 6709)**	계류 (서울고법 2016나 2071745)	–	–
28	2014서울조정 14841·14843 (정정·손배)	서초경찰서 외 1명	주식회사 매일방송	신청인의 무리한 병원 압수수색으로 전신마취를 한 상태의 환자수술이 중단되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직권결정 – 정정	인용 정정 7,000만 원 (서울중법 2015가합 9115)	**인용 정정 7,000만 원 (서울고법 2016나 2000002)**	–	–
29	2015서울조정 3189 (정정)	주식회사 문화방송	A	신청인 언론사가 성완종 전 경남기업 비자금 관련 보도를 하면서 수사 대상을 야권으로 넓히는 역할을 수행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불성립	기각 (서울서법 2015가합 36372)	**기각 (서울고법 2016나 2004820)**	기각 (대법 2016다 257237)	–
30	2016서울조정 367·368 (반론·손배)	A	주식회사 법보신문사	언론사 편집장인 신청인이 언론을 탄압하고 사주의 편에 서는 등 정의롭지 못한 행보를 보였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직권결정 – 반론	**인용 반론 서울중법 (2016가합 5578)**	계류 (서울고법 2016나 2070438)	–	–
31	2016서울조정 13·14 (정정·손배)	A	주식회사 씨비에스아이	신청인 교회가 대전지역에서 개최한 효 잔치가 포교를 위한 것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직권결정 – 정정·반론	**인용 정정 500만 원 (서울남법 2016가합 105160)**	인용 (서울고법 2016나 2070933)	–	–
32	2012서울조정 734·735 (정정·반론)	주식회사 A	한국방송공사	신청인 연예기획사 대표가 모 연예인과 노예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을 해제하려는 해당 연예인에게 폭력을 휘둘렀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직권결정 – 반론	인용 반론 (서울남법 2012가합 12574)	인용 반론 (서울고법 2013나 64559)	**인용 반론 (대법 2014다 62565)**	–
33	2016서울조정 19 (정정)	한국방송공사	한겨레신문 주식회사	신청인 방송사가 특정 프로그램에 대해 비정상적으로 데스킹하고 방송을 연기시켰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불성립	**기각 (서울서법 2016가합 905)**	–	–	–

순번	사건번호 (청구명)	신청인	피신청인	사건개요	위원회 결과	1심	2심	3심	환송후심
34	2015서울조정 4053 · 4054, 4148, 4207 · 4208 (정정 · 손배, 정정)	A	주식회사 씨비에스아이	주식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신청인이 1심 재판부로부터 재판 일정 관련 편의를 제공받았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불성립	**인용 정정 300만 원 (서울남법 2016가합 101724)**	계류 (서울고법 2016나 2079664)	-	-
35	2015서울조정 3863 (반론)	A 복지관	주식회사 법보신문사	신청인 복지관이 계약직 원과의 근로계약을 연장하지 않은 것이 복지관 간부의 여성 차별적 발언을 공론화했기 때문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직권결정 - 반론	**기각 (서울중법 2015가합 26882)**	**기각 (서울고법 2016나 2026981)**	-	-
36	2015서울조정 3883, 3885 (각 반론)	A	한겨레신문 주식회사	신청인의 선친이 친일행적을 보였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직권결정 - 반론	**기각 (서울중법 2015가합 26400)**	-	-	-
37	2016서울조정 644,707,708 (각 정정)	A	주식회사 시사저널사	신청인이 보수단체인 어버이연합에 한일위안부 합의안 체결을 지지하는 집회를 지시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불성립	**기각 (서울서법 2016가합 34168)**	계류 (서울고법 2016나 2075723)	-	-
38	2011서울조정 391 · 392 (정정 · 손배)	A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천안함 사건 관련, 신청인이 "민 · 군 합동조사단이 천안함 흡착물질을 조작했다"는 등의 말을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불성립	인용 정정 (서울중법 2011가합 48785)	기각 (서울고법 2011나 77704)	**기각 (대법 2012다 21553)**	-
39	2016서울조정 409 (정정)	A	한국방송공사	신청인이 개발한 성인오락실 환불기를 불법 사행성 기기라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직권결정 - 기사수정	**기각 (서울남법 2016가합 1336, 106507)**	-	-	-
40	2015서울조정 2332, 2333, 2334 · 2335, 2336 · 2337 (각 정정, 각 정정 · 손배)	주식회사 문화방송	한겨레신문 주식회사	MBC가 경영진이나 보도내용을 비판하는 사원에게는 낮은 등급을 부여하는 등 인사평가에 객관성이 없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직권결정 - 반론	**기각 (서울서법 2015가합 1789)**	**기각 (서울고법 2016나 2012104)**	기각 (대법 2016다 273932)	-
41	2014서울조정 913 (손배)	A	주식회사 이엠디	신청인이 자신을 재림예수라 주장하며 신도들의 재산을 갈취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불성립	인용 500만 원 기사삭제 (부천지원 2014가합 9860	**인용 500만 원 기사삭제 (서울고법 2015나 2060748)**	인용 500만 원 기사삭제 (대법 2016다 269810)	-
42	2016서울조정 942 · 943 (추후 · 손배)	A	한겨레신문 주식회사	신청인이 장물알선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고 보도했으나 검찰 수사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직권결정 - 추후	**인용 추후 (서울서법 2016가합 2338)**	계류 (서울고법 2016나 2084529)	-	-

순번	사건번호 (청구명)	신청인	피신청인	사건개요	위원회 결과	1심	2심	3심	환송후심
43	2015서울조정 2474 (정정)	보건복지부	한겨레신문 주식회사	보건복지부가 대통령의 중동순방에 맞춰 발표한 의약품 수출계약 등의 내용이 근거가 없는 것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직권결정 – 정정 · 반론	기각 (서울서법 2015가합 2270)	**기각 (서울고법 2015나 2070097)**	**기각 (대법 2016다 243412)**	–
44	2015서울조정 2340 (정정)	한국방송공사	주식회사 미디어오늘	KBS 내부에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검증 보도를 막는 세력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불성립	인용 정정 · 반론 (서울남법 2015가합 3175)	**기각 (서울고법 2015나 2074228)**	기각 (대법 2016다 270551)	–
45	2015서울조정 3528 · 3529 · 3530 (정정 · 반론 · 손배)	A 주식회사 외 1명	주식회사 제이티비씨	과일찹쌀떡 프랜차이즈 사업자인 신청인이 가맹점들에게 갑의 횡포를 부린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불성립	**기각 (서울서법 2015가합 38668)**	–	–	–
46	2014서울조정 1536 · 1537 ~ 1566 · 1567 (각 정정 · 손배)	주식회사 한국감정원	주식회사 머니투데이	한국감정원이 제시한 적정가격 수준의 상 · 하한선이 18%의 차이가 나며, '한남더힐' 타당성 조사가 부적절하게 진행되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직권결정 – 정정 · 반론 100만 원	**인용 정정 · 반론 2000만 원 (대구지법 2014가합 9858 등)**	**인용 정정 · 반론 2000만 원 (대구고법 2016나 21125 등)**	계류 (대법 2016다 272342)	–
47	2015서울조정 3069 · 3070 · 3071 (정정 · 반론 · 손배)	A	재단법인 씨비에스	신청인이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하고 한국교회를 어지럽히는 사이비 종교 집단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불성립	**인용 정정 · 반론 800만 원 (서울남법 2015가합 4123)**	계류 (서울고법 2016나 2088743)	–	–
48	2014서울조정 1619 · 1620 (정정 · 손배)	주식회사 문화방송	주식회사 미디어오늘	신청인 방송사가 세월호 사고 유가족 측의 입장을 제대로 전달하고 있지 않는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취하	인용 정정 기사수정 300만 원 (서울남법 2015가합 101543)	**인용 기사수정 300만원 (서울고법 2015나 2073621)**	계류 (대법 2016다 278593)	–
49	2016서울조정 616 (정정)	A	주식회사 에스비에스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 가해자인 신청인이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복역하는 것이 특혜인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불성립	**기각 (서울중법 2016가합 532506)**	계류 (서울고법 2016나 2088750)	–	–
50	2015서울조정 3519 · 3520 (정정 · 손배)	A 외 1명	주식회사 에스비에스	정신병원 의사인 신청인들이 입원이 불필요한 환자를 강제입원 시켰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취하	**인용 800만 원 (서울남법 2015가합 111892)**	화해권고 (서울고법 2017나 2002555)	–	–
51	2016서울조정 438 · 440 (정정 · 손배)	A 주식회사	아시아투데이 주식회사	신청인 회사가 판매한 폭스바겐 차량의 환불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는 블랙컨슈머의 일방적인 주장을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불성립	**기각 (서울남법 2016가합 105948)**	–	–	–

순번	사건번호 (청구명)	신청인	피신청인	사건개요	위원회 결과	1심	2심	3심	환송후심
52	2016서울조정 441 · 443 (정정 · 손배)	A 주식회사	케이비에스 미디어 주식회사	신청인 회사가 판매한 폭스바겐 차량의 환불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는 블랙컨슈머의 일방적인 주장을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취하	**기각 (서울남법 2016가합 106217)**	–	–	–
53	2015대구조정 64, 66 (각 손배)	A	주식회사 한길뉴스	신청인이 다단계 사기 주범인 조희팔로부터 불법자금을 수수한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불성립	**인용 1,500만 원 (김천지원 2016가단 1010)**	계류 (대구지법 2016나 15172)	–	–
54	2015서울조정 3861 · 3862 (정정 · 손배)	주식회사 A	주식회사 오마이뉴스	신청인 회사가 광명동굴 코끼리차의 납품기한을 지키지 않았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불성립	**기각 (서울서법 2016가합 33066)**	화해권고 (서울고법 2017나 2000849)	–	–
55	2014서울조정 8619, 8620 2014서울조정 8996, 8997 (각 손배)	A 외 1명	한국방송공사 외 1명	전양자씨의 검찰출두 건을 보도하면서 동의없이 신청인의 초상을 공개해 피해를 입었다.	불성립	**인용 200만 원 (서울남법 2016가합 101939)**	계류 (서울고법 2016나 2088859)	–	–
56	2016서울조정 613 · 614 (추후 · 손배)	A	주식회사 헤럴드	신청인이 불법 기부금 모금 및 횡령 혐의로 조사 받고 있다고 보도했으나 재판 결과 무죄 판결을 받았다.	직권결정 – 추후	**인용 추후 300만 원 (서울서법 2016가합 1960)**	계류 (서울고법 2017나 966)	–	–
57	2016서울조정 487~495 (각 정정)	A	주식회사 경향신문사	아리랑TV 외주제작사 선정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신청인이 노골적으로 특정업체를 지지하는 발언을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직권결정 – 반론	**인용 정정 1,500만 원 (서울중법 2016가합 6618 등)**	계류 (서울고법 2017나 2000108 등)	–	–
58	2016서울조정 601,602 (각 정정)	주식회사 A	주식회사 경향신문사	신청인 업체가 아리랑TV 방석호 전 사장과의 친분으로 외주제작사에 선정됐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직권결정 – 반론	**인용 정정 (서울중법 2016가합 7369, 7413)**	계류 (서울고법 2017나 2000191)	–	–
59	2016서울조정 11, 12 (각 정정)	A	주식회사 문화일보	신청인이 법안 연계 전략을 꾀해 이견이 없거나 일몰이 적용되는 법안이 처리되지 못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직권결정 – 반론	**기각 (서울중법 2016가합 1781,1798)**	계류 (서울고법 2017나 2005493)	–	–
60	2015서울조정 4076 · 4077 (정정 · 손배)	주식회사 씨비에스 아이	주식회사 천지일보	신청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매체에서 보도한 신천지 신도들의 집단 폭행 사건과 관련한 기사가 오보임을 인정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직권결정 – 정정	**인용 정정 1천만 원 (서울서법 2016가합 32131)**	계류 (서울고법 2017나 2000214)	–	–
61	2014서울조정 8611 (정정)	한국방송공사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KBS 사측과 노동조합이 전국언론노동조합KBS본부를 배제한 채, 노사협의회를 통해 구조조정에 합의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직권결정 – 반론	**기각 (서울남법 2015가합 206)**	**기각 (서울고법 2016나 2032047)**	–	–

순번	사건번호 (청구명)	신청인	피신청인	사건개요	위원회 결과	1심	2심	3심	환송후심
62	2015경기조정 218 · 219, 220 · 221 (각 추후 · 손배)	A	주식회사 경인일보	신청인이 횡령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으나 검찰조사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직권결정 - 추후	**인용 추후 (수원지법 2016가합 373,380)**	계류 (서울고법 2017나 8458)	-	-
63	2014서울조정 1630~1635 (각 정정 · 반론 · 손배)	주식회사 A	한겨레신문 주식회사	신청인 회사가 해외 공장 근로자들의 임금을 제대로 인상하지 않았고, 폭력조직과 결탁하여 근로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불성립	인용 정정 5,000만 원 (서울중법 2014가합 585919, 515900, 515917	**인용 반론 (서울고법 2015나 2060359, 2060366, 2060373)**	계류 (대법 2017다 208843)	-

* 진하게 표시된 부분은 2016년도에 선고된 것임

분석 판결 목록(민사 210건)

번호	선고일자	판결번호	법원명	심급	청구명	사건피고명	결과
1	2016-01-13	2015가합17789	서울중법	1심	추후	(주)한국일보사 외 1명	기각
2	2016-01-13	2013가합16690	서울중법	1심	손배	한국소비자티브이(주) 외 1명	인용
3	2016-01-14	2015카합50504	서울서법	1심	기사삭제	뉴스앤조이	기각
4	2016-01-14	2014가합9858, 2014가합9988(병합), 2014가합9995(병합), 2014가합10001(병합), 2014가합10018(병합), 2014가합10025(병합), 2014가합9902(병합), 2014가합9926(병합), 2014가합9957(병합), 2014가합9889(병합), 2014가합9933(병합), 2014가합9940(병합), 2014가합10032(병합), 2014가합10049(병합), 2014가합9896(병합), 2014가합9865(병합), 2014가합9964(병합), 2014가합9971(병합), 2014가합9872(병합), 2014가합9919(병합)	대구지법	1심	정정/반론/손배	(주)머니투데이	인용
5	2016-01-15	2015나2000654	서울고법	2심	손배	변○○ 외 2명	인용
6	2016-01-15	2015나2020764	서울고법	2심	정정/손배	(주)디지탈성남일보 외 1명	인용
7	2016-01-15	2015나2047523	서울고법	2심	보도금지	(주)디지탈성남일보	인용
8	2016-01-20	2015가합3129	서울서법	1심	정정/손배	안○○	기각
9	2016-01-20	2015가합1789	서울서법	1심	정정/반론/손배	한겨레신문(주)	기각
10	2016-01-22	2015나2037519, 2015나2037526(병합)	서울고법	2심	손배/기사삭제	(주)조선방송	기각
11	2016-01-22	2015가합509981	서울중법	1심	정정/손배	(주)씨비에스아이 외 11명	기각
12	2016-01-27	2014가합566864	서울중법	1심	정정/손배	(주)참언론 외 3명	기각
13	2016-01-27	2015가합513706	서울중법	1심	손배	(주)조선방송 외 6명	인용
14	2016-01-29	2015나2033432	서울고법	2심	정정/반론/손배	(재)씨비에스 외 2명	인용
15	2016-01-29	2015나2034251	서울고법	2심	정정/반론/손배	국민일보(주) 외 2명	인용
16	2016-01-29	2015나2032736	서울고법	2심	정정/반론/손배	국민일보(주) 외 2명	인용
17	2016-01-29	2015나2032729	서울고법	2심	정정/반론/손배	국민일보(주) 외 2명	인용

번호	선고일자	판결번호	법원명	심급	청구명	사건피고명	결과
18	2016-01-29	2015나20690	서울고법	2심	정정/손배	(주)수도권일보사	인용
19	2016-01-29	2014가단217765	서울남법	1심	손배	(주)채널에이 외 1명	기각
20	2016-02-03	2015나5822	창원지법	2심	손배	정○○	기각
21	2016-02-03	2015다241303	대법	3심	정정/손배	(주)매일방송	인용
22	2016-02-04	2015가합108094	서울남법	1심	정정/손배/기사삭제	국민일보(주) 외 1명	기각
23	2016-02-04	2015가단5090423	서울중법	1심	손배	(주)인천뉴스 외 1명	인용
24	2016-02-15	2016카합50033	서울서법	1심	보도금지	(주)문화방송	기각
25	2016-02-16	2015가소454454	인천지법	1심	손배	인천일보(주) 외 3명	인용
26	2016-02-17	2015가합30985	서울서법	1심	정정/손배	(주)문화방송	인용
27	2016-02-18	2015나21846	서울고법	2심 (환송후심)	정정/반론/손배	(주)문화방송	인용
28	2016-02-18	2015다66298	대법	3심	정정/손배	(주)강남신문	인용
29	2016-03-11	2015가소255243	서울중법	1심	손배	(주)조선일보사	기각
30	2016-03-22	2015가단112179	부천지원	1심	손배	오비에스 경인티브이(주)	기각
31	2016-03-23	2015가합560269	서울중법	1심	정정/손배	(주)이코노믹포스트 외 2명	인용
32	2016-03-23	2015가합37085	서울서법	1심	정정/손배	(주)시사저널사 외 1명	기각
33	2016-03-24	2015다74381	대법	3심	정정/손배	(주)강원신문사 외 1명	인용
34	2016-03-24	2015다252778	대법	3심	정정/손배/기사삭제	한국방송공사 외 3명	기각
35	2016-03-24	2015가합22356	청주지법	1심	정정/손배	(주)현대에이치씨엔충북방송	기각
36	2016-03-24	2015다250437	대법	3심	손배	(주)법보신문사 외 1명	기각
37	2016-03-25	2016카합20101	서울남법	1심	보도금지	(주)에스비에스	기각
38	2016-03-30	2015가합527521	서울중법	1심	정정/손배	중앙일보시사미디어(주) 외 1명	기각
39	2016-03-31	2015가합66819	수원지법	1심	정정/손배	(사)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외 1명	기각
40	2016-03-31	2015가합10539	여주지원	1심	정정/손배	(재)씨비에스 외 2명	기각
41	2016-04-01	2015가단227546	서울서법	1심	손배	김○○	인용
42	2016-04-05	2014가단5298640	서울중법	1심	손배	박○○ 외 1명	기각
43	2016-04-06	2015가합38132	서울서법	1심	정정/손배	(주)오마이뉴스	기각
44	2016-04-06	2015가합21047	서울중법	1심	손배	(주)조선일보사 외 3명	기각
45	2016-04-08	2015나64376	서울중법	2심	정정/손배	김○○ 외 2명	기각
46	2016-04-12	2015가단23838	광주지법	1심	손배	최○○외 1인	기각
47	2016-04-14	2015나32102	서울중법	2심	손배	회생채무자 (주)한국일보사의 관리인 고○○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한국일보사 외 1인	인용
48	2016-04-15	2015다252969	대법	3심	정정/손배	(주)문화방송 외 2명	인용

번호	선고일자	판결번호	법원명	심급	청구명	사건피고명	결과
49	2016-04-18	2016다14386	대법	3심	정정/손배	(주)수도권일보사	인용
50	2016-04-20	2015가합566434	서울중법	1심	정정/손배	(주)중앙일보	기각
51	2016-04-20	2015가합25575	서울중법	1심	정정/손배	(주)매일방송	인용
52	2016-04-20	2015가합26882	서울중법	1심	반론	(주)법보신문사	기각
53	2016-04-21	2015나34387	서울서법	2심	손배	류○○ 외 1명	기각
54	2016-04-27	2015가합550040	서울중법	1심	손배	대한민국 외 5명	기각
55	2016-04-27	2015가합39111	서울서법	1심	손배/기사삭제	(주)뉴스토마토 외 3명	기각
56	2016-04-29	2015나2019986	서울고법	2심	정정	(주)씨비에스아이	인용
57	2016-04-29	2015나22542	서울고법	2심	손배	(주)조선방송	인용
58	2016-04-29	2015나2046919	서울고법	2심	정정/손배/기사삭제	(주)천지일보	인용
59	2016-05-10	2016카합216	서울서법	1심	기사삭제/보도금지	(주)시사저널사	기각
60	2016-05-11	2014가합572616	서울중법	1심	손배	(주)채널에이 외 1명	기각
61	2016-05-11	2015나2066	대구고법	2심	손배/기사삭제	(주)제이티비씨	기각
62	2016-05-11	2015가단48782	서울남법	1심	손배	오○○	인용
63	2016-05-12	2016다206529, 2016다206536(병합)	대법	3심	정정/손배	(주)채널에이	기각
64	2016-05-18	2016가합269	서울중법	1심	정정	(주)경향신문사	인용
65	2016-05-18	2014가합548088	서울중법	1심	정정/손배	(주)디지틀조선일보 외 3명	인용
66	2016-05-19	2015가합206	서울남법	1심	정정/손배	전국언론노동조합KBS본부 외 2명	기각
67	2016-05-19	2015가합107480	서울남법	1심	정정/손배/기사삭제	(주)미디어오늘 외 1명	기각
68	2016-05-20	2016라20102	서울고법	2심	기사삭제	뉴스앤조이	기각
69	2016-05-24	2013다34013	대법	3심	손배	(주)조선일보사	기각 (파기)
70	2016-05-25	2015가합565257	서울중법	1심	정정/손배	(주)뉴스1 외 2명	인용
71	2016-05-25	2015나34424	창원지법	2심	손배	문○○	기각
72	2016-05-26	2016다206925	대법	3심	정정/손배	디지탈성남일보 외 1인	인용
73	2016-05-27	2015다33489	대법	3심	손배	(주)뉴스한국	인용
74	2016-05-27	2016다207850(본소), 2016다207867(병합), 2016다207874(반소)	대법	3심	손배/기사삭제	오비에스티브이(주)	인용
75	2016-05-27	2015나2052860	서울고법	2심	손배	(주)오마이뉴스 외 1명	인용
76	2016-05-27	2015나2054248	서울고법	2심	손배	이데일리(주) 외 1명	인용
77	2016-05-31	2015가단20021	부산지법	1심	손배	유○○ 외 1명	기각
78	2016-06-02	2015가단24653	서울동법	1심	손배	(주)문화방송 외 2명	기각
79	2016-06-03	2016나11812	서울중법	2심	손배	(주)인천뉴스 외 1명	인용

번호	선고일자	판결번호	법원명	심급	청구명	사건피고명	결과
80	2016-06-03	2015나27073	서울고법	2심	반론	(재)온누리선교재단	기각
81	2016-06-03	2015나26865	서울고법	2심	반론	(재)씨비에스 외 1명	인용
82	2016-06-08	2016가합30135	서울서법	1심	정정/손배/기사삭제	(주)미디어오늘 외 5명	기각
83	2016-06-14	2015가소287236	서울동법	1심	손배	(주)매일방송	기각
84	2016-06-16	2015가단35490	서울중법	1심	손배	(주)문화일보 외 2명	기각
85	2016-06-16	2015가단30623	대전지법	1심	손배	(주)디트뉴스이십사 외 1명	기각
86	2016-06-22	2015가합38651	서울서법	1심	정정/손배	(주)에스비에스 외 1명	기각
87	2016-06-22	2015가합36440	서울서법	1심	정정/손배	(주)문화방송 외 5명	기각
88	2016-06-23	2016다215769	대법	3심	정정/반론/손배	국민일보(주) 외 2명	인용
89	2016-06-23	2016다215745	대법	3심	정정/반론/손배	국민일보(주) 외 2명	인용
90	2016-06-23	2016다213862	대법	3심	정정/반론/손배	(재)씨비에스 외 2명	인용
91	2016-06-24	2014가단5295276	서울중법	1심	손배	(주)뉴스타운 외 2명	인용
92	2016-06-30	2016가합100578	서울남법	1심	정정/손배	(주)씨비에스아이 외 1명	인용
93	2016-07-06	2015가합104743	대전지법	1심	정정	(사)한국기자협회	기각
94	2016-07-06	2015가합104767	대전지법	1심	정정	(주)굿모닝충청	기각
95	2016-07-06	2015가합104804	대전지법	1심	정정	(주)아주뉴스코퍼레이션	기각
96	2016-07-06	2015나2039805	서울고법	2심	추후/손배	(주)뉴시스 외 1명	인용
97	2016-07-07	2015가합3601	서울남법	1심	손배	(주)에스비에스 외 3명	기각
98	2016-07-12	2016가단15394	서울중법	1심	손배	최○○ 외 2명	기각
99	2016-07-13	2016가합35	서울서법	1심	정정	(주)문화방송	기각
100	2016-07-13	2016가합221, 2016가합252, 2016가합245, 2016가합238(병합)	서울중법	1심	정정/손배	(주)서광출판문화원	기각
101	2016-07-14	2013다99515	대법	3심	정정/반론/손배	(주)문화방송	기각
102	2016-07-14	2016다215752	대법	3심	정정/반론/손배	국민일보(주) 외 2명	인용
103	2016-07-14	2016카합50124	서울서법	1심	기사삭제/보도금지	강○○ 외 2명	기각
104	2016-07-20	2014가합548118	서울중법	1심	정정/손배/기사삭제	(주)조선방송 외 1명	인용
105	2016-07-20	2016가합500622	서울중법	1심	정정/반론/손배/기사삭제	(주)뉴시스 외 1명	인용
106	2016-07-21	2015나1104	광주고법(전주)	2심	정정/손배	전주문화방송(주)	기각
107	2016-07-21	2015가단5324874	서울중법	1심	손배	한국방송공사 외 2명	기각
108	2016-07-21	2015나61834	서울중법	2심	정정/손배	(주)중앙일보	인용
109	2016-07-22	2015나2040096	서울고법	2심	정정/손배	한국방송공사 외 1명	기각
110	2016-07-22	2015나2070097	서울고법	2심	정정/반론	한겨레신문(주)	기각

번호	선고일자	판결번호	법원명	심급	청구명	사건피고명	결과
111	2016-08-10	2015가합570228	서울중법	1심	정정/손배/기사삭제	한겨레신문(주)	기각
112	2016-08-12	2015가소6734942	서울중법	1심	손배	(주)채널에이 외 1명	기각
113	2016-08-17	2015가합2537	서울동법	1심	정정/손배/기사삭제	(주)참언론 외 1명	인용
114	2016-08-17	2014가단249525	서울서법	1심	손배	권○○ 외 3명	인용
115	2016-08-17	2015가합4238	서울서법	1심	정정	(주)시사저널사	인용
116	2016-08-17	2015가단5277893	서울중법	1심	손배	김○○	인용
117	2016-08-18	2013가합1434	서울남법	1심	정정/손배	한국방송공사	기각
118	2016-08-18	2016가합101588	서울남법	1심	정정/손배	(주)미디어오늘 외 1명	기각
119	2016-08-18	2015가합1648, 2015가합1655(병합)	제주지법	1심	정정/손배/기사삭제	한국방송공사 외 1명	인용
120	2016-08-18	2016다223579	대법	3심	정정/손배/기사삭제	(주)천지일보	인용
121	2016-08-19	2015나31485	서울고법	2심	손배	(주)광명저널 외 2명	인용
122	2016-08-22	2015가합72705	고양지원	1심	손배	(주)고양신문 외 4명	인용
123	2016-08-24	2016가합32483	서울서법	1심	정정/손배	e뉴조	기각
124	2016-08-25	2016다225100	대법	3심	정정	(주)씨비에스아이	인용
125	2016-08-25	2014가단7939	진주지원	1심	손배	(주)경남도민신문	기각
126	2016-08-25	2014가단9423	진주지원	1심	손배	(주)경남도민신문	기각
127	2016-08-26	2016가합2043	서울중법	1심	정정/손배	(주)조선경제아이	인용
128	2016-09-02	2015나2066609	서울고법	2심	정정/손배	(주)미디어오늘 외 1명	기각
129	2016-09-02	2015나2069240	서울고법	2심	손배	(주)채널에이 외 1명	인용
130	2016-09-06	2015가단56654	군산지원	1심	손배	대한민국 외 2명	기각
131	2016-09-06	2015가단2488	경주지원	1심	손배	정○○ 외 1명	인용
132	2016-09-08	2015가합6709	서울남법	1심	정정/손배	전국언론노동조합KBS본부 외 3명	인용
133	2016-09-09	2015나2054712	서울고법	2심	정정/손배	안○○ 외 2명	인용
134	2016-09-09	2015나2063747	서울고법	2심	정정/손배	(주)헬코미디어 외 4명	기각
135	2016-09-09	2016나2000002	서울고법	2심	정정/손배	(주)매일방송	인용
136	2016-09-09	2016나2012111	서울고법	2심	정정/손배	안○○	기각
137	2016-09-09	2016나2004820	서울고법	2심	정정/손배	안○○ 외 1명	기각
138	2016-09-21	2016가합504532	서울중법	1심	손배	(주)뉴스파인더 외 4명	인용
139	2016-09-21	2016가합541685	서울중법	1심	정정/손배	(주)매경닷컴	인용
140	2016-09-21	2015가합102383	서울동법	1심	정정/반론/손배	국민일보(주) 외 2명	인용
141	2016-09-22	2015가단14873	천안지원	1심	손배	(주)조선뉴스프레스 외 1명	기각
142	2016-09-22	2015나34899	서울서법	2심	손배	(주)문화방송 외 2명	기각

번호	선고일자	판결번호	법원명	심급	청구명	사건피고명	결과
143	2016-09-28	2015가합542384, 2015가합552916(병합)	서울중법	1심	정정	케이비에스미디어(주) 외 1명	기각
144	2016-09-28	2016가합5578	서울중법	1심	반론/손배	(주)법보신문사	인용
145	2016-09-29	2016가합105160	서울남법	1심	정정/손배	(주)씨비에스아이	인용
146	2016-09-30	2014다62565	대법	3심	정정/반론	한국방송공사	인용
147	2016-09-30	2016다29906	대법	3심	반론	(재)씨비에스 외 1명	인용
148	2016-10-10	2016마5418	대법	3심	기사삭제	뉴스앤조이	기각
149	2016-10-12	2016가합905	서울서법	1심	정정/반론	한겨레신문(주)	기각
150	2016-10-12	2014가합568037	서울중법	1심	손배	(주)스포츠서울 외 2명	기각
151	2016-10-14	2014나2784	광주고법	2심	손배	(주)뉴스투데이 외 1명	인용
152	2016-10-14	2016나36293	서울중법	2심 (환송후심)	손배/기사삭제	(주)조선일보사	기각
153	2016-10-14	2016라20884	서울고법	2심	기사삭제/보도금지	강○○ 외 2명	기각
154	2016-10-18	2014가단249532	서울서법	1심	손배	권○○ 외 1명	인용
155	2016-10-19	2015가합38026	서울서법	1심	반론/손배	쿠키미디어(주)	기각
156	2016-10-20	2016가합101724	서울남법	1심	정정/손배	(재)씨비에스 외 2명	인용
157	2016-10-21	2016나2026981	서울고법	2심	반론	(주)법보신문사	기각
158	2016-10-21	2015나59619	서울중법	2심 (환송후심)	손배	(주)미디어실크에이치 외 1명	인용
159	2016-10-26	2015가합26400 2015가합26818(병합)	서울중법	1심	반론	한겨레신문(주)	기각
160	2016-10-26	2015가합599	서울북법	1심	정정/손배	한겨레신문(주)	기각
161	2016-10-26	2016가합34168	서울서법	1심	정정/손배	(주)시사저널사	기각
162	2016-10-27	2012다21553	대법	3심	정정/손배	(주)조선일보사 외 3명	기각
163	2016-10-27	2016가합1336, 2016가합106507 (병합)	서울남법	1심	정정/손배	한국방송공사 외 1명	기각
164	2016-11-01	2016가단207895	대전지법	1심	손배	(주)연합뉴스 외 3명	기각
165	2016-11-03	2016가합105061	서울남법	1심	손배	(주)더팩트 외 3명	기각
166	2016-11-04	2016나2012104	서울고법	2심	정정/반론/손배	한겨레신문(주)	기각
167	2016-11-04	2015나2060748	서울고법	2심	손배/기사삭제	(주)이엠디 외 1명	인용
168	2016-11-09	2016가합2338	서울서법	1심	추후/손배	한겨레신문(주)	인용
169	2016-11-10	2016나2022774	서울고법	2심 (환송후심)	정정/손배	(주)문화방송 외 2명	인용
170	2016-11-10	2016다243412	대법	3심	정정/반론	한겨레신문(주)	기각
171	2016-11-10	2014다216249	대법	3심	손배	(주)중앙일보 외 6명	인용
172	2016-11-11	2015나2074228	서울고법	2심	정정/반론	(주)미디어오늘	기각

번호	선고일자	판결번호	법원명	심급	청구명	사건피고명	결과
173	2016-11-11	2016나2026356	서울고법	2심	손배	김○○	기각
174	2016-11-16	2015가합38668	서울서법	1심	정정/반론/손배	(주)제이티비씨	기각
175	2016-11-16	2016가합526945	서울중법	1심	정정/손배	(주)경남신문사 외 2명	인용
176	2016-11-16	2016나21125, 2016나21132(병합), 2016나21149(병합), 2016나21156(병합), 2016나21163(병합), 2016나21170(병합), 2016나21187(병합), 2016나21194(병합), 2016나21200(병합), 2016나21217(병합), 2016나21224(병합), 2016나21231(병합), 2016나21248(병합), 2016나21255(병합), 2016나21262(병합), 2016나21279(병합), 2016나21286(병합), 2016나21293(병합), 2016나21309(병합), 2016나21316(병합)	대구고법	2심	정정/반론/손배	(주)머니투데이	인용
177	2016-11-17	2015가합4123	서울남법	1심	정정/반론/손배	(재)씨비에스 외 3명	인용
178	2016-11-17	2015가합69382	수원지법	1심	정정/손배/기사삭제	(주)수원일보사 외 4명	기각
179	2016-11-17	2015나102755	광주고법(전주)	2심	정정/손배	(주)전주방송	인용
180	2016-11-18	2015나2056985	서울고법	2심	손배	이○○ 외 3명	인용
181	2016-11-18	2015나2073621	서울고법	2심	정정/손배/기사삭제	(주)미디어오늘 외 6명	인용
182	2016-11-18	2016나2010313	서울고법	2심	정정/손배/기사삭제	정○○ 외 3명	기각
183	2016-11-23	2016가합532506	서울중법	1심	정정/손배	(주)에스비에스	기각
184	2016-11-23	2015나310337	대구지법	2심	손배	국민일보(주) 외 1명	기각
185	2016-11-24	2015가합111892	서울남법	1심	정정/손배	(주)에스비에스	인용
186	2016-11-24	2016가합100202	서울남법	1심	정정/손배	(주)복지연합 외 2명	인용
187	2016-11-24	2016가합105948	서울남법	1심	정정/손배	아시아투데이(주)	기각
188	2016-11-24	2016가합106217	서울남법	1심	정정/손배	한국방송공사	기각
189	2016-11-24	2016가합101373	서울남법	1심	반론/손배	(주)에스비에스	기각
190	2016-11-25	2014가단229072(본소), 2014가단66400(반소)	서울남법	1심	손배	변○○	기각
191	2016-11-28	2015가단5267490	서울중법	1심	손배	강○○	인용
192	2016-11-30	2016가단1010	김천지원	1심	손배	(주)한길뉴스 외 1명	인용
193	2016-11-30	2016가합33066	서울서법	1심	정정/손배/기사삭제	(주)오마이뉴스 외 1명	기각

번호	선고일자	판결번호	법원명	심급	청구명	사건피고명	결과
194	2016-12-01	2016가단22727	수원지법	1심	손배	(주)인천일보	인용
195	2016-12-01	2016가합101939	서울남법	1심	손배	한국방송공사	인용
196	2016-12-02	2016나20168	서울중법	2심	손배	(주)조선일보사	기각
197	2016-12-07	2016가합1960	서울서법	1심	추후/손배	(주)헤럴드	인용
198	2016-12-09	2015나2047769	서울고법	2심	정정/손배/기사삭제	한국방송공사 외 1명	기각
199	2016-12-09	2016가합6618, 2016가합6625(병합), 2016가합6632(병합), 2016가합6649(병합), 2016가합6656(병합), 2016가합6663(병합), 2016가합6670(병합), 2016가합6687(병합), 2016가합6694(병합)	서울중법	1심	정정/손배	(주)경향신문사	인용
200	2016-12-09	2016가합7369, 2016가합7413(병합)	서울중법	1심	정정	(주)경향신문사	인용
201	2016-12-12	2016가합20336	서울남법	1심	방송금지	한국방송공사	인용
202	2016-12-13	2015가단124320	대구지법	1심	손배	이○○	인용
203	2016-12-14	2016가합1781, 2016가합1798 (병합)	서울중법	1심	정정	(주)문화일보	기각
204	2016-12-14	2016가합32131	서울서법	1심	정정/손배	(주)천지일보	인용
205	2016-12-15	2015가단5210753	서울중법	1심	손배	(주)조선방송 외 5명	기각
206	2016-12-16	2016가합537426	서울중법	1심	정정/손배	(주)채널에이	인용
207	2016-12-16	2016나2032047	서울고법	2심	정정/손배	전국언론노동조합KBS본부 외 2명	기각
208	2016-12-22	2016가합373, 2016가합380(병합)	수원지법	1심	정정/추후/손배/기사삭제	(주)경인일보	인용
209	2016-12-23	2015나2060359, 2015나2060373(병합), 2015나2060366(병합)	서울고법	2심	정정/반론/손배	한겨레신문(주) 외 4명	인용
210	2016-12-23	2016나2044866	서울고법	2심	정정/손배/기사삭제	(주)미디어오늘 외 5명	기각

제2부
언론 관련 판결 사례

제1장 손해배상청구

1. 명예훼손 사례
2. 초상권 침해 사례
3. 재산권 침해 사례

제2장 정정 · 반론 · 추후보도청구

제3장 기사삭제청구 등

제1장
손해배상청구

명예훼손 사례

인천지방법원 2016. 2. 16. 선고 2015가소454454 판결

소속 기관이 언론조정을 통해 언론사와 부제소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직원들의 명예훼손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원고 : A(선정당사자)
- 피고 : 인천일보 주식회사 외 3명

[사실관계]

피고들은 2015년 2월 12일자 및 같은 달 13일자, 16일자, 17일자 〈인천일보〉 및 〈인터넷 인천일보〉에 「업체 봐주나 … 警 수사 의혹 투성이」 및 「○○경찰서의 어설픈 불량쇠고기 수사」 등의 제목으로 원고들 소속 인천○○경찰서가 불량쇠고기 유통 사건을 조사하면서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다. 이에 원고들 소속 경찰서는 2015년 3월 6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하여 같은 달 19일 피고와 정정보도 게재 및 부제소를 내용으로 합의하여 조정성립됐다(2015경기조정40, 2015경기조정41(병합)). 이후 원고들은 집단명예훼손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심리 결과, 1심 법원은 먼저 경찰서와 피고 간 부제소 합의가 원고들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원고들이 속한 팀에서 이 사건 수사를 담당한다는 점을 주변인들이 충분히 알 수 있어, 허위보도로 인한 집단명예훼손을 인정하여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지급을 명하였다. 이에 피고들이 항소하였고, 2심 법원이 화해권고결정을 하였는데 양 측이 이의하지 않아 종결됐다(인천지방법원 2016나52449).

[판결요지]

□ 단체가 행한 부제소 합의에 소속 직원들도 구속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 보도와 관련하여 당사자 간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정보도를 하기로 하고 별도의 민형사상 책임은 묻지 않기로 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된 바 있으므로 기판력 내지 부제소합의에 반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조정은 인천○○경찰서와 피고 인천일보와 사이에 성립된 것으로서 원고들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판결문

사 건	2015가소454454 손해배상(기)
원 고	A(선정당사자)
피 고	1. B 2. C 3. D 4. 인천일보 주식회사
변 론 종 결	2015. 12. 18.
판 결 선 고	2016. 2. 16.

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선정자 E, F에게 각 800,000원, 원고(선정당사자) A, 선정자 G, H, I, J, K, L, M에게 각 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17.부터 2016. 2. 16.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80%는 피고들이, 나머지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선정자 E에게 1,000,000원, 선정자 F에게 950,000원,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A, 선정자 I에게 750,000원, 선정자 G, J, K에게 각 700,000원, 선정자 H, M에게 각 650,000원, 선정자 L에게 각 5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17.부터 2015. 4. 8.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 보도와 관련하여 당사자 간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정보도를 하기로 하고 별도의 민형사상 책임은 묻지 않기로 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된 바 있으므로 기판력 내지 부제소합의에 반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2, 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조정은 인천○○경찰서와 피고 인천일보와 사이에 성립된 것으로서 원고와 선정자들(이하 원고들이라 한다)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명예훼손으로 인한 불법행위의 판단 기준

신문이나 잡지의 어떤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불법행위가 되는지의 여부는 일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와의 연관하에서 기사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사가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다가 당해 기사의 배경이 된 사회적 흐름 속에서 당해 표현이 가지는 의미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특히 보도의 내용이 수사기관이나 감사기관에 의하여 조사가 진행중인 사실에 관한 것일 경우, 일반 독자들로서는 보도된 비위혐의사실의 진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별다른 방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언론기관이 가지는 권위와 그에 대한 신뢰에 기하여 보도내용을 그대로 진실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고, 신문보도가 가지는 광범위하고도 신속한 전파력 등으로 인하여 그 보도내용의 진실 여하를 불문하고 그러한 보도 자체만으로도 피조사자로 거론된 자나 그 주변 인물들이 입게 되는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조사혐의사실을 보도하는 언론기관으로서는 그 보도에 앞서 혐의사실의 진실성을 뒷받침할 적절하고도 충분한 취재를 하여야 하고, 기사의 작성 및 보도시에도 당해 기사가 주는 전체적인 인상으로 인하여 일반 독자들이 사실을 오해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 내용이나 표현방법 등에 대하여도 주의를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29379 판결 등 참조).

3. 사실의 허위성

각 증거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2015. 2. 12.자 피고 인천일보의 기사 중 '납품업체를 조사해 수사기법이 노출된 지 7일이 지나서야 음식점을 수색했다', '(주)N 대표를 정작 수사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다', '관할구청인 ○○구청과도 거리를 둔 채 단독으로 일을 처리하고 있다'는 등의 내용과 같은 달 13., 16., 17.자의 유사한 보도 중 유사한 사실을 기재한 부분은 허위인 것으로 인정된다(또한 '업체 봐주나…警 수사 의혹 투성이'라는 제목의 위 기사에서 '수사 중인 경찰이 오히려 업체에게 유리하게 해줬다는 각종 의혹이 제기됐다'는 등으로 원고들이 해당 업체에게 유리하도록 부당하게 사건처리를 하고 있는 듯한 표현을 하였으나 이 또한 근거가 없다고 인정된다.).

4.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위법성 조각 여부

언론·출판을 통해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라는 것이 증명되면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고, 또한 그 진실성이 증명되지 아니하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되,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어디까지나 명예훼손을 한 신문 등 언론매체에 있다. 그리고 그 표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적시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5다58823 판결,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8다1892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사에서 적시된 사실들은 원고들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각종 의혹을 제기하면서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서 모두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임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각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에 관하여는 주관적인 의혹을 별다른 확인도 거치지 않은 채 기사로 작성한 점에 비추어 피고들이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나.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 성립 여부

피고들이 작성한 기사는 '인천○○경찰서'로만 표시했을 뿐, 원고들의 이름을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집단 내 개별구성원인 원고들이 피해자로서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인천○○경찰서는 총 409명 정원에 9개 과로 구성되어 있고, 그중 수사과는 총 43명 정원에 수사지원팀, 지능팀, 경제팀, 사이버팀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구성원 수가 제한적이며 범위가 명확

하다. 또한 원고들이 속한 지능팀에서 이 사건 수사를 담당하고 있다는 점은 주변인들이나 관심 있는 이들이라면 기사를 보고서도 충분히 알 수 있다고 보여지므로(무관한 타인들보다 오히려 주변 동료나 지인들, 가족들로부터 신문기사로 인해 의혹과 오해를 받는 고통이 더 크다), 원고들이 명예훼손의 피해자로서 특정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5. (소)결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기사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 B, C, D는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인천일보 주식회사는 위 피고들의 사용자로서 공동하여 원고의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이 사건 기사의 내용과 표현방법, 게재 형식, 피고 인천일보가 읽히는 범위, 이 사건 보도 이후의 상황, 원고들의 인원수, 나이, 경력, 수사팀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책임 정도 등의 사정을 두루 고려하면,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선정자 E, F에게 각 800,000원, 원고 A, 선정자 G, H, I, J, K, L, M에게 각 5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6. 결론

피고들은 공동하여(부진정연대) 손해배상금으로 선정자 E, F에게 각 800,000원, 원고 A, 선정자 G, H, I, J, K, L, M에게 각 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5. 2. 17.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6. 2. 16.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별지〉 선정자명단 생략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3. 23. 선고 2015가합560269 판결

취재원 발언의 신빙성 유무에 대해 추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하지 않고 보도했다면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 원고 : 주식회사 A
- 피고 : 주식회사 이코노믹포스트 외 2명

[사실관계]

피고는 2015년 6월 18일 인터넷 〈시사주간〉에 「[시사주간TV/단독] 주식회사 A, D 회장, 야욕의 끝은 어디까지인가 ①」 및 같은 달 22일자 인터넷 〈이코노믹포스트〉에 「A 계란생산 안 한다더니, 하고 있었다」라는 각 제목으로 원고가 식용란을 낳는 산란계를 키우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이에 원고는 식용란이 아닌 종란만을 생산하고 있다며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심리 결과, 재판부는 이 사건 보도가 허위임을 인정하고 정정보도 게재를 명하였고, 보도 당시 피고가 원고의 계열사 직원 1인의 진술 외 다른 추가적인 사실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던바, 위 보도 내용을 진실로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손해배상 700만 원을 판결하였다. 이후 피고들이 항소하였고, 2심 법원이 화해권고결정을 하자 원 · 피고 모두 이의하지 않아 종결됐다(서울고등법원 2016나2028161).

[판결요지]

□ **취재원의 발언을 근거로 한 허위보도의 상당성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사 등의 주요한 내용과 보도 목적은 원고가 식용란을 낳는 산란계를 키우고 있는지를 밝히는 것인데, 보도 당시 이를 뒷받침할 증거로는 원고의 계열사 직원과 전화 통화한 내용이 유일하였다. 피고 담당 기자는 원고가 식용란을 직접 생산하지는 않는다고 이미 밝힌 바 있으므로, 위 직원이 말한 '산란계'가 식용란을 낳는 닭을 말하는 것인지 그 의미에 대해 정확하게 확인하거나, 다른 추가적인 자료를 통해 위 발언의 신빙성 유무에 대해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판결문

사 건	2015가합560269 정정보도 등
원 고	주식회사 A
피 고	1. B 2. 주식회사 이코노믹포스트 3. C
변 론 종 결	2016. 2. 24.
판 결 선 고	2016. 3. 23.

주 문

1. 가. 피고 주식회사 이코노믹포스트는 이 사건 판결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피고 이코노믹포스트가 운영하는 시사주간(www.sisaweekly.com)과 이코노믹포스트(www.economicpost.co.kr)의 각 인터넷 홈페이지 첫 화면 중앙 중단에 별지1 기재 정정보도문을 제목은 20급 활자크기의 명조체, 내용은 10급 활자크기의 명조체로 48시간 동안 게재하라.
   나. 만약 피고 주식회사 이코노믹포스트가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 주식회사 이코노믹포스트는 원고에게 위 기간 만료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1일 1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7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7.부터 2016. 3. 2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1. 피고 B, 피고 주식회사 이코노믹포스트는 이 사건 판결확정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시사주간(www.sisaweekly.com)과 이코노믹포스트(www.economicpost.co.kr)의 각 인터넷 홈페이지 첫 화면 중앙 중단에 별지1 기재 정정보도문을 제목은 20급 활자크기의 명조체, 내용은 10급 활자크기의 명조체로 1회 게재하라. 만약 피고 B, 피고 주식회사 이코노믹포스트가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피고 B, 피고 이코노믹포스트는 위 기간 만료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1일 1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양계, 축산물, 가공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축산전문회사이고, D는 원고의 대표이사 중 1인이다. 한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E는 익산시 ○○면 ○○로 ○○에 본점을 둔 회사로서, D가 위 회사 지분의 78%를 보유하고 있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F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E에서 분할하여 설립된 회사이다.
2) 피고 주식회사 이코노믹포스트는 시사주간과 이코노믹포스트라는 시사종합주간지를 발행하고, 같은 이름의 웹사이트에서 인터넷신문사를 운영하는 회사이고, 피고 B는 시사주간을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고 C는 시사주간, 이코노믹포스트 소속 기자이다.

나. 보도 배경

1) 원고는 2013년경 산란농가단체인 영농조합법인 G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G 소속 농가로부터 식용란을 공급받아 원고의 브랜드인 □□□ 상표를 부착하여 유통점에 납품하는 계란유통사업에 진출하였다.
2) 원고가 2013. 12.경 △△마트와 계란납품계약을 체결하고 식용란 납품을 개시하자, 사단법인 대한○○협회는 원고가 향후 산란농가를 직영화하여 계란사업 수직계열화를 시도할 것이라는 우려에서 원고의 계란유통사업 진출을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3) 이와 같은 갈등 상황에서, △△마트가 원고가 납품한 계란의 판매중단 조치를 취하자, 원고는 2014. 4.경 사단법인 대한○○협회를 상대로 업무방해금지의 소를 제기하여 관련 민사소송이 계속 중인 상태이다.

다. 피고들의 보도 내용

1) 피고 C는 2015. 6. 18. 10:57경 시사주간 인터넷 홈페이지에 '[시사주간TV/단독] 주식회사 A, D 회장, 야욕의 끝은 어디까지인가 ①'라는 제목과 '영세 축산 농민 밥그릇까지 야금야금 먹어 들어간다 비난 거세'라는 부제목으로, 2015. 6. 22. 10:13경 이코노믹포스트 인터넷 홈페이지에 'A 계란생산 안 한다더니, 하고 있었다'라는 제목과 'D 회장, 부도덕한 야욕에 비난 쏟아져'라는 부제목으로 아래 2)항 기재와 같은 기사를 보도하였다.
2) '최근 A는 국내 양계농가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대형마트에 계란을 납품하기 직전 대한○○협회가 실력 행사에 들어가면서 대형마트가 납품철회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A 측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대한○○협회를 고소, 항소심에서도 패소하는 등 망신살이 뻗치며 그룹

반열에 오를 날이 머지않은 회사가 푼돈벌이에 연연한다는 비난을 받은 바 있다.
업계관계자들은 “A가 계란유통사업에서 미련을 떨치지는 못할 것”이라는 반응이다.
이에 대해 A측은 계란을 농가로부터 납품받아 유통만 하는 것이지 계란을 직접 생산하는 것은 아니라고 둘러대고 있다.
하지만 시사주간이 들여다 본 주식회사 A, D 회장의 진짜 속내는 다른 곳에 있었다.
익산을 시작으로 김제, 정읍에 이르기까지 A 소유의 직영 양계농장을 운영하고, 축사 안에서는 계란을 낳는 산란닭부터 시작해 육계, 오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가축을 사육하고 있었다.
언제부터 A가 직접 계란을 생산하기 시작했던 것일까!
시사주간TV가 주식회사 A, D 회장의 끝없는 야욕을 해부했다’

3) 위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 한다)와 함께 올려진 취재 동영상(이하 ‘이 사건 취재 동영상’이라 한다)의 내용은 별지2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용어의 용법 정리

가. 농촌진흥청이 발간한 농업용어 사전에는, 산란계란 ‘계란 생산을 목적으로 사육되는 닭’으로 정의되고, 종계란 ‘능력이 우수하여 병아리 생산을 위한 종란을 생산하는 닭’으로 정의되며, 종란이란 ‘암탉에 수탉을 교배하여 생산된 알 중 부화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되어 있다.

나. 1) 축산법은 제2조 제4호에서, 축산업이란 종축업 · 부화업 · 정액등처리업 및 가축사육업을 말하고, 같은 조 제5호에서, 종축업이란 종축을 사육하고, 그 종축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번식용 가축 또는 씨알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업을 말하며, 같은 조 제8호에서, 가축사육업이란 가축을 사육하여 판매하거나 젖 · 알 · 꿀을 생산하는 업을 말한다고 규정하여 양자를 구별하고 있다.

2) 축산법상 축산업 허가 및 등록기준의 세부사항을 규율한 축산법 시행령 규정은, 종축업의 하부 개념으로 종계업을, 가축사육업의 하부 개념으로 닭(산란계, 육계), 오리 사육업을 들고 있고, 종계업에는 종란 보관시설의 설치 등을 요구하고, 닭(산란계, 육계) 사육업에는 계란을 보관할 수 있는 온도 관리가 가능한 시설의 설치 등을 요구하고 있다.

다. 위 가.항 및 나.항 기재 관련 용어의 용법을 종합해보면, 종계와 산란계, 종계가 낳은 알인 종란과 산란계가 낳은 알인 계란이 각 구별되어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결국 계란은 종란을 포섭하는 상위 개념이 아니라 종란과는 구별되는 개념인 식용란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산란계는 계란, 즉, ‘식용란을 낳는 닭’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정정보도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 등이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해당 언론보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언론사 등에게 그 언론보도 등의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언론사 등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은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정정보도청구는 위와 같이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한 경우에 허용되므로, 그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려면 원고가 정정보도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원보도가 사실적 주장에 관한 것인지 단순한 의견표명인지를 먼저 가려보아야 한다. 여기에서 사실적 주장이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명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증거에 의하여 그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을 말한다.

나. 적시된 사실

피고들 스스로도 이 사건 보도 경위에 대해 '산란계도 사육하고 있다는 원고 계열사 직원 H의 말을 듣고 기사를 쓰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위 H가 관련 형사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당시 산란계라 한 것은 삼계탕용 종란을 낳는 닭을 두고 그렇게 말한 것'이라고 해명하였던 것에 대해, 부화용 알을 낳는 닭을 산란계라 하는 것은 일반적인 산란계의 개념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서, H가 언급한 산란계란 것은 결국 식용란을 낳는 닭을 의미한 것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원고가 식용란 이외의 다른 알을 낳는 닭을 키우고 있다는 사실은 기사로서 아무런 가치가 없는 점, 그 외 피고들이 이 사건 기사 및 취재 동영상을 통해 원고를 비난하였던 전체적인 취지, 흐름, 보도 배경 등을 종합적으로 해석하여 보면, 피고들은 '원고가 식용란을 낳는 산란계를 키우고 있다'고 보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적시된 사실의 허위성 여부

갑 제5, 8 내지 10, 13, 14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보면, 원고의 계열사는 식용란이 아닌 종란만을 생산하고 있고, 계열사들이 일부 판매하고 있는 계란은 위 종계가 낳은 알 중 부화에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앞서 본 피고들의 사실적 주장은 허위라고 볼 수 있다.

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F는 익산시, 정읍시, 김제시, 전북 고창군 및 부안군 등지에서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위 각 농장에서는 농장별로 육계, 육용 종계, 삼계용 종계, 종오리 등으로 분류된 가축을 사육하고 있으며, 특히 전북 고창군 △△면에 소재한 I농장에서는 삼계용 종계가 낳은 종란을 삼계용 병아리로 부화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다.

② 피고 C가 직접 찾아가 취재한 농장은 위 농장 중 익산시 ○○면에 소재한 'J농장'인데 위 농장에서는 육계와 종계만이 사육되고 있다.

③ 소외 H는 자신이 피고 C와의 전화 통화에서 회사에서 키우고 있다는 것으로 언급한 산란계는

식용란을 낳는 닭이 아닌 I농장에서 사육하고 있는 '삼계용 종란을 낳는 닭'을 의미한 것이었다고 밝히고 있다(갑 제9호증).

④ 종계 농장에서는 종란을 생산하여 선별하는 과정에서 부화 기준이나 규격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알들이 불가피하게 발생하게 되고, 종계에서 생산된 알이라도 부화에 사용되지 않았고, 식용란의 요건에 부합하면 식용란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F에서는 위와 같은 경위로 종계에서 나온 알 중 일부를 식용란으로 판매하고 있고, 같은 계열사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E도 같다.

⑤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E의 2014년도 식용란 매출은 205,145,730원으로서 위 회사의 2014년도 총매출액(18,395,972,243원)의 1.11% 정도에 불과하다.

라. 소결론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보도로 말미암아 원고는 자신이 발표한 내용과는 달리 실제로는 식용란을 직접 생산해 계란생산·유통사업의 수직계열화를 시도하는 기업으로 오해를 받게 되는 등 기업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어 명예가 훼손되는 피해를 보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주식회사 이코노믹포스트는 언론중재법 제14조에 따라 정정보도를 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 주식회사 이코노믹포스트가 게재할 정정보도문의 내용과 크기 등에 관하여 보건대, 법원은 사안에 따라 적절한 반론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정정보도의 내용과 위치 및 방식 등을 정할 수 있는바(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0다10857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사 및 취재 동영상의 내용이나 분량, 표현방법 게재 위치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정정보도문의 글자 크기, 게재 방법 등을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하고, 위 의무이행에 대한 강제로서, 위 의무의 불이행 시 피고 주식회사 이코노믹포스트는 원고에게 의무의 이행완료일까지 1일 1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간접강제금의 지급을 명하기로 한다(원고는 피고 B에 대하여도 정정보도를 구하나, 피고 B는 피고 주식회사 이코노믹포스트가 발행하는 시사주간의 운영자로서, 언론중재법 제14조에 따라 정정보도 의무를 부담하는 언론사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 B에 대한 정정보도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피고 C가 원고가 식용란을 낳는 산란계를 키우고 있다는 취지의 허위의 기사 등을 작성하고, 피고 B, 피고 주식회사 이코노믹포스트는 이를 시사주간 및 이코노믹포트스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함으로써 원고의 신용과 명예를 저하시켰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피고들이 한 허위 내용의 보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들의 보도 내용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 진실한 사실이고, 설령 진실한 사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들은 소외 H의 발언 내용을 토대로 보도한 것이

어서, 보도된 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의 보도 행위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항변한다.

나. 허위 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의 성립 여부

피고들이 이 사건 기사 및 취재 동영상에서 원고가 식용란을 낳는 산란계를 키우면서 직접 식용란을 생산하고 있다고 보도하였고, 위 보도 내용이 허위임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바, 위와 같은 허위의 보도로 인해 원고가 직접 식용란을 생산하여 계란유통사업의 수직계열화를 이루려 하는 등 영세 축산농가에 피해를 주는 기업인 것과 같은 인상을 줌으로써 원고의 신용과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할 것이다.

다. 위법성 조각 여부

1) 관련 법리

민사상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명이 있으면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고, 또한 그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경우 언론매체의 보도를 통한 명예훼손에 있어서 행위자가 보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보도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10208 판결,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다35199 판결 등 참조).

2) 먼저, 이 사건 기사 및 취재 동영상의 공익성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기사 및 취재 동영상은 계란유통사업에 진출한 원고가 직접 식용란을 생산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한 내용으로서, 이는 대기업인 원고에 대한 견제를 통해 계란생산·유통사업에 관련된 영세 축산농과 대기업 사이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그 내용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3) 피고들의 보도 내용이 진실이 아님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기사 등을 게재함에 있어 피고들에게 그 보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들에게 원고가 식용란을 낳는 산란계를 키우고 있다는 점을 진실로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① 피고들은, 원고가 계란유통사업에 진출하면서 계란생산·유통사업을 수직계열화하는 것을 우려한 대한○○협회 등의 반대로 △△마트와 같은 유통점에 계란을 납품하지 못하게 된 사정 등을 알고 이를 보도한 바 있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원고 회사에서는 계란 생산 농가

로부터 식용란을 납품받아 유통하는 것일 뿐 직접 식용란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해명을 한 사실도 알고 있었다.

② 피고 C는 이 사건 기사 및 취재 동영상에서 위와 같은 원고의 해명과는 달리 원고가 실제로는 식용란을 낳는 산란계를 키우면서 식용란을 생산하고 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였고,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진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③ 이 사건 기사 등의 주요한 내용과 보도 목적은 위와 같이 원고가 식용란을 낳는 산란계를 키우고 있는지를 밝히는 것인데, 위 보도 당시 이를 뒷받침할 증거로는 소외 H와 전화 통화한 내용이 유일하였다.

④ 소외 H는 F농장에서는 어떠한 종류의 가축을 사육하고 있냐는 피고 C의 전화 질문에 '육계, 종계, 산란계, 오리 등을 키우고 있다'고 답변함으로써 마치 F농장에서 식용란을 낳는 산란계도 키우고 있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소지를 제공한 것은 사실이나, 위 전화 통화는 피고 C가 기자라는 자신의 신분이나 취재 목적을 밝히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것으로서, 소외 H로서는 피고 C가 던진 질문의 취지, 즉 '식용란을 낳는 산란계를 키우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답변한 것으로 보인다.

⑤ 피고 C는 원고가 식용란을 직접 생산하지는 않는다고 이미 밝힌 바 있으므로, 소외 H가 말한 '산란계'가 식용란을 낳는 닭을 말하는 것인지 그 의미에 대해 정확하게 확인하거나, 다른 추가적인 자료를 통해 위 발언의 신빙성 유무에 대해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⑥ 이 사건 기사 등은 신속한 보도를 요하는 신문이 아닌 주간지에 실린 기사이고, 피고들은 언론에 종사하는 자들이므로, 보도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당사자 본인을 통해 확인하는 등의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사전에 다하여야 함이 마땅함에도 피고들은 이와 같은 확인 작업을 전혀 거치지 아니하였다.

라. 손해배상의 범위

이 사건 기사 등의 게재로 인하여 원고의 신용과 명예가 훼손되는 무형의 손해가 발생하였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그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사 등의 제목과 내용, 표현형식, 피고들이 이 사건 기사 등의 사실 확인을 위해 취한 노력의 정도, 이 사건 기사 등의 게재로 인하여 원고에게 미치는 영향,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금을 7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 C는 이 사건 기사 등의 작성자로서, 피고 B, 피고 이코노믹포스트는 위 기사 등이 게재된 언론사의 운영자로서 각자 원고에게 위자료 7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11. 7.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3.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1〉 정정보도문

당사가 운영하는 '시사주간' 인터넷 홈페이지에 2015. 6. 18. 10:57경 '[시사주간TV/단독] 주식회사 A, D 회장, 야욕의 끝은 어디까지인가 ①' 라는 제목과 '영세 축산 농민 밥그릇까지 야금야금 먹어들어간다 비난 거세' 라는 부제목 하에 보도한 기사와, 당사가 운영하는 '이코노믹포스트' 인터넷 홈페이지에 2015. 6. 22. 10:13경 'A, 계란생산 안한다더니 하고 있었다'라는 제목과 'D 회장 부도덕한 야욕에 비난 쏟아져'라는 부제목으로 보도한 기사와 관련하여, A가 식용란 산란계를 키우면서 계란을 생산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으므로 이를 정정합니다.

〈별지 2〉 대상기사 생략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다25296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나2022774 판결(확정)

시청자들이 '자료화면'의 출연자를 피의자로 지목 · 암시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개연성이 크다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

- 원고(상 고 인) : A
- 피고(피상고인) : 주식회사 문화방송 외 2명

[사실관계]

피고들은 2014년 9월 5일자 〈리얼스토리 눈〉 프로그램에서 「E에게 50억 내놔, 연예인은 왜 협박당하나?」라는 제목으로 E에 대한 협박 및 관련 고소사건을 보도하였고, 협박 피의자들의 신원에 관한 부분에서 이 사건과 무관한 원고가 출연한 프로그램 영상을 자료 영상으로 삽입했다. 이 때, 화면 좌측 상단에 '자료화면'임을 자막 표시했으나 중앙 하단에 '또 다른 피의자는 모델 ○양'이라고 표시한 보조 자막보다 훨씬 작았다. 이에 원고는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며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1심 법원은 이 사건 보도의 허위성을 인정하여 정정보도 게재와 손해배상 2,000만 원 지급을 명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가합40121). 이에 원 · 피고 모두 항소하였고, 2심 법원은 협박 피의자 중 1명이 원고라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피고들의 항소를 인용하여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5나2030761). 이후 원고가 상고하였다.
심리 결과, 대법원은 이 사건 보도와 원고의 개별적 연관성이 있고, 이 사건 방송은 일반 시청자의 관점에서 관련 고소사건의 피의자 중 1명이 원고라는 점을 암시하는 사실적 주장 또는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환송 후 원심법원은 대법원의 환송 취지에 따라 원 ·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고(2016나2022774), 양 당사자가 재상고하지 않아 확정됐다.

[판결요지]

□ **개별적 연관성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방송보도에서 이 사건 모델 영상 바로 전에 삽입된 이 사건 패션쇼 영상을 통해 '○○○○' 최종회의 전체적인 무대 구조가 나타났고, 이 사건 모델 영상은 등장인물인 원고에 대한 모자이크 처리에도 불구하고 얼굴 윤곽, 의상의 종류와 색, 걷는 자세, 머리스타일의 구분이 가능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다 참가자들의 얼굴, 의상, 걷는 자세, 스타일 등에 주안점을 두고 순위를 매겨 우승자를 가리는 패션모델 오디션 프로그램의 특성을 감안해 보면, 적어도 원고의 주변 사람들 또는 '○○○○' 최종회의 제작진, 참가자, 시청자들은 이 사건 방송보도에 삽입된 이 사건 모델 영상 속 등장인물이 원고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 사실적 주장 또는 사실의 적시 여부에 대한 판단

일련의 방송 내용을 보는 일반 시청자로서는, 직전에 나온 걸그룹 가수의 영상 자료가 피의자 중 1명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패션쇼 영상과 이 사건 모델 영상도 나머지 1명의 피의자에 관한 것으로 받아들일 개연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비록 그 화면이 방영되는 동안 왼쪽 윗부분에 '자료화면'이라는 표시가 있었지만 동시에 그 화면 아래쪽 가운데 부분에 큰 글자로 표시되어 있던 '또 다른 피의자는 모델 ○양'이라는 자막이 훨씬 눈에 잘 띌 뿐 아니라, '자료화면'이라는 문구 자체로도 그 화면에 나타난 인물과는 상관없는 일반적인 모델 선발대회 영상이라기보다는 당해 보도의 주제인 관련 고소사건에서 아직 신원이 공개되지 않은 특정 피의자 '모델 ○양'에 관한 과거 영상자료라고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인다.

판결문

사 건	2015다252969 정정보도청구 등
원고, 상고인	A
피고, 피상고인	1. 주식회사 문화방송 2. 주식회사 B 3. C
변 론 종 결	서울고등법원 2015. 11. 20. 선고 2015나2030761 판결
판 결 선 고	2016. 4. 15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언론보도가 증거에 의하여 그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실관계의 주장(이하 '사실적 주장'이라 한다)을 다룬 경우에 그것이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명예훼손을 당한 피해자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이라 한다) 제14조에 의하여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고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 중 정정보도청구를 청구할 수 있는 피해자는 해당 보도내용에서 지명이 되거나 그 보도내용과

개별적인 연관성이 있음이 명백히 인정되어야 한다. 또한 정정보도청구는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한 경우에 허용되므로 그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려면 정정보도의 대상인 원보도가 사실적 주장에 관한 것인지 단순한 의견표명인지를 먼저 가려보아야 한다. 양자를 구별할 때에는 원보도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 시청자가 보통의 주의로 보도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 방법과 문맥의 의미,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및 시청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 등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9. 2. 선고 2009다5264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한편 언론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이 인정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하고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피해자의 특정은, 사람의 성명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기사나 영상 그 자체만으로는 피해자를 인식하기 어렵게 되어 있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하면 그 보도가 나타내는 당사자가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으면 된다. 그리고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란 반드시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할 것은 아니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충분하다. 또한 텔레비전 방송보도의 경우에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지 여부는 그 보도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 시청자가 보통의 주의로 방송보도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보도내용의 전체적인 흐름, 화면의 구성방식,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와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보도내용이 시청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그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다35199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는 2013. 11. 7. 방송된 케이블 텔레비전 채널의 패션모델 오디션 프로그램인 '○○○○' 최종회에서 우승하여 대중들에게 이름을 알렸고 현재 국외에서 패션모델로 활동하고 있다.

(2) 피고 주식회사 문화방송은 2014. 9. 5. 시사보도 프로그램인 '리얼스토리 눈'의 방송시간에 피고 주식회사 B를 통해 제작한 'E에게 50억 원 내놔, 연예인은 왜 협박당하나?'라는 제목의 방송보도(이하 '이 사건 방송보도'라 한다)를 방영하였고, 피고 C는 주식회사 B의 연출자로서 이 사건 방송보도의 제작담당자이다.

(3) 이 사건 방송보도는 19분 30초 정도의 분량으로 유명연예인인 E가 사석에서 만난 두 명의 여성으로부터 50억 원을 주지 않으면 동석하였을 당시 촬영한 E의 음담패설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받았다고 고소한 사건(이하 '관련 고소사건'이라고 한다)을 다룬 프로그램이다.

(4) 이 사건 방송보도의 내용은 시간순서에 따라 시청자들의 관심을 유도하는 도입 부분, E의 활동 및 결혼에 관한 부분, E의 고소내용과 경찰수사 상황에 관한 부분, 관련 고소사건 피의자들의 신원에 관한 부분, 관련 고소사건에서 언급된 동영상에 관한 부분, 관련 고소사건 피

의자들의 구속에 관한 부분, E의 고소 이유에 관한 부분, 다른 연예인의 유사 사례에 관한 부분, 연예인 사생활 유포 협박사건의 원인에 관한 부분, 연예인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배려가 필요하다고 마무리하는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5) 이 사건 방송보도는 남녀진행자들의 영상 또는 음성, 취재 영상, 자료 영상, 자료 사진, 진행 보조 자막, 인터뷰 자막, 배경음악 등으로 구성·편집되어 있다.

(6) 이 사건 방송보도 중 관련 고소사건 피의자들의 신원에 관한 부분은 6분 19초부터 7분 22초까지 이어지는데, 구체적인 보도의 내용과 구성은 아래와 같다.

① 6분 19초부터 25초까지 "E씨를 협박한 두 명의 여성 과연 누구일까요"라는 남자진행자의 음성이 나오고, 그때의 화면은 E의 자료 사진을 배경으로 오른쪽에 빨간색 물음표가 삽입된 검은색 여성 이미지 2개가 위아래로 나란히 위치하고 가운데 아랫부분에 'E를 협박한 두 명의 여성은 누구?'라는 진행 보조 자막이 표시되었다.

② 6분 26초부터 34초까지 화면에 D가 속한 걸그룹의 뮤직비디오 자료 영상이 나오는 상태에서 남자진행자가 "그런데 협박 여성 중 1명이 걸그룹 멤버로 활동 중인 D씨로 알려져 더욱 충격을 주었습니다"라고 하면서 화면 가운데 아랫부분에 '그들 중 한 명은 ㄱ 걸그룹 멤버 D'라는 진행 보조 자막이 표시되었다.

③ 6분 35초부터 화면이 연예부 기자에 대한 D 관련 인터뷰 취재 영상으로 변경되고 6분 50초까지 인터뷰 음성이 계속되는데 그 동안 화면은 잠시 D의 자료 사진으로 변경되었다가 다시 위 인터뷰 취재 영상으로 돌아왔다.

④ 6분 51초부터 7분 15초까지 화면에 D의 가수활동 자료 사진과 D가 출연한 드라마 자료 영상이 차례로 나타나며 "2년차 신인가수이자 연기자로 한 케이블 드라마에서 반항아 이미지를 보여주었던 D씨 안정적인 연기를 선보여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라는 남자진행자의 음성이 나온다.

⑤ 7분 16초부터 22초까지 관련 고소사건의 또 다른 피의자의 신원에 관한 방송보도가 나오는데, 그 부분에 '○○○○' 최종회 자료 영상이 삽입되어 있다.

⑥ 이 부분 방송에 삽입된 영상은, 7분 16초부터 17초까지는 개인이 누구인지 식별되지는 않는 4명의 모델들이 무대 위에서 걷고 있는 패션쇼 장면 전체를 촬영한 영상(이하 '이 사건 패션쇼 영상'이라 한다)이고, 7분 18초부터 22초까지는 하늘색 상의, 갈색 재킷, 갈색 바지를 입고 머리카락을 뒤로 묶은 모습으로 무대 앞으로 걸어 나왔다가 방향을 돌려 되돌아가는 원고를 정면 등 여러 방향에서 촬영한 영상(이하 '이 사건 모델 영상'이라 한다)으로 되어 있다. 그 중 이 사건 모델 영상에 있는 원고의 모습은 일부 모자이크 처리가 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 정도가 약하여 대략적인 얼굴 윤곽, 머리스타일, 의상의 종류와 색, 걷는 자세를 쉽게 구분할 수 있었다.

⑦ 이 부분 방송의 음성은, 이 사건 패션쇼 영상이 사라지고 이 사건 모델 영상이 시작되는 무렵부터 끝나는 장면까지 남자진행자가 "또 다른 한 명은 모델이라고 알려졌지만 정확한

정보는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라고 말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⑧ 마지막으로 이 부분 방송에 삽입된 자막 구성은, 전체적으로 화면의 왼쪽 윗부분에 빨간색 직사각형 안의 하얀색 글씨로 '자료화면'이라는 자막이 표시되고, 위와 같은 남자진행자의 음성이 계속되는 동안에는 화면의 가운데 아랫부분에 '또 다른 피의자는 모델 ○양'이라는 진행 보조 자막이 추가되었는데, 위 '자료화면'이라는 글씨의 크기는 진행 보조 자막의 글씨보다 훨씬 작았다.

(7) 그 후 이어진 이 사건 방송보도의 화면에서 다른 피의자 1명은 '모델 ○양'으로 지칭되었고 D의 사진과 함께 모델 포즈를 취하고 있는 검은색 여성 이미지가 3회 나타났다.

(8) 이 사건 방송보도가 방영되기 전인 2014. 9. 2.부터 여러 언론에서 관련 고소사건의 피의자들 2명에 관한 보도가 있었는데, 그 내용은 D에게 초점이 맞추어졌고, 나머지 피의자에 관하여는 언론사별로 '25세 모델 이모씨', '25세 모델 L양', '20대 여성 모델 이씨', '24세 모델 이모씨' 정도로만 언급되었을 뿐이다.

(9) 한편 원고는 S씨이고 관련 고소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으며 이 사건 방송보도가 방영될 당시 고등학생이었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1) 먼저 원고가 이 사건 방송보도 중 이 사건 모델 영상이 삽입된 부분의 내용과 개별적인 연관성을 가지거나 위 영상에서 특정이 되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모델 영상은 '○○○○' 최종회에서 무대를 걷는 원고의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 모자이크 처리가 이루어진 후 원고의 성명, 영상의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상태로 이 사건 방송보도에 삽입되었다. 그러나 이 사건 방송보도에서 이 사건 모델 영상 바로 전에 삽입된 이 사건 패션쇼 영상을 통해 '○○○○' 최종회의 전체적인 무대 구조가 나타났고, 이 사건 모델 영상은 등장인물인 원고에 대한 모자이크 처리에도 불구하고 얼굴 윤곽, 의상의 종류와 색, 걷는 자세, 머리스타일의 구분이 가능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다 참가자들의 얼굴, 의상, 걷는 자세, 스타일 등에 주안점을 두고 순위를 매겨 우승자를 가리는 패션모델 오디션 프로그램의 특성을 감안해 보면, 적어도 원고의 주변 사람들 또는 '○○○○' 최종회의 제작진, 참가자, 시청자들은 이 사건 방송보도에 삽입된 이 사건 모델 영상 속 등장인물이 원고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방송보도 중 이 사건 모델 영상이 삽입된 부분의 내용과 개별적인 연관성을 가지거나 그 영상에서 특정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방송보도 중 이 사건 모델 영상이 삽입된 부분의 표현이 원고에 관하여 진실하지 아니한 사실적 주장 또는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방송보도에서는 관련 고소사건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피의자는 직업이 모델이라는 사실을 밝히면서 이 사건 모델 영상이 나오는 동안 계속하여 화면 왼쪽 윗부분에 '자료화

면'이라는 자막을 표시하여 원고를 직접적으로 지목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 사건 모델 영상이 나오기 직전 부분의 방송내용을 보면, 관련 고소사건의 피의자 중 1명이 걸그룹 소속 가수 겸 연기자인 D라고 밝히면서 그 걸그룹의 뮤직비디오 자료 영상, D의 가수 활동 자료 사진, D가 출연한 드라마 자료 영상 등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나머지 피의자 1명의 신원에 관한 보도를 하면서, 이 사건 패션쇼 영상과 이 사건 모델 영상이 나타나고 그 장면에서 진행자는 계속하여 또 다른 피의자 한 명은 모델이라고 하고, 화면 중앙 하단에 '또 다른 피의자는 모델 ○양'이라는 자막이 표시되고 있어서, 이러한 일련의 방송 내용을 보는 일반 시청자로서는, 직전에 나온 걸그룹 가수의 영상 자료가 피의자 중 1명이 D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패션쇼 영상과 이 사건 모델 영상도 나머지 1명의 피의자에 관한 것으로 받아들일 개연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비록 그 화면이 방영되는 동안 왼쪽 윗부분에 '자료화면'이라는 표시가 있었지만 동시에 그 화면 아래쪽 가운데 부분에 큰 글자로 표시되어 있던 '또 다른 피의자는 모델 ○양'이라는 자막이 훨씬 눈에 잘 뜨일 뿐 아니라, '자료화면'이라는 문구 자체로도 그 화면에 나타난 인물과는 상관없는 일반적인 모델 선발대회 영상이라기보다는 당해 보도의 주제인 관련 고소사건에서 아직 신원이 공개되지 않은 특정 피의자 '모델 ○양'에 관한 과거 영상자료라고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모델 영상은 보도내용과 관련이 없다'는 등 당해 보도와 무관한 자료화면이라는 표시도 없었던 점, 이 사건 방송보도는 취재를 기초로 사실관계를 심층적으로 다루는 시사보도 프로그램인 점, 이 사건 방송보도 이전의 언론보도에서는 주로 D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고, 나머지 1명의 피의자에 관하여는 언론사별로 일치되지 않은 나이와 성씨 정도만 언급되었을 뿐이었던 점 등을 함께 감안해 보면, 일반 시청자들은 이 사건 모델 영상을 관련 고소사건의 나머지 피의자 1명을 지목·암시하는 영상으로 받아들였을 개연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방송보도 중 이 사건 모델 영상이 삽입된 부분의 표현은 일반 시청자가 보통의 주의로 방송보도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할 때, 관련 고소사건의 피의자들 중 신원이 공개되지 않은 피의자 1명의 직업이 모델이라는 사실을 주장 또는 적시함에 그치지 않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방법으로 관련 고소사건과 전혀 상관이 없는 원고가 그 피의자 중 1명이라는 점을 암시하는 사실적 주장 또는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국 이 사건 방송보도 중 이 사건 모델 영상이 삽입된 부분의 표현은 그 보도내용과 개별적인 연관성을 가지는 원고에 관한 진실하지 아니한 사실적 주장 또는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이 사건 방송보도에서 E를 협박한 여성 2명 중 D 외의 다른 여성 1명이 원고라는 사실을 적시하거나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원고의 정정보도청구 및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모두 배척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언론중재법 제14조에 의한 정정보도청구권의 성립요건

및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성립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환송후 판결문

사 건	2016나2022774 정정보도청구 등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A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1. 주식회사 문화방송 2. 주식회사 B 3. C
제 1 심 판 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5. 15. 선고 2014가합40121 판결
환 송 전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 11. 20. 선고 2015나2030761 판결
환 송 판 결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다252969 판결
변 론 종 결	2016. 10. 6.
판 결 선 고	2016. 11. 10.

주 문

1. 원고 및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 중 1/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1. 피고 주식회사 문화방송(이하 '피고 문화방송'이라 한다)은 이 판결 확정 후 최초로 방송되는 '리얼스토리 눈' 프로그램의 첫머리에, 통상의 프로그램 자막과 같은 글자 크기로 화면 상단에 '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을 계속 표시하고, 그 아래 화면에 별지 정정보도문을 시청자들이 그 내용을

충분히 알아볼 수 있을 만큼 자막으로 표시하면서 진행자로 하여금 원 프로그램의 진행과 같은 속도로 낭독하게 하라(원고는 당초 「피고 문화방송은 위 제1항과 동시에 MBC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imbc.com' 중 'TV', '시사/교양', '리얼스토리 눈', '다시보기' 부분에 입력된 2014. 9. 5.자 "122회 E에게 '50억 원 내놔' 연예인은 왜 협박당하나?" 하단에 '정정보도문'의 제목을 게재하고 별지 정정보도문이 표시되게 하라」는 소도 함께 제기하였다가, 환송 전 당심에서 이 부분 소를 취하하였다).

2. 피고 문화방송이 제1항 기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피고 문화방송은 원고에게 그 기한 다음 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1일 각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원 고 :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들 :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는 2013. 11. 7. 방송된 케이블 텔레비전 채널의 패션모델 오디션 프로그램인 '○○○○' 최종회에서 우승하여 대중들에게 이름을 알렸고 현재 국외에서 패션모델로 활동하고 있다.

나. 피고 문화방송은 2014. 9. 5. 시사보도 프로그램인 '리얼스토리 눈'의 방송시간에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를 통해 제작한 'E에게 50억 원 내놔, 연예인은 왜 협박당하나?'라는 제목의 방송보도(이하 '이 사건 방송보도'라 한다)를 방영하였고, 피고 C는 피고 B의 연출자로서 이 사건 방송보도의 제작담당자이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이 사건 방송보도에서는 음담패설을 나눈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영화배우 E를 협박하면서 50

억 원을 요구한 여성 2명 중 1명이 '모델 ○양'이라고 하면서, 원고가 출연한 다른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영상을 방영하였다. 이는 원고가 E를 협박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 문화방송에 대하여 정정보도를 구하고, 피고들에 대하여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한다.

나. 피고들

이 사건 방송보도에서는 E를 협박한 여성 2명 중 1명이 '모델 ○양'이라고 하였을 뿐 그 '모델 ○양'이 원고라고 한 바 없으므로,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다.

3. 판 단

가. 관련 법리

언론보도가 증거에 의하여 그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실관계의 주장(이하 '사실적 주장'이라 한다)을 다룬 경우에 그것이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명예훼손을 당한 피해자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이라 한다) 제14조에 의하여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고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 중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는 피해자는 해당 보도내용에서 지명이 되거나 그 보도내용과 개별적인 연관성이 있음이 명백히 인정되어야 한다. 또한 정정보도청구는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한 경우에 허용되므로 그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려면 정정보도의 대상인 원보도가 사실적 주장에 관한 것인지 단순한 의견표명인지를 먼저 가려보아야 한다. 양자를 구별할 때에는 원보도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 시청자가 보통의 주의로 보도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 방법과 문맥의 의미,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및 시청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 등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9. 2. 선고 2009다5264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한편 언론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이 인정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하고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피해자의 특정은, 사람의 성명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기사나 영상 그 자체만으로는 피해자를 인식하기 어렵게 되어 있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하면 그 보도가 나타내는 당사자가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으면 된다. 그리고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란 반드시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할 것은 아니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충분하다. 또한 텔레비전 방송보도의 경우에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지 여부는 그 보도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 시청자가 보통의 주의로 방송보도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보도내용의 전체적인 흐름, 화면의 구성방식,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와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보도내용이 시청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그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다35199 판결 등 참조).

나. 인정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5, 6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방송보도는 19분 30초 정도의 분량으로 유명 연예인인 E가 사석에서 만난 두 명의 여성으로부터 50억 원을 주지 않으면 동석하였을 당시 촬영한 E의 음담패설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받았다고 고소한 사건(이하 '관련 고소사건'이라 한다)을 다룬 프로그램이다.

2) 이 사건 방송보도의 내용은 시간순서에 따라 시청자들의 관심을 유도하는 도입 부분, E의 활동 및 결혼에 관한 부분, E의 고소내용과 경찰수사 상황에 관한 부분, 관련 고소사건 피의자들의 신원에 관한 부분, 관련 고소사건에서 언급된 동영상에 관한 부분, 관련 고소사건 피의자들의 구속에 관한 부분, E의 고소 이유에 관한 부분, 다른 연예인의 유사 사례에 관한 부분, 연예인 사생활 유포 협박사건의 원인에 관한 부분, 연예인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배려가 필요하다고 마무리하는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3) 이 사건 방송보도는 남녀 진행자들의 영상 또는 음성, 취재 영상, 자료 영상, 자료 사진, 진행 보조 자막, 인터뷰 자막, 배경음악 등으로 구성·편집되어 있다.

4) 이 사건 방송보도 중 관련 고소사건 피의자들의 신원에 관한 부분은 6분 19초부터 7분 22초까지 이어지는데, 구체적인 보도의 내용과 구성은 아래와 같다.

① 6분 19초부터 25초까지 "E씨를 협박한 두 명의 여성 과연 누구일까요."라는 남자진행자의 음성이 나오고, 그때의 화면은 E의 자료 사진을 배경으로 오른쪽에 빨간색 물음표가 삽입된 검은색 여성 이미지 2개가 위아래로 나란히 위치하고 가운데 아랫부분에 'E를 협박한 두 명의 여성은 누구?'라는 진행 보조 자막이 표시되었다.

② 6분 26초부터 34초까지 화면에 D가 속한 걸그룹의 뮤직비디오 자료 영상이 나오는 상태에서 남자진행자가 "그런데 협박 여성 중 1명이 걸그룹 멤버로 활동 중인 D씨로 알려져 더욱 충격을 주었습니다."라고 하면서 화면 가운데 아랫부분에 '그들 중 한 명은 ㄱ 걸그룹 멤버 D'라는 진행 보조 자막이 표시되었다.

③ 6분 35초부터 화면이 연예부 기자에 대한 D 관련 인터뷰 취재 영상으로 변경되고 6분 50초까지 인터뷰 음성이 계속되는데 그 동안 화면은 잠시 D의 자료 사진으로 변경되었다가 다시 위 인터뷰 취재 영상으로 돌아왔다.

④ 6분 51초부터 7분 15초까지 화면에 D의 가수활동 자료 사진과 D가 출연한 드라마 자료 영상이 차례로 나타나며 "2년차 신인가수이자 연기자로 한 케이블 드라마에서 반항아 이미지를 보여주었던 D씨 안정적인 연기를 선보여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라는 남자진행자의 음성이 나온다.

⑤ 7분 16초부터 22초까지 관련 고소사건의 또 다른 피의자의 신원에 관한 방송보도가 나오

는데, 그 부분에 '○○○○' 최종회 자료 영상이 삽입되어 있다.

⑥ 이 부분 방송에 삽입된 영상은, 7분 16초부터 17초까지는 개인이 누구인지 식별되지는 않는 4명의 모델들이 무대 위에서 걷고 있는 패션쇼 장면 전체를 촬영한 영상(이하 '이 사건 패션쇼 영상'이라 한다)이고, 7분 18초부터 22초까지는 하늘색 상의, 갈색 재킷, 갈색 바지를 입고 머리카락을 뒤로 묶은 모습으로 무대 앞으로 걸어 나왔다가 방향을 돌려 되돌아가는 원고를 정면 등 여러 방향에서 촬영한 영상(이하 '이 사건 모델 영상'이라 한다)으로 되어 있다. 그 중 이 사건 모델 영상에 있는 원고의 모습은 일부 모자이크 처리가 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 정도가 약하여 대략적인 얼굴 윤곽, 머리스타일, 의상의 종류와 색, 걷는 자세를 쉽게 구분할 수 있다.

⑦ 이 부분 방송의 음성은, 이 사건 패션쇼 영상이 사라지고 이 사건 모델 영상이 시작되는 무렵부터 끝나는 장면까지 남자진행자가 "또 다른 한 명은 모델이라고 알려졌지만 정확한 정보는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라고 말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⑧ 마지막으로 이 부분 방송에 삽입된 자막 구성은, 전체적으로 화면의 왼쪽 윗부분에 빨간색 직사각형 안의 하얀색 글씨로 '자료화면'이라는 자막이 표시되고, 위와 같은 남자진행자의 음성이 계속되는 동안에는 화면의 가운데 아랫부분에 '또 다른 피의자는 모델 ○양'이라는 진행 보조 자막이 추가되었는데, 위 '자료화면'이라는 글씨의 크기는 진행 보조 자막의 글씨보다 훨씬 작았다.

5) 그 후 이어진 이 사건 방송보도의 화면에서 다른 피의자 1명은 '모델 ○양'으로 지칭되었고 D의 사진과 함께 모델 포즈를 취하고 있는 검은색 여성 이미지가 3회 나타났다.

6) 이 사건 방송보도가 방영되기 전인 2014. 9. 2.부터 여러 언론에서 관련 고소사건의 피의자들 2명에 관한 보도가 있었는데, 그 내용은 D에게 초점이 맞추어졌고, 나머지 피의자에 관하여는 언론사별로 '25세 모델 이모씨', '25세 모델 L양', '20대 여성 모델 이씨', '24세 모델 이모씨' 정도로만 언급되었을 뿐이다.

7) 한편 원고는 S씨이고 관련 고소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으며 이 사건 방송보도가 방영될 당시 고등학생이었다.

다. 이 사건 방송보도가 원고에 관한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는지 여부

1) 먼저, 원고가 이 사건 방송보도 중 이 사건 모델 영상이 삽입된 부분의 내용과 개별적인 연관성을 가지거나 위 영상에서 특정이 되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모델 영상은 '○○○○' 최종회에서 무대를 걷는 원고의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 모자이크 처리가 이루어진 후 원고의 성명, 영상의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상태로 이 사건 방송보도에 삽입되었다. 그러나 이 사건 방송보도에서 이 사건 모델 영상 바로 전에 삽입된 이 사건 패션쇼 영상을 통해 '○○○○' 최종회의 전체적인 무대 구조가 나타났고, 이 사건 모델 영상은 등장인물인 원고에 대한 모자이크 처리에도 불구하고 얼굴 윤곽, 의상의 종류와 색, 걷는 자세, 머리스타일의 구분이 가능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다 참가자들의 얼굴, 의상, 걷는 자

세, 스타일 등에 주안점을 두고 순위를 매겨 우승자를 가리는 패션모델 오디션 프로그램의 특성을 감안해 보면, 적어도 원고의 주변 사람들 또는 '○○○○' 최종회의 제작진, 참가자, 시청자들은 이 사건 방송보도에 삽입된 이 사건 모델 영상 속 등장인물이 원고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방송보도 중 이 사건 모델 영상이 삽입된 부분의 내용과 개별적인 연관성을 가지거나 그 영상에서 특정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방송보도 중 이 사건 모델 영상이 삽입된 부분의 표현이 원고에 관하여 진실하지 아니한 사실적 주장 또는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방송보도에서는 관련 고소사건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피의자는 직업이 모델이라는 사실을 밝히면서 이 사건 모델 영상이 나오는 동안 계속하여 화면 왼쪽 윗부분에 '자료화면'이라는 자막을 표시하여 원고를 직접적으로 지목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 사건 모델 영상이 나오기 직전 부분의 방송내용을 보면, 관련 고소사건의 피의자 중 1명이 걸그룹 소속 가수 겸 연기자인 D라고 밝히면서 그 걸그룹의 뮤직비디오 자료 영상, D의 가수 활동 자료 사진, D가 출연한 드라마 자료 영상 등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나머지 피의자 1명의 신원에 관한 보도를 하면서, 이 사건 패션쇼 영상과 이 사건 모델 영상이 나타나고 그 장면에서 진행자는 계속하여 또 다른 피의자 한 명은 모델이라고 하고, 화면 중앙 하단에 '또 다른 피의자는 모델 ○양'이라는 자막이 표시되고 있어서, 이러한 일련의 방송 내용을 보는 일반 시청자로서는, 직전에 나온 걸그룹 가수의 영상 자료가 피의자 중 1명이 D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패션쇼 영상과 이 사건 모델 영상도 나머지 1명의 피의자에 관한 것으로 받아들일 개연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비록 그 화면이 방영되는 동안 왼쪽 윗부분에 '자료화면'이라는 표시가 있었지만 동시에 그 화면 아래쪽 가운데 부분에 큰 글자로 표시되어 있던 '또 다른 피의자는 모델 ○양'이라는 자막이 훨씬 눈에 잘 뜨일 뿐 아니라, '자료화면'이라는 문구 자체로도 그 화면에 나타난 인물과는 상관없는 일반적인 모델 선발대회 영상이라기보다는 당해 보도의 주제인 관련 고소사건에서 아직 신원이 공개되지 않은 특정 피의자 '모델 ○양'에 관한 과거 영상자료라고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모델 영상은 보도내용과 관련이 없다'는 등 당해 보도와 무관한 자료화면이라는 표시도 없었던 점, 이 사건 방송보도는 취재를 기초로 사실관계를 심층적으로 다루는 시사보도 프로그램인 점, 이 사건 방송보도 이전의 언론보도에서는 주로 D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고, 나머지 1명의 피의자에 관하여는 언론사별로 일치되지 않은 나이와 성씨 정도만 언급되었을 뿐이었던 점 등을 함께 감안해 보면, 일반 시청자들은 이 사건 모델 영상을 관련 고소사건의 나머지 피의자 1명을 지목·암시하는 영상으로 받아들였을 개연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방송보도 중 이 사건 모델 영상이 삽입된 부분의 표현은 일반 시청자가 보통

의 주의로 방송보도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할 때, 관련 고소사건의 피의자들 중 신원이 공개되지 않은 피의자 1명의 직업이 모델이라는 사실을 주장 또는 적시함에 그치지 않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방법으로 관련 고소사건과 전혀 상관이 없는 원고가 그 피의자 중 1명이라는 점을 암시하는 사실적 주장 또는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국 이 사건 방송보도 중 이 사건 모델 영상이 삽입된 부분의 표현은 그 보도내용과 개별적인 연관성을 가지는 원고에 관한 진실하지 아니한 사실적 주장 또는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라. 정정보도청구에 관하여

위와 같이 이 사건 방송보도는 그 묘사 방법 등의 잘못으로 인하여 관련 고소사건의 나머지 1명의 피의자인 '모델 ○양'이 누구인가라는 사실적 주장에 관하여 결과적으로 진실과 다른 보도를 함으로써 원고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문화방송은 이 사건 방송보도의 방송사로서 언론중재법이 정한 바에 따라 이를 진실에 부합되게 고쳐서 보도할 의무가 있는바, 이 사건 방송보도의 내용과 분량, 그 표현 방법,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여 정정보도문의 내용은 별지1 정정보도문 기재와 같이 정하고, 그 보도 시기 및 방법 등은 이 판결 확정 후 최초로 방송되는 '리얼스토리 눈' 프로그램의 첫머리에, 통상의 프로그램 자막과 같은 글자 크기로 화면 상단에 '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을 계속 표시하고, 그 아래 화면에 위 정정보도문을 시청자들이 그 내용을 충분히 알아볼 수 있을 만큼 자막으로 표시하면서 진행자로 하여금 원 프로그램의 진행과 같은 속도로 낭독하게 하는 것으로 정하기로 한다.

나아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해 보면,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도 단기간 내에 정정보도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개연성이 있고 원고의 조속한 명예회복의 필요성 또한 인정되므로, 피고 문화방송으로 하여금 이 판결 확정 후 최초로 방송되는 '리얼스토리 눈' 프로그램을 통하여 위 정정보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원고에게 위 기한 다음 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1일 각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간접강제금을 지급하게 함이 상당하다.

마.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또한, 이 사건 방송보도의 방송사인 피고 문화방송과 그 제작업체인 피고 B 및 제작담당자인 피고 C는 원고가 나타나는 영상을 충분한 편집 없이 그대로 사용하여 보도함으로써 원고가 관련 고소사건의 피의자 중 1명이라는 오해를 유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각자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정신적 피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수액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문화방송은 지상파 방송사로서 우리 언론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대하며 일반인에 대한 공신력 역시 높은 점, 원고는 이 사건 방송보도 당시 데뷔한지 불과 약 1년밖에 되지 않은 10대 고등학생이었는데, 술자리에서의 음담패설이 담긴 동영상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공갈한 파렴치 범행의 피의자로 오해받게 되어 그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방송보도 이후 관련 고소사건의 실

제 피의자가 원고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특정되었고 그것이 공지의 사실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방송보도에 나온 원고의 모습과 실제 피의자의 동일성에 관한 오해가 완전히 사라졌으리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피고들은 원고가 특별히 부각되지 않는 일반적인 패션쇼 영상을 사용하거나 원고의 영상을 사용하더라도 원고와 관련 고소사건의 피의자는 동일 인물이 아니라는 충분한 표시를 하여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는 일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나오는 영상을 경솔하게 사용하여 그 과실이 결코 경미하다고 할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20,000,000원으로 정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방송보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4. 12. 13.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5. 5.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 제2조 제1항[14] 참조)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정정보도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손해배상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 및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정정보도문

본 프로그램은 2014년 9월 5일 방영분 "E에게 '50억 원 내놔' 연예인은 왜 협박당하나?"에서, 협박 사건 피의자 '모델 ○양'을 언급하며 모델 A 양이 등장하는 화면을 내보내 A 양이 해당 사건 당사자인 것처럼 묘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A 양은 해당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위 방송에서 언급된 모델 ○양은 다른 사람이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끝

14)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영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된 사건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서울고등법원 2016. 5. 27. 선고 2015나2054248 판결(확정)

지방자치단체도 과제 및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최소한의 사회적 신뢰를 필요로 하므로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나 악의적인 비방에 대해 민법상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 원고(피항소인 겸 항소인) : 성남시
- 피고(항소인 겸 피항소인) : 이데일리 주식회사
- 피고(피항소인) : A

[사실관계]

피고 회사는 주식회사 이데일리TV와 2014년 10월 17일 '판교테크노밸리 축제'를 공동 주관하였고, 행사 당일 환풍구 붕괴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위 환풍구 사고 발생 직후 위 행사의 책임소재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원고는 주최 기관으로 참여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익일 피고 회사는 자사 홈페이지에 원고가 위 행사의 공동 주최라는 취지의 사고(社告)를 공지하였다. 이에 원고는 명예훼손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들은 원고가 기본권의 수범자일 뿐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며 항변하였다.
심리 결과, 1심 법원은 지방자치단체인 원고도 민법상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보아 피고들의 항변을 배척하였고, 허위사실 적시에 대한 위법성을 인정하여 손해배상 1,500만 원 지급을 명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88819). 이후 피고 회사와 원고가 각 항소하였고, 2심 법원은 원고가 지방자치단체로서 공무를 수행하거나 고권적 행위를 한 경우가 아니라며 원고의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하면서 양 당사자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피고 회사가 상고하였으나,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기각되었다(대법원 2016다231662).

[판결요지]

□ **지방자치단체가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

기본권 보장의무를 지는 자라고 하여 기본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모든 권리나 제도의 향수 주체가 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지방자치단체로서도 그들에게 주어진 헌법 및 법령상의 과제와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이에 대한 최소한의 사회적 승인 내지 신뢰를 필요로 하므로, 명백한 허위사실의 유포나 악의적인 비방과 같은 언론·표현의 자유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는 남용행위로부터 법적 보호를 받음으로써 이러한 사회적 신뢰를 유지하여야 할 공익이 있으며, 자연인 이외의 법인 기타 단체 등도 명예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이상, 지방자치단체인 원고가 모든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볼 것은 아니다. 원고가 이 사건 환풍구 사고의 책임의 주체가 되는지 여부, 그 책임자로서 공적 임무를 다 했는지 여부는 원고의 명예와 직결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 지방자치단체인 원고도 민법상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할 것이다.

판결문

사 건	2015나2054248 손해배상(기)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성남시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이데일리 주식회사
피 고 , 피 항 소 인	A
제 1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9. 2. 선고 2014가합588819 판결
변 론 종 결	2016. 4. 22.
판 결 선 고	2016. 5. 27.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 및 피고 이데일리 주식회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이데일리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0. 22.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A는 피고 이데일리 주식회사와 각자 원고에게 100,000,000원을, 피고 이데일리 주식회사는 피고 A와 각자 원고에게 85,000,000원을 지급하고, 각 위 금원 중 85,000,000에 대하여 2014. 10. 22.부터 2015. 9. 2.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이데일리 주식회사의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이데일리 주식회사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 이데일리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원고는 지방자치법의 적용을 받는 지방자치단체이고, 피고 이데일리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인터넷 경제신문 '이데일리'를 운영하는 사업자이며, 피고 A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환풍구 붕괴 사고(事故)의 발생

피고 회사는 소외 주식회사 이데일리티브이(이하 '이데일리TV'라고 한다)와 함께 이데일리TV의 주도로 2014. 10. 17.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682 유스페이스2 건물 앞에 있는 야외 일반광장에서 판교테크노밸리에 입주한 기업체 임직원 및 방문객을 대상으로 판교테크노밸리 축제(이하 '이 사건 행사'라고 한다)를 공동으로 주관하였다. 위 행사가 진행되던 같은 날 17:40경 인기 걸그룹의 축하공연이 시작될 무렵 많은 사람들이 공연을 보려고 위 광장 인근에 설치되어 있던 환풍구 위에 올라갔고,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한 환풍구 그레이팅(덮개)이 붕괴되면서 환풍구 위에 서 있던 사람들이 18.55m 아래로 추락하여 16명의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사망하고, 11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는 사고(이하 '이 사건 환풍구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이 사건 환풍구 사고에 대한 언론기사

이 사건 환풍구 사고가 발생한 직후 이 사건 행사에 대한 책임소재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그 날 밤 23:00경 조선닷컴 인터넷뉴스에 "판교테크노밸리 축제 사고 주최 측 서로 발뺌"이라는 제목으로 "판교테크노밸리 축제 환풍구 붕괴사고가 발생하자 행사 주최 측은 예산만 지원했거나 이름만 빌려줬다며 책임 회피에 급급하고 있다. 행사에는 경기도와 경기과학기술원, 성남시도 주최로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성남시는 '행사에 관여한 바 없고, 주최 기관으로 참여한 바도 없다. 사고 관련 책임은 주관사에 있다'고 밝혔다"는 내용의 기사가 게재되었다.

라. 피고 회사의 사고(社告) 공지

(1) 피고 회사와 이데일리TV는 이 사건 환풍구 사고가 발생한 다음날인 2014. 10. 18., 그 홈페이지에 이 사건 환풍구 사고에 대한 사과문을 사고(社告) 형태로 게재하였는데, 최초로 발표한 사과문 사고에는 이 사건 행사의 주최자 및 주관사에 관하여, 별지1 기재와 같이 '경기도

와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이 주최하고 이데일리TV가 주관사로 참여한 행사'라고 공지하였다가, 그 직후 피고 회사를 주관사로 추가하여 '경기도와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이 주최하고 이데일리TV와 피고 회사가 주관사로 참여한 행사'라고 공지하였다.

(2) 그러나, 같은 날 오후 12:06경 게재한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라는 제목의 별지2 기재와 같은 사고에서는 '경기도와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성남시가 주최하고 이데일리TV와 피고 회사가 주관한 행사'라고 일부 수정하여 공지하였으며, 같은 날 13:20경 게재한 '알려드립니다'라는 제목의 별지3 기재와 같은 사고에서는 '이데일리와 이데일리TV는 이번 행사의 주관사로서 사고의 중대성을 엄중히 받아들여 사고 이후 확인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 일체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달라 다음과 같이 당사의 입장을 밝힙니다. 일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피고 회사는 경기도 성남시의 주최기관 명칭을 도용하지 않았으며, 경기도 산하기관인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성남시와의 합의를 통해 결정된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내용을 공지(이하 성남시가 주최자로 추가된 별지2, 3 기재 각 사고의 공지를 '이 사건 공지'라고 한다)하였다.

마. 피고 A의 국정감사에서의 답변

피고 A는 2014. 10. 22. 10:00경 경기도청 4층 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하여, "원고가 1,100만 원을 주기로 하고 사고 나니까 못 주겠다고 언론 재단에서 통지받았습니까?"라는 질의에 "사후에 그런 보고를 받았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어떤 기관이나 유관단체의 경우에 이게 잘 될 것 같은 경우에는 적극 협력하다가 잘못되는 경우에 아니라고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라는 발언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국정감사 발언'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4, 7, 1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행사의 공동 주최자가 아님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 사건 공지 및 이 사건 국정감사 발언을 통해 원고가 이 사건 행사의 공동 주최자라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반복하여 적시하고 원고가 이 사건 환풍구 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부인하고 회피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여, 원고의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사회적 신뢰와 평판을 훼손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5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원고와 같은 공법인은 사법상 법인과 달리 원칙적으로 기본권의 수범자일 뿐 기본권의 소지자가 될 수 없어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될 수 없으므로,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

다.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행사의 공동 주최자이므로 이 사건 공지 및 국정감사 발언은 진실한 내용을 전달한 것이다. 설령 원고가 이 사건 행사의 공동 주최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행사의 공동 주최자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 공적인 사안에 관하여 원고를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방법으로 공격한 것이 아니므로, 위와 같은 공지 및 발언은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원고의 기본권 주체성 인정 여부

헌법상 공권력의 행사자인 국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 또는 국가조직의 일부나 공법인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 내지 실현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지는 주체로서, 원칙적으로는 기본권의 수범자일 뿐 기본권의 소지자로 볼 수 없다. 다만 공법인이나 이에 준하는 지위를 가진 자라 하더라도 공무를 수행하거나 고권적 행위를 하는 경우가 아닌 사경제 주체로서 활동하는 경우나 조직법상 국가로부터 독립한 고유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리고 다른 공권력 주체와의 관계에서 지배복종관계가 성립되어 일반 사인처럼 그 지배하에 있는 경우 등에는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이들이 기본권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헌법재판소 2013. 9. 26. 선고 2012헌마271 결정 등 참조). 같은 취지에서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법인은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 할 것이지만(대법원 2011. 9. 2. 선고 2010도17237 판결 등 참조), 기본권 보장의무를 지는 자라고 하여 기본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모든 권리나 제도의 향수 주체가 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지방자치단체로서도 그들에게 주어진 헌법 및 법령상의 과제와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이에 대한 최소한의 사회적 승인 내지 신뢰를 필요로 하므로, 명백한 허위사실의 유포나 악의적인 비방과 같은 언론·표현의 자유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는 남용행위로부터 법적 보호를 받음으로써 이러한 사회적 신뢰를 유지하여야 할 공익이 있으며, 자연인 이외의 법인 기타 단체 등도 명예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이상, 지방자치단체인 원고가 모든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경우에 보호의 대상이 되는 명예가 어떤 것인지에 따라 원고와 같은 공법인의 기본권 주체성 여부를 판단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데, 돌이켜 이 사건에서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행사를 주최하였는지 여부는 원고가 지방자치단체로서 공무를 수행하거나 고권적 행위를 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공지 역시 원고의 업무처리의 정당성 등에 관한 감시와 비판의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다만 원고가 이 사건 행사의 공동주최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에 관한 것일 뿐이며, 원고가 이 사건 환풍구 사고의 책임의 주체가 되는지 여부, 그 책임자로서 공적 임무를 다 했는지 여부는 원고의 명예와 직결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 지방자치단체인 원고도 민법상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명예의 주체가 될 수 없어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이 사건 공지에 관한 판단

(1) 적시된 사실의 허위성

갑제1, 9 내지 15,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데일리TV의 B 미디어본부장은 2014. 6.경 원고에게 이 사건 행사에 공동 주최자로 참여하고 3,000만 원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내부 검토 후 위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회신한 사실, ② 피고 회사와 이데일리TV는 2014. 8. 28.경 다시 원고에게 이 사건 행사에 협찬금 3,000만 원의 지원, 시립 합창단 등의 출연 요청 등을 하였으나 원고는 지원할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한 사실, ③ 원고가 2014. 10. 15.경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 피고 회사에게 지급하려고 했던 1,100만 원은 원고가 피고 회사가 운영하는 인터넷사이트 등에 원고의 시정시책 행정광고를 게재하는 것에 대한 광고비 명목이었을 뿐이고, 피고 회사가 위 행정광고를 게재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가 같은 달 21.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위 광고를 취소하는 공문을 보내 위 돈도 실제로 지급되지 아니한 사실, ④ 이 사건 행사의 주최자였던 경기과학기술진흥원과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측에서 후원을 요청했던 경기도는 이 사건 행사 관련 개최안을 여러 차례 주고받았는데, 2014. 9. 24.경의 개최안과 달리 이 사건 행사 직전인 2014. 10. 7.경에 전송된 개최안에는 성남시가 공동 주최자에서 빠져있는 사실, ⑤ 이 사건 환풍기 사고에 관한 책임자들 즉, 이데일리TV의 대표이사 및 담당직원, 경기과학기술진흥원 담당직원 등이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원고의 직원 등은 위 책임자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이 사건 행사 공동주최에 관한 약정 내지 공식 문건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남시는 이 사건 행사의 공동 주최자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공지를 통해 '성남시가 이 사건 행사의 공동 주최자'라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고 할 것이다.

(2) 위법성 조각 여부

(가) 먼저, 피고 회사에게 '성남시가 이 사건 행사의 공동 주최자'라는 사실을 진실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을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행사를 주도적으로 주관한 이데일리TV는 피고 회사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회사인 사실, 원고가 2014. 6.경 이 사건 행사 공동 주최자로 참여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힌 이후 같은 해 8. 말경 다시 원고와 이데일리TV 사이에 이 사건 행사에 관한 기획안을 주고받는 등 일정 부분 이 사건 행사와 관련하여 협의가 진행되기도 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행사 개최일에 즈음하여 피고에게 행정광고비 명목의 1,100만 원을 지급하려고 한 사실, 이 사건 행사의 팸플릿이나 현수막에는 성남시가 공동 주최자로 표시되어 있었고, 원고의 대표자인 C 성남시장이 이 사건 행사에 참석하여 환영사를 하기로 되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제9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회사는 이 사건 행사의 공동 주관자로서 누구보다도 위 행사의 주최자가 누구인지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 ② 비록 이 사건 행사를 이데일리TV가 주도적으로 기획, 진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 회사와 이데일리TV는 그 대표이사가 동일하고 같은 소재지에 본점이 위치하고 있는 등으로 이 사건 행사 준비 및 진행 과정에서 원활하게 의사소통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의 2014. 6.경 이 사건 행사 공동 주최 불가 회신에도 피고 회사와 이데일리TV가 같은 해 8. 말경 다시 원고에게 같은 요청을 한 사실이 있을 뿐, 그 이후 이 사건 행사 전까지 행사 공동 주최에 관한 구체적인 협의가 진행되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는 점, ④ 원고가 이 사건 행사에 즈음한 2014. 10. 15.경 피고 회사에게 지급하려고 했던 1,100만 원의 돈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명목이 시정시책 행정광고에 관한 광고비였고, 그 지급도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었으며, 피고 회사가 위 광고를 싣지 아니하여 실제 위 돈이 지급되지도 아니한 점, ⑤ 이 사건 행사에 관한 팸플릿과 현수막 등은 이 사건 행사의 주관사인 피고 회사 또는 이데일리TV 측에서 일방적으로 제작한 것일 뿐인 점, ⑥ 이 사건 행사는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이 주최하고, 성남시의 관할 구역 안에서 열린 행사로서 원고의 대표자인 시장이 공동 주최자의 자격이 아니라도 환영사를 할 만한 사정이 있었던 점, ⑦ 이 사건 환풍구 사고에 관한 주최자 및 주관자로서 경기과학기술진흥원과 이데일리TV의 관련자들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고단367호로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등으로 기소된 점, ⑧ 이 사건 환풍구 사고 당일 밤, 이 사건 행사의 책임소재에 관한 논의가 있었고 언론을 통하여 성남시가 주최자가 아니라는 입장을 표명하자, 피고 회사와 이데일리TV는 최초의 사고에는 이 사건 행사의 주최자로 원고를 제외한 “경기도와 경기과학기술진흥원”만을 기재하였다가, 같은 날 게재된 이 사건 공지에서 원고를 이 사건 행사의 주최자로 포함시켰고, 오히려 성남시가 주최자라 아니라는 논란에 대하여 “일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피고 회사는 경기도 성남시의 주최기관 명칭을 도용하지 않았으며, 경기도 산하기관인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성남시와의 합의를 통해 결정된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라고 게재하여 원고가 이 사건 행사의 주최자가 확실하다는 취지의 공지를 함으로써, 피고 회사에게 집중되는 책임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이 사건 공지를 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드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앞서 인정한 사실 및 피고 회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 회사에게 성남시가 이 사건 행사의 공동 주최자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다음으로 이 사건 공지가 공적인 사안에 관한 것으로 원고를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방법으로 공격한 것이 아니어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행사의 공동 주최자로 적시된 원고는 지방자치단체로서 공적인 존재에 해당하고, 이 사건 공지는 16명의 피해자가 사망하고, 11명의 피해자가 상해

를 입은 이 사건 환풍구 사고에 관한 것으로서, 그 사고의 경위, 책임의 주체, 재발 방지 대책 등에 관하여 공공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공적인 사안에 관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한편 공공적 · 사회적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표현의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하고, 특히 공직자의 도덕성 · 청렴성이나 그 업무처리가 정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는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감시와 비판 기능은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① 이 사건 공지는 지방자치단체인 원고 내지 그 소속 공무원의 도덕성이나 그 업무처리가 정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 아니고, 원고가 이 사건 행사의 공동 주최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에 관한 것인 점, ② 이 사건 공지는 피고 회사의 사고(社告) 형태로 게재된 것으로 그것이 이 사건 환풍구 사고와 관련하여 언론의 감시와 비판기능 수행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보도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회사는 이 사건 행사의 주관사로서 원고가 그 공동 주최자라는 사실을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④ 원고가 이 사건 환풍구 사고 직후 언론사를 통하여 이 사건 행사의 주최자가 아니라고 밝힌 상태에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행사의 주최자가 아님을 알면서도 '원고가 이 사건 행사의 주최자로서 책임이 있다'는 내용을 내포한 이 사건 공지를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비록 이 사건 공지가 공적인 사항에 관한 것이고, 원고를 악의적으로 공격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 어렵다.

(다) 따라서 피고 회사의 위법성 조각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결론

(가) 피고 회사는, '원고가 이 사건 행사의 주최자로서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담은 이 사건 공지로 인하여 원고의 사회적 신뢰와 평판을 훼손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한편 원고는,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공지를 통해 허위 사실을 적시하였으므로 그 대표이사인 피고 A도 피고 회사와 공동하여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 A가 이 사건 행사 당시 피고 회사 및 이데일리TV의 대표이사 지위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 회사와 공동하여 이 사건 공지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 A가 위 공지로 말미암은 원고의 손해에 대하여 피고 회사와 공동하여 그 배상책임을 질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국정감사 발언에 관한 판단

(1) 먼저 피고 A의 이 사건 국정감사 발언에 허위 사실의 적시가 있었는지 본다.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A의 이 사건 국정감사 발언은 이 사건 환풍구 사고와 관련하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루어진 점, 피고 A는 그에게 질의하는 국회의원의 질문에 수동적으로 대답을 한 것일 뿐 적극적으로 어떠한 내용을 전파할 의도로 사실을 적시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내용도 "원고가 1,100만 원을 주기로 하고 사고 나니까 못 주겠다고 언론 재단에서 통지받았습니까?"라는 질문에 "사후에 그런 보고를 받았습니다."라고 대답한 것으로, 앞서 인정된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행정광고비 1,100만 원을 지급하려고 했다가 피고 회사가 행정광고를 게재하지 아니하자 위 광고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였으므로 그 내용 자체를 허위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 A가 위 답변에 덧붙여 한 발언도 행정광고비의 집행 등에 관한 일반적인 답변이거나 의견 표명으로 볼 여지도 있고, 앞서 인정한 발언 외에 추가적으로 어떠한 발언을 하였는지에 관한 아무런 자료도 없어 위 발언이 반드시 '성남시가 이 사건 행사의 공동 주최자임에도 이를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취지'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등 피고 A가 위 발언을 하게 된 경위, 발언 장소, 방법,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 A의 이 사건 국정감사 발언이 사실의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있어서의 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거나 그 내용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피고 A의 이 사건 국정감사 발언으로 원고의 사회적 신뢰와 평판이 훼손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원고는, 피고 회사 또한 피고 A의 이 사건 국정감사 발언에 대하여 피고 A와 공동하여 불법행위책임을 진다고 주장하나, 피고 A가 위 발언에 대하여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위 주장 역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손해배상의 범위

가.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공지는 큰 인명피해를 불러온 이 사건 환풍구 사고와 관련하여 위 사고가 초래된 이 사건 행사의 공동 주최자에 관한 허위 사실을 적시한 점, 위 공지를 계기로 성남시의 이 사건 행사 공동 주최 여부에 관한 논란이 다른 언론을 통하여 여러 차례 보도되었고, 국민들의 질타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이 사건 공지가 당초 이 사건 환풍구 사고에 대한 피고 회사의 사과 및 개최 경위를 알리기 위하여 게재되었던 점, 위 공지는 그 최종 공지까지 이 사건 환풍구 사고 발생으로부터 채 24시간이 경과하기도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신속성에 비추어 일부 오류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비롯한 이 사건 공지의 경위, 형식, 내용, 횟수, 원고의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지위 및 원고가 입었을 피해의 정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의 무형적 손해에 관한 배상금을 1,5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나.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 손해배상금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공지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4. 10. 22.부터 피고 회사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

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5. 9. 2.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A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여야 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와 피고 회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1 ~ 3〉 사고(社告) 생략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6. 30. 선고 2016가합100578 판결

기사 제목이 본문의 흐름과 종합하여 독자들로 하여금 특정인이 위법행위에 직접 관여했다는 인상을 준다면 간접적인 방법에 의한 사실의 적시로 볼 수 있다

- 원고 : 주식회사 A 외 1명
- 피고 : 주식회사 씨비에스아이 외 1명

[사실관계]

피고들은 2015년 12월 10일자 〈노컷뉴스〉에 「이번에는 한국출판인회의 회장이 아동 역사서를 표절?」이라는 제목으로 원고 회사가 출판한 어린이용 역사책에 대한 저작권침해정지 청구사건의 인용 결과를 보도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가 고의적으로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며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심리 결과, 1심 법원은 이 사건 기사 본문에 원고들 주장과 같은 직접적인 표현이 없다 하더라도, 제목이 마치 회사가 아닌 대표이사 개인이 표절 행위를 한 것처럼 표현하고 있어 일반 독자에게 원고 개인이 위 표절 행위에 실질적으로 관여했다는 인상을 주는바, 이와 같은 사실을 간접적으로 적시하고 있다고 인정하였고, 정정보도 게재 및 손해배상 400만 원(원고 회사에게 100만 원, 원고 대표이사에게 300만 원)을 선고하였다. 이후 피고들이 항소하여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2심 계속 중이다(2016나2048271).

한편, 원고 회사는 소제기에 앞서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하였으나 조정불성립결정된 바 있다(2015서울조정4090 · 4091).

[판결요지]

□ **기사 제목에 의한 사실의 적시에 대한 판단**

비록 이 사건 기사의 제목이 의문문 형식으로 되어 있고, 본문에 그와 같은 직접적인 표현이 없다고 하여도, 이 사건 기사는, 이 사건 저자들이 기존 서적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서적을 저술함에 있어서 원고 개인이 이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적시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판결문

사 건	2016가합100578 정정보도 등
원 고	1. 주식회사 A 2. B
피 고	1. 주식회사 씨비에스아이 2. C
변론종결	2016. 6. 9.
판결선고	2016. 6. 30.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씨비에스아이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일 이내에 노컷뉴스 홈페이지(http://www.nocutnews.co.kr) 초기화면 기사 목록의 앞부분에 별지1 기재 정정보도문 제목을 [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하되, 별지2 기재 기사의 제목 및 내용과 동일한 크기 및 활자체로 하고, 제목을 클릭하면 별지1 기재 정정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이후로는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별지2 기재 기사가 검색되는 한 함께 검색되도록 하고, 별지2 기재 기사의 본문 상단에 위 정정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라.
2. 만일 피고 주식회사 씨비에스아이가 제1항 기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 주식회사 씨비에스아이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제1항 기재 기한 만료일 다음 날부터 그 이행완료일까지 1일 1,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주식회사 A에게 1,000,000원, 원고 B에게 3,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5. 12. 10.부터 2016. 6. 3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4.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5.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6.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1. 피고 주식회사 씨비에스아이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노컷뉴스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nocutnews.co.kr) 초기화면 뉴스 부문 첫 부분에 별지1 기재 정정보도문 제목을 [ ] 안에 표시하여 72시간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별지1 기재 정정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이후로는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하고, 별지2 기재 기사의 제목을 클릭하면 위 정정보도문의 제목과 본문이 표시되도록 하라.

2. 만일 피고 주식회사 씨비에스아이가 제1항 기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 주식회사 씨비에스아이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제1항 기재 기한 만료일 다음 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1일 10,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회사'라고 한다)는 각종 도서의 출판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 B는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2) 피고 주식회사 씨비에스아이(이하 '피고 씨비에스아이'라고 한다)는 인터넷신문 "노컷뉴스"(홈페이지 http://www.nocutnews.co.kr)를 운영하는 언론사이고, 피고 C는 피고 씨비에스아이의 소속 기자이다.

나. 보도의 배경

1) 원고 회사는 2012. 4. 27. '○○○○ 한국사'라는 제목의 10권으로 된 어린이용 역사책(이하 '이 사건 서적'이라 한다)을 출판하였다. 그러자 기존에 '한국사 ××'라는 제목의 5권으로 된 어린이용 역사책(이하 '기존 서적'이라 한다)을 저술하였던 D는 2014. 6. 16.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가합5302호로 원고 회사 및 이 사건 서적의 저자 E, F, G(이하 '이 사건 저자들'이라 한다)를 상대로, 이들이 기존 서적과 유사한 이 사건 서적을 저술, 출판함으로써 자신의 기존 서적에 대한 저작재산권(이하 '기존 서적의 저작권'이라 한다)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저작권침해정지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2) 위 법원은 2015. 12. 3. D가 주장한 이 사건 서적의 131개의 문구 중 9개의 문구가 기존 서적과 유사하여 기존 서적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여, '원고 회사 및 이 사건 저자들은, 위 9개의 문구를 삭제하지 아니하고는 이 사건 서적을 출판, 인쇄, 복제, 제본, 판매, 배포할 수 없고, 위 각 문구가 포함된 완제품 및 반제품 등을 모두 폐기하며, 손해배상으로 공동하여 D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관련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3) 위 판결에 대하여 쌍방이 항소하여, 위 사건은 서울고등법원 2015나2075696호로 계류 중이다.

다. 피고들의 기사 보도

피고 씨비에스아이는 2015. 12. 10. 노컷뉴스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번에는 한국출판인회의 회장이 아동 역사서를 표절?'이라는 제목으로 피고 C가 작성한 별지2 기재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고 한다)를 게재하였는데, 이 사건 기사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목: 이번에는 한국출판인회의 회장이 아동 역사서를 표절?
한국 출판계를 대표하는 한국출판인회의 B 회장이 운영하는 출판사가 아동 역사서를 표절했다는 판결을 받았다. (이하에서는 이 문단을 '① 부분'이라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는 〈한국사 ××〉의 저자 D씨가 A를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정지 소송에서 "출판사 A가 출간한 〈○○○○ 한국사〉가 9군데에서 복제권과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했다"라고 판시했다. (중략)
이번 사건은 2002년 첫 출간된 〈한국사 ××〉의 저자 D씨와 현재 출판사인 J가 표절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되었다.
'○선생'과 학생들이 등장해 역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 한국사〉의 서술 방식과 역사 서술 내용의 상당 부분이 어머니가 자녀에게 읽어주는 투로 서술한 〈한국사 ××〉의 형식과 내용을 그대로 베끼거나 일부를 윤문했다는 주장이다. (중략) (이하에서는 위 3개의 문단을 '② 부분'이라 한다)
〈○○○○ 한국사〉 시리즈는 A가 출판사 역량을 집결해 기획부터 홍보에 이르기까지 〈한국사 ××〉를 비교와 경쟁대상으로 삼은 정황이 곳곳에서 발견된다.
〈한국사 ××〉는 출간 이후 지금까지 누적 판매량이 350만 부에 달하는 대표적인 어린이용 한국사 통사이다.
이 책을 겨냥해 A는 이와 차별화하려는 공격적인 마케팅 활동을 벌여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 취지의 비교 광고 때문에 A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조치를 받기도 하였다. (이하에서는 위 4개의 문단을 '③ 부분'이라 한다)
이번 판결의 파장이 큰 것은 바로 표절을 한 주체인 출판사 A의 대표가 한국 출판계를 대표하는 한국출판인회의 회장인 B씨이기 때문이다.
B회장은 인터뷰 때마다 "한국 출판계가 살려면 좋은 필자를 많이 발굴해야 한다"라고 주장해왔다. (이하에서는 위 2개의 문단을 '④ 부분'이라 한다)
소설가 신경숙의 표절 파문에 이어 이번 사건에서 '표절이 맞다'라는 판결이 나옴에 따라 우리 출판계는 또다시 위기를 맞게 되었다. (이하 '⑤ 부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피고들은 이 사건 기사를 통하여 원고 B가 고의적으로 기존 서적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은 명예가 훼손되는 피해를 입었으므로, 원고들은 피고들에 대해 청구취지와 같이 정정보도, 간접강제 및 손해배상을 구한다.

나. 피고들

1) 이 사건 기사의 제목은, 의문형식일 뿐만 아니라 원고 회사의 표절 책임이 대표자인 원고 B에게 귀속된다는 사회통념에 기초한 서술로서, 그 내용이 허위라거나 원고 B를 비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 기사에는 원고 B가 '저자로서' 또는 '직접' 기존 서적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적시되어 있지 않다.
3) 실제로 원고 회사는 이 사건 서적을 기획·출판하여 이 사건 서적의 저술에 상당 부분 관여한 것으로 보이므로, 별지1 기재 정정보도문은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

3. 정정보도 및 간접강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기사에 적시된 사실

1) 관련 법리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이라고 한다) 제14조의 정정보도 청구는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한 경우에 허용되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사실적 주장이란 반드시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할 것은 아니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체 취지에 비추어 어떤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으면 족하며, 신문 등의 언론 매체의 어떤 기사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는지 여부는 일반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와의 연관 하에서 기사의 객관적인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사가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다가 당해 기사의 배경이 된 사회적 흐름 속에서 당해 표현이 가지는 의미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판결,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다35199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법리 및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ⅰ) 이 사건 기사의 제목은 마치 원고 회사가 아닌 '한국출판인회의 회장인 원고 B'가 개인적으로 표절 행위를 한 것처럼 표현하고 있는 점, ⅱ) '표절'이라는 용어는 '저작권 침해'

라는 의미로도 쓰이지만, 그 사전적인 의미는 '다른 사람의 저작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몰래 베껴 쓰는 행위'로서, 주로 고의적으로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에 쓰이는 것으로 보이는 점, iii) 이 사건 기사 ③ 부분은 이 사건 서적이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출판사인 원고 회사가 주도적으로 기획하였다는 내용인 점, iv) 위 ③ 부분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자체로 허위 사실은 아니나, 이 사건 기사 제목과 본문의 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일반 독자에게 원고 B가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편찬한 저작물이 표절 판결을 받았다는 인상을 줄 수 있는 점, v) 인터넷신문의 독자는 제목을 클릭함으로써 기사 본문에 접속하게 되므로, 제목에서 받는 선입견이 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이 사건 기사의 제목이 의문문 형식으로 되어 있고, 본문에 그와 같은 직접적인 표현이 없다고 하여도, 이 사건 기사는, 이 사건 저자들이 기존 서적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서적을 저술(이하 '이 사건 저술행위'라고 한다)함에 있어서 원고 B가 이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적시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적시된 사실의 허위 여부

1) 관련 법리

언론중재법 제14조에 의하여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 등의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피해자는 그 언론보도 등이 진실하지 아니하다는 데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하나,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의 부존재의 증명은 사회통념상 불가능에 가까운 반면 그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증명하는 것이 보다 용이한 것이어서 이러한 사정은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자는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고 피해자는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성의 입증을 할 수 있다(대법원 2011. 9. 2. 선고 2009다5264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판단

위 법리 및 갑 제13, 14, 15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원고 B가 이 사건 저술행위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기사에 적시된 위 사실은 허위라고 할 것이다(이하에서는 위 사실을 '이 사건 허위 보도'라고 한다).

가)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증명할 대상은 원고 B가 이 사건 저술행위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것으로서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의 부존재의 증명에 관한 것이다.

나) 원고 회사에서 2008. 5.경부터 2009. 10.경까지 어린이책 사업부장으로 근무하였던 H는, 원고 B가 이 사건 저자들로 하여금 기존 서적을 강의교재로 사용하는 서울 ○○동 소재 '△△ 논술학원'에서 강의를 듣게 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 사건 서적을 저술하게 하

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 진술은 위 '△△ 논술학원'의 원장인 I 및 이 사건 저자들 중 한 명인 E의 진술에 반하는 점, 위 H도 이 사건 저자들이 위 '△△ 논술학원'에서 기존 서적에 관한 강의를 듣는 것을 직접 확인하지는 못하였고, 누군가로부터 이를 전해들은 것에 불과하다고 진술한 점, H는 이 사건 서적이 출판되기 3년 전에 이미 퇴사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진술에 따르더라도 원고 B가 이 사건 서적의 전체적인 기획에 관여하였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저자들에게 기존 서적을 표절하여 이 사건 서적을 제작하라고 지시하는 등 이 사건 저술행위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 위와 같은 H의 진술을 제외하면 원고 B가 이 사건 저술행위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없고, 관련 판결에서도 원고 회사가 이 사건 서적을 출판함으로써 기존 서적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하였을 뿐, 원고 B가 이 사건 서적의 저술에 관여하였다는 취지로는 판단하지 않았다(회사는 다수의 구성원들로 이루어져 있는 조직체이므로 그 구성원들에 의해 행해진 회사의 행위가 모두 대표이사의 행위로 인식되는 것이 사회통념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다. 소결론

1) 이 사건 허위 보도로 말미암아, 원고 B는 표절 행위를 저지른 사람으로, 원고 회사는 표절 행위를 조장하는 출판사로 오해를 받게 되는 등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어 신용과 명예가 훼손되는 피해를 보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씨비에스아이는 언론중재법 제14조에 따라 정정보도를 할 의무가 있다.

2) 나아가 이 사건 허위 보도의 내용이나 분량, 표현방법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정정보도문의 글자 크기, 게재 방법 등을 주문 제1항과 같이 정하기로 하고, 위 의무이행에 대한 강제로서, 위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피고 씨비에스아이에 대하여 원고 회사에게 위 의무의 이행완료일까지 1일 1,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간접강제금의 지급을 명하기로 한다.

4.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명예훼손 등의 성립 여부

1) 이 사건 허위 보도로 인한 명예훼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들은 이 사건 허위 보도를 함으로써 원고들의 신용과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할 것이다.

2) 기타 부분으로 인한 명예훼손 등

원고들은, 이 사건 허위 보도 이외에 이 사건 기사 중 아래 각 부분도 허위 사실을 적시하거나

편파적으로 원고들을 비난함으로써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러한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다만 아래 각 부분은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가) ① 부분

(1) 원고들의 주장

위 부분은, 관련 판결이 한국출판인회의와 무관함에도 원고 B가 한국출판인회의의 회장임을 강조하여 원고 B를 비방하고 있고, 관련 판결이 1심에 불과함에도 마치 최종 판결인 것처럼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으며, '저작권 침해'가 아닌 '표절'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원고들을 의도적으로 비난하고 있다.

(2)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 B가 실제로 한국출판인회의의 회장인 점, 위 부분에 관련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취지의 기재는 없는 점, 일반적으로 '표절'이라는 용어가 '저작권 침해'의 의미로도 쓰인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부분이 허위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고, 모욕적인 표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② 부분

(1) 원고들의 주장

관련 판결에서는 D의 청구 중 극히 일부만 인용되어 소송비용 중 9/10를 D가 부담하게 되었는데도 이 사건 기사는 이러한 내용을 전혀 소개하지 않았고, 나아가 위 부분에서 마치 이 사건 서적 전부가 기존 서적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처럼 편파적인 사실을 적시하였다.

(2)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부분에서 이 사건 서적 전부가 기존 서적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되었다는 취지의 기재는 없는 점, 오히려 이 사건 기사에는 '관련 소송에서 D가 주장한 131군데의 문구 중 9군데만이 표절로 인정되었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기사에서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한 부분 등을 누락하였다고 하여 이를 두고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다) ③ 부분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기존 서적을 비교 대상으로 삼아 이 사건 서적을 홍보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위 부분은 허위이다.

(2) 판단

갑 제3,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산하에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를 두고 있는 사실, 위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2015. 1. 26. 원고 회사에게 위 원고가 2012년경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겨레신문 등에 전면광고로 기존 서적을 비방하여 공정거래를 저해하였다는 이유로 경고한다는 내용의 통보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위 부분은 위 통보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므로, 위 통보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위 부분을 허위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④ 부분

(1) 원고들의 주장

원고 B는 그동안 인터뷰에서 "좋은 필자를 많이 발굴해야 한다"라는 발언을 하지 않았는데도, 위 부분은 원고 B가 '인터뷰 때마다' 그러한 발언을 한 것처럼 적시하고 있고, 위 발언 사실과 '표절을 한 주체가 원고 B'라는 표현을 대비시켜 원고 B를 표리부동한 사람으로 매도하고 있다.

(2) 판단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B가 2015. 4. 7. 이데일리 신문사와의 인터뷰에서 "결국 콘텐츠는 돈이 아닌 사람이다. 맨파워에 투자해야 출판을 성장시킬 수 있다"라고 발언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발언은 좋은 작가를 발굴하는 데 투자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이는 점, 위 부분은 관련 판결에 따라 저작권 침해 책임이 인정된 원고 회사의 대표자가 원고 B라는 것을 소개하면서, 원고 B의 신분과 평소 인터뷰 내용을 적시하고 있을 뿐, 이에 더하여 의견이나 평가를 덧붙이고 있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부분이 허위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고, 모욕적인 표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마) ⑤ 부분

(1) 원고들의 주장

원고 회사는 이 사건 서적을 출판한 데 따른 저작권 침해의 책임을 지는 것에 불과함에도, 위 부분은 관련 판결을, 저자가 직접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저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신경숙 표절 파문'과 유사한 사건으로 묘사하였다.

(2)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관련 판결은 이 사건 서적의 일부가 기존 서적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내용인 점, 위 부분은 '신경숙 표절 파문'에 이어 또다시 표절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취지에

지나지 아니하고, 원고 B가 직접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표현하고 있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위 부분이 허위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고, 모욕적인 표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위법성 조각사유의 존재 여부

1) 이 사건 허위 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에 관하여

가) 피고들의 주장

위 보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하므로 위법성이 없다.

나) 관련 법리

언론 보도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보도되었고, 피고들이 이 부분 기사를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없다고 볼 수 있는바,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의 동기가 내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다15922 판결 등 참조),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는 적시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 표현 방법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19038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허위 보도는 출판사인 원고 회사와 그 대표이사인 원고 B에 대한 표절 의혹에 관한 것으로서, 원고들의 지위, 표절이 문제가 된 서적의 종류 등에 비추어 공익성을 인정할 수 있고, 갑 제4호증의 기재는 위와 같은 공공의 목적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2)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기사 작성의 발단이 된 관련 판결에는 원고 회사가 이 사건 서적을 출판한 데 따른 저작권 침해의 책임을 지는 것으로만 기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허위 보도의 내용을 뒷받침하는 자료는 H의 진술 뿐이나, 관련 판결의 재판 과정에서 위 진술과 배치되는 증거(I, E의 진술 등)가 제출되었던 점, 그런데도 피고 C는 다른 추가적인 자료를 통해 H의 위 진술의 신빙성 유무나 원고 B가 이 사건 저술행위에 관여한 정도에 관하여 확인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허위 보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기사는 신속한 보도를 요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피고 C는 당사자 본인을 통해 사건의 진위를 확인하는 등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어야 마땅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허위 보도는, 원고 B가 이 사건 저술행위에 관여하였다는 의혹이 있다는 점을 밝히고 이를 뒷받침하는 H의 진술 등을 소개하는 등의 합리적인 방법이 아니라, 제목 등을 통하여 독자들로 하여금 원고 B가 이 사건 저술행위에 직접 관여하였다는 인상을 주는 방법으로 작성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에게 이 사건 허위 보도의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기타 부분으로 인한 명예훼손에 관하여

위 부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보도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로 인하여 원고들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부분의 보도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손해배상의 범위

1) 이 사건 허위 보도로 인하여 원고들의 신용과 명예가 훼손되는 무형의 손해가 발생하였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이 배상할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ⅰ) 원고 B는 1990년대 초반부터 현재까지 출판업계에서 활동하며 출판사를 운영하고 있는바, 표절행위에 관여하였다는 사실이 알려질 경우 개인적인 명예에 치명적 손상을 입게 됨은 물론 앞으로의 활동에도 적지 않은 제약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ⅱ) 원고 회사 역시 대표자가 표절행위에 관여한 책을 출판하였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출판사업 수행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사회적 평가가 침해될 수 있는 점, ⅲ) 다만, 이 사건 기사는 출판업계의 표절 사건에 관한 판결을 소개하는 내용으로 공익적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고, 악의적으로 원고들을 비난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ⅳ) 원고 회사가 이 사건 서적을 기획하여 출판하였고, 출판 후 이 사건 서적의 일반 독자들이 기존 서적과의 유사성을 지적하는 경우가 있었던 사실에 비추어, 원고 회사의 대표자인 원고 B가 이 사건 저술행위에 관여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의혹이 제기될 여지는 있었던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그 위자료를 원고 회사에 대하여는 1,000,000원, 원고 B에 대하여는 3,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공동하여 원고 회사에게 1,000,000원, 원고 B에게 3,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기사의 보도일인 2015. 12. 10.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6. 3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1〉 정정보도문

제목: 아동 역사서 표절 보도 관련 정정보도문

본문: 본 인터넷신문은 2015년 12월 10일 문화면에 「이번에는 한국출판인회의 회장이 아동 역사서를 표절?」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으나, 위 기사에는 한국출판인회의 회장인 주식회사 A의 B 대표이사가 고의적으로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한 듯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으므로, 해당 기사를 바로잡습니다. 끝.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7. 7. 선고 2015가합3601 판결

일반에 개방되어 있는 교회에 관리자의 출입 제한 조치 없이 들어가 취재 사실을 숨기고 촬영한 것은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 원고 : A(선정당사자) 외 100명
- 피고 : 주식회사 에스비에스 외 3명

[사실관계]

피고들은 2015년 3월 13일자 〈궁금한 이야기Y〉 프로그램(제253회)에서 「기적을 파는 교회, 목사에게 돈이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유명목사인 원고 A가 신도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고 있다는 제보 및 위 제보에 대한 진위 여부를 밝히려는 취재 요청을 거부하고 있다는 내용을 방송하였다. 피고는 취재 과정에서 제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피고 소속 직원을 신도로 가장하여 취재 사실을 숨기고 원고 A를 만나 비밀리에 면담과정을 촬영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취재 행위의 위법성 및 명예훼손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심리 결과, 1심 법원은 위 취재행위가 건조물침입 및 퇴거불응죄 등에 해당하지 않고, 달리 위법성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방송 내용의 중요 부분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한다고 보아 명예훼손의 위법성을 조각하였다. 한편, 원고들 중 방송에 언급되지 않은 신도들(선정자 98명)의 당사자 특정을 부인하였던바, 결국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들이 항소했으나, 2심 법원 역시 항소 기각했으며(서울고등법원 2016나2051505), 이후 대법원도 원고들(A 외 2명, 위 신도들 98명 제외)의 상고를 기각해 위 판결이 확정됐다(대법원 2017다2166910).

[판결요지]

□ **비밀 취재 행위의 위법성에 관한 판단**

비밀 취재 행위가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건조물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건조물에 들어간 행위가 거주자나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감행된 것인 경우에만 성립하는바(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2595 판결 등 참조),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교회는 일반에 개방되어 있는 장소로 보이는 점, 피고 소속 직원이 이 사건 교회에 출입할 당시 그 관리자로부터 출입 제한 등의 조치가 있지는 않았고, 원고 A가 당시 피고들의 취재행위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를 밝힌 바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소속 직원이 이 사건 교회 관리자의 명시적 ·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교회에 침입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판결문

사 건	2015가합3601 손해배상
원 고	A(선정당사자) 외 100명
피 고	1. 주식회사 에스비에스 2. B 3. C 4. D
변론종결	2016. 6. 23.
판결선고	2016. 7. 7.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1에게 500,000,000원, 원고 2 내지 13에게 각 50,000,000원, 원고 13 내지 101에게 각 2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3. 1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A(원고 1)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산하 ○○세계선교교회(이하 '이 사건 교회'라고 한다)의 담임목사이자 △△기도원의 원장으로, GOOD-TV 기독교 방송 설교를 비롯한 각종 강연을 통하여도 활발한 목회 활동을 수행하여 왔고, 시사경제매거진 연합매일신문사로부터 '2014 대한민국 의정 대상 대한민국 인물대상'에서 사회공헌부문 대상, 종교 공로부문 대상을 수상하는 등 기독교 분야 인사로서의 다양한 수상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위클리피플닷컴 선정

'대한민국을 빛내는 한국인'에 선정되기도 하는 등 활발한 종교 · 봉사 활동으로 언론으로부터도 주목받는 인물이다.

2) 원고 E(원고 2)는 원고 A의 남편이자 위 교회의 부목사이고, 원고 F(원고 11)는 위 교회의 전도사이며, 나머지 원고들은 위 교회의 전도사, 장로 내지 신도들이다.

3) 피고 주식회사 에스비에스(이하 '피고 SBS'라고 한다)는 방송사업 및 문화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며 시사고발 프로그램인 '궁금한 이야기 Y'를 제작 · 보도하는 지상파 방송사이다. 피고 B와 피고 C는 원고 A, 원고 E 등과 관련한 '궁금한 이야기 Y'(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 한다)를 제작한 피고 SBS 제작본부 소속 프로듀서(피고 B는 메인PD, 피고 C는 촬영감독)이고, 피고 D는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제작 과정에 참여한 피고 SBS 제작본부 소속 직원이다.

나. 원고 A의 사기행위

1) G의 아들인 H는 2001년경 교통사고로 머리를 다쳐 간질병을 앓고 있었는데, G는 2011. 7.경 우연한 기회에 이 사건 교회의 집회에 참석하였다가 원고 A의 설교에 감화를 받고 이 사건 교회의 신도가 되었고, 원고 A에게 H 등 G의 가족과 관련한 고민사항을 털어놓았다.

2) 원고 A는 G가 유산으로 1억 원 상당의 예금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2011. 7. 18.경 이 사건 교회에서, H의 간질병을 고쳐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G에게 '친정어머니의 속에 있는 큰 귀신이 아들의 척추에 바늘을 박아놓고 그 귀신이 조정을 하여 아이가 간질발작을 일으키는 것이다. 그것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나밖에 없다. 아무 때나 기도를 하는 것은 아닌데 기도를 받고자 하면 값을 치르고 옥합을 깨라. 아들 병을 고치려면 돈을 내야 한다. 우리 하나님은 싸구려가 아니다. 자식이냐 돈이냐'라고 말하고 기도로써 H의 병을 고쳐줄 것처럼 행세하면서 G를 속인 후, 이를 믿은 G로부터 2011. 7. 20.경 6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2012. 8. 2.경까지 6차례에 걸쳐 합계 7,1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관련 재판

1) 원고 A의 사기죄에 대한 형사판결

원고 A는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2014. 6. 11.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177호)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이에 원고 A가 같은 법원(2014노2216호)에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14. 10. 23. 위 항소를 기각하였다. 원고 A는 대법원(2014도15300호)에 상고하였으나 2015. 3. 20.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위 사기죄가 확정되었다.

2) 원고 A와 G 사이의 민사재판

가) 한편, 위와 같이 원고 A에게 속은 G는 원고 A에게 2012. 11. 27.부터 2014. 3. 27.까지 G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하였고, 원고 A는 위 카드로 약 1,800만 원 상당의 대금을 결제하였다.

나) G는 2014. 4.경 원고 A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2014가단518149호)에 원고 A의 사기행위로 입은 위 편취금원 및 위 카드대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5. 2. 10. 원고 A가 위 형사재판 과정에서 G에게 합계 2,500만 원을 반환하였음을 인정한 후, 원고 A로 하여금 G에게 약 6,4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다. 원고 A가 이에 불복하여 같은 법원(2015나7999호)에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15. 7. 25. 화해권고결정을 하였는데 원고 A와 G가 이에 이의하지 않아 위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라. 이 사건 프로그램의 취재경위

1) G 등의 제보

가) 원고 A의 사기죄에 대한 위 항소심 판결이 선고된 후, G는 피고들에게 원고 A가 자신이 가진 특별한 영적 능력으로 H의 병을 고쳐주겠다고 G를 속여 G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사기죄의 유죄판결이 선고되었다는 사실을 제보하였고, 피고들은 원고 A에 대한 취재를 시작하였다.

나) G는 피고들에게 자신 외에 몇몇 피해자들이 더 있다고 말하면서 그 피해자들과의 통화 내용이 녹음된 파일을 건네주었고, 원고 A에게 돈 있는 사람들을 소개하는 부부가 있다고도 말하였다. 피고들은 G가 말한 위 부부를 찾아가 사실 여부를 확인하였는데, 위 부부는 자신들도 한 때 이 사건 교회의 신도였고, 원고 A에게 특별한 영적 능력이 있다고 착각하여 송사, 중매 등으로 고민하는 부유한 사람들을 원고 A에게 소개하였으며, 그 사람들은 원고 A에게 속아 큰 돈을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2) 피고들의 비밀 취재

가) 당시 원고 A는 대외적으로 자신의 사기혐의를 부인하고 유죄를 선고한 위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이에 대한 상고심 재판이 계속되어 있었고, 원고 E는 위 형사재판에서 증언하였던 일부 제보자들에게 전화하여 '고소하겠다, 잠깐 만나자'는 등의 말로 증인들을 회유하려 시도하고 있었으며, G 등 제보자들은 피고들에게 원고 A가 비밀스럽게 돈 이야기를 꺼낸다는 말을 하였는바, 피고들은 위와 같은 제보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일단 취재 사실을 숨기고 이 사건 교회의 신도로 가장하여 원고 A를 만나보기로 계획하였다.

나) 피고 D는 2015. 2. 26.경 카메라를 숨기고 이 사건 교회를 찾아 남편이 외도를 하고 있고, 딸이 불치병을 앓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이 사건 교회의 전도사(원고 F)에게 원고 A와의 개인면담을 요청하였다. 위 면담요청 과정에서 원고 F와 피고 D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대화를 주고받았다.

피고 D : 혹시 목사님 만나 뵐 수 있어요?
원고 F : 힌트만 드릴게 힌트만, 상담예물 준비하셔야 해요.
피고 D : 상담예물?
원고 F : 응. 감사 헌금 식으로. 어른을 뵈러 왔는데.
피고 D : 상담 헌금은 얼마나 내야 되는 거예요?
원고 F : 얼마라 정해진 건 없어요. 최하 3만 원 하죠.
피고 D : 최하 3만 원?
원고 F : 네

다) 피고 D는 원고 A와의 개인면담 장소에 들어가 원고 A에게 5만 원을 넣은 봉투를 건네며 아이가 아파서 고민이라고 말하였다. 위 면담 장소에는 원고 A 외에 이 사건 교회의 청년전도사가 있었고, 위 면담 과정에서 원고 A, 청년전도사, 피고 D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대화를 주고받았다.

원고 A : 일반 교회랑 달라서 우리 기도원은 병원으로 보면 되요. 애가 밤중에 막 아파 죽겠으면 얼른 데리고 오잖아, 예를 들면? 내가 기도해주면 즉시 안 아파요
피고 D : 아 그래요?
원고 A : 네. 난 영적으로 볼 수 있거든요. 보이지 않는 마귀 새끼들, 영의 세계 귀신들이 다 붙었어요 지금 이 집안에. 이건 병원으로 못 고쳐요. 의학적으로 못 고쳐요. 귀신을 쫓아 줘야 해요. 이해되세요? 귀신 병이에요 다. 내가 있으면 귀신들이 못 건드려요.
(청년전도사가 그림 한 장을 들고 나타난다)
피고 D : 이게 뭐예요?
원고 A : 환상 본 것을 이야기 해줄 거예요.
청년전도사 : 이게 뭐냐 하면 성도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걸 그림으로 옮겨 그린 건데요. 성도님이 길가에 쭈그려 앉아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상태인데, 불이 피어있는데, 성도님을 해하는 영이 하나 달라붙은 거예요.
원고 A : 보이지 않는 귀신들이 지금 장난한다는 거예요. 귀신이 하나 붙어서 성도님한테 붙어가지고.
피고 D : 저한테요?
원고 A : 네. 옆에서 계속 지금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들이 이 난리를 하니까 이건 의학적으로 못 고칩니다. 세상 병원에서 이런 건 안 고쳐지는 거예요. 어차피 세상에서도 아이 살리려면 병원비 줘야 되거든, 그렇죠?
피고 D : 네

원고 A : 그것도 병원에서 낫는다는 보장도 없고 그럴 바에는 하나님께 맡기세요. 목사님을 믿어야 하는 거야. 의사 믿듯이 나를 믿으면 내가 귀신과 싸우는 거예요. 내가 사기를 치겠어요 뭘 하겠어요? 쉽게 표현해서 나 부자예요. 100억이나 벌어 놨어 여기 일단 기사 봐봐. 나라에서 상을 네 개나 탔어. 나눔 실천 대상. (중간 생략) 근데 지금 나랑 우리 자매님 아무 상관없잖아요. 마귀가 나한테 그러지 '너 뭔데 너 이사람 하고?' 내가 '손 떼라 마귀새끼야!' 하면 '너 뭔데? 이 여자랑 상관없는데 왜 xx이냐' 이렇게 해요. 근데 우리 자매님이 믿음으로 내 속에 하나님이 역사 해줄 것을 믿고 믿음으로 생명 같은 돈으로 계약했다. 그러면 이제 내 성도다 내 새끼다. '내 새끼다. 손 떼라!'하면 손 떼요. 그 작은 돈 때문에 내 위치가 있고 명예가 있는데 뭔 짓거리를 하려고 약속을 함부로 하겠어요. 내가 우리 자매님 앞에 거짓말하면 내가 즉사해서 죽을게 하나님 앞에. 안타까워서 그래, 불쌍해서...

라) 피고 D는 위 면담이 끝난 후 및 그 다음 날 이 사건 교회의 저녁 집회에 참석하여 원고 A의 설교 모습을 촬영하였다. 위 설교 과정에서 원고 A는 '예수 믿는 것은 너무 쉽다. 무당이 신 받아야 작두 타는 것처럼 하나님의 신 받는 것이다.', '우리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병자를 고치는 목사로 유명해졌다. 하나님이 지금 내 시대가 온 것을 알려주시고, 3월 달부터는 세상에서 고칠 수 없는 희귀병, 불치병, 귀신병, 다시 말해 의사가 치료할 수 없는 병을 고치는 영적 병원을 오픈한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마) 피고 D는 2015. 2. 27.경 원고 F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위 통화 과정에서 원고 F와 피고 D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대화를 주고받았다.

피고 D : 여보세요?
원고 F : 어. 자매님 어제 내가 힌트를 줬잖아요, 처음에. 무당집에 가서 굿을 해도 돈 몇 천씩 가져가잖아요. 어제 왔던 평택 권사님도 6개월도 못산다고 했는데 그 치료비를 하나님께 다 드리고 지금 살아 가지고 지금 좋아요. 그분도 한 장 가까이 했을 거예요.
피고 D : 한 장이면 얼마?
원고 F : 한 1억 가까이 됐을 거예요. 한꺼번에 다 하는 게 아니고 계약금 내고 좀 좋아지면 또 하고 그렇게 세 번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3) 피고들의 원고 A에 대한 인터뷰 요청

가) 피고 B와 피고 C는 G 등의 제보 내용 및 위와 같은 취재 내용에 대한 원고 A의 입장을 들어보기 위하여 2015. 3. 1. 10:10경 이 사건 교회로 원고 A를 찾아가 인터뷰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외부 집회에 나가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 A를 만나지는 못하였고, 다만 그 자리에 있던 원고 E 등은 위 피고들에게, ① 원고 A는 자신에게 병을 고치는 특별한 영적 능력이 있다고 말한 바가 없고, ② 원고 A에게 사기죄가 선고된 것은 G 등 증인들이 재판

에서 위증을 했기 때문이며, ③ 원고 A는 현재 G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여 재판 중에 있고, ④ G가 자발적으로 헌금을 한 후에 이를 돌려받을 목적으로 원고 A를 사기죄로 고소하여 자신들도 억울한 상황에 놓였다며 조만간 피고들의 인터뷰 요청에 응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나) 다음 날 16:30경 위 피고들은 원고 A를 인터뷰하기 위하여 이 사건 교회를 찾아가 위 교회의 열려 있는 정문을 통하여 교회 건물 안까지 들어가 원고 E 등을 만났는데, 원고 E는 G 등의 제보사실을 부인하고 원고 A에 대한 형사판결이 상고심에 계속 중이라고 말하며 위 피고들의 인터뷰 요청을 거절하였고, 일부 신도들은 피고 C에게 촬영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카메라를 손으로 막아섰다. 이에 위 피고들은 이 사건 교회 밖으로 나오게 되었는데, 원고 측은 위 피고들의 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교회의 업무가 방해되었다며 위 피고들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위 피고들에게 경찰을 불렀으니 돌아가지 말고 기다리라고 말하였다. 이에 위 피고들은 이 사건 교회의 마당에서 경찰을 기다렸고, 위 신고를 받은 경찰관 2명이 이 사건 교회에 도착하자 원고 A도 이 사건 교회의 마당으로 나와 위 경찰관들에게 신고 경위를 설명하였으며, 위 피고들도 경찰관들에게 취재 경위를 설명한 후 경찰관들과 함께 이 사건 교회에서 나오게 되었다. 위 피고들은 위와 같이 경찰관들에게 경위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원고 A에게 G 등의 제보 내용에 대한 입장을 물었으나 원고 A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는 않았다.

다) 위 피고들은 2015. 3. 6. 11:30경 원고 A와의 인터뷰를 요청하기 위하여 이 사건 교회에 찾아갔으나, 이 사건 교회의 정문은 닫혀 있었고 거기에는 피고 SBS의 출입을 금지한다는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었다. 피고 B는 이 사건 교회의 문 너머로 원고 F와 청년전도사를 발견하고 그들에게 피고 D의 비밀 취재 과정에서 주고받았던 대화 내용의 진위 여부를 물었으나 원고 F 등은 해당 대화 사실을 모두 부인하였다.

라) 위 피고들은 2015. 3. 8. 10:00경 이 사건 교회에 찾아가 위 교회의 정문 밖에서 원고 E에게 원고 A와의 인터뷰를 요청하였으나, 원고 E 및 이 사건 교회의 신도들 수인은 피고들에게 촬영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피고 B와 피고 C를 밀치고 피고 C로부터 카메라를 빼앗는 등으로 물리력을 행사하였다. 피고 B는 그 과정에서 원고 E 및 이 사건 교회의 신도들에게 G 등의 제보 내용에 대한 원고 A의 입장을 물었으나 그에 대한 답변을 듣지는 못하였다.

마. 이 사건 프로그램의 방영

1) 피고들은 위 라항 기재와 같은 취재 과정 및 취재 내용을 촬영한 영상을 편집하여 이 사건 프로그램을 제작하였다. 피고들은 위 과정에서 촬영된 모든 사람들의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하고, 목소리를 변조하였으며, 이름은 가명을 쓰거나 성만을 표시하였다. 다만, 원고 A와 원고 E의 경우 위 원고들의 성을 표시하며 각각 목사와 부목사라고 표현하였다.

2) 피고 SBS는 2015. 3. 13. 20:55경부터 21:45경까지 약 40분 동안 '기적을 파는 교회, 목사

에게 돈이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이 사건 프로그램을 방영하였다.

3)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전체 내용은 별지 2 '궁금한 이야기Y 제253회 방송내용 녹취록' 기재와 같다.

바. 원고 E의 피고 B에 대한 형사고소

1) 이 사건 프로그램이 방영된 이후, 원고 E는 피고 B가 이 사건 프로그램의 취재 과정에서 원고 측의 주거 및 건조물에 침입하고 퇴거요구에 불응하였고, 원고 측의 예배를 방해하였으며, 이 사건 프로그램의 방영을 통해 원고 측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 B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형사고소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위 검찰청은 2016. 3. 4. 피고 B에 대하여 명예훼손,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주거침입, 퇴거불응, 예배방해의 각 혐의에 관하여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건조물침입의 혐의에 관하여는 범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 불기소처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취재과정의 위법성에 관하여

1) 예배방해 여부에 관하여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 B 및 피고 C는 2015. 3. 1.(일요일) 10:10경, 2015. 3. 2.(월요일) 16:30경, 2015. 3. 6. 11:30경 및 2015. 3. 8.(일요일) 10:00경, 원고들이 주일예배(10:30경 시작) 및 월요예배(19:00경 시작)의 준비에 여념이 없던 시간에 갑자기 원고 A에 대한 인터뷰를 요청하며 카메라를 들고 이 사건 교회를 찾아와 큰 소리를 내고 출입문을 점거하는 등으로 원고들의 예배준비행위를 방해하였는바, 이는 형법상 예배방해죄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예배방해죄는 공중의 종교생활의 평온과 종교감정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예배 중이거나 예배와 시간적으로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준비단계에서 이를 방해하는 경우에만 성립한다(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도5296 판결).

(2) 피고 B 및 피고 C가 2015. 3. 1.(일요일) 10:10경, 2015. 3. 2.(월요일) 16:30경, 2015. 3. 6. 11:30경 및 2015. 3. 8.(일요일) 10:00경 이 사건 교회에 찾아가 원고 A에 대한 인터뷰를 요청한 사실, 위 피고들의 2015. 3. 2. 취재요구에 대해 원고 측이 이를 업무방해로 경찰에 신고한 사실, 위 피고들의 2015. 3. 8. 취재요구 과정에서 원고 측 교인들과 위 피고들 사이에 물리적인 충돌행위가 발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3)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위 피고들이 이 사건 교회를 찾아간 위 각 시점에 이 사건 교회에서 예배가 진행 중이었다거나 예배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준비행위가 행하여지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별다른 증거가 없는 점, ② 위 피고들은 2015. 3. 1. 원고 E 등으로부터 원고 A가 외부 일정이 있으니 다음에 오라는 말을 듣고 인터뷰 요구를 종료하고 돌아간 점, ③ 위 피고들은 2015. 3. 2. 원고 E 등의 취재거부 의사를 듣고 별다른 저항 없이 이 사건 교회에서 빠져나왔고, 원고 측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을 기다리다 그들과의 대화를 마친 후인 18:00경에는 인터뷰 요구를 종료하고 돌아간 점(원고들의 예배시작시간은 당일 19:00이다), ④ 위 피고들의 2015. 3. 6. 및 2015. 3. 8. 인터뷰 요구 행위는 이 사건 교회의 내부로는 들어가지 않은 채 위 교회의 정문 밖에서 교회 건물의 외관을 촬영하고, 위 정문 너머로 원고 E, 원고 F 등과의 대화를 시도한 것에 그친 점, ⑤ 2015. 3. 8.자 위 피고들과 원고 측 신도들 사이의 물리적 충돌은 이 사건 교회의 외부에서 벌어졌을 뿐만 아니라 위 피고들은 원고 측 신도들의 물리력 행사에 대하여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거나 이를 소극적으로 방어하는 데에 그친 점, ⑥ 위와 같은 각 취재요청의 과정에서 위 피고들이 이 사건 교회에서 예배 등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을 만한 별다른 정황은 보이지 않았고, 위 피고들의 인터뷰 요청으로 인하여 이 사건 교회의 내부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 예배 등 행위에 영향을 끼칠 정도로 근접한 거리에서의 큰 소란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위 피고들이 수차례 이 사건 교회에 찾아가 원고 A와의 인터뷰를 요청하였고 그 과정에서 경찰신고나 원고 측 신도들과 사이의 물리적 충돌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위 피고들이 원고들의 예배행위를 방해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건조물침입 및 퇴거불응 여부에 관하여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교회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 D로 하여금 2015. 2. 26.경 및 2015. 2. 27.경 취재 목적을 숨기고 이 사건 교회 건물에 침입하여 원고 A 등을 촬영하게 하였고, 원고 A 등이 피고들의 취재 요청을 명시적으로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2015. 3. 1.경부터 2015. 3. 8.경까지 매일 이 사건 교회 건물에 들어와 상당 시간 동안 머물며 원고 A 등의 퇴거요청에도 응하지 않았는바, 피고들은 명시적·묵시적으로 원고들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교회 건물에 들어왔거나 이 사건 교회 건물에서의 퇴거에 불응함으로써 종교생활을 목적으로 하는 이 사건 교회 건물의 평온을 해하였으므로, 이는 형법상 건조물침입 및 퇴거불응죄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건조물침입 및 퇴거불응의 성립 여부

(가) 먼저 피고들의 2015. 3. 1.부터 2015. 3. 8.까지의 원고 A에 대한 인터뷰 요청 행위가 건조물침입 및 퇴거불응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 B 및 피고 C가 2015. 3. 1.경, 2015. 3. 2.경, 2015. 3. 6.경 및 2015. 3. 8.경 이 사건 교회에 찾아가 원고 A에 대한 인터뷰를 요청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앞서 인정한 사실에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위 피고들이 2015. 3. 1.경 및 2015. 3. 2.경 이 사건 교회에 들어가면서 위 피고들이 취재의 목적으로 이 사건 교회에 방문하였음을 명시적으로 밝혔고, 당시 이 사건 교회의 관리자로부터 위 피고들의 이 사건 교회에의 출입을 금지한다는 의사가 표시되었다는 사정은 찾아볼 수 없는 점, ② 당시 위 피고들은 원고 측으로부터의 별다른 제지 없이 이 사건 교회의 열려있는 정문을 통해 위 교회 건물로 들어갔고, 그 후에 원고 측의 취재거부 의사에 따라 별다른 저항 없이 이 사건 교회 건물 밖으로 나온 점, ③ 위 피고들이 2015. 3. 2.경 원고 측의 취재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교회의 마당에서 한 동안 머무르기는 하였으나 이는 경찰에 신고하였으니 기다리라는 원고 측의 요청에 의한 것으로서 이 사건 교회의 관리자로부터 위 피고들에 대한 퇴거의 요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위 피고들이 2015. 3. 6.경 및 2015. 3. 8.경에는 이 사건 교회의 내부로는 들어가지 않은 채 위 교회 건물의 정문 밖에서만 인터뷰 요청행위를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서 인정한 위 피고들의 인터뷰 요청행위만으로 위 피고들이 이 사건 교회건물에 침입하였다거나 이 사건 교회건물 관리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다음으로 피고 D의 비밀 취재 행위가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건조물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건조물에 들어간 행위가 거주자나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감행된 것인 경우에만 성립하는바(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2595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교회는 일반에 개방되어 있는 장소로 보이는 점, 피고 D가 이 사건 교회에 출입할 당시 그 관리자로부터 출입 제한 등의 조치가 있지는 않았고, 원고 A가 당시 피고들의 취재행위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를 밝힌 바도 없는 점(피고 B 및 피고 C가 2015. 3. 1. 원고 A를 찾아갔을 당시 원고 E 등은 조만간 입장을 정리하여 취재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취하기도 하였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D가 이 사건 교회 관리자의 명시적·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교회에 침입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위법성의 조각 여부

(가) 설령, 피고 D가 비밀 취재의 목적으로 이 사건 교회에 들어간 것이 건조물침입 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은 예비적으로 피고 D의 비밀 취재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도5077 판결,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3도5798 판결 등 참조).

(다)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들은 사회적으로 저명인사에 해당하는 원고 A가 종교행위를 빙자하여 G를 비롯한 신도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있다는 제보의 진위 여부를 밝히고, 이와 같은 사실을 공중에 고발함으로써 추가적인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공익적인 목적으로 이 사건 비밀 취재행위에 나아갔는바, 그 행위의 동기 및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점, ② 이 사건 취재 당시 원고 A는 대외적으로 자신의 범죄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면서 무죄를 주장하고 있었고, 원고 A의 남편인 원고 E는 원고 A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증언을 마친 제보자들과 접촉하여 그들을 회유하려고 시도하고 있었으며, G 등 여러 제보자들에 따르면 원고 A는 비밀리에 피해자들에게 금원을 요구한다는 것이었으므로, 피고 D가 원고 A 등과 개인적으로 접촉하는 것 외에는 제보 사실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다른 마땅한 방법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 D가 원고 A의 예배행위 및 원고 A와의 면담과정을 직접 경험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공익, 즉 원고 A 등에 의한 범죄행위의 진위 여부를 밝히고 이를 통해 추가적인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이익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는 반면, 이 사건 교회의 예배당은 누구라도 자유롭게 출입하여 예배할 수 있는 곳이고, 위 교회의 면담장소 역시 누구라도 면담을 신청하는 경우 별다른 조건 없이 출입이 가능한 곳으로 보여 이를 순수하게 사적인 영역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피고 D는 이 사건 교회에 처음으로 예배를 드리러간 당일 면담을 신청하여 원고 A와 면담을 가졌다), 그 밖에 피고 D가 취재 목적을 숨긴 채 이 사건 교회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이 사건 교회의 사실상의 평

온이 훼손되었음을 인정할 별다른 근거가 없는 점, ④ 원고 A의 사회적 영향력과 이 사건 교회의 규모 및 취재 당시의 운영 현황 등을 고려하였을 때, 원고 A의 사기 혐의에 대한 진위 여부를 신속히 밝혀 추가적인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사회적 필요성도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들의 위 비밀 취재 행위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결국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취재 거부 의사에 반하는 등 위법한 취재행위인지 여부에 관하여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 B 및 피고 C는 원고 A 등이 취재 거부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교회에 찾아와 몇 시간 씩 원고 측 교인들을 괴롭히고 이 사건 교회의 모습을 촬영하였으며, 이 사건 교회의 정문을 점거하고 고함을 치는 등 원고 측의 취재 거부 의사에 반하여 막무가내로 위법한 취재행위를 감행하였다.

나) 판단

원고들이 2015. 3. 2.경 및 2015. 3. 6.경 피고 B 및 피고 C의 인터뷰 요청을 거부하고 이 사건 교회의 정문에 피고 SBS의 출입을 금한다는 안내문을 부착하여 피고들의 인터뷰 요청에 대한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그 후 피고들은 2015. 3. 8.경 한 차례 이 사건 교회에 찾아갔을 뿐 달리 피고들이 원고들의 취재 거부 의사에 반하여 위법한 취재행위를 상당 기간 계속하였다거나 피고들이 이 사건 교회에 찾아와 몇 시간 씩 원고 측 교인들을 괴롭히고 이 사건 교회의 정문을 점거하고 고함을 치는 등으로 위법한 취재행위를 감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들의 인터뷰 요청행위는 원고 A으로부터 그 사기 혐의와 관련한 입장을 듣기 위한 취재행위임과 동시에 원고 A에게 피고들이 기획 중인 이 사건 프로그램에 대한 반론의 기회를 부여하는 성격을 아울러 가지고 있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앞서 인정된 사실만으로 피고들이 위법한 취재행위를 감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들에 대한 명예훼손에 관하여

1) 이 사건 방송의 전체적인 내용

제보자 G는, 자신의 아들 H의 간질을 고쳐줄 수 있다는 이 사건 교회의 담임목사 원고 A의 말에 속아 원고 A에게 7,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그 후에도 H의 병은 낫지 않았고, G는 원고 A를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다. 1심 법원과 항소심 법원은 원고 A에게 유죄(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원고 A가 상고하여 현재 위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G 이외에도 가정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거나 병을 고쳐주겠다는 말에 속아 원고 A에게 거액을 지급한 다른 신도들이 많이 있다. 피고 D가 비밀리에 이 사건 교회의 예배당과 원고 A와의 면담과정을 촬영하였는데, 원고 F는 원고 A와의 면담 전에 '상담 예물'을 요구하였고, 원고

A는 면담과정에서 '병이 낫고 싶다면 돈을 내야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들은 위와 관련한 진실을 규명하기 위하여 수차례 이 사건 교회를 찾아가 원고 A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으나 원고 E 등 원고 측 교회는 취재를 거부하였고, 급기야 제작진인 피고들에게 폭력까지 행사하며 취재를 막았다.

2) 원고들의 특정 여부

가)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 그 특정을 할 때 반드시 사람의 성명이나 단체의 명칭을 명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거나 또는 두문자나 이니셜만 사용한 경우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이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213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피고들이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제작 과정에서 촬영된 모든 사람들의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하고 목소리를 변조하였으며, 이름은 가명을 쓰거나 성만을 표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 A, 원고 E, 원고 F(이하 위 원고들을 포괄하여 '이 사건 원고들'이라 한다)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자신들이 이 사건 교회의 신도 등이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 이 사건 프로그램에 자신들이 방영되었는지 여부 및 자신들과 이 사건 프로그램이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별다른 주장·입증을 하고 있지 아니한바, 이 사건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이 사건 프로그램으로 인한 피해자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명예훼손으로 인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다) 다음으로 이 사건 원고들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 A의 사회적 지위와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전체적인 내용상 이 사건 교회가 ○○세계선교교회임이 특정되며, 이 사건 프로그램에서 원고 A는 목사로, 원고 E는 원고 A의 남편이자 부목사로, 원고 F는 전도사로 각 그 지위가 표현되고 있고, 위 원고들이 이 사건 교회에서 수행하는 실질적인 역할과 위 원고들 사이의 관계 등이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전체적인 내용에 비추어 특정될 수 있는바, 비록 위 원고들의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하고 목소리를 변조하였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위 원고들의 지인이나 주변인들은 이 사건 프로그램이 위 원고들에 관한 것임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원고들은 피해자로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다(한편 이 사건 원고들은 피고들의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제작·방영으로 인하여 자신들의 초상권이 침해되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들이 위 원고들의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하고 목소리를 변조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원고들의 지인들이 이 사건 프로그램에서 위 원고들을 특정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원고들의 초상 자체를 인식함으로 인한 것이라기보다는 이 사건 프로그램에 나오는 이 사건 교회의 전경, 이 사건 프로그램의 자막 등으로부터 알 수 있는 위 원고들의 지위 등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인식함으로 인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는바,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제작·방영으로 위 원고들의

초상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명예훼손의 성립 여부

가) 언론의 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란 반드시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할 것은 아니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족하고, 텔레비전 방송보도의 내용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지의 여부는 당해 방송보도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시청자가 보통의 주의로 방송보도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보도 내용의 전체적인 흐름, 화면의 구성방식,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와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보도 내용이 시청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그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213 판결).

나) 앞서 본 이 사건 방송의 전체적인 내용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들은 이 사건 프로그램을 통하여, 원고 A가 종교적인 치유행위를 빙자하여 G로부터 금전을 편취하였고, 원고 F는 원고 A의 위와 같은 위법한 행위에 가담하고 있으며, 이러한 행위에 대한 진위 여부를 밝히려는 피고들의 취재 요청을 이 사건 원고들이 묵살하고 있다는 내용을 방영한 것인바, 이는 이 사건 원고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이 사건 프로그램 제작·방영행위로 이 사건 원고들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4) 허위사실의 적시 여부

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되려면 적시된 사실이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는데, 그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그 허위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5다58823 판결,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6다4527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원고들은 이 사건 프로그램에 대하여 아래 표 '이 사건 원고들 주장의 요지'란 기재와 같이 허위사실을 적시한 부분이 있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을 기초로 한 아래 표 '판단'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프로그램은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므로, 이 사건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5) 위법성의 조각 여부

이 사건 원고들 주장의 요지	판단
① 피고들은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제목을 '기적을 파는 교회. 목사에게 돈이란 무엇인가'라고 정함으로써 이 사건 프로그램을 정확히 시청하지 않은 많은 시청자들에게 원고 A가 '과학적으로 있을 수 없는 기적을 일으키겠다고 하여 돈을 받은 목사'라는 선입견을 갖게 하였다.	① 원고 A는 병원에서 치료할 수 없는 H의 병을 자신이 치료할 수 있다고 G를 속여 금원을 편취하였고(위 행위에 대하여 사기죄를 선고한 형사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 D와의 면담과정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하며 금원을 요구하였는바, 피고들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일반 시청자들로 하여금 원고 A에 대한 선입견을 갖도록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② 피고 D는 이 사건 교회의 신도로 위장하여 이 사건 교회에 잠입한 후 원고 A와의 면담을 자청하는 과정에서 원고 F에게 '상담 헌금'이라는 단어를 만들어 사용하면서 의도적으로 원고 F로 하여금 금액을 말하도록 유도하는 등 작위적인 연출을 한 뒤 이를 마치 이 사건 교회에서 통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일인 양 편집하여 방영하였다.	② 원고 F가 먼저 피고 D에게 '상담예물', '감사 헌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고, 이에 피고 D가 '상담 헌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얼마를 준비해야 하는지 여부를 되묻게 된 것인바, 이를 두고 피고 D가 의도적으로 원고 F로 하여금 금액을 말하도록 작위적으로 연출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들이 위 면담과정을 1회 촬영한 후 이를 이 사건 프로그램을 통하여 방영한 것만을 가지고 위와 같은 상황이 이 사건 교회에서 통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일인 양 편집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설사 그렇게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 F는 피고 D에게 상담 헌금을 통상 3만 원씩은 한다고 말한 점, 원고 A가 별다른 의문을 제기함이 없이 피고 D로부터 상담 헌금이 든 봉투를 자연스럽게 수령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상황이 이 사건 교회에서 통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일이 아니라고 보기도 어렵다.
③ G는 피고 D가 무단침입하여 불법 촬영을 한 이 사건 교회(○○ 교회)가 아니라 ×× 교회에 다녔던 신도로서, G 및 그 아들인 H와 관련된 내용은 모두 ×× 교회에서 이루어진 일인바, 피고들은 ○○ 교회의 전경을 촬영하여 방송에 내보냄으로써 G 등과 무관한 ○○ 교회의 이미지에 먹칠을 하였다.	③ 이 사건 프로그램은 ×× 교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원고 A에 의하여 일어났거나 현재 일어나고 있는 행위들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제작 당시 원고 A가 이 사건 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관계로 원고 A를 취재하는 과정에서는 이 사건 교회가 촬영된 것인바, 비록 G와 이 사건 교회 사이에 관련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이 사건 교회가 아무런 이유 없이 이 사건 프로그램에 방영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④ G는 자발적 믿음의 발로로 자신이 다니던 ×× 교회에 7,100만 원을 헌금한 것이고, 원고 A를 비롯하여 그 누구도 G에게 돈을 달라, 아들의 병을 고칠 수 있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들은 G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근거로 원고 A가 G를 속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이 사건 프로그램을 제작 · 방영하였다.	④ G가 H의 간질을 고쳐줄 수 있다는 원고 A의 말에 속아 원고 A에게 7,1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위 행위에 대하여 사기죄로 판단한 형사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이 사건 원고들은 위 형사판결의 사실인정을 뒤집을만한 별다른 증거를 제출하고 있지도 아니한바, 이 사건 프로그램이 허위의 내용을 방영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 사건 원고들 주장의 요지	판단
⑤ 피고들은 G가 자신이 낸 헌금 중 2,500만 원을 돌려받아 간 사실을 알면서도 이 사건 프로그램에서 '원고 A가 G의 돈을 돌려주지 않았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방영하였다.	⑤ G가 원고 A로부터 2,500만 원을 돌려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G는 여전히 원고 A로부터 약 6,4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고들이 '원고 A가 형사재판의 상고심을 진행하며 G의 돈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고 표현한 것은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고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는 경우에 해당하고,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전체 내용상 피고들이 위와 같이 표현한 주요 취지는 G의 피해가 아직도 온전히 회복되고 있지 않다는 데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이를 두고 피고들이 허위 사실을 방영한 것으로 볼 수 없다.
⑥ 피고들은 G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근거로 이 사건 교회에서 담임 목사인 원고 A가 신도들을 상대로 허무맹랑한 염력을 내세워 거액을 편취하는 것처럼 비춰지게 하였다. 피고들은 위와 같은 효과가 배가되게 하기 위해 이 사건 프로그램에 마치 무당이 돈을 위해 염력 행각을 벌이는 것으로 보이는 재연화면을 삽입하고, 당사자의 신분을 그저 A, B, C 신도라고만 표기한 뒤 변조시킨 목소리 진술로 '거액을 뜯겼다'는 내용을 방영하였다.	⑥ 피고들은 G를 비롯한 제보자들의 진술, G와 원고 A 사이의 민사판결 및 원고 A에 대한 형사판결, 피고 D의 비밀 취재 자료 등을 근거로 이 사건 프로그램을 제작·방영한 것이고, 원고 A는 실제로 자신이 불치병, 난치병을 치유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피고 D를 속여 그에게 금원을 요구하였는바, 이 사건 프로그램 중 원고 A의 행위를 재연하는 과정에서 다소 과장된 표현방식이 사용되었다고 보이기는 하나, 이를 두고 피고들이 허위의 사실을 방영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⑦ 피고들은 위법한 취재행위를 감행함으로써 취재를 거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원고 A 등이 위와 같은 위법한 취재행위를 거절하는 모습들을 촬영하고는, 마치 원고 A 등이 진실을 숨기기 위해 피고들의 정당한 취재행위를 거부하고 있는 것처럼 이 사건 프로그램을 편집·방영하였다.	⑦ 피고들이 이 사건 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취재과정에서 위법한 취재행위를 감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이 사건 원고들이 진실을 숨기기 위해 피고들의 정당한 취재행위를 거부하고 있는 것처럼 이 사건 프로그램을 편집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가)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프로그램은 공적인 내용에 관한 것으로서 공익을 위한 것이고, 그 내용이 사실이거나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으며,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관련 법리

어떤 표현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더라도 그 표현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거나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할 것인바, 여기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을 의미하는데,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무방하고, 여기서 '진실한 사실'이라고 함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 한편, 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 표현된 내용이 사적 관계에 관한 것인가 공적 관계에 관한 것인가에 따라 차이가 있는바, 즉 당해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 사회성을 갖춘 사안에 관한 것으로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닌지 등을 따져보아 공적 존재에 대한 공적 관심사안과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 간에는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야 하며, 당해 표현이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보다 명예의 보호라는 인격권이 우선할 수 있으나,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그 평가를 달리하여야 하고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프로그램은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이 사건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어 진실성이 인정되고, 한편 ① 이 사건 교회의 담임목사인 원고 A는 기독교계에서 상당한 지위를 가지고 있고, 평소의 긍정적인 종교·봉사활동으로 지역사회에도 널리 알려진 인물이었던 점, ② 교회라는 공간은 신앙생활과 교제가 함께 이루어지는 공간으로서 지역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는바, 위와 같이 공공적 성격을 갖는 공간에서 궁박한 처지에 놓인 사람들에게 병을 치료해준다는 등의 빌미로 금전을 요구하였다는 사실은 이 사건 교회의 구조적 문제에 관한 것으로서 공중의 정당한 관심 사안에 해당하는 점, ③ 피고들은 위와 같은 이 사건 교회의 문제를 고발하고 추가적인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이 사건 프로그램을 제작·방영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제작·방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제작·방영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1〉 원고 목록 생략

〈별지 2〉 방송내용 생략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8. 17. 선고 2015가단5277893 판결

제3자의 말을 인용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더라도 간접적인 방법으로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있다면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고 1인의 진술만으로는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 원고 : A
- 피고 : B

[사실관계]

피고는 2014년 9월 14일자 및 같은 달 19일자 〈스포츠월드〉에 「잘나가던 YG, ☆☆ 폭주에 브레이크」 및 「☆☆ 사고로 더 유명해진 ○○○, 정말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각 제목으로 원고의 자동차 추돌 사고 소식을 보도하면서 음주운전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피고는 원고의 사고 직후 피고의 SNS에 목격자 진술을 인용하여 원고의 음주사실을 단정적으로 게재하였다. 이에 원고는 명예훼손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심리 결과, 법원은 목격자 1인의 진술만으로 사실관계 확인을 마쳤다고 볼 수 없고, 피고가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면책 항변을 배척하고 손해배상 700만 원을 선고하였다. 이후 원 ·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원고가 소취하하여 종결됐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나60708).

[판결요지]

□ **사실의 적시 해당성에 대한 판단**

피고는 기사에서 파티 참석자의 말을 인용해 원고의 음주운전에 대한 강한 의심을 드러내고, 이어서 그 참석자의 구체적 정황에 대한 설명까지 덧붙이고 있다. 이로 인해 기사는 제3자의 말을 인용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간접적인 방법으로 사실관계를 설명하거나 표현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글을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원고가 음주운전을 하였을 것이라는 강한 의심이 들 수밖에 없도록 하였다. 이는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 및 상당성에 대한 판단**

피고는 기자의 신분으로 사실관계를 주의 깊게 확인하여야 함에도 참석자 1인의 말만 듣고 트위터에 글을 올렸고, 다른 참석자들로부터 아무런 확인도 거치지 않았다. 의혹을 제기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할 것인데, 목격자의 진술은 부정확할 수도 있고, 착각의 여지도 있을 수 있어 목격자 1인의 진술만으로 사실관계 확인을 마쳤다고 볼 수는 없는데도 피고는 이것만으로 마치 사실인 것처럼 글을 썼다. 더욱이 피고가 쓴 기사 속의 정황사실에 대해서는 피고가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피고가 쓴 글의 내용이 진실이라는 점에 대한 증거가 없고, 피고가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근거도 부족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판결문

사　　건　2015가단5277893　손해배상(기)
원　　고　A
피　　고　B
변론종결　2016. 6. 29.
판결선고　2016. 8. 1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13.부터 2016. 8. 1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예명 ☆☆)는 주식회사 와이지엔터테인먼트(이하 YG라 한다) 소속 그룹 'C'의 멤버이고, 피고는 세계일보 자매지인 스포츠월드 소속 기자이다.

나. 원고는 2014. 9. 11. 저녁 무렵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클럽에서 열린 소속사 YG의 패션브랜드 '○○○' 출시 기념파티에 참석하였다. 원고는 파티에 참석하였다가 귀가하기 위해 2014. 9. 12. 03:30경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이촌로 347 부근 강변북로를 구리에서 일산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로 지나던 중, 과속으로 인해 왼쪽으로 굽은 도로에서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해 3차로에서 앞서 달리던 차량을 뒤에서 추돌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다. 피고는 원고의 사고 후 트위터(Twitter)에 별지1과 같은 글을 올리고, 2014. 9. 14.과 2014. 9. 19. 스포츠월드에 별지 2, 3의 기사를 게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6호증의 1, 2, 3,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명예훼손 여부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의 사고는 단순 과속에 의한 것임에도 피고는 원고가 음주운전을 했다는 확신을 갖고 스포츠월드와 트위터에 확인되지 않은 자료를 근거로 원고의 음주운전 의혹을 계속 제기하면서 원고가 음주운전을 하였음에도 경찰 수사가 미진해 밝혀내지 못한 것처럼 원고를 비방하고, 원고의 음주사실을 밝혀내지 못한 경찰과 YG가 한통속인 것처럼 취급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고 인격권을 침해하였다. 이에 원고는 위자료 5,00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한다.

2) 피고의 주장

트위터 글이나 기사는 경찰 수사나 YG에 관한 피고의 의견을 표명한 것일 뿐 구체적 사실에 대한 적시가 없으므로,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내용이 없어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트위터 글(별지 1)

트위터 글은 3건으로 나뉘어 있지만, 트위터는 올릴 수 있는 글자 수가 제한되어 있어 많은 양의 글을 한꺼번에 올릴 수가 없고, 두 번째와 세 번째 글은 첫 번째 글을 작성한 지 1시간여 만에 작성되었으며, 글의 내용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 전체를 하나의 글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두 번째, 세 번째 글의 내용은 원고에 대한 음주측정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따지는 등 경찰 수사가 미진하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피고가 첫 번째 글에서 '원고가 파티에서 술 마시는 것을 목격했다는 증언이 나왔다'고 단정적인 언급을 하고, '음주 측정에서 안 나왔다는 건 납득하기 힘들다'는 평가까지 덧붙임으로써 이후의 경찰 수사에 관한 글들은 첫 번째 글과 합쳐져서 글을 읽는 독자로 하여금 원고가 음주운전을 했음에도 경찰이 음주측정을 제대로 하지 않아 원고의 음주운전 사실을 밝혀내지 못하였다는 인상을 강하게 받도록 하였다. 그리고 경찰이 사고 현장에서 원고에 대하여 음주감지기로 음주 여부를 측정하였으나 음주 감지가 되지 않아 음주측정을 아예 실시하지 않은 것임에도(갑 제6호증의 1, 2), 음주측정 결과 어떤 수치가 나왔는지 밝히라는 취지의 글을 씀으로써 마치 경찰이 원고나 YG를 두둔하는 듯한 인상까지 주었다. 따라서 피고의 글은 단순히 경찰의 수사에 관한 의견을 표명하거나 의혹을 제기한 것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제3자의 증언의 형식을 빌려 원고에 대한 허위 사실을 적시함)를 적시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나) 2014. 9. 14.자 기사(별지 2)

기사가 '잘나가던 YG, ☆☆ 폭주에 브레이크'라는 자극적 제목을 달고 있기는 하지만, 기사에서는 원고에게 음주운전 의혹이 있다는 객관적 사실만 언급되어 있을 뿐이고, 기사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소속 가수들과 관련된 일련의 사건을 대하는 YG의 태도를 문제 삼는 것이지 원고에 대한 것이 아니다. 그 과정에서 원고의 음주운전 의혹을 제기한 것만으로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 볼 수는 없다.

다) 2014. 9. 19.자 기사(별지 3)

이 기사는 ○○○에 대한 기사로 시작하고 있다. 그런데 기사의 제목은 '☆☆ 사고로 더 유명해진 ○○○, 정말 성공할 수 있을까?'로 되어 있고, 원고의 교통사고에 관한 내용으로 기사가 마무리되고, 기사에 원고의 사진도 크게 삽입되어 있는 등 원고의 교통사고에 방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 내용을 보면, ○○○ 파티 참석자의 말을 인용해 원고의 음주운전에 대한 강한 의심을 드러내고, 이어서 그 참석자의 '행사에 참석한 YG 연예인들은 간단한 인사 후 곧바로 회사 차량을 이용해 귀가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왜 원고가 새벽에 직접 운전해 강변북로를 질주했는지 의문'이라는 내용의 구체적 정황에 대한 설명까지 덧붙이고 있다. 이로 인해 기사는 제3자의 말을 인용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간접적인 방법으로 사실관계를 설명하거나 표현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글을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원고가 음주운전을 하였을 것이라는 강한 의심이 들 수밖에 없도록 하였다. 이는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 위법성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 파티에 참석한 D로부터 원고가 술 마시는 것을 직접 보았다는 답변을 듣고, 다른 기자를 통해서 경찰이 원고에 대한 음주측정을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는 등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노력을 충분히 기울였다. 그리고 피고의 글들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고, 피고가 그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갑 제6호증의 1, 2에 의하면, 경찰이 교통사고 현장에서 음주감지기로 2회에 걸쳐 원고의 음주 여부를 검사하였으나, 음주 감지가 되지 않아 음주측정을 하지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을 제3,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가 원고의 교통사고 후 D로부터 원고가 파티에서 술을 마셨다는 말을 듣고 트위터 글을 작성한 사실, 피고가 '뉴시스' 기자를 통해 경찰이 정식 음주측정을 하지 않았음을 확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지만 피고는 기자의 신분으로 사실관계를 주의 깊게 확인하여야 함에도 참석자 1인의

말만 듣고 트위터에 글을 올렸고, 다른 참석자들로부터 아무런 확인도 거치지 않았다. 의혹을 제기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할 것인데, 목격자의 진술은 부정확할 수도 있고, 착각의 여지도 있을 수 있어 목격자 1인의 진술만으로 사실관계 확인을 마쳤다고 볼 수는 없는데도 피고는 이것만으로 마치 사실인 것처럼 글을 썼다. 피고가 다른 기자를 통해 음주측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고는 하지만, 세 번째 트위터에서 '현장에서 음주측정은 제대로 했는지 의문입니다'라고 쓴 것을 보면, 음주측정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전에 트위터 글을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가 별지 3의 기사를 작성한 것은 사고 후 1주일이 지난 시점이므로, 피고에게는 사실관계를 확인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 피고가 경찰서에 확인만 해보았어도 음주 감지가 되지 않아 음주측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피고는 아무런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원고의 음주 사실을 단정하는 취지의 기사를 썼다. 더욱이 피고가 쓴 기사 속의 정황사실(행사에 참석한 YG 연예인들은 회사 차량으로 귀가하였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피고가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피고가 쓴 글의 내용이 진실이라는 점에 대한 증거가 없고, 피고가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근거도 부족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다. 손해배상의 범위

피고는 별지 1, 3의 트위터와 기사로 인한 명예훼손 행위로 발생한 원고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다. 원고가 사고 전에 파티에 참석했던 점이나 사고 시각, 사고의 내용 등을 보면 원고의 음주운전 의혹을 제기하는 것 자체는 타당해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는 별다른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은 채 원고의 음주사실을 확신하면서 그러한 내용의 글을 썼던 점, 그밖에 피고가 글을 쓰게 된 경위와 그 내용, 원고와 피고의 직업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할 위자료를 700만 원으로 정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7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8. 13.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해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8. 17.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별지 1〉 SNS 게시글 생략
〈별지 2, 3〉 대상기사 생략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 8. 22. 선고 2015가합72705 판결

취재원이 아동인 경우 그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주의 깊은 조사가 필요하다

- 원고 : A유치원 외 1명
- 피고 : 주식회사 고양신문 외 4명

[사실관계]

피고 회사는 2015년 3월 21일자 및 같은 달 25일자 〈인터넷 고양신문〉에 「5세 여아, 흘린 음식 핥아먹고 성추행까지」 및 「유치원 성추행 의혹 축소수사 논란」이라는 각 제목으로 원고 유치원에서 성추행 및 아동학대 의혹 행위가 있었고, 피해 학부모 측이 담당 수사기관의 부실 · 축소수사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하였다. 또한 피해 학부모(피고 F)는 인터넷에 위 제보내용을 게재하였다. 이 사건 보도 및 게시물 게재 이후 원고 유치원 원생들(83명)이 자퇴했다. 그러나 성추행 및 아동학대 혐의 사건은 피해자(아동) 진술의 신빙성 결여 및 증거불충분을 사유로 각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됐다. 이에 원고들은 명예훼손 및 원생들 자퇴로 인한 재산상 손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심리 결과, 재판부는 이 사건 보도가 제3자의 말을 인용하는 전문 형태를 사용하였으나, 강한 선입견을 갖게 하는 제목과 함께 전체적으로 의혹이 진실일 개연성이 크다는 논조를 띄고 있으며, 취재원의 진술 외 피의사실을 뒷받침할 자료를 찾지 않았던바, 피고들의 위법성을 인정하여 원고 유치원에게 4,000만 원, 원고 원장에게 56,853,655원(= 자퇴 원생 반환금 16,853,665원 + 위자료 4,000만 원)을 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중 피고 회사 및 대표이사, 담당 기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은 43,454,370원이다. 이후 원 · 피고 쌍방이 항소하여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2심 계속 중이다(2016나2061724).

[판결요지]

□ **진술자가 아동인 경우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조사의무**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의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그 진술이 사건 발생시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그러한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가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 올 여지는 없었는지, 아동의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은 없는지, 진술내용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사건 · 사물 · 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등을 검토하는 등 진술을 그대로 인용하기 전 그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주의깊은 조사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 취재원 진술을 인용한 보도의 상당성에 대한 판단

취재원의 신빙성을 보완할 자료에 대한 취재는 미비한 채 만연히 취재원을 전폭적으로 신뢰하여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한 상황이라면, 피고들에게 이 사건 기사내용을 사실로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판결문

사 건	2015가합72705 손해배상 청구의 소
원 고	1. A유치원
	2. B
피 고	1. 주식회사 고양신문
	2. C
	3. D
	4. E
	5. F
변론종결	2016. 7. 7.
판결선고	2016. 8. 22.

주 문

1. 가. 원고 A유치원에게, 피고 F는 40,000,000원, 피고 주식회사 고양신문, 피고 C, 피고 D, 피고 E는 피고 F와 각자 위 돈 중 20,00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고양신문, 피고 C, 피고 D, 피고 E는 2015. 6. 4.부터, 피고 F는 2015. 6. 5.부터 각 2016. 8. 22.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나. 원고 B에게, 피고 F는 56,853,665원, 피고 주식회사 고양신문, 피고 C, 피고 D, 피고 E는 피고 F와 각자 위 돈 중 23,454,370원과 각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고양신문, 피고 C, 피고 D, 피고 E는 2015. 6. 4.부터, 피고 F는 2015. 6. 5.부터 각 2016. 8. 22.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1. 원고 A유치원(이하 '원고 유치원'이라 한다)에게, 피고 F(이하 '피고5'라 한다)는 50,000,000원, 피고 주식회사 고양신문(이하 '피고 신문사'라 한다), 피고 C, 피고 D, 피고 E(이하 순차로 '피고 2, 3, 4'라 한다)는 피고5와 각자 위 돈 중 25,000,000원과 각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B에게, 피고5는 468,101,510원, 피고 신문사, 피고2, 3, 4는 피고5와 각자 위 돈 중 234,050,755원과 각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 유치원은 고양시 ○○구 △△로 2**길 2*에 있고, 2002년 유아교육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이후 당시부터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원고 B는 원고 유치원의 대표자로서 원고 유치원 외 8개 유치원의 운영자이다. 피고5는 2014년 3월부터 2014. 10. 21.까지 원고 유치원 원생이었던 G의 어머니이다. 피고 신문사는 '고양신문'의 발행업에 종사하는 법인이고 피고2는 피고 신문사의 대표이사이자, 발행인으로 기자들이 취재한 기사 내용을 보정하거나 보도 여부를 정하거나 적절한 제목을 붙이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피고3, 4는 피고 신문사의 기자이다.

나. 피고5의 고소와 그 경위

G가 원고 유치원에 다니던 중 2014. 10. 6. G의 블라우스가 찢어진 채 집에 돌아오는 일이 발생하였다. 이에 피고5는 2014. 10. 7. G의 담임교사에게 "G가 옷이 찢어진 채 왔는데 G가 말하길 'H'가 잡아당겨서 그랬다고 한다. 1학기 때에도 스타킹의 올이 나간 적이 있는데 그것도 H가 그랬다고 한다. G가 H가 옆에 앉는다는데 H랑 떨어뜨려 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G가 2014. 10. 6. 14:45부터 15:37 사이에 원고 유치원에서 발레 수업을 받느라 위 블라우스를 벗고 발레복으로 갈아입었다가 다시 발레복을 벗고 위 블라우스를 입는 과정에서 블라우스가 찢어진 것이지 H(원고 유치원을 다니다가 2014. 12. 25.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가면서 원고 유치원에서 퇴교함)가 위 블라우스를 잡아당겨서 찢어진 것이 아니었다.

그 며칠 후 피고5는 위 교사에게 G가 눈덩이가 부어서 귀가하였다면서, "G 말에 의하면 놀면서 책상에 부딪혀서 그렇게 된 것이라 하는데 종일반 시간에 책상에 눈 부위가 부딪힌 적이 없느냐"라고 문자메시지로 수차 물었고, 담임교사는 "유치원에서는 부딪힌 적은 없다. G는 모기에 물려서 간지럽다고 했다. G가 책상에 부딪혔으면 우리가 알았을 것이고, 부딪히면 멍이 들텐데 그건 아니었다. 종일반 선생님도 G가 넘어진 적이 없다고 한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던 중 원고 유치원은 원외 공연장 방문을 2014. 10. 17.(금)에 하기로 계획하고 가정통신문과 주간안내문을 통해 피고5에게 미리 이를 알렸다. 그러나 피고5는 가정통신문과 주간안내문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그 날 예정된 출발시간보다 늦게 G를 등교시키고 나서는 담임교사에게 "미리 공지도 제대로 안 되고 통신문에도 자세한 사항 없고 선생님도 원복 얘기 외엔 없으셨고 이 얘기는 늦게 오는 아이들은 엿 먹으란 거잖아요. 정말 실망입니다. 선생님은 애들에 대한 기본적인 관심과 사랑이 없으신가 봅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원고 유치원 원장은 2014. 10. 20.(월) 이 문제로 피고5와 전화 통화를 하였고, 피고5는 담임교사에 대한 강한 불신을 표시하며 반을 옮겨달라고 요청하여 원장은 피고5에게 10월 21일부터 G를 ○○○반에서 △△△반으로 옮기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런데 피고5는 '○○○반에서의 마지막 날인 10월 20일에 ○○○반 담임교사가 G에게 나쁜 말을 해서 G가 부끄럽고 창피하여 오줌을 쌌고 젖은 팬티와 타이즈를 그대로 입고 귀가했다'라고 믿고는 2014. 10. 21. 위 담임교사에게 '당신은 교육자도 아니며 기본적인 인성을 갖춘 사람도 아닙니다. 그냥 나쁜 년입니다', '이렇게나마 내 아이가 받았을 그동안의 상처를 돌려드립니다', '웬만하시면 여러 명의 아이들 영혼까지 상처주지 마시고 다른데 가서 밥벌이하시죠. 괜한 교육자의 품위까지 땅에 처박지 마시구요'라고 비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10월 20일에 위 담임교사가 G에게 상처가 되는 말을 한 사실이 없고, △△△반으로 가게 된 G에게 친구들이 한 명씩 환송의 말을 하도록 하거나 G가 친구들이 손잡고 하는 게임을 방해하는 것에 대하여 그러지 말라고 G를 말린 사실이 있을 뿐이다.

피고5는 G와 같은 반 원생인 I의 어머니에게도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어 ○○○반 담임교사가 G에게 나쁜 말을 해서 G가 부끄럽고 창피하여 오줌을 쌌고 젖은 팬티와 타이즈를 그대로 입고 귀가했다라고 알리는 한편 그녀에게 "G가 I 준다고 가져간 스티커를 그냥 가져왔길래 물어보니 선생님이 와서 뺏어서 주지 말라고 했답니다(...)게다가 I랑 조용히 귀속말 하는데도 말도 하지 말라 했다네요"라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가 다시 I 어머니에게 2014. 10. 22. "다행히 원장선생님이 제 상황을 이해해주시고 조치를 취해주셔서 이번 일은 G를 위해 덮고 넘어가기로 했답니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5는 G와 2014. 10. 25. 다음과 같은 내용의 대화를 나누면서 이를 녹취하였는데, 아래 대화 내용에서 드러나 있듯이 피고5가 G에게 거짓말하지 말라고 말할 정도로 다소 믿기 어려운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대부분의 대화를 피고5가 주도하면서 피고5가 원하는 답변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피고5-엄마가 물어보는 것에 대하여 정확하게 얘기해 줘야 돼./ G-응

피고5-유치원에서 자는 방에 갔을 때 누가 있었어? / G-황○○, 강××, 최△△, 신□□

피고5-그 친구들 있을 때 누가 들어왔어? / G-응. 남자

G-얼굴이... / 피고5-H를 많이 닮았어? / G-응

피고5-H를 많이 닮은 어른 남자가 들어왔어? / G-응

피고5-엄마한테 사실을 말해줘야 그 아저씨 혼내줄 수 있어. 그 아저씨가 친구들한테 어떻게 했어? / G-음, 음, 헤, 헤, 헤, 왔어.
피고5-와서 막 몸을 만졌어? / G-아니, 음, 음, 음 했어.
피고5-그런거 말고. 그아저씨가 어떻게 했어? / G-음.
피고5-옷을 벗겼어? / G-응.
피고5-얼굴을 막 만졌어? / G-응.
피고5-그리고? 허벅지랑 다리도 막 만지고? 또 어떻게 했어? 엄마한테 말로 표현해줄 수 있어? / G-여기랑 여기. / 피고5-응, 무릎이랑 또? / G-그리고 어-여기 위에는 그거는 안만졌고, 내거 엉덩이도. / 피고5-엉덩이도 만졌어? / G-응. / 피고5-또? / G-여기 잠지도 만졌어. / 피고5-잠지도 만졌어? / G-응. 피고5- 잠지를 어떻게 만졌어? / G-이렇게 막, 막, 막. / F-손으로? 두손으로 막 만졌어? / G-응. / 피고5-그래서 아팠어? / G-응. / 피고5-그래서 어떻게 했어? / G-"야! 어떻해!" / 피고5-'하지마' 그랬어? / G-응 "하지마" / 피고5-"왜그래? 하지마! 그랬어. 아저씨한테? 그랬더니 아저씨가 어떻게 했어?" / G-울었어. / 피고5-거짓말로 꾸며서 말하지 말고 아까 얘기했던 거 엄마한테 얘기해줘야 되는데. / G-꿈속에서 나온건데. / 피고5-꿈속에서 그렇게 됐었어? / G-응 / 피고5-아저씨가, G가 막 소리질러서 야단, 혼내줬어? 그래서 아저씨가 막 울었어? / G- 응. (...)
피고5-그러면 G야 꿈속 말고 그 아저씨가 우리 친구들 차량 7호차 아저씨 맞아? / G-응.
피고5-그럼 그아저씨 엄마랑 등원할, / G-도둑이었어. / 피고5-도둑이었어? / G-응. / 피고5-엄마랑 등원할 때 봤던, 이렇게 화분에 물주시던 그 아저씨였어? / G-응. / 피고5-응? 무섭게 생긴 아저씨? 응? 그아저씨 맞아? / G-응. / 피고5-그 아저씨가 G가 생각할 땐 도둑같이 생겼어? / G-응. / 피고5-응? 맞아? 7호차 아저씨 아니고 도둑같이 생긴 아저씨 맞아?

피고5는 G와 위와 같은 내용의 대화를 나눈 후 2014. 10. 25. 23:38경 I어머니에게 마치 제3자에게 일어난 사건을 전하는 어조로 "들으셨나요? 소문? A에 성추행사건 터졌네요~ 아이들 빨리 빼내세요."라는 메시지를 보냈으나, 원고 유치원에는 2014. 10. 27. 며칠 여행을 다녀올 예정이라고 하거나 내일까지 유치원을 쉰다고 하거나 2014. 10. 29. G가 아파서 며칠 쉬어야 할 것 같다고 하였을 뿐 G와 나눈 대화 내용과 관련하여 어떠한 항의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피고5는 원고 유치원에 자퇴 의사를 밝힌 2014. 10. 30. "원고 유치원의 성명불상 운전기사가 2014년 10월 초순경 G를 발레실에 데려가 추행했고, 2014. 10. 20경 7호차 기사 아저씨가 ○○○반 교실에 들어와 G의 몸을 만졌다"는 내용으로 경찰에 위 운전기사를 고소하였다.

다. 수사의 경과

G는 2014. 10. 30. 76분간 진술조력인 J와 피고5의 참관 하에 경기북부 원스톱지원센터에서 K 경관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대화하였는데, 아래 대화내용에서 드러나듯이 위 대화 과정에서

G가 '7호차 아저씨'를 언급하기는 하였으나 성추행과 관련하여 더 자세한 얘기를 하지는 않았다.
(...)
J-G가 오늘 엄마랑 여기 왜 왔어요, 여기? 무슨 얘기해주러 왔어? / G-아저씨.
(...)
경관-아저씨가 누구인데? (...) 어떤 아저씨인지 그림 그려줄 수 있어? / G-...(고개를 끄덕이며)
(...)
(그림을 그린 후) 경관-이 아저씨는 누구야? / G-7호차 아저씨.
(...)
경관-7호차 아저씨는 어떤 아저씨야? / G-잘 몰라.
(...)
경관-우리 아저씨 얘기해줘. 선생님한테 살짝. 응? / G-그 아저씨는요. 어, 맨날. (...) 그냥 그런 건데?
(...)
G-○○○반이랑 △△△반 했어. / 경관-음, ○○○반이었다가? 음, 그래. / G-○○○반이었다가 반이 바뀌었어. / 경관-왜 바꿨어? / G-어 ○○○반에 있다가 아저씨가 들어, / 경관-아 그렇구나. 아저씨가 들어와서 그렇구나. 아저씨가 왜 들어왔지? / G .... /경관-뭐라고? /G (귀속말로) 아저씨가 너무*** / 경관-아저씨가 뭐라고? / G- 꿈이었어요.

피고5의 요청에 의하여 다음 달인 11. 5., 11. 12., 11. 23. 3차례 추가조사를 실시하였으나, G로부터 더 구체적인 진술이 나오지는 아니하였다.

라. 고소 후 피고5의 행태

피고5는 2014. 11. 2.(일)에 원고 유치원 ○○○반 담임교사에게 "내 아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야겠어요. 오늘 봤으면 하네요. 당신이 계속 교직생활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이 일을 교육청과 검찰에 알릴지 말지 그리고 나서 결정하죠. 유치원에 알리면 그때는 우리가 그쪽을 우리만의 방식으로 처단할 겁니다. 나오세요.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되도록 부담임도 함께요. 계속 교직생활이 하고 싶죠? 잘 생각하고 처신하세요"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아직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지 않은 것처럼 가장하면서 위 메시지를 유치원에 알리거나 피고5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신분상 위해가 있을 것처럼 위 담임교사를 협박하였다. 위 담임교사는 2014. 11. 3.(월) 아침 출근 무렵 위 메시지를 원고 유치원 원장에게 보여주었고, 위 원장은 피고5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피고5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피고5는 2014. 11. 17., 11. 19. 다시 G와의 대화를 녹취하였는데, 위 녹취록에 의하면, G는 당시 상황을 묻는 피고5의 질문에 '아저씨가 엄마, 아빠를 칼로 죽인다고 했다', '아저씨가 엉덩이를 만졌다', '장난감도 사줬다', '밖에 나가서 놀이터도 데려갔다', '선생님들도 알고 있었는데

안 도와줬다', '선생님들이 모르는 척 했다', 'H 아저씨가 아이스크림도 사줬고 사탕도 사줬다' 등의 진술을 하기도 하고, 피고5가 당시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물어보면 '응'이라고 긍정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위 2014. 10. 25.의 대화와 마찬가지로 위 각 대화도 피고5가 이를 주도하거나 피고5가 G에게 꾸며서 말하지 말라고 말할 정도로 앞뒤가 안맞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원고 유치원의 △△△반 담임교사는 피고5에 의하여 성추행 혐의로 고소가 이루어지고 수사가 진행 중임을 전혀 모른 채 2014. 11. 17. 오후 5시경 피고5에게 자퇴 처리 문제를 의논하기 위해 전화하였으나 피고5가 전화를 받지 않자 "저번에 전화 통화로 자퇴 의사를 밝혀주신 날짜로 하면 되는 건지, 그렇게 되면 환불 금액이 생기는데 환불계좌는 어디로 보내드려야 되는지 연락주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대하여 피고5는 2014. 11. 18. 새벽 4시 35분경 위 담임교사에게 "안녕하냐고요? 날마다 피가 마르죠~ 우리 아이가 그 유치원인지 지랄같은 곳에서 개새끼만도 못한 추잡한 인간에게 성폭력을 지속적으로 당할 동안 방관만 하고 방치한 교사들은 도대체 뭔가요?(...)"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또한 2014. 11. 26. 새벽 1시 43분에서 2시경까지 ○○○반 담임교사에게 "개같은 년~ 너라면 니 아이가 유치원 내에서 그런 변태새끼 노리감이 됐다면 기분이 어떨 것 같냐?(...) 그리고 같이 방관하며 비웃고 학대까지 했지(...)담임인 너도 부담임 멍청한 년도 알면서 모른 척 했다더라, 부모에게 알려주지는 못할망정 애 입막음까지 했냐? 미친 년아. 그래서 집에 와서 유치원에서 있었던 일을 고자질하는지 확인까지 했냐? 너란 게 바로 마녀지. 마녀사냥 한번 당해봐. 그래서 멀쩡한 내 아이를 거짓말쟁이에 말을 꾸미는 이상한 애로 몰았냐? 원장년은 양치기와 늑대동화까지 들려주며 거짓말하지 말랬다더라. 또라이 같은 년들. 봄부터 이유 없이 현관까지 나와서 애를 반기는 게 수상타 했더니 다 이유가 있었지. 거기가 유치원이냐? 씨발 지옥이지"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같은 날 오전 7시 43분경부터 8시경까지 "몇 년에 걸쳐서 몇 명의 아이들이 피해자였는지 철저히 조사할 거다. 내가 그렇게 심각하게 아이가 악몽을 꾼다고 상담할 때처럼 애가 피곤해서 헛소리 한다고 그것도 주둥이라고 뚫려 있으니 지껄여보지 그래 가증스러운 년"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위 담임교사는 피고5의 위와 같은 폭언을 견디지 못하고 이후 카카오톡 수신을 차단하였다.

한편, 위 고소사건의 수사를 맡은 경기지방경찰청 소속 수사관 L은 2014. 11. 6. 원고 유치원을 방문하여 CCTV자료를 제출받고, 2014. 12. 4. 무렵에는 G의 기저귀에서 발견된 남성의 유전자와 유치원 소속 운전기사 7인의 유전자가 일치하는지에 대하여 DNA 검사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2015년 1월 무렵 DNA 검사 결과 위 DNA는 위 운전기사들의 DNA가 아니라 G의 아버지의 DNA임이 드러났고, CCTV 녹화물 재생 결과 차량기사 등 외부인이 유치원에 들어온 장면도 발견되지 않았다. 이에 위 L은 이러한 수사결과를 피고5에게 설명하였고, L의 설명을 들은 피고5는 "차량기사가 G를 유치원 밖으로 데리고 나가 추행하였다 하더라"라고 고소 내용을 변경 또는 추가하였으나 CCTV 녹화물 중 G를 누군가가 데리고 나간 장면도 전혀 없었다.

마. 제보 및 취재, 추가 고소

피고5는 2015. 2. 27. 피고3, 4를 만나서 경찰수사가 피고5와 G의 입장을 외면하고 원고 유치원 측 입장만 옹호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고 주장하며 고소 사건에 관하여 제보하였고, 피고3, 4는 취재를 시작하였다.

담당수사관 L은 2015. 3월 초경 피고5에게 G의 진술이 이미 오염되어 있거나 유도된 답변에 불과하고 관련 증거들도 불충분하여 성추행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하며 수사의 결론에 관하여 피고5의 이해를 구하였다. 그러자 피고5는 원고 유치원에서의 아동학대 혐의에 관하여 새로이 고소를 하였다. 위 L은 이에 대한 수사를 다시 담당하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였으나 피고5의 요청으로 수사를 맡게 되었다.

G는 2015. 3. 4. 경기북서부 해바라기센터 M 경장과 별지2와 같은 내용으로, 2015. 3. 14. 별지3과 같은 내용으로 대화를 나누었는데, 성추행 혐의에 대한 수사 당시 G로부터 분명한 진술이 없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G가 진술 초반부에 "간식 먹을 때 먹다가 흘렸는데 선생님이 핥아 먹으라고 했어요"라고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였으나, 그 직전에 G가 피고5를 쳐다보고 피고5로부터 "간식시간에 있었던 일 얘기해주면 돼"라는 말을 들은 후 위와 같은 진술을 시작하였고, 진술 도중에도 피고5를 쳐다보거나, 피고5에게 "엄마, 그 다음에 뭐 얘기해?"라고 묻는 등 피고5의 눈치를 보는 행동을 반복하였다. 또한 피고5가 G의 진술에 개입하여 대답을 유도하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4는 2015. 3. 20. 원고 유치원에 전화로 성추행 사건에 대하여 질의하였고, 원고 유치원장 Q는 사실무근이라고 답하면서 "이번 주에 수사결과가 나온다"고 답하였다. 피고4는 다시 "체벌방이 존재하느냐"라고 물었고, Q는 "체벌방은 없다. 유치원에 체벌방이란 있을 수 없다."라고 답하였다.

고양경찰서와 담당수사관은 피고 신문사 직원이나 피고 3, 4로부터 취재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

바. 기사의 게재

피고3, 4는 피고5로부터 성폭행 혐의 고소사건에 대한 경찰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음과 그 결과가 무혐의 쪽으로 예상됨을 전해들은 상태에서 피고5의 주장 및 G의 진술을 주로 신뢰하여 1차 기사(갑 제4호증의 1, 내용은 별지1과 같다)를 작성하였고, 피고2는 이를 검토한 후 보도하기로 결정하여 피고 신문사는 2015. 3. 21. 토요일 9:26:37 온라인으로 1차 기사를 게재하였다.

경찰은 다음날인 2015. 3. 22. 원고 유치원 측에 '사건처리중간통지' 형식으로 '증거가 불충분하여 불기소(혐의 없음) 의견으로 송치예정'이라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위 1차 기사를 본 원고 유치원의 운전기사인 N은 2015. 3. 23. 피고 신문사를 방문하여 기사를 내려줄 것을 요청하였다. 피고 신문사는 편집회의 후 후속 기사를 보류하기로 결정하고, 2015. 3. 24. 그 같은 입장을 담은 아래의 글을 온라인에 게재하였다.

경기북부경찰청 조사결과 성추행 사건의 가해자로 조사받았던 한 셔틀버스 운전기사의 경우 혐의점을 찾을 수 없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고, 이에 해당 운전기사가 억울함을 호소하며 기사에 대한 반론을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본사는 경찰 측이 특정 운전기사만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본보 인터넷 뉴스가 온라인상에서 확산되면서 마치 해당 운전기사가 가해자처럼 왜곡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며 운전기사 측의 반론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기사보류를 결정합니다. 경찰 측의 제한 수사와 본보의 피해자 진술 위주의 기사로 인해 막대한 심적 고통을 받고 계신 운전자와 그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 드립니다.

피고 신문사는 2015. 3. 25. '유치원 성추행 의혹 축소수사 논란'이라는 제목으로 '경찰 측이 해당 사건에 대하여 무혐의 결론을 내렸지만, 피해 학부모 측은 담당 수사관의 부실 · 축소수사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어 재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는 내용의 기사(이하 '이 사건 후속기사'라 하고 위 1차 기사와 이 사건 후속기사를 '이 사건 기사'라 한다)를 게재하였다. 그런데 피고 신문사는 그 과정에서 피고5의 주장만 들었을 뿐 무혐의 결론의 근거 및 그 타당성에 대하여 별다른 취재를 하지 않았다.
피고 신문사의 이 사건 기사를 본 여러 학부형들이 경찰청 홈페이지나 국민신문고 웹사이트에 피고5의 고소사건을 똑바로 처리하라는 취지의 글을 다수 올리자 위 L은 별지4와 같은 내용의 해명자료를 작성하여 위 해명자료가 고양경찰서 홈페이지에 게시되게 하였으나, 수사결과에 대한 학부형들의 문의가 끊이지 않고 이어졌다.

사. 피고5의 인터넷 게시행위

피고5는 최초 고소 후 성폭행 혐의 및 아동학대 혐의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도중 수시로 인터넷 까페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글(이하 통틀어 '이 사건 게시물'이라 한다)을 게시하였다.

(1) 2014. 12. 30. 12:30 네이버 ○○○ 까페

그 시간에 무슨 일들이 벌어졌는지요? 옷 벗으라고 말하고 하고 그 다음은… ? 말하면 엄마 아빠 죽일 거니까 이건 비밀이야 했다는데…이런 변태새끼가 종일반 교실을 휘젓고 다니도록 방만하게 운영하고 특강시간에 애들 인솔자도 없이 이름 부르면 보내다보니…

(2) 2015. 3. 21. 14:44 네이버 ○○○ 까페

더욱 충격적인 건 이번 피해가 담임과 부담임이자 종일반 교사…그들에 의한 방임, 체벌, 감금에 의해 일어나 1차적 피해에 의해 체벌방에 감금된 곳이 소위 양호실로 쓰이며 유치원 관련 남자종사자들에 의해 휴게실로 공공연히 사용되면서 2차적 피해에 의해 일어난 성폭력이란 사실이며 *호차 차량기사말고도 사무장(바지이사장), **닮은 아저씨 등 3명 이상에 의해서 일어난 다중학대이자 집단학대라는 사실입니다. 3년전에도 이곳에 근무했던 교사가 전한 성폭력사건이 있었으나 합의, 은폐되면서 그 동안 얼마나 많은 아동이 피해자가 되었

을지 짐작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더욱 그들은 아동들을 겁박하여 부모를 죽이겠다고 입막음하고 교사들 또한 피해사실을 인지하고도 방조하여 더욱 큰 피해를 입혔으며 2차적으로 입막음을 하고 학부모에게 아이의 고자질을 확인하는 주도면밀함을 보였습니다.
그 동안 원장과 원감은 피해사실을 은폐시키고 CCTV조차 보여주지 않았으며 교실에만 CCTV가 없다는 황당한 진술을 하면서도 체벌방을 원장실로 개조하는 등 사건을 은폐하고 사과조차 없습니다. 내 아이의 일이 아니라고 그냥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이곳은 폐원되어야 합니다.

(3) 2015. 3. 23. 00:17 네이버 ○○○ 까페
○○○반 담임 O 그리고 부담임이자 종일반 담당 P 이들이 아동들을 방임, 체벌, 감금 등 학대하면서 2차적인 피해(성폭력)을 조장하고 방조했는데 그들이 죄가 없다구요? 아저씨들이 괴롭힌다고 도와달라는 애를 보고도 모른 척했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죄가 없습니까? 학대는 3요소가 있어야 일어난다죠? 가해자, 피해자, 방관자 그들 중 단 하나만 없어도 그런 일을 일어나지 않는다구요 그 유치원 아니면 밥줄이 끊긴다구요? 그럼 그 밥줄 지키려고 아이들이 그런 고통을 당하는 걸 방관만 하고 있어도 괜찮은 건가요? 그들에게 학대를 신고해야 하는 법적인 의무가 있는데도요..
그 교사년들을 찢어 죽여도 이 울분은 안 풀릴 겁니다. 그런데 그런 년들을 15년에도 떡하니 고용하고 아무일 없는 듯 입씻고 태연히 원아모집한 원장년이나 원감년은 무슨 간이 이리도 부은걸까요?

(4) 2015. 4. 13. 16:40 네이버 ○○○ 까페
고양시 시민여러분 A유치원 잔혹동화 한번 들어보시렵니까?
A유치원에서 2014년 만3세(5세)였던 내 아이가 겪었던 집단적, 다중적 학대에 대해 들어보시렵니까? 이 잔혹동화에는 자격미달인 교사들에 의한 폭행, 체벌 , 감금, 등의 1차적 학대뿐만이 아니라 체벌방(수면방)을 공공연히 휴게실로 사용하던 유치원 관련종사자(차량기사들)들에 의해서 2차적인 학대인 성폭력까지 자행된 아주 소름끼치도록 무서운 스토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위 동화에 등장하는 피해자는 다수인 유치원 유아들입니다.
그래서 유치원이 이토록 딱히 확증할만한 증거가 없지 않느냐고 나올 수 있는 당당함이 이런 연유에서 비롯됩니다. 대부분의 피해 아이들은 1차로 차량기사들에 의해 비밀을 지키지 않으면 부모를 죽이겠다는 무서운 협박과 2차로 학대교사들에 의해 치밀하게 계획된 거짓말을 하도록 교육시켰으며 교사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한편으로 아동들을 감시하고 다른 한편으로 재원생 부모들을 안심시키고 있습니다. (이하 생략)

아. 보도 및 게시물 게재 후의 정황

이 사건 기사와 게시물을 접한 원고 유치원의 학부모들은 2015. 3. 23.부터 원고 유치원을 다니던 자녀들을 자퇴시키기 시작하여 2015. 4. 17.까지 총 83명의 원생들이 자퇴하기에 이르렀다.

자. 검찰 수사결과

피고5는 검찰에서는 새로이 "G가 유치원 외부에 끌려가 성추행을 당했는데 성추행을 당하고 나서 범인이 사워하는 도중에 몸에 있는 문신을 봤다라고 했다"고 주장하여 유치원 운전기사 전원에 대한 신체검사를 하였으나 문신 있는 사람이 없었고, 피고5가 제보한 장소도 기사들의 전현 거주지와 달랐다. 그밖에 검찰은 다음과 같은 이유 및 대검의 피해자에 대한 진술분석 결과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을 확인할 수 없다'고 회보된 점을 들어, 2015. 6. 29. 피고5의 성추행혐의 고소에 대하여 "운전기사에 의한 강제추행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다만 고소인은 피의자를 특정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성명불상의 가해자에 대하여 고소를 한 것인데, 위 성명불상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피고5가 제시한 증거	수사결과
피의자가 G를 끌고 가면서 G의 블라우스가 찢어졌다.	CCTV 확인 결과 발레선생님이 G의 발레복 탈착을 도와주던 중 찢어진 것이다.
성추행의 충격으로 G가 발레복에 소변을 보았다.	발레실에 들어가 발레수업을 받고 옷을 갈아입는 장면까지 CCTV를 확인하였으나 이에 부합하는 장면이 없다.
G가 잠자는 방에서 추행을 당한 후 위 방은 원장실로 개조되었다.	종일반 담당교사에 의하면, G는 종일반에서 잠을 잔 적이 없고, 다른 친구들에게 확인하였으나 피해가 확인되지 아니함
운전기사가 출입할 수 있는 후문 쪽의 CCTV 영상이 고의적으로 삭제된 의혹이 있다.	CCTV의 부분 삭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제조사의 답변이다.
원고 B 소유의 다른 유치원인 ○○유치원에서 발생한 2010년의 성폭행 피의자가 본건과 관련이 있다.	관련성이 확인되지 아니하였다.

이후 검찰은 2016. 2. 29. 피고5의 원고 유치원측에 대한 아동학대 혐의에 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제5호증의 1, 3, 제6호증, 제15호증의 2, 제16호증, 을 제5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명예훼손의 성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5가 '자신의 아이가 원고 유치원 소속 기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했을 뿐 아니라, 원고 유치원 교사 등으로부터 지속적인 학대를 당했으며, 원고 유치원에 체벌방이 존재한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이 사건 게시물에 담아 인터넷에 게재하거나 피고 3, 4에게 제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보'라 한다). 피고3, 4는 원고 유치원에 대한 공식적 인터뷰나 수사진행 상황에 대한 확인 등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5의 일방적인 진술과 G의 대화내용을 근거로 위 허위사실을 마치 실제 벌어진 일처럼 그대로 인용하여 자극적인 표제 아래 위 1차 기사를 작성하였고, 피고2는 이에 관하여 보도 결정을 내렸다. 또한, 피고들은 또 다시 2015. 3. 25. 이 사건 후속기사를 게재함으로써 경찰이 부실수사를 하였다는 암시를 주어 위 1차 기사로 촉발된 허위사실의 확대 재생산을 조장하였다.

나. 판단기준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에 관한 보도내용이 소문이나 제3자의 말, 보도를 인용하는 방법으로 단정적인 표현이 아닌 전문 또는 추측한 것을 기사화한 형태로 표현하였지만, 그 표현 전체의 취지로 보아 그 사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도5312 판결 참조)

신문이나 인터넷 매체의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불법행위가 되는지는 일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 및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사가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보도의 내용이 수사기관 등에서 조사가 진행 중인 사실에 관한 것일 경우, 일반 독자들로서는 보도된 혐의사실의 진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별다른 방도가 없을 뿐 아니라 보도 내용을 그대로 진실로 받아들일 개연성이 있고, 신문보도 및 인터넷이 가지는 광범위하고도 신속한 전파력 등으로 인하여 보도 내용의 진실 여하를 불문하고 보도 자체만으로도 피조사자로 거론된 자 등은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 그러므로 수사기관 등의 조사사실을 보도하는 언론기관으로서는 보도에 앞서 조사 혐의사실의 진실성을 뒷받침할 적절하고도 충분한 취재를 하여야 하고, 확인되지 아니한 고소인의 일방적 주장을 여과 없이 인용하여 부각시키거나 주변 사정을 무리하게 연결시켜 마치 고소 내용이 진실인 것처럼 보이게 내용 구성을 하는 등으로 기사가 주는 전체적인 인상으로 인하여 일반 독자들이 사실을 오해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기사 내용이나 표현방법 등에 대하여도 주의를 하여야 하고, 그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5다33489 판결 등 참조).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되려면 적시된 사실이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는데, 그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그 허위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2다111579 판결 등 참조)

다. 피고들의 명예훼손 책임

(1) 성추행 및 아동학대가 실제로 있었는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5가 G의 진술 이외에 성추행의 증거로 제시한 정황들(찢어진 블라우스, 발레복에 소변을 본 사건, 기저귀에서 발견된 DNA 등)이 실제로는 모두 다른 경위로 발생한 일이거나 근거가 없는 점, 피고5와 G가 대화를 나눌 때, 나아가 경찰 조사 당시에도 피고5가 G의 진술에 개입하고 유도한 정황이 엿보이는 점, 그 결과 고소 사건이 기소중지(그 실질적인 내용은 혐의없음이라 할 수 있다) 혹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결론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게시물이나 위 1차 기사 등에 나와 있는 G가 성추행이나 학대

를 받았다는 내용은 허위의 사실로 인정되고, 을 제16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2) 피고 신문사와 피고2, 3, 4의 책임

이 사건 기사의 요지는, 피고5가 원고 유치원에서 '아저씨'에 의한 성추행이 있었고, 원생을 잠자는 방에 가두거나, 떨어진 간식을 핥아 먹게 하는 아동학대가 있었다는 것을 주장하며 고소에 이르렀으나, 6개월간 수사에 별 진척이 없고, 원고 유치원도 사실무근이라고 하면서 수사가 마무리된 후 공식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하여 공식 입장 발표를 꺼린다는 것인데, 비록 피고5나 G의 진술에 대한 인용문의 형식이거나 혹은 '~라고 말했다', '~라고 주장했다'라고 하여 전문 또는 추측한 것을 보도하는 형태를 사용하는 한편, 기사 중에 원고 측 입장을 함께 게재하기는 하였지만, 원고 유치원 원장 Q는 경찰조사결과가 곧 나올 예정이라고만 말했을 뿐 경찰 조사가 끝나면 공식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얘기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식입장 발표를 꺼린다고 표현한 점, 고양경찰서나 담당수사과에게 수사상황에 관하여 아무런 취재요청을 하지도 않았으면서 현재까지 수사에 별다른 진척이 없다는 단정적 표현을 사용한 점, 온라인 기사 제목이 "5세 여아, 흘린 음식 핥아먹고 성추행까지"로 되어 있어 기사를 클릭하는 독자들은 그러한 일이 실제로 일어난 것이라는 강한 선입견을 가지고 기사를 읽게 되는 점, 기사의 곳곳에서 이러한 범죄가 사실인 것처럼 암시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점('기사의 성추행만이 문제가 아니었다', '지속적인 학대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5살 딸이(...)"음음" 이상한 소리를 낼 때 엄마는 어떤 마음일까')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기사의 전체적인 내용은 위 피고들이 제시한 의혹이 진실일 개연성이 크다는 강한 논조를 띄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기사는 성추행과 아동학대에 관한 허위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원고 유치원에 대하여 부정적 인상을 주고 원고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한편, 원고 유치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에 커다란 지장을 초래하였으므로 이 사건 기사의 작성, 보도에 관여한 피고2, 3, 4와 피고 신문사는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3) 피고5의 책임

피고5는 피고 신문사의 기자들인 피고 3, 4에게 위와 같은 기사 내용의 핵심적인 부분을 제보하였고, 이 사건 피의사실이 사실임을 전제로 원고 유치원 측이 이를 은폐하고 방조하였다는 내용의 이 사건 게시글을 게시함으로써 원고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고 원고 유치원의 운영에 커다란 지장을 초래하였다. 따라서 피고5는 이 사건 기사의 작성·보도와 관련한 손해에 대하여는 다른 피고들과 공동으로, 이 사건 게시물을 작성·게시한 행위를 통해 원고들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단독으로 배상책임을 진다.

3. 위법성 조각 여부

가. 피고들의 주장

피고5의 제보는 부수적으로 개인적 감정이 개입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주로 국민, 고양시민

혹은 유치원 등원 연령의 아동을 둔 학부모들의 이익을 위한 목적에 의한 것이다. 나아가, 피고5는 G의 진술, 찢어진 블라우스, DNA가 검출된 기저귀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피의사실이 사실이라고 믿기에 이른 것이므로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피고 신문사, 피고 2, 3, 4의 경우 피고5로부터 이 사건 제보를 받은 후 사실 확인을 위한 최선의 조치를 취하였다. 즉 피고5와 G의 진술을 직접 청취함은 물론 G의 진술이 녹취된 녹취록을 검토하였고, 원고 유치원에도 전화로 진위를 문의하였다. 이 사건 기사 이후에도 원고 측의 반론권 보장을 위하여 기사를 보류하고, 이 사건 후속기사의 경우 검찰에 공정한 수사를 촉구하여 사실을 규명해달라는 취지의 논조에 불과하며, 이 사건 기사와 후속기사 모두 아동학대와 아동성범죄 방지 및 처벌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작성된 것이다.

나. 판단기준

사실을 적시한 표현행위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그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여기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고,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그 적시된 사실의 내용과 성질, 그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개인적인 목적 또는 동기가 내포되어 있거나 그 표현에 있어서 다소 모욕적인 표현이 들어 있더라도 무방하다.

그리고 행위자가 적시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그 적시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적시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그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2다111579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 피고 신문사, 피고2, 3, 4의 경우

이 사건 기사와 같은 범죄 특히 성범죄에 관한 기사는 추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질 경우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들의 사회적 평판과 명예에 돌이킬 수 없는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그 보도에 더욱 정확성이 요구된다. 또한 성범죄는 물리적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

하고, 그러한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피의사실에 대한 핵심적인 증거가 되는 때가 많으므로, 이의 신빙성에 대한 상세한 취재 및 그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의 조사가 요청된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로 진술하는 G가 만4세의 아동이라는 특수성이 있으므로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의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그 진술이 사건 발생시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그러한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가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 올 여지는 없었는지, 아동의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은 없는지, 진술내용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사건 · 사물 · 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등을 검토하는 등 G의 진술을 그대로 인용하기 전 그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주의깊은 조사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3, 4가 취재의 근거로 삼은 G의 녹취록 중 G와 피고5의 대화내용(을 제5, 6, 7, 8호증의 1, 2)은 G가 주도한 진술이 아닌 것으로 여길 만한 부분이 많이 있고, 피고5와 G 사이에 있었던 원 대화를 다시 정리한 내용으로 이해되는 데다가, 피고5가 '거짓말로 꾸며서 말하지 말고 아까 얘기했던 거 엄마한테 얘기해줘야 되는데'라고 말하거나, 2014. 11. 19. 대화의 초입에는 피고5가 G에게 '해'라고 지시하는 등 그 신빙성이 의심되는 내용이 많이 있어서, 그러한 상황이라면, 피고3, 4로서는 G와 피고5의 진술이나 주장 이외에 피의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 예컨대, G의 진술에서 언급된 원고 유치원의 다른 원생들, 교사들의 진술을 찾으려는 시도를 함이 마땅함에도 이를 게을리 하였고, 더욱이 원고 유치원 원장과의 인터뷰 내용이나 수사 진행상황을 왜곡하여 보도하기까지 하였다. 나아가 앞서 본 바에 의하면, 피고 신문사와 피고2, 3, 4는 이 사건 피의사실이 이미 확인된 사실인 것처럼 이 사건 기사의 제목을 정하여 독자들을 이끈 후 이 사건 기사에서 오히려 '아이의 설명은 일관되고, 구체적이었다'고 하면서, G의 진술에 피고5의 매우 자극적이고 구체적인 진술을 보태어 이 사건 기사를 구성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피고 신문사와 피고 2, 3, 4가 취재원의 신빙성을 보완할 자료에 대한 취재는 미비한 채 만연히 취재원을 전폭적으로 신뢰하여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한 상황이라면, 피고들에게 이 사건 기사내용을 사실로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피고5의 경우

피고5가 최초 고소보다 더 중한 내용을 나중에 추가하거나 성추행 혐의에 관하여 별다른 증거가 없는 것으로 드러나자 최초 고소 후 수개월이 지나 아동학대 혐의를 추가고소한 점, G의 진술 또한 상당 부분 피고5에 의하여 유도된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 및 검찰의 수사결과 등 앞 서 본 여러 사정에 이 사건 성추행 고소에 이르기까지 외부적으로 드러나 상당한 계기가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5는 유치원 야외활동 날 시간 파악을 못하고

늦게 G를 등원시킨 이후 급격히 원고 유치원에 대하여 반감을 가지게 된 것을 계기로 그동안 G에게 일어난 일을 왜곡하여 성추행이 있었다는 판단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5가 신빙할 만한 계기로 성추행에 관한 의심을 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5의 심리적 요인으로 인해 G의 행동과 태도를 보는 눈이 상당 부분 과장되거나 왜곡되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사정이 그러하다면, 비록 G에게 외음부염증이나 야뇨증과 같은 증상이 발견된 사정 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5가 이 사건 각 고소내용을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4. 피고들의 책임 범위

가. 원고 B의 재산상 손해

(1) 위 원고의 주장

원고 B는 이 사건 기사와 이 사건 게시물로 인하여 ① 아래의 표와 같이 원고 유치원에서 139명의 원생이 자퇴함으로써 원고 B에게 177,772,510원의 손해가 발생하였고, ② 그 외 원고 B 경영의 유치원에서도 이 사건으로 인하여 자퇴하는 원생들이 많이 생겨 그 다음의 표와 같이 총 147,329,000원의의 손해가 발생하였으며, ③ 나아가 이와 같이 위 유치원들의 경영이 어려워지자, 원고 B가 어쩔 수 없이 자신의 돈 9,300만 원을 유치원 경영에 투입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피고들은 각자 원고 B에게 418,101,510원(177,772,510원 + 147,329,000원 + 9,300만 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유치원명	자퇴숫자	입학금 및 물품비환불	수업료 손실 (2015.3.~4.)	방과후 교육비 손실 (2015.3.~4.)	총계
서울○○	4		2,160,000	410,000	2,570,000
△△	4	419,000	1,916,000	500,000	2,835,000
□□	24	2,625,000	23,520,000	4,070,000	30,215,000
죽전○○	8		4,256,000	1,015,000	5,271,000
숲속○○	18		8,586,000	2,040,000	10,626,000
송파○○	17		9,435,000	1,165,000	10,600,000
파주○○	60	7,302,000	62,880,000	10,900,000	81,082,000
강동○○	6		3,780,000	350,000	4,130,000
합 계	141	10,346,000	116,533,000	20,450,000	147,329,000

자퇴숫자	국가지원금 반환금		학부모 반환금	2015년도 손해액(3월~5월)
	유아학비 반환금	무상급식 반환금		
139명	73,399,710원	14,318,400원	90,054,400원	177,772,510원

(2) 판단

원고 유치원 이외의 유치원에 발생한 147,329,000원의 손해(②) 및 원고 B가 지출한 9,300만 원의 손해(③)에 대하여는 갑 제9호증의 2 내지 9, 갑 제3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그 손해의 발생사실 및 이 사건 명예훼손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 유치원에 발생하였다는 177,772,510원의 손해(①)에 관하여 본다.

갑 제8호증의 1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기사 및 게시물을 접한 원고 유치원의 학부모들이 2015. 3. 23.부터 자녀들을 퇴교시키기 시작하여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이 총 83명의 원생들이 자퇴의사를 표시한 사실(위 83명을 초과하는 자퇴자의 존재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 중 이 사건 기사와 게시물의 내용에 동요되어 자퇴에 이른 원생의 수는 같은 표 순번 1~68번 기재와 같이 총 68명으로, 같은 표 순번 1~13번 원생들은 이 사건 기사 게재로 인하여, 같은 표 순번 14~68번 원생들은 피고5의 이 사건 게시물 게재 등의 행위로 인하여 자퇴한 사실이 각 인정되므로, 같은 표 순번 1~13번 원생들의 자퇴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피고들이 공동으로, 같은 표 순번 14~68번 원생들의 자퇴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피고5가 각 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같은 표 순번 제68번 이하 원생들의 경우 피고들의 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유치원의 자퇴에 이르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손해배상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7, 28, 2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B가 같은 표 순번 제1 내지 68번 원생들이 자퇴함으로 인하여 위 학생들에 관하여 국가로부터 지급받았던 유아학비지원금과 무상급식지원금 중 같은 표 '1분기 유아학비반환금'란 기재 금액과 '1분기 무상급식반환금'란 기재 금액을 반환한 사실, 또한 위 학생들로부터 이미 지급받았던 3월 혹은 4월분 수업료를 전부(즉 자퇴일전 수업료도 전부 반환하여 줌) 반환하여 같은 표 '실제 학부모 반환금'란 기재금액을 해당 학부모들에게 돌려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유아학비지원금과 무상급식지원금은 학부모들이 부담할 것을 국가가 지원하는 돈으로 여기에 학부모가 지급한 학비를 합산하여 원고 유치원 운영재원이 될 것인바, 위 지원금 및 학비의 반환금액 중 상당 부분은 자퇴한 원생들을 위하여 소비될 것이 예정되어 있던 돈이라고 봄이 상당하다(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은 유아교육의 공익목적성을 고려하여 이에 관한 소득을 과세하지 아니하고(이는 유치원에 의한 수입과 지출이 유아교육사업에 사용되기를 기대하기 때문이다.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3호 괄호,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유치원의 모든 수입은 원칙적으로 세입세출예산에 편입되며 수입을 직접 사용하는 것은 금지되고 세출예산 또한 목적 외 사용이 금지된다(사학기관 재무 · 회계규칙 제6조, 제21조 제2항)). 따라서 위 반환된 지원금 및 학비 중 자퇴한 원생들에 할당된 고정비용 상당액 외의 부분은 실질적으로 원고 B에게 기대된 소득이 상실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원고 B는 자퇴한 원생들에게

자퇴일까지의 학비는 반환할 의무가 없음에도 자진하여 이를 반환하였므로, 반환한 학비 중 자퇴일 이전의 학비는 배상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같은 표 '일할계산 금액' 기재와 같다).

위 고정비용 상당액은 적어도 2015. 3. 27.자 국세청 고시(제2015-7호)에 따른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 정도일 것으로 보이므로, 기준경비율 중 '도매/아동급식빵' 업종에 적용되는 18.8%의 비율을 위 무상급식지원금에, '놀이방' 업종에 적용되는 22.3%의 비율을 위 유아학비지원금과 학부모 학비에 각 적용하여 고정비용 상당액을 산출하기로 한다. 그 산출 결과는 같은 표 각 '기준경비율을 곱한 금액'란 기재와 같이, 같은 표 순번 1~13번 원생들에 대하여 3,454,370원(유아학비 반환금 중 1,557,568원 + 무상급식비 반환금 중 258,086원 + 학부모 반환금 중 1,638,716원), 같은 표 순번 14~68번 원생들에 대하여 13,399,295원(유아학비 반환금 중 6,345,902원 + 무상급식비 반환금 중 1,082,880원 + 학부모 반환금 중 5,970,513원)이다.

따라서 원고 B의 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옳다.

나. 원고 B의 정신적 손해 및 원고 유치원의 손해

이 사건 기사의 보도 및 이 사건 게시물의 게재 등 피고들의 행위로 원고 B가 입은 정신적 고통 및 원고 유치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저하된 손상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할 것인바, 피해자인 원고들의 사회적 지위, 재산 및 생활 상태, 피해로 입은 고통의 정도, 가해자인 피고들의 고의·과실의 정도, 가해행위의 동기, 원인 및 경위, 가해행위 후 피고들의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할 때 원고들에 대한 배상액은 피고5는 각 4,000만 원, 나머지 피고들은 피고5와 각자 위 각 돈 중 2,0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다. 소결론

원고 유치원에게, 피고5는 4,000만 원, 피고 신문사, 피고2, 3, 4는 피고5와 각자 위 돈 중 2,000만 원과 각 이에 대하여 피고 신문사, 피고2, 3, 4는 위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6. 4.부터, 피고5는 위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6. 5.부터 각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8. 22.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B에게, 피고5는 56,853,665원(3,454,370원 + 13,399,295원 + 4,000만 원) 피고 신문사, 피고2, 3, 4는 피고5와 각자 위 돈 중 23,454,370원(3,454,370원 + 2,000만 원)과 각 이에 대하여 피고 신문사, 피고2, 3, 4는 위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6. 4.부터, 피고5는 위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6. 5.부터 각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8. 22.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 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1〉 대상기사 생략
〈별지 2, 3〉 G 참고인 진술 녹취록 생략
〈별지 4〉 수사기관 해명자료 생략
〈별지 5〉 손해배상액 계산표 생략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1. 20. 선고 2015가합312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9. 9. 선고 2016나2012111 판결(확정)

언론사의 보도 내용 및 행태를 분석 · 비판한 것은 의견표명으로서 정정보도의 대상이 아니다

- 원고(항 소 인) : 주식회사 문화방송
- 피고(피항소인) : A(미디어스 발행인)

[사실관계]

피고는 2015년 1월 7일자 〈미디어스〉에 「세월호 피해구제법에서 유독 '특례입학'부터 본 MBC」라는 제목 및 「MBC 일관되게 편향 보도…유가족 "MBC, 교묘하게 가족들 매도"」라는 소제목으로 원고의 같은 달 6일자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단원고 2학년 대입특례…'세월호 배 · 보상 특별법' 최종합의」 제하의 보도에 대해 유가족들과 시민사회의 주장은 거의 전해지지 않았다고 보도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가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해 원고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했다며 정정보도 게재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심리 결과, 1심 법원은 이 사건 기사가 원고의 보도 내용이나 태도에 대한 비판적 의견표명으로서 정정보도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2심 법원도 위와 같은 이유로 항소를 기각하였으며, 이후 원고가 상고하지 않아 위 판결이 확정됐다.
한편, 원고는 소제기에 앞서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하여 직권조정결정(반론보도)이 내려졌으나(2015서울조정3007), 원고 측 이의신청으로 자동소제기된 바 있다.

[판결요지]

□ **보도의 공정성, 편파성에 대한 표현이 사실의 적시인지 여부**
원고의 세월호 사건 보도가 충실하고 공정한 보도인지, 미흡하고 편파적인 보도인지는 보는 관점(유가족, 시민단체, 국회, 여당, 야당, 진보주의자, 보수주의자 등)에 따라서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는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표현은 허위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세월호 사건에 관한 원고의 보도 내용이나 태도에 대한 비판적 의견표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정정보도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언론사에 관한 비판의 수인 한계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사는 '세월호 사건'이라는 공적 관심사에 대한 원고의 보도 내용이나 행태를 비판하는 것으로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에 관계되고, 그 목적이 공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며, 원고는 지상파 방송사로서 스스로 이 사건 기사를 반박할 수 있는 매체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요 방송사로서 국가 · 사회적 영향력이 매우 큰 공적 존재로서 비판의 수인 범위 역시 넓은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기사가 원고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라고 보기 어려워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다.

1심 판결문

사 건	2015가합3129 정정보도
원 고	주식회사 문화방송
피 고	A
변론종결	2015. 12. 9.
판결선고	2016. 1.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미디어스 홈페이지(http://www.mediaus.co.kr) 미디어뉴스 기사 목록 상단에 별지2 기재 정정보도문 제목을 [ ] 안에 표시하고, 제목을 클릭하면 위 정정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여 48시간 동안 게재하되, 위 정정보도문의 제목 및 본문을 별지1 기재 정정보도 대상 기사의 제목 및 본문과 동일한 활자체로 하고, 위 정정보도 대상 기사의 본문 하단에 위 정정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며, 그 이후에는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하라. 만일 피고가 위 기간 안에 위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이행 완료일까지 매일 5,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7.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국을 방송권역 및 시청권으로 하여 방송사업 및 문화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지상파 방송사이고, 피고는 인터넷신문인 '미디어스'(http://www.mediaus.co.kr)의 발행인이다.

나. 원고는 2015. 1. 6. MBC '뉴스데스크' 프로그램에서 국회의 '4 · 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합의와 관련하여 [단원고 2학년 대입특례…'세월호 배 · 보상 특별법' 최종

합의]라는 제목의 뉴스를 보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뉴스데스크 보도'라 한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1. 7. [세월호 피해구제법에서 유독 '특례입학'부터 본 MBC]라는 큰 제목과 [MBC 일관되게 편향 보도...유가족 "MBC, 교묘하게 가족들 매도"]라는 작은 제목 아래 별지1 기재와 같은 이 사건 기사를 미디어스 홈페이지의 미디어뉴스란에 게재하였다(한편 이후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라 별지1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기사 하단에 반론보도문이 게재되기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을 1, 2-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기사에서, ① 원고가 뉴스데스크 프로그램을 통해 세월호 사건 진상조사위원회에의 수사권·기소권 부여에 관한 논란 과정 및 이에 대한 유가족과 여야 정치권의 입장, 세월호 특별법 협상의 구체적 내용, 시민단체의 의견 등을 다양하고 상세하게 보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가족들과 시민사회의 주장은 〈뉴스데스크〉를 통해서는 거의 전해지지 않았다'고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② 원고가 이 사건 뉴스데스크 보도에서 대입특례 조치나 국민성금 활용 등을 기화로 세월호 사건 유가족들을 매도한 바 없음에도, '우리 가족들이 요구해서 대입특례가 되는 것처럼, 국민성금을 모두 우리 가족들에게 나눠주는 것처럼 정말 교묘하게 가족들을 매도하는 MBC!!'라고 보도함으로써 독자들로 하여금 마치 원고가 '세월호 사건 유가족들의 입장을 의도적으로 왜곡하는 중립적이지 않은 언론사'라는 인상을 갖도록 허위사실을 적시하였으며, ③ '유독 특례입학부터 본 MBC, 일관되게 편향 보도, 교묘하게 가족들 매도,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악질적 보도'라는 모욕적 표현을 사용하였다. 피고가 위와 같이 악의적으로 ①, ②의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③의 모욕적 표현이 포함된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함으로써 원고의 명예 및 신용이 훼손되었으므로, 피고는 인터넷신문 발행인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별지2 기재와 같은 정정보도문을 게재할 의무가 있고(만일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그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배상금도 청구한다), 또한 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도 있다.

나. 정정보도청구에 관한 판단

1) 정정보도청구는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한 경우에 허용되므로 그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려면 원고가 정정보도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원보도가 사실적 주장에 관한 것인지 단순한 의견표명인지를 먼저 가려보아야 한다. 여기에서 사실적 주장이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명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증거에 의하여 그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을 말한다. 이러한 개념이 반드시 명확한 것은 아니다. 언론보도는 대개 사실적 주장과 의견표명이 혼재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구별기

준 자체가 일의적이라고 할 수 없고, 양자를 구별할 때에는 당해 원보도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시청자가 보통의 주의로 원보도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방법뿐만 아니라 당해 원보도가 게재한 문맥의 보다 넓은 의미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및 시청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한편 언론중재법 제14조에 의하여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 등의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피해자는 그 언론보도 등이 진실하지 아니하다는 데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11. 9. 2. 선고 2009다5264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가) 먼저 이 사건 기사 중 원고 주장 적시사실 ①항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갑 1, 을 2 내지 7(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기사의 게재 경위와 전체적인 내용으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이 사건 기사는 세월호 특별법안 합의에 관한 이 사건 뉴스데스크 보도뿐만 아니라 세월호 사건에 관한 그간 원고의 보도 내용 및 행태를 분석하고 비판하는 것이 주된 내용인 점, ㉡ 이 사건 뉴스데스크 보도의 제목이 '단원고 2학년 대입특례…(중략)'이고, 그 보도에서 '피해가족 등의 여론을 수렴한 야당의 요구가 수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라고 리포트하는 등 '대입특례'라는 국민정서상 민감한 사안을 유가족의 요구로 관철된 것처럼 인상을 주는 내용을 중점적으로 보도한 점[이와 달리 같은 날 세월호 특별법 관련 보도를 한 지상파 방송사(KBS, SBS)나 종합편성 방송사(JTBC 등)는 여·야 정치권이 세월호 사건 특별법안을 합의하였다는 것이 주된 보도 내용이었다], ㉢ 원고가 2014. 7. 16.부터 9. 25.까지 세월호 유가족의 요구(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 및 기소권 부여)에 관한 내용을 십여 차례 보도하기는 하였으나 유가족이나 정치권의 입장을 단순히 전달하거나 인용한 데 그친 점, ㉣ 원고는 일반 대중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지상파 공영방송사로서 여론 형성 및 방향 설정이 가능하므로 그 보도 내용에 대한 폭넓은 비판 역시 수용해야만 하는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기사에 '유가족들과 시민사회의 주장은 〈뉴스데스크〉를 통해서는 거의 전해지지 않았다'는 표현이 허위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세월호 사건에 관한 원고의 보도 내용이나 태도에 대한 비판적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충분하므로, 원고 주장의 이 부분 기사는 정정보도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다음으로 이 사건 기사 중 원고 주장 적시사실 ②항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원고가 허위사실이라 주장하는 이 부분은 당시 세월호 가족대책협의회 대변인이던 B가 이 사건 뉴스데스크 보도 직후 SNS(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피고가 이 사건 기사에 그대로 인용한 것에 불과한 점(이에 대하여 원고는 인용을 통한 사실의 적시라고 주장하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이라기보다는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고 있

는 것으로 보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피고가 인용한 '…요구해서 대입특례가 되는 것처럼, 국민성금을 모두 우리 가족들에게 나눠주는 것처럼, 정말 교묘하게, 매도'라는 표현 자체를 보더라도 원고의 이 사건 뉴스데스크 보도 내용이나 행태에 대한 비판적 의견표명에 불과한 점, ㉢ 이 사건 뉴스데스크 보도는 '사고 당시 2학년이었던 단원고 학생들에 대해서는 정원 외로 특별전형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피해가족 등의 여론을 수렴한 야당의 요구가 수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모인 성금 1,257억 원을 우선 활용하고 부족하면 국비로 지원하기로 해 희생자 한 명당 7억~8억 원을 보상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는 것이나, 세월호 사건 유가족들이 수사권 등을 요구하는 것과 별도로 대입특례나 국민성금 배분을 특별법으로 요구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이에 대하여 원고는 다른 몇몇 언론사도 대입특례나 국민성금 관련 보도를 한 바 있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의 비판적 의견표명이 허위사실의 적시에 해당할 근거는 되지 않는다), ㉣ 그런데도 원고가 같은 날 있은 다른 방송사들의 보도와 달리 유독 세월호 사건 유가족에 대한 대입특례나 국민성금 사용에 관한 내용을 주된 보도 대상으로 삼은 이상 위와 같은 비판이 전혀 터무니없는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이 부분 기사 역시 정정보도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1) 언론매체의 어떤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불법행위가 되는지의 여부는 일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와의 연관 하에서 기사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사가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다가 당해 기사의 배경이 된 사회적 흐름 속에서 당해 표현이 가지는 의미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그리고 어떤 표현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더라도 그 표현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거나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할 것인바, 여기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을 의미하는데,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무방하고, '진실한 사실'이라고 함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판결 등 참조). 한편 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표현으로 인하여 명예를 훼손당하게 되는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등에 따라 그 심사기준

에 차이를 두어 공공적 · 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표현의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하고, 특히 당해 표현이 언론사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언론사가 타인에 대한 비판자로서 언론의 자유를 누리는 범위가 넓은 만큼 그에 대한 비판의 수인 범위 역시 넓어야 하고, 언론사는 스스로 반박할 수 있는 매체를 가지고 있어서 이를 통하여 잘못된 정보로 인한 왜곡된 여론의 형성을 막을 수 있으며, 일방 언론사의 인격권의 보장은 다른 한편 타방 언론사의 언론자유를 제약하는 결과가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언론사에 대한 감시와 비판 기능은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3다52142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기사에 허위사실의 적시가 있다고 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나온 이 부분 손해배상청구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설령 원고 주장대로 이 사건 기사의 전제된 사실에 일부 허위가 있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기사는 '세월호 사건'이라는 공적 관심사에 대한 원고의 보도 내용이나 행태를 비판하는 것으로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에 관계되고, 그 목적이 공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며, 피고가 이 사건 기사의 전제되는 사실이 중요한 부분에 있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으므로, 이와 같은 점에서도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다음으로 모욕적 표현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기사에서 피고가 '일관되게 편향 보도, 교묘하게 매도,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악질적 보도'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언사로 볼 여지는 있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관계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 즉 ㉠ 피고가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하게 된 경위나 배경을 보면 공영방송사인 원고가 세월호 사건에 관하여 정부의 책임 소재나 구조적인 문제점 및 해결책 등의 사안에 관하여는 구체적이고 분석적인 보도를 하지 않음에 반해 일부 유가족의 불미스러운 사건이나 대입특례 문제를 부각시키는 듯한 보도를 하자 이를 비판하는 취지에서 이 사건 기사가 작성된 것인 점, ㉡ 위와 같은 표현이 이 사건 기사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다지 크지 않고, 그 표현이 내포하는 의미 또한 경미한 수준의 것으로 보이는 점, ㉢ 원고는 지상파 방송사로서 스스로 이 사건 기사를 반박할 수 있는 매체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에 대한 비판의 수인 범위 역시 넓은 점, ㉣ 이 사건 기사가 언론사인 원고를 비판하는 측면에서 작성 · 게재된 이상 악의적으로 원고를 모욕하거나 폄훼할 목적에서 비롯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모욕적 표현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역시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1〉 대상기사 생략
〈별지 2〉 요구하는 정정보도문 생략

2심 판결문

사 건	2016나2012111 정정보도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문화방송
피고, 피항소인	A
제 1 심 판 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1. 20. 선고 2015가합3129 판결
변 론 종 결	2016. 8. 19.
판 결 선 고	2016. 9. 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미디어스 홈페이지(http://www.mediaus.co.kr) 미디어뉴스 기사 목록 상단에 별지2 기재 정정보도문 제목을 [ ] 안에 표시하고, 제목을 클릭하면 위 정정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여 48시간 동안 게재하되, 위 정정보도문의 제목 및 본문을 별지1 기재 정정보도 대상 기사의 제목 및 본문과 동일한 활자체로 하고, 위 정정보도 대상 기사의 본문 하단에 위 정정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며, 그 이후에는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하라. 만일 피고가 위 기간 안에 위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이행 완료일까지 매일 5,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7.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항소 이유를 아래 2항과 같이 다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다시 판단하는 부분

가. 이 사건 기사 중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유가족들과 시민사회의 주장은 〈뉴스데스크〉를 통해서는 거의 전해지지 않았다'는 부분에 관하여 살펴본다.
갑제1 내지 7호증, 을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기사의 게재 경위와 전체적인 내용으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이 사건 기사는 세월호 특별법안 합의에 관한 이 사건 뉴스데스크 보도뿐만 아니라 세월호 사건에 관한 그간 원고의 보도 내용 및 행태를 분석하고 비판하는 것이 주된 내용인 점, ㉡ 이 사건 뉴스데스크 보도의 제목이 '단원고 2학년 대입특례…(중략)'이고, 그 보도에서 '피해가족 등의 여론을 수렴한 야당의 요구가 수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라고 리포트하는 등 '대입특례'라는 국민정서상 민감한 사안을 유가족의 요구로 관철된 것처럼 인상을 주는 내용을 중점적으로 보도한 점[이와 달리 같은 날 세월호 특별법 관련 보도를 한 지상파 방송사(KBS, SBS)나 종합편성 방송사(JTBC 등)는 여·야 정치권이 세월호 사건 특별법안을 합의하였다는 것이 주된 보도 내용이었다], ㉢ 원고가 2014. 7. 16.부터 9. 25.까지 세월호 유가족의 요구(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 및 기소권 부여)에 관한 내용을 십여 차례 보도하기는 하였으나 유가족이나 정치권의 입장을 단순히 전달하거나 인용한 데 그친 점(피고는 원고가 세월호 유가족 요구의 당위성을 충분히 보도하지 않은 것을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 피고는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 대입특례(국민성금) 보다 중요한 사항인데 원고는 전자보다 후자를 강조하여 보도한다고 보고 그 행태를 강하게 비판하기 위하여 '전자는 거의 전해지지 않았다'고 표현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수사적 과장에 불과하여 허위사실적시로 보기 어려운 점, ㉤ 원고의 세월호 사건 보도가 충실하고 공정한 보도인지 미흡하고 편파적인 보도인지는 보는 관점(유가족, 시민단체, 국회, 여당, 야당, 진보주의자, 보수주의자 등)에 따라서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는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표현은 허위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세월호 사건에 관한 원고의 보도 내용이나 태도에 대한 비판적 의견표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정정보도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기사 중 '우리 가족들이 요구해서 대입특례가 되는 것처럼, 국민성금을 모두 우리 가족들에게 나눠주는 것처럼 정말 교묘하게 가족들을 매도하는 MBC!!'라는 부분에 관하여 살펴본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원고가

허위사실이라 주장하는 이 부분은 당시 세월호 가족대책협의회 대변인이던 B가 이 사건 뉴스데스크 보도 직후 SNS(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피고가 이 사건 기사에 그대로 인용한 것에 불과한 점(이에 대하여 원고는 인용을 통한 사실의 적시라고 주장하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이라기보다는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피고가 인용한 '…요구해서 대입특례가 되는 것처럼, 국민성금을 모두 우리 가족들에게 나눠주는 것처럼, 정말 교묘하게, 매도'라는 표현 자체를 보더라도 원고의 이 사건 뉴스데스크 보도 내용이나 행태에 대한 비판적 의견표명에 불과한 점('매도'는 수사적 표현으로 보인다), ㉢ 이 사건 뉴스데스크 보도는 '사고 당시 2학년이었던 단원고 학생들에 대해서는 정원 외로 특별전형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피해가족 등의 여론을 수렴한 야당의 요구가 수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모인 성금 1,257억 원을 우선 활용하고 부족하면 국비로 지원하기로 해 희생자 한 명당 7억~8억 원을 보상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는 것이나, 세월호 사건 유가족들이 수사권 등을 요구하는 것과 별도로 대입특례나 국민성금 배분을 특별법으로 요구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이에 대하여 원고는 다른 몇몇 언론사도 대입특례나 국민성금 관련 보도를 한 바 있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의 비판적 의견표명이 허위사실의 적시에 해당할 근거는 되지 않는다), ㉣ 그런데도 원고가 같은 날 있은 다른 방송사들의 보도와 달리 유독 세월호 사건 유가족에 대한 대입특례나 국민성금 사용에 관한 내용을 주된 보도 대상으로 삼은 이상 위와 같은 비판이 전혀 터무니없는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표현이 허위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세월호 사건에 관한 원고의 보도 내용이나 태도에 대한 비판적 의견표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정정보도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관하여 살펴본다.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기사는 비판적 의견 표명에 해당하고, 그 의견 표명의 기초 사실에 진실과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이는 세부적 차이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기사는 '세월호 사건'이라는 공적 관심사에 대한 원고의 보도 내용이나 행태를 비판하는 것으로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에 관계되고, 그 목적이 공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며, 원고는 지상파 방송사로서 스스로 이 사건 기사를 반박할 수 있는 매체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요 방송사로서 국가·사회적 영향력이 매우 큰 공적 존재로서 비판의 수인 범위 역시 넓은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기사가 원고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라고 보기 어려워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다.

라. 모욕적 표현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사건 기사에서 '일관되게 편향 보도, 교묘하게 매도,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악질적 보도'라는 부분은 다소 과격한 표현으로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언사로 볼 여지는 있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 즉 ㉠ 피고가 이 사건 기사를 게재

하게 된 경위나 배경을 보면 공영방송사인 원고가 세월호 사건에 관하여 정부의 책임 소재나 구조적인 문제점 및 해결책 등의 사안에 관하여는 구체적이고 분석적인 보도를 하지 않음에 반해 일부 유가족의 불미스러운 사건이나 대입특례 문제를 부각시키는 듯한 보도를 하자 이를 강하게 비판하는 취지에서 이 사건 기사가 작성된 것인 점, ㉡ 위와 같은 표현이 이 사건 기사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다지 크지 않은 점, ㉢ 원고는 지상파 방송사로서 스스로 이 사건 기사를 반박할 수 있는 매체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요 방송사로서 국가·사회적 영향력이 매우 큰 공적 존재로서 비판의 수인 범위 역시 넓은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표현은 원고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별지 1〉 대상기사 생략
〈별지 2〉 요구하는 정정보도문 생략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11. 3. 선고 2016가합105061 판결(확정)

대기업이 회장 일가에게 제공하는 배당금, 보수, 업무용 차량 등에 관한 내용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언론의 자유로운 비판과 관심의 대상이다

- 원고 : 주식회사 A
- 피고 : 주식회사 더팩트 외 3명

[사실관계]

피고들은 2016년 5월 20일자 및 같은 달 22일자 〈THE FACT〉에 「'선글라스' E 주식회사 A 회장, '황제 배당'에 묵묵부답」 및 「주식회사 A, E · F 부부 업무용 차량, 가격만 '14억'」, 「'낡은' A 본사와 마이바흐, E 회장의 생각은?」이라는 각 제목으로 원고 회사가 당기순이익을 초과하는 배당을 실시하여 회장 일가에게 많은 배당금을 취득하게 했고, 회장 부부의 보수를 공개하지 않기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 후 등기이사직을 사임하게 했으며, 회장 부부의 업무용 차량에 거액을 들였다고 보도했다. 이에 원고는 피고가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악의적으로 비방하여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심리 결과, 재판부는 대기업인 원고가 회장 일가에게 지급한 혜택에 관한 내용은 공익성이 있고 적시된 사실이 진실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후 원고가 상소하지 않아 위 판결이 확정됐다.

[판결요지]

□ **회장 일가에게 제공한 혜택에 관한 보도의 공익성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각 기사 중 명예훼손이 성립하는 부분은 대기업인 원고가 회장 일가에게 지급하거나 제공하는 배당금, 보수, 업무용 차량 등에 관한 내용으로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 보기 충분한 점, 대기업의 자금 운용은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바, 일반적으로 대기업이 대주주 등에게 부여하는 혜택 등은 언론사들의 자유로운 비판과 감시의 대상이 되어 왔던 점, 피고들 역시 원고가 회장 일가에 과다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아닌지 문제제기를 할 의도였을 뿐,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로 위 각 기사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기사의 보도는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판결문

사 건	2016가합105061 손해배상(기)
원 고	주식회사 A
피 고	1. 주식회사 더팩트 2. B 3. C 4. D
변론종결	2016. 10. 20.
판결선고	2016. 11. 3.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고 주식회사 더팩트, B, D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20.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 주식회사 더팩트, C, D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22.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식품 및 식품첨가물 제조, 가공, 매매에 관한 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더팩트(이하 '피고 더팩트'라고 한다)는 인터넷신문 'THE FACT'(홈페이지 http://www.tf.co.kr/)를 발행하고 있는 언론사이며, 피고 D는 피고 더팩트의 대표이사이자 위 인터넷신문의 발행인이

고, 피고 B, C는 피고 더팩트 소속 기자이다.

나. 피고들의 기사 보도

피고 더팩트는 2016. 5. 20. 10:22경 피고 B가 작성한 「'선글라스' E 주식회사 A 회장, '황제 배당'에 묵묵부답」이라는 제목의 별지1 기재 기사(이하 '제1 기사'라고 한다)를, 같은 날 10:24경 피고 B가 작성한 「주식회사 A, E·F 부부 업무용 차량, 가격만 '14억'」이라는 제목의 별지2 기재 기사(이하 '제2 기사'라고 한다)를, 2016. 5. 22. 피고 C가 작성한 「'낡은' A 본사와 마이바흐, E 회장의 생각은?」이라는 제목의 별지3 기재 기사(이하 '제3 기사'라고 한다)를 홈페이지에 각 게재하였는데, 위 각 기사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제1 기사

"매년 도마에 오르는 고배당 논란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파이'로 유명한 제과업체 A는 해마다 지나치게 높은 배당으로 지적을 받은 회사다. 업계에서는 A의 배당성향을 '과다배당', '황제배당' 등이라는 말로 압축하고 있다. A는 최근 3년간 매출이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당기순이익을 훌쩍 뛰어넘는 배당금을 지급하면서 '오너 일가용 배당'이라는 비판에 휩싸였다. 총 배당금의 3분의 1 정도가 E 회장 등 A 오너 일가에게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 당기순이익 두 배 넘는 배당규모

A는 3년째 '황제 배당'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있다. 특히 올해(2015년 회기)는 이익잉여금까지 털어 주주배당을 챙겨줘 재무건전성에 위협을 받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A는 2015년 정기 주주총회에서 1주당 6,000원의 배당을 승인했다. 주당 순이익이 2,921원임을 감안하면 배보다 배꼽이 크다. 배당금 규모는 315억 원으로 지난해 당기순이익 154억 원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그동안 모았던 잉여금으로 배당금을 채워야 했다.
A의 국내 매출액은 지난 2012년 8,207억 원으로 고점을 찍은 이후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지난해 매출액은 7,074억 원으로 전년 대비 5.9% 감소했다. 국내 제과시장 규모가 줄고 있는 것이 매출하락의 큰 요인이다. 특히 수입제과 브랜드와 자체 브랜드 제품의 시장점유율 확대로 경쟁은 더욱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A 배당 규모 315억 원의 3분의 1 정도가 E 회장과 부인 F 부회장, 자녀인 G씨, H씨 등 오너 일가에게 돌아갔다. 최대 주주인 F 부회장(86만 5,204주)은 51억 9,000여만 원, F 부회장의 남편인 2대 주주 E 회장(77만 626주)은 46억 2,000여만 원을 각각 챙겼다. E 회장 부부 자녀들의 배당금 3억 8,000만 원을 모두 더하면 오너 일가 현금 배당금만 100억 원이 넘는다.
배당금이 오너 일가에 쏠리는 현상을 우려해 지난달 5일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배당금이 너무 많다'며 지분을 소유한 기관들에게 올해 주총에서 배당안 승인 반대를 권고했다. 기업지배구조원은 A의 재무구조와 주주구성, 음식료 업계의 배당성향 등을 고려했을 때 배당 규모가 회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봤다.
A는 이에 대해 "지난해 당기순이익 154억 원 외에도 주식평가차손익 391억 원을 가지고 있었다"며 "500억 원을 훨씬 넘는 자금을 보유하고 있어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기에 충분했다"고 말했다. A의 배당 규모는 두배로 뛴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다.

년도	순이익	배당 규모	오너 일가 배당금
2013년	109억 원	157억 원	약 51억 원
2014년	52억 원	315억 원	약 101억 원
2015년	154억 원	315억 원	약 101억 원

◆ "배당 확대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것"

〈더팩트〉 취재진은 E 회장에게 직접 이야기를 듣기 위해 17일 A 본사를 찾았지만 E 회장을 만날 수 없었다.
취재진의 질문은 E 회장의 입이 아닌 A 관계자를 통해 들을 수밖에 없었다. A 측은 배당은 법적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고 있는데 계속해서 입방아에 오르는 것에 대해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A 관계자는 "배당 규모 확대는 주주가치를 제고하는 방법이며 주주들의 기대감을 반영한 것일 뿐"이라며 "특정 대주주를 위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음식료 업계의 시가 배당률은 1.3%인 것에 비해 A는 0.5%로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배당 확대는 정부 시책에도 부응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 2014년부터 경제활성화를 위해 기업들의 배당 확대를 독려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배당 확대 정책이 소액주주 대신 주요기업 총수 일가에 집중되면서 정책 효과가 반감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 E 회장과 F 부회장 부부의 연봉은?

E 회장과 F 부회장 부부는 지난 2013년 각각 53억 9,100만 원, 43억 7,900만 원의 연봉을 받았다. 당시 E 회장은 유통·식품 업계에서 '연봉킹' 자리에 올랐다.
금융위원회가 2014년부터 연봉 5억 원 이상을 받는 등기이사의 보수내역을 공개하기로 하자 두 사람은 발 빠르게 등기이사직을 내려놓았다. 미등기이사의 연봉은 공개 대상이 아니지만, 업계에서는 E 회장과 F 부회장이 수십억 원대 연봉을 받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2) 제2 기사

〈더팩트〉 취재진이 18일 A의 '황제 배당' 논란에 대해 E 회장을 인터뷰하기 위해 본사를 찾았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세계 3대 명차로 꼽히는 마이바흐였다. 마이바흐는 바로 E 회장의 업무용 차량이다. A 본사 정문에서 오른쪽 주차 공간은 E 회장의 애마 '마이바흐'와 F 부회장의 '롤스로이스'의 전용 주차장이다. A 본사 앞에선 세계 3대 명차 가운데 2대를 볼 수 있다.
마이바흐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애마로 알려져 유명세를 탔다. 원조 한류스타 I의 차도 익히 알려진 대로 마이바흐다. 차 값도 8억 원에 육박해 연간 판매 대수는 10대 안팎, 거리에서 마이바흐를 봤다면 이건희 회장, E 회장, I일 가능성이 크다.
E 회장과 비슷하게 F 부회장도 초호화 자동차를 업무용으로 사용한다. 그의 애마는 롤스로이스 최상위 모델인 팬텀이다. 차 값만 6억 원을 훌쩍 넘는 럭셔리 세단으로 '달리는 집무실'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다. F 부회장 외에도 팬텀을 타는 회장으로는 구본무 LG그룹 회장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조양래 한국타이어 회장이 있다.

3) 제3 기사

경제는 먹고사는 일과 관련된 분야입니다. (중략) 지난 한 주간 미처 기사에 담지 못했던 경제 취재 뒷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매년 '황제배당' 논란을 몰고 왔던 E, A 회장이 〈더팩트〉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파이'로 유명한 제과업체 A는 해마다 지나치게 높은 배당으로 지적을 받았죠. 특히 최근 3년간 매출이 하락하고 있는데도 당기순이익을 훌쩍 뛰어넘는 배당금을 지급하면서 '오너 일가용 배당'이라는 비판을 듣기도 했습니다. E 회장과 F 부회장이 타고 내린 럭셔리 끝판왕 업무용 차량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업무용 차량 두 대의 가격이 14억 원입니다.

◆ A, 매출액 2조 원을 넘는 글로벌 기업... 건물은 허름?

- 지난주에는 E, A 회장과 직격 인터뷰를 시도하기 위해 수차례 A 본사를 찾아갔다고 들었습니다.
- 그렇습니다. 특이한 것은 매출액이 2조 원에 달하는 A그룹 본사 건물이 1930년대 일제강점기에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 글로벌 기업에 걸맞지 않게 건물이 소박한 것 같아요.
- 저도 A가 여느 기업들처럼 신축 빌딩으로 재건축하지 않고 있는 것이 궁금했습니다. A 본사는 정확한 준공연도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오래됐습니다.
- 지하주차장도 없다면서요?
- 아주 오래전 지은 건물인 만큼 지하주차장이 따로 없습니다.
- 리모델링 계획은 없나요?
- A 본사 건물은 몇 차례 리모델링을 진행해 외관에서 낡았다는 느낌은 없습니다. A 본사에 따르면 본사 재건축에 대한 계획이 없는 상황입니다. 재건축에 돈을 쓰는 것보다는 설비 투자를 늘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게 A 측 답변이었습니다. 굳이 필요 없는 재건축에 돈을 쓰기 아깝다는 식으로 들렸습니다. 한마디로 검소하다는 거죠. 반면 회장님 부부의 업무용 차량은 럭셔리 수입차입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각 기사를 통하여 원고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고, 기사의 게재 시기나 내용의 배치, 표현 등(이하 '표현 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독자들로 하여금 원고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갖게 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는바, 피고들은 원고를 비방할 목적으로 위 각 기사를 작성·게재한 것으로 보이므로, 민법 제751조 제1항에 따라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기사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청구취지와 같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가. 허위 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1) 제1 기사

가) 위 기사는 '원고가 최근 회장 일가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기업에 비하여 과다하고 위법한 배당을 실시하고 있고, 이에 따라 원고는 과다한 배당을 한다는 이유로 매년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있다'라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가 2015년에 배당 규모를 확대한 것은 사실이나, 특정 대주주의 이익이 아닌 일반적인 주주들의 주식가치를 제고하기 위하여 적법하게 배당을 실시한 것이고, 원고가 2015년에 배당을 실시한 금액은 원고의 주가 대비 0.5%로 동종업계의 주가 대비 배당률인 1.3%의 절반에 불과하며, 위 기사 작성 당시에는 다른 언론사에서 원고의 배당이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보도가 이루어진 바 없으므로, 위 부분은 모두 허위이다(이하 '㉮ 주장'이라 한다).

나) 위 기사는 '원고는 등기임원의 보수를 공개하도록 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이 개정된 후 회장 부부의 보수를 공개하지 않기 위해 편법으로 이들의 등기이사직을 사임하게 하였다'라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다. 그러나 자본시장법 개정 이후에도 원고의 회장 부부인 E, F의 2013년도 보수가 공개된 바 있으며, E, F는 보수의 공개를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해외법인을 포함한 그룹 경영 총괄에 전념하고 원고의 경영에 관하여 전문경영인의 의사결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위와 같이 등기이사직을 사임한 것이므로, 위 부분은 허위이다. 피고들은 단순한 추측만으로 위와 같은 허위 보도를 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한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다(이하 '㉯ 주장'이라 한다).

2) 제3 기사

위 기사는 아무런 근거 없이 '원고는 해마다 회장 일가를 위하여 과다배당을 하고 있다고 지적받고 있다'라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고 있다.

나. 표현 등으로 인한 명예훼손

1) 제1 기사

위 기사는 제목과 본문에서 "황제배당", "과다배당"이라는 용어를 반복하여 사용함으로써, 원고가 다른 기업에 비하여 과다하고 위법한 배당을 하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고, 원고를 적법한 절차 없이 비합리적인 결정을 하는 전근대적인 기업으로 묘사하고 있다.

2) 제2 기사

위 기사는 '원고의 회장인 E, F가 업무용 차량으로 고급 승용차를 사용한다'라는 사실을 적시하였는바, 피고들은 제1 기사를 게재하고 2분 뒤에 제2 기사를 게시하였고, 위 기사 맨 아래 '관련기사'란에 제1 기사를 링크하여, 독자들로 하여금 제1, 2 기사를 전체적으로 보아 '원고의 회장 부부는 원고로부터 위법·부당하게 받은 배당금으로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고, 원고는 다른 주주들의 이익에 반하여 부도덕하게 운영되는 회사이다'라는 그릇된 인식을 갖도록 하였다. 또한 제2 기사는 여러 기업 오너들이 고급 승용차를 사용한다고 소개하면서도 원

고의 업무용 차량이 고급 승용차인 점만을 제목에 적시하는 등 원고를 악의적으로 비방하기 위하여 보도된 것이다.

3) 제3 기사

위 기사는 원고의 본사 건물은 노후한 반면 회장 부부의 업무용 차량은 고급 승용차라는 사실을 연결하여 적시하는 방법으로, 독자들로 하여금 '원고의 본사 건물은 낡았는데, 정작 회장 부부는 위법하게 받은 배당으로 고급 외제차를 타고 다니며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의 그릇된 인식을 갖도록 하였는바, 본사 건물을 재건축할지 여부는 경영 상황 및 건물 소재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되는 것임에도 피고들은 원고가 회장 일가의 이익만 챙기는 것처럼 원고를 악의적으로 비방하였다.

3. 명예훼손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허위 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의 성립 여부에 관한 법리

언론·출판을 통해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사실이거나 허위평가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하는 때에는 그 허위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고(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5다58823 판결 참조), 언론보도의 진실성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일 때 인정되며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고, 또한 복잡한 사실관계를 알기 쉽게 단순하게 만드는 과정에서 일부 특정한 사실관계를 압축, 강조하거나 대중의 흥미를 끌기 위하여 실제 사실관계에 장식을 가하는 과정에서 다소의 수사적 과장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아 보도내용의 중요부분이 진실에 합치한다면 그 보도의 진실성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275 판결 참조).

2) 사회적 가치·평가 저하 가능성에 관한 법리

신문의 어떤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불법행위가 되는지의 여부는 일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와의 연관하에서 기사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사가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다가 당해 기사의 배경이 된 사회적 흐름 속에서 당해 표현이 가지는 의미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2937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허위 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성립 여부

가) 제1 기사

(1) ㉮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갑 제3, 4, 9, 10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2014. 12. 11.을 기준으로 원고의 회장 E는 원고의 보통주 770,626주를, 부회장 F는 865,204주를, 자녀들은 합계 63,338주(= 31,669주씩 × 2명)를 보유하고 있고, 위 주식을 합하면 원고의 전체 보통주의 28.44%에 이르는 사실(위 시점 전후로 원고의 회장 일가의 주식 소유 비율에 변경이 있었다는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원고는 2016. 3.경 보통주 1주당 6,000원씩의 배당(2015. 12. 31. 기준)을 실시한 사실, 위 배당 기준일 당시 원고의 주가는 약 1,200,000원을 기록하고 있었으므로 위 배당금은 주가 대비 약 0.5%(= 6,000원/1,200,000원)인 사실, 같은 기간 원고의 동종업계인 음식료 업계의 시가 배당률은 약 1.3%에 이른 사실, 원고의 2013년 내지 2015년도의 각 순이익, 배당 규모, 회장 일가의 배당금 액수는 제1 기사에 기재된 바와 같은 사실(원고가 이를 다투고 있지 않다)이 인정된다.

(나) 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을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제1 기사는 전체적으로 '원고가 최근에 매출이 하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기순이익을 초과하는 배당을 실시하여 회장 일가가 많은 배당금을 취득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을 뿐, 위 배당의 실시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거나 그 자체로 위법하다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② 위 기사는 원고의 배당금이 원고의 주가가 아닌 당기순이익에 비하여 과다하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고, 동종업계의 시가 배당률이 1.3%에 이른다는 원고의 입장까지 소개하고 있는 점, ③ 위 기사는 연도별로 원고의 전체 배당금액과 회장 일가가 수령한 배당금액을 명시하고 있고, 이는 객관적인 진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여러 언론사들은 2015. 9.경부터 '원고 등 주식 가액이 높은 기업들이 액면분할을 실시하지 않아 일반 투자자들의 주식 구입이 어려워 결국 주식 배당금이 회장 등 소수의 대주주들에게 편중되고 있다'라는 취지의 보도를 해온 점, ⑤ 다른 언론사들의 보도에 비추어 위 기사에 적시된 '원고가 과다배당을 이유로 매년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다'는 부분은 사실관계를 압축적으로 표현하거나 다소 과장한 것에 지나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부분에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제1 기사의 해당 부분이 '원고가 회장 부부의 보수를 공개하지 않기 위하여 자본시장법이 개정된 후 빠르게 이들의 등기이사직을 사임하게 하였다'라는 취지로

보이기는 한다.

(나) 그런데 을 제5, 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자본시장법은 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주권상장법인 등이 각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등기임원의 개인별 보수를 공개하도록 개정되었고(제159조), 위 개정법률은 같은 해 11. 29. 시행된 사실, 위 개정법률에 따르면 주권상장법인 등은 2013년에 퇴임한 등기임원의 보수도 공개하여야 하는 사실, 원고의 회장 부부인 E, F는 2013. 11. 24. 원고의 등기이사직에서 사임하였고, 그 후 위 개정법률에 따라 이들의 2013년 보수가 공개된 사실이 인정된다.

(다)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의 회장 부부인 E, F는 자본시장법이 위와 같이 개정된 후 시행되기 직전에 원고의 등기이사직을 사임한 점, ② E 등이 자본시장법이 개정되자마자 등기이사직에서 퇴임하였어도 2013년에 퇴임한 등기임원으로서 그 보수의 공개를 피할 수 없었던 점(원고는, 위 개정법률에 의하면 2013년 보수 역시 공개되므로 보수 공개를 피하려면 그 이전에 사임했어야 할 것이라고 하면서 E 등의 등기이사직 사임 배경에 관한 보도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자본시장법의 개정은 2013년 사업연도 도중에 이루어진 것이고, 그 개정을 예상하여 2013년 이전에 사임함으로써 2013년 보수 공개를 피하는 것은 무리일 것이므로, 결국 E 등은 2014년 이후의 보수 공개를 피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시기에 사임한 셈이 된다), ③ E 등은 2013. 11. 24. 등기이사직에서 사임하여 그들에 대한 2014년 이후의 보수는 공개되지 아니한 점, ④ 제1 기사에는 E 등이 위와 같이 등기이사직을 사임한 것이 '편법'이라는 기재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에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개정된 자본시장법에 의한 보수 공개 범위에 관하여 피고 측의 착오가 있었는지는 분명하지 아니하나,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2014년 이후의 보수 공개를 피하기 위해 등기이사직 사임에 이르렀다고 볼 여지는 충분하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제3 기사

앞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제3 기사 중 '원고는 해마다 회장 일가를 위하여 과다배당을 하고 있다고 지적받고 있다'라는 사실을 적시한 부분도 허위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2) 표현 등으로 인한 명예훼손 성립 여부

가) 제1 기사

앞서 본 바와 같이 제1 기사는 '원고가 당기순이익을 초과하는 배당을 실시하여 회장 일가가 많은 배당금을 취득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을 뿐, 위 배당의 실시가

위법하다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지는 않은바, “황제배당”, “과다배당”이라는 표현은 위와 같이 적시된 사실을 강조하기 위한 수사적 과장이나 위 사실에 기초한 의견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표현이 반복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위 기사가 위 사실을 넘어 ‘원고가 다른 기업에 비하여 과다하고 위법한 배당을 하며, 적법한 절차 없이 비합리적인 결정을 하는 전근대적인 기업이다’라고 묘사하고 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제2 기사

(1)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제2 기사는 ‘원고의 회장인 E, F가 업무용 차량으로 고급 승용차를 사용한다’라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다고 할 것이고,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들이 제1 기사를 게재하고 2분 뒤에 제2 기사를 게시한 사실, 제2 기사 맨 아래에는 제1 기사의 제목이 기재되어 있는데 그 제목을 클릭하면 제1 기사 내용이 표시되도록 한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제2 기사에 적시된 사실 자체는 진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위 기사에는 원고가 배당금을 사용하여 고급 승용차를 구입하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다는 표현은 없는 점,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제1 기사에서 원고가 실시한 배당이 위법하다고 적시하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제2 기사가 독자들로 하여금 위와 같이 적시된 사실을 넘어 원고의 주장과 같은 인식을 하게 한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제3 기사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제3 기사는 제1, 2 기사의 내용을 재구성한 것에 불과해 보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제3 기사가 독자들로 하여금 앞서 인정된 바와 같은 제1, 2기사에 적시된 사실을 넘어 원고의 주장과 같은 인식을 하게 한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기사가 허위 사실을 적시하고 있다거나 게재 시기, 내용의 배치, 표현 등에 의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나, 다만 이 사건 각 기사는 원고가 회장 일가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배당을 실시하여 사회적으로 비판을 받고 있고, 회장 부부의 보수를 공개하지 않을 의도로 이들로 하여금 등기이사직을 사임하게 하였으며, 본사 건물에는 투자하지 않으면서 회장 부부의 차량에는 거액을 들였다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각 기사의 보도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4. 위법성조각사유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각 기사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므로, 위 각 기사의 보도에는 위법성이 없다.

나. 관련 법리

어떤 표현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더라도 그 표현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거나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할 것인바, 여기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을 의미하는데,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무방하고, '진실한 사실'이라고 함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판결 등 참조).

또한 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표현된 내용이 사적 관계에 관한 것인가 공적 관계에 관한 것인가에 따라 차이가 있는바, 당해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등에 따라 그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 공공적·사회적 의미가 있는 사안에 관한 표현의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37531 판결,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다35199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각 기사 중 명예훼손이 성립하는 부분은 대기업인 원고가 회장 일가에게 지급하거나 제공하는 배당금, 보수, 업무용 차량 등에 관한 내용으로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 보기 충분한 점,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각 기사에 적시된 사실은 허위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대부분 진실에 부합한다고 보이는 점, ③ 대기업의 자금 운용은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바, 일반적으로 대기업이 대주주 등에게 부여하는 혜택 등은 언론사들의 자유로운 비판과 감시의 대상이 되어 왔던 점, ④ 피고들 역시 원고가 회장 일가에 과다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아닌지 문제제기를 할 의도였을 뿐,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로 위 각 기사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기사의 보도는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1 ~ 3〉 대상기사 생략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11. 16. 선고 2015가합38668 판결(확정)

원문보도의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는 내용을 반론기사로 요구하는 것은 청구권 행사의 정당한 이익이 없다

- 원고 : A 외 1명
- 피고 : 주식회사 제이티비씨

[사실관계]

피고는 2015년 8월 19일자 〈JTBC 뉴스룸〉 프로그램 내 '탐사플러스' 코너에서 「손바닥 뒤집듯 갑으로…과일찹쌀떡 청년의 황당횡포」라는 제목으로 원고 A가 운영하는 회사가 가맹점에 공급한 과일가격이 시장 대비 2배 이상 차이가 있고, 가맹점 매장 인테리어 관련 리베이트를 받았으며, 가맹점에 제공한 피규어에 정품이 아닌 것들이 섞여 있다고 보도했다. 또한 원고 A가 일본 장인으로부터 과일찹쌀떡 기술을 전수받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가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고, 원고 A는 일본 장인의 비법을 참고해 레시피를 개발했을 뿐, 위 장인의 집에서 거주하며 일을 배웠다고 주장한 적이 없다며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와 함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심리 결과, 재판부는 이 사건 보도가 허위임을 인정할 수 없고, 요구하는 반론보도의 내용이 지엽말단적이거나 원문보도의 내용을 인정하는 취지로서 반론보도를 청구할 이익이 없다며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후 원고들이 상소하지 않아 위 판결이 확정됐다.
한편, 원고들은 소제기에 앞서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 및 반론보도,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하였으나 조정불성립결정된 바 있다(2015서울조정3528 · 3529 · 3530).

[판결요지]

□ **반론보도청구에 대한 판단**

원문보도의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는 내용을 반론기사로 요구하는 경우는 청구권 행사에 정당한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인바, 원고들 주장은 이 사건 기사의 내용대로 원고 A가 일본 장인으로부터 과일찹쌀떡 기술을 전수받은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독창적인 레시피를 개발하여 사업을 영위하였음을 인정하는 내용이므로, 그 반론보도를 청구할 정당한 이익이 없다.

판결문

사 건	2015가합38668 반론보도청구등
원 고	1. A 2. B 주식회사
피 고	주식회사 제이티비씨
변론종결	2016. 10. 19.
판결선고	2016. 11. 16.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① 피고는, ㉮ 이 판결 선고 후 최초로 방영되는 오후 8시 'JTBC 뉴스룸' 프로그램 내 '탐사플러스' 코너에서, 별지1 기재 정정보도문을 조정보도대상 화면을 이용하여 정정보도문의 제목을 시청자들이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크기의 자막으로 계속 표시한 채 진행자가 통상적인 진행 속도보다 빠르지 않게 낭독하게 하고, ㉯ 위 '탐사플러스' 코너에서, 5분 30초간 『'과일찹쌀떡 청년의 횡포' 보도와 관련한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별지2 기재 반론보도문의 주요내용을 포함한 내용으로 원고들의 반론 내용을 방송하라. ② 피고가 위 ①항 기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매일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③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19.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과일이 들어간 찹쌀떡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원고 B 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는 위 사업을 기초로 프렌차이즈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원고 A가 설립한 회사이며, 피고는 종합편성채널 JTBC를 운영하는 방송사이다.

나. 피고는 2015. 8. 19. 20:00 ~ 21:40 방영된 'JTBC 뉴스룸' 프로그램 내 '탐사플러스' 코너에서 "손바닥 뒤집듯 갑으로…과일찹쌀떡 청년의 황당횡포"라는 제목의 보도(이하 '이 사건 보도'라 한다)를 하였는데, 그 주요 장면은 별지3 기재 및 영상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정정보도청구 및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보도를 통하여 아래와 같은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과 아울러 별지1 기재 정정보도문의 보도 및 그에 대한 간접강제를 구한다.

① [과일가격 관련 부분] 원고 회사가 가맹점에 공급한 과일가격은 시중가격과 큰 차이가 있다.

② [리베이트 관련 부분] 원고 A가 가맹점 매장 인테리어와 관련하여 리베이트를 받았다.

③ [피규어 관련 부분] 원고 회사가 가맹점에 공급한 피규어에는 정품이 아닌 것들이 섞여 있고, 시중가격보다 비싸게 공급되었다.

④ [기술전수 관련 부분] 원고 A는 일본의 장인 C로부터 딸기찹쌀떡 기술을 전수받지 않았다.

나. 판단

1) 과일가격 관련 부분에 관한 판단

가) 먼저 피고가 이 사건 보도를 통하여 원고들 주장의 ①항 사실을 적시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보도에 가맹점을 운영하는 D가 "과일 같은 경우 비용이 시장 대비해서 최소 2배였습니다."라고 말하는 장면이 포함된 사실은 별지3 기재 및 영상과 같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보도를 통하여 '원고 회사가 가맹점에 공급한 과일가격은 시중가격과 큰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적시하였음이 인정된다.

나) 그러나 위 적시사실이 허위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9의 기재는 원고 회사가 가맹점에 직접 과일을 공급한 것이 아니라 원고 회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E 주식회사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과일을 공급하였음을 전제로 하는데, 이는 을 1, 9의 각 기재(가맹점은 원고 회사의 승인이 없는 한 원고 회사로부터 직접 과일을 구매할 계약상 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에 반하는 것이어서 선뜻 믿을 수 없다(기록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으로는 갑 9의 작성자인 F가 어떤 지위에 있는 사람인지, 그가 어떠한 경위로 가맹점에 대한 과일공급가격의 결정방식을 알고 있는지, 시중가격은 무슨 근거자료를 토대로 파악한 것인지 전혀 알 수 없어 위 증거자료의 객관성을 담보할 수도 없다).

한편 원고들이 이 부분과 관련하여 제출한 갑 17-1 내지 19의 각 기재는 원고 회사가 가맹점이 자체적으로 과일을 구매하는 것을 용인해 왔다는 취지이나, 이는 갑 7의 기재(가맹점이 원고 회사의 허락 없이 제3자로부터 과일을 구매하였음을 이유로 가맹점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에 배치되는 것이어서 믿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설령 어떤 가맹점이 과일 일부를 제3자로부터 구매하는 것이 가능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관계는 '원고 회사를 통해 공급받는 과일가격이 시중가격보다 비싸다'는 사실과 얼마든지 양립가능한 것이므로, 위 증거들은 이 부분 적시사실의 허위성을 뒷받침하는 적절한 증거라고 볼 수 없다.

다) 오히려 을 1 내지 4, 7-1 내지 7-7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 회사가 가맹점에 공급한 주요과일의 시중가격 대비 가격은, 딸기의 경우 약 10배, 멜론의 경우 약 3배 등 통상 2배 이상인 사실이 인정된다.

2) 리베이트 관련 부분에 관한 판단

가) 먼저 피고가 이 사건 보도를 통하여 원고들 주장의 ②항 사실을 적시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보도에 원고 회사의 가맹점을 운영하는 D가 "인테리어 업체가 했었는데 그분들 입에서 천만 원 리베이트를 들었어요. 이건 정말 한심하다."라고 말하는 장면이 포함된 사실은 별지3 기재 및 영상과 같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보도를 통하여 '원고 A가 가맹점 매장 인테리어와 관련하여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사실을 적시하였음이 인정된다.

나) 그러나 위 적시사실이 허위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20-1(G의 진술서), 20-2(H의 진술서)의 각 기재는 갑 10의 일부 기재(원고 A와 G, H 사이의 통화 녹취록 부분, 원고 A가 인테리어 업자들로부터 300만 원 ~ 350만 원의 리베이트를 받아 왔음을 자인하고, G와 H 역시 자신들이 원고 A에게 리베이트를 지급하였음을 인정하는 내용)에 배치되어 믿을 수 없고, 한편 갑 24의 기재는 원고 A가 법정 외에서 자신의 주장을 개진한 것에 불과하여 당사자의 주장 이상의 증거가치가 없다.

다) 오히려 갑 10의 일부 기재와 을 10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 A가 가맹점 매장 인테리어와 관련하여 관련 업자들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아 왔다는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들은 리베이트의 구체적인 액수가 천만 원인지 여부를 문제삼기도 하나, 이는 원고들이 구하는 정정보도문의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주장일 뿐 아니라(원고들은 단순히 '매장 인테리어 비용과 관련한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내용 역시 악성 루머에 불과하였을 뿐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이라는 점을 정정보도의 내용으로 삼고 있다), 이 사건 보도의 전체적인 취지는 "원고들이 가맹점을 상대로 소위 '갑질'을 한다"는 것이고, 원고 A의 리베이트 수령사실은 '갑질'의 일례로서 제시된 것이므로, 리베이트의 구체적인 액수가 천만 원인지 아닌지는 이 사건 보도의 진실성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부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피규어 관련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우선 피고가 이 사건 보도를 통하여 원고들 주장의 ③항 사실을 적시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보도에 원고 회사가 가맹점에 공급한 피규어가 들어 있는 박스를 배경으로, 피규어 전문업체 관계자가 "박스에 있는 제품은 제가 볼 때 경품이나 중국에서 나온 가품 제품으로 보이는데 전체적인 가격을 봤을 때는 많이 잡아도 150만 원대"라고 말하는

장면이 포함된 사실은 별지3 기재 및 영상과 같고, 이 사건 보도에 '원고 회사가 일부 피규어를 시중가격보다 비싸게 공급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된 사실은 피고가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보도를 통하여 '원고 회사가 가맹점에 제공한 피규어에는 정품이 아닌 것들이 섞여 있고, 시중가격보다 비싸게 공급되었다'는 사실을 적시하였음이 인정된다.

나) 그러나 위 적시사실이 허위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부분과 관련하여 원고들이 제출한 갑 25 내지 26-15의 각 기재와 영상을 모두 모아 보더라도 앞서 본 적시사실이 허위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오히려 을 9, 10, 11, 13-1 내지 1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가맹점에 공급한 피규어에는 일본 애니메이션 나루토 , 슬램덩크를 원작으로 하는 중국 CHAOER사 피규어 제품들이 다수 섞여 있는데 나루토, 슬램덩크의 원작사에서는 중국 CHAOER사에 제품생산 라이선스를 제공한 적이 없는 사실, 원고 회사는 대금 260만 원에 위 피규어를 공급하였으나, 그 시중가격은 정품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100만 원 정도에 불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4) 기술전수 관련 부분에 관한 판단

가) 먼저 피고가 이 사건 보도를 통하여 원고들 주장의 ④항 사실을 적시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보도에 원고 A에 의하여 스승으로 지목된 C가 "저는 선생님이라 불릴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저희 가게에서는 찹쌀떡을 만들지 않아요.", "(원고 A에게 말한 정보는) 인터넷으로도 알 수 있는 정보입니다. 딱히 특별한 비법은 아닙니다."라고 말하는 장면 및 C의 법률대리인이 "일본 장인에게 기술 전수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랬다고 딸기찹쌀떡을 파는 것은 (중략) 범죄행위입니다."라고 말하는 장면이 포함된 사실은 별지3 기재 및 영상과 같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보도를 통하여 '원고 A는 일본의 장인 C로부터 딸기찹쌀떡 기술을 전수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적시하였음이 인정된다.

나) 그러나 위 적시사실이 허위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12 내지 16의 각 기재는 원고 측이 법정 외에서 자신의 주장을 개진한 것에 불과하여 당사자의 주장 이상의 증거가치가 없고, 갑 27의 기재는 구체적인 기술전수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오히려 갑 11-1, 11-2, 28 내지 29-3의 각 기재와 영상에 의하면, C가 직접 '원고 A에게 과일찹쌀떡 기술을 전수한 사실이 없다', '원고 A는 C의 가게에 와서 먹고, 사진 찍고, 10분 정도 있다가 돌아간 사실이 있을 뿐이다', 'C는 찹쌀떡 전문가도 아니고, 원고 A에게 인터넷을 통하면 누구나 알 수 있는 내용(쌀가루 사용법, 냉동떡 사용법)을 말해 준 적이 있을 뿐이다'라고 여러 차례 밝히면서 원고들의 허위·과장광고에 대하여 항의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소결

결국 원고들 주장의 ① 내지 ④항 사실이 허위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정정보도청구(간접강제 포함)와 손해배상청구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반론보도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원고 A가 C로부터 딸기찹쌀떡 기술을 전수받지 않았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이 사건 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반론보도문의 보도와 그에 대한 간접강제를 구하는 바. 그 반론보도문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① C는 일본에서 3대째 떡집을 하고 있다.

② 원고 A는 C의 비법을 참고로 하여 수년간의 시행착오 끝에 자신만의 독창적인 레시피를 개발하였다.

③ 원고 A는 C의 집에서 거주하며 일을 배웠다고 주장한 적이 없다.

나. 판단

1) 앞에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들은 사실적 주장에 관한 이 사건 보도로 인하여 사회적 평판 저하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2) 그러나 이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들에게는 반론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거나 청구된 반론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과 다르므로, 반론보도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 원문보도에서 보도되지 아니한 사실이나 지엽말단적인 사항에 대한 반론기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청구권 행사에 정당한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인바, "원고들이 가맹점을 상대로 소위 '갑질'을 한다"는 이 사건 보도의 전체적인 취지 및 앞서 살펴본 이 사건 기사의 주요 적시사실들에 비추어, 원고들 주장의 ①, ③항은 원문보도에서 보도되지 아니한 사실 내지 지엽말단적인 사항에 관한 것이어서 그에 대하여 반론보도를 청구할 정당한 이익이 없고, ㉯ 또한 원문보도의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는 내용을 반론기사로 요구하는 경우 역시 청구권 행사에 정당한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인바, 원고들 주장의 ②항은 이 사건 기사의 내용대로 원고 A가 C로부터 과일찹쌀떡 기술을 전수받은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독창적인 레시피를 개발하여 사업을 영위하였음을 인정하는 내용이므로, 그 반론보도를 청구할 정당한 이익이 없다(만약 이와 달리 원고들 주장의 ②항이 여전히 원고 A가 C로부터 과일찹쌀떡 기술을 전수받았다는 취지라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는 청구된 반론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로서는 여전히 원고들의 반론보도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의 반론보도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다. 소결

결국 원고들의 반론보도청구도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1〉 요구하는 정정보도문 생략
〈별지 2〉 요구하는 반론보도문 생략
〈별지 3〉 방송내용 생략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1. 23. 선고 2016가합532506 판결

형 집행정지 기간이 6년 내내 계속된 것은 아니더라도 6년이란 기간에 걸쳐 있다면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한다

- 원고 : A
- 피고 : 주식회사 에스비에스

[사실관계]

피고는 2016년 2월 25일자 〈SBS 8뉴스〉 프로그램에서 「'살인청부' 사모님이 '직업훈련' 교도소에?」라는 제목으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원고가 수용환경이 좋은 직업훈련교도소에 수감된 경위에 관한 법무부의 해명이 석연치 않고, 수감기간 중 허위진단서를 제출해 6년 동안 병원에서 호화생활을 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원고는 허위사실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주위적으로 정정보도, 예비적으로 반론보도 게재와 함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심리 결과,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의 수형생활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을 뿐,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고, 원고가 구하는 반론보도 또한 이 사건 기사를 통해 보도된 내용이라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가 항소하여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2심 계류 중이다(2016나2088750).
한편, 원고는 소제기에 앞서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하였으나 조정불성립결정된 바 있다(2016서울조정616).

[판결요지]

□ 정정보도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가 형 집행정지를 신청하면서 첨부하였던 진단서들이 모두 허위였던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 중 일부가 허위임은 사실이고, 원고가 6년 내내 계속해서 병원에 입원하였던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반복적으로 형 집행정지를 받아 입원하였던 것이 전체적으로 볼 때 위 6년이란 기간에 걸쳐있는 것 또한 사실이며, '호화생활'이라는 표현은 일반의 경우와는 달랐던 수형생활의 특별함을 강조하기 위한 다소간의 수사적 과장에 불과한 점 등을 볼 때, 위 입원 등에 대한 보도내용이 허위라고 보기도 어렵다.

□ 반론보도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기사에 대한 반론보도를 구하는 취지는 화성 직업훈련교도소의 경우 현재 직업훈련을 받지 않는 일반 수형자들도 많이 수감되어 있고, 특히 무기수도 상당수 수감되어 있어 원고가 특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인데, 원고가 구하는 반론보도는 이미 이 사건 기사를 통해 보도된 내용에 관한 것으로, 그 보도방식, 전체 방송내용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이 사건 기사 중 위 부분에 관하여 따로 반론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판결문

사 건	2016가합532506 정정보도 등
원 고	A
피 고	주식회사 에스비에스
변론종결	2016. 11. 2.
판결선고	2016. 11.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는 이 판결문을 송달받은 1주일 이내에 방송되는 저녁 8시 〈SBS 8 뉴스〉 프로그램 마지막에, 통상의 프로그램 자막과 같은 글자 크기로 화면 상단에 '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을 계속 표시하고, 그 아래 화면에 별지1 기재 정정보도요구문을 시청자들이 그 내용을 충분히 알아볼 수 있을 만큼 자막으로 표시하면서, 진행자로 하여금 원 프로그램의 진행과 같은 속도로 낭독하게 하고, 위 정정보도의무를 이행한 후 3일 이내(토요일, 공휴일 제외)에 인터넷 SBS 홈페이지 〈뉴스-사회〉란 초기화면 기사목록 중간 이상 부분에 위 정정보도요구문을 본 뉴스기사의 제목 및 본문 활자와 동일한 크기로 09:00부터 48시간 동안 게재하되, 48시간 게재 후에는 기사 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하며, 위 인터넷 본 뉴스기사 본문 하단에도 위 정정보도요구문을 이어서 게재하고, 〈네이버〉, 〈다음〉 등 본 뷰스기사가 검색 제휴(계약)된 포털사이트에도 전송하고, 피고가 위 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원고에게 위 기간만료일 다음날부터 그 이행완료일까지 일 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는 이 판결문을 송달받은 1주일 이내에 방송되는 저녁 8시 〈SBS 8 뉴스〉 프로그램 마지막에, 통상의 프로그램 자막과 같은 글자 크기로 화면 상단에 '반론보도문'이라는 제목을 계속 표시하고, 그 아래 화면에 별지2 기재 반론보도요구문을 시청자들이 그 내용을 충분히 알아볼 수 있을 만큼 자막으로 표시하면서, 진행자로 하여금 원 프로그램의 진행과 같은 속도로 낭독하게 하고, 위 반론보도의무를 이행한 후 3일 이내(토요일, 공휴일 제외)에 인터넷 SBS 홈페이지 〈뉴스-사회〉란 초기화면 기사목록 중간 이상 부분에 위 반론보도요구문을 본 뉴스기사의 제목 및 본문 활자

와 동일한 크기로 09:00부터 48시간 동안 게재하되, 48시간 게재 후에는 기사 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하며, 위 인터넷 본 뉴스기사 본문 하단에도 위 반론보도요구문을 이어서 게재하고, 〈네이버〉, 〈다음〉 등 본 뉴스기사가 검색 제휴(계약)된 포털사이트에도 전송하고, 피고가 위 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원고에게 위 기간만료일 다음날부터 그 이행완료일까지 일 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2004. 1. 28. 서울고등법원에서 살인죄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서울고등법원 2003노2812, 2951(병합)], 2004. 5. 27. 상고가 기각되어(대법원 2004도1555) 위 형이 확정되었으며, 현재 위 형의 집행 중이다.

2) 피고는 방송, 통신, 엔터테인먼트 및 문화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의 방송사업자이다.

나. 피고의 기사 보도

피고는 2016. 2. 25. 〈SBS 8 뉴스〉 프로그램에서 ['살인청부' 사모님이 '직업훈련' 교도소에?]라는 제목으로 별지3 기재와 같은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 한다)를 보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의 기재, 갑 제1호증의 1,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기사의 내용과 달리 ① 원고는 화성 직업훈련교도소에 수감되는 과정에서 어떠한 특혜도 받지 않았고, ② 원고는 형 집행기간 중 허위진단서를 제출하며 형집행정지를 신청하여 병원에서 호화생활을 하지 않았다.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기사를 통해 명백히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을 보도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따라서 주위적으로, 피고는 이 사건 기사에 대하여 별지1 기재 정정보도요구문 같은 내용으로 정정보도를 하여야 하고(정정보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이를 강제하기 위한 배상금도 청구한다), 위와 같은 허위의 기사를 보도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불법행위책임으로 원고에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예비적으로, 피고는 별지2 기재 반론보도요구문과 같은 내용으로 반론보도를 하여야 한다(반론보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이를 강제하기 위한 배상금도 청구한다).

3. 정정보도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언론중재법상 정정보도청구는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한 경우에 허용되므로 그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려면 원고가 정정보도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이 사건 기사가 사실적 주장에 관한 것인지 단순한 의견표명인지를 먼저 가려보아야 한다. 여기에서 사실적 주장이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명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증거에 의하여 그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을 말한다. 이러한 개념이 반드시 명확한 것은 아니다. 언론보도는 대개 사실적 주장과 의견표명이 혼재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구별기준 자체가 일의적이라고 할 수 없고, 양자를 구별할 때에는 당해 원보도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구독자가 보통의 주의로 원보도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방법뿐만 아니라 당해 원보도가 게재한 문맥의 보다 넓은 의미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및 시청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한편 언론중재법 제14조에 의하여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 등의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피해자는 그 언론보도 등이 진실하지 아니하다는 데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11. 9. 2. 선고 2009다5264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언론보도의 진실성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고, 복잡한 사실관계를 알기 쉽게 단순하게 만드는 과정에서 일부 특정한 사실관계를 압축, 강조하거나 대중의 흥미를 끌기 위하여 실제 사실관계에 장식을 가하는 과정에서 다소의 수사적 과장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아 보도내용의 중요부분이 진실에 합치한다면 그 보도의 진실성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27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사의 각 내용이 사실적 주장에 관한 것인지 여부

1) 원고가 이 사건 기사 중 정정보도를 구하고 있는 부분을 요약하면, ① 주로 모범수들이 직업훈련을 받으며 지내는 화성 직업훈련교도소에 원고가 수감되게 된 경위에 관한 법무부의 해명이 석연치 않다는 내용, ② 원고는 2004년에 무기징역을 선고받고도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은 뒤 병원에서 6년 동안 호화생활을 하였다는 내용이다.

2)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위 기초사실, 원·피고들이 제출한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보면 위 내용들은 모두 증거에 의하여 그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다. 적시된 사실의 허위성 여부

1) 살피건대, 앞서 살펴본 증거들에 갑 제2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을 제1, 3, 4,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을 제5 내지 7호증의 각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정이 인정된다.

① 화성 직업훈련교도소는 전국 각지의 교정시설에 있는 모범수들 중에서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적격자들이 수용되어 직업훈련을 받는 곳으로, 다른 교도소에 비해 비교적 쾌적한 수용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위 교도소에는 모범수들 외에 무기수를 포함한 일반 수형자들도 일부 수용되어 있다.

② 피고는 이 사건 기사의 취재과정에서 위 교도소에 원고가 수용되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법무부에도 문의를 하였으나, 법무부는 위 교도소에 모범수 뿐 아니라 무기수를 포함한 일반 수형자들도 수용되어 있고, 개인별 수형등급은 비공개 사항이어서 밝힐 수 없다면서 원고가 수용되게 된 경위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아니하였다.

③ 피고는 이 사건 기사에서 원고가 화성 직업훈련교도소에 수용된 경위가 석연치 않다는 의혹을 제기하였을 뿐이고, 원고가 법무부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특혜를 받았다고 단정하지는 않았다.

④ 피고는 위 취재과정에서 청취한 법무부의 답변내용을 그대로 인용하여 '법무부는 내부 기준에 따라 일반 수감자들도 화성교도소에 수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라는 내용을 보도하였고, '수형등급 등 내부 기준에 따라 전국의 수형자들을 분산 수용하고 있으며, 일반 수감자들도 화성교도소에 있다'는 내용도 화면 자막에 실어 함께 보도하였다.

⑤ 원고가 형 집행정지 신청을 하면서 첨부하였던 진단서들 중 일부가 허위라고 인정되어 이를 발급한 의사는 2014. 10. 30. 허위진단서작성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유죄판결(서울고등법원 2014노616)을 받았고, 현재 위 사건은 상고심 계속 중이다.

⑥ 위 형사사건에서 인정된 바에 따르면, 원고는 형집행 도중인 2007. 7.경부터 2013. 6.경까지 38회에 걸쳐 건강문제를 이유로 집행정지를 신청하였고, 병원에 입원한 기간은 총 1,524일에 이른다. 원고의 위와 같은 형 집행정지 및 병원입원 등이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져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일자, 검찰은 2013. 6. 17. 원고에 대한 형 집행정지를 취소한 후 원고를 재수감하였다. 원고가 재수감된 이후 현재까지 질병의 치료 등을 위해 형 집행정지가 이루어진 적은 없다.

⑦ 원고는 형 집행정지를 받아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주로 병원의 특실 또는 1인실에 머물렀는데, 위 병실 중에는 전기스토브, 주방시설 등이 갖추어진 곳도 있었고, 하루 사용료가 218만 원에 이르는 병실도 있었다. 그 기간 중 일부인 2010. 3. 10.부터 2013. 1. 30.까지 사이에 원고는 병원비로 2억 5,000만 원 가량을 지출하기도 하였다.

⑧ 비록, 원고가 형 집행정지를 신청하면서 첨부하였던 진단서들이 모두 허위였던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 중 일부가 허위임은 사실이고, 원고가 6년 내내 계속해서 병원에 입원하였던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반복적으로 형 집행정지를 받아 입원하였던 것이 전체적으로 볼 때 위 6년이란 기간에 걸쳐있는 것 또한 사실이며, '호화생활'이라는 표현은 일반의 경우와는 달랐던 수형생활의 특별함을 강조하기 위한 다소간의 수사적 과장에 불과한 점 등을 볼 때, 위 입원 등에 대한 보도내용이 허위라고 보기도 어렵다.

2) 이를 종합하면, 원고가 정정보도를 구하고 있는 기사의 내용은 그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고, 단지 세부적인 사항에 있어 약간의 차이가 있거나, 일부 과장된 표현을 사용한 정도에 불과하여 위 기사를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라.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위 정정보도청구는 이유 없다.

4.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언론매체의 어떤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불법행위가 되는지의 여부는 일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와의 연관 하에서 기사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사가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다가 당해 기사의 배경이 된 사회적 흐름 속에서 당해 표현이 가지는 의미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그리고 어떤 표현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더라도 그 표현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거나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할 것인바, 여기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을 의미하는데,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무방하고, '진실한 사실'이라고 함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기사의 내용에 허위사실의 적시가 있다고 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나온 원고의 손해배상청구 역시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가사 원고 주장대로 이 사건 기사에 적시된 사실에 일부 허위가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기사는 살인죄를 저질러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원고가 시설이 좋은 교도소에 수용되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장기간 형 집행정지를 받은 점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으로 형 집행의 공평성 및 투명성 등을 촉구하기 위한 보도로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고, 그 목적이 공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며, 또한 이 사건 기사는 주로 법무부 등 기관에 대한 질의내용 및 관련 형사판결을 기초로 한 것이어서 피고로서는 그 사실이 중요한 부분에 있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으므로, 이와 같은 점에서도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5. 반론보도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언론중재법상 반론보도청구권은 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가 그 보도내용에 관한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언론사는 피해자가 반론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때, 청구된 반론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거나 위법한 내용인 때 등에는 반론보도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바, 여기서 '피해자가 반론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때'에는 반론보도에 기재될 내용과 원문기사에 보도된 내용이 본질적인 핵심에 관련되지 못하고 지엽말단적인 사소한 것에만 관련되어 있을 뿐이어서 이에 대한 반론이 올바른 여론형성이라는 본래의 목적에 기여하는 바가 전혀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대법원 1997. 10. 28. 선고 97다28803 판결 등 참조).

나. 반론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

1)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기사에 대한 반론보도를 구하는 취지는 화성 직업훈련교도소의 경우 현재 직업훈련을 받지 않는 일반 수형자들도 많이 수감되어 있고, 특히 무기수도 상당수 수감되어 있어 원고가 특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인데, 피고가 위 취재과정에서 확인한 법무부의 답변내용을 그대로 인용하여 이 사건 기사에 '법무부는 내부 기준에 따라 일반 수감자들도 화성교도소에 수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라는 내용을 보도하였고, 동시에 '수형등급 등 내부 기준에 따라 전국의 수형자들을 분산 수용하고 있으며, 일반 수감자들도 화성교도소에 있다'는 내용도 화면 자막에 실어 함께 보도하였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2) 위 사정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구하는 반론보도는 이미 이 사건 기사를 통해 보도된 내용에 관한 것으로, 그 보도방식, 전체 방송내용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이 사건 기사 중 위 부분에 관하여 따로 반론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위 반론보도청구 역시 이유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1〉 요구하는 정정보도문 생략
〈별지 2〉 요구하는 반론보도문 생략
〈별지 3〉 대상기사 생략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12. 14. 선고 2016가합32131 판결

언론조정 결과 반론보도로 합의하였음에도 정정보도로 오인하게 할 만한 기사를 게재한 것은 허위라고 볼 것이다

- 원고 : 주식회사 씨비에스아이
- 피고 : 주식회사 천지일보

[사실관계]

원고가 2015년 10월 22일자 〈노컷뉴스〉에 「D '자식도 빼앗아 가고 폭행까지'…경찰 수사」라는 제목으로 D에 대한 반대시위 사건을 보도하자, 피고는 같은 달 31일자 〈뉴스천지〉에 「D가 집단폭행?…노컷뉴스의 도 넘은 편파보도」라는 제목으로 위 원고 기사가 사실 확인 없이 피해자의 주장에 기초했다고 비판했다(제1 대상기사). 한편, 소외 D는 위 〈노컷뉴스〉 기사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 반론보도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하였고(2015강원조정38 · 39), 그 결과 반론보도를 게재하기로 당사자 간 합의했으며, 원고는 2015년 11월 18일자 〈노컷뉴스〉에 「'D 신도 집단폭행'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를 게재했다. 피고는 위 조정성립 이후인 11월 17일자 〈뉴스천지〉에 「CBS노컷뉴스, 'D 폭행' 기사 반론보도 합의…사실상 오보 인정」이라는 제목으로 위 조정사건에 대해 보도했다(제2 대상기사). 이에 원고는 D 폭행 사건 담당 경찰관에게 사실 확인을 거쳤고, 원고가 조정 결과 게재한 반론보도에 대해 D 관계자의 말만을 인용해 허위사실을 보도했다며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심리 결과, 1심 법원은 원고가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보도한 점 및 언론사인 피고가 반론보도와 정정보도의 차이를 잘 알고 있음에도 독자들로 하여금 정정보도로 오인하게 할 만한 내용을 게재한 점을 인정하여 정정보도 게재 및 손해배상 1,000만 원 지급을 명하였다. 이에 피고가 항소하여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2심 계류 중이다(2017나2000214). 한편, 원고는 소제기에 앞서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하여 직권조정결정(정정보도)이 내려졌으나(2015서울조정4076 · 4077), 피고 측 이의신청으로 자동소제기된 바 있다.

[판결요지]

□ **반론보도 합의의 의미를 왜곡한 기사의 위법성에 대한 판단**

원 보도의 허위성 여부의 측면에서 반론보도와 정정보도의 요건이 명백히 다르고, 언론사인 피고로서는 그와 같은 차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원고와 D 사이에 합의된 반론보도를 정정보도로 오인하게 할 만한 내용을 제2 대상기사로 작성 · 보도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진위 확인을 게을리 한 채 정확한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제1, 2 대상기사를 내보낸 피고에게 이를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판결문

사　　건　2016가합32131　정정및손해배상
원　　고　주식회사 씨비에스아이
피　　고　주식회사 천지일보
변론종결　2016. 11. 23.
판결선고　2016. 12. 14.

주 문

1. 피고는,
   가.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뉴스천지 홈페이지(http://www.newscj.com) 사회면 초기화면의 기사목록 앞 부분에 별지1 정정보도문의 제목을 통상 기사 제목과 동일한 크기의 활자체로 [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별지1 정정보도문의 제목 및 내용이 별지3 정정보도 대상 기사의 제목 및 내용과 동일한 크기의 활자체로 표시되도록 하고, 위 홈페이지의 별지3 및 별지4 각 정정보도 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 별지1 정정보도문을 같은 형식으로 이어서 게재하도록 하며, 위 48시간 게재 후에는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별지3 및 별지4 각 정정보도 대상기사와 함께 검색되도록 하고,
   나. 위 가항 기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원고에게 그 기한 만료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1일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1. 17.부터 2016. 12. 1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뉴스천지 홈페이지(http://www.newscj.com) 사회면 초기화면의 기사목록 앞 부분에 별지2 각 정정보도문의 제목을 [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별지2 각 정정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별지3 및 별지4 각 정정보도 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별지2 각 정정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하고, 48시간 게재 후에는 기사 데이

터베이스에 보관하여 별지3 및 별지4 각 정정보도 대상기사와 함께 검색되도록 하라. 피고가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한 만료일 다음날부터 그 이행완료일까지 1일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1. 17.부터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인터넷신문인 노컷뉴스(http://www.nocutnews.co.kr)를 발행하는 언론사이고, 피고는 인터넷신문인 뉴스천지(http://www.newscj.com)를 발행하는 언론사이다.

나. 기사의 보도

1) 원고는 2015. 10. 22. 노컷뉴스에 "D '자식도 빼앗아 가고 폭행까지'…경찰 수사"라는 제목으로 '자녀가 D(이하 'D'라 한다) 신도가 된 부부가 D에 반대하는 시위를 하다가 부인인 B가 강릉 D 신도들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하여 경찰 조사 중이다'는 내용의 기사(이하 '관련 기사'라 한다)를 게재하였다.

2) 그러자 피고는 2015. 10. 31. 뉴스천지에 "D가 집단폭행?…노컷뉴스의 도 넘은 편파보도"라는 제목으로 '노컷뉴스가 D 측의 입장을 듣지도 않고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사실 확인도 하지 않은 채 B의 주장과 당시 현장에 있지 않았음에도 목격자로 표현된 A의 진술만을 일방적으로 보도하였다'는 내용의 별지3 기사(이하 '제1 대상기사'라 한다)를 게재하였다.

3)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라, 원고와 D는 2015. 11. 11. 원고가 노컷뉴스에 "'D 신도 집단폭행' 관련 반론보도문"이라는 제목으로 "본지는 관련 기사에서 D 신도들이 교단에 시위하던 B씨에게 욕설하고 집단 폭행했으며, B씨의 카메라를 가져가 영상을 삭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D는 사건 당시 신도들은 B씨에게 폭력을 휘두른 바 없고, B씨의 카메라를 교단 소유로 오인하여 잠깐 보관했을 뿐 영상을 삭제한 사실은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라는 보도문을 게재하기로 합의하였다(이하 '선행 합의'라 한다).

4) 그 후 피고는 2015. 11. 17. 뉴스천지에 "CBS노컷뉴스, 'D 폭행' 기사 반론보도 합의…사실상 오보 인정"이라는 제목으로 별지4 기사(이하 '제2 대상기사'라 한다)를 게재하였다.

다. 관련 형사사건

한편, D 신도인 C는 '2015. 10. 19. 22:25경 D의 폐단을 알리기 위하여 1인 시위를 하던 E의 부인인 B를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는 내용의 범죄사실로 2016.

9. 29. 벌금 300만 원의 유죄판결을 받았고(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고단280), 이에 C가 항소하여 항소심 계속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정정보도 및 간접강제 청구에 관한 판단

먼저, 제1 대상기사가 허위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갑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녹음파일 내용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와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 즉 ① 관련 기사에서 언급한 '목격자 A'인 A가 당시 사건 현장에서 최초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에서 목격자로서 폭행 가해자를 지목하여 이에 따른 수사가 이루어진 사실, ② 관련 기사는 위 폭행사건에 대해 수사 중이던 강릉경찰서의 경찰관으로부터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에 작성·보도된 사실, ③ 원래 '반론보도'란 원 보도내용의 허위성을 전제로 하는 '정정보도'와 달리 원 보도내용의 진실 여부를 불문하고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에게 원 보도내용과 반대되거나 다른 사실을 주장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인데, 제2 대상기사는 '이번 언론중재위의 반론보도 결정에 노컷뉴스가 합의했다는 것은 해당 기사가 사실상 오보임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는 D 관계자의 말만을 그대로 인용하는 등 그 전체적인 취지상 반론보도와 정정보도의 차이를 알기 어려운 독자들로 하여금 원 보도(관련 기사)가 허위임을 전제로 선행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오해를 일으킬 만한 논조로 작성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결국 제1, 2 대상기사는 모두 허위라고 할 것이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뒤집기 어려우므로, 피고는 정정보도를 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가 게재할 정정보도문의 내용과 글자 크기, 활자체, 게재방법 등에 관하여 보건대, 제1, 2 대상기사의 내용이나 분량, 표현방법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가 구하는 별지 2 정정보도문의 내용을 별지1 정정보도문과 같이 수정하되, 그 정정보도문의 글자 크기, 활자체, 게재방법 등은 주문과 같이 정하며, 아울러 원고의 신청에 따라 피고가 위 정정보도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일 1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간접강제금의 지급도 명하기로 한다.

3.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제1, 2 대상기사를 보도하였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무형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제1, 2 대상기사의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에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목격자의 신고에 따라 폭행사건이 경찰에 접수되었고 이를 확인하는 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음에도 피고는 D 관계자의 이야기만 듣고 '목격자 A'가 사건 당시 현장에 없었다는 등의 제1 대상기사를 작성·보도한 점, 원 보도의 허위성 여부의 측면에서 반론보도와 정정보도의 요건이 명백히 다르고, 언론사인 피고로서는 그와 같은 차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원고와 D 사이에 합의된 반론보도를 정정보

도로 오인하게 할 만한 내용을 제2 대상기사로 작성·보도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진위 확인을 게을리 한 채 정확한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제1, 2 대상기사를 내보낸 피고에게 이를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마치 형사사건의 목격자를 허위로 꾸며내고 오보인지 여부에 대해 밝혀진 바 없는 기사를 원고 스스로 오보라고 인정한 것과 같은 인상을 주는 제1, 2 대상기사가 작성·보도됨으로써 진실한 보도를 다하여야 할 언론사로서의 원고의 사회적 명예가 상당히 훼손된 점을 비롯하여 제1, 2 대상기사의 내용, 표현 방식, 허위 사실의 적시가 차지하는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그 액수를 1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최후 불법행위일인 2015. 11. 1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12.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일부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1〉 정정보도문

[제목] '노컷뉴스 D 보도' 관련 정정보도

[내용] 본지는, 2015. 10. 31.자 "D가 집단폭행?…노컷뉴스의 도 넘은 편파보도" 및 2015. 11. 17. 자 "CBS노컷뉴스, 'D 폭행' 기사 반론보도 합의…사실상 오보 인정" 제목하의 각 보도에서, 노컷뉴스의 2015. 10. 22.자 "D '자식도 빼앗아 가고 폭행까지'…경찰 수사" 보도가 해당 사건 담당 경찰관에 대한 사실 확인 없이 폭행 피해자의 일방적인 진술에 기초하였고, '목격자 A'는 사건 현장에 없었으며, 노컷뉴스가 D와의 조정합의에 따라 반론보도를 게재한 것은 '사실상 오보를 인정한 것'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노컷뉴스 2015. 10. 22.자 보도의 '목격자 A'는 사건 현장에서 경찰에 최초로 신고하여 목격자로서 경찰 조사를 받은 바 있고, 노컷뉴스 기자는 사건 신고 접수 이후 강릉경찰서 경찰관에게 사실 확인을 거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D와의 조정합의에 따른 노컷뉴스의 반론보도는 D 측의 주장을 반영한 것일 뿐 노컷뉴스 보도가 오보로 확인된 데 따른 것은 아니기에 이를 바로잡습니다.

〈별지 2〉 요구하는 정정보도문 생략

〈별지 3, 4〉 대상기사 생략

초상권 침해 사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12. 1. 선고 2016가합101939 판결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은 채 포토라인에 선 것이 곧바로 초상 촬영 및 공표에 대한 묵시적 동의로 볼 수 없다

- 원고(피항소인) : A 외 1명
- 피고(항 소 인) : 한국방송공사

[사실관계]

피고는 2014년 5월 10일자 〈뉴스9〉 프로그램 및 다음날인 11일자 〈일요뉴스타임〉 프로그램에서 「연기자 D 조사」 및 「검찰 'E', 'F' 소환…D 조사」라는 각 제목으로 검찰의 세월호 사건 관련 소환조사를 보도하였고, 이 과정에서 검찰 조사 당시 D와 동행했던 원고들이 포토라인에서 D와 함께 촬영되어 모자이크 처리 없이 방송됐다. 이후 피고는 위 D의 조사 및 재판 소식을 보도하면서 원고들의 초상이 담긴 영상을 자료화면으로 계속 사용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됐다며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심리 결과, 재판부는 원고들이 포토라인 앞에 서서 얼굴을 가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초상의 촬영에 동의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설사 촬영에 관한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다고 보더라도 그 공표까지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보아 손해배상 각 100만 원을 판결하였다. 이후 피고가 항소하여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2심 계속 중이다(2016나2088859).
한편, 원고들은 소제기에 앞서 언론중재위원회에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각 신청하였으나 조정불성립결정된 바 있다(2014서울조정8619, 2014서울조정8620(병합) 및 2014서울조정8996, 2014서울조정8997(병합)).

[판결요지]

□ **초상의 촬영 동의에 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각 촬영 당시 취재진 앞에 서서 카메라를 피하거나 얼굴을 가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초상의 촬영에 동의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 **초상의 공표 동의에 대한 판단**

다만,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촬영 당시 취재진이 C의 모습만 촬영하기 곤란할 정도로 C 옆에 밀착하여 이동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들은 피고 등의 언론사들이 원고들의 초상을 촬영하는 것 자체에는 동의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초상의 촬영에 관한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다고 보더라도 곧바로 그 공표에 관하여서까지 동의가 있다고 볼 수는 없고,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초상의 공표가 원고들이 허용한 범위 내의 것이라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촬영자인 피고에게 있다.

판결문

사 건	2016가합101939 손해배상청구
원 고	1. A 2. B
피 고	한국방송공사
변론종결	2016. 11. 17.
판결선고	2016. 12. 1.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10.부터 2016. 12. 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10,000,000원, 원고 B에게 3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4. 5. 10.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들은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이하 '구원파'라고 한다)의 신도들이고, 피고는 방송사업 및 문화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공영방송사업자이다.

나. 보도의 배경

1) 세월호 사건(2014. 4. 16. 인천을 출항하여 제주로 향하던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하면서 수

학여행을 가던 고등학생 등 300여 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사건)이 발생한 이후, 다수의 언론에서는 세월호 사건의 원인 규명 및 그 책임 소재 파악을 위해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실질적 운영자로 알려진 세모그룹 회장 유병언과 그 배후단체로 지목된 구원파 등에 대해 보도하기 시작하였다.

2) C는 'D'라는 예명을 사용하는 연기자로서 청해진해운의 관계사인 주식회사 ○○쇼핑의 대표이사이자 안성시에 위치한 구원파 수련원인 금수원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었는데, 인천지방검찰청의 담당 검사는 C가 유병언 일가의 비자금 조성에 관여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조사하기 위하여 C를 소환하였다.

3) 이에 따라 C는 2014. 5. 10. 위 검찰청(이하 '검찰청'이라고만 한다)에 출두하였는데, 검찰청 출입구 앞에는 다수의 취재진들이 포토라인(기자들이 취재 편의를 위해 넘어서지 않기로 합의한 일종의 취재 경계선) 내에서 카메라를 들고 대기하고 있었다. 원고들은 C와 같은 승용차를 타고 검찰청에 도착하였고, C가 위 차량에서 내려 위 포토라인 앞까지 걸어가 취재진들 앞에서 입장을 밝힌 다음 검찰청 출입구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원고 A는 C를 기준으로 오른쪽에 위치하면서 C와 함께 이동하였고(C의 왼쪽에 위치한, 흰색 와이셔츠를 입은 사람은 원고 B가 아니다), 원고 B는 C의 뒤에서 걸어가다가 C가 포토라인 앞에서 멈춰 서자 잠시 떨어져 있었으며 C가 검찰청 출입구로 걸어가자 다시 C를 뒤따라갔다. 피고를 포함한 언론사들은 위와 같은 과정을 계속하여 촬영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 촬영'이라 한다).

4) C는 2014. 5. 11. 새벽에 검찰조사를 마치고 검찰청 출입구로 나왔는데, 원고 A는 C가 다수의 취재진들 앞에 서서 입장을 밝힌 다음 걸어가 차량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C를 기준으로 왼쪽에 위치하면서 이동시에 취재진들의 접근을 막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를 포함한 언론사들은 위와 같은 과정을 계속하여 촬영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 촬영'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2 촬영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촬영'이라 한다).

5) C는 위 검찰조사 이후 주식회사 ○○쇼핑의 재산을 유병언 일가가 지배하는 회사들에게 지급하였다는 등의 업무상횡령 및 업무상배임 혐의로 인천지방법원 2014고합535호로 기소되었는데, C는 2014. 9. 15. 위 사건의 첫 공판기일에서 위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였고, 위 법원은 2014. 11. 5. 위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C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으며, 그 무렵 위 형이 확정되었다. 또한 금수원은 건축법위반 혐의로 같은 법원 2014고합423, 561(병합)호로 기소되었는데, C가 금수원의 대표로서 재판에 출석하였고, 검찰은 2014. 10. 1. 금수원에 대하여 벌금 500만 원을 구형하였으며, 위 법원은 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여, 그 무렵 위 형이 확정되었다.

다. 보도의 내용

1) 피고는 2014. 5. 10. 〈뉴스9〉 프로그램에서 「연기자 D 조사」라는 제목으로 '검찰은 세월호 사건과 관련하여 C를 소환조사하였는데, C는 유병언 일가가 운영하는 회사들의 핵심 경영인이자 유병언의 측근으로 꼽히고 있고, 검찰은 C를 상대로 유병언이 위 회사들의 경영에 개입

하였거나 그 과정에서 비자금을 조성하였는지 확인하고 있으며, 특히 C가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쇼핑 등이 내부거래와 부동산거래 등을 통하여 유병언 일가의 비자금 조성에 관여하였다는 의혹을 집중 추궁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이 사건 제1 촬영 당시의 상황을 방영하였는데, 위 영상에는 원고 A(파란 와이셔츠를 입은 사람)가 C의 옆에서 이동하거나 서 있는 모습과 원고 B(모자를 쓴 사람)이 차량에서 내리는 C를 보고 있거나 C의 뒤에서 걸어가는 모습도 포함되어 있다(이하 위 보도를 '이 사건 제1 보도'라고 한다). 피고는 그 무렵 피고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news.kbs.co.kr/)에 「연기자 D 조사…유병언 검찰 소환 임박 ISSUE」라는 제목으로 위 보도 영상을 그대로 게재하였다.

2) 피고는 2014. 5. 11. 〈일요뉴스타임〉 프로그램에서 「검찰 'E, F' 소환…D 조사」라는 제목으로 '검찰은 C가 유병언 일가의 차명 재산을 관리하는 등으로 비자금 조성에 관여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강도 높은 조사를 했다'라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이 사건 제2 촬영 당시의 상황을 방영하였는데, 위 영상에는 원고 A가 C 옆에 서 있거나 이동하면서 취재진을 밀어내는 모습도 포함되어 있다(이하 '이 사건 제2 보도'라고 한다). 피고는 그 무렵 피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검찰 'E, F' 소환…D 조사 ISSUE」라는 제목으로 위 보도 영상을 그대로 게재하였다.

3) 피고는 2014. 9. 15. 〈뉴스5〉 프로그램에서 「'유병언 측근' D, 첫 재판서 혐의 인정」이라는 제목으로, 같은 날 〈뉴스라인〉 프로그램에서 「유병언 측근 D 첫 재판…"혐의 인정"」이라는 제목으로, 각각 'C는 주식회사 ○○쇼핑의 자금을 유병언 일가의 관계사에 지급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첫 공판기일에서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였다'라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자료화면으로 이 사건 제1 보도 영상의 일부를 각 방영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3 보도' 및 '이 사건 제4 보도'라고 한다), 그 무렵 피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위 각 보도와 같은 제목으로 위 각 보도 영상을 그대로 게재하였다.

4) 피고는 2014. 10. 1. 〈뉴스9(경인)〉 프로그램에서 「검찰, D씨에게 벌금 500만 원 구형」이라는 제목으로, 2014. 10. 2. 〈뉴스광장(경인)〉 프로그램에서 「검찰, D씨에게 벌금 500만 원 구형」이라는 제목으로, 각각 '검찰이 금수원의 건축법위반 혐의에 관하여 벌금 500만 원을 구형하였다'라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자료화면으로 이 사건 제1 보도 영상의 일부를 각 방영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5 보도' 및 '이 사건 제6 보도'라고 하고, 이 사건 제1 내지 6 보도를 통틀어 '이 사건 각 보도'라고 한다), 그 무렵 피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위 각 보도와 같은 제목으로 위 각 보도 영상을 그대로 게재하였다.

5)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보도에 관하여 언론중재위원회에 언론조정신청을 한 무렵인 2015. 1.경 피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이 사건 제1 보도 영상의 다시보기 서비스를 중단하였고, 이 사건 제2 내지 6 보도에 관한 언론조정신청이 제기된 무렵인 2016. 3. 17.경 위 각 보도 영상의 다시보기 서비스도 중단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6, 8, 10, 1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1)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 침해

가)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촬영 당시 자신들의 초상이 촬영·공표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았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각 보도에서 원고들의 초상을 공표한 것은 원고들의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이 사건 각 촬영 당시 C는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였을 뿐이므로 원고들은 검찰청 앞에 다수의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하였고, 이미 취재진의 규모를 확인한 뒤에는 C를 취재진으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었으므로 C와의 동행을 거부하거나 C와 거리를 두고 이동하기는 어려웠다. 그리고 원고들은 검찰조사의 당사자가 아니었으므로 원고들의 초상이 촬영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고, 촬영되더라도 보도 과정에서 모자이크 처리 등 초상에 대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여 취재진에게 명시적으로 촬영 내지 공표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것이다.

나) 나아가 원고들의 초상을 공개할 공공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보도가 정당하다고 볼 수도 없다. 원고들은 공인이 아니고 검찰조사의 대상도 아니었으므로 원고들의 초상에 모자이크 처리를 하여도 위 각 보도의 내용에 지장이 생기지 않는다. 또한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제3장)에 따르면 원고들은 공적 인물인 피의자가 아니므로 그 초상에 대한 촬영은 금지되어 있기도 하다.

2) 명예훼손

피고는 구원파와 C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극심한 상황에서 이 사건 각 보도를 통하여 시청자로 하여금 원고들이 C의 측근이자 구원파 신도로서 구원파의 부정적인 측면과 관련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게 하여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원고들의 손해

가) 이 사건 각 보도를 통하여 무려 5개월에 걸쳐 원고들의 초상이 공표됨으로써 원고들이 구원파 신도임이 알려져 원고들은 아래와 같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

나) 원고 A는 세월호 사건 이후 4년간 재직하던 회사가 구원파 관계사라는 이유로 매출이 폭락한 끝에 폐업하자 다른 회사에 취업하려 하였으나 이 사건 각 보도로 인하여 구원파 신도라는 사실이 알려져 서류전형을 통과하고도 매번 면접에서 탈락하고 말았다. 또한 위 원고는 대전 지역 체육계에서 다양한 업적을 쌓아 좋은 평판을 얻고 있어 이를 발판으로 향후 대전 지역에서 체육관을 설립할 계획이었으나 구원파 신도임이 알려진 후 이러한 계획이 무너지게 되었으며, 위 원고의 아들은 구원파 신도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왕따를 당하고 불면증을 앓고 있다.

다) 원고 B는 오랫동안 경기태권도협회에서 심판으로 활약해 왔는데, 이 사건 각 보도 이후 종종 태권도 경기의 관객들로부터 구원파라는 이유로 욕설을 듣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위 협회의 임원들은 위 원고를 뒤에서 욕하거나 따돌렸다. 또한 위 원고는 7년 넘게 몸담아 온 조기축구회의 회원들로부터 항의를 받아 위 조기축구회에도 참여할 수 없게 되었으며, 정기적으로 만나던 초등학교 동창들과도 연락이 끊기고, 직장을 잃은 후 태권도장 사범으로 취직하기 위하여 면접을 보았지만 구원파라는 이유로 번번이 탈락하는 등 사람들로부터의 소외와 생계에 대한 걱정으로 우울증, 불면증 등을 겪고 있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의 위와 같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아래와 같은 근거에 의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촬영 당시 이 사건 각 보도에서와 같은 정도의 초상의 촬영·공표에 대하여는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볼 수 있다.

가) 검찰청 현관 등에서 조사대상자가 입장을 밝힐 수 있는 포토라인이 설치되어 있고 다수의 취재진이 위 포토라인 내에서 촬영하고 있는 중에 조사대상자의 동행자가 다수의 취재진과 카메라를 발견하였음에도 별다른 의사표시 없이 위 포토라인으로 다가오는 경우, 이를 초상의 촬영·공표에 대한 묵시적 동의로 보고, 동행자의 초상을 모자이크 처리하지 않고 방송하는 것이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언론계의 관행이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촬영 당시 다수의 취재진과 카메라를 발견하였음에도 C 옆에 위치하며 포토라인에 들어섰고 얼굴을 가리거나 자리를 피하지 않았으므로, 그 초상의 촬영·공표에 동의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다) 이 사건 각 보도는 원고들이 취재진의 접근을 막으며 C와 함께 걸어가거나 서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을 뿐 원고들을 특별히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지도 않는바, 원고들은 위 각 보도에서와 같은 정도로 초상이 촬영·공표될 것임은 충분히 예상한 것으로 보인다.

2) 또한, 아래와 같은 근거에 의하면, 피고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각 촬영 당시의 상황을 그대로 촬영하여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원고들의 초상을 공개한 것이므로, 피고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이라 한다) 등에 따라 이 사건 각 보도에 관하여 원고들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가) 피고는 세월호 사건 이후 유병언과 주변 인물들의 횡령 등의 범행에 관하여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이에 관하여 국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불필요한 의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수사 상황을 그대로 공개할 필요가 있었다.

나) 이 사건 각 촬영의 장소는 검찰청 출입구 앞으로서 다수의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어 촬영이 충분히 예상되는 공공장소에 해당한다.

다) 피고는 원고들을 의도적으로 촬영한 것이 아니라 C를 촬영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촬영하게 되었을 뿐이다.

라) 이 사건 각 보도에서는 원고들이 취재진의 접근을 막으며 C와 함께 걸어가거나 서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을 뿐인바, 위 각 보도에 의하더라도 원고들이 C의 지인이거나 구원파인지는 알 수가 없고, 검찰 수사관이나 취재 관련자로 보일 여지도 있으므로, 초상 공개로 인한 원고들의 피해가 크다고 보기도 어렵다.

마) 원고들이 그 주장의 근거로 들고 있는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은 공인의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규정하여 사문화된 준칙에 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준칙의 수범자는 수사기관으로 피고 등의 언론사들은 위 준칙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3.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 침해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령 등

1) 언론중재법 제5조

> **제5조[언론등에 의한 피해구제의 원칙]**
> ① 언론, 인터넷뉴스서비스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이하 "언론등"이라 한다)은 타인의 생명, 자유, 신체, 건강, 명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대화, 저작물 및 사적 문서, 그 밖의 인격적 가치 등에 관한 권리(이하 "인격권"이라 한다)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언론등이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그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여야 한다.
> ② 인격권 침해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언론등은 그 보도 내용과 관련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1.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이루어진 경우
> 2. 언론등의 보도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진실한 것이거나 진실하다고 믿는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관련 법리

가)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 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는데, 이러한 초상권은 우리 헌법 제10조 제1문에 의하여 헌법적으로도 보장되고 있는 권리이다. 또한, 헌법 제10조는 헌법 제17조와 함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는데, 이에 따라 개인은 사생활 활동이 타인으로부터 침해되거나 사생활이 함부로 공개되지 아니할 권리를 가진다. 따라서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는데, 위 침해는 그것이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유만으로 정당화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16280 판결 등 참조).

나) 타인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하거나 공표하고자 하는 사람은 피촬영자로부터 촬영에 관한 동의를 받고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하여야 하는바, 이 경우 피촬영자로부터 사진이나 영상의 촬영에 관한 동의를 받았다는 점이나 촬영된 사진이나 영상의 공표가 촬영에 관한 동의 당시에 피촬영자가 허용한 범위 내의 것이라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그 촬영자나 공표자에게 있다(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0다103185 판결 등 참조).

다) 초상권이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둘러싸고 서로 다른 두 방향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안에서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이익형량을 통하여 위 침해행위의 최종적인 위법성이 가려진다. 이러한 이익형량과정에서, 첫째 침해행위의 영역에 속하는 고려요소로는 침해행위로 달성하려는 이익의 내용 및 그 중대성, 침해행위의 필요성과 효과성, 침해행위의 보충성과 긴급성, 침해방법의 상당성 등이 있고, 둘째 피해이익의 영역에 속하는 고려요소로는 피해법익의 내용과 중대성 및 침해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보호가치 등이 있다. 그리고 일단 권리의 보호영역을 침범함으로써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평가된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다31628 판결 등 참조).

나. 초상의 촬영·공표에 대한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

1) 앞서 본 인정사실 및 갑 제22 내지 28호증, 을가 제2 내지 6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들이 인정된다.

가) 세월호 사고 이후 유병언 일가와 구원파는 사회적으로 큰 비난을 받고 있었는데, C가 유병언의 측근으로서 구원파 관련 회사들의 경영에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C에 대한 사회적 비난도 증폭되고 있었던 점, 이러한 비난 여론에 따라 C는 검찰에 소환되기도 전에 출연 중인 드라마에서 하차해야 했던 점, 원고들은 각 진술서(2015. 12. 15. 제출한 참고자료 1, 2)에 '원고들은 C의 오랜 지인으로서 C가 언론으로부터 큰 비난을 받는 것이 안쓰럽고 가여워서 검찰청에 출석하는 C를 에스코트해 주기로 했다'라는 취지로 기재하여 당시 C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정도를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원고들이 검찰청 앞에 다수의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하지 않았다면 C를 취재진으로부터 보호하여 검찰청에 무사히 출입하도록 돕는 역할을 맡을 필요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은 검찰청 앞에 다수의 취재진이 촬영을 위해 대기하고 있을 것을 충분히 예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이 사건 제1 촬영 당시 검찰청 출입구 근처에는 C의 이동을 도울 수 있는 검찰청 직원 등이 배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C가 홀로 검찰청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한 상황이었다고 보이는바, 원고들은 C와의 동행을 피할 수 있었음에도 C와의 개인적인 친분에 기하여 C와 함께 취재진 앞에 나서게 된 것으로 보이고, 원고들이 C와의 동행을 거절할 기대가능성이 없는 상황은 아니었다고 할 것이다.

다) 이 사건 제1 촬영 당시 원고 A는, 차량에서 내린 C의 오른팔을 잡고 함께 포토라인 앞까지 걸어왔고 C가 포토라인 앞에 서서 입장을 밝히는 동안에도 그 옆에 서 있었으며, C가

다시 걸어가 검찰청 출입구에 들어설 때에도 C의 오른팔을 잡고 함께 이동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위 원고는 계속하여 고개를 들고 있었고 손으로 얼굴을 가리지도 않았으며, 특히 C가 포토라인 앞에서 입장을 밝히는 동안에는 대부분의 취재진이 포토라인을 넘지 않은 채 촬영을 하고 있었고 2~3명의 기자만이 취재진을 대표하여 포토라인을 넘어와 C의 입장을 듣고 있었으므로(취재진은 C로부터 수미터 이상 떨어져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 원고가 C와 함께 촬영되고 싶지 않았다면 잠시 촬영범위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동할 수도 있었다고 보이나 위 원고는 계속하여 C 옆에 서 있었다.

라) 원고 A는 다수의 취재진으로부터 촬영될 것을 알지 못하여 마스크 등 얼굴을 가릴 수 있는 도구를 준비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원고는 이 사건 제1 촬영 당시 C와 함께 검찰청에 들어가면서 다수의 취재진이 몰려와 있는 것을 보고도 이 사건 제2 촬영 당시 조사를 마치고 검찰청에서 나오는 C와 동행하면서 마스크 등을 착용하지 않았고, 2014. 9. 15. 인천지방법원에 재판을 받기 위해 출석할 때에도 다수의 취재진이 촬영하고 있는 가운데 마스크 등을 착용하지 않고 C와 동행하기도 하였는바, 위 원고는 이 사건 각 촬영 당시 취재진 앞에서 특별히 얼굴을 가리려는 시도는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마) 이 사건 각 보도의 주요 목적은 C가 검찰조사를 받은 사실을 전달하는 것이고, 위 각 보도에 나타난 원고들의 모습은 C를 촬영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촬영된 것으로서 원고들의 존재가 특별히 부각되게 보도되었다고 보이지는 않으며, 나아가 위 각 보도에는 원고들과 C의 관계를 추단할 만한 내용도 드러나 있지 않다.

바) 원고들은 이 사건 제1, 2 보도가 방영된 이후에도 곧바로 피고 등의 언론사에게 원고들의 초상이 공개되었음을 이유로 항의하거나 모자이크 처리를 요청하지 않았다. 피고를 비롯한 대부분의 언론사들은 C에 대한 검찰조사 관련 보도를 하면서 이 사건 각 보도에서와 같이 원고들의 초상에 모자이크 처리를 하지 않은 영상을 내보냈는데, 원고 A는 이러한 보도들이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2014. 8.경에 이르러서야 일부 언론사들을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언론조정신청을 하였고, 원고 B는 2015. 1.경에 이르러서야 언론조정신청을 하였다.

2)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보도와 관련하여 원고들이 초상의 촬영·공표에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그 촬영·공표자인 피고에게 있다고 할 것인바,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사실이나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이 초상의 촬영·공표에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원고 A의 경우, ① 이 사건 제1 촬영 당시 설치된 포토라인은 위 원고는 물론 취재 대상인 C의 의사와도 무관하게 설치된 것인바, C와 그 동행인인 위 원고로서는 검찰청에 들어가기 위하여 포토라인 앞을 지나갈 수 밖에 없었으므로, 포토라인 앞에 섰다는 것만으로 초상에 대한 촬영에 동의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② 위 원고는 C와 함께 이동하는 과

정에서 포토라인 앞에 서게 된 것일 뿐이고, 위 원고가 C와 함께 어떠한 의사를 표시하기 위하여 포토라인 앞에 선 것은 아닌 점, ③ 위 원고는 포토라인 앞에서는 C로부터 한 걸음 정도 떨어져 서 있었고 카메라를 보며 포즈를 취하는 등 촬영에 동의한 것으로 볼만한 행동은 하지 않은 점, ④ 위 원고로서는 피고 등 언론사들이 취재 대상인 C를 위주로 촬영하고 있다고 생각하였을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원고가 이 사건 각 촬영 당시 취재진 앞에 서서 카메라를 피하거나 얼굴을 가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초상의 촬영에 동의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 원고 B는 이 사건 제1 촬영 당시 모자를 쓰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C가 포토라인 앞에 멈춰 서자 황급히 촬영범위 밖으로 이동하는 등 촬영을 거부하는 듯한 행동을 하고, 이 사건 제2 촬영 장소에는 취재진 앞에 나타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제1 촬영 당시 취재진을 인지하고도 C와 함께 이동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초상의 촬영에 동의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 다만,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촬영 당시 취재진이 C의 모습만 촬영하기 곤란할 정도로 C 옆에 밀착하여 이동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들은 피고 등의 언론사들이 원고들의 초상을 촬영하는 것 자체에는 동의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보도 영상에서와 같은 정도로 원고들의 초상이 공표되는 것에 대하여까지 동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1) 초상의 촬영에 관한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다고 보더라도 곧바로 그 공표에 관하여서까지 동의가 있다고 볼 수는 없고,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초상의 공표가 원고들이 허용한 범위 내의 것이라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촬영자인 피고에게 있다.

(2)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보도를 접하는 시청자들로서는 C와 동행하고 있는 원고들 역시 구원파 신도로서 C가 받고 있는 혐의와 관련이 있다거나, 적어도 범죄 혐의자와 관련된 사람이라는 부정적인 인상을 가질 가능성이 있는바(특히 이 사건 제3 내지 6 보도는 C의 범죄 혐의가 명백히 드러났다는 내용의 보도를 하면서 원고들이 C와 동행하는 모습이 담긴 이 사건 제1 보도 영상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원고들이 이처럼 자신들이 부정적으로 보일 수 있는 보도에 초상을 공개하도록 동의하였다고 쉽사리 단정하기는 어렵다.

(3) 이 사건 각 보도에서는 원고들과 C의 관계를 추단할 만한 내용이 없으나, 일반적으로 검찰 수사관은 신분증 등을 착용하고 있고, 취재 관련자는 마이크나 카메라 등을 들고 있는데, 이와 달리 원고 A는 취재진들의 접근을 막으며 C의 이동을 돕고 원고 B는 모자를 쓰고 C를 뒤따른 점에 비추어 보면, 시청자들로서는 원고들을 C의 측근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적지 않았다고 보인다.

(4) 동영상 편집 기술의 향상에 따라 현재에는 동영상의 일부분에 모자이크 처리를 하는 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뉴스보도라고 하더라도 편집

여하에 따라 다양한 장면을 구성할 수 있으므로, 주요 보도 대상이 아닌 원고들로서는 자신들의 초상에 모자이크 처리가 되거나 적어도 얼굴의 일부만 공개되는 등으로 초상이 불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을 기대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다.

(5) 이 사건 각 촬영 당시 원고들을 촬영한 다른 언론사들도 대부분 원고들의 초상에 모자이크 처리를 하지 않고 보도하였고, 이 사건 외에도 수사를 받기 위해 검찰청으로 들어가는 수사대상자 주변인들의 초상에 모자이크 처리를 하지 않은 언론보도가 상당수 발견되기는 한다. 그러나 다른 일부 언론보도에서는 위와 같은 주변인들에게 모자이크 처리를 하기도 하고 이 사건에서도 연합뉴스는 원고들의 초상에 모자이크 처리를 하여 기사를 보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관행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그러한 관행이 있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이로써 초상의 촬영·공표에 대한 원고들의 동의를 의제할 수도 없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보도를 통하여 그 초상을 촬영·공표함으로써 원고들의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다.

다. 위법성의 조각 여부

1)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2016. 4. 22. 법무부 훈령 제10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고위공직자, 정치인 등의 공적 인물을 제외한 사건관계인에 대한 초상권을 보호하도록 정하고 있다. 원고들은 위 훈령을 근거로 이 사건 각 보도에서 공적 인물이 아닌 원고들의 초상을 공개한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위 훈령은 형사사건에 대한 공보와 관련하여 검사 등 검찰공무원 및 법무부 소속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피고 등 언론사에도 위 훈령이 적용된다고 하기는 어려우므로, 위 훈령만을 근거로 곧바로 원고들의 초상을 공개한 피고의 이 사건 각 보도 행위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2)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피고가 이 사건 각 보도를 통하여 원고들의 초상권을 침해한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는 점을 증명할 책임은 피고에게 있는바,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초상권 침해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피고의 이 사건 각 보도 행위는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가) 이 사건 각 보도는 C가 유병언 일가의 비자금 조성에 관여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검찰조사를 받았다는 내용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보도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C의 동행인들에 불과한 원고들의 초상을 공개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침해행위의 필요성과 효과성 결여). 피고는 세월호 사건에 관한 불필요한 의혹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원고들의 초상을 포함하여 C가 검찰청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있는 그대로 공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각 보도에서 원고들의 초상에 모자이크 처리를 한 경우 어떠한 의혹이 발생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할 것이다.

나) 원고들의 초상에 모자이크 처리를 하는 데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이 사건 각 보도는 생방송이 아니었으므로 모자이크 처리를 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도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조치 없이 원고들의 초상을 그대로 공개한 것은 침해행위의 보충성과 긴급성 및 침해방법의 상당성이 결여된 행위라고 할 것이다.

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보도에서 초상이 공개될 것임을 예상하였다고 볼 수 없고, 위 각 보도는 원고들에 대하여 부정적인 인상을 가지게 하는 보도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이 초상의 공개로 인하여 입은 피해의 정도나 이러한 피해이익의 보호가치가 적다고 할 수도 없다.

라) 이 사건 각 촬영의 장소가 공공장소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각 보도에서 반드시 원고들의 초상을 공개하여야 하는 공익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초상권 침해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고, 피고가 C를 촬영하는 과정에서 원고들을 우연히 촬영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보도의 내용상 초상 공개로 인한 원고들의 피해가 예상되었던 이상 그러한 사정도 초상권 침해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4. 명예훼손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언론의 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한다. 그 사실을 직접 표현한 경우는 물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암시함으로써 독자들로 하여금 그 사실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경우에도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다고 인정된다(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3662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사건 각 보도는 원고들이 C와 함께 걸어가거나 서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을 뿐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각 보도가 원고들에 대하여 부정적인 인상을 가지게 할 여지는 있으나, 나아가 원고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5.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가 원고들의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함으로써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겪는 손해가 발생하였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원고 A에 대한 위자료 액수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사회적인 영향력이 큰 공영방송사업자로서 무려 5개월간 6차례에 걸쳐 이 사건 각 보도를 통하여 위 원고의 초상을 동의 없이 공개한 점, ② 위 각 보도 영상에서는 위 원고의 초상이 상당한 시간 동안 뚜렷이 보여지고 있어, 위 원고를 알던 사람은 물론 모르던 사람들도 위 각 보도 영상을 통하여 위 원고의 존재와 생김새 등을 인지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에 따라 위 원고는 C나 구원파 등의 범죄행위와 관련된 사람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었던 점 등과 한편, ④ 위 원고는 앞서 3.나.1)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촬영 당시 C와 함께 포토라인 앞에 서서 얼굴을 가리지 않는 등 초상의 촬영·공표에 동의한 것으로 오인될 수도 있는 행동을 한 점, ⑤ 피고가 위 원고를 의도적으로 촬영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⑥ 위 각 보도 영상에 의하더라도 위 원고가 C의 지인이거나 구원파인지 여부가 분명하지는 않으므로, 당시 C와 구원파 등에 대한 사회적 비난 여론을 감안하더라도 위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은 정도로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⑦ 위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액 전부를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도 부족한 점, ⑧ 위 원고가 이 사건 제1 보도 직후 피고 등 언론사에게 초상에 대한 보호조치 등을 요청하였다면 후속 보도로 인한 초상권 침해를 막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A에 대한 위자료 액수를 1,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2) 원고 B에 대한 위자료 액수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사회적인 영향력이 큰 공영방송사업자로서 무려 5개월간 5차례에 걸쳐 위 원고의 초상을 동의 없이 공개한 점, ② 이 사건 제1 촬영 당시 위 원고는 모자를 쓰고 있었고 포토라인 앞에서 황급히 자리를 피하기까지 하였으므로, 피고로서는 위 원고가 C의 동행인으로서 초상의 촬영·보도를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과 한편, ③ 이 사건 제1, 3, 4, 5, 6 보도 영상에서 위 원고의 모습이 등장하는 시간이 길지 않고, 위 피고는 C의 뒤에 있거나 취재진과 뒤섞여 있어 얼굴이 선명하게 드러나지는 않는 점, ④ 위 원고는 앞서 3.나.1)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촬영될 위험을 인식하면서도 취재 대상인 C와 함께 이동한 점, ⑤ 피고가 위 원고를 의도적으로 촬영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⑥ 위 각 보도 영상에 의하더라도 위 원고가 C의 지인이거나 구원파인지 여부가 분명하지는 않으므로, 당시 C와 구원파 등에 대한 사회적 비난 여론을 감안하더라도 위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은 정도로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⑦ 위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액 전부를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도 부족한 점, ⑧ 위 원고가 이 사건 제1 보도 직후 피고 등 언론사에게 초상에 대한 보호조치 등을 요청하였다면 후속 보도로 인한 초상권 침해를 막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B에 대한 위자료 액수도 1,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제1 보도일인 2014. 5. 10. 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12. 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6.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산권 침해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 13. 선고 2013가합16690 판결(확정)

허위보도한 언론사와 이를 불법마케팅에 활용한 회사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각자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 원고 : 롯데칠성음료 주식회사
- 피고 : 한국소비자티브이 주식회사 외 1명

[사실관계]

피고 한국소비자티브이는 2012년 3월 5일경 〈한국소비자TV〉 사이트 및 스카이라이프 채널 130번에 「정직한 목격자 시선」이라는 제목으로 원고가 제조 및 판매하고 있는 소주에 사용되는 알칼리환원수가 인체에 해롭고 해당 주류 제조면허도 불법적으로 취득했다고 방송하였다. 이후 원고와 경쟁사업자 관계에 있는 피고 회사는 위 방송을 축약한 동영상 및 전단지, 현수막 등을 제작하여 배포하는 등 전국 영업지점을 통해 조직적으로 불법마케팅에 활용하였다. 이에 원고는 명예 및 신용훼손, 영업방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심리 결과, 재판부는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이로 인한 재산상손해(이윤감소 추정분 30억 원 + 변호사비용 2억 원) 및 위자료(1억 원)로서 각자 33억원을 배상할 것을 명하였다. 이후 원 · 피고 모두 상소하지 않아 위 판결이 확정됐다.

[판결요지]

□ **언론보도로 인한 공동불법행위의 성립 및 객관적 관련공동성에 대한 판단**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 그 상대방(피해자와는 다른 개념이다)이 반드시 동일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시기, 장소, 방법이 다르다고 해서 객관적 관련공동성이 당연히 부정된다고 볼 수도 없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시간적으로 근접하고 사회적 연관성이 있는 피고들의 일련의 행위가 공통의 원인이 되어 원고에게 단일한 손해가 발생하고 피고들 각 행위의 결과 발생을 구별하는 것이 불가능한 이 사건의 경우 피고들의 행위 사이에 객관적 관련공동성이 인정된다.

□ **간접적 손해(특별손해)인 영업상 손해의 책임에 대한 판단**

본 허위 사실 방송 또는 유포로 인한 원고의 이 사건 소주 매출 감소에 따른 영업상의 손해는 간접적 손해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은 그 손해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만 위 매출 감소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인바, 피고 한국소비자TV는 이 사건 방송과 같이 특정 소주 제품의 문제점을 공개적으로 다루는 고발 프로그램의 경우 그 방송 내용이 일반 시청자 및 소비자의 제품 선택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점, 피고 회사는 원고와 경쟁사업자 관계에 있어 이 사건 소주의 제조용수인 알칼리환원수의 안전성과 그 제조방법 승인의 적법성에 대한 부정적 내용이 그 매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정을 알 수 있었으므로 피고들은 위와 같은 공동불법행위 당시 그로 인해 원고의 이 사건 소주 매출이 감소하리라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나아가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와 위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된다.

판결문

사 건	2013가합16690 손해배상(기)
원 고	롯데칠성음료 주식회사
피 고	1. 한국소비자티브이 주식회사 2. 하이트진로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5. 12. 11.
판결선고	2016. 1. 13.

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5. 22.부터 2016. 1. 13. 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5. 2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관계

1) 원고는 각종 음료의 제조 ·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처음처럼'이라는 브랜드의 소주(이하 '이 사건 소주'라고 한다)를 제조 · 판매하던 주식회사 두산(이하 '두산'이라고 한다)으로부터 2009. 1. 6. 주류영업 부문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주식회사 롯데주류비지(이하 '롯데주류비지'라고 한다)를 2011. 10. 5. 흡수합병 하였다.

2) 피고 한국소비자티브이 주식회사(이하 '한국소비자TV'라고 한다)는 국내외 방송 · 교육 · 홍보 · 광고용 영상프로그램 제작 및 공급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방송채널사업자이고, 피고 하이트진로 주식회사(이하 '피고 하이트진로'라고 한다)는 '참이슬'이라는 브랜드의 소주를 제조 · 판매하던 주식회사 진로(이하 '진로'라고 한다)가 2011. 9. 1. 하이트맥주 주식회사와 합병하면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이 사건 소주의 출시 과정

1) 두산은 2006. 1.경 소주 제조 면허권자인 강릉세무서장에게, 전기분해과정을 거친 알칼리환원수를 이 사건 소주의 제조용수로 사용[15]하는 내용이 포함된 제조방법을 새로 신고하였고, 이에 강릉세무서장은 관계규정에 따라 국세청 기술연구소에 기술검토작업을 의뢰하였다.

2) 국세청 기술연구소는 2006. 1. 12. 강릉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소주의 제조방법에서 전기분해한 지하수를 제조용수로 사용하는 부분과 관련하여 두산이 지하수를 전기분해하여 주류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인증 받았는지 여부 및 먹는물수질검사성적서를 첨부하여 송부할 것을 요청하였다.

3) 한편, 두산은 2006. 1. 10. 먹는물관리법 제35조 소정의 수질검사기관인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 동부지원으로부터 이 사건 소주의 제조용수인 전기분해한 알칼리수가 먹는물관리법상의 수질기준에 적합하다는 취지의 판정을 받았다. 이에 두산은 2006. 1. 12.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위 수질검사성적서를 첨부하여 전기분해과정을 통해 처리된 알칼리환원수를 이 사건 소주의 제조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였고, 2006. 1. 19.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부터 '전기분해과정을 통해 처리된 물이 환경부령인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및 별표 1에서 정한 수질기준에 적합하고, 먹는물관리법 제3조 제1호 소정의 "먹는물[16]"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식품 제조 · 가공용 용수로 사용가능하다.'라는 취지

---

15) 두산은 이 사건 소주를 제조하면서 정수처리한 지하수를 음극 및 양극의 전극으로 통과시키는 방법으로 물(H_2O)을 수소(H)이온과 수산(OH)이온으로 분리하고, 수소이온농도(pH)가 올라가 알칼리성을 띤 물을 음극 쪽에서 채취하여 이 사건 소주의 제조용수에 혼합하여 사용하였다.

16) 다만 먹는물관리법 제3조에 따르면 "먹는물"은 "통상 사용하는 자연 상태의 물, 자연 상태의 물을 먹기에 적합하도록 처리한 수돗물, 먹는샘물, 먹는염지하수, 먹는해양심층수 등"을 의미하고(제1호), "샘물"이란 "암반대수층 안의 지하수 또는 용천수 등 수질의 안전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자연 상태의 깨끗한 물을 먹는 용도로 사용할 원수"를 의미하며(제2호), "먹는샘물"이란 "샘물을 먹기에 적합하도록 물리적으로 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한 물"을 의미하고(제3호), 한편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는 "원수의 일부를 음료류 · 주류 등의 원료로 사용하는 샘물 등"을 "기타샘물"로 지칭하여 먹는물과 개념상 구분하고 있다.

의 회신을 받았다.

4) 그 후 두산은 강릉세무서장에게 위 회신과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 동부지원에서 발급받은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였고, 강릉세무서장으로부터 위 회신 및 시험성적서를 전달받은 국세청 기술연구소장은 2006. 1. 20. 이 사건 소주의 제조방법에 대하여 적합판정을 하였다. 이에 강릉세무서장은 2006. 1. 31. 두산에게 이 사건 소주와 관련한 신규제조면허를 발급하였고, 두산은 2006. 3.경 이 사건 소주를 출시하였다.

다. 소주시장 전국 점유율 변동과 진로의 광고전 등

1) 두산이 '세계 최초의 알칼리수 소주'를 표방한 이 사건 소주를 출시한 이래 그 인기가 꾸준히 상승하여 5.2%였던 소주시장 전국 점유율이 2006. 6.경 9.5%(수도권 점유율은 6.4%에서 15.1%)까지 치솟은 반면, 진로는 이 사건 소주 출시 전 55.3%였던 소주시장 전국 점유율이 49.5%까지 떨어졌다. 이에 진로는 2006. 7. 15.부터 2006. 8. 10.까지 "인공 알칼리수 VS 천연 대나무숯 알칼리수"라는 제목의 광고 만화전단지를 제작, 배포하고, 2006. 8. 21.부터 2006. 9. 29.까지 "어떤 소주가 당신을 위하는 소주입니까?"라는 제목의 신문광고 등을 조선일보 등 주요 일간지에 게재하는 한편, 2006. 8. 24. "참이슬fresh"라는 브랜드의 소주를 출시하면서 천연 알칼리(수) 소주라고 광고하는 등 소주 매출과 시장점유율을 둘러싼 치열한 광고전을 벌였다.

2) 한편 주식회사 A라는 회사를 운영하던 B[17]는 2006. 4.경 두산에 '고농도 산소수 미세파 환류발효공법 안내'라는 아이템 설명서를 발송하여 사업을 제안하였다가 거절당하자 2006. 5.경부터 이 사건 소주의 제조용수인 알칼리환원수가 인체에 유해하다는 내용과 위 소주의 제조면허가 불법적으로 취득된 것이라는 내용의 민원서류를 식품의약품안전청, 환경부 등 행정기관 및 단체에 접수하였고, 그 이후 2006. 5. 10. 환경부로부터 '전기분해에 의하여 먹는물의 수소이온농도를 변경하였다 하더라도, 구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제2조 제1항 규정에 의한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하다면 음용하기에 적합한 물로 볼 수 있다'는 회신을, 2006. 9. 1.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식품제조·가공용 용수처리과정에 대한 사항은 식품위생법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식품위생법에서는 제조용수의 용수처리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거나 제한을 하고 있지 않아 먹는물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하다면 현재로서는 음료 및 주류 등의 식품제조·가공용수로서 사용가능하다'는 회신을, 2007. 1.경 법제처로부터 '전기분해과정을 통하여 처리한 알칼리수는 먹는물관리법 제3조에 의한 "먹는물"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하다면 식품위생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의 제조용수로 사용할 수 있다'는 법령해석을 각 받았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B는 2007. 여름경 진로의 마케팅 부서에 '이 사건 소주는 먹는물로 사용

17) 당초 이 사건 피고로 제소되었으나 이 사건 소송 중 B가 재판부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하자 원고가 소송 지연을 우려하여 그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할 수 없는 전기분해 알칼리수로 제조되고 있어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제보하면서 관련 자료를 송부하였다. 그 후 진로의 지시를 받은 광고대행사인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의 대표이사 D와 그 직원인 E가 2008. 2.경 내지 4.경 '환경부에서는 전기분해 알칼리 환원수의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아 먹는물이 아니라고 했는데 식약청에서는 수질기준에 맞으면 된다고 식음료로 사용하게 해 버렸다. 알칼리 전기분해 환원수는 안전한지 검증도 안되었다.'라는 내용의 "천기누설 무릎퍽도사" 만화 동영상과 '두산이 이 사건 소주의 인허가를 불법하게 취득하였고, 이 사건 소주의 제조용수인 알칼리 용수가 건강에 유해하다.'라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게시하였고, 그로 인하여 D와 E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고약65128호로 허위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두산의 명예를 훼손하고, 이 사건 소주 판매업무 등을 방해하였다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의 공소사실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어 2009. 1. 12.경 D가 벌금 1,000만 원의, E가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9. 3.경 위 각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4) 한편 B는 2010. 12.경 '진로가 동의 없이 광고대행사인 C에게 자신을 의인화한 "천기누설 무릎퍽도사" 만화 동영상을 제작·배포하게 하여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라는 이유로 진로의 대표이사 F 등을 형사고소하였으나, 위 사건의 실제 피해자인 롯데주류비지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2011. 4.경 F 등 진로 측 관계자들이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다.

라. 두산과 B 사이의 종전 민사소송 등

1) B는 또 자신의 블로그에 2008. 1. 14. "처음처럼 불법 면허취득에 대한 공개질문서"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고, 2008. 3. 7. "이런 공무원들(국세청) 내버려두어야 하나"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였는데, 위 각 글의 취지는 '전기분해한 알칼리성 물의 안전성이 충분히 검증되어야 하고, 나아가 위와 같은 물이 먹는물관리법 제3조 제1호 소정의 "먹는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알칼리환원수를 사용하여 이 사건 소주를 제조하도록 한 신규제조면허는 위법하다.'라는 것이었다.

2) 이후 주식회사 일요서울신문사(이하 '일요서울신문'이라 한다)의 기자 G가 B를 취재한 다음 그 내용을 기사로 작성하여 2008. 3. 18.자 일요신문에 게재하였고, B가 2008. 3. 19. 위 기사를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게재하였는데, 위 기사의 내용도 B의 2008. 1. 14.자 및 2008. 3. 7.자 각 글과 유사한 취지이다.

3) 그 후 B는 두산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카합2804호로 두산의 신규제조면허 취득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주의 판매중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2008. 10. 15. '두산의 제조면허 취득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른 것으로, 그 제조용수가 먹는물관리법상 "먹는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점만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정한 수질기준을 충족하는 이상 수질위생상으로는 소비자들의 건강에 어떠한 위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B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4) 한편, 두산은 B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39293호로 'B가 이 사건 소주와 관련한 신규제조면허가 위법하다는 취지의 2008. 1. 14.자 및 2008. 3. 7.자 각 글을 인터넷 블로그에 게재하거나 일요서울신문의 기사로 작성되도록 하여 두산의 명예와 신용이 훼손되었다.'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위 법원은 2009. 3. 25. 'B가 위와 같은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그 표현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B의 행위는 공익성이 인정되고 그 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법성이 조각된다.'라는 이유로 두산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민사 1심 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다.

5) B는 위 민사 1심 판결 선고 후인 2009. 4. 6.경 "불법 제조된 이 사건 소주는 즉시 퇴출되어야 한다."라는 제목의 글을 인터넷사이트인 "다음 아고라"에 게재하였는데, 위 글에는 위 민사 1심 판결 취지와 다르게 '이 사건 소주는 제조면허 취득과정에서 당시의 식품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최근 관련 재판에서 명확하게 입증되었다. …(중략)… 상기한 민사소송의 판결로 이 사건 소주의 제조면허가 불법 취득된 것이 명확하게 밝혀졌으나, 해당 민사소송은 원고가 제소한 손해배상청구사건이므로 직접적으로 제조면허를 취소시킬 수는 없고, 앞으로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 시장에서 완전 퇴출시켜야 하며, 불법을 행한 관련자들에게 일벌백계로 엄중한 문책을 행하여야 될 것이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B는 2009. 5. 12.경 롯데주류비지에게 "축산 분뇨, 오폐수, 독극물로 인체에 심각하게 오염된 물을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하도록 정수처리하면 식품 제조 및 가공용 용수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지"를 질의한 후 이에 대한 회신이 없다는 이유로 2009. 6. 1.경 "롯데, 처음처럼 똥물을 정수해서 만들어도 된단다"라는 제목의 글을 인터넷사이트인 "다음 아고라"에 게재함으로써 롯데주류비지가 언급한 바 없는 내용을 마치 언급한 것처럼 적시하였다.

6) 두산은 앞서 본 민사 1심 판결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09나35318호로 항소하고 롯데주류비지가 원고승계참가를 하였으나, 2009. 12. 9. 두산과 롯데주류비지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원고승계참가인인 롯데주류비지는 다시 대법원 2010다8365호로 상고하였으며, 대법원은 2010. 5. 13. '민사 1심 판결 선고 후에 이루어진 B의 2009. 4. 6.경 및 2009. 6. 1.경 "다음 아고라"에 글을 게재한 행위가 롯데주류비지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는 불법행위임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판단이 누락되었다.'라는 이유로 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 하였다.

7) 그 후 서울고등법원 2010나46178호 파기환송심에서 위 법원은 2011. 4. 14. 'B가 2009. 4. 6.경 및 2009. 6. 1.경 인터넷사이트인 "다음 아고라"에 이 사건 소주의 제조면허취득이 불법이라는 허위 사실을 적시한 글을 게재하여 롯데주류비지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였고, 위 행위는 위법성이 인정된다.'라는 이유로 위 민사 1심 판결을 "B는 롯데주류비지에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6. 30.부터 2011. 4. 14.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변경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이하 '파기환송심 판결'이라고 한다), 이에 B가 다시 대법원 2011다40540호로 상

고하였으나, 2011. 8. 25. 위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위 파기환송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8) 한편, B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단552호로 위와 같이 2009. 4. 6.경 및 2009. 6. 1.경 인터넷사이트인 "다음 아고라"에 위 각 글을 게재하여 롯데주류비지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였다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2012. 8. 16. 징역 10월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B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노2911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고, 다시 대법원 2013도8140호로 상고하였으나 상고가 기각됨에 따라 위 유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피고 한국소비자TV의 이 사건 방송 등

1) 한편, B는 2012. 2.경 피고 한국소비자TV에게 이 사건 소주 제조에 사용되는 알칼리환원수는 인체에 해로울 뿐만 아니라 그 주류 제조면허도 불법적으로 취득되었다는 취지의 제보를 하였고, 피고 한국소비자TV의 시사제작팀장인 H는 B의 제보 및 인터뷰 등을 기초로 하여 '이 사건 소주의 제조용수인 알칼리환원수가 의사의 지도와 처방이 필요한 의료기기에서 생성되는 물로 건강에 해로울 수 있어 아무나 마시면 안 되고, 또 많이 마실 경우 위장장애, 피부질환 등을 야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심장마비로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으며, 두산이 이 사건 소주의 제조방법 승인도 불법적으로 받았다.'라는 취지의 "정직한 목격자 시선"이라는 시사고발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2012. 3. 5. 12:00경 이를 스카이라이프 채널 130번 등을 통해 방송(이하 '이 사건 방송'이라 한다)[18]하는 한편, 그 무렵 한국소비자TV 사이트(www.ctvkorea.com)와 유튜브(www.youtube.com)에 이 사건 방송이 게시되게 하였다.

2) 원고는 피고 한국소비자TV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카합290호로 이 사건 방송에 대하여 방송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2012. 8. 16. '피고 한국소비자TV는 한국소비자TV 사이트(www.ctvkorea.com)와 유튜브(www.youtube.com)에 이 사건 방송 내용이 담긴 동영상을 계속 게시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3) 그 후 H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단289호로 원고를 비방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소주의 제조용수인 알칼리환원수의 안전성과 그 제조방법 승인의 적법성에 대한 허위사실을 방송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원고의 이 사건 소주 판매업무 등을 방해하였다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업무방해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2014. 8. 7.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H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노3253호로 항소하였으나 2014. 11. 7. 항소가 기각되어 2014. 11. 15. 위 유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

18) 위 방송에서는 "논란과 의혹이 가득한 '처음처럼', 전문가들의 말처럼 알칼리환원수의 안전성은 아직 물음표인 것인가? 알칼리환원수 소주 '처음처럼'의 진실을 고발한다"는 멘트와 함께 한 남자가 '처음처럼' 소주병을 앞에 두고 소주 한 잔을 마신 후 얼굴을 찡그리며 배를 부여잡고 고통을 호소하는 일련의 장면을 삽입하였고, 그 마지막 장면에 "불법제조, 처음처럼, 독인가 물인가?"라는 자막화면을 삽입하기도 하였으며, 의료기기에서 생성되는 알칼리수를 과다 섭취할 경우 예상할 수 있는 일반적인 부작용을 언급하는 의사들의 인터뷰를 이 사건 소주 제조용수와 관련된 것처럼 편집 보도하고, B의 인터뷰 내용을 비롯하여 두산에서 관계 공무원들과의 부정한 거래를 통하여 이 사건 소주면허를 불법적으로 취득하였다는 사실을 암시하는 내용을 방영하였다.

4) 한편, B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단289호로 이 사건 방송과 관련하여 '두산이 이 사건 소주의 제조방법 승인을 불법적으로 받았다.'라는 취지로 허위 내용의 인터뷰를 하여 그 내용이 방송되게 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원고의 이 사건 소주 판매업무 등을 방해하였다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업무방해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2015. 4. 16.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B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노1675호로 항소하여 현재 그 항소심이 계속 중이다.

바. 피고 하이트진로의 비방광고 등

1) I, J, K, L의 이 사건 방송 활용 지시

가) 피고 하이트진로의 영업본부장 I[19]는 2012. 3. 19. 소위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라고 한다)를 처음 소집하여 이 사건 방송을 어떻게 영업에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한 것을 비롯하여 총 4회[20]에 걸쳐 비대위 회의를 주재하면서 소비자 등에게 구전이나 3분 정도로 축약한 동영상, SNS, 블로그 등을 통해 이 사건 방송을 전파하고 그 방송내용을 이용한 전단지와 현수막, 물티슈 등을 제작, 배포하도록 하는 한편, 직속 부서인 영업지원 2팀을 통해 이 사건 방송을 이용한 영업활용방안 등에 대한 지침을 전국의 영업지점에 하달하고[21], 위와 같은 영업활동을 위한 2012. 4. 13.자 "소비자패턴 전환을 위한 추가 예산 요청(특판권역)" 문건[22]을 결재하여 그와 같은 명목으로 예산 6,620만 원을 집행하도록 하였다.

나) 피고 하이트진로의 마케팅실 부실장인 L[23]은 마케팅실을 통해 2012. 3. 6. "소비자TV '처음처럼' 보도관련 대응방안"이라는 지침[24]을, 2012. 3. 7. "소비자TV '처음처럼' 보도관련 추가대응방안"이라는 지침[25]을, 2012. 3. 12. "소비자TV '처음처럼' 동영상 CD

---

19) 19○○년에 진로에 입사하여 △△권역 임원 등을 거쳐 20○○. ○.부터 피고 하이트진로 영업본부장으로 근무하였다.

20) 2012. 3. 19.과 같은 해 3. 23., 같은 해 3. 30., 같은 해 4. 6.에 각 개최되었는데, 위 각 회의에서는 부서별(영업본부, 영업, 마케팅 등)로 "전주 활동사항 및 의견"과 "향후 전략 방안"을 나누어 논의 · 결정하였고, 실제로 결정된 "향후 전략 방안" 대부분이 이후 각 부서와 지점(영업)에서 그대로 실행되었으며, 이러한 활동사항은 다음 회의에서 발표되어 "전주 활동사항 및 의견"란에 기재되었다.

21) 영업지원2팀은 위와 같은 영업활동 결과를 파악하기 위해 특판권역과 서울/경기/경인 지점에 상권별 판매 추이("독소주 관련 판매추이 변화" 문건)를 작성, 제출하도록 지시하였고, 이후 비대위 회의 참석자들에게 이를 송부하였다.

22) 위 문건에는 "목적 : 3월 이후 이슈화되고 있는 소주제조 논란에 대한 지점별 다양한 PR활동 전개, 이해관계자들의 구전확산을 통한 패턴변화의 주도적 역할 수립, 기대효과 : 소주제조 논란에 대한 쟁점 이슈 부각 및 확산으로 소비 패턴전환의 기틀 마련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문건 하단에는 "비대위회의결과 처음처럼 독 관련 이슈사항 전파 필요 합의" 등의 문구가 수기로 추가 기재되어 있다.

23) 19○○년에 진로에 입사하여 특판△△지점장, 마케팅팀 팀장 등을 거쳐 20○○. ○.부터 피고 하이트진로 마케팅실 부실장으로 근무하였다.

24) 위 지침에는 "1. 개요 ▸ 소비자tv 채널을 통해 이 사건 소주에 대한 부정적 보도 ▸ 주요 보도 및 구전 내용 1) 알칼리환원수의 불안전성 - 심장에 무리를 주어 심장마비 초래 가능성 있음, 생리대사에 문제 초래 가능성 있음 3) 알칼리수의 진위 여부 문제 있음 - 이 사건 소주가 주장하는 알칼리도(pH)에 미치지 않았으며 여타 소주보다 알칼리도가 낮은 것으로 확인됨 4) 알칼리환원수의 명칭에 문제 있음 - 알칼리환원수는 잘못된 명칭이며 알칼리 전기분해수가 정확한 명칭임 6) 수질 인허가 및 주류제조업 면허 허가에 대한 의혹 많음 2. 영업활동시 활용방안 ▸ 거래선 및 소비자를 대상으로 상기 내용에 대해 바이럴 차원의 홍보에는 법적 문제 없음 ▸ 또한 당사 직원들이 소비자tv 채널 다시 보기 사이트에 대한 단순 웹페이지 링크 전파도 가능함 다만 당사 직원이 드러나는 상황은 피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회사 PC나 회사가 드러나는 사이트 활용 지양) - 동영상을 다운받아 전파하는 것은 불가하며 유투브 등 다른 웹페이지 링크시에는 저작권 문제 발생 ▸ 지인들(일반 소비자)이 자발적으로 관련 내용에 대한 웹페이지 링크 또는 동영상 다운로드 전파도 가능함 ※ 마케팅실에서는 소비자들에게 상기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파할 수 있는 방안 별도 강구 예정"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5) 위 지침에는 "대면구전 요령 1. 대응 요령 1) 영업사원은 온라인보다는 직접 대면구전으로만 대응 및 활용 - 소비자tv에서 이 사건 소주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도된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소문 및 확산, 주변인 및 소비자가 직접 온라인에서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도록 관심 유도

활용검토 件"이라는 지침[26]을, 2012. 5. 11. "[참이슬]영업자료 배포의 건"이라는 지침[27]을 각각 작성하여 영업지원2팀에 전달하여 전국의 영업지점에 하달하게 하는 한편, 마케팅실을 통해 2012. 3. 15. "[영업용 CD] 배포 및 활용의 건"이라는 지침을 작성하여 전국의 영업지점 등에 직접 하달하였고[28], 비대위 회의에도 4번 모두 참석하여 이 사건 방송을 어떻게 영업에 이용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하면서 합의사항에 따라 "저희 업소는 유해성 논란이 있는 소주가 아닌 100% 천연원료의 깨끗한 참이슬을 권해드립니다."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제작하여 영업에 활용하도록 하고 위 방송을 3분 정도로 축약한 동영상 CD를 제작하여[29] 특판권역 임원인 J 등을 통해 일선 영업지점 직원들에게 이를 배포하여 영업에 활용하도록 하였다.

다) 한편, 피고 하이트진로의 영업지원○팀 팀장인 K[30]는 영업지원2팀을 통해 위와 같이 마케팅실로부터 전달받은 지침들을 전국의 영업지점에 하달하는 한편, 2012. 3. 19. "처음처럼 관련 협조사항"이라는 지침[31]을, 2012. 3. 20. "처음처럼 소비자TV 관련 참고사

---

2) 가능한 임직원이 직접 드러나게, 나서서 온라인 확산 활동은 진행하지 않도록 함 - 한시적 필요에 따라서만, 추가 온라인 활동은 별도 요청 예정 2. 유의사항 - 악의적인 비방보다는 부정적으로 방송된 내용을 객관적으로 전달, 경쟁사의 녹취 등 불필요한 논란에 휘말리지 않도록 주의 및 수위 조절, 온라인 대응 요령 1. 대응 요령 1) 사내 PC가 아닌 집 or 외부에서, 소비자TV의 이 사건 소주 방송 동영상 주소만을 링크 걸어준다 - Youtube 검색창에 '이 사건 소주 불법제조' 검색 후 가장 상단에 뜨는 동영상 주소 복사, 소비자tv 사이트 내 다시보기 주소 복사/소비자tv의 네이버 블로그 내 다시보기 주소 복사 2) 가입된 카페, 블로그, 소셜채널(트위터, 미투데이, C로그 등)에 해당 주소를 붙여넣기 2. 유의사항 1) IP주소가 남는 사내 PC 절대 사용금지 → 반드시 집 혹은 외부에서 대응 2) 가급적 임직원의 개인정보가 남거나 드러나는 개인 계정 사용금지 → 지인 또는 가족에게 부탁을 통해서 진행"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6) 위 지침에는 "1. 동영상 CD 배포시 우려사항 1) 자체 편집에 따른 저작권법 논란 소지 ▸ 현재 소비자TV에서는 공식적으로 동영상을 자진 삭제하고, 2부 객관적 후속 보도방송을 게재 ▸ 소비자TV의 방송물을 자체적으로 3분 동영상으로 무단 편집한데 따른 저작권법위반 2) 영업사원들의 동영상 무단 배포 우려 ▸ 영업사원들이 온라인상에서 이메일/메신져로 전송, 홈페이지/블로그 등에 게시하는데 따른 저작권법위반 ▸ 온라인 특성상 경쟁사에 노출 및 출처의 근거가 남아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죄 논란 가능성 높음 ▸ 조직적인 당사의 배후설 등으로 자칫 진실이 왜곡되어 역풍을 맞을 위험이 있음 - 경쟁사에서도 온라인 대응하며 당사 활동을 주시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됨, 2. 동영상 CD 활용 가능 범위 1) 영업사원의 개인 핸드폰 및 동영상 기기에만 저장 ▸ 전달된 CD에 있는 동영상을 다운로드하여 각 지점 영업사원에게 전달한다. ▸ 각 영업사원들은 철저한 동영상 파일 관리하에 개인의 기기에만 직접 저장하여 소지한다 ▸ 영업활동시 개인 동영상 기기를 활용하여 직접 동영상을 보여주되 전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비공개적 대면 판촉에만 시연 ▸ 영업사원의 대면 판촉시 비공개적 상황에서 동영상을 보여주며 참이슬의 '100%천연'의 우수함을 강조 ▸ 2차 거래선에서의 공개적인 상영 등 과도한 노출 활용 금지 ▸ 가능한 경쟁사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 3. 종합의견 ▸ 동영상 파일은 철저히 영업사원 개인 소장 외에는 활용하지 않도록 영업과의 의견 일치 필요 ▸ 동영상 유출로 인한 경쟁사 및 저작권법 Risk 고려시 동영상 배포보다는 동영상 주소 링크를 공유하는 것이 안전함 - 필요시 동영상 링크 주소 활용 방법 및 동영상 기기에서의 실행 방법 등 교육"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7) 위 지침에는 "사내공문을 통해 공지드린 것처럼 참이슬 영업 참고자료(알칼리환원수 관련)를 각 지점장/영업임원님 이메일을 통해 다시 공유드립니다, 이미 주지하고 계신 내용도 있겠지만 각 지점장님께서는 다시 한번 지점별 영업사원 교육을 부탁드리고 내용을 확인 후 삭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영업 참고자료(*첨부2)를 참고하셔서 경쟁사에서 과장하여 적극 홍보하고 있는 '알칼리환원수' 및 '이 사건 소주의 유해성 논란'에 대해 객관적인 내용으로 강력히 영업 대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첨부 : 알칼리환원수(한국물학회), 알칼리환원수 논란 정리(물학회관련)"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8) 2012. 3. 27.에는 "참이슬 현수막 문구 검토"라는 문건{"… 2. 이슈 직접 표현(업소 주체 게시용) - 업소를 주체로 내세워 보다 직접적으로 이번 이슈를 표현 및 배포 가능, 법률적으로는 경쟁사의 유해성을 확정적으로 표현하지 않았으므로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음 ▸ 저희 업소는 유해성 논란이 있는 '소주'가 아닌, 100% 천연 원료의 깨끗한 '참이슬'을 권해드립니다! 3. 마케팅실 검토 의견 - Issue making 차원에서 직접 표현하는 두 번째(안) 문구의 활용이 가장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됨, 단 경쟁사 대응을 위해서 우호 업소에서 요청을 받아서 제작해줬다는 수준으로 합의될 수 있도록 사전 협의"라는 내용}을 작성하여 영업지원2팀에 전달하였다.

29) 위 방송 직후에 '위 방송은 33분짜리로 너무 길어 영업에 활용하기가 어려우니 3분 정도로 축약한 동영상을 만들어달라'는 영업 측의 요구에 따라 3분 정도로 축약한 동영상 CD를 이미 제작하여 보관하고 있었다.

30) 19○○년에 진로에 입사하여 일선 영업지점과 영업지원팀에서 근무하다가 20○○. ○.부터 피고 하이트진로 영업지원○팀(영업본부)의 팀장으로 근무하였다.

31) 위 지침에는 "금일 주요 일간지 1면에 주적사 해명자료가 광고되었습니다. 또한 주적사 영업사원들의 당사 영업방해 활동 등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 안내말씀 드립니다. 1. 당사 역공 방지 - 전단지 배포지점은 전단지 배포를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주가 자발적으로 실시하는 것 제외) 2. 영업사원 미행, 당사 음해설 증거 확보… 3. 댓글 달기 - 금일 주적사 해명 보도기사와 관련하여

항"[32]과 "처음처럼 이슈 관련하여 공지사항입니다"[33]라는 지침을, 2012. 3. 26.과 같은 달 27. 및 같은 달 29.에 "[처음처럼 불법제조] 관련 온라인 행동지침"[34]을 각각 작성하여 전국의 영업지점에 하달하였다.

라) 피고 하이트진로의 특판권역 임원인 J[35]는 관할 지점인 특판○○지점과 특판△△지점의 직원들에게 구전홍보나 (만화)전단지, 현수막, SNS 등을 통해 소비자 등에게 이 사건 방송 내용을 전파 내지 홍보하도록 하는 한편, 위 비대위 회의에 4번 모두 참석하여 이 사건 방송을 어떻게 영업에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하면서 이 사건 방송을 3분 정도로 축약한 동영상 CD의 제작을 요구하여 2012. 3.경 L으로부터 동영상 CD를 건네받아 관할 지점의 영업직원들에게 이를 배포하고, 영업활동을 위한 추가 예산 6,620만원을 본사에 요청하여 이를 집행하였다.

2) 전국 각 지점 직원들의 불법영업행위

피고 하이트진로의 임직원인 I, J, K, L의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12. 3. 6.경부터 2012. 5. 21.경까지 사이에 피고 하이트진로의 □□지점 소속 영업직원인 M, ◎◎지점 소속 영업직원인 N 외 1인, ☆☆지점 소속 영업직원인 O 외 3인, ▲▲지점 소속 영업직원인 P 외 1인, 특판○○지점 소속 영업직원인 Q 외 12인, 특판△△지점 소속 영업직원인 R 외 3인, ■■지점 소속 영업직원인 S, ◇◇지점 소속 영업직원인 T 외 9인, ●●지점 소속 영업직원인 U 외 5인, ◆◆지점 소속 영업직원인 V 외 3인, ★★지점 소속 영업직원인 W, ◉◉지점 소속 영업직원인 X 외 1인 등 전국의 영업직원들이 주류 도매상과 주점 업주, 소비자 등 불특정

주요 포털 사이트에 기사가 올라와 있습니다. 가족, 친지 및 당사 직원은 회사 외 PC를 이용하여 적극 댓글 달기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예시 : 전문가들 말들이 전부 개소리였을까? 아니땐 굴뚝에 연기 날까? 등)"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2) 위 지침에는 "~~메세지 삭제는 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1. 업소에 부착한 "저희 업소는 유해성 논란이 끝날 때까지 이 사건 소주를 판매하지 않습니다." 또는 "이 사건 소주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현수막 관련 참고사항 ▸ 주적사에서 업소에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고 협박하여 당사가 부착했다는 [확인증]을 받는 경우 - 업소에서 자체적으로 부착한 것이라고 주장하면 주적사는 업소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해도 처벌할 수 없음(공익의 이익을 위한 경우 위법성이 조각되어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 만약 업소에서 확인증을 써준 경우 업주와 당사를 모두 고소할 수 있음. 물론 업소를 고소하지는 않겠으나 가능성도 없다고 할 수 없음"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3) 위 지침에는 "1. 영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수단 적극적 활용해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현수막/배너를 통한 홍보활동은 적극적으로 진행해 주세요. 현재 주적사에서도 현수막 등 홍보물 부착을 다량으로 진행하고 있으니 맞대응하여 지속적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전단지 배포는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지속적으로 뉴스가 뜰 경우 URL 등을 전사 공지를 통해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개인 SNS나 게시판 블로그 등을 적극 활용하여 대처해주세요(단 악성 댓글은 안되고 비꼬는 듯한 어투로...) 3. 도매장 판매사원 등 구전홍보할 수 있는 거래선을 최대한 이용하여 강남 및 대학가에 집중적으로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특판지점은 각 상권별로 주차별로 주차별 판매동향을 매주 금요일 오후 2시까지 영업지원팀으로 송부바랍니다.(양식 강남지점 이흥권 과장 송부 예정) 5. 기타 서울/경기/경인 지점은 각 지점당 6개 도매사 샘플로 3월 주차별 판매(사입이 아님) M/S 변화 추이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양식 별도 송부 예정)"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4) 위 지침 3. 26. 및 3. 27.자에는 "(읽으시고 삭제 요망) * '이 사건 소주 불법제조' 관련 온라인상에 이슈화를 위해 온라인상 집중검색에 대한 행동지침을 전달하오니 임직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바랍니다."라는 내용과 함께 접속일시, 접속 사이트, 대상(전 임직원 및 지인 활용), 주의사항(사내 PC 사용시 악성 댓글은 금지 등)이 차례로 기재되어 있고 마지막 부분에 "* 본 메시지는 수신 후 반드시 삭제 요망 * 전사적으로 협심 단결하여 이 사건 소주 박살내는데 일조 부탁드립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3. 29.자 지침에는 "(읽으시고 삭제 요망) * 금일 '이 사건 소주 불법제조' 관련하여 방송될 예정입니다. 전 직원 모두 보다 더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과 함께 트위터 의견 투표, 내용 검색 및 시청, 금지사항{당사 직원 및 가족 포함 "다음 아고라" 등에 별도 블로그 운영 금지(최종 결정이 안된 상태이므로 명예훼손 성립) 등}이 차례로 기재되어 있고 마지막 부분에 "* 본 메시지는 확인 후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35) 19○○년에 진로에 입사하여 △△권역 임원 등을 거쳐 20○○. ○.부터 피고 하이트진로 특판권역 임원으로 근무하였다.

다수의 사람들에게 이 사건 방송을 약 3분 정도로 축약하여 제작한 동영상을 보여주거나, 카카오톡을 비롯한 SNS, 인터넷 블로그,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먹으면 으악 You tube에서 [소비자TV]시선[충격! 불법제조 '처음처럼' 독인가 물인가] 보기", "네이버 검색창에 '불법제조'를 쳐보세요. 여러분들이 몰랐던 엄청난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링크 주소를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방송을 시청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저희 업소는 인체에 해로운 처음처럼을 취급(또는 권유)하지 않습니다.", "저희 업소는 불법제조한 주류는 판매하지 않습니다. 자연산 소주 참이슬만 취급합니다.", "저희 업소는 유해성 논란[36] 이 있는 처음처럼을 판매(또는 권유)하지 않습니다"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이나, "〈처음처럼〉, 알칼리환원수는 인체에 치명적, 제조허가과정도 불법행위 드러나[소비자TV 보도]", "네이버 검색창에 '불법제조'를 쳐보세요. 여러분들이 몰랐던 엄청난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처음처럼 독'을 쳐보세요. 여러분들이 몰랐던 엄청난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한국소비자tv 3월 5일 방송-처음처럼 제조 물인가? 독인가?〉"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전단지, "검증안된 물로 만든 소주를 마시라고? 넌 소비자TV도 안봤니? 탈나면 니가 책임질거야? 식약청홈페이지에 전기분해한 알칼리수는 신부전, 칼륨배설장애가 있는 환자는 복용하지 않는게 좋다고 나와 있어"라는 내용이 기재된 "알칼리대책위원회" 만화전단지, "저희 업소는 유해성 논란이 있는 소주가 아닌 100% 천연원료의 깨끗한 참이슬을 권해드립니다"라는 내용의 스티커 및 이를 부착한 물티슈 등을 각각 제작하여 게시·부착하거나 배포하였다.

3) I, J, K, L에 대한 형사처벌

I, J, K, L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단289호로 위와 같이 전국 각 지역의 영업 담당 임직원들과 공모하여 '이 사건 소주의 제조용수인 알칼리환원수가 건강에 유해할 뿐만 아니라, 소주 제조방법 승인도 불법적으로 받았다.'라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고, 이 사건 소주 판매업무 등을 방해하였다는 명예훼손, 업무방해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2014. 8. 7. I, J에 대하여 각 벌금 2,000만 원, K, L에 대하여 각 벌금 1,000만 원의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I, J, K, L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노3253호로 항소하여 2014. 11. 7. I, J에 대하여 각 벌금 1,500만 원의 유죄 판결이 선고되고[37], K, L의 항소는 기각되어 2014. 11. 15. 위 유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5 내지 19, 26 내지 31, 33 내지 71, 74 내지 80, 83 내지 89, 91, 9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8호증, 을다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36) 처음에는 유해하다거나 불법제조라는 단정적인 문구를 사용하여 제작하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는 그 문구 대신 유해성 논란이 있다는 식의 문구를 사용하여 제작, 배포하였다.

37) 위 법원은 1심에서 선택형(벌금형)의 상한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하였음을 이유로 1심 판결을 직권파기하고 위와 같이 다시 판결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소주의 제조용수는 관련법령에 따른 수질기준을 충족하여 건강상 아무런 위해를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신규제조면허 절차도 적법하게 이루어졌는데, B가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피고 한국소비자TV에 '이 사건 소주에 사용되는 알칼리환원수가 인체에 유해하고, 그 소주의 제조방법 승인도 불법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허위 내용의 제보를 하였고, 피고 한국소비자TV는 이 사건 방송 이전에 B의 제보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프로그램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마치 위 제보 내용이 진실인 것처럼 방송하였으며, 피고 하이트진로의 임직원들은 이 사건 방송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고도 회사 차원에서 이를 마케팅에 적극 활용하기로 하고 다양한 형태로 유포함으로써 원고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고 이 사건 소주의 판매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민법 제760조에서 정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공동하여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 115억 2,400만 원(= 피고 한국소비자TV의 이 사건 방송 및 피고 하이트진로의 불법마케팅행위로 인한 원고의 순이익 감소분 82억 5,000만 원 +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해 원고가 추가로 지출한 광고비용 22억 9,400만 원 + 원고가 지출한 변호사비용 9억 8,000만 원), 위자료 20억 원 합계 135억 2,400만 원 중 일부 청구금액 100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 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관련 법리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에는 공동불법행위자 상호 간 의사의 공통이나 공동의 인식이 필요하지 아니하고 객관적으로 각 행위에 관련공동성이 있으면 되며, 관련공동성 있는 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다35671 판결, 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0다28390 판결 등 참조). 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려면 그 위법한 행위와 원고가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결과발생의 개연성, 위법행위의 태양 및 피침해이익의 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4다1116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공동불법행위책임은 민법 제408조의 분할채무의 원칙을 배제함으로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담보하고, 나아가 인과관계의 입증이 곤란한 경우에 모든 가해행위 가담자의 공동불법행위를 추궁함으로써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기능을 한다.

2) 공동불법행위의 성립

가) 각 불법행위의 성립 및 객관적 관련공동성

(1) 앞서 본 바와 같이, ① B가 2009. 4. 6.경 "불법 제조된 처음처럼은 즉시 퇴출되어야 한다."라는 제목의 글을, 2009. 6. 1.경 "롯데, 처음처럼 똥물을 정수해서 만들어도 된단다."라는 제목의 글을 인터넷사이트인 "다음 아고라"에 각 게재하여 허위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롯데주류비지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고, 그로 인해 B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파기환송심 판결이 확정되고 이후 형사상 유죄 판결도 확정된 사실, ② 피고 한국소비자TV는 2012. 3. 5. B의 허위 내용의 제보 및 인터뷰 등에 기초하여 '이 사건 소주의 제조용수인 알칼리환원수가 의사의 지도와 처방이 필요한 의료기기에서 생성되는 물로 건강에 해로울 수 있어 아무나 마시면 안 되고, 또 많이 마실 경우 위장장애, 피부질환 등을 야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심장마비로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으며, 두산이 그 소주의 제조방법 승인도 불법적으로 받았다.'라는 취지로 허위 내용이 포함된 이 사건 방송을 하였고, 그 후 허위 내용을 방송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원고의 이 사건 소주 판매업무 등을 방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형사상 유죄 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③ 이 사건 방송 직후 피고 하이트진로의 임직원들이 이 사건 방송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수회에 걸쳐 비대위를 소집하여 이 사건 방송을 영업에 활용하기로 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방송 내용을 3분 정도로 축약한 동영상을 제작하고, SNS, 블로그 등을 통해 그 방송 및 동영상을 전파하거나 방송 내용을 이용한 전단지와 현수막, 물티슈 등을 제작, 배포하였으며, 이 사건 방송을 이용한 영업활용방안 등에 대한 지침을 전국의 영업지점에 하달하여 시행케 하는 등 조직적·악의적으로 불법마케팅 행위를 하였고, 그 후 위와 같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고, 이 사건 소주 판매업무 등을 방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형사상 유죄 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관계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 피고 한국소비자TV가 B의 허위 제보와 인터뷰 등에 기초하여 이 사건 방송을 제작, 방송하였고, 비록 위 방송이 이루어진 프로그램의 인지도가 낮고 피고 한국소비자TV가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적은 IPTV 채널을 통하여 방송하였다 하더라도 방송의 특성상 광범위하게 전파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 이 사건 소주가 출시된 이래 진로 내지 피고 하이트진로(이하 위 회사 간 합병 전후를 불문하고 '피고 하이트진로'라고만 한다)는 경쟁사인 원고와 소주시장 점유율을 다투면서 치열한 광고전을 해 왔고, 그 과정에서 피고 하이트진로는 과거 광고대행사인 C의 대표이사 D 등이 이 사건 소주의 제조용수인 알칼리환원수의 안전성과 그 제조방법 승인의 적법성에 대한 허위 내용의 만화 동영상 등을 인터넷에 게시하여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으면서 이 사건 방송 직후 그 내용을 선정적, 자극적으로 편집하고 상당한 예산을 투입하여 전국의 영업직원을 동원한 불법마케팅 행위를 함으로써 이 사건 방송 내용을 확대, 재생산한 점, ㉢ 앞서 본 B의 허위 제보와 인터뷰 이후 일련의 과정에서 이루어진 피고들의 각 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뒤에서 보는 손해가 발생되었고, 그 손해가 피고들 중 누구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것인지 구별하는 것이

불가능한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 한국소비자TV의 이 사건 방송과 피고 하이트진로의 불법마케팅행위는 객관적으로 관련공동성이 있는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2) 피고 하이트진로는, 피고 한국소비자TV의 이 사건 방송과 피고 하이트진로의 불법마케팅행위의 상대방이 동일하지 않고 그 시기, 장소, 방법 등도 다르므로 객관적 관련공동성이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 그 상대방(피해자와는 다른 개념이다)이 반드시 동일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시기, 장소, 방법이 다르다고 해서 객관적 관련공동성이 당연히 부정된다고 볼 수도 없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시간적으로 근접하고 사회적 연관성이 있는 피고들의 일련의 행위가 공통의 원인이 되어 원고에게 단일한 손해가 발생하고 피고들 각 행위의 결과 발생을 구별하는 것이 불가능한 이 사건의 경우 피고들의 행위 사이에 객관적 관련공동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하이트진로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 한국소비자TV는, 이 사건 방송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그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민사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명이 있으면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고, 또한 그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경우 언론매체의 보도를 통한 명예훼손에 있어서 행위자가 보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보도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10208 판결,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다35199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 이 사건 방송의 주된 내용이 이 사건 소주의 제조방법의 승인과정이 위법하고, 이 사건 소주는 유해하다는 것으로, '이 사건 소주의 확인된 불법허가과정, 독인가 물인가' 등 원색적인 표현 등까지 사용하여 원고를 공격하는 취지가 들어있는 점, ㉡ 이 사건 방송을 제작한 피고 한국소비자TV 시사제작팀장인 H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등 형사사건에서 H가 이 사건 방송 이전에 인터넷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규율하는 알칼리이온수(기)에 대해 미리 확인해 보았고, 이 사건 소주의 pH를 측정한 결과도 8.14로 나왔기 때문에 이 사건 소주의 제조용수인 알칼리환원수가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규율하는 알칼리이온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두산이 B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사건의 판결문도 방송 전에 검토하였기 때문에 법원이 이 사건 소주의 제조용수인 알칼리환원수가 먹는물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질기준을 모두 충족하여 수질위생상 소비자들의 건강에 어떠한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없다는 취지로 판시한 사실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여 H의 위법성 조각 주장을 배척한 점, ㉣ B의 제보로 기사를 게재한 일요서울신문사도 정정보도문을 게시한 점, ㉤ 이 사건 방송 전에 B에 대하여 롯데주류비지에 대하여 명예훼손 등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내용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확정되었고, B가 허위 내용의 글 게시로 인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되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설령 이 사건 방송의 공익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 한국소비자TV가 이 사건 방송의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한국소비자TV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소결

그렇다면 피고들은 민법 제760조 제1항에 따라 공동하여 원고에게, 피고들의 위와 같은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일반론

공동불법행위책임은 가해자 각 개인의 행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그로 인한 손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해자들이 공동으로 가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그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므로,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가해자들 전원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함께 평가하여 정하여야 하고, 그 손해배상액에 대하여는 가해자 각자가 그 금액의 전부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며, 가해자의 1인이 다른 가해자에 비하여 불법행위에 가공한 정도가 경미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가해자의 책임범위를 위와 같이 정하여진 손해배상액의 일부로 제한하여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8. 10. 20. 선고 98다31691 판결 등 참조).

2) 매출감소에 따른 영업상의 손해

가) 손해의 발생

(1) 피고 한국소비자TV의 시사제작팀장 H가 허위 사실을 방송하여 원고의 명예 및 신용을 훼손하고 원고의 이 사건 소주 판매업무 등을 방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형사상 유죄의 확정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 및 피고 하이트진로의 임직원들이 허위인 이 사건 방송 내용을 이용한 불법마케팅행위를 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고 원고의 이 사건 소주 판매업무 등을 방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형사상 유죄의 확정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와 갑 75호증의 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이 사건 소주 매출액은 이 사건 소주가 출시된 2006. 3.경

이후 매년 크게 증가하여 2009년 약 1,701억 원, 2010년 약 1,862억 원, 2011년 약 2,072억 원으로 증가하다가 2012년 약 2,053억 원으로 감소하였고, 이후 2013년 약 2,142억 원으로 다시 증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여기에 뒤에서 보는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 이후 매출감소치 추정에 관한 감정결과, 원고와 피고 하이트진로는 소주 과점시장의 경쟁사업자로서 어느 한 사업자에 대한 소비자의 부정적인 인식은 다른 사업자의 제품에 대한 선택으로 이어져 매출과 시장점유율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소주의 매출이 감소하고 그 결과 매출감소가 없었더라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감소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한편, 불법행위의 직접적 대상에 대한 손해가 아닌 간접적 손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가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배상책임이 있는데(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다31361 판결 등 참조), 피고들의 앞서 본 허위 사실 방송 또는 유포로 인한 원고의 이 사건 소주 매출 감소에 따른 영업상의 손해는 간접적 손해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은 그 손해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만 위 매출 감소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인바,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 피고 한국소비자TV는 국내외 방송·교육·홍보·광고용 영상프로그램 제작 및 공급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방송채널사업자로서, 이 사건 방송과 같이 특정 소주 제품의 문제점을 공개적으로 다루는 고발 프로그램의 경우 그 방송 내용이 일반 시청자 및 소비자의 제품 선택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점, ㉡ 피고 하이트진로는 원고와 경쟁사업자 관계에 있어 이 사건 소주의 제조용수인 알칼리환원수의 안전성과 그 제조방법 승인의 적법성에 대한 부정적 내용이 그 매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정을 알 수 있었고, 실제로 이 사건 방송 직후 이 사건 방송을 영업에 이용하기 위하여 그 내용을 자극적으로 편집하고 상당한 예산을 투입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전국의 영업직원을 동원한 불법마케팅행위를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들은 위와 같은 공동불법행위 당시 그로 인해 원고의 이 사건 소주 매출이 감소하리라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나아가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와 위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된다(다만,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의 구체적인 범위에 관하여는 뒤에서 본다).

(2) 피고 하이트진로는, 소비자 구매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매우 다양하고 또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원고의 이 사건 소주 매출 감소가 피고 하이트진로의 불법마케팅행위에 기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이 사건 소주 매출 감소는 2006년 출시된 후 상당기간 경과로 인한 브랜드 신선도 하락, 원고의 강릉공장 개보수로 인한 생산량 감소, 피고 하이트진로의 2012. 1.경 알코올 도수를 낮춘 참이슬 리뉴얼

성공, 이 사건 소주의 침전물 발생에 따른 리콜 사태, 원고 제품에 대한 소상공인 단체 등의 불매운동, 가수 이효리의 이 사건 소주 광고 효과 감소 및 가수 싸이의 참이슬 광고 효과 증대 등 다른 원인에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소비자의 소주 구매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매우 다양하게 존재하고 또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이 사건 소주 매출 감소는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극히 경미한 반면 위 주장과 같은 이 사건 소주의 브랜드 신선도 하락, 원고의 강릉공장 개보수로 인한 생산량 감소, 피고 하이트진로의 참이슬 리뉴얼 성공 등의 사유가 위 매출 감소를 전적으로 좌우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그렇다면 설령 위 주장과 같은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재산상 손해배상의 범위에서 참작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로 인하여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와 이 사건 소주 매출 감소로 인한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하이트진로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손해의 범위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감정인 Y, Z의 감정결과(이하 '이 사건 감정결과'라고 한다)를 근거로 하여, 이 사건 방송 무렵인 2012. 3.경부터 2013. 1.경까지 이 사건 감정결과에 따른 이윤감소 추정분 누계액 82억 5,000만 원을 원고의 이 사건 소주 매출 감소에 따른 손해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하이트진로는 이 사건 감정결과에서 감정인이 채택한 순수시계열 분석방법은 거시 또는 재무 분야의 계량분석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일반손해배상사건에 적용하기 부적절하고, 감정인이 위 분석에 사용한 VAR 모형의 경우 소주 매출에 영향을 주는 여러 수요 및 공급 요인을 무시하고 있어 예측결과가 부정확할 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오류를 가질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시장점유율을 추정변수로 삼거나 마진율을 산정하는 방식상의 문제점이 있고,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효과가 그 행위종료일 이후에도 2013. 1.경까지 장기간 지속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감정결과에 따른 이윤감소 추정액을 손해로 볼 수 없다고 다툰다.

(2)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갑 97호증의 기재 및 이 사건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감정결과는 2012. 3. 5.경부터 2012. 5. 21.까지 있었던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해 이 사건 소주 매출이 감소하였다는 가정 아래 2013. 1.까지의 자료들을 토대로 계량경제학적 분석을 통해 매출액 및 이윤감소분 크기를 산정

하였다.

(나) 감정인은 이 사건 감정을 위해 시계열 분석방법을 채택하였는데, 이는 종속변수의 과거 값에만 의존하는 이른바 순수시계열 분석방법이 아니라 과거의 값 이외에도 시장점유율, 실질가격지수, 출고량 등이 설명변수로 포함되어 있는 분석방법이다.

(다) 한편, 감정인은 이 사건 감정을 위해 VAR 모형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일반적인 회귀모형의 일종으로서 외부적인 사건이 발생한 이후 그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면 실현되었을 가상의 값을 추정하는 데 널리 이용되고 있다.

(라) 또한 감정인은 이 사건 감정을 위해 주류산업협회에 그 회원사들이 제공한 소주 출고량 및 출고금액 자료(객관성이 있는 전수 조사 자료라는 장점이 있다)를 분석에 사용하였고, 월별 출고량과 실제 판매량 사이에 단기적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3개월 이동평균 자료를 주요 분석자료로 이용하였다.

(마) 이 사건 감정결과, 3개월 이동평균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된 각 기간별 피해액은 아래 표(이하 '이 사건 표'라고 한다)의 기재와 같다.

기간	매출액 손실 추정[38]		이윤 감소분	
	월별	누계	월별	누계
2012. 3.	8.1억	8.1억	2.9억	2.9억
2012. 4.	24.1억	32.2억	8.5억	11.4억
2012. 5.	26.3억	58.5억	9.3억	20.7억
2012. 6.	22.4억	80.8억	7.9억	28.7억
2012. 7.	20.2억	101.0억	7.2억	35.8억
2012. 8.	19.4억	120.5억	6.9억	42.7억
2012. 9.	22.6억	143.1억	8.0억	50.7억
2012. 10.	23.0억	166.0억	8.1억	58.8억
2012. 11.	24.0억	190.0억	8.5억	67.4억
2012. 12.	22.9억	212.9억	8.1억	75.5억
2013. 1.	19.8억	232.8억	7.0억	82.5억
계	232.8억		82.5억	

(바) 한편, 피고들의 위 공동불법행위 기간 중 원고의 이 사건 소주 강릉공장 개보수 작업이 이루어졌고, 2012. 7.경부터 '골목상권살리기'와 관련한 소비자단체 등의 롯데 제품 불매운동이 있었으며, 같은 시기에 이 사건 소주의 침전물 관련

38) 세금을 공제하고, 반올림한 수치이다.

제품 리콜이 있었고, 그 외에 가수 싸이 공연, 광고모델 교체 등 잠재적으로 이 사건 소주 판매량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여러 사건들이 있었는데, 이를 Ev Lotte라는 이진변수에 반영하였다[39].

(3) 판단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는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의 불이익, 즉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불법행위가 가해진 이후의 재산상태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고, 이러한 손해의 액수에 대한 증명책임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인 원고에게 있으므로, 원고는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불법행위가 가해진 이후의 재산상태가 무엇인지에 관하여 이를 증명할 책임을 진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다2569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와 관련하여 장래에 얻을 수 있었을 이익을 입증함에 있어서는 그 증명도를 과거사실에 대한 입증에 있어서의 증명도보다 경감하여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얻을 수 있을 구체적이고 확실한 이익의 증명이 아니라 합리성과 객관성을 잃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이익의 증명으로 족하다(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다31361 판결 등 참조). 한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재산적 손해의 발생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법원은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밝혀진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불법행위와 그로 인한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 손해의 성격, 손해가 발생한 이후의 여러 정황 등 관련된 모든 간접사실을 종합하여 손해의 액수를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다6951, 6968 판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다6571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감정결과는 감정인이 2013. 1.까지의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이 사건 소주 매출에 영향을 주는 여러 변수들을 고려하여 현재의 상황에서 합리적인 예측치를 제시한 것으로서 존중되어야 하나, 이 사건 소주의 매출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요인 및 그 정도를 정확하게 반영하여 손해의 액수를 산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내재적 한계를 지니고 있는 점, 이 사건 표에서 원고의 월별 이윤 감소분은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 기간(2012. 3.경부터 2012. 5.경까지) 동안에 상승한 후 2012. 6.경부터 2012. 8.경까지 감소하다가 다시 2012. 9.경부터 2012. 11.경까지 다시 상승하였는데,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가 계속된 2012. 5.경을 전후하여 원고의 손해액이 정점에 도달하였다면 그 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향곡선을 그리며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그러한 감소추세를 벗어난 2012. 9.경 이후의 월별 이윤 감소분은 손해액 추정의 정확도가 떨어진다고 할 것이고[40], 앞서 본 피고들의 공동

39) 다만, 그러한 사건들이 반드시 이 사건 소주 판매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미는 아니다.

40) 이 사건 감정결과에서도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 효과가 2013. 1.경까지 이어진다고 판단하면서도 공동불법행위 종료일 이후 기간이 계속 경과할수록 손해액 추정의 정확도가 감소하게 되고, 그러한 경우 공동불법행위 효과가 소멸하였음에도 그 효과가 큰 양의 값으로 추정될

불법행위의 수단, 방법, 기간 등에 비추어 그 효과의 종기를 합리적인 기간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소주의 매출 감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수치화하기 불가능하다는 이유 등으로 이 사건 감정결과에 반영되지 못한 기타 변수들이 존재할 수 있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감정결과만으로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이 사건 소주 매출 감소에 따른 손해액이 82억 5,000만 원에 이른다는 점에 관하여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증명할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위에서 본 법리에 따라 이 사건 소주 매출 감소에 따른 손해액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감정결과에서 알 수 있는 앞서 본 2012. 3. 이후 이 사건 소주 매출액 손실 및 이윤감소분 추정치를 비롯하여 앞서 든 증거와 갑 81, 90호증, 을다 22, 31, 42, 4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 피고들에 의하여 초래된 이 사건 소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소주의 선택에 영향을 미쳐 이 사건 소주의 매출을 감소시킨 점, ㉡ 이 사건 방송의 파급효과와 더불어 피고 하이트진로의 불법마케팅행위가 3개월여 동안 지속되고 그에 따라 전파된 정보의 파급효과 또한 상당기간 지속되었으리라고 보여지는 점, 한편, ㉢ 피고 하이트진로는 2012. 1.경 참이슬 소주의 알코올 도수를 낮춘 제품 리뉴얼을 실시하고 홍보활동을 강화하였는데, 그 효과가 2012. 3.경 이후에도 지속되어 경쟁관계에 있는 이 사건 소주의 매출 감소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있는 점, ㉣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가 발생한 기간과 거의 동일한 시기에 이루어진 원고의 이 사건 소주 강릉공장 개보수 작업 및 이후 발생한 이 사건 소주의 침전물 발생에 따른 리콜 사태 등도 이 사건 소주의 매출 감소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있는 점, ㉤ 원고는 피고 하이트진로와 소주 과점시장의 경쟁사업자로서 원고도 피고 하이트진로를 상대로 공격적인 마케팅을 해 왔고, 그러한 과정에서 피고 하이트진로도 이 사건 공동불법행위를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이 사건 소주의 매출 감소에 따른 영업상 손해액은 이 사건 방송 다음날인 2012. 3. 6.경부터 피고 하이트진로의 최종 비방광고행위가 있은 때로부터 약 3개월이 경과된 2012. 8.경까지 약 6개월 간의 이 사건 감정에 따른 같은 기간 동안의 이윤감소 추정분 누계액(42억 7,000만 원)의 약 70%에 해당하는 30억 원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3) 비용 지출에 따른 손해

가) 원고의 추가 광고비용 청구 부분

원고는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알칼리 전기분해수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하여 22억 9,400만 원 상당의 광고

개연성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비용을 추가로 지출하였으므로, 위 금액이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7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광고비용이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통상적인 홍보를 위하여 지출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지출된 광고비용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의 변호사비용 청구 부분

원고는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로 입은 명예 및 신용의 훼손, 재산상 손해를 회복하고 원고의 법익을 방어하기 위하여 9억 8,000만 원 상당의 변호사비용을 추가로 지출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변호사강제주의를 택하지 않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 자체와 변호사 비용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수 없지만(대법원 1978. 8. 22. 선고 78다672 판결 등 참조), 변호사 비용의 지출 경위와 내역, 소송물의 가액, 위임업무의 성격과 난이도 등에 비추어 보아 변호사 없이는 소송수행이 불가능하다고 보이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나 채권자가 지출한 변호사 보수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다81315 판결,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962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갑 7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들의 지속적인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명예 및 신용의 훼손, 재산상 손해 발생 등 법익 침해를 방어하기 위하여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기로 하고 ① 2012. 4. 23.경 법무법인 ○○에 피고들과 B를 상대로 한 민사상 가처분 사건(1심) 및 본안소송(1심)에 관한 착수금 명목으로 1억 원, 피고 한국소비자TV와 B를 상대로 한 형사고소 및 기소 등 형사사건에 관한 착수금 명목으로 3억 원 등 합계 4억 원을, ② 2012. 9. 17. 법무법인 ○○에 피고 한국소비자TV를 상대로 한 방송금지가처분 사건 승소에 따른 성공보수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③ 2012. 11. 30. 법무법인 ○○에 B의 1심 형사사건 관련 징역형 선고에 따른 성공보수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④ 2012. 11. 30. 법무법인 ○○에 이 사건 소주 음해사건 관련 피고 하이트진로에 대한 압수수색 성공보수금 명목으로 1억 원을, ⑤ 2013. 1. 29. 및 2013. 2. 4.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피소 등 관련 사건의 착수금 명목으로 법무법인 ○○에 2,000만 원, 법무법인 △△△에 6,000만 원 등 합계 8,000만 원을, ⑥ 2013. 3. 5. 법무법인 ○○에 피고 하이트진로 임직원의 형사사건 기소 관련 성공보수금 명목으로 3억 원 등 총 9억 8,000만 원을 각 변호사보수로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실에다가 앞서 본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 B 및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가 2개월 이상 지속되면서 원고의 피해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었으므로, 원고로서는 피해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을 할 필요가 있었던 점, ㉡ 피고 한국소비자TV는 국내외 방송 · 교육 · 홍보 ·

광고용 영상프로그램 제작 및 공급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방송채널사업자이고, 그 시사제작팀장 H는 공익성을 내세워 이 사건 방송을 하였다는 입장이었으므로, 원고가 변호사의 도움 없이는 민, 형사소송에서 H의 비방 목적과 이 사건 방송의 허위성 등을 제대로 주장하거나 입증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 한편, 피고 하이트진로는 전국의 영업직원을 동원하여 이 사건 방송을 이용한 불법마케팅행위를 하면서도 회사 차원의 개입이 있었다는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행동지침을 하달하는 등 배후에서의 조종행위를 은폐하고자 한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그에 관한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법적인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볼 때, 원고로서는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와 관련된 민, 형사소송을 수행함에 있어 변호사의 조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만 원고가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에 대처하기 위하여 변호사비용을 지출할 수밖에 없었다 하더라도 앞서 본 위 각 변호사보수를 지출하게 된 경위와 지급내역, 소송물, 위임업무의 성격과 난이도,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와의 관련성 등 구체적 사정을 고려할 때, 원고가 지출한 ① 내지 ⑥의 각 변호사보수 중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 자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액은 민, 형사사건 등의 착수금 명목으로 지급한 ① 비용(4억 원) 및 ⑥ 비용(8,000만 원)의 일부의 합계금액 중 2억 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4) 위자료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 한국소비자TV의 이 사건 방송 및 피고 하이트진로의 불법마케팅행위가 이 사건 소주의 제조용수의 안전성 및 그 제조면허 취득의 적법성 여부와 같은 제품 및 제조자에 관한 핵심적인 사항을 대상으로 삼고 있어 그로 인한 영향이 이 사건 소주 내지 제조자의 이미지와 직결되는 점, 방송, 동영상 CD, 현수막, 인터넷 등의 이용과 같은 행위 태양 및 그 전파성, 원색적인 문구 사용 등과 같은 표현 정도의 중대성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가 공통의 원인으로 작용하여 원고의 명예와 신용이 훼손되는 무형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위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 피고 한국소비자TV는 이 사건 소주의 제조용수인 알칼리환원수의 안전성과 그 제조방법 승인의 적법성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방송하였을 뿐만 아니라, "충격, 불법제조 처음처럼, 독인가 물인가?"라는 선정적인 제목 등으로 시청자로 하여금 이 사건 소주가 불법적으로 제조된 것으로서 인체에 매우 유해하다는 인상을 심어준 점, ㉡ 피고 하이트진로는 이 사건 방송이 허위 사실임을 인식하였음에도 조직적·악의적으로 SNS, 블로그, 스마트폰 등을 통해 이 사건 방송 내용을 전파하고 자극적인 문구를 사용한 전단지와 현수막, 물티슈 등을 제작,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방송을 재생산, 확대한 점, ㉢ 이 사건 방송과 같이 특정 소주 제품의 문제점을 공개적으로 다루는 고발 프로그램의 경우 일반적으로 시청자에 대한 영향력이 상당히 크고, 비록 그 방송의 인지도가 낮다 하더라도 그 방

송 내용을 편집하여 온라인, 오프라인, 스마트폰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전파하는 마케팅행위를 하는 경우 이를 접한 소비자에게 미치는 파급력이 클 수밖에 없는 점, ㉣ 이 사건 방송 및 이를 악의적으로 활용한 불법마케팅행위로 인하여 훼손된 이 사건 소주 제조, 판매자로서의 원고의 명예와 신용 정도가 적지 않고, 이를 회복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들이 위와 같은 공동불법행위를 하게 된 경위와 그 동기, 앞서 인정한 재산상 손해배상액 등을 모두 고려하여 볼 때, 피고들이 공동하여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를 1억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다. 소결

그렇다면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3억 원{= 재산상 손해 32억 원(= 매출 감소로 인한 손해 30억 원 + 비용 지출 손해 2억 원) + 위자료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최종 불법행위일의 다음 날인 2012. 5. 22.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1. 13.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 27. 선고 2015가합513706 판결

다른 언론사가 제작 및 방송한 영상물을 출처표시 없이 인용하거나 과다 인용한 경우는 공표된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 원고 : 주식회사 주권방송
- 피고 : 주식회사 조선방송 외 6명

[사실관계]

원고는 유명인 A가 진행하거나 초대손님으로 등장한 「채널615」 및 「Radio 반민특위」, 「천기누설 이마팍도사」라는 영상물들을 기획 · 제작하였고, A와 B가 진행하는 통일토크콘서트 및 B의 강연을 촬영 및 편집하여 위 각 영상물을 원고가 운영하는 인터넷 웹사이트에 전송하였다.
피고들은 2014년 11월 24일경부터 A와 B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수사 및 기소사실을 보도하면서 원고의 이용허락 없이 위 각 영상물을 그대로 또는 편집(크기 조정, 원고 로고 제거 등)하여 사용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이 무단으로 원고의 영상물을 사용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심리 결과, 1심 법원은 의도적으로 원고의 로고 표시 부분을 삭제하는 방법으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행위(부적절 인용) 및 원저작물의 시장수요를 대체할 수 있을 정도로 지나치게 많은 분량을 인용한 행위(과다 인용)는 저작재산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 언론사별 인용방법 및 정도에 따라 각 손해배상을 명하였다. 이후 원고 및 피고들이 항소 및 부대항소하였고, 2심 법원 역시 같은 이유로 원고의 저작재산권 침해를 인정하는 한편, 1심에서 저작물성을 부인한 일부 편집영상물(통일토크콘서트 및 강연)에 대해 저작물성을 인정하여 손해배상액을 추가 인정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6나2018997). 현재 피고 문화방송이 상고하여 3심 계속 중이며(대법원 2017다218154), 나머지 피고들과의 관계에서는 2심 판결이 확정됐다.

[판결요지]

□ **공표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인용한 행위의 위법성에 대한 판단**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인용의 목적과 방법이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어야 한다. 따라서 보도나 비평 목적의 공표 저작물 인용의 경우에도 인용된 부분이 자신의 저작물이 아니라 타인의 저작물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비로소 그 '인용의 방법'이 공정한 관행에 합치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 **공표된 저작물을 과다 인용한 행위의 위법성에 대한 판단**
보도, 비평 등의 목적으로 공표된 저작물을 인용하는 경우, 그 인용의 정도에 있어서 피인용저작물을 지나치게 많이

인용하거나 전부 인용하여 원저작물에 대한 시장수요를 대체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른 경우, 이를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판결문

사　　건　2015가합513706　손해배상(기)
원　　고　주식회사 주권방송
피　　고　1. 주식회사 조선방송
2. 주식회사 채널에이
3. 주식회사 매일방송
4. 한국방송공사
5. 주식회사 문화방송
6. 주식회사 와이티엔
7. 주식회사 연합뉴스티브이
변론종결　2015. 12. 16.
판결선고　2016. 1. 27.

주 문

1. 원고에게, 피고 조선방송은 13,600,000원, 피고 채널에이는 10,200,000원, 피고 매일방송은 3,400,000원, 피고 문화방송은 4,500,000원, 피고 와이티엔은 3,500,000원, 피고 연합뉴스티브이는 6,9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5. 3. 6.부터 2016. 1. 2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한국방송공사에 대한 청구 및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조선방송 사이에 생긴 부분의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주식회사 조선방송이 각 부담하고,
   나.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채널에이 사이에 생긴 부분의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주식회사 채널에이가 각 부담하고,
   다.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매일방송 사이에 생긴 부분의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주식회사 매일방송이 각 부담하고,

라. 원고와 피고 한국방송공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마.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문화방송 사이에 생긴 부분의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주식회사 문화방송이 각 부담하고,
바.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와이티엔 사이에 생긴 부분의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주식회사 와이티엔이 각 부담하고,
사.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연합뉴스티브이 사이에 생긴 부분의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주식회사 연합뉴스티브이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조선방송은 166,600,000원, 피고 주식회사 채널에이는 79,900,000원, 피고 주식회사 매일방송은 45,200,000원, 피고 한국방송공사는 10,400,000원, 피고 주식회사 문화방송은 46,500,000원, 피고 주식회사 와이티엔은 31,500,000원, 피고 주식회사 연합뉴스티브이는 71,3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5. 3.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지위 및 이 사건 각 영상물 제작

1) 원고는 디지털방송서비스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인터넷방송사업자(웹캐스팅사업자)로서 [별지1] 목록 기재 각 영상물(이하 '이 사건 각 영상물'이라 한다)을 제작하여 자신의 인터넷 웹사이트(www.615tv.net) 및 유튜브(www.youtube.com)에 올려 이를 일반인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2) 이 사건 각 영상물 중 [별지1] 목록 순번 1 내지 5, 16 내지 18번 기재 각 영상물[41]은 원고가 기획·제작하고 소외 A가 진행한 '채널615'라는 제목의 영상물이고, 원고 영상물 19는 원고가 기획·제작하고 A가 진행자 중 한사람으로 등장하는 'Radio 반민특위'라는 제목의 영상물이며, 원고 영상물 15는 원고가 기획·제작하고 A가 초대손님으로 등장하는 '천기누설 이마팍도사(38선을 두 번 넘은 사람-A 편)'라는 제목의 영상물이다.

3) 한편, A, 소외 B는 2013년경부터 전국을 순회하면서 통일토크콘서트라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었고, B는 2013년경부터 북한 관련 초청 강연을 수차례 진행하였는데, 원고 영상물 6 내지 14, 20은 원고 소속 촬영자가 위 통일토크콘서트 및 초청 강연을 현장 촬영한 영상물인바,

41) 이하 편의상 [별지1] 목록 순번○번 영상물을 '원고 영상물 ○'이라고 줄이고, 이하 같은 방식으로 표기한다.

① 원고 영상물 6, 7은 2014. 11. 19. 서울 종로구 조계사 내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개최된 통일토크콘서트 촬영 영상물의 일부이고, ② 원고 영상물 12는 2014. 12. 9. 개최된 대구 지역 통일토크콘서트 촬영 영상물이고, 원고 영상물 8, 10은 원고 영상물 12의 후반부에서 B가 편지를 낭독한 부분 및 노래를 부른 부분을 편집하여 작성한 영상물이며, ③ 원고 영상물 9, 11은 2014. 12. 10. 전북 익산 ○○성당에서 개최된 통일토크콘서트 과정에서 발생한 사제폭발물 투척 사건의 현장을 촬영한 영상물이고, ④ 원고 영상물 13, 14는 2014. 4. 16. 조계사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개최된 B 강연을 촬영한 영상물이며, ⑤ 원고 영상물 20은 2013. 8. 30.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등의 주최로 기독교회관에서 개최된 B 초청 강연을 촬영한 영상물이다.

나. 피고들의 지위 및 이 사건 각 영상물의 무단 사용

1) 피고들은 종합 뉴스프로그램의 제작 및 공급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방송사업자들이다.

2) 위 2014. 11. 19.자 통일토크콘서트 이후 보수단체들이 위 토크콘서트에서 북한을 찬양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A, B를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하였고, 수사기관은 2014. 11.경 '채널615' 등의 인터넷방송 진행 및 '통일토크콘서트' 등의 개최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혐의 등으로 A, B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였다. 이후 검찰은 2015. 1. 8.경 위 2014. 11. 19.자 및 2014. 12. 10.자 각 통일토크콘서트와 관련하여 통일토크콘서트 개최에 의한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선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B를 기소유예하였다. 그리고 검찰은 그 무렵 원고 영상물 4, 5 '채널615' 프로그램 진행과 관련한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반포 및 위 2014. 11. 19.자 및 2014. 12. 10.자 각 통일토크콘서트 개최와 관련한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선전 등의 범죄사실로 A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하여, 그 무렵 서울중앙지방법원은 A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였고, 검찰은 2015. 2. 9. A를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의 범죄사실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기소하였다.

3) 피고들은 위와 같이 A 및 B에 대한 수사가 시작될 무렵인 2014. 11. 24.부터 A가 '채널615' 프로그램 등 인터넷방송 및 '통일토크콘서트' 등에서, B가 '통일토크콘서트' 등에서 각각 북한을 찬양하는 듯한 발언을 하였다는 내용 및 A, B에 대한 수사 진행 내용에 관한 뉴스프로그램 또는 A 및 B의 북한 관련 발언 등을 비판하는 내용의 시사프로그램인 [별지2] 목록 제1내지 7항 기재 각 영상물[42](이하 '피고들 각 영상물'이라 한다)을 제작·방송하였는데, 피고 한국방송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피고들의 각 영상물 제작 과정에서 원고의 이용허락을 받지 않고 피고들 각 영상물에 이 사건 각 영상물을 그대로 또는 편집(크기 조정, 원고로고 제거, 음 소거 등)하여 삽입하였고, 피고 한국방송공사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아 이 사건 각 영상물을 사용한 뉴스를 제작하다가, 원고의 이용허락

42) 원고의 2015. 11. 16.자 준비서면에 첨부된 '정당한 인용이 아닌 이유' 부분에 기재된 피고들의 '영상도용위치'와, 이 사건 소장 및 원고의 2015. 11. 1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 첨부된 '별지 청구금액 산정' 부분에 기재된 피고들의 '영상도용위치' 사이에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는바, 그 불일치 부분에 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및 2015. 11. 1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 기재된 부분을 우선한다.

철회 이후에도 이 사건 각 영상물 중 한 편을 사용하여 뉴스 한 편을 제작하였다(이하 피고들의 상호 중 '주식회사' 부분은 생략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을다 제2호증, 을마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는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저작물인 이 사건 각 영상물의 저작권자인바, 피고들은 원고의 허락 없이 이 사건 각 영상물을 무단 사용하여 피고들 각 영상물을 제작하여 이 사건 각 영상물에 관한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위 저작권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들

1) 이 사건 각 영상물은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피고들의 공통 주장)

이 사건 각 영상물은 A 등의 통일토크콘서트 등이 진행되는 동안 당사자들과 진행자의 대화 내용을 사실적으로 전달하기 위하여 촬영된 것이거나, 단순한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에 해당하여, 원고의 창작성 있는 기여가 없으므로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저작권법 제29조 제1항 소정의 비영리 목적의 방송에 해당한다는 주장(피고 한국방송공사의 주장)

이 사건 각 영상물이 사용된 피고 한국방송공사의 영상물들은 광고를 하지 않는 1TV에서 방송된 것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방송에 해당하므로, 저작권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저작권침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이용허락에 따른 사용 주장(피고 한국방송공사의 주장)

피고 한국방송공사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영상물에 관한 이용허락을 받고 [별지2] 목록 제4항 순번 1 내지 9번 각 영상을 제작하였으므로, 위 각 영상물 제작은 저작권침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저작권법 제28조 소정의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에 해당한다는 주장(피고들의 공통 주장)

이 사건 각 영상물을 사용하여 피고들 각 영상물을 제작, 방송한 행위는 저작권법 제28조가 정하고 있는 '공표된 저작물을 보도를 위해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이 원고의 이 사건 각 영상물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다.

5) 저작권법 제35조의3 소정의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한다는 주장(피고들의 공통 주장)

설령 이 사건 각 영상물의 인용이 저작권법 제28조 소정의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저작권법 제35조의3 소정의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는 해당하므로, 피고들이 원고의 이 사건 각 영상물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다.

6)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주장(피고 조선방송, 채널에이, 한국방송공사, 와이티엔, 연합뉴스티브이의 공통 주장)

원고는 피고들의 각 영상물로 인하여 어떠한 손해도 입은 바 없다.

7) 저작권침해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는 주장(피고 와이티엔의 주장)

피고 와이티엔은 이 사건 각 영상물에 관한 저작권침해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

3. 저작권침해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각 영상물이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인지 여부

1) 판단 기준

가)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문학 ·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조항에 따른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기 위해서 필요한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어떠한 작품이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고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하므로,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표현, 즉 저작물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지 않는 표현을 담고 있는 것은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2도965 판결 참조).

나) 저작권법 제7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라고 규정하여 일정한 창작물을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대상에서 제외하면서 제5호에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를 열거하고 있는바, 이는 원래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것은 외부로 표현된 창작적인 표현 형식일 뿐 그 표현의 내용이 된 사상이나 사실 자체가 아니고, 시사보도는 여러 가지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간결하고 정형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보통이어서 창작적인 요소가 개입될 여지가 적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독창적이고 개성 있는 표현 수준에 이르지 않고 단순히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의 정도에 그친 것은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4도5350 판결의 취지 참조).

다) 사진저작물은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찬스의 포착, 기타 촬영방법,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어야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된다(대법원 2001. 5. 8. 선고 98다43366 판결,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다4454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원고가 기획 · 제작한 각 영상물의 경우(원고 영상물 1 내지 5, 15 내지 19)

갑 제3호증의 각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부분 각 영상물은 원고 소속 연출자, 작가 및 촬영자의 기여에 따라 기획·제작된 영상물로서, 주제 또는 화제의 선택과 배열, 발언자들의 표현 형식 등에서 연출자 등의 개성과 창작성이 드러나거나, 카메라 구도의 선택 등 촬영방법 및 영상물의 편집에서 촬영자 및 편집자의 개성과 창작성이 드러나므로, 이 부분 각 영상물은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로서 원고에게[43] 그 저작권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통일토크콘서트 장면 편집 영상물의 경우(원고 영상물 8, 10)

갑 제3호증의 각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영상물 8, 10은 원고 소속 편집자가 통일토크콘서트 영상인 원고 영상물 12를 편집한 영상물로서, 편집자는 원고 영상물 8의 경우 B의 노래에 의한 시청자들의 감정 자극 극대화를 위해, 원고 영상물 10의 경우 B의 편지 낭독에 의한 시청자들의 감정 자극 극대화를 위해, 각 B가 방북시 촬영한 사진들의 삽입, 화면 전환 및 편집 등의 기여를 하였는바, 이러한 기여 부분에서 편집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감지되고, 이 부분 각 영상물은 누가 편집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 영상물 8, 10은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로서 원고에게 그 저작권을 인정할 수 있다.

다) 강연, 통일토크콘서트의 현장을 촬영한 영상물의 경우(원고 영상물 6, 7, 9, 11 내지 14, 20)

이 부분 각 영상물의 경우 원고가 기여한 부분은 카메라를 이용한 동영상 촬영이 대부분인바, 이 부분 각 영상물의 저작물성 인정 여부는 앞서 본 사진저작물에 관한 저작물성 인정 기준을 적용하여 판단할 수 있다.

그런데 갑 제3호증의 각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부분 각 영상물은 강연자 또는 토크콘서트 진행자들의 발언 내용 및 표정, 현장 상황 및 관객의 반응 등을 충실하고 정확하게 기록·전달하기 위한 목적에서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부분 각 영상물 촬영 후 개성적이거나 창작적인 편집 작업이 가미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③ 원고 영상물 6, 7은 2대의 카메라로 촬영한 것인데, 카메라 구도의 선택, 촬영기법 등에서 촬영자의 별다른 개성이나 창작적 노력이 감지되지 않는 점, ④ 원고 영상물 9, 11은 진행자의 발언 및 사제폭탄 투척 등의 장면을 1대의 카메라로 있는 그대로 촬영한 것인데, 카메라 구도의 선택, 촬영기법 등에서 촬영자의 별다른 개성이나 창작적 노력이 감지되지 않는 점, ⑤ 원고 영상물 12는 1대의 카메라로, 원고 영상물 13, 14는 3대의 카메라로, 원고 영상물 20은 1대의 카메라로 각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데, 위 각 영상물 촬영자는 강연 또는 토크콘서트의 실황을 있는 그대로 촬영하였고, 위 각 영상 촬영시 카메라 구도의 선택, 촬영기법 등에서 촬영자의 별다른 개성이나 창작적 노력이 감지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각 영상물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할 만한 원고의

43) **저작권법 제9조(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 등이 된다.

어떤 창작적 노력 내지 개성이 드러나 있는 저작물이라고 보기 어렵다.

한편, 원고 영상물 9에 삽입된 글들의 경우, 발언자의 발언 내용을 그대로 문자화한 것이거나, 영상 속의 사건을 사실적으로 전달한 문자에 불과하여 그 표현에 영상물 제작자의 개성이나 창조성이 드러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원고는 각 강연 및 토크콘서트 주최 측과 계약을 체결하고 이 부분 각 영상물을 촬영한 것으로 보이나, 그러한 계약체결 사실만으로 이 부분 각 영상물에 원고가 창작적 기여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각 영상물의 경우, 강연 또는 토크콘서트의 기획자 또는 실연자들의 창작적 기여에 의한 그들의 저작권 인정 여부는 별론, 저작권법이 보호할 만한 창작적 노력 내지 개성이 감지되지 않는 촬영 등에 기여하였을 뿐인 원고에게 이 부분 각 영상물에 관한 저작권을 인정할 수는 없다.

라) 소결

따라서 이 사건 각 영상물 중 원고 영상물 1 내지 5, 8, 10, 15 내지 19(이하 '이 사건 각 저작영상물'이라 한다)는 원고에게 저작권이 인정되는 저작물로 볼 수 있으나, 원고 영상물 6, 7, 9, 11 내지 14, 20은 원고에게 저작권이 인정되는 저작물로 볼 수 없다.[44] 그러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 중 원고가 원고 영상물 6, 7, 9, 11 내지 14, 20에 관한 저작권자임을 전제로 한 청구 부분(별지2 목록의 각 '유형 분류'란에 '저작물×'라고 표기된 영상물 관련 청구 부분이다)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피고 한국방송공사의 [별지1] 목록 제4항 기재 각 영상물 제작 및 방송이 저작권법 제29조 제1항 소정의 비영리 목적의 방송에 해당하는지 여부

살피건대, 직접적으로는 물론 간접적으로라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29조 제1항[45]의 적용이 없다고 할 것인바, 공영방송사인 피고 한국방송공사는 1TV와 관련하여 수신료를 받고 있는 이상 피고 한국방송공사의 방송이 비영리 목적의 방송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 한국방송공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44) 위 판단 방법을 단순화하면, '방송사업자가 제작한 영상물'에 관하여 **'방송사업자의 저작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시[방송사업자의 저작인접권{방송사업자는 그의 방송을 복제할 권리 등을 가진다(저작권법 제84조 내지 제85조의2). 방송은 '공중송신 중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음 · 영상 또는 음과 영상 등을 송신하는 것'을 말하고(저작권법 제2조 8호), 방송의 객체는 반드시 저작물일 필요가 없다.} 인정 여부는 별개이다], ① 그 영상물에 대한 방송사업자의 기여 부분(예능 프로그램, 드라마와 같이 방송사업자 소속 직원들이 기획, 각본, 연출, 실연, 촬영, 편집에까지 기여한 영상물도 있고, 제3자가 기획하고 강연한 강연의 녹화물, 사건 · 사고 실황의 녹화물과 같이 방송사업자 소속 직원들이 단순히 촬영에만 기여하는 영상물도 있다)을 확정하고, ② 그 기여 부분에 개성이나 창조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으로 그 영상물에 관한 방송사업자의 저작권 인정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방송사업자가 제작한 대부분의 영상물에는 방송사업자 소속 직원들의 기획, 각본, 연출, 실연, 촬영, 편집 등의 각 과정에서 개성이나 창작성이 드러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므로, '방송사업자가 기획, 각본, 연출한 바도 없고, 촬영 및 편집 과정에서도 별다른 기법이 사용되지 않은 영상물'(예를 들면, 강연이나 사건 · 사고를 별다른 촬영기법을 사용하지 않고 촬영한 영상물)을 제외한다면, 방송사업자가 제작한 대부분의 영상물은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로 판단될 가능성이 클 것이다.

45) **저작권법 제29조(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 · 방송)** 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 또는 방송할 수 있다. 다만, 실연자에게 통상의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피고 한국방송공사가 원고의 이용허락에 따라 이 사건 각 영상물을 사용하였는지 여부

1) 피고 한국방송공사 소속기자 C가 2014. 11. 24. 오후경 소외 A에 관한 취재 등을 위하여 원고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A와의 인터뷰를 마친 후 원고의 웹사이트에 게재되어 있는 A 및 B의 토크콘서트 영상을 비롯한 원고의 영상물들을 사용해도 되는지 문의하자, A와 성명불상의 원고 측 관계자가 C 기자에게 그 사용을 허락한 사실, 피고 한국방송공사는 원고 영상물 1, 6, 7을 사용한 [별지2] 목록 제4항 순번 1 내지 9번 기재 각 영상물[46]을 제작·방송한 사실, 원고는 2014. 12. 15. 피고 한국방송공사에게 '2014. 12. 15. 이후 주권방송 소유 영상물 사용을 금한다'는 취지로 통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설령 원고 영상물 6, 7도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저작물이라고 가정하더라도) 피고 한국방송공사가 2014. 12. 15. 이전에 원고 영상물 1, 6, 7을 사용하여 피고4 영상물 1 내지 9를 제작한 것은 원고의 이용허락에 의한 것이므로, 원고의 위 각 영상물에 관한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이용허락은 '출처표시'를 전제로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가 위 이용허락시 출처표시라는 조건을 붙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뿐만 아니라, 을다 제6호증의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저작권자 등으로부터 유·무상의 이용허락을 받고 영상물을 사용하는 방송사들은 제공받은 영상물을 제작한 방송사 로고 등을 모자이크 처리하거나 자신들의 방송사 로고 등을 덧씌우는 방법 등으로 제공받은 영상물의 출처를 가리는 경우가 흔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방송업계에 유·무상의 이용허락 등에 의한 적법한 영상 사용시에도 반드시 출처를 표시하는 관행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용허락시 명시적으로 출처표시를 조건으로 하였다는 등의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저작권자 등의 '이용허락에 따라' 영상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출처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그 이용허락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4) 따라서 피고 한국방송공사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결국 피고 한국방송공사의 피고4 영상물 1 내지 9의 제작 및 방송은 원고의 원고 영상물 1, 6, 7에 관한 이용허락에 따른 행위이므로, 피고 한국방송공사가 원고 영상물 1, 6, 7에 관한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 한국방송공사에 대한 청구 부분(피고4 영상물 1 내지 9 관련 청구 부분)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라. 저작권법 제28조 소정의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1) 판단 기준

가) 저작권법 제28조는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그 인용의 목적이 보도·비평·교육·연구에 한정된다고 볼 것은 아니지만, 인용의 '정당한 범위'는 인용저작물의 표현 형식상 피인용저작물이 보족, 부연, 예증,

46) 이하 편의상 [별지2] 목록 제4항 순번○번 영상물을 '피고4 영상물 ○'라고 줄이고, 이하 나머지 피고들의 영상물도 같은 방식으로 표기한다.

참고자료 등으로 이용되어 인용저작물에 대하여 부종적 성질을 가지는 관계(즉, 인용저작물이 주이고, 피인용저작물이 종인 관계)에 있다고 인정되어야 하고, 나아가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 것인지 여부'는 인용의 목적, 저작물의 성질, 인용된 내용과 분량, 피인용저작물을 수록한 방법과 형태, 독자의 일반적 관념, 원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다34839 판결의 취지 참조).[47]

나) 한편, 피고 문화방송의 주장과 같이, 저작권법 제28조의 문언 및 저작권법 벌칙 규정의 체계에 비추어 볼 때, 피인용저작물의 출처명시의무 이행을 저작권법 제28조 소정의 '공표 저작물의 인용'에 해당하기 위한 필수 요건이라고 볼 수는 없다.[48]

그러나 갑 제12호증, 을마 제3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저작권법은 제37조 제1항(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에서 저작권법 제28조에 따른 공표 저작물 인용시 그 출처를 명시할 의무를 부과하고, 제138조 제2호에서 위 의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②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의 목적으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인용하는 경우에도, 그 출처만큼은 표시하는 관행이 사회 일반에 상당 수준 정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공표된 저작물을 인용할 때 그 출처를 명시하였는지 여부는 저작권법 제28조 소정의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중요한 고려요소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출처를 명시하지 않은 채 영상저작물을 무단 사용한 경우, 출처를 명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피인용저작물의 출처가 불명인 경우 등)이 없는 한, 이는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 것이 아니라고 볼 여지가 크다고 할 것이다.

2) 판단

가) [별지2] 목록 각 항의 '유형 분류'란에 '공정 인용'이라고 기재된 각 영상물의 경우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부분 각 영상물의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들은 보도 또는 비평을 위하여, 공표된 저작물인 이 사건 각 저작영상물을 인용한 것인 점, ② 이 부분 각 영상물(인용저작물)과 피인용저작물(이 사건 각 저작영상물)의 각 분량, 피인용저작물은 A 및 B의 북한 찬양 논란 및 그에 대한 수사에 관한 뉴스 또는 시사프로그램인 이 부분 각 영상물의 보도 또는 비평의 대상 내지 재료로 사용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각 영상물은 피인용저작물

47) 자기의 저작물 중에 타인의 저작물을 종적 관계로 끌어들이는 '삽입(Insert)형' 인용 사례의 경우, 우리 대법원은 이른바 '주종관계설' 및 '종합고려설'에 따라 저작권법 제28조의 '공표 저작물의 인용'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48) 저작권법은 벌칙 규정과 관련하여 제136조에서 저작권침해죄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면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그 병과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한편, 출처명시의무위반죄에 대하여는 이와는 별도로 제138조 제2호에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별개의 규정으로 형량에 있어서도 큰 차이를 두고 있는 것은 출처명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바로 저작권침해가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며, 이는 결국 출처명시의무의 이행이 공표된 저작물 인용의 요건은 아니고,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함에 있어서 이용자에게 부과되는 의무에 해당할 뿐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에 비하여 양적, 질적으로 주된 것이고, 피인용저작물은 부종적 성격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③ 이 부분 각 영상물에는 그 출처 표시를 위하여 피인용저작물에 표시되어 있는 "주권방송", "채널615", "615TV" 등의 로고까지 그대로 인용되어 있는 등, 그 인용의 방법이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부분 각 영상물에서 원고 영상물을 인용한 정도가, 그 인용으로 말미암아 원저작물에 대한 시장수요를 대체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들이 이 부분 각 영상물을 제작·방송하면서 이 사건 각 저작영상물을 무단 사용한 행위는, 저작권법 제28조에서 정하고 있는 '공표된 저작물을 보도 등을 위해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저작권침해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부분 각 영상물에 관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별지2] 목록 각 항의 '유형 분류'란에 '부적절 인용'이라고 기재된 각 영상물(이하 '부적절 인용 영상물'이라 한다)의 경우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증거들을 종합하면, ① 이 부분 각 영상물의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들은 보도 또는 비평을 위하여, 공표된 저작물인 이 사건 각 저작영상물을 인용한 것이고, ② 이 부분 각 영상물(인용저작물)과 피인용저작물의 각 분량, 피인용저작물은 A 및 B의 북한 찬양 논란 및 그에 대한 수사에 관한 뉴스 또는 시사프로그램인 이 부분 각 영상물의 보도 또는 비평의 대상 내지 재료로 사용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각 영상물 중 피고1 영상물 100, 101[49]을 제외한 나머지 영상물은 피인용저작물에 비하여 양적, 질적으로 주된 것이고, 피인용저작물은 부종적 성격을 가진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앞서 본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앞서 본 사정들만으로는 피고들이 이 부분 각 영상물을 제작하면서 이 사건 각 저작영상물을 무단 사용한 행위가 저작권법 제28조에서 정하고 있는 공표된 저작물을 보도를 위해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각 영상물에 관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인용의 목적과 방법이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어야 한다. 따라서 보도나 비평 목적의 공표 저작물 인용의 경우에도 인용된 부분이 자신의 저작물이 아니라 타인의 저작물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비로소 그 '인용의 방법'이 공정한 관행에 합치된다고 볼 수 있

49) 피고1 영상물 100, 101은 피인용저작물과의 관계에서 '주종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즉, ① 피고1 영상물 100은 63초 분량의 시사프로그램(데스크 360 : A, 오늘 경찰 출석, "김구보다 38선 많이 넘어")인바, 그 제작시 원고 영상물 15를 51초 가량 사용하였으며, ② 피고1 영상물 101은 160초 분량의 시사프로그램(황금펀치 126회 : 〈황금포인트〉 A '평양 예찬')인바, 그 제작시 원고 영상물 3을 124초 가량 사용하였다. 피고1 영상물 100, 101은 A의 북한 찬양 논란 및 그에 대한 수사를 다룬 시사프로그램이고, 위 원고 영상물 3, 15는 그 비평의 대상 내지 재료로 사용되기는 하였으나, 피인용저작물인 위 각 원고 영상물 부분이 피고 조선방송의 위 각 영상물의 대부분을 차지하여, 인용된 위 각 원고 영상물 부분을 제외하면 나머지 부분은 그 존재 가치가 미미하게 될 정도이므로, 원고 영상물 3, 15(피인용저작물)가 피고 조선방송의 위 각 영상물(인용저작물)에 대하여 부종적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을 것이다. 그러나 이 부분 각 영상물의 경우 피인용저작물에 표시되어 있던 "주권방송", "615TV" 또는 "채널615"라는 로고 표시 부분을 의도적으로 삭제하는 방법으로 그 출처를 표시하지 않았는바, 이러한 인용 방법은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는 인용 방법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② 이 부분 각 영상물은 피고들이 운영하는 인터넷 웹사이트 서버에 저장되고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인터넷 웹사이트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된다는 점에서, 이 부분 각 영상물에서의 이 사건 각 저작영상물 인용은 큰 계속성과 파급력을 가지게 되므로, 피인용저작물의 출처를 명시할 당위성·필요성은 더욱 높다고 할 것이다.

다) [별지2] 목록 각 항의 '유형 분류'란에 '과다 인용'이라고 기재된 영상물(피고1 영상물 73, 80, 85)의 경우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증거들을 종합하면, ① 시사프로그램인 이 부분 각 영상물의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 조선방송은 시사 비평을 위하여, 공표된 저작물인 원고 영상물 8[(현장)B 교수 - 심장 속에 남는 사람], 원고 영상물 10[(현장)B 교수가 북녘의 딸들에게 보내는 편지]을 인용한 것인 점, ② B의 노래 또는 편지 낭독 영상물인 위 각 원고 영상물은, 시사프로그램인 이 부분 각 영상물에서 비평의 대상 내지 재료로 사용된 것인 점, ③ 이 부분 각 영상물에는 그 출처 표시를 위하여 피인용저작물에 표시되어 있는 "주권방송"이라는 로고까지 그대로 인용되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앞서 본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앞서 본 사정들만으로는 피고 조선방송이 이 부분 각 영상물을 제작하면서 원고 영상물 8, 10을 무단 사용한 행위가 저작권법 제28조에서 정하고 있는 공표된 저작물을 보도를 위해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각 영상물에 관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보도, 비평 등의 목적으로 공표된 저작물을 인용하는 경우, 그 인용의 정도에 있어서 피인용저작물을 지나치게 많이 인용하거나 전부 인용하여 원저작물에 대한 시장수요를 대체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른 경우, 이를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② 시사프로그램인 피고1 영상물 73(돌아온 저격수다 488회 - 경찰, B 소환...불응)의 경우, B의 친북 발언 등을 비판하면서 158초 분량의 원고 영상물 8[(현장)B 교수 - 심장 속에 남는 사람]을 2회에 걸쳐 128초 및 33초 가량 인용하여,[50] 피고1 영상물 73에 인용된 부분만 보아도 원저작물을 대부분 본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정도로 지나치게 많은 분량을 인용하였는바, 그 인용의 정도가 그 인용으로 말미암아 원저작물인 원고 영상물 8에 대한 시장수요를 대체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

50) 다만, 원고는 128초 사용에 관한 손해배상금만 청구하고 있다.

③ 시사프로그램인 피고1 영상물 80(돌아온 저격수다 489회 - B 경찰소환 또 불응)의 경우, B의 친북 발언 등을 비판하면서 158초 분량의 원고 영상물 8[(현장)B 교수 - 심장 속에 남는 사람]을 3회에 걸쳐 38초, 46초 및 69초 가량 인용하여 지나치게 많은 분량을 인용하였는바, 그 인용의 정도가 그 인용으로 말미암아 원저작물인 원고 영상물 8에 대한 시장수요를 대체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④ 시사프로그램인 피고1 영상물 85(돌아온 저격수다 490회 - 모국 짝사랑하다 배신당한 심정)의 경우, B의 친북 발언 등을 비판하면서 304초 분량의 원고 영상물 10[(현장)B 교수가 북녘의 딸들에게 보내는 편지]을 2회에 걸쳐 113초, 54초 가량 인용하여 지나치게 많은 분량을 인용하였는바, 그 인용의 정도가 그 인용으로 말미암아 원저작물인 원고 영상물 10에 대한 시장수요를 대체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마. [별지2] 목록 각 항의 '유형 분류'란에 '부적절 인용' 또는 '과다 인용'이라고 기재된 각 영상물(이하 '침해영상물'이라 한다)의 제작 및 방송이 저작권법 제35조의3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저작권법 제35조의3

저작권법 제35조의3은,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도 · 비평 · 교육 · 연구 등을 위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고, 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① 영리성 또는 비영리성 등 이용의 목적 및 성격, ②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③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④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위 조항은 저작권법이 2011. 12. 2. 법률 제11110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되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침해영상물은 기본적으로 보도나 비평을 위해 제작된 것이나, 피고들은 침해영상물과 관련하여 광고료를 받거나 타 방송사에 유료로 판매할 수 있게 되어 영리적 · 상업적 이용으로서의 성격도 있는 점, ② 침해영상물 제작시 이 사건 각 저작영상물의 인용은 영상 매체에 고정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된다는 점에서 매우 큰 계속성과 파급력을 가지게 되는 점, ③ 침해영상물 중 과다 인용 영상물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인용의 정도가 정당한 범위를 넘어 과다한 점, ④ 위 라.의 1)의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저작권법 제35조의3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할 때 그 출처를 명시하였는지 여부는 저작권법 제35조의3 소정의 '저작물의 공정 이용' 여부 판단시 중요한 고려사항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출처를 명시하지 않은 채 영상저작물을 무단 사용한 경우, 출처를 명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피인용저작물이 출처 불명인 경우 등)이 없는 한, 이는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거나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이용이라고 볼 여지가 클 것인데, 침해영상물 중 부적절 인용 영상물의 경우, 피고들은 부적절 인용 영상물 제작시

피인용저작물에 표시되어 있던 “주권방송”, “615TV” 또는 “채널615”라는 로고 표시 부분을 의도적으로 삭제하는 방법으로 그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들이 침해영상물을 제작하면서 원고의 이 사건 각 저작영상물을 무단 사용한 행위가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저작권법 제35조의3에서 정하고 있는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우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바. 소결론

1) 피고 한국방송공사의 경우

피고4 영상물 1 내지 9는 각 원고의 이용허락에 따라 제작된 것이고, 피고4 영상물 10은 원고의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는 원고 영상물 6을 무단 사용하여 제작된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 한국방송공사가 [별지2] 목록 제4항 기재 각 영상물을 제작·방송한 행위는 이 사건 각 영상물에 관한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피고 한국방송공사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나머지 피고들의 경우

가) 저작권침해 부정 부분

(1)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영상물 6, 7, 9, 11 내지 14, 20에 관한 원고의 창작적 기여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각 영상물이 원고에게 저작권이 인정되는 저작물임을 전제로 한 위 피고들(이하 피고 한국방송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을 ‘나머지 피고들’이라고만 한다)에 대한 각 청구 부분(별지2 목록 ‘유형 분류’란에 ‘저작물×’라고 기재된 각 영상물에 대한 청구 부분)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별지2] 목록 ‘유형 분류’란에 ‘공정 인용’이라고 기재된 각 영상물은 저작권법 제28조 소정의 ‘공표 저작물의 인용’에 해당하므로, 나머지 피고들의 위 영상물 제작은 적법한 것이 되고, 원고의 허락 없이 무상으로 그 인용된 부분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위 각 영상물 제작·방송과 관련한 청구 부분도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한편 원고는, 이 사건 각 영상물을 무단 사용한 피고들 각 영상물 제작이 저작권법 제28조에 의해 허용된다 하더라도, 저작권법 제50조, 제51조[51]에 따라 그 대가를 지급하여

51) **제50조(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 ① 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어도 공표된 저작물(외국인의 저작물을 제외한다)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어 그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보상금을 공탁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다.
제51조(공표된 저작물의 방송) 공표된 저작물을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방송하고자 하는 방송사업자가 그 저작재산권자와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보상금을 당해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거나 공탁하고 이를 방송할 수 있다.

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저작권법 제28조 또는 제35조의3에 해당하여 저작물의 인용이나 이용이 적법한 것이 되면, 무상으로 이를 인용할 수 있는 것이고, 이 경우 저작권법 제50조, 제51조는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저작권침해 인정 부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저작영상물은 원고의 창작적 기여가 인정되어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저작물이라고 할 수 있고, 이 사건 각 저작영상물을 무단 사용하여 [별지2] 목록 '유형 분류'란에 '과다 인용' 또는 '부적절 인용'이라고 기재된 각 영상물(침해영상물)을 제작·방송한 나머지 피고들의 행위는 원고의 이 사건 각 저작영상물에 관한 저작재산권(복제권, 공중송신권 등) 침해행위(이하 '이 사건 저작권침해행위'라고 한다)에 해당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저작영상물에는 원고를 표시하는 "주권방송", "615TV" 또는 "615채널" 등의 로고가 표시되어 있는 점, 나머지 피고들은 원고의 이 사건 각 영상저작물을 무단 사용하면서 이 사건 각 영상저작물에 표시된 위 각 로고를 삭제하고 사용한 점,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은 동종 업계의 경쟁관계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나머지 피고들에게 이 사건 저작권침해행위에 대한 고의 내지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이 사건 저작권침해행위로 인하여 나머지 피고들과 동종영업을 하는 원고가 영업상의 손해를 입었음은 사실상 추정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나머지 피고들은 고의 내지 과실로 이 사건 각 저작영상물에 관한 원고의 저작재산권(복제권, 공중송신권 등)을 침해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게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나머지 피고들은 각 원고에게 위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4. 손해배상의 범위

가. 원고의 주장

다른 방송사들이 영상저작물 이용료 명목으로 받는 금액 등을 고려하면, 나머지 피고들의 이 사건 저작권침해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액은, 피고들이 무단 사용한 원고 영상물의 분량을 기준으로 하여 30초 이내 사용시 80만 원, 이후 추가 10초당 10만 원(30초 이내 사용시 80만 원, 40초 이내 사용시 90만 원, 50초 이내 사용시 100만 원…)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보아야 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52]에 따라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52) **저작권법 제125조(손해배상의 청구)** ② 저작재산권자 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그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저작재산권자 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이라 함은 침해자가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았더라면 그 대가로서 지급하였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저작권자가 침해행위와 유사한 형태의 저작물 이용과 관련하여 저작물이용계약을 맺고 이용료를 받은 사례가 있는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용계약에서 정해진 이용료를 저작권자가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보아 이를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1. 11. 30. 선고 99다69631 판결,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다55593 판결의 취지 참조).

2) 인정사실

갑 제11, 15, 17 내지 19호증,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갑 제16호증의 각 음성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는 2015년경 소외 주식회사 제이티비씨(이하 '제이티비씨'라고 한다)를 상대로, '제이티비씨가 2014. 12. 12. 원고 영상물 13 중 9초 정도의 분량을 그 출처도 밝히지 않고 무단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민사조정신청을 하였는데, 위 조정절차에서 원고가 제이티비씨로부터 6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② 피고 조선방송은 30초당 50만 원, 추가 10초당 10만 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영상사용료를 지급받고 있다.

③ 피고 연합뉴스티브이는 방송(지상파, 종편)의 경우 3분 이하의 보도 영상은 33만 원, 단독 촬영 영상은 66만 원, 각 3분 초과시 시간에 구애 됨이 없이 위 금액의 2배를 영상사용료로 지급받고 있다.

④ 피고 와이티엔은, 소외 D가 2014. 12. 10. 익산시 신동성당에서 촬영한 동영상 중 6초 분량을 5회에 걸쳐 무단 사용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하여 D가 피고 와이티엔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15. 11. 23. '피고 와이티엔은 D에게 35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당사자들이 이의하지 않아 그 무렵 위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⑤ 소외 주식회사 에스비에스(이하 '에스비에스'라고 한다)는 미디어(인터넷방송 포함)의 경우 30초당 100만 원, 추가 10초당 10만 원의 기준으로 산정한 영상사용료를 지급받고 있다.

⑥ 피고 문화방송은 내부 사용의 경우 30초당 50만 원, 추가 10초당 10만 원, TV프로그램에 나가는 경우 30초당 100만 원, 추가 10초당 10만 원의 기준으로 산정한 영상사용료를 지급받고 있다.

3) 검토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위 원고 주장 금액이 '원고의 이 사건 각 저작영상물에 관한 저작권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원고 주장 금액을 이 사건 저작권침해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액으로 볼 수는 없다.

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4) 저작권법 제126조에 따른 손해액 산정

가) 다만 저작권법 제126조에 의하면, 법원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제125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과 더불어, 나머지 피고들이 이 사건 각 저작영상물을 무단 사용한 경위와 무단 사용의 정도, 원고가 이 사건 각 영상물 무단 이용과 관련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9초 가량의 무단 사용행위에 대하여 60만 원을 지급받기로 조정한 바 있는 점, 원고가 피고들을 비롯한 방송사업자들로부터 영상물을 구입할 경우 지불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 비용,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의 관계 및 그 사업규모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저작권침해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재산상 손해를, 나머지 피고들이 무단 사용한 원고 영상물의 분량을 기준으로 하여 30초 이내 사용시 50만 원, 이후 추가 10초당 10만 원으로 산정한다.[53]

나) 위 기준에 따라 산정한 피고들 각 영상물별 손해배상금액은 [별지2] 목록 각 항의 '인용액'란 기재와 같고, 피고별 손해배상금액은 [별지2] 목록 각 항의 '인용액'을 합한 금액이다. 따라서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피고 조선방송은 13,600,000원, 피고 채널에이는 10,200,000원, 피고 매일방송은 3,400,000원, 피고 문화방송은 4,500,000원, 피고 와이티엔은 3,500,000원, 피고 연합뉴스티브이는 6,9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저작권침해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5. 3. 6.부터 위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1. 2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한국방송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한국방송공사에 대한 청구 및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1〉 원고 영상 목록 생략

〈별지 2〉 피고별 인용 영상물 목록 및 청구액, 인용액 생략

53) 위 기준에 따라 원고 영상물의 사용분량별 손해배상액을 예시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사용분량	30초 이내	30초 초과 ~ 40초	40초 초과 ~ 50초	50초 초과 ~ 60초	60초 초과 ~ 70초
손해배상액	50만 원	60만 원	70만 원	80만 원	90만 원

제2장
정정 · 반론 · 추후보도청구

대전지방법원 2016. 7. 6. 선고 2015가합104743 판결(확정)

언론사 노조의 입장을 보도한 것은 단순한 의견표명으로서 정정보도의 대상이 아니다

- 원고 : 주식회사 대전일보사
- 피고 : 사단법인 한국기자협회

[사실관계]

피고는 2015년 2월 24일자, 3월 4일자, 6월 3일자 〈기자협회보〉 및 〈인터넷 기자협회보〉에 「대전일보 노조, "사측이 소송 취하 강요"」 및 「구성원과 불화하는 대전일보 경영진」, 「대전일보 '언론윤리' 두 얼굴」이라는 제하의 각 기사에서 원고 언론사 경영진이 노조원에게 부당행위를 요구하고, 기자의 업무 특성에 맞지 않는 근태관리 규칙을 정하는 등 노사갈등이 존재한다고 보도했다. 이에 원고는 위 보도내용이 명백히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며 정정보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심리 결과, 재판부는 원고가 정정보도를 구하는 부분이 노조 혹은 기자(원고 직원)의 단순한 의견표명을 인용한 것에 불과한바, 정정보도청구의 대상이 사실적 주장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고, 사실적 주장으로 인정된 보도내용도 중요 부분이 진실에 합치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으며, 이후 원고의 상소가 없어 판결이 확정됐다.

[판결요지]

□ **정정보도청구의 대상에 대한 판단**

언론중재법상 정정보도청구는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한 경우에 허용되므로 그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려면 원고가 정정보도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이 사건 기사가 사실적 주장에 관한 것인지 단순한 의견표명인지를 먼저 가려보아야 한다.

□ 근태관리에 대한 기자의 주장이나 노조의 비판이 사실적 주장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원고가 정정보도를 구하는 부분 중 결근처리 및 가처분취하 부분은 증거에 의하여 그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이다. 그 외 원고 소속 기자 인터뷰 및 노조 성명 등 나머지 부분은 노조 혹은 기자의 단순한 의견표명을 인용한 것에 불과하므로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이라고 볼 수 없다.

판결문

사 건	2015가합104743 정정보도
원 고	주식회사 대전일보사
피 고	사단법인 한국기자협회
변론종결	2016. 5. 25.
판결선고	2016. 7. 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고는 이 판결 확정 후 최초로 발행되는 주간지 '기자협회보' 제1면에,
   가. 별지1 기재 정정보도문을 2015. 6. 1.자 주간지 기자협회보 A 작성의 「대전일보 '언론윤리' 두 얼굴」 제목의 기사와 동일한 지면, 동일한 크기로 1회 게재하고,
   나. 별지2 기재 정정보도문을 2015. 3. 4.자 주간지 기자협회보 위 A 작성의 「구성원과 불화하는 대전일보 경영진」 제목의 기사와 동일한 지면, 동일한 크기로 1회 게재하라.
2. 피고는 이 판결 확정 후 제1항과 동시에,
   가. 한국기자협회 사이트(http://www.journalist.or.kr) 초기화면의 기자협회보 부문 첫 부분에 별지 1 정정보도문 중 제목란 기재 제목을 「대전일보 '언론윤리' 두 얼굴」(http://www.journalist.or.kr/news/article.html?no=36635)의 기사 제목과 같은 크기로 하여 □안에 표시하고, 위 정정보도문 제목을 클릭하면 별지1 정정보도문 중 내용란 기재 내용을 표시되도록 하여 이를 72시간 동안 게재하며, 이후로는 기사 DB에 이를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하고, 「대전일보 '언

론윤리' 두 얼굴」(http://www.journalist.or.kr/news/article.html?no=36635)의 제목을 클릭하면 별지1 기재 정정보도문 제목과 내용이 표시되도록 하며,

나. 한국기자협회 사이트(http://www.journalist.or.kr) 초기화면의 기자협회보 부문 첫 부분에 별지2 정정보도문 중 제목란 기재 제목을 「구성원과 불화하는 대전일보 경영진」(http://www.journalist.or.kr/news/article.html?no=35901)의 기사 제목과 같은 크기로 하여 □안에 표시하고, 위 정정보도문 제목을 클릭하면 별지2 정정보도문 중 내용란 기재 내용을 표시되도록 하여 이를 72시간 동안 게재하며, 이후로는 기사 DB에 이를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하고, 「구성원과 불화하는 대전일보 경영진」(http://www.journalist.or.kr/news/article.html?no=35901)의 제목을 클릭하면 별지2 기재 정정보도문 제목과 내용이 표시되도록 하며,

다. 한국기자협회 사이트(http://www.journalist.or.kr) 초기화면의 기자협회보 부문 첫 부분에 별지3 정정보도문 중 제목란 기재 제목을 「대전일보 노조, "사측이 소송취하강요"」(http://www.journalist.or.kr/news/article.html?no=35812)의 기사 제목과 같은 크기로 하여 □안에 표시하고, 위 정정보도문 제목을 클릭하면 별지3 정정보도문 중 내용란 기재 내용을 표시되도록 하여 이를 72시간 동안 게재하며, 이후로는 기사 DB에 이를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하고, 「대전일보 노조, "사측이 소송취하강요"」(http://www.journalist.or.kr/news/article.html?no=35812)의 제목을 클릭하면 별지3 기재 정정보도문 제목과 내용이 표시되도록 하며,

라. 피고와 계약한 모든 포털사에 별지1 내지 3 기재 정정보도문을 전송하여 각 포털을 통해 검색되도록 하라.

3. 피고가 제1, 2항 기간 안에 제1, 2항 기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그 이행 완료일까지 매일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신문의 발행 및 판매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주간지 기자협회보를 발행하고,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journalist.or.kr)를 운영하는 언론사이다.

나. 이 사건 각 기사

1) 피고는 2015. 6. 3.자 기자협회보 1면 및 인터넷 홈페이지 기자협회보에 각 「대전일보 '언론윤리' 두 얼굴」이라는 제목으로 피고 소속 A 기자가 작성한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기사(이하 '2015. 6. 3.자 기사'라 한다, 별지4 참조)를 게재하였다.

2015. 6. 3.자 기사

대전일보 한 직원은 지난달 29일 출장을 가기 위해 새벽 4시에 회사로 출근했다. 곧바로 출장지로 향하지 않고 왜 회사를 찾았을까. 회사에 설치된 리더기를 찍지 않으면 결근 처리가 되기 때문이다.
노조에 따르면 대전일보는 지난 1일부터 일주일 단위로 근태기록을 공지한다. 결근하거나 10분 이상 지각한 직원에게 소명을 받고 사유가 불충분할 경우 경위서 제출, 3회 이상 경위서 제출자는 징계위에 회부할 방침이다.
대전일보 한 기자는 "기자의 업무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정시 출근은 다른 언론사에서 찾아보기 힘들다"면서 "긴급한 취재가 있어도 회사에 들러 출근 도장부터 찍어야 하는 황당한 상황이 발생한다"고 했다.
대전일보는 지난 5월말 자연휴양림, 수목원 등 충청의 힐링숲 50여 곳을 선정해 화보집으로 소개하는 책자를 발간할 계획이라며 사진 및 기사 자료를 요청하는 공문을 주요 관공서에 보냈다.
자사 기자들의 콘텐츠가 아니라 관청 자료에 의존해 만든 화보집의 가격은 권당 20만 원. 더구나 대전일보는 화보집에 들어갈 광고 게재를 주요 관공서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일보 노조는 지난달 31일 낸 성명에서 "출입처에 만든 자료로 만든 책을 다시 기자들을 시켜 출입처에 강매하는 행태를 저지를 것이 뻔하다"면서 "기자의 자존감을 밑바닥까지 추락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일련의 상황에 대해 대전일보 사측 관계자는 "노조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2) 피고는 2015. 3. 4.자 기자협회보 5면 및 인터넷 홈페이지 기자협회보에 「구성원과 불화하는 대전일보 경영진」이라는 제목으로 피고 소속 A 기자가 작성한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기사(이하 '2015. 3. 4.자 기사'라 한다, 별지5 참조)를 게재하였다.

2015. 3. 4.자 기사

지난달 24일 노조 성명에 따르면 경영진은 가처분 신청에 동참한 신입 조합원을 불러 미리 작성한 취하 신청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했고, 결국 이 조합원은 취하서를 제출했다. 노조는 "정당한 권리행사를 깡그리 무시한 채 압력을 행했다"고 비판했다

3) 피고는 2015. 2. 24. 인터넷 홈페이지 기자협회보에 「대전일보 노조, "사측이 소송 취하 강요"」라는 제목으로 피고 소속 A 기자가 작성한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기사(이하 '2015. 2. 24.자 기사'라 한다, 별지6 참조, 이하 위 각 기사를 합하여 '이 사건 각 기사'라고 한다)를 게재하였다.

2015. 2. 24.자 기사

노조는 이날 성명에서 “우리를 분노케 하는 것은 기조실이 취하 신청서를 미리 작성해 해당 조합원에게 서명을 강요한 것도 모자라 본인에게 직접 법원을 방문해 취하할 것을 지시하는 등 정당한 권리행사를 깡그리 무시한 채 압력을 행한 데 있다”며 “해당 조합원이 취하 신청서 제출을 망설이자 직접 법원에 차로 데려다주는 친절까지 베풀었다”고 밝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가 이 사건 각 기사를 통하여 보도한 내용 중 아래 [표1] 나.항 기재 부분은 명백히 객관적 진실에 반한다. 피고는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원고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이 사건 각 기사에 대해 정정보도를 구한다.

[표1: 원고가 정정보도를 구하는 부분]

순번	가. 보도일자	나. 원고가 정정보도를 구하는 부분
1	2015. 6. 3.	㉠ 대전일보 한 직원은 지난달 29일 출장을 가기 위해 새벽 4시에 회사로 출근했다. 곧바로 출장지로 향하지 않고 왜 회사를 찾았을까. 회사에 설치된 리더기를 찍지 않으면 결근 처리가 되기 때문이다.
		㉡ 대전일보 한 기자는 “기자의 업무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정시 출근은 다른 언론사에서 찾아보기 힘들다”면서 “긴급한 취재가 있어도 회사에 들러 출근 도장부터 찍어야 하는 황당한 상황이 발생한다”고 했다.
		㉢ 대전일보 노조는 지난달 31일 낸 성명에서 “출입처에 만든 자료로 만든 책을 다시 기자들을 시켜 출입처에 강매하는 행태를 저지를 것이 뻔하다”면서 “기자의 자존감을 밑바닥까지 추락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2	2015. 2. 24. 2015. 3. 4.	㉠ 노조 성명에 따르면 경영진은 가처분 신청에 동참한 신입 조합원을 불러 미리 작성한 취하 신청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했고, 결국 이 조합원은 취하서를 제출했다.
		㉡ 노조는 “정당한 권리행사를 깡그리 무시한 채 압력을 행했다”고 비판했다.

나. 피고는 청구취지 제1, 2항 기재와 같이 정정보도문을 게재하고, 이를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아울러 청구취지 제3항을 통하여 위 각 의무에 관한 간접강제도 구하고 있다).

3. 판 단

가. 관련 법리

1) 언론중재법 제14조 제1항[54]은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 등이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해당 언론사에 그 언론보도 등의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언론중재법상 정정보도청구는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한 경우에 허용되므로 그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려면 원고가 정정보도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이 사건 기사가 사실적 주장에 관한 것인지 단순한 의견표명인지를 먼저 가려보아야 한다. 여기에서 사실적 주장이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명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증거에 의하여 그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을 말한다. 이러한 개념이 반드시 명확한 것은 아니다. 언론보도는 대개 사실적 주장과 의견표명이 혼재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구별기준 자체가 일의적이라고 할 수 없고, 양자를 구별할 때에는 당해 원보도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구독자가 보통의 주의로 원보도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방법뿐만 아니라 당해 원보도가 게재한 문맥의 보다 넓은 의미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및 시청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한편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 등의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피해자는 그 언론보도 등이 진실하지 아니하다는 데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11. 9. 2. 선고 2009다5264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3) 또한 언론보도의 진실성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고, 복잡한 사실관계를 알기 쉽게 단순하게 만드는 과정에서 일부 특정한 사실관계를 압축, 강조하거나 대중의 흥미를 끌기 위하여 실제 사실관계에 장식을 가하는 과정에서 다소의 수사적 과장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아 보도내용의 중요부분이 진실에 합치한다면 그 보도의 진실성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275 판결 참조).

나. 원고가 정정보도를 구하는 부분이 사실적 주장에 관한 것인지 여부

1) 원고가 정정보도를 구하는 부분 중 [표1] 순번 1.㉠ (결근처리), 순번 2.㉠ (가처분취하) 부분은 증거에 의하여 그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이다.

2) 그 외 나머지 부분은 노조 혹은 기자의 단순한 의견표명을 인용한 것에 불과하므로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이라고 볼 수 없다.

---

54)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정정보도 청구의 요건) ①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등이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해당 언론보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언론사,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및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이하 "언론사등"이라 한다)에게 그 언론보도등의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언론보도등이 있은 후 6개월이 지났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청구에는 언론사등의 고의 · 과실이나 위법성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다. 적시된 사실이 진실하지 않은 것인지 여부

1) [표1] 순번 1.㉠ (결근처리) 부분에 대해 본다. 갑 제 1,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아래 각 사실과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는 2015. 6. 1.부터 출근체크기를 각 출입구에 설치하여 운영하였고, 2015. 6. 3.자 기사의 주요 내용은 원고가 2015. 6. 1.부터 출근체크기를 운영하여 직원들의 출근시간을 관리한다는 것이다.

② 대전일보 직원이 2015. 5. 29. 새벽 4시에 회사로 출근한 사례를 기재한 이유는 위 주요 내용에 대하여 대중의 흥미를 끌기 위하여 실제 사실관계에 장식을 가한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는 2015. 6. 3.자 기사 말미에 "대전일보 사측관계자는 '노조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라고 기재하였다.

2) [표1] 순번 2.㉠ (가처분취하) 부분에 대해 본다.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아래 각 사실과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는 편집국 직원이던 B를 2015. 2. 1. 총무과로 전보발령하였다. 총무과 직원은 노동조합 가입이 제한되므로 B는 노동조합원의 신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존 부서로 돌려보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② B는 위 전보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 법원에 전보발령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을 제출하였다가 얼마 후 취하하였다. 이 과정에서 원고의 C 부장이 인터넷에서 취하신청서 양식을 내려받아 제공하였고, 법원까지 데려다 주었다.

③ 강요라는 표현은 2015. 2. 24.자 노조의 성명을 그대로 인용한 것일 뿐, 피고는 2015. 3. 4.자 기사에서 요구라는 표현을 사용한 사실이 있다.

3) 이러한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각 기사는 세부에 있어 다소 과장된 표현이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아 보도내용의 중요부분이 진실에 합치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 각 기사는 허위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기사의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소결

이 사건 각 기사의 내용이 진실하지 않다는 것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1~3〉 요구하는 정정보도문 생략
〈별지 4~6〉 대상기사 생략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11. 11. 선고 2015가합2270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7. 22. 선고 2015나2070097 판결(확정)

정부의 업무수행에 관한 비판과 의혹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기재한 '실체가 모호'하다는 표현은 수사적 과장에 불과하다

- 원고(항 소 인) : 보건복지부
- 피고(피항소인) : 한겨레신문 주식회사

[사실관계]

원고는 2015년 3월 4일 「한국 보건의료, 제약 및 의료기관 사우디 진출 합의」 제하의 보도자료를 통해 대통령 중동순방을 계기로 한-사우디 제약기업 간 수출계약이 구체화됐다고 공표했다. 피고는 같은 달 5일자 및 10일자, 12일자 〈한겨레〉 및 〈인터넷 한겨레〉에 「'500억 수출 성과' 구체적 근거 없어」 및 「'2천억 수출 계약' 상대 사우디 제약사 '실체 모호'」, 「박대통령 순방 성과에 등장한 사우디 제약사, 국내업체, 항암제사업 손잡았다 올초 '중단'」이라는 제목으로 원고가 발표한 사우디 의약품 수출 성과액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 근거가 없고, 계약상대방인 사우디 제약사의 실체가 불분명하다는 취지로 각 보도했다. 이에 원고는 위 보도내용이 허위이고, MOU의 특성상 추정치를 발표하였을 뿐이라며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심리 결과, 1심 법원은 이 사건 보도가 원고의 보도자료를 통한 섣부른 홍보를 비판하고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서 의견표명에 해당한다고 보아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원고가 항소했으나 2심 법원 역시 같은 이유로 항소 기각했으며, 설사 사실의 적시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보도는 정부 또는 국가기관의 업무수행에 관한 사항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것인바,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지 않으므로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다고 설시했다. 이후 대법원도 원고의 상고를 기각해 위 판결이 확정됐다(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다243412 판결).

[판결요지]

□ **정부 또는 국가기관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보도내용의 위법성에 대한 판단**

정부 또는 국가기관의 정책결정이나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은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정부 또는 국가기관의 정책결정 또는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언론보도로 인하여 정부 또는 국가기관의 사회적 평가가 다소 저하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보도의 내용이 정부 또는 국가기관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 한, 그 보도로 인하여 곧바로 정부 또는 국가기관에 대한 명예훼손이 된다고 할 수 없다.

1심 판결문

사　　건　2015가합2270　정정보도
원　　고　보건복지부
피　　고　한겨레신문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5. 10. 14.
판결선고　2015. 11.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고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일 이내에,
   가. 한겨레신문 제1면에 별지1 기재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은 별지2-1 기재 기사 제목 "'500억 수출 성과' 구체적 근거 없어"의 글자크기 및 활자체와 동일하게, 본문은 위 기사 본문의 글자크기 및 활자체와 동일하게 하고,
   나. 피고의 인터넷 홈페이지 한겨레신문(http://www.hani.co.kr/) 메인 초기화면 및 사회일반 면의 각 기사목록 첫 부분에 별지1 기재 정정 및 반론보도문 중 제목란 기재 제목을 별지2-2 기재 기사(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81380.html)의 제목 중 〈정부 "사우디에 의약 수출 계약" 발표〉 부분과 같은 크기로 하여 [ ] 안에 표시하고, 위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목을 클릭하면 위 정정 및 반론보도문의 제목 및 본문이 표시되도록 하되, 제목은 별지2-2 기재 기사 제목 "'500억 수출 성과' 구체적 근거 없어"의 글자크기 및 활자체와 동일하게, 본문은 위 기사 본문의 글자크기 및 활자체와 동일하게 하여 이를 3일 동안 게재하며, 이후에는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이를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하고, 위 게재 기간 경과 후에도 별지2-2 기재 기사, 별지3-2 기재 기사(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81551.html), 별지4-2 기재 기사(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81893.html)의 각 본문 하단에 제목은 별지2-2 기재 기사 제목 "'500억 수출 성과' 구체적 근거 없어"의 글자크기 및 활자체와 동일하게, 본문은 위 기사 본문의 글자크기 및 활자체와 동일하게 하여 위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게재하라.

2. 피고가 위 각 의무를 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그 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이행 완료일까지 1일 1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국민 보건에 관한 사무와 사회복지 증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우리나라 보건의료 해외 진출에 관한 주무부처이고, 피고는 일간신문인 한겨레신문과 아울러 인터넷신문(http://www.hani.co.kr/)을 발행·배포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의 2015. 3. 4.자 보도자료의 배포

원고는 2015. 3. 4. "한국 보건의료, 제약 및 의료기관 사우디[55] 진출 합의"라는 제목의 보도자료(이하 '이 사건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 대통령 중동순방 계기에 사우디를 방문 중인 한국의 민·관 합동 대표단(보건복지부, 의료기관 및 제약기업 등)은 사우디 보건부, 민간 기업 등과 잇따른 정부 간(G2G) 및 민간 간(B2B) 회담을 통해, 보건의료·제약 플랜트·의료기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우디와 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하는 성과를 올렸다.

□ 제약분야 사우디 진출 성과는 3. 3.(화) SPC[56]社에서 열린 한-사우디 제약기업 간에 향후 5년간 약 2천억 원 규모의 '플랜트(plant) MOU와 의약품 수출계약'에서 구체화되었다.

○ 이 자리에서 △△홀딩스[57]는 향후 5년간 항생제, 수액제 등 4품목, □□제약은 진통제, 고혈압제제, 결핵치료제 등 기술이전 및 완제의약품 등 사우디 SPC社를 통해 수출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 특히 △△홀딩스는 사우디 수다이르(Sudair)지역에 설립예정인 한국 특화 제약단지 내에 수액공장을 턴키(Turn Key) 방식으로 설립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MOU를 체결하여 향후 우리 제약산업이 본격적으로 MENA[58]지역 시장을 개척하는 길을 열게 되었다.

○ 이와는 별도로 ××제약은 항암제 8개 품목, ○○○은 항암제 4개 품목 등에 대한 기술이전 및 수출 MOU를 SPC社와 체결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이후 제약 플랜트 또는 의약품 수출에 관한 세부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중동순방에서 사우디에서 얻은 성과는 '12년부터 시작된 한-사우디 보건부 간 협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라고 밝히면서

○ "보건의료 세계화·미래화의 지속적인 성공사례 창출을 위해 정부도 최선을 다할 것이며 정부와 보건의료계 모두 각자 위치에서 맡은 바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면, 70년대 중동 붐에 이어, 21세기에는 한국 보건의료가 제2의 중동 붐을 견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

55) "사우디아라비아"의 약칭이다. 이하 약칭으로만 표기한다.
56) Sudair Pharmaceutical Company의 약칭이다. 이하 약칭으로만 표기한다.
57) 이하 국내 제약업체를 표기함에 있어 '주식회사'의 기재는 모두 생략한다.
58) Middle East and North Africa의 약칭으로서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을 가리킨다.

다. 피고의 이 사건 각 기사의 게재

피고 소속의 기자 A는 2015. 3. 9. "'500억 수출 성과' 구체적 근거 없어"라는 제목으로, 원고가 발표한 사우디 의약품 수출 성과액 2,000억 원이 그 산정에 관한 구체적 근거가 없다는 취지의 별지2-1 기재 기사(이하 '이 사건 제1 기사')를 작성하였고, 피고는 이를 한겨레신문에 게재한 뒤 같은 내용의 기사(별지2-2 기재 기사)를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게재하였다.

A는 이어서 다음날인 3. 10. "'2천억 수출 계약' 상대 사우디 제약사 '실체 모호'"라는 제목으로, 이 사건 보도자료에 나타난 사우디 제약업체인 SPC사의 실체가 불분명하다는 취지의 별지3-1 기재 기사(이하 '이 사건 제2 기사')를 작성하였고, 피고는 이를 한겨레신문에 게재한 뒤 같은 내용의 기사(별지3-2 기재 기사)를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게재하였다.

A는 3. 12.에도 "박대통령 순방 성과에 등장한 사우디 제약사, 국내업체, 항암제사업 손잡았다 올초 '중단'"이라는 제목으로 별지4-1 기재 기사(이하 '이 사건 제3 기사')를 작성하였고, 피고는 이를 한겨레신문에 게재한 다음 그 내용이 약간 수정된 별지4-2 기재 기사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 2, 3 기사를 통틀어 '이 사건 각 기사').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1 내지 2-3, 을 1-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이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기사에 대하여 별지1 기재와 같은 정정 및 반론보도를 구한다.

가. 정정보도청구 부분

피고는 이 사건 각 기사를 통하여 ① "정부는 국내 제약사가 사우디 쪽과 500억 원 규모의 의약품 수출계약을 체결하여 수출 성과를 올렸다고 발표했으나 의약품 수출 예상액 500억 원은 정부가 구체적 근거도 없이 막연히 꾸며낸 수치로 드러났다"(이 사건 제1 기사)는 구체적 사실 및 ② "'2,000억 원대 사우디 의료수출'과 관련해 정부가 국내 제약업체한테 소개한 사우디 제약사인 SPC사의 실체가 모호하다"(이 사건 제2, 3 각 기사)는 구체적 사실을 각 적시하였다.

그러나 ① SPC사와 계약 내지 양해각서(이하 'MOU')를 체결하기 위해 사우디에 정부 관계자들과 동행한 제약회사의 고위 관계자가 "체결된 계약 내용에 따르면 의약품을 최소 500억 원 이상 수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원고에게 직접 이야기하여 주었고, ② SPC사는 사우디에 근거를 두고 제약단지 건설 등을 목표로 2014년에 설립된 유한책임회사로 빈라덴 그룹 산하 보건의료사업을 담당하는 HDH[59]사의 자회사이므로, 피고의 위 각 적시사실은 모두 허위이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피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별지1 중간 부분 기재와 같은 내용의 정정보도를 할 의무를 부담한다.

---

59) Healthcare Development Holding의 약칭이다. 이하 약칭으로만 표기한다.

나. 반론보도청구 부분

피고는 이 사건 각 기사를 통하여 ㉠ “대통령 중동 순방의 주요 성과로 소개된 2,000억 원 규모의 보건의료분야 사우디 진출 실적은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취지 및 ㉡ “정부가 제약 분야의 사우디 진출 소식을 대통령 순방 일정에 끼워 맞추기 위하여 현지 업체에 대한 기초적인 검증도 하지 않고 국내 제약업체의 의약품 수출계약 상대로 주선하였다”는 취지의 사실적 주장에 관한 보도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 대한민국과 사우디 사이의 수액공장 MOU 및 의약품 수출계약의 규모는 약 2,000억 원으로서 이는 국내 제약회사인 △△홀딩스의 공시 내용과 국내 제약업계의 자체 추정치에 근거한 것인데, 원고로서는 구체적인 계약금액을 산출하기 어렵다는 MOU의 특성 및 국내 제약사들과 SPC사 간에 체결한 비밀유지의무조항 때문에 추정치를 발표하였을 뿐이며, ㉡ 대한민국과 사우디 사이의 제약단지 구축사업은 2013. 11.부터 협의를 시작해서 국내 제약회사와 SPC사 사이의 지속적인 협의 및 현지 시찰 등을 통해 계약 또는 MOU 체결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원고는 그 과정에서 사우디 측과 지속적으로 실무 회의, 면담 등을 하고 사우디 제약사에 대한 조사를 하여 국내 제약사들에 제공하였던 것이므로, 원고는 위 각 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별지1 아랫부분 기재와 같은 내용의 반론보도를 할 의무를 부담한다.

3. 판 단

가. 인정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8-1, 8-2, 11 내지 16, 22, 26, 을 2-1, 2-2, 2-3, 5, 7, 8-1, 8-2의 각 기재 및 B, A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수액공장 MOU 및 의약품 수출계약의 체결과 이 사건 보도자료의 배포

가) 국내 제약업체인 △△홀딩스, □□제약, ××제약, ○○○은 2015. 3. 1.부터 3. 9.까지 사이에 이루어진 대통령의 중동 지역 순방에 동행하여 3. 3. 사우디 리야드에서, SPC사와 사이에 △△홀딩스는 수액공장 건설에 관한 MOU, ××제약, ○○○은 항암제 기술이전 및 수출에 관한 MOU를 각 체결하고, □□제약은 사우디 제약사인 알 오술(Al Osool)사와 사이에 의약품 수출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홀딩스 관계자는 MOU 체결 직후 대통령 중동 순방에 동행한 원고 소속 해외의료진출지원과 과장 B에게 그 규모가 약 1,500억 원이 될 것이라고 전달하였고, □□제약 관계자도 위 수출계약 체결 직후 B에게 수출 규모가 약 500억 원이 될 것이라고 전달하였으나, ××제약과 ○○○은 금액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전달하면서 MOU상의 금액을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홀딩스 및 □□제약 관계

자는 위 수치를 모두 구두로만 전달하였고, 달리 근거가 될 만한 서면 등을 제시하지는 아니하였다. 그리고 B가 위 계약 체결 현장에 입회하거나 □□제약의 계약서를 확인한 적은 없다.

다) 원고는 △△홀딩스와 □□제약 관계자들로부터 전달받은 위 금액을 근거로 이 사건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배포하였다.

2) A의 취재 경과

가) A는 이 사건 보도자료가 배포된 직후 위 해외의료진출지원과 사무관 C에게 전화를 걸어 SPC사에 관하여 질문한 결과 "현지 제약회사인데, 그 쪽에서 가장 큰 회사"라는 답변을 들었다.

나) 이에 A가 원고 측에 SPC사에 관한 자료 제공을 요구하자, 같은 과 주무관 D가 전화를 하여 "회사 이름은 수데어파마수티컬 컴퍼니이며, 기존에 이스태블리쉬된 회사는 아니고 사우디에서 새롭게 제약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만들어진 회사로 이해하면 될 것 같다"는 취지로 설명하였다.

다) A는 다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SPC사에 관하여 문의하였으나, "SPC사는 공사의 해외 고객사에 등록되어 있지 않고, 전 세계 기업 검색 사이트인 콤파스(Kompass)나 후버스(Hoovers)에도 등록되어 있지 않다"는 답변을 받았다.

라) 이후 A의 SPC사에 관한 문의에 대하여, △△홀딩스 관계자는 처음에는 사우디 국영 또는 공영 업체로 알고 있다고 답변하였다가 사우디 정부의 출자를 받아 설립된 제약회사라고 정정하였고, ○○○ 관계자는 처음에는 컨소시엄 형태의 페이퍼컴퍼니라고 답변하였다가 홀딩스, 즉 지주회사 개념이라고 정정하였다.

마) 한편 A는 3. 5. 사우디에 있던 B에게 전화를 걸어 이 사건 보도자료에 관하여 문의하였다. 이에 B는 먼저 MOU 및 의약품 수출계약의 규모에 관하여 수액공장 MOU가 1,500억 원, 의약품 수출계약이 500억 원으로서, 이는 제약회사에서 구두로 설명받은 내용이라고 답변하였다. B는 또한 SPC사의 실체에 관하여 신설기업으로서 빈라덴 그룹에서 투자를 받는다는 취지로 설명하면서, 다만 사우디 정부의 문서화된 보증은 없다고 말하였다. 한편 B는 위 통화 과정에서 A에게 이 사건 보도자료 중 △△홀딩스가 의약품 수출계약을 체결했다는 취지로 작성된 부분은 오류라고 이야기하였다.

바) B는 이 사건 제1 기사 보도 후인 3. 9. 13:30경 A에게 SPC사의 실체에 관하여 "사우디는 항암제의 80~9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에, 5명의 암 연구자가 모여 항암제를 직접 생산하려고 만든 회사가 SPC사이다"라는 취지로 설명하였다. 이에 A는 B에게 SPC사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주구성, 고용현황, 매출액 등이 포함된 문서화된 자료를 요청하여 20:00경 SPC사를 소개하는 내용의 안내자료(을 5)를 송부받았는데, 위 자료에는 A가 요구한 사항들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사) A는 3. 11. E 기자를 통하여 HDH사에 메일을 보내 SPC사가 HDH사의 자회사라는

회신을 받았다.

3) △△홀딩스의 MOU 체결 공시 및 SPC사의 설립 및 자회사 편입 과정

△△홀딩스는 3. 4. 09:32경 "사우디 SPC사와의 턴키 방식 수액 플랜트 수출 MOU 체결의 건"이라는 제목으로, SPC사는 수액공장 건설 및 수액 제조기술 이전 등의 대가로 △△홀딩스에 미화 1억 5,000만 달러[60]를 분할 지급하되, 현지 규정과 법률에 따라 비용 및 지불방식은 추후 협의하기로 하였으며, MOU 체결 후 60일 이내에 플랜트 구축기간 동안 현지에 제품 공급을 하기 위한 공급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는 내용을 공시하였다(갑 22). 한편 SPC사는 2013년 항암제 생산 등 제약공장을 건설하기 위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2014년 HDH사(사우디의 대규모 건설회사인 빈라덴 그룹의 자회사로서 2008. 11. 설립된 회사이다)의 자회사로 편입되었다.

나. 관련 법리

정정보도청구는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한 경우에 허용되므로 그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려면 원고가 정정보도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원보도가 사실적 주장에 관한 것인지 단순한 의견표명인지를 먼저 가려보아야 한다. 여기에서 사실적 주장이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명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증거에 의하여 그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을 말한다. 이러한 개념이 반드시 명확한 것은 아니다. 언론보도는 대개 사실적 주장과 의견표명이 혼재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그 구별기준 자체가 일의적이라고 할 수 없고, 양자를 구별할 때에는 당해 원보도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독자가 보통의 주의로 원보도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방법뿐만 아니라 당해 원보도가 게재한 문맥의 보다 넓은 의미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및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9. 2. 선고 2009다5264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한편 반론보도 역시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를 전제로 하는바, 반론보도 사건에서 사실적 주장과 의견의 표명을 구별하는 척도로서는, 그것이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하고 명확하며 역사성이 있는 것으로서 외부적으로 인식 가능한 과정이나 상태를 포함하여 원보도의 보도 대상이 된 행위자의 동기, 목적, 심리상태 등이 외부로 표출된 것이라면 이를 사실적 주장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추상적 판단 기준 자체도 언제나 명확한 것은 아니며, 사실적 주장과 논평 등이 혼재하는 형식으로 보도되는 것이 보통이므로, 그 판단 기준 자체도 일의적이라고 할 수 없고, 당해 원보도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독자가 보통의 주의로 원보도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 방법뿐만 아니라, 당해 원보도가 게재한 보다 넓은 문맥이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및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원보도가 사실적 주장인지, 의견표명인지는 원보

60) 환율을 1달러당 1,000원으로 보면 1,500억 원이 된다.

도와 이에 대하여 게재를 구하는 반론보도문의 비교를 통하여 확인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으며, 원보도와 반론보도문이 서로 다른 구체적인 경과를 알리거나 상황을 묘사하는 내용의 것이라면 원보도도 일응 사실적 주장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나, 반론보도문의 내용이 새로운 사정을 알리려는 것이 아니라 단지 원보도를 재구성하는 것이라면 그 원보도는 의견의 표명에 그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2다49040 판결 등 참조).

다. 정정보도청구에 관하여

1) 원고 주장 적시사실 ① 부분

피고가 이 사건 제1 기사에서 원고의 주장과 같이 "대통령 중동 순방의 주요 성과로 소개된 보건 · 의료 분야 사우디아라비아 진출 실적은 구체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의약품 수출 예상액 500억 원은 정부가 구체적 근거도 없이 막연히 꾸며낸 수치로 드러났다"고 표현하였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 부분 기사의 게재 경위와 그 기사 자체의 전체적인 인상으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원고 측이 이 사건 보도자료에 기재한 2,000억 원이라는 수치는 △△홀딩스의 수액공장 MOU상의 1,500억 원과 □□제약의 의약품 수출계약상의 500억 원으로 구성된 점, ㉯ 원고 측은 □□제약의 관계자로부터 의약품 수출 규모가 500억 원 정도가 될 것이라는 내용을 구두로만 전달받아 이 사건 보도자료에 반영하였을 뿐 구체적인 근거 서류를 제시받지는 아니한 점, ㉰ A는 취재 과정에서 B로부터 위와 같은 경위로 이 사건 보도자료가 작성되었음을 충분히 확인한 점, ㉱ 피고는 이 사건 제1 기사 말미에 "사우디를 함께 방문한 제약사들한테 '의약품을 수출하게 되면 그 정도(500억 원) 규모는 될 것'이라는 말을 듣고 발표한 것"이라는 원고 측 관계자의 설명을 기재하여 원고가 정정보도를 구하는 취지의 내용을 이미 보도 당시에 밝히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표현은 500억 원이라는 큰 규모의 수치를 계약서와 같은 서면에 의한 근거 없이 □□제약 관계자의 말만 듣고 섣불리 이 사건 보도자료에 반영하여 홍보하는 것을 비판하기 위한 취지로서, 이는 곧 의견표명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표현은 정정보도의 대상이 되는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관련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원고 주장 적시사실 ② 부분

피고가 이 사건 제2, 3 각 기사에서 "'2천억 수출 계약' 상대 사우디 제약사 '실체 모호'"라고 표현하였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 부분 기사의 게재 경위와 그 기사 자체의 전체적인 인상으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SPC사는 2013년 설립된 신생 회사로서 2014년에서야 HDH사의 자회사로 편입된 점, ㉯ A는 SPC사에 관하여 취재하면서 원고 소속 관계자들은 물론 제약회사 관계자들로부터도 각기 다른 내용의 설명을 들은 점, ㉰ SPC사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해외 고객사로 등록되어 있지 않고, 전 세계 기업정보망인 콤파

스나 후버스에서도 검색이 되지 아니하는 회사인 점, ㉑ B가 3. 9. A에게 보내준 설명자료에도 SPC사의 경영진, 경영목표, 비전 등 일반적인 내용만이 기술되어 있을 뿐 영업 규모, 자본금 등 회사의 신뢰성 내지 사업 추진력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점, ㉒ A는 이 사건 제2 기사가 보도된 후에야 비로소 HDH사로부터 SPC사가 HDH사의 자회사임을 확인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표현은 SPC사의 객관적·법률적인 실체가 불분명하다는 취지의 사실의 적시라기보다는, 1,500억 원이라는 큰 규모의 MOU 체결 상대방인 회사에 관하여 정부 부처 관계자들은 물론 제약회사 관계자들도 그 실체를 명확히 알지 못하고 있는 데다가 영업 규모, 자본금 등 계약 이행의 신뢰성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도 부족함이 취재 과정에서 확인되자 이에 관한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서 의견표명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표현도 정정보도의 대상이 되는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관련 주장 또한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한편, A가 HDH사의 이메일을 통하여 SPC사가 HDH사의 자회사임을 확인한 후에도 이 사건 제3 기사에서 "최근 '정체 불분명' 드러난 SPC사"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사실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실체 모호", "정체 불분명"과 같은 표현은 사실의 적시라기보다는 의견표명이라고 봄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이를 사실의 적시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제3 기사 게재 후 인터넷 홈페이지에 별지4-2 기재 기사를 게재할 때에는 위와 같은 표현을 완화하였고, 이 사건 제3 기사의 주요 내용은 ●●제약이 2014. 6. 25. SPC사와 사이에 체결한 MOU를 바탕으로 진행하던 항암제 공장 건설 사업이 중단되었다는 사실관계를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지 SPC사의 실체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제3 기사에 관하여 정정보도를 구하는 것은 이미 정정이 이루어진 사항이나 지엽말단적인 표현을 문제삼는 것에 불과하여 정당한 이익도 없다)

라. 반론보도청구에 관하여

1) 원고 주장 적시사실 ㉠ 부분

피고가 이 사건 제1 기사에서 "대통령 중동 순방의 주요 성과로 소개된 보건의료분야 사우디 진출 실적은 구체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표현하였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에 비추어 위 표현은 수액공장 MOU상의 금액 1,500억 원에 관한 부분과 의약품 수출금액 500억 원에 관한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바, 그 중 의약품 수출금액 500억 원의 구체적 근거가 없다는 부분이 의견표명에 해당함은 앞에서 이미 살펴보았고, 여기에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 부분 기사의 게재 경위와 그 기사 자체의 전체적인 인상으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홀딩스의 공시 내용에 따르면 △△홀딩스와 SPC사 사이의 MOU상의 금액인 1억 5,000만 달러는 현지 규정과 법률에 따라 비용 및 지불방식이 추후 달라질 수 있도록 예정된 점, ㉯ MOU는 그 성질상 계약과는 달리 당사자 사이에 구체적인 권리·의무를 발생시키지는 않고, 계약 체결을 위해 서로

협력할 것을 정하는 데 그 주안점이 있는 점, ㉰ 피고는 이 사건 제1 기사에서 “구체적 근거가 없다”는 표현을 사용하면서도 “1,500억 원 규모라는 사우디 제약공장 건설 사업과 관련해서도 정작 두 나라 기업은 구체적 비용 및 지불 방식이 앞으로 달라질 수 있다고 양해각서에 못박은 사실이 확인됐다”, “실제로 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사우디 수액공장 건설 양해각서 체결과 관련한 △△홀딩스의 공시 내용을 살피니, 1,500억 원 규모의 건설대금 등과 관련해 이 업체는 ‘현지 SFDA GMP 규정과 법률에 따라 비용 및 지불 방식은 추후 협의’한다고 명시했다”는 내용을 기재하여 원고가 반론보도를 구하는 취지의 사실관계를 이미 보도 당시에 밝히기까지 한 점 등까지 종합하여 판단하면, 위 표현은 2,000억 원이라는 큰 규모의 수치를 서면에 의한 근거 없이 관계자의 말만 듣고 이 사건 보도자료에 반영한 것과 실제 계약의 체결 여부 및 사업의 시행 여부가 상당한 정도로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단계에밖에 이르지 않은 MOU의 체결만으로 마치 거대한 성과를 달성한 것처럼 이 사건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홍보하는 것을 비판하기 위한 취지로서, 이는 곧 의견표명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표현은 반론보도의 대상이 되는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관련 주장 또한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원고 주장 적시사실 ㉡ 부분

피고가 이 사건 제2 기사에서 “제약 분야의 사우디 진출 소식을 대통령의 중동 순방 일정에 끼워 맞추려고 현지 업체에 대한 기초적인 조사마저 소홀히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는 표현을 사용하였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위 표현은 그 자체로도 의혹의 제기에 가까운 의견표명이라고 봄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 부분 기사의 게재 경위와 그 기사 자체의 전체적인 인상으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이 사건 보도자료는 그 첫머리에 “대통령 중동 순방 계기에”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어, 일반적인 독자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사건 보도자료에 나타난 계약 및 MOU의 체결이 원고 주장과 같은 2013. 11.부터의 꾸준한 협상의 결과가 아니라 대통령 중동 순방의 성과로만 비춰질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점, ㉯ A는 SPC사에 관하여 취재하면서 원고 소속 관계자들은 물론 제약회사 관계자들로부터도 각기 다른 내용의 설명을 들은 데다가 SPC사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해외 고객사 데이터베이스 내지 콤파스나 후버스에 들어 있지도 않고, B가 보내준 설명자료에도 영업 규모, 자본금 등 회사의 신뢰성 내지 사업 추진력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여, SPC사의 정체에 관한 의혹을 가질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표현은 원고가 이 사건 보도자료와 같은 내용을 대통령 중동 순방의 업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기초조사를 소홀히 하였다는 사실의 적시라기보다는, 1,500억 원이라는 큰 규모의 MOU 체결 상대방인 회사에 관하여 정부 부처 관계자들은 물론 제약회사 관계자들도 그 실체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는 데다가 계약 이행의 신뢰성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마저 부족함이 취재

과정에서 확인되자 그와 같은 정보 부족의 원인에 관한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서, 이 또한 의견표명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표현도 반론보도의 대상이 되는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관련 주장 역시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기사가 정정보도나 반론보도의 대상이 되는 사실적 주장에 관한 보도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1〉 요구하는 정정 및 반론보도문 생략
〈별지 2-1~4-2〉 대상기사 생략

2심 판결문

사 건	2015나2070097 정정보도
원고, 항소인	보건복지부
피고, 피항소인	한겨레신문 주식회사
제 1 심 판 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11. 11. 선고 2015가합2270 판결
변 론 종 결	2016. 6. 17.
판 결 선 고	2016. 7. 2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1. 피고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일 이내에,
   가. 한겨레신문 제1면에 별지1 기재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은 별지2-1 기재 기사 제목 "'500억 수출 성과' 구체적 근거 없어"의 글자크기 및 활자체와 동일하게, 본문은 위 기사 본문의 글자크기 및 활자체와 동일하게 하고,
   나. 피고의 인터넷 홈페이지 한겨레신문(http://www.hani.co.kr/) 메인초기화면 및 사회일반면의 각 기사목록 첫 부분에 별지1 기재 정정 및 반론보도문 중 제목란 기재 제목을 별지2-2 기재 기사(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81380.html)의 제목 중 〈정부 "사우디에 의약 수출 계약" 발표〉 부분과 같은 크기로 하여 [ ] 안에 표시하고, 위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목을 클릭하면 위 정정 및 반론보도문의 제목 및 본문이 표시되도록 하되, 제목은 별지2-2 기재 기사 제목 "'500억 수출 성과' 구체적 근거 없어"의 글자크기 및 활자체와 동일하게, 본문은 위 기사 본문의 글자크기 및 활자체와 동일하게 하여 이를 3일 동안 게재하며, 이후에는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이를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하고, 위 게재기간 경과 후에도 별지2-2 기재 기사, 별지3-2 기재 기사(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81551.html), 별지4-2 기재 기사(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81893.html)의 각 본문 하단에 제목은 별지2-2 기재 기사 제목 "'500억 수출 성과' 구체적 근거 없어"의 글자크기 및 활자체와 동일하게, 본문은 위 기사 본문의 글자크기 및 활자체와 동일하게 하여 위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게재하라.
2. 피고가 위 각 의무를 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그 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이행 완료일까지 1일 1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기재와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1. 기초사실'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이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기사에 대하여 별지1 기재와 같은 정정 및 반론보도를 구한다.

가. 정정보도청구 부분

피고는 이 사건 각 기사를 통하여 ① "정부는 국내 제약사가 사우디 쪽과 500억 원 규모의 의약품 수출계약을 체결하여 수출 성과를 올렸다고 발표했으나 의약품 수출 예상액 500억 원은 정부가 구체적 근거도 없이 막연히 꾸며낸 수치로 드러났다"(이 사건 제1 기사)는 구체적 사실 및 ② "'2,000억 원대 사우디 의료수출'과 관련해 정부가 국내 제약업체한테 소개한 사우디 제약사인 SPC사의 실체가 모호하다"(이 사건 제2, 3 각 기사)는 구체적 사실을 각 적시하였다.

그러나, ① SPC사와 계약 내지 양해각서(이하 'MOU')를 체결하기 위해 사우디에 정부 관계자들과 동행한 제약회사의 고위 관계자가 "체결된 계약 내용에 따르면 의약품을 최소 500억 원 이상 수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원고에게 직접 이야기하여 주었고, ② SPC사는 사우디에 근거를 두고 제약단지 건설 등을 목표로 2014년에 설립된 유한책임회사로 빈라덴 그룹 산하 보건의료사업을 담당하는 HDH[61]사의 자회사이므로, 피고의 위 각 적시사실은 모두 허위이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피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별지1 중간 부분 기재와 같은 내용의 정정보도를 할 의무를 부담한다.

나. 반론보도청구 부분

피고는 이 사건 각 기사를 통하여 ㉠ "대통령 중동 순방의 주요 성과로 소개된 2,000억 원 규모의 보건의료분야 사우디 진출 실적은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취지 및 ㉡ "정부가 제약 분야의 사우디 진출 소식을 대통령 순방 일정에 끼워 맞추기 위하여 현지 업체에 대한 기초적인 검증도 하지 않고 국내 제약업체의 의약품 수출계약 상대로 주선하였다"는 취지의 사실적 주장에 관한 보도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 대한민국과 사우디 사이의 수액공장 MOU 및 의약품 수출계약의 규모는 약 2,000억 원으로서 이는 국내 제약회사인 △△홀딩스의 공시 내용과 국내 제약업계의 자체 추정치에 근거한 것인데, 원고로서는 구체적인 계약금액을 산출하기 어렵다는 MOU의 특성 및 국내 제약사들과 SPC사 간에 체결한 비밀유지의무조항 때문에 추정치를 발표하였을 뿐이며, ㉡ 대한민국과 사우디 사이의 제약단지 구축사업은 2013. 11.부터 협의를 시작해서 국내 제약회사와 SPC사 사이의 지속적인 협의 및 현지 시찰 등을 통해 계약 또는 MOU 체결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원고는 그 과정에서 사우디 측과 지속적으로 실무 회의, 면담 등을 하고 사우디 제약사에 대한 조사를 하여 국내 제약사들에 제공하였던 것이므로, 원고는 위 각 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별지1 아랫부분 기재와 같은 내용의 반론보도를 할 의무를 부담한다.

---

61) Healthcare Development Holding의 약칭이다. 이하 약칭으로만 표기한다.

3. 판 단

가. 인정사실

(1) 수액공장 MOU 및 의약품 수출계약의 체결과 이 사건 보도자료의 배포

(가) 국내 제약업체인 △△홀딩스, □□제약, ××제약, ○○○은 2015. 3. 1.부터 3. 9.까지 사이에 이루어진 대통령의 중동 지역 순방에 동행하여 2015. 3. 3.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SPC사와 사이에, △△홀딩스는 수액공장 건설에 관한 MOU를, ××제약, ○○○은 항암제 기술이전 및 수출에 관한 MOU를 각 체결하고, □□제약은 사우디 제약사인 알 오술(Al Osool)사와 사이에 의약품 수출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홀딩스 관계자는 MOU 체결 직후 대통령 중동 순방에 동행한 원고 소속 해외의료진출지원과 과장 B에게 그 규모가 약 1,500억 원이 될 것이라고 전달하였고, □□제약 관계자도 위 수출계약 체결 직후 B에게 수출 규모가 약 500억 원이 될 것이라고 전달하였으나, ××제약과 ○○○은 금액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전달하면서 MOU 상의 금액을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홀딩스 및 □□제약 관계자는 위 B에게 위 수치를 모두 구두로만 전달하였고, 달리 근거가 될 만한 서면 등을 제시하지는 아니하였다. 그리고 B가 위 계약 체결 현장에 입회하거나 □□제약의 계약서를 확인한 적은 없다.

(다) 원고는 △△홀딩스와 □□제약 관계자들로부터 전달받은 위 금액을 근거로 이 사건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배포하였다.

(2) A의 취재 경과

(가) A는 이 사건 보도자료가 배포된 직후 위 해외의료진출지원과 사무관 C에게 전화를 걸어 SPC사에 관하여 질문한 결과 C로부터 "현지 제약회사인데, 그 쪽에서 가장 큰 회사"라는 답변을 들었다.

(나) 이에 A가 원고 측에 SPC사에 관한 자료 제공을 요구하자, 같은 과 주무관 D가 전화를 하여 "회사 이름은 수데어파마수티컬 컴퍼니이며, 기존에 설립된 회사는 아니고 사우디에서 새롭게 제약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만들어진 회사로 이해하면 될 것 같다"는 취지로 설명하였다.

(다) A는 다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SPC사에 관하여 문의하였으나, "SPC사는 공사의 해외 고객사에 등록되어 있지 않고, 전 세계 기업 검색 사이트인 콤파스(Kompass)나 후버스(Hoovers)에도 등록되어 있지 않은 회사이다"라는 답변을 받았다.

(라) 이후 A의 SPC사에 관한 문의에 대하여, △△홀딩스 관계자는 처음에는 사우디 국영 또는 공영 업체로 알고 있다고 답변하였다가 사우디 정부의 출자를 받아 설립된 제약회사라고 정정하였고, ○○○ 관계자는 처음에는 컨소시엄 형태의 페이퍼컴퍼니라고 답변하였다가 홀딩스, 즉 지주회사 개념이라고 정정하였다.

(마) 한편 A는 2015. 3. 5. 사우디에 있던 B에게 전화를 걸어 이 사건 보도자료에 관하여 문의하였다. 이에 B는 먼저 MOU 및 의약품 수출계약의 규모에 관하여 수액공장 MOU

가 1,500억 원, 의약품 수출계약이 500억 원으로서, 이는 제약회사에서 구두로 설명받은 내용이라고 답변하였다. B는 또한 SPC사의 실체에 관하여 신설기업으로서 빈라덴 그룹에서 투자를 받는다는 취지로 설명하면서, 다만 사우디 정부의 문서화된 보증은 없다고 말하였다. 한편 B는 위 통화 과정에서 A에게 이 사건 보도자료 중 △△홀딩스가 의약품 수출계약을 체결했다는 취지로 작성된 부분은 오류라고 이야기하였다.

(바) B는 이 사건 제1 기사 보도 후인 3. 9. 13:30경 A에게 SPC사의 실체에 관하여 "사우디는 항암제의 80~9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에, 5명의 암 연구자가 모여 항암제를 직접 생산하려고 만든 회사가 SPC사이다"라는 취지로 설명하였다. 이에 A는 B에게 SPC사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주구성, 고용현황, 매출액 등이 포함된 문서화된 자료를 요청하여 20:00경 SPC사를 소개하는 내용의 안내자료(을제5호증)를 송부받았는데, 위 자료에는 A가 요구한 사항들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사) A는 2015. 3. 11. E 기자를 통하여 HDH사에 메일을 보내 SPC사가 HDH사의 자회사라는 회신을 받았다.

(3) △△홀딩스의 MOU 체결 공시 및 SPC사의 설립 및 자회사 편입 과정

(가) △△홀딩스는 2015. 3. 4. 09:32경 "사우디 SPC사와의 턴키방식 수액 플랜트 수출 MOU 체결의 건"이라는 제목으로, SPC사는 수액공장 건설 및 수액 제조기술 이전 등의 대가로 △△홀딩스에 미화 1억 5,000만 달러[62]를 분할 지급하되, 현지 규정과 법률에 따라 비용 및 지불방식은 추후 협의하기로 하였으며, MOU 체결 후 60일 이내에 플랜트 구축기간 동안 현지에 제품 공급을 하기 위한 공급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는 내용을 공시하였다(갑제22호증).

(나) 한편 SPC사는 2013년 항암제 생산 등 제약공장을 건설하기 위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2014년 HDH사(사우디의 대규모 건설회사인 빈라덴 그룹의 자회사로서 2008. 11. 설립된 회사이다)의 자회사로 편입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8호증의 1, 2, 갑제11 내지 16호증, 갑제22, 26호증, 을제2호증의 1 내지 3, 을제5, 7호증, 을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B, A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관련 법리

(1) 정정보도청구는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한 경우에 허용되므로, 그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려면 원고가 정정보도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원보도가 사실적 주장에 관한 것인지 단순한 의견표명인지를 먼저 가려보아야 한다. 여기에서 사실적 주장이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명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증거에 의하여 그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을 말한다. 언론보도는 대개 사실적 주장과 의견표

62) 환율을 1달러당 1,000원으로 보면 1,500억 원이 된다.

명이 혼재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구별기준 자체가 일의적이라고 할 수 없고, 양자를 구별할 때에는 당해 원보도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 독자가 보통의 주의로 원보도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 방법뿐만 아니라 당해 원보도가 게재한 문맥의 보다 넓은 의미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및 일반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다86782 판결 등 참조).

(2) 한편, 언론보도의 진실성은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보아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것일 때 인정되며 세부적인 면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고, 또한 복잡한 사실관계를 알기 쉽도록 단순하게 만드는 과정에서 일부 특정한 사실관계를 압축·강조하거나 대중의 흥미를 끌기 위하여 실제 사실관계에 장식을 가하는 과정에서 다소 수사적 과장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아 보도내용의 중요부분이 진실에 합치한다면 보도의 진실성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자유로운 견해의 개진이나 공개된 토론과정에서 다소 잘못되거나 과장된 표현은 피할 수 없고 무릇 표현의 자유에는 그것의 생존에 필요한 숨 쉴 공간이 있어야 하므로, 진실에 부합하는지는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가 중시되어야 하는 것이고 세부적인 문제에서 객관적 진실과 완전히 일치할 것이 요구되어서는 아니 되기 때문이다(대법원 2011. 9. 2. 선고 2009다5264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또한, 표현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타인의 일정한 표현으로 사회적 평가를 훼손당하는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표현이 공적 관심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등에 따라 그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표현의 경우에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69291 판결 참조). 정부 또는 국가기관의 정책결정이나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은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정부 또는 국가기관의 정책결정 또는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언론보도로 인하여 정부 또는 국가기관의 사회적 평가가 다소 저하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보도의 내용이 정부 또는 국가기관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 한, 그 보도로 인하여 곧바로 정부 또는 국가기관에 대한 명예훼손이 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2다62494 판결 참조).

(3) 반론보도 역시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를 전제로 하는바, 반론보도 사건에서 사실적 주장과 의견의 표명을 구별하는 척도로서는, 그것이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하고 명확하며 역사성이 있는 것으로서 외부적으로 인식 가능한 과정이나 상태를 포함하여 원보도의 보도 대상이 된 행위자의 동기, 목적, 심리상태 등이 외부로 표출된 것이라면 이를 사실적 주장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추상적 판단 기준 자체도 언제나 명확한 것은 아니

며, 사실적 주장과 논평 등이 혼재하는 형식으로 보도되는 것이 보통이므로, 그 판단 기준 자체도 일의적이라고 할 수 없고, 앞서 본 반론보도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원보도가 사실적 주장인지, 의견표명인지는 원보도와 이에 대하여 게재를 구하는 반론보도문의 비교를 통하여 확인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으며, 원보도와 반론보도문이 서로 다른 구체적인 경과를 알리거나 상황을 묘사하는 내용의 것이라면 원보도도 일응 사실적 주장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나, 반론보도문의 내용이 새로운 사정을 알리려는 것이 아니라 단지 원보도를 재구성하는 것이라면 그 원보도는 의견의 표명에 그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2다49040 판결 등 참조).

다. 정정보도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 주장 적시사실 ① 부분

피고가 이 사건 제1 기사에서 원고의 주장과 같이 "대통령 중동 순방의 주요 성과로 소개된 보건·의료 분야 사우디아라비아 진출 실적은 구체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의약품 수출 예상액 500억 원은 정부가 구체적 근거도 없이 막연히 꾸며낸 수치로 드러났다"고 표현하였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 부분 기사의 게재 경위와 그 기사 자체의 전체적인 인상으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원고 측이 이 사건 보도자료에 기재한 2,000억 원이라는 수치는 △△홀딩스의 수액공장 MOU상의 1,500억 원과 □□제약의 의약품 수출계약상의 500억 원으로 구성된 점, ㉯ 원고 측은 □□제약의 관계자로부터 의약품 수출 규모가 500억 원 정도가 될 것이라는 내용을 구두로만 전달받아 이 사건 보도자료에 반영하였을 뿐 구체적인 근거 서류를 제시받지는 아니한 점, ㉰ A는 취재 과정에서 B로부터 위와 같은 경위로 이 사건 보도자료가 작성되었음을 충분히 확인한 점, ㉱ 피고는 이 사건 제1 기사 말미에 "사우디를 함께 방문한 제약사들한테 '의약품을 수출하게 되면 그 정도(500억 원) 규모는 될 것'이라는 말을 듣고 발표한 것"이라는 원고 측 관계자의 설명을 기재하여 원고가 정정보도를 구하는 취지의 내용을 이미 보도 당시에 밝히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표현은 500억 원이라는 큰 규모의 수치를 계약서와 같은 서면에 의한 근거 없이 □□제약 관계자의 말만 듣고, 섣불리 이 사건 보도자료에 반영하여 "제약분야 사우디 진출 성과는 ...중략... 향후 5년간 약 2천억 원 규모의 플랜트 MOU와 의약품 수출계약에서 구체화되었다"고 확정적으로 홍보하는 것을 비판하기 위한 취지로서, 이는 곧 의견표명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사 사실의 적시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보도자료 중 "2천억 원 규모의 '플랜트 MOU와 의약품 수출계약' 체결" 부분은 앞서 본 인정사실 기재와 같이, 원고 측이 구체적인 근거자료에 입각하지 아니하고 □□제약의 관계자로부터 의약품 수출 규모가 500억 원 정도가 될 것이라는 내용을 구두로만 전달받고 이 사건 보도자료에 반영한 것이어서, 적시사실 ① 부분 중 "정부가 구체적 근거도 없이 막연히 꾸며낸 수치로 드러났다"고 적시한 부분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고, 또한 '막연히 꾸며낸 수치로 드러났다'는 부분은 대중의 흥미를 끌기 위하여 실제 사실관계에 장식을 가하는 과정에서 기재한 수사적 과장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피고의 이 부분 보도는 정부 또는 국가기관의 정책결정 또는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원고의 사회적 평가가 다소 저하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이 사건 기사의 보도 내용 및 보도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내용이 원고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지도 않는다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표현은 정정보도의 대상이 되는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라고 볼 수 없고, 설사 사실의 적시라고 보더라도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관련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원고 주장 적시사실 ② 부분

피고가 이 사건 제2, 3 각 기사에서 "'2천억 수출 계약' 상대 사우디 제약사 '실체 모호'"라고 표현하였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 부분 기사의 게재 경위와 그 기사 자체의 전체적인 인상으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SPC사는 2013년 설립된 신생 회사로서 2014년에서야 HDH사의 자회사로 편입된 점, ㉯ A는 SPC사에 관하여 취재하면서 원고 소속 관계자들은 물론 제약회사 관계자들로부터도 각기 다른 내용의 설명을 들은 점, ㉰ SPC사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해외 고객사로 등록되어 있지 않고, 전 세계 기업정보망인 콤파스나 후버스에서도 검색이 되지 아니하는 회사인 점, ㉱ B가 2015. 3. 9. A에게 보내준 설명자료에도 SPC사의 경영진, 경영목표, 비전 등 일반적인 내용만이 기술되어 있을 뿐 영업 규모, 자본금 등 회사의 신뢰성 내지 사업 추진력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점, ㉲ A는 이 사건 제2 기사가 보도된 후에야 비로소 HDH사로부터 SPC사가 HDH사의 자회사임을 확인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표현은 SPC사의 객관적 · 법률적인 실체가 불분명하다는 취지의 사실의 적시라기보다는, 1,500억 원이라는 큰 규모의 MOU 체결 상대방인 회사에 관하여 정부 부처 관계자들은 물론 제약회사 관계자들도 그 실체를 명확히 알지 못하고 있는 데다가 영업 규모, 자본금 등 계약 이행의 신뢰성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도 부족함이 취재 과정에서 확인되자 이에 관한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서, 이는 의견표명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사 사실의 적시로 본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제2, 3 각 기사에서 SPC사의 실체를 파악하게 된 과정과 경위를 밝히면서 'SPC사는 설립된 지 막 1년을 넘긴 신생 제약사'라고 밝히고 있는바, 기사의 전체적인 흐름에 비추어 볼 때 '실체 모호'라는 표현은 실체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신생회사로 영업 규모, 자본금 등 계약 이행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회사'라는 것을 표현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기사 내용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실체 모호'라는 표현 역시 대중의 흥미를 끌기 위하여 실제 사실관계에 장식을 가하는 과정에서 기재한 수사

적 과장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앞서 본 적시사실 ① 부분에 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이 부분 보도는 정부 또는 국가기관의 정책결정 또는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이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지도 않는다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표현은 정정보도의 대상이 되는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라고 볼 수 없고, 설사 사실의 적시라고 보더라도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관련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한편, A가 HDH사의 이메일을 통하여 SPC사가 HDH사의 자회사임을 확인한 후에도 이 사건 제3 기사에서 "최근 '정체 불분명' 드러난 SPC사"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사실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실체 모호", "정체 불분명"과 같은 표현은 사실의 적시라기보다는 의견표명이라고 봄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이를 사실의 적시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제3 기사 게재 후 인터넷 홈페이지에 별지4-2 기재 기사를 게재할 때에는 위와 같은 표현을 완화하였고, 이 사건 제3 기사의 주요 내용은 ●●제약이 2014. 6. 25. SPC사와 사이에 체결한 MOU를 바탕으로 진행하던 항암제 공장 건설 사업이 중단되었다는 사실관계를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지 SPC사의 실체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제3 기사에 관하여 정정보도를 구하는 것은 이미 정정이 이루어진 사항이나 지엽말단적인 표현을 문제삼는 것에 불과하여 정당한 이익도 없다)

라. 반론보도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 주장 적시사실 ㉠ 부분

피고가 이 사건 제1 기사에서 "대통령 중동 순방의 주요 성과로 소개된 보건의료분야 사우디 진출 실적은 구체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표현하였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에 비추어 위 표현은 수액공장 MOU상의 금액 1,500억 원에 관한 부분과 의약품 수출금액 500억 원에 관한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바, 그 중 의약품 수출금액 500억 원의 구체적 근거가 없다는 부분이 의견표명에 해당함은 앞에서 이미 살펴보았고, 여기에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 부분 기사의 게재 경위와 그 기사 자체의 전체적인 인상으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홀딩스의 공시 내용에 따르면 △△홀딩스와 SPC사 사이의 MOU상의 금액인 1억 5,000만 달러는 현지 규정과 법률에 따라 비용 및 지불방식이 추후 달라질 수 있도록 예정된 점, ㉯ MOU는 그 성질상 계약과는 달리 당사자 사이에 구체적인 권리·의무를 발생시키지는 않고, 계약 체결을 위해 서로 협력할 것을 정하는 데 그 주안점이 있는 점, ㉰ 피고는 이 사건 제1 기사에서 "구체적 근거가 없다"는 표현을 사용하면서도 "1,500억 원 규모라는 사우디 제약공장 건설 사업과 관련해서도 정작 두 나라 기업은 구체적 비용 및 지불 방식이 앞으로 달라질 수 있다고 양해각서에 못박은 사실이 확인됐다", "실제로 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사우디 수액공장 건설 양해각서 체결과 관련한 △△홀딩스의 공시 내용을 살피니, 1,500억 원 규모의 건설대

금 등과 관련해 이 업체는 '현지 SFDA GMP 규정과 법률에 따라 비용 및 지불 방식은 추후 협의한다'고 명시했다"는 내용을 기재하여 원고가 반론보도를 구하는 취지의 사실관계를 이미 보도 당시에 밝히기까지 한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위 표현은 2,000억 원이라는 큰 규모의 수치를 서면에 의한 근거 없이 관계자의 말만 듣고 이 사건 보도자료에 반영한 것과 실제 계약의 체결 여부 및 사업의 시행 여부가 상당한 정도로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단계에밖에 이르지 않은 MOU의 체결만으로 마치 거대한 성과를 달성한 것처럼 이 사건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홍보하는 것을 비판하기 위한 취지로서, 이는 곧 의견표명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표현은 반론보도의 대상이 되는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관련 주장 또한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원고 주장 적시사실 ㉡ 부분

피고가 이 사건 제2 기사에서 "제약 분야의 사우디 진출 소식을 대통령의 중동 순방 일정에 끼워 맞추려고 현지 업체에 대한 기초적인 조사마저 소홀히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는 표현을 사용하였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위 표현은 그 자체로도 의혹의 제기에 가까운 의견표명이라고 봄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 부분 기사의 게재 경위와 그 기사 자체의 전체적인 인상으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이 사건 보도자료는 그 첫머리에 "대통령 중동 순방 계기에"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어, 일반적인 독자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사건 보도자료에 나타난 계약 및 MOU의 체결이 원고 주장과 같은 2013. 11.부터의 꾸준한 협상의 결과가 아니라 대통령 중동 순방의 성과로만 비춰질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점, ㉯ A는 SPC사에 관하여 취재하면서 원고 소속 관계자들은 물론 제약회사 관계자들로부터도 각기 다른 내용의 설명을 들은 데다가 SPC사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해외 고객사 데이터베이스 내지 콤파스나 후버스에 들어 있지도 않고, B가 보내준 설명자료에도 영업 규모, 자본금 등 회사의 신뢰성 내지 사업 추진력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여, SPC사의 정체에 관한 의혹을 가질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표현은 원고가 이 사건 보도자료와 같은 내용을 대통령 중동 순방의 업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기초조사를 소홀히 하였다는 사실의 적시라기보다는, 1,500억 원이라는 큰 규모의 MOU 체결 상대방인 회사에 관하여 정부 부처 관계자들은 물론 제약회사 관계자들도 그 실체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는 데다가 계약 이행의 신뢰성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마저 부족함이 취재 과정에서 확인되자 그와 같은 정보 부족의 원인에 관한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서, 이 또한 의견표명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표현도 반론보도의 대상이 되는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관련 주장 역시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1〉 요구하는 정정 및 반론보도문 생략
〈별지 2-1~4-2〉 대상기사 생략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8. 17. 선고 2015가합4238 판결(확정)

국회의원인 원고의 딸이 대기업에 없는 자리까지 만들어 취업해 특혜를 받았다고 보도하였으나 이후 회사에서 추가로 인력을 채용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허위성이 인정된다

- 원고 : A
- 피고 : 주식회사 시사저널사

[사실관계]

피고는 2015년 8월 13일자 〈인터넷 시사저널〉에 「[단독] A 의원 딸, 대기업 변호사 채용 특혜 의혹」이라는 제목으로 한 대기업이 경력변호사 채용 시 없던 자리까지 만들어 원고의 딸을 채용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이에 원고는 원고의 딸이 채용공고 요건에 따라 신입변호사로 채용되었다며 정정보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심리 결과, 재판부는 원고의 딸이 지원했던 당시 채용공고 요건을 확인한 결과 원고의 딸도 채용대상에 포함되고, 해당 회사는 원고의 딸을 채용한 후에도 2회에 걸쳐 추가로 채용한 점을 볼 때, '없는 자리를 만들어' 원고의 딸을 입사시켰다는 기사는 허위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 이후 피고의 상소가 없어 판결이 확정됐다.
한편, 원고는 소제기에 앞서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하여 직권조정결정(정정보도)이 내려졌으나(2015서울조정3944), 피고 측 이의신청으로 자동소제기된 바 있다.

[판결요지]

□ 허위성에 대한 판단

채용공고에는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신입/경력 무관)'로만 기재되어 있어 로스쿨을 마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원고의 딸도 신규변호사로서 그 채용대상에 포함되는 점, 이 사건 회사는 위 7월 채용공고를 통하여 원고의 딸을 포함한 2명의 변호사를 채용한 후 2013년 9월 및 10월에도 2회에 걸쳐 추가로 변호사를 채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없는 자리를 만들어' 원고의 딸을 입사시켰다는 취지의 이 사건 기사는 허위라고 할 것이다.

판결문

사 건	2015가합4238 정정보도
원 고	A
피 고	주식회사 시사저널사
변론종결	2016. 7. 6.
판결선고	2016. 8. 17.

주 문

1. 피고는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시사저널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sisapress.com)의 초기화면 상단에 48시간 동안 [별지1] 정정보도문의 제목을 통상 기사 제목과 동일한 크기의 활자체로 표시하여 게재하고, 이를 클릭하면 위 정정보도문의 제목 및 내용이 [별지3] 정정보도 대상 기사의 제목 및 내용과 동일한 크기의 활자체로 표시되게 하며, 위 홈페이지의 [별지3] 정정보도 대상 기사의 본문 하단에 [별지1] 정정보도문을 같은 형식으로 이어서 게재하여 정정보도 대상 기사가 검색되는 한 함께 검색될 수 있도록 하고, 48시간 게재 후에는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시사저널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sisapress.com)의 초기화면 앞부분에 [별지2] 기재 정정보도문의 '제목'을 크게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별지2] 기재 정정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고, 위 홈페이지의 [별지3] 정정보도 대상 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별지2] 기재 정정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하며, 48시간 게재 후에는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제19대 국회의원인 사람이고, 피고는 일반주간신문인 시사저널을 발행하면서 인터넷으로 그 웹사이트(http://www.sisapress.com, 이하 '이 사건 홈페이지'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의 보도

피고는 2015. 8. 13. 이 사건 홈페이지에서 "[단독] A 의원 딸, 대기업 변호사 채용 특혜 의혹"이라는 제목으로 B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가 2013년 9월 경력변호사 채용 시 없던 자리까지 만들어 원고의 딸을 채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의 기사를 [별지3] 기재와 같이 보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기사'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는, 원고의 딸이 이 사건 회사의 2013년 7~8월 변호사 채용공고에 지원하여 그 채용공고 요건에 따라 신입변호사로 채용되었음에도, 피고가 [별지3] 기재 내용과 같이 이 사건 기사에서 허위내용을 보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정정보도를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회사가 대한변호사협회에 게재한 2013년 7월 채용공고문에는 채용인원이 '1명'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없는 자리를 만들어' 원고의 딸을 채용한 것이 맞는 이상, 원고의 딸이 입사 지원한 채용공고가 이 사건 기사 내용과 같은 9월이 아니라 7월이라 하더라도 이는 세부적인 경미한 사항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정정보도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이 사건 기사가 허위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 내지 9,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와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 즉 ① 원고의 딸은 2013. 8. 11. 이 사건 회사의 2013년 7월 채용공고(모집기간 2013. 7. 24.부터 8. 11.까지)에 응모하였는데, 위 7월 채용공고에는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신입/경력 무관)'로만 기재되어 있어 로스쿨을 마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원고의 딸도 신규변호사로서 그 채용대상에 포함되는 점, ③ 위 7월 채용공고에는 '충원인원 ○명'(대한변호사협회 채용정보상의 '모집인원 1명'은 오기로 보인다)으로 기재되어 있어 한 자리수의 인원이 채용될 것임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고, 이 사건

회사는 위 7월 채용공고를 통하여 원고의 딸을 포함한 2명의 변호사를 채용한 후 2013년 9월 및 10월에도 2회에 걸쳐 추가로 변호사를 채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없는 자리를 만들어' 원고의 딸을 입사시켰다는 취지의 이 사건 기사는 허위라고 할 것이고, 을 제1, 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 어려운바, 결국 피고는 허위내용의 이 사건 기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원고에게 정정보도를 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가 게재할 정정보도문의 내용과 글자 크기, 활자체, 게재방법 등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사의 내용이나 분량, 표현방법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가 구하는 [별지2] 정정보도문의 내용을 [별지1] 정정보도문과 같이 수정하여 게재하도록 하고, 그 정정보도문의 글자 크기, 활자체, 게재방법 등을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0다108579 판결 등 참조).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일부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1〉 정정보도문

[제목] 'A 의원 딸 채용 특혜' 관련 정정보도

[내용] 본지는 2015. 8. 13.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단독] A 의원 딸, 대기업 변호사 채용 특혜 의혹"이라는 제목으로 B가 2013년 9월 경력변호사 채용 시 없던 자리까지 만들어 A 의원의 딸을 채용했다는 의혹을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A 의원의 딸은 2013년 7월 변호사(신입/경력 무관) 채용공고에 신입 변호사로 지원하여 합격통지를 받았던 것으로 밝혀졌으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끝.

〈별지 2〉 요구하는 정정보도문 생략

〈별지 3〉 대상기사 생략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9. 28. 선고 2015가합542384, 2015가합552916(병합) 판결

인터넷 홈페이지에 기사가 게시되어 있더라도 언론중재법에 따른 제척기간(보도가 있은 후 6개월) 기산 시 보도를 계속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원고 : 대한민국
- 피고 : 케이비에스미디어 주식회사 외 1명

[사실관계]

피고 한국방송공사는 2014년 11월 11일자 KBS-1TV 〈시사기획 '창'〉 프로그램에서 「식물인간 이등병, "사실대로 말해줘"」 제하의 보도에서 한 이등병이 부대 내에서 집단구타를 당하여 식물인간이 됐고, 군 수사기관이 관련 수사를 부실하게 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보도 후 약 9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위 보도가 부대 내 집단구타 사실을 단정적으로 보도했고, 관련 수사가 부실했다는 것도 허위라며 정정보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심리 결과, 재판부는 언론중재법에 따른 정정보도청구를 배척하는 한편, 민법상 청구에 관해 이 사건 보도 내용이 허위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후 원고가 항소하여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2심 계류 중이다(2016나2078098).

[판결요지]

□ 제척기간 기산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게시가 보도를 계속한 것으로 의제되는지 여부

원고는 피고 한국방송공사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이 사건 보도를 계속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보도가 있은 때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정정보도를 청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피고 한국방송공사가 이 사건 보도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것은 언론사로서 보도행위에 따른 후속조치를 한 것에 지나지 않을 뿐, 이로써 이 사건 보도를 계속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허위성에 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보도 중 허위라고 주장하는 "집단구타 때문이었습니다"라는 표현은 사고 경위에 관한 A이병의 입장을 압축적으로 인용한 것에 불과하다. 또한, 이 사건 보도는 군 수사기관의 초동수사가 부실하였다고 단정적으로 표현하지는 아니하였고, 단지 헌병대 수사관들이 A이병과 같은 부대원 15명을 한꺼번에 모아놓고 설문조사 및 개별면담을 한 수사기법이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지적을 하고, 그 수사기법에 대한 전문가의 평가를 그대로 인용하여 보도한 것에 불과하다. 원고가 제출한 수사기록에 따르더라도, 군 수사기관이 A이병과 함께 복무한 부대원들 중 일부에 대해서만 개별면담을 실시한 것, 특히 A이병이 구타 가해자로 지목한 선임병사는 개별면담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사실이어서 이를 그대로 보도한 이 사건 보도의 내용에 허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판결문

사 건	2015가합542384 정정보도청구 2015가합552916(병합) 정정보도청구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1. 케이비에스미디어 주식회사 2. 한국방송공사
변론종결	2016. 9. 2.
판결선고	2016. 9. 28.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이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 KBS 홈페이지(http://news.kbs.co.kr) 〈시사기획 '창'〉 섹션 기사 목록 앞부분에 별지1 기재 정정보도문 및 정정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정정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고, 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아래의 정정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하며, 게재 후에는 기사 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하고, 피고가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매일 5,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케이비에스미디어 주식회사(이하 '피고 케이비에스미디어'라 한다)는 국내외 영상저작물의 제작, 구입, 판매사업 및 국내외 인터넷 방송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한국방송공사는 라디오, 텔레비전 등 방송매체를 통한 방송 및 부대업무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 한국방송공사는 2014. 11. 11. 위 피고가 운영하는 채널인 KBS-1TV의 〈시사기획 '창'〉 프로그램을 통해 별지 방송대본 기재와 같이 [식물인간 이등병, "사실대로 말해줘"]라는 제목의

보도(이하 '이 사건 보도'라 한다)를 하였다.

다. 이 사건 보도가 이루어진 이후, 피고 한국방송공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news.kbs.co.kr)에 위 보도내용이 업로드되어 이를 통해 현재까지도 이 사건 보도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1호증의 각 기재, 을나 제2호증의 기재, 을나 제17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보도는 ① 육군 ○○사단에서 복무하던 중 2012. 2. 18. 17:00경 의식을 잃고 쓰러져 식물인간 상태가 된 A이병(이하 'A이병'이라 한다)이 소속부대 내에서 선임 등으로부터 집단구타를 당했다고 단정하였고, ② A이병이 쓰러진 원인에 관한 군 수사과정에서 일부 병사들에 대한 개별면담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수사가 부실하게 이루어졌다고 하였는데, 이는 모두 사실과 다른 허위보도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이라 한다) 또는 민법에 따라 이 사건 보도에 대하여 별지1 기재 정정보도문과 같은 내용으로 정정보도를 하여야 한다(정정보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이를 강제하기 위한 배상금도 청구한다).

3. 피고 케이비에스미디어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케이비에스미디어가 피고 한국방송공사와 함께 이 사건 보도를 제작·방송하고 피고 한국방송공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주체라고 주장하나, 을가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보면, 피고 케이비에스미디어는 피고 한국방송공사와 체결한 위탁계약에 따라 이 사건 보도가 게시된 피고 한국방송공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기계적으로 운영·관리하는 것에 불과할 뿐 위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컨텐츠를 취재 및 제작하거나 그 내용을 검토할 권한은 가지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보도의 제작·보도 및 게시 과정에 관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이 사건 보도에 대한 정정보도를 게시할 권한을 가진 주체라고 보기도 어렵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피고 한국방송공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정정보도청구에 관한 법리

정정보도청구는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한 경우에 허용되므로 그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려면 원고가 정정보도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이 사건 보도가 사실적 주장에 관한 것인지 단순한 의견표명인지를 먼저 가려보아야 한다. 여기에서 사실적 주장이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명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증거에 의하여 그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을 말한다. 이러한 개념이 반드시 명확한 것은 아니다. 언론보도는 대개 사실적 주장과 의견표명이 혼재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구별기준 자체가 일의적이라고 할 수 없고, 양자를 구별할 때에는 당해 원보도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구독자가 보통의 주의로 원보도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방법뿐만 아니라 당해 원보도가 게재한 문맥의 보다 넓은 의미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및 시청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한편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 등의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피해자는 그 언론보도 등이 진실하지 아니하다는 데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11. 9. 2. 선고 2009다5264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언론보도의 진실성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고, 복잡한 사실관계를 알기 쉽게 단순하게 만드는 과정에서 일부 특정한 사실관계를 압축, 강조하거나 대중의 흥미를 끌기 위하여 실제 사실관계에 장식을 가하는 과정에서 다소의 수사적 과장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아 보도내용의 중요부분이 진실에 합치한다면 그 보도의 진실성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275 판결 등 참조).

나. 언론중재법상 정정보도청구에 관한 판단

1) 언론중재법 제14조에 따라 해당 언론보도 등이 있은 후 6개월이 경과한 후에는 그 보도내용에 관하여 언론중재법상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는 없는바, 이 사건 보도가 2014. 11. 11.에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원고가 이 사건 보도가 있은 때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인 2015. 8. 20.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보도에 대한 정정보도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원고는 피고 한국방송공사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이 사건 보도를 계속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보도가 있은 때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정정보도를 청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피고 한국방송공사가 이 사건 보도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것은 언론사로서 보도행위에 따른 후속조치를 한 것에 지나지 않을 뿐, 이로써 이 사건 보도를 계속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그렇다면 원고의 언론중재법에 따른 정정보도청구는 위 법 제14조 제1항에 위반한 것으로 이유 없다. 한편, 원고는 민법 제750조, 제764조에 따른 정정보도청구도 함께 구하므로, 아래에서는 민법상 정정보도청구의 당부에 대하여 살피기로 한다.

다. 이 사건 보도의 내용이 사실적 주장에 관한 것인지 여부

1) 원고가 이 사건 보도 중 정정보도를 구하고 있는 부분은, ① A이병이 선임 등으로부터 집단구타를 당하여 식물인간에 이르게 되었다는 내용, ② 군 수사기관이 A이병의 사고경위에 관하여 수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병사들에 대하여는 개별면담을 하지 않는 등 부실하게 수사하였

다는 내용이다.

2)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위 기초사실, 원·피고들이 제출한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보면 위 내용들은 모두 증거에 의하여 그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라. 적시된 사실의 허위성 여부

1)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 갑 제22호증의 영상, 을나 제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을나 제17호증의 영상, 증인 A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보면 다음의 각 사정이 인정된다.

① A이병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1년 반 가량이 경과한 2014. 9.경 의식과 기억을 회복한 후부터 이 법원에서의 증언에 이르기까지, 사고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데, 선임 등으로부터 구타를 당하여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되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A이병의 위와 같은 진술 및 그 가족들의 재수사 요청에도 불구하고 군 수사기관은 이 사건 보도가 있기 이전에는 재수사에 착수하지 아니하였다.

② 이 사건 보도가 이루어지고 나서야 군 수사기관은 약 1개월에 걸쳐 A이병 사건을 재수사하였고, 관련자들의 진술, 진료기록 등을 재검토하여 A이병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집단구타를 당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피고 한국방송공사는 KBS-1TV 채널의 〈뉴스9〉, 〈뉴스라인〉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원고의 입장을 반영한 위 재수사 결과를 보도하였다.

③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위와 같이 군 수사기관에서 두 차례에 걸쳐 수사가 이루어진 후, 송파경찰서에서도 A이병이 가해자로 지목한 선임병사들에 관하여 수사를 진행하여 2015. 6. 4.경 그 수사결과를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고, 현재 검찰의 수사가 계속되고 있다.

④ 원고가 이 사건 보도 중 허위라고 주장하는 "시간이 지날수록 A이병은 사고 이유를 분명하게 눈으로 말했습니다. 집단구타 때문이었습니다."라는 부분은 A이병이 갑자기 쓰러져 식물인간에 이르게 된 것이 집단구타 때문이라고 단정적으로 보도한 것이 아니라, 사고 경위에 관한 A이병의 입장을 압축적으로 인용한 것에 불과하다. 또한, 이 사건 보도는 군 수사기관의 초동수사가 부실하였다고 단정적으로 표현하지는 아니하였고, 단지 헌병대 수사관들이 A이병과 같은 부대원 15명을 한꺼번에 모아놓고 설문조사 및 개별면담을 한 수사기법이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지적을 하고, 그 수사기법에 대한 전문가의 평가를 그대로 인용하여 보도한 것에 불과하다. 원고가 제출한 수사기록에 따르더라도, 군 수사기관이 A이병과 함께 복무한 부대원들 중 일부에 대해서만 개별면담을 실시한 것, 특히 A이병이 구타 가해자로 지목한 선임병사는 개별면담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사실이어서 이를 그대로 보도한 이 사건 보도의 내용에 허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⑤ 이 사건 보도가 이루어진 당시는 일명 '윤일병 구타 사망사건'으로 인해 국민들에게 군대 내 폭력 및 가혹행위 등에 대한 경각심이 고취되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사회

적인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던 시기로, 공영방송인 피고 한국방송공사로서는 병영문화의 문제점 및 그에 대한 개선방안 등을 다룬 이 사건 보도를 통해 사건의 발생경위 등에 관하여 의혹이 많이 제기되던 A이병 사건에 대해서도 보도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보도의 전체적인 내용 및 그 취지를 고려해보면, 피고 한국방송공사는 A이병의 사고 원인에 대하여 피해자인 A이병 및 그 가족의 견해를 전달하는 입장을 취하였을 뿐, 군내에서의 집단구타 때문이라고 단정 짓지는 않았고, A이병의 사례 이외에도 해외의 사례 등을 제시하면서 병영문화 개선의 필요성 및 그 방향에 대해 집중적으로 보도하였다.

⑥ 피고 한국방송공사는 이 사건 보도를 하기에 앞서, A이병 및 그 가족들의 진술을 청취하고, A이병의 입원 당시 진료기록을 확인하고 그에 대한 전문의의 의견을 청취하고, 군 수사기관에서 A이병에게 공개하였던 수사기록을 확인하고, 사고 당시 A이병과 함께 복무하였던 부대원들을 직접 인터뷰하는 등 사실 확인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이때 피고 한국방송공사는 이 사건에 대한 원고의 입장도 청취하여 보도에 반영하기 위해 원고에게 서면질의 및 인터뷰요청 등을 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지속적으로 거부하다가 이 사건 보도가 임박한 시점에 이르러서야 기존 수사결과와 동일한 내용으로 원고의 입장을 전달하였다.

⑦ 피고 한국방송공사는 A이병 및 그 가족, A이병이 복무한 부대의 부대원들 등 사건 관련자들을 직접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A이병의 사고 당일 행적(A이병이 취사도우미를 마치고 생활관에 누구와 함께 복귀하였는지, A이병이 생활관에 복귀한 후 의식을 잃고 쓰러지기까지 이동경로 및 동행인원, A이병이 구토를 한 후 토사물을 본인이 직접 세척하였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부대원들의 진술이 서로 엇갈리고, 또 일부 부대원들은 군 수사기관에서 이루어진 수사결과와 다른 내용의 진술을 하기도 하는 등 이 사건과 관련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진 것인지 충분히 의심할 만한 정황이 발견되었다. 이에 피고 한국방송공사는 사고 당시 행해진 군 수사기관의 수사기법 및 A이병의 진료기록 등에 대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한 후, 선천적인 뇌동정맥 기형에 의한 뇌출혈의 원인이 외부의 충격에 의한 것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 군 수사기관이 '욕창'이라고 단정한 A이병의 뒤통수 상처가 외부적인 충격에 의한 것일 수도 있는 가능성 등을 확인한 후 이러한 내용을 포함시켜 이 사건 보도에 이르게 된 것이다.

⑧ 피고 한국방송공사는 주로 이 사건 사고 관련자들을 직접 인터뷰한 내용에 기초하여 이 사건 보도를 하였는데, 이는 원고가 보관하고 있는 이 사건 사고 관련 수사기록 등을 전부 입수할 수 없는 현실적인 한계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⑨ 이 사건 보도는 A이병이 취사도우미를 한 장소가 영내에 있는 사병식당임에도 영외에 있는 '△△회관'이라고 잘못 표시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고 한국방송공사가 직접 부대에 출입하여 장소를 확인하지 못하고, 부대의 위성사진을 보고 장소를 특정하는 과정에서 일부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위 사정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원고가 정정보도를 구하고 있는 이 사건 보도의 내용은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등 이를 허위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위 허위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민법상 정정보도청구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역시 이유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1〉 요구하는 정정보도문 생략
〈별지 2〉 방송내용 생략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0. 26. 선고 2015가합26400, 2015가합26868(병합) 판결(확정)

기사의 기초가 된 사료들을 믿을 수 없다는 그 신빙성에 대한 문제제기는 원고의 의견 또는 평가에 불과하여 반론보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 원고 : A
- 피고 : 한겨레신문 주식회사

[사실관계]

피고는 2015년 8월 1일자 〈한겨레〉 및 〈인터넷 한겨레〉에 「B 아들 A - 더 상세히 드러난 아버지 친일행적, 아들은 왜 미국에서 큰절을 했을까?」라는 제목으로 일제강점기 당시 발행된 〈매일신보〉 및 〈징병제시행 강사 적미영격멸 결의 선양 전선공직자대회기록〉에 기재된 B의 발언을 인용하여 보도했다. 이에 원고는 위 사료들을 그대로 믿을 수 없다며 반론보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심리 결과, 재판부는 요구하는 반론보도의 내용이 원고의 의견에 불과하여 반론보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고, 이후 원고가 항소를 취하하여 본 판결이 확정됐다(서울고등법원 2016나2086907).

한편, 원고는 소제기에 앞서 언론중재위원회에 반론보도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하여 직권조정결정(반론보도)이 내려졌으나(2015서울조정3883 · 3884, 2015서울조정3885 · 3886(병합)), 피고 측 이의신청으로 자동소제기 된 바 있다.

[판결요지]

□ **반론보도청구의 대상 여부에 대한 판단**

원고가 구하고 있는 반론보도문은 〈매일신보〉가 조선총독부의 기관지로서 조선총독부의 식민통치를 홍보 · 미화하는 선전매체였으므로, 그 기사내용을 그대로 믿을 수는 없고, 〈전선공직자대회〉는 일제에 의해 기획되고 전국의 공직자들을 강제 동원한 행사이므로 그 참석자들의 발언내용을 그대로 믿을 수는 없다는 것인데, 이는 이 사건 기사의 기초가 된 사료들에 대한 원고 측의 의견 또는 평가에 불과하여, 이 사건 기사를 통해 보도된 내용에 대한 반론을 담은 '사실적 주장'이라고 보기 어렵다.

□ **반론보도청구의 범위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사는 각 사료들의 신빙성 여부를 문제 삼아 보도한 것이 아니라, 단지 위 사료들에 기재된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여 보도한 것에 불과하여, 원고가 구하는 반론보도의 내용과 같이 위 사료들의 신빙성 문제를 다투는 것은 이 사건 기사에서 보도된 내용을 벗어난 것으로서, 직접적인 반론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언론중재법 상의 반론보도로서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판결문

사 건 2015가합26400 반론보도 및 손해배상
2015가합26868(병합) 반론보도 및 손해배상
원 고 A
피 고 한겨레신문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9. 30.
판결선고 2016. 10.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한겨레〉 토요판 1면에 별지1 기재 반론보도문을 2단에 걸쳐 상자기사로 게재하되, 제목의 활자크기는 반론보도 대상기사의 제목과 동일한 크기로, 본문의 활자크기는 반론보도 대상기사의 본문과 동일한 크기로 하고, 〈인터넷 한겨레〉 홈페이지(http://www.hani.co.kr) 정치섹션의 기사목록 상단에 위 반론보도문 제목을 48시간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위 반론보도문으로 연결되도록 하며, 48시간 게재 이후에는 위 홈페이지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하고, 위 홈페이지에 게재된 반론보도 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위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하고, 위 홈페이지에 반론보도문을 게재한 이후, 계약관계에 있는 각 포털사에 위 반론보도문을 즉시 전송하여 각 포털을 통해 검색되도록 각 포털사에 요청하며, 만일 피고가 위 각 의무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의무의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일 전날까지 일 1,000,000원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새누리당 소속 국회의원이고, 피고는 신문 및 정기간행물 발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일간지 '한겨레신문'을 발행하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

이라 한다) 제2조 제5호의 신문사업자이다.

나. 피고는, 원고가 새누리당 당대표로 재임 중이던 2015. 8. 1. 한겨레신문 [토요판] 1, 3, 4면에 걸쳐 'B 아들 A - 더 상세히 드러나 아버지 친일행적, 아들은 왜 미국에서 큰절을 했을까'라는 제목으로 별지2 기재 기사를 게재하였고, 피고가 운영하는 인터넷 한겨레뉴스 홈페이지(http://www.hani.co.kr)에도 같은 내용으로 위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 한다)를 게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가 이 사건 기사의 기초로 삼은 〈매일신보〉, 〈징병제시행 강사 적미영격멸 결의선양 전선공직자대회기록(이하 '전선공직자대회기록'이라 한다)〉 등은 일제가 개입하여 허위·과장되거나 왜곡·날조된 경우가 많아 신뢰도가 떨어지는 자료이고, 소외 B의 전선공직자대회에서의 발언은 일제의 사전 지시 및 검열로 강제되었을 가능성이 많으므로, 이를 근거로 한 이 사건 기사 역시 그 신빙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별지1 기재 반론보도문과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보도에 대한 반론보도를 하여야 한다(반론보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이를 강제하기 위한 배상금도 청구한다).

나. 관련 법리

구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2005. 1. 27. 법률 제7369호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이 규정한 반론보도청구요건인 '정기간행물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자'라 함은 원보도에서 지명되거나 그 보도내용과 개별적 연관성이 있음이 명백히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자기의 인격적 법익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그 보도내용에 대한 반론 내지 반박을 제기할 이익이 있는 사람을 가리키고, 원보도에서 지명된 사람이 청구할 수 있는 반론보도의 내용은 원보도의 사실적 주장과 관념적으로 연관성을 가지는 사실적 진술과 이를 명백히 전달하는 데 필요한 설명에 국한되지만, 여기서 원보도의 사실적 주장에는 원보도에서 직접적으로 기술한 사항은 물론 원보도가 직접적으로 기술하지 않은 사실이라도 전체적인 보도의 취지, 경위, 내용 등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표현하거나 암시하는 내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사실도 포함되고, 이에 대한 반론내용은 원보도의 내용을 반박하는 내용, 원보도를 보충하는 내용, 원보도의 불명확성을 해소하는 내용, 반론으로 주장하는 사실의 정당성을 위하여 필요한 증거나 증빙으로서의 새로운 사실 등도 포함될 수 있으며, 다만 법원은 신청인이 구하는 반론보도의 전체적인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신청인의 명예나 권리가 최대한 회복될 수 있도록 적절히 수정하여 인용할 수 있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다50747 판결 등 참조).

다. 인정사실

을 제1 내지 3,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보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① 원고의 부친인 소외 B는 일제강점기 말기에 경북도회 의원을 역임하였는데, 당시 발행된 〈매일신보〉 1943년 10월 3일자 2면에, 위 소외 B가 1943. 10. 2. 부민관 대강당에서 열린 전선공직자대회(全鮮公職者大會)에서 "징병제 실시에 보답하는 길은 일본 정신문화의 앙양으로, 각 면에 신사(神社)와 신사(神祠)를 건립하여 경신숭조 보은감사(敬神崇祖 報恩感謝)의 참뜻을 유감없이 발휘하도록 하여야 하며, 미영 격멸에 돌진할 것을 촉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는 기사가 보도되었다.

② 위 전선공직자대회 사무국이 1944. 1. 발간한 〈전선공직자대회기록〉에는 위 소외 B의 당시 발언이 위 〈매일신보〉의 기사 내용과 같은 취지로 보다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③ 이 사건 기사 중 소외 B의 발언내용은 위 〈매일신보〉의 기사와 대통령 소속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발간한 〈친일반민족행위관계사료집 Ⅷ〉 중 〈전선공직자대회기록〉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여 보도한 것이다.

④ 이 사건 기사는 위 〈매일신보〉의 기사 및 〈전선공직자대회기록〉 등을 종합하여, 원고의 부친인 소외 B의 일제강점기 당시의 행적에 대해서 보도하면서, 소외 B가 조선인들의 교육을 위해 학교를 설립하거나, 한국전쟁 당시 맥아더 장군을 찾아가 5대 궁궐과 4대문 등 우리 역사유물과 주요 문화재들을 보호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하였다는 등의 내용도 함께 게재하였다.

라. 판단

1) 언론중재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그 보도 내용에 관한 반론보도를 언론사 등에 청구할 수 있다. 언론중재법 상 반론보도는 이미 보도된 사실적인 주장에 대한 반론을 담은 사실적인 주장을 하여야 하는데, 보도의 내용이 개개의 사실적인 행위에 대한 평가나 보도자의 의견에 불과할 뿐 사실적 주장이라고 할 수 없는 경우 및 반론보도의 내용이 청구인들의 의견 또는 법적인 판단에 불과하여 반론보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는 경우에는 반론보도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가 구하고 있는 별지1 기재 반론보도문은 〈매일신보〉가 조선총독부의 기관지로서 조선총독부의 식민통치를 홍보·미화하는 선전매체였으므로, 그 기사내용을 그대로 믿을 수는 없고, 〈전선공직자대회〉는 일제에 의해 기획되고 전국의 공직자들을 강제동원한 행사이므로, 그 참석자들의 발언내용을 그대로 믿을 수는 없다는 것인데, 이는 이 사건 기사의 기초가 된 사료들에 대한 원고 측의 의견 또는 평가에 불과하여, 이 사건 기사를 통해 보도된 내용에 대한 반론을 담은 '사실적 주장'이라고 보기 어렵다.

2) 또한, 반론보도는 보도된 내용의 사실적 주장에 관하여 신청인이 보도 내용과 다른 새로운 사실적 주장을 제시함으로써 대립되는 두 가지 사실 사이에서 독자들에게 균형 잡힌 판단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서, 사실적 주장에 관하여 보도된 내용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반론보도가 인정될 뿐, 보도된 내용의 범위를 벗어난 반론보도는 그 제도의 취지 및 요건에 비추어 볼 때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는 별지1 기재 반론보도문을 통해 〈매일신보〉는 그 기사내용을 그대로 믿을 수는 없고, 〈전선공직자대회〉는 참석자들의 발언내용을 그대로 믿을 수는 없다는 내용으로 반론보도를 구하고 있는데, 이 사건 기사는 위 각 사료들의 신빙성 여부를 문제 삼아 보도한 것이 아니라, 단지 위 사료들에 기재된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여 보도한 것에 불과하여, 원고가 구하는 반론보도의 내용과 같이 위 사료들의 신빙성 문제를 다투는 것은 이 사건 기사에서 보도된 내용을 벗어난 것으로서, 직접적인 반론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언론중재법 상의 반론보도로서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3) 반론보도청구권은 피해자가 언론사의 보도 내용에 대하여 주장하는 반박 내용을 게재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에 불과하고, 언론사의 보도 내용을 진실에 부합하게 시정 보도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는 아니므로, 정정보도청구권과 달리 그 대상이 된 언론사의 보도 내용이 진실인지 여부는 그 권리 행사의 요건이 아니며, 더구나 이 사건의 경우 이상과 같은 이유로 원고가 구하는 반론보도문은 반론보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이 사건 보도의 허위성 여부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1〉 요구하는 반론보도문 생략
〈별지 2〉 대상기사 생략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9. 선고 2016가합7369, 2016가합7413(병합) 판결

원고 회사가 '블랙리스트 업체다'라는 표현은 의견표명이 아닌 진위를 판명할 수 있는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

- 원고 : 주식회사 A
- 피고 : 주식회사 경향신문사

[사실관계]

피고는 2016년 3월 10일자 〈인터넷 경향신문〉「[단독] 'C 시절 아리랑TV 입찰비리 특감', 봐주기로 끝나나」 및 다음 날인 11일자 〈경향신문〉「C 재임 시절 입찰비리 '봐주기 감사' 우려」라는 각 제하의 기사에서 원고가 낙찰된 입찰에 대해 비리 의혹을 제기하면서 원고가 별달리 타방송사 프로그램도 수주하지 못했던 업체이고, 블랙리스트 업체라고 보도했다. 이에 원고는 KBS를 포함해 타방송사와의 공급거래 매출액이 오히려 증가했고, 원고는 블랙리스트 업체가 아니라며 정정보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심리 결과, 재판부는 수주실적 및 블랙리스트의 존부 또는 기피업체 여부는 관련 자료에 의해 진위를 판명할 수 있는 사실의 적시라고 보아 의견표명이라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했고, 관련 증거들에 의해 허위성을 인정하여 정정보도 게재를 선고하였다. 이후 피고의 항소로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2심 계류 중이다(2017나2000191).
한편, 원고는 소제기에 앞서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하여 직권조정결정(반론보도)이 내려졌으나(2016서울조정601, 2016서울조정602(병합)), 원고 측 이의신청으로 자동소제기된 바 있다.

[판결요지]

□ **'블랙리스트' 표현의 사실의 적시 해당성에 대한 판단**

일반 독자가 신문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하였을 때, 이 사건 기사의 전후 맥락과 아울러 '블랙리스트'라는 단어 자체에서 이른바 '문제업체명단'을 떠올리거나 적어도 방송업계에서 '기피되는 업체'라는 인상을 받게 되는 점, 위와 같은 명단의 존부나 기피업체 여부는 관련 자료에 의하여 그 진위를 판명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블랙리스트 업체다'라는 표현은 사실의 적시라고 봄이 타당하다.

판결문

사 건	2016가합7369 정정청구 2016가합7413(병합) 정정청구
원 고	주식회사 A
피 고	주식회사 경향신문사
변론종결	2016. 11. 9.
판결선고	2016. 12. 9.

주 문

1. 피고는 이 사건 판결 확정 후 7일 이내에,
   가. 인터넷 경향신문(홈페이지 http://www.khan.co.kr) 초기화면의 상단 기사목록에 별지 1-1 기재 정정보도문을, 그 제목을 [ ] 안에 표시하여 통상 기사의 제목과 동일한 크기 및 활자체로 48시간 동안 게재하고, 위 제목을 클릭하면 위 정정보도문의 제목 및 본문이 별지 2-1 기재 대상기사의 제목 및 본문과 동일한 크기 및 활자체로 표시되게 하며, 48시간 게재 후에는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하고, 위 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위 정정보도문을 같은 형식으로 이어서 게재하고,
   나. 경향신문 08면에 별지 1-2 기재 정정보도문을, 그 제목 및 본문을 별지 2-2 기재 대상기사의 제목 및 본문과 동일한 크기 및 활자체로 하여 1회 게재하라.
2. 만약 피고가 제1의 가.항 및 나.항 기재 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제1항 기재 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각 일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고는 이 시간 판결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가. 인터넷 경향신문 'http://www.khan.co.kr' 홈페이지 초기 화면의 기사목록 상단에 별지 3-1 기재 정정보도문 제목을 [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시하고, 제목을 클릭하면 위 정정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정정보도청구 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위 정정보도문을 동일한 크기로 게시하며, 이후에는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함으로써 정정보도청구 대상기사 검색 시 함께 검색되도록 하고,

나. 경향신문 사회면에 별지 3-2 기재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되, 정정보도문의 제목 및 본문 활자는 정정보도청구 대상기사의 제목 및 본문 활자와 동일한 크기로 게재하라.

2. 피고가 제1항 기재 기간 안에 제1의 가.항 및 나.항의 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원고에게 위 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시까지 각 기사별로 매일 각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1) 재단법인 국제방송교류재단은 방송의 국제교류협력 사업을 통해 한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올바른 이해와 국제적 우호 친선의 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6. 4. 10.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국가 이미지 제고 및 국제 사회의 이해 증진을 위한 해외 위성방송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Arirang TV, Arirang Radio 등의 아리랑국제방송을 운영하고 있다(이하 위 재단법인을 '아리랑TV'라고 한다).

2) B는 2015.경 아리랑TV의 방송본부 ○○팀장으로 재직하였고 현재는 경영본부 △△팀장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한편 C는 2014. 12.경부터 2016. 2.경까지 아리랑TV의 대표자(사장)로 재직하였다.

3) 피고는 신문의 발행 및 판매업, 인터넷 미디어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일반일간신문인 '경향신문'을 발행하고, 인터넷신문인 '인터넷 경향신문'(홈페이지 http://www.khan.co.kr)을 전자적으로 발행하는 신문사업자이자 인터넷신문사업자이다.

4) 원고(대표자 사내이사 D)는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2000. 4. 14. 설립된 회사이다.

나. 'Join Us Korea' 시즌 1 제작·방영 및 땡기지 앱의 활용 등

1) 원고는, 아리랑TV가 2015. 2. 27.자로 입찰공고한 교양 자유소재 프로그램(24편, 각 60분)인 'Join us Korea'[63](조인 어스 코리아, 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고 한다)의 외주 제작에 관한 입찰참가를 신청하였고, 2015. 3. 20. 총 16개의 입찰참가업체 중 최고 점수(92.00점)를 획득하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됨에 따라 이후 아리랑TV와 이 사건 프로그램의 외주 제작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아리랑TV에 이 사건 프로그램 Season 1(시즌 1)을 제작·공급하였다.

2) 2015. 7.경부터 2015. 12.경까지 방영된 이 사건 프로그램은, 호스트와 패널이 한국의 문화와 역사를 포함하여 전 세계 국가의 다양한 정보, 사회·문화, 설문조사, 영상문제 등에 관한

63) 이후 프로그램 명칭이 'Touch Q'로 변경되었다.

각종 퀴즈를 풀어 가는 내용으로 아리랑TV 홈페이지, 동영상 업로드 · 공유 사이트인 유튜브,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페이스북,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땡기지'(Thankyouage.com, 이하 '땡기지 앱'이라고 한다)를 통해서도 시청이 가능하고, 시청자도 땡기지 앱을 통해 퀴즈 등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양방향 퀴즈 토크쇼이다.

3) 땡기지 앱은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가 개발한 양방향 방송 플랫폼으로서 실시간으로 방송을 볼 수 있는 방송 스트리밍, 방송 중 퀴즈를 표시하고 답 선택 및 하트 배팅에 참여할 수 있는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4) 한편 원고는 2015. 3. 24. E와 '원고는 땡기지 앱을 활용한 프로그램의 기획 · 제작을 담당하고, E는 방송 관련 제반 사항에 대해 원고와 우선 협의하며, 약정의 유효기간은 6개월로 하되, 상호 해지의 의사가 없는 경우 6개월 단위로 자동 연장된다'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E는 2015. 6.말경부터 원고에게 이 사건 프로그램 시즌 1에서의 땡기지 앱 활용 등과 관련한 기술지원 용역을 제공하였으며, 원고는 2015. 7.경부터 2015. 12.경까지 E에게 땡기지 앱의 플랫폼 사용료로 합계 2,64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Join Us Korea' 시즌 2의 외주 제작 입찰공고 및 원고의 입찰참가신청 등

1) 아리랑TV는 2015. 9. 2. 이 사건 프로그램 시즌 2(24편, 각 60분) 및 4 Angels, K-FOOD 등 프로그램 3건의 외주 제작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고 한다)을 공고하였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 공고번호	입찰건명	사업금액 (단위 : 천원)	입찰등록 마감일시	심사(PT) 일시	계약방법	계약 기한
KIBF-2015-**호	아리랑TV 프로그램 외주 제작업체 공모	1,407,000 천원 내	2015.9.14. 16:00	2015.9.22. 14시~17시	협상에 의한 계약	2016. 8. 31. 限

※ PT평가업체 대상은 9월 15~16일 외주 프로그램 기획안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함

2. 입찰등록 및 제출서류

가. 입찰등록일시 : 2015. 9. 2.~2015. 9. 14. 16:00까지 등록(입찰서, 제안서 등 제출)

3. 입찰참가 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자
나. 업종제한 : [비디오물제작업]업종 또는 [방송영상독립제작사]업종 등록을 필한 자
다. 최근 3년 이내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공공기관, 상장기업, 지상파 방송 및 케이블 TV 등에 영상물 납품실적 1,000만 원 이상 있는 업체
라. 입찰등록 마감일시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입찰등록을 완료한 자

2) 이 사건 프로그램 시즌 2에 관하여, 원고는 2015. 9. 14.경 아리랑TV에 이 사건 입찰공고에 따라 소정의 서류 등과 함께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도 그 무렵 아리랑TV에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라. 아리랑TV의 이 사건 입찰에 관한 1차 심사 등

아리랑TV는 그 무렵 이 사건 입찰에 관한 1차 심사(이하 '1차 심사'라고만 한다)를 위하여 B, G를 비롯한 내부 직원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이하 '1차 심사위'라고 한다)를 구성하였고, 1차 심사위는 2015. 9. 17. 제출 서류 등에 관한 1차 심사 결과 원고 및 F의 조정평균(최고 및 최저 점수를 제외한 평균)이 각 88.5점 및 85.25점으로서 모두 적격으로 판정하였으며, 아리랑TV는 같은 날 2차 심사의 진행에 관한 공시를 하였다.

마. 아리랑TV의 이 사건 입찰에 관한 2차 심사 등

1) 아리랑TV는 그 무렵 이 사건 입찰에 관한 2차 심사(이하 '2차 심사'라고만 한다)를 위하여 B(○○팀장), H(△△팀장), I(□□팀장) 및 J(●●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부교수), K(▲▲대학교 언론홍보영상학부 교수), L(■■대 언론홍보영상학부 교수), 총 6인(내부 2차 심사위원 3인 및 외부 2차 심사위원 3인)으로 된 심사위원회(이하 '2차 심사위'라고 한다)를 구성하였고, J가 2차 심사위원장을, M(재무회계팀 입찰 · 계약담당)이 2차 심사의 진행을 각각 맡게 되었다.

2) 2차 심사위원들이 2015. 9. 22. 원고 및 F에 부여한 2차 심사점수의 조정평균(최고 및 최저 점수를 제외한 평균)은 각 91.5점 및 85.25점이었고, 원고 및 F가 2차 심사결과 모두 적격으로 판정되어 이 사건 입찰가격에 관한 개찰이 실시되었는데, 입찰가격으로 원고는 647,816,400원을, F는 572,880,000원을 각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3) 위 입찰가격에 따른 원고 및 F의 각 가격점수가 17.69점 및 20점으로 계산되고, 위 가격점수와 2차 심사점수를 종합하여 최종적으로 100점 만점 중 원고가 90.89점을, F가 89.22점을 각 획득함에 따라 아리랑TV는 2015. 9. 24. 원고가 이 사건 프로그램 시즌 2에 관한 우선협상대상자로 결정되었다고 공시하였고, 이후 원고는 아리랑TV와 제작대금 647,816,400원(= 26,992,350원/편 × 24 편)에 이 사건 프로그램 시즌 2의 외주 제작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바. 원고에 관한 피고의 보도

피고 소속 기자는 2016.경 이 사건 입찰의 2차 심사과정이 녹취된 파일 등을 입수하여 이 사건 입찰 비리 의혹 등을 제기하는 일련의 기사를 작성하였는데, 원고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위 비리 의혹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 등의 특별감사가 이른바 '봐주기'로 종결될 우려가 있다는 내용의 다음 표 '제목'란 기재 각 기사(같은 표 '순번'란 기재 숫자에 따라 '이 사건 제O기사'와 같이 특정한다)를 작성하였으며, 피고는 2016. 3. 10. 인터넷 경향신문에 별지 2-1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제1기사를, 2016. 3. 11. 경향신문에 별지 2-2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제2기사를 각 게재하여 이를 보도하였다

기사 순번	매체명	보도일자	제목 / 지면수 내지 인터넷 주소(URL)	비고
1	인터넷 경향 신문	2016. 3. 10.	「[단독] 'C 시절 아리랑TV 입찰비리 특감', 봐주기로 끝나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3101354511&code=940705,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40705&artid=201603101354511)	갑 제1호증 별지 2-1
2	경향 신문	2016. 3. 11.	「C 재임 시절 입찰비리 '봐주기 감사' 우려」 08면(사회)	갑 제2호증 별지 2-2

사. 원고 대표자와 C의 특수관계에 관한 피고의 정정보도 등

1) 한편 D(원고 대표자)는 피고를 상대로 2016. 2. 5.자 경향신문 02면에 게재된 「C 재임 시절, 14억대 외주사 입찰 비리 의혹」이라는 제목의 기사에 관하여 언론중재위원회 2016서울조정193 · 194, 2016서울조정195 · 196(병합)호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조정신청을 하여 위 사건에서 2016. 3. 2. D와 피고는 '피고가 위 기사에서 원고 사장과 C 사장이 특수관계였다고 보도하였으나, 서로 알지 못하는 관계임이 확인되었다'는 내용의 정정보도를 하기로 조정합의하였다.

2) 피고는 2016. 3. 11.자 경향신문 02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정정보도문을 게재하였고, 한편 같은 신문 08면에 이 사건 제2기사가 게재되었다.

> 경향신문은 2016년 2월 5일자 2면 'C 재임 시절, 14억대 외주사 입찰 비리 의혹' 제목의 기사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A 사장과 C 사장이 특수관계였다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A 대표는 C 전 사장과 서로 알지 못하는 관계임이 확인돼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아. 원고의 조정신청 등

1) 원고는 2016. 4. 5.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제1, 2기사에 관하여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이라고 한다) 제18조 제1항에 따라 언론중재위원회 2016서울조정601, 602호로 정정보도 조정신청을 하였다.

2) 언론중재위원회 중재부는 위 조정신청 사건에서 2016. 4. 25. 피고는 반론보도 취지의 보도문을 경향신문 및 인터넷 경향신문에 게재하라는 등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고, 원고는 2016. 5. 2. 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8, 9, 10호증의 각 기재, 갑 제18, 19호증의 각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피고는 이 사건 제1, 2기사에서, ① '원고는 2011년 이후 3년 동안 별달리 타방송사 프로그램도 수주하지 못했던 업체다'(이하 '제1쟁점사항'이라고 한다)라는 사실을, ② '원고는 블랙리스트 업체다'(이하 '제2쟁점사항'이라고 한다)라는 사실을 각 보도하였으나, 제1, 2쟁점사항 모두 허위 사실이고, 위와 같은 허위 사실의 보도로써 원고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청구취지와 같이 이 사건 제1, 2기사에 관하여 정정보도를 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제1쟁점사항은 사실의 적시라기보다는 의견 표명에 가깝고, 그 내용도 원고 측 자료에 입각한 것으로서 원고의 KBS 외 수주실적은 전체 매출액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하여 허위라고 볼 수 없으며, 제2쟁점사항 또한 '블랙리스트'라는 표현이 반드시 문건으로서 관리되는 명단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원고가 방송사들 사이에 기피업체로 인식되고 있는 이상 허위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로서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

3. 판 단

가. 관련 법리

1) 언론중재법은 제2조 제14호에서 사실적 주장이란 "증거에 의하여 그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14조 제1항 본문에서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등이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해당 언론보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언론사,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에게 그 언론보도등의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제2항에서 "제1항의 청구에는 언론사등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신문 등 언론매체의 어떠한 표현행위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경우 그 표현이 사실을 적시하는 것인가, 아니면 단순한 의견의 표명인지를 구별하는 척도로서는, 그것이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하고 명확하며 역사성이 있는 것으로서 외부적으로 인식 가능한 과정이나 상태를 포함하여 보도 대상이 된 타인의 동기, 목적, 심리상태 등이 외부로 표출된 것은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추상적 판단 기준 자체도 언제나 명확한 것은 아니므로, 당해 기사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독자가 보통의 주의로 기사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기사에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기사의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다가 당해 기사가 게재된 보다 넓은 문맥이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등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8다60971 판결 참조).

3) 언론보도의 진실성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고, 또한 복잡한 사실관계를 알기 쉽게 단순하게 만드는 과정에서 일부 특정한 사실관계를 압축, 강조하거나 대중의 흥미를 끌기 위하여 실제 사실관계에 장식을 가하는 과정에서 다소의 수사적 과장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아 보도내용의 중요부분이 진실에 합치한다면 그 보도의 진실성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275 판결 참조).

4) 한편 언론중재법 제14조에 의하여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 등의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피해자는 그 언론보도 등이 진실하지 아니하다는 데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사실적 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어떠한 사실이 적극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의 증명은 물론 어떠한 사실의 부존재의 증명이라도 그것이 특정 기간과 특정 장소에서 특정한 행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점에 관한 것이라면 피해자가 그 존재 또는 부존재에 관하여 충분한 증거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증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의 부존재의 증명에 관한 것이라면 이는 사회통념상 불가능에 가까운 반면 그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증명하는 것이 보다 용이한 것이어서 이러한 사정은 그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자는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고 피해자는 그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성의 입증을 할 수 있다(대법원 2011. 9. 2. 선고 2009다5264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각 쟁점사항별 판단

1) 제1쟁점사항에 관한 판단

가) 사실의 적시 여부에 관한 판단

(1)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제1기사에서 원고에 대하여 “2011년 KBS VJ특공대 ‘연출조작시비’로 방송통신심의위로부터 경고까지 받아 3년 동안 별달리 타방송사 프로그램도 수주하지 못했던 업체다”(5단락)라고 보도하였음은 그 문구 자체로 명백하고, 이러한 문구에다가, 위 문구 중 ‘별달리’라는 단어의 의미나 그 해석에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원고가 타방송사 프로그램도 수주하지 못했는지 여부는 2011년 이후 원고의 KBS를 포함한 전체 방송사로부터의 수주실적을 관련 자료에 의하여 확인함으로써 그 진위 여부를 손쉽게 판명할 수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제1쟁점사항은 순수한 의견 표현이라고 보기 어렵고,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제2기사 역시 이와 같은 사실을 보도하였음을 전제로 피고가 이에 대한 정정보도를 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제2기사에는 제1

쟁점사항에 관한 아무런 언급이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허위 여부에 관한 판단

(1) 다음으로 제1쟁점사항이 허위인지 살피건대, 갑 제5, 11, 14호증,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는 KBS와 'KBS-2TV VJ특공대' 프로그램의 외주 제작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KBS에 위 프로그램을 제작·공급하였는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11. 2. 9. KBS에 대하여 KBS-2TV VJ특공대 2010. 11. 5.자 방송과 관련하여 '일본에서 한국 아이돌 그룹 팬들을 위한 이색 여행상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는 내용을 소개하면서, 한국에 거주하는 일본인을 한국을 방문한 일본인 관광객인 것처럼 연출하여 방송'(이하 '이 사건 연출방송'이라고 한다)한 사유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 위반으로 '경고'를 의결하였고, 그 무렵 방송통신위원회는 KBS에 대하여 경고의 제재조치를 하였으며, KBS는 원고에 대하여 위 프로그램의 1회분 제작 정지를 명하였다.

(나) 원고의 2012년부터 2015년까지의 각 연도별 총 매출액, 방송사별 공급거래 매출액 등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단위: 원]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총 매출액[64]	3,020,234,737	3,208,362,970	3,179,562,381	3,002,978,678
KBS	2,243,955,888	2,836,413,000	2,824,565,090	1,969,196,000
한***	119,700,000		218,413,000	128,712,449
국***	197,317,001	281,612,032	105,557,019	121,690,912
한***	70,134,848	37,523,038		108,454,547
조***	330,357,000			
씨***	32,000,000			
미***	2,730,000			
대***		19,974,900		
민***		3,000,000		
아***		5,000,000		
도***			3,000,000	
코***			2,727,272	
스***				40,000,000
여***				3,000,000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총 매출액[64]	3,020,234,737	3,208,362,970	3,179,562,381	3,002,978,678
아리랑TV				602,706,396
케이비에스 미디어				1,418,374
KBS 제외 매출액	752,238,849	347,109,970	329,697,291	1,005,982,678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연출방송 이후 2013년까지 원고의 KBS와의 공급거래 매출액은 오히려 증가하였고 2014년에도 2013년의 수준을 거의 그대로 유지하였으며, 이 사건 연출방송 직후 2012년 KBS 외 타방송사와의 공급거래 매출액도 약 7억 5,000만 원 상당으로 2013년 및 2014년보다 높음을 알 수 있고, 또 이 사건 연출방송으로 인하여 원고가 KBS로부터 받은 제재가 중하다고 볼 수는 없다(이 사건 제1기사에는 원고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았다고 적시되어 있는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경고 의결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경고 제재조치의 대상은 KBS이지 원고가 아님은 분명하나, 이와 같은 오류는 이 사건에 있어 원고와 관련된 주된 논점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별도로 그 허위 여부를 살피지 않는다).

(3) 한편 피고는 제1쟁점사항의 의미가 원고가 3년 동안 별달리 'KBS 외' 타방송사 수주실적이 없다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있으나, 일반 독자의 관점에서 볼 때, 제1쟁점사항의 의미는 "2011년 KBS VJ특공대 '연출조작시비'로 (...) 3년 동안 별달리 타방송사 프로그램도 수주하지 못했던 업체다"라는 문구상 KBS를 제외한 타방송사 수주실적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KBS를 비롯한 방송사 전반의 프로그램을 수주하지 못했다는 것으로 인식하게 되는바,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연출방송 이후 이로 인하여 3년 동안 KBS 및 KBS 외 타방송사 프로그램의 수주를 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은 허위임이 명백하다.

나아가 제1쟁점사항의 의미가 피고 주장처럼 원고가 3년 동안 별달리 KBS 외 타방송사 수주실적이 없다는 것이라 하더라도, 앞서 보듯 원고의 KBS 외 타방송사와의 공급거래 매출액이 미미하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KBS와의 공급거래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타방송사와의 공급거래 매출액이 그에 비하여 적다는 사실만으로, 원고의 프로그램 제작가능 여력이나 한도, 방송사별 수주의 집중정도 등에 관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원고를 타방송사 프로그램도 별달리 수주하지 못하는 업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달리 피고가 이에 관한 별다른 소명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3년 동안 별달리 KBS 외 타방송사 수

64) 갑 제14호증에 의하면 총 매출액에는 원고의 임대료 수입이 포함되어 있고, 한편 갑 제5호증의 매출과세표준과 비교하여 백만 원 단위에서 다소간의 차이가 있다.

주실적이 없다는 의미 역시 진실하지 아니하다고 봄이 타당하다(피고는 원고의 홈페이지에 2010년 이후 타방송사 수주실적이 공개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제1쟁점사항은 원고 측 자료에 기초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하나, 설령 원고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자료에 의하여 피고가 그와 같이 믿을 만한 상당성이 있다 하더라도 원고가 언론중재법상의 정정보도청구권만을 행사하는 이 사건에서 위법성 조각이 문제될 여지는 없다).

다) 소결

그러므로 피고가 이 사건 제1기사에서 보도한 제1쟁점사항은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2) 제2쟁점사항에 관한 판단

가) 사실의 적시 여부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제1기사에서 "이 같은 블랙리스트 외주업체가 C사장이 들어오면서 6개월에 6억 원이나 넘는 예산이 투입된 아리랑TV 외주사로 선정된 것이다"(10단락)라고 보도하고, 이 사건 제2기사에서 "A는 (...) '블랙리스트' 업체다"(5단락)라고 하여 제2쟁점사항과 같이 '원고가 블랙리스트 업체다'라고 보도하였음은 그 문구 자체로 명백하고, 나아가 일반 독자가 신문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하였을 때, 이 사건 제1, 2기사의 전후 맥락과 아울러 '블랙리스트'라는 단어 자체에서 이른바 '문제업체명단'을 떠올리거나 적어도 방송업계에서 '기피되는 업체'라는 인상을 받게 되는 점, 위와 같은 명단의 존부나 기피업체 여부는 관련 자료에 의하여 그 진위를 판명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제2쟁점사항은 사실의 적시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 허위 여부에 관한 판단

(1) 다음으로 제2쟁점사항이 허위인지 살피건대,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피해자가 그 언론보도 등이 진실하지 아니하다는 데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하므로 원칙적으로 원고가 블랙리스트 업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할 것이나, 이는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의 부존재의 증명에 가깝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가 이를 증명하는 것은 상당히 곤란한 반면 그 근거가 존재한다고 증명하는 것이 보다 용이하므로 블랙리스트 업체라는 평가를 받을 만한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는 원고에 대하여 이러한 평가를 받을 근거가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피고가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자료 등을 제시할 부담을 지고 원고는 그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위 자료를 토대로 특정한 결론에 이르게 된 추론 과정을 반박하는 방법으로 허위성의 증명을 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앞서 본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 갑 제1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앞서 보듯 원고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약

30억 원대의 총 매출액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점, ② KBS가 원고의 주된 공급거래처이기는 하나 원고는 2012년 이후 다른 방송사와도 공급거래를 지속하고 있는 점, ③ KBS는 원고가 제작·공급한 프로그램의 이 사건 연출방송으로 인하여 경고 제재조치를 받았음에도 정작 원고와의 외주 제작에 관한 계약을 종료시키지 아니하고 계약관계를 계속 유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KBS는 경고 제재조치를 받은 이후에 원고에게 '「사랑의 가족」 제작사로서 KBS의 이미지 제고에 기여한 공'으로 최우수제작사 상패(2011. 5. 27.)를, '「VJ특공대」 제작사로서 KBS의 이미지 제고에 기여한 공'으로 우수제작사 상패(2012. 11. 19.)를, '「생방송 사람을 찾습니다」 제작사로서 프로그램의 완성도와 경쟁력을 높인 공'으로 우수제작사 상패(2013. 11. 19.)를 각 수여하였고, 그 외에도 원고는 사단법인 독립제작사협회, 한국교육방송공사,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 사단법인 한국YWCA연합회 등으로부터 원고가 제작·공급한 프로그램 등과 관련한 각종 상을 수상하였던 점, ⑤ 설령 피고 주장처럼 블랙리스트라는 표현이 반드시 문건으로 관리되는 명단을 의미하지는 않고 방송업계에서 일감주기를 꺼려하는 기피업체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연출방송에 따른 KBS에 대한 경고 제재조치 외에 원고가 위와 같은 기피업체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제2쟁점사항은 허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다) 소결

그러므로 피고가 이 사건 제1, 2기사에서 보도한 제2쟁점사항은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다. 정정보도의 내용 및 방법 등

1) 이 사건 제1기사를 통해 제1쟁점사항 및 제2쟁점사항에 관하여, 이 사건 제2기사를 통해 제2쟁점사항에 관하여 각 진실하지 아니한 사실적 주장이 보도됨으로써 원고의 명예나 신용이 훼손되는 피해를 입었을 것이라는 점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언론중재법 제14조에 기하여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에 관한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2) 나아가 피고가 게재할 정정보도문의 내용 및 보도 방법·형식 등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제1, 2기사의 분량 및 그 중 진실하지 아니한 사실적 주장이 차지하는 정도, 표현 방법,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원고가 구하는 범위 내에서 인터넷 경향신문으로 보도된 이 사건 제1기사의 경우 별지 1-1 기재 정정보도문을 보도하도록 하되, 그 제목을 인터넷 경향신문 초기화면의 상단 기사목록에 통상기사의 제목과 동일한 크기 및 활자체로 게재하도록 하고, 위 제목을 클릭하면 위 정정보도문의 제목 및 본문이 이 사건 제1기사의 제목 및 본문과 동일한 크기 및 활자체로 표시되도록 하는 등으로, 경향신문으로 보도된 이 사건 제2기사의 경우 별지 1-2 기재 정정보도문을 보도하도록 하되(이 사건 제2기사에 제1쟁점사항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인정 범위를

초과하는 내용의 정정보도에 관한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 제목 및 본문은 이 사건 제2기사의 제목 및 본문과 동일한 크기 및 활자체로 하도록 하고, 이 사건 제2기사가 게재된 08면과 같은 지면에 게재하도록 하는 등 주문과 같이 게재 방법을 정한다.

3) 아울러 위 의무이행에 대한 간접강제로서 피고에 대하여 위 각 정정보도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 의무의 이행완료일까지 각 일 1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간접강제금의 지급을 명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별지 1-1〉 인터넷 경향신문 관련 정정보도문

1. 제목

「[단독] 'C 시절 아리랑TV 입찰비리 특감', 봐주기로 끝나나...」 관련 정정보도문

2. 본문

인터넷 경향신문은 2016. 3. 10.자 「[단독] 'C 시절 아리랑TV 입찰비리 특감', 봐주기로 끝나나...」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A가 2011년 이후 3년 동안 별달리 타방송사 프로그램도 수주하지 못했던 업체이고, 방송업계의 블랙리스트 업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A가 2011년 이후 3년 동안 별달리 타방송사로부터 프로그램도 수주하지 못했다거나, 방송업계의 블랙리스트 업체라는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으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별지 1-2〉 경향신문 관련 정정보도문

1. 제목

「C 재임 시절 입찰비리 '봐주기 감사' 우려」 관련 정정보도문

2. 본문

경향신문은 2016. 3. 11.자 「C 재임 시절 입찰비리 '봐주기 감사' 우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A가 방송업계의 블랙리스트 업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A가 방송업계의 블랙리스트 업체라는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으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별지 2-1~2-2〉 대상기사 생략

〈별지 3-1~3-2〉 요구하는 정정보도문 생략

수원지방법원 2016. 12. 22. 선고 2016가합373, 2016가합380(병합) 판결

가분적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면 일부에 대해 벌금 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추후보도청구할 수 있다

- 원고 : A
- 피고 : 주식회사 경인일보

[사실관계]

피고는 2015년 1월 19일 및 같은 해 2월 19일 〈경일일보〉 및 〈인터넷 경인일보〉에 「○○ 재향군인회장이 수천만 원 횡령」 및 「○○ 재향군인회장 '공금횡령' 정황」 제하로 원고가 업무상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을 예정이라고 보도하였다. 이후 원고의 업무상횡령 혐의 중 상당부분이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고, 원고가 사용을 인정한 100여만 원에 한하여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됐다. 이에 원고는 보도된 피의사실에 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추후보도 및 정정보도, 손해배상, 기사삭제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심리 결과, 재판부는 원고가 일부 혐의에 대해 벌금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와 별개로 무혐의 처분 받은 점에 관하여 추후보도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 추후보도 게재를 명하였고, 객관적 사실을 보도한 데 대해서는 원고의 정정보도청구 및 손해배상청구, 기사삭제청구를 기각하였다. 이후 원고가 항소하여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2심 계속 중이다(2017나8458).

한편, 원고는 소제기에 앞서 언론중재위원회에 추후보도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하여 직권조정결정(추후보도 및 유감표명)이 내려졌으나(2015경기조정218 · 219, 2015경기조정220 · 221(병합)), 원고 측 이의신청으로 자동소제기된 바 있다.

[판결요지]

□ **추후보도청구 당부에 대한 판단**

원고의 업무상횡령 혐의 중 대부분(52,165,013원 중 1,420,920원을 제외한 나머지 50,744,093원 부분)에 관하여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짐으로써 그 형사절차가 종결된 사실, 이와 같이 원고의 업무상횡령 혐의는 가분적인 것이어서 검사가 혐의가 인정되는 부분과 구분하여 별도로 혐의없음 처분을 한 사정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의 경우도 언론중재법 제17조 제1항에서 정한 형사절차가 무죄판결과 동등한 형태로 종결되었을 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판결문

사 건 2016가합373 추후보도 및 손해배상
2016가합380(병합) 추후보도 및 손해배상
원 고 A
피 고 주식회사 경인일보
변론종결 2016. 11. 17.
판결선고 2016. 12. 22.

주 문

1. 피고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7일 내에 경인일보 사회면에 별지 1 기재 추후보도문을 2단으로 1회 게재하되, 제목 활자는 별지 3 기재 기사의 제목과 부제목의 중간 크기로, 본문 활자는 별지 3 기재 기사의 본문과 같은 크기로 하여 게재하라.
2. 피고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7일 내에 피고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kyeongin.com) 사회면의 기사 목록 상단에 별지 1 기재 추후보도문 제목을 [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별지 1 기재 추후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고, 그 추후보도문을 별지 5, 6 기재 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이어서 게재하라.
3. 피고가 제1, 2항 기재 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각 이행 완료일까지 1일 3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4.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5.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별지 2 기재와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2. 29.부터 2015. 2. 24.까지 ○○도재향군인회의 회장직을 맡았던 사람이고, 피고는 일간신문 '경인일보'와 인터넷신문 '경인일보'(인터넷 주소 www.kyeongin.com)를 발행

하는 언론사이다.

나. 대한민국재향군인회는 2014. 10. 13.부터 2014. 10. 17.까지 ○○도재향군인회에 대한 정기감사를 실시하여 2014. 10. 28. ○○도재향군인회에 '○○도재향군인회장인 원고가 32개월 동안 3,380만 원의 지휘활동비를 증빙서류 없이 사용하였고, 법인카드로 2,350만 원 상당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부적절하게 자금을 집행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된 감사결과를 통보하였다.

다. 원고의 재감사 요청에 따라 대한민국재향군인회는 2014. 11. 17.부터 2014. 11. 18.까지 ○○도재향군인회에 대한 재감사를 실시하였고, 2014. 12. 1. 원고에게 지휘활동비 등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라. 이후 대한민국재향군인회는 2015. 1. 8. 원고에게 원고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2015. 1. 27. 열린다고 알리면서 출석할 것을 통지하였고, 2015. 1. 28. 재차 원고에게 원고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2015. 2. 3. 열린다고 알리면서 출석할 것을 통지하였으며, 2015. 2. 3. 원고에게 원고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2015. 2. 9. 열린다고 알리면서 출석할 것을 통지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가 2015. 2. 9.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였으나, 징계위원회는 원고에 대하여 별다른 징계조치를 하지 않았다.

마. 피고는 취재를 통해 원고가 지휘활동비와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징계절차에 회부되어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요구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2015. 1. 19. 경인일보 사회면 제22면에 "○○재향군인회장이 수천만 원 횡령"이라는 제목으로 별지 3 기재 기사를 실었고, 같은 날 인터넷신문에 "'○○재향군인회장이 판공비 등 수천만 원 횡령' 의혹 제기"라는 제목으로 별지 3 기재 기사와 같은 내용의 별지 5 기재 기사를 올렸다. 이후 피고는 수원남부경찰서가 원고를 위와 같은 횡령 혐의로 소환 조사할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2015. 2. 10. 경인일보 사회면 제22면에 "○○ 재향군인회장 '공금횡령' 정황"이라는 제목으로 별지 4 기재 기사를 실었고, 같은 날 인터넷신문에 같은 제목으로 별지 4 기재 기사와 같은 내용의 별지 6 기재 기사(이하 위 기사들을 통틀어 '이 사건 기사')를 올렸다.

바. 수원지방검찰청 검사는 2015. 6. 30. '원고가 2012. 3. 5.부터 2014. 12. 31.까지 ○○도재향군인회의 법인카드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52,165,013원을 횡령하였다'는 혐의에 대하여 원고가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한 1,420,920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원고가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한편 원고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한 1,420,920원에 관하여 2015. 7. 29. 수원지방법원(2015고약11981)으로부터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이후 확정되었다.

사. 원고는 2015. 12. 10. 언론중재위원회에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와 동일한 내용으로 추후보도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언론조정신청을 하였고, 언론중재위원회는 손해배상 없이 유감표명과 추후보도를 하기로 하는 내용의 직권조정결정을 하였으나, 원고의 이의신청으로 이 사건 소송으로 이행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6, 7, 10, 11, 18, 19호증, 을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추후보도청구에 대한 판단

가. 쌍방 주장의 요지

1) 원고

원고의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져 형사절차가 종결되었으므로 피고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형사 절차가 종결된 사실을 추후 보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원고의 업무상횡령 혐의 중 일부에 대하여 유죄가 인정되어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졌으므로, 원고의 경우는 언론중재법 제17조 제1항에서 정한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되었을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언론중재법 제17조 제1항에 따르면, 언론에 의하여 범죄혐의가 있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 또는 공표된 사람은 그에 대한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되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언론사에 이 사실에 관한 추후보도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다. 여기서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되었을 때'라 함은 보도된 내용이 진실이 아닌 사실임이 법원의 무죄판결, 검사의 무혐의처분 등으로 밝혀진 경우를 의미한다.

원고가 업무상횡령 혐의 중 1,420,920원에 관하여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보았다.

그러나 언론사인 피고는 이 사건 기사를 통하여 '원고가 업무상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을 예정이다'라고 보도하였는데, 이후 원고의 업무상횡령 혐의 중 대부분(52,165,013원 중 1,420,920원을 제외한 나머지 50,744,093원 부분)에 관하여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짐으로써 그 형사절차가 종결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와 같이 원고의 업무상횡령 혐의는 가분적인 것어서 검사가 혐의가 인정되는 부분과 구분하여 별도로 혐의없음 처분을 한 사정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의 경우도 언론중재법 제17조 제1항에서 정한 형사절차가 무죄판결과 동등한 형태로 종결되었을 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위와 같이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진 부분에 관하여 언론중재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혐의없음으로 형사 절차가 종결된 사실을 추후보도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앞서 인정한 사실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추후보도의 내용은 별지 1 기재와 같이, 보도방법은 일간신문의 경우 '이 판결 확정일부터 7일 내에 경인일보 사회면에 별지 1 기재 추후보도문을 2단으로 1회 게재하되, 제목 활자는 별지 3 기재 기사의 제목과 부제목의 중간 크기로, 본문 활자는 별지 3 기재 기사의 본문과 같은 크기로 하여 게재'하는 방식으로, 인터넷 신문의 경우 '이 판결 확정일부터 7일 내에 피고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kyeongin.com) 사회면

의 기사 목록 상단에 별지 1 기재 추후보도문 제목을 [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별지 1 기재 추후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고, 그 추후보도문을 별지 5, 6 기재 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이어서 게재'하는 방식으로 하되, 위 각 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하여 위 각 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각 이행 완료일까지 1일 30만 원의 비율로 간접강제금을 정함이 적절하다.

3. 정정보도청구[65], 기사삭제청구 및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가. 쌍방 주장의 요지

1) 원고

피고는 이 사건 기사를 통해 원고가 수천만 원의 ○○도재향군인회 공금을 횡령하였다는 허위사실을 보도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별지 2 기재 정정보도문을 게재하고 이 사건 기사 중 인터넷 신문에 실린 기사를 삭제할 의무가 있고, 원고에게 이와 같은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이 사건 기사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피고가 진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판단

1) 이 사건 기사의 허위 여부

언론중재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정정보도를 청구하려면 당해 언론보도가 사실적 주장에 관한 것으로서 진실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여기서 언론보도의 진실성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일 때 인정되고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며, 복잡한 사실관계를 알기 쉽게 단순하게 만드는 과정에서 일부 특정한 사실관계를 압축, 강조하거나 대중의 흥미를 끌기 위하여 실제 사실관계에 장식을 가하는 과정에서 다소의 수사적 과장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아 보도내용의 중요 부분이 진실에 합치한다면 그 보도의 진실성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3다52142,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49766 판결 등 참조).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하다는 데 대한 증명책임은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자가 부담한다(대법원 2011. 9. 2. 선고 2009다5264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허위기사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당하였다고 주장하며 기사삭제를 청구하는 피해자는 그 기사가 진실하지 아니하다는 데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다60950 판결 참조).

---

65) 원고가 청구취지에서 정정보도문의 게재를 구하고 있고, 정정보도문의 내용에도 '추후 정정보도'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추후보도 청구뿐만 아니라 정정보도청구도 함께 구하는 것으로 선해하여 판단한다.

이 사건 기사는 '○○도재향군인회장인 원고가 판공비 등 수천만 원의 공금을 횡령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도 내 시·군 지회장이 원고에 대한 징계요구를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대한민국재향군인회가 원고에게 징계절차에 출석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위와 같은 의혹에 대하여 원고는 모두 부인하고 있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소명자료도 제출하였다'는 내용과 '수원남부경찰서가 위와 같은 의혹에 대하여 원고를 소환하여 조사할 예정이다'는 내용으로 요약된다. 즉, 피고는 이 사건 기사를 통해 원고가 업무상횡령을 하였다고 단정적으로 보도한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의혹이 제기되어 원고에 대한 징계절차, 수사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보도한 것이고, 앞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는 모두 객관적 사실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 원고의 주장처럼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그와 같이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만, 이 사건 기사의 제목이 '○○재향군인회장이 수천만 원 횡령', '○○ 재향군인회장 공금 횡령 정황'으로 되어 있어서 그 제목만 보았을 때는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마치 원고가 ○○도재향군인회의 공금을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읽힐 여지도 있으나, 이는 사실관계를 압축하여 제목으로 표현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기사의 본문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앞서 본 것처럼 원고가 업무상횡령을 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원고에 대한 징계절차, 수사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객관적 사실을 보도한 것으로 넉넉히 이해된다.

2) 위법성 조각 여부

언론·출판을 통해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다(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5다58823 판결 참조).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기사에 적시된 사실은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것으로 인정되고, 그 내용 역시 ○○도재향군인회장인 원고의 비리 혐의와 관련된 것이므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공익을 위하여 이 사건 기사를 보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가 원고를 비방할 목적으로 이 사건 기사를 통해 허위사실을 보도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정정보도청구, 기사삭제청구 및 손해배상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앞에서 인정한 범위 내에서 정당하므로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별지 1〉 추후보도문

1. 제목

"○○재향군인회장이 수천만 원 횡령" 관련 추후보도문

2. 본문

본 신문사는 지난 2014. 1. 19. 및 2014. 2. 10. 각 경인일보 사회면 제22면과 인터넷 경인일보에 A ○○도재향군인회장이 수천만 원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징계절차와 수사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취지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에서 A ○○도재향군인회장은 52,165,013원 중 1,420,920원을 제외한 나머지 50,744,093원 부분에 관하여 사적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으므로, 이에 추후보도를 합니다. 끝.

〈별지 2〉 청구취지

청구취지

1. 피고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일 이내에 경인일보 1면에 아래 정정보도문을 3단으로 게재하되, 정정보도문의 제목 활자는 조정대상기사의 제목 활자인 "○○재향군인회장 수천만원 횡령" 크기와 동일하게 보도하고, 본문 활자는 조정대상기사의 제목과 부제목의 중간 크기 활자와 같게 한다.

제목 : "○○재향군인회장이 수천만원 횡령" 사실 확인 결과 허위보도로 판명되어 추후 정정보도함

본문 : 본 신문은 지난 1월 19일자 사회면에 "○○재향군인회장이 수천만원 횡령"이라는 제목으로, 2월 10일에는 ○○재향군인회장 "공금횡령" 정황이라는 제목으로 A 회장이 수천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이 보도로 인하여 A 회장이 '경찰과 검찰에서 수사를 받았으며 5천여만 원 횡령은 혐의가 없음'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보도로 인해 당사자인 A 회장에게 가해진 명예훼손의 정도는 그 어떤 표현으로도 되돌려 놓을 수 없는 아픔을 드린 것을 경인일보의 이름을 걸고 사죄합니다. 다시 한 번 허위보도로 인한 A 회장의 명예를 훼손시킨 것을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이에 정중하게 정정보도를 드립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2. 피고는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인터넷 경인일보 홈페이지(http://www.kyeongin.com) 1면의 기사 목록 앞부분에 제1항의 보도문을 [ ] 안에 표시하여 72시간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누르면 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고, 조정 대상기사 본문 하단에도 제1항의 보도문을 이어서 보도하게 한다. 72시간 이후에는 최초에 보도된 1. 19.자, 2. 10.자 인터넷 기사는 삭제한다.
3. 피고가 제1, 2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이행이 이루어진 날까지 매일 5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가 위 게재 방법과 동일하게 보도하지 않을 경우 피고는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4.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라. 끝.

〈별지 3 ~ 6〉 대상기사 생략

제3장
기사삭제청구 등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1. 14. 선고 2015카합50504 결정(확정)

종교인에 대한 종교적인 비판은 모욕적이거나 인신공격이 아닌 한 폭넓게 허용된다

- 채권자 : A 외 1명
- 채무자 : 뉴스앤조이

[사실관계]

채권자들은 학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가하는 학습 수련회 및 채권자들이 운영하는 학원의 신입생을 모집하는 내용의 전단지를 작성 및 배포하였다. 채무자는 2015년 10월 2일자 〈뉴스앤조이〉에 「○○○ 학습법, B 목사를 기억하는가」라는 제목으로 위 전단지가 종교적 신앙심을 이용한 입시학원 선전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칼럼을 게재했다. 이에 채권자들은 위 칼럼이 모멸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으로서 채권자들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다며 기사삭제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하였다.
심리 결과, 1심 법원은 이 사건 칼럼은 전단지의 내용을 기초로 한 비판적 의견 제시이고, 종교적 비판은 폭넓게 허용된다고 보아 채권자들의 신청을 기각했다. 이후 원고들이 항고하였으나, 2심 법원도 같은 이유로 기각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16라20102), 대법원도 원고들의 재항고를 기각하였다(대법원 2016마5418).

[결정요지]

□ **종교적 비판으로 인한 인격권 침해에 대한 판단**

채권자 B는 목사로서, 종교인들의 신앙심을 바탕으로 하는 그 직업적 특성상 그에 대한 종교적인 비판은 모욕을 주거나 인신공격을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한 폭넓게 허용된다고 보아야 하는 점, 이 사건 전단지가 신입생을 모집하면서 거기에 종교적인 가치를 부여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상, 같은 종교인이 그 행태를 종교적인 차원에서 비판하면서 종교인들의 신앙심이나 감정에 호소하는 방편으로 사용한 비판적 의견을 두고, 그것이 다소 과격하다 해서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표현에 해당한다고 쉽게 단정해서는 아니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표현들이 채권자들에 대한 인신공격으로서 채권자들의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결정문

사　　건　2015카합50504　인터넷게시물삭제가처분
채 권 자　1. A
　　2. B
채 무 자　뉴스앤조이

주 문

1.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한다.

신 청 취 지

주위적으로, 채무자는 채무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newsnjoy.or.kr의 칼럼에 C가 작성한 '○○○ 학습법, B 목사를 기억하는가'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삭제하라. 예비적으로, 채무자는 채무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newsnjoy.or.kr의 칼럼에 C가 작성한 '○○○ 학습법, B 목사를 기억하는가'라는 제목의 게시물 중 별지 목록 기재 표현을 삭제하라. 간접강제.

이 유

1. 기초사실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소명된다.

가. 채권자 A는 서울 동대문구 ○○로 2*에 있는 □□□ 비전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고, 채권자 B는 목사로서 채권자 A와 함께 이 사건 학원을 운영하며 일부 강의도 담당하고 있다.

나. 채권자들은, 학부모와 자녀가 함께 수련회에 참가하여 채권자 B가 제안한 '○○○ 학습법'을 배울 기회를 갖도록 '○○○ 온가족 학습 수련회'를 모집하는 내용이 전면에 기재되고, 일반 학생을 대상으로 이 사건 학원의 신입생을 모집하는 내용이 후면에 기재된 전단지(이하 '이 사건 전단지'라 한다)를 작성하여 배포하였다.

다. 채무자는 기독교 인터넷 신문사로서, 2015. 10. 2. C가 작성한 '○○○ 학습법, B 목사를 기억하는가'라는 제목의 칼럼(이하 '이 사건 칼럼'이라 한다)을 홈페이지(www.newsnjoy.or.kr)에

게재하였다.

라. 이 사건 칼럼은, '이 사건 전단지는 종교적 신앙과 세속적 성공을 영합한 것으로서 신앙심을 이용한 입시학원 선전에 불과하므로, 그로 인하여 신앙적 열의와 세속적 노력이 구분되지 않고, 성경도 그러한 방식으로 해석될 것이며, 결국 사회적 성공과 기득권을 추구하는 입장에 편승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다'는 취지의 내용인데, 이 사건 칼럼에는 별지 목록 기재 각 표현들이 포함되어 있다.

2. 채권자들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칼럼은 이 사건 학원의 설립목적을 폄훼하고 사실을 왜곡하여 채권자 B의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비난하며 '출세를 위한 성경 끼워 팔기', '신앙적 사기', '유치하고 수준 낮기 짝이 없다' 등의 모멸적이고 경멸적인 인식공격을 하는 내용으로서, 채권자들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다. 이에 채권자들은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하기에 이르렀다.

3. 판 단

가. 관련 법리

1) 민법상 불법행위가 되는 명예훼손이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 인격적 가치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이 있는 사실을 명시적으로 적시한 표현행위가 명예훼손이 될 수 있음은 물론이지만, 의견 내지 논평을 표명하는 형식의 표현행위라 하더라도 그 전체적 취지에 비추어 의견의 근거가 되는 숨겨진 기초사실에 대한 주장이 묵시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데다가 그 사실이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수 있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나 순수하게 의견만을 표명하는 것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될 여지가 없고, 표현행위에 적시된 사실 중 허위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허위사실이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으며, 단순히 타인의 주관적인 명예감정을 침해하는 표현행위를 하였다거나 그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5다65494 판결 등 참조).

2)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그중에서도 특히 이 사건과 같이 언론을 상대로 기사의 삭제의무를 부담시키는 이른바 만족적 가처분에 있어서는, 채권자로서는 권리가 종국적으로 만족을 받는 것과 동일한 결과에 이르게 되는 반면, 채무자로서는 본안소송에서 다투어 볼 기회조차 없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기한 권리를 위협받게 될 위험이 크므로, 이러한 가처분을 발령하기 위해서는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하여 고도의 소명이 요구된다.

나. 피보전권리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소명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칼럼의 내용이 채권자들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거나 명예훼손과는 별개 유형의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위한 피보전권리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는다.

1) 이 사건 전단지는 전면에서는 종교적 신앙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수련회를 소개하고 후면에서는 수능성적 향상을 기대하는 신입생을 모집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이 사건 칼럼은 이 사건 전단지의 위와 같은 내용을 기초로 '종교적 신앙심을 이용해 수능성적의 향상을 추구하는 것은 종교적으로 위험한 접근이다'라는 취지로서, '종교적 신앙과 세속적 성공의 영합', '신앙심을 이용한 신입생 모집' 등과 같이 다소 과격하고 부정적, 비판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것일 뿐,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다거나 허위사실이나 사실의 왜곡을 기반으로 의견을 개진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2) 채권자들이 문제 삼는 '출세를 위한 성경 끼워 팔기', '사악하기 그지없다', '신앙심을 이용한 행태', '전문성 부족', '이 홍보 찌라시는 유치하고 수준 낮기 짝이 없다', '신앙적 사기', '해괴한 책', '아간과 아나니아의 신앙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등의 표현은 그 자체로 의견 표명이나 공격적인 비유적 표현에 불과하고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로 보기도 어렵다.

3) 이 사건 칼럼에 사용된 일부 표현들의 수위가 다소 과격하기는 하나, 채권자 B는 목사로서, 종교인들의 신앙심을 바탕으로 하는 그 직업적 특성상 그에 대한 종교적인 비판은 모욕을 주거나 인신공격을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한 폭넓게 허용된다고 보아야 하는 점, 이 사건 전단지가 신입생을 모집하면서 거기에 종교적인 가치를 부여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상, 같은 종교인이 그 행태를 종교적인 차원에서 비판하면서 종교인들의 신앙심이나 감정에 호소하는 방편으로 사용한 비판적 의견을 두고, 그것이 다소 과격하다 해서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표현에 해당한다고 쉽게 단정해서는 아니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표현들이 채권자들에 대한 인신공격으로서 채권자들의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 보전의 필요성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소명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설령 이 사건 칼럼에 일부 허위사실이나 사실의 왜곡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채권자들로서는 정정보도나 반론보도청구를 통해 잘못된 사실관계를 바로 잡거나 다른 측면에서의 시각을 제시할 수 있고, 본안소송을 통해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로 차단하는 방법 등과 같이 표현 및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을 조화롭게 보호하기 위한 잠정적인 조치(이를 테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2항, 제4항이 정한 임시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칼럼으로 인하여 채권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급박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점, 채권자들이 일부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이는 본안소송을 통해 충분히 전보받을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가처분을 발령하여 이 사건 칼럼이나 별

지 목록 기재 각 표현들을 즉시 삭제할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는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삭제를 요구하는 표현 생략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5. 10. 선고 2016카합216 결정(확정)

공적 인물의 행위는 공적 관심 사안으로서 그에 관해 의혹을 품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된다

- 채권자 : A
- 채무자 : 주식회사 시사저널사

[사실관계]

채무자는 2016년 4월 20일자 〈인터넷 시사저널〉에 「어버이연합, 청와대가 보수집회 지시했다」 및 같은 달 22일자 〈인터넷 시사저널〉 및 다음날 〈시사저널〉(1384호)에 「청와대 행정관이 집회 열라고 문자 보냈다」라는 각 제목으로 채권자가 어버이연합에 한일위안부 합의안 지지 집회를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채권자는 허위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이 심각하다며 위 각 기사에 대해 기사삭제 및 출판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다.
심리 결과, 재판부는 기사의 허위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공적 지위에 있는 채권자의 공적 수행에 대한 보도로서 공적 관심 사안인바, 채권자의 인격권이 언론의 자유보다 우선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채권자의 신청을 기각하였다.

[결정요지]

□ 기사삭제청구의 요건으로서 기사의 허위성에 대한 증명책임

허위 기사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당하였다고 주장하며 기사삭제를 청구하는 피해자는 그 기사가 진실하지 아니하다는 데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 공적 인물의 인격권과 언론의 자유 간 비교형량

채권자는 청와대 행정관으로서 상당한 공적인 지위에 있고, 해당 사안은 채권자가 그러한 지위에서 행한 행동에 대한 것으로 공적 관심 사안이며, 채무자가 이 사건 기사와 같은 내용의 의혹을 품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도 있어 보인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비록 채무자의 보도 내용이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현 단계에서 채권자의 인격권이 언론의 자유보다 우선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그에 따라 신청취지 기재와 같이 채무자가 보도한 기사를 삭제할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결정문

사 건 2016카합216 출판금지 등 가처분
채 권 자 A
채 무 자 주식회사 시사저널사

주 문

1.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신청취지

채무자는 인터넷 시사저널(http://www.sisapress.com)에 게시되어 있는 별지 1 목록 가. 나. 기재 기사를 게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채무자는 별지 2 목록 기재 내용의 기사를 게재한 시사저널 1384호(2016년 4월 23일 출간)를 출간 · 배포 · 판매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간접강제 10,000,000원.

이 유

1. 신청이유의 요지

채권자는 어버이연합에게 한일위안부 합의안 지지 집회를 지시한 사실이 없음에도, '청와대 행정관(채권자)이 어버이연합에 집회를 지시했다'는 내용으로 허위보도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채권자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이러한 보도에 따라 채권자는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으므로 신청취지 기재와 같은 가처분이 인용되어야 한다.[66]

2. 판 단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소명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기록상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현 단계에서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허위 기사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당하였다고 주장하며 기사삭제를 청구하는 피해자는 그 기사가 진실

66) 채권자는 허위의 보도에 따라 청와대를 비롯한 국가공권력의 신뢰가 손상되었고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는 채권자와 관련성이 없으므로 판단하지 않는다.

하지 아니하다는 데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다60950 판결 등 참조).

이와 관련하여 채권자가 제출한 소명자료는 ① 청와대 대변인이 '채권자가 집회를 지시하였다는 기사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힌 내용이 포함된 신문기사, ② '채무자가 별지 1 목록 기재의 각 기사 등을 보도하면서 그 이전에 자신들에게 그에 대한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친 사실이 전혀 없고, 나아가 어버이연합이 청와대의 지시를 받고 집회를 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의 B(어버이연합 사무총장) · C(탈북어버이연합 회장)의 인증서(확인서)이다.

위 ①의 경우, 청와대의 기본적인 입장을 밝힌 것에 불과하여 그러한 사실만으로 채무자의 기사가 허위라는 사실이 소명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위 ②의 경우, ⓐ C는 2016. 4. 20. 16:13경 채무자 소속의 기자 D와의 통화에서 "...이 사람이 아주 총장님(B)을 부도덕하게 몰라고 결국은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 너네 청와대에 앉아 있으면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을 해야지 어떤 개인 감정을 가지고 자기가 집회 지시를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지시하는데 총장님은 그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이게 오히려 역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 놈이 자기 말 안 듣는다. 반말 찍찍한다. 그래가지고 예산 지원하는 거 다 잘라라. 책정된 거도 보류시켜라. 못 준다. 이런 식으로 A가 다 잘랐어요."라고 이야기를 하였고, ⓑ B는 SBS기자와의 인터뷰[67]에서 '채권자가 일본대사관 앞에서 왜 집회를 하느냐는 문자가 왔고, 1월 6일 일본대사관 앞 집회 말고, 1월 4일 마포에 있는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앞으로 가는 게 좋지 않겠냐고 하였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으며, ⓒ 또한 B는 2016. 4. 22. JTBC 뉴스룸에 출연하여 '지시가 아니라 채권자와 협의를 하였고, 시위장소를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로 하는 것이 낫다는 채권자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나서 채권자와의 거리가 소원해졌다'는 취지로 이야기 한 사정과 기타 채권자와 B, C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B, C의 위 인증서만으로는 채무자가 작성한 기사가 진실하지 아니하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채무자의 보도가 허위라는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일관성이 부족한 주관적인 진술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채권자와 B 사이의 통화 내역, 문자 메시지 내용 일체 등이 포함된 객관적인 자료 등이 제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언론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이 문제 되는 경우에 그 보도로 인한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보도가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그 보도가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 사회성을 갖춘 사안에 관한 것으로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닌지 등을 따져보아 공적 존재에 대한 공적 관심 사안과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 간에는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야 한다. 해당 표현이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보다 명예의 보호라는 인격권이 우선할 수 있으나, 공공적 · 사회적인 의미가 있는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그 평가를 달리하여야 하고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37531 판결 등 참조). 또한, 공직자 또는 공직 사회에 대한 감시와 비판 기능의 수행을 그 사명의 하나로 하는 언론보도의 특성에 비추어,

67) 2016. 4. 23.자 기사제목 : 「어버이연합 "靑 행정관과 집회 관련 논의 했다"」

언론보도의 내용이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직자의 공직 수행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어떤 의혹을 품을 만한 충분하고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그 사항의 공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언론보도를 통하여 위와 같은 의혹사항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고 조사를 촉구하는 등의 감시와 비판 행위는 언론자유의 중요한 내용 중의 하나인 보도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언론보도로 인하여 공직자 개인의 사회적 평가가 다소 저하될 수 있다고 하여 바로 공직자에 대한 명예훼손이 된다고 할 수 없고,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이 아닌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1다40373 판결,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다3519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① 채권자는 자신이 입게 된 피해에 관하여, 단지 '부정적인 댓글들이 달리고, 자신을 알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직·간접적인 우려를 들음'에 따라 채권자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었고 그에 따라 정신적인 고통에 시달린다고 진술할 뿐, 이와 관련한 별다른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않아,[68] 채권자가 입고 있는 침해가 중대하고 현저한 것이라는 점이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② 채권자는 청와대 행정관으로서 상당한 공적인 지위에 있고, 해당 사안은 채권자가 그러한 지위에서 행한 행동에 대한 것으로 공적 관심 사안이며, ③ 앞서 살펴 본 B, C의 진술 등에 비추어 채무자가 이 사건 기사와 같은 내용의 의혹을 품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도 있어 보인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비록 채무자의 보도 내용이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현 단계에서 채권자의 인격권이 언론의 자유보다 우선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그에 따라 신청취지 기재와 같이 채무자가 보도한 기사를 삭제할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그 외에도 별지 2 목록 기재 시사저널 1384호는 이미 배포 완료된 이후 잔여분은 회수까지 완료된 것으로 보이고, 별지 1 목록 기재 각 인터넷 기사의 경우에도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다른 언론사에서 자체적으로 확인한 정보에 따라 관련 기사가 다수 게시되어 있는 상황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1~2〉 대상기사 및 출판물 생략

68) 채권자는 해당 기사와 관련하여 청와대에 대한 비난 내용이 포함된 댓글 3개를 캡쳐하여 제출하고 있으나, 신청이유의 요지에서 밝힌 것과 같이 이 사건은 청와대가 아닌 '채권자 개인'의 명예권 등에 기한 것이다. 따라서 사실상 이와 관련한 소명자료는 제출되어 있지 않다고 할 것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7. 20. 선고 2014가합548118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2. 8. 선고 2016나2059882 판결(확정)

언론사는 외부인사의 발언에 대해서도 진위 여부를 조사할 의무가 있고, 외부인사의 발언이 명백히 허위라면 대담형식이라는 이유만으로 면책되지 않는다

- 원고 : A
- 피고 : 주식회사 조선방송 외 1명

[사실관계]

원고는 2013년 2월경 국가보안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고, 관련 형사사건은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혐의) 사건'으로 지칭하면서 사회적으로 화제가 되었으며, 위 형사사건의 항소심에서 검사 측 증거위조 사건이 발생하자 언론사들은 이른바 '국정원 증거조작 사건'으로 지칭하며 다수의 보도를 하여 한층 더 주목을 받게 되었다.
피고 조선방송은 2014년 3월 4일부터 4월 3일까지, 피고 채널에이는 같은 해 3월 4일부터 11일까지 각 뉴스 프로그램에서 원고 및 위 형사사건에 대해 수차례 보도하였고, 그 중 대담형식의 보도에서 원고가 보위부와 연계된 간첩이라는 외부 인사의 단정적인 발언이 방송됐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이 원고를 간첩으로 단정하여 보도함으로써 명예가 훼손됐다며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기사삭제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심리 결과, 1심 법원은 대담형식의 보도라고 하여 언론사가 면책되지 않고, 외부인사의 인터뷰를 보도하기에 앞서 진위 여부에 대한 조사를 할 의무가 있다며 피고 조선방송의 위법성을 인정하여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500만 원의 지급을 명하였다. 반면 피고 채널에이는 외부인사의 개인적 견해임을 주지시킨바, 해당 보도가 허위라고 볼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원고 및 피고 조선방송이 항소하였으나, 2심 법원이 위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고, 이후 원 · 피고 모두 상고하지 않아 위 판결이 확정됐다.

[판결요지]

□ **외부인사의 인터뷰 내용에 대한 언론사의 책임 여부**
언론사가 섭외 및 대본편집권한 등을 통하여 외부인사의 견해 등을 취사선택하고 그 보도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상황에서 외부인사의 발언에 의견표명 외에도 사실의 적시가 포함되어 있고, 그것이 단순히 의견을 표명하기 위한 전제 정도를 넘어서는 사실로서 허위임이 명백하다면 이러한 인터뷰를 보도한 언론사로서는 허위 사실의 보도로 인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외부인사를 통한 허위사실 보도로 인한 언론사의 위법성에 대한 판단**
(1) 언론사는 외부인사의 인터뷰 또는 대담에 대하여 '외부인사의 개인적인 견해에 불과하므로 사실과 다를 수 있

다' 또는 '본사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내용을 함께 언급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위와 같은 언급만으로 허위 보도에 따른 언론사의 책임이 감면된다고 할 것인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 조선방송의 보도에서는 이러한 취지의 기재마저 찾아볼 수 없는 점, 언론사로서는 외부인사의 인터뷰 또는 대담을 보도하기에 앞서 원칙적으로 당해 보도내용의 진위 여부에 관한 적절한 조사를 할 의무가 있는 점, 북한의 일반적인 실상에만 기초하여 원고가 간첩이고 간첩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한 것으로서, 관련 형사사건에 관한 국민의 알 권리나 올바른 여론 형성에 기여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보도가 외부인사와의 대담이라는 사정만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고, 피고 조선방송이 보도의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도 없다. (2) 피고 채널에이는 북한 사정에 정통한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그 주장이나 의견이 주관적이고 사실과 다를 수 있는 점을 감안해 방송 중에 '원고는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현재 2심이 진행 중입니다. 본 내용은 탈북자 개인의 사견임을 밝힙니다.'라는 자막을 상당시간 동안 함께 방송하였다. 또, 위 프로그램을 진행한 앵커는 위 출연자들의 발언이 주관적으로 흐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중간에 적절히 개입하였고, '개인 생각이시죠', '법적인 견해는 절대로 아닙니다', '사견임을 전제로' 등 수차례에 걸쳐 출연자 개인의 견해임을 주지시키기도 하였다. 즉, 원고의 간첩혐의와 관련된 외부인사들의 대담 및 토론은 모두 개인적인 견해로 사실과 다를 수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졌다. 그렇다면 위 각 보도는 그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판결문

사 건	2014가합548118 손해배상(기)
원 고	A
피 고	1. 주식회사 조선방송 2. 주식회사 채널에이
변론종결	2016. 6. 22.
판결선고	2016. 7. 20.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조선방송은 이 사건 판결 확정 후 최초로 방송되는 'TV조선 뉴스' 프로그램의 첫 머리에, 통상의 프로그램 제목과 같은 글자크기로 화면 상단에 '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을 표시하고, 그 화면 하단에는 통상의 자막과 같은 글자크기로 별지 기재 정정보도문을 시청자들이 그 내용을 충분히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자막으로 표시하면서 진행자로 하여금 빠르지 않은 속도로 낭독하는 방식으로 방송하라.

2. 만약 피고 주식회사 조선방송이 제1항 기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 주식회사 조선방송은 원고에게 제1항 기재 기간만료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일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 주식회사 조선방송은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2.부터 2016. 7. 20. 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채널에이에 대한 청구 및 피고 주식회사 조선방송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5.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조선방송 사이에 생긴 부분의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주식회사 조선방송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채널에이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6.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1. 가. 피고 주식회사 조선방송은 이 사건 판결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피고 주식회사 조선방송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tvchosun.com)에 게재된 별지1 목록 기재 보도를 모두 삭제하고,
   나. 피고 주식회사 채널에이는 이 사건 판결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피고 주식회사 채널에이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channela.com)에 게재된 별지2 목록 기재 보도를 모두 삭제하라.
2. 만약 피고들이 위 제1항 기재 기간 내에 위 제1항 기재 각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제1항 기재 기간만료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일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가. 피고 주식회사 조선방송은, 이 사건 판결 확정 후 최초로 방송되는 'TV조선 뉴스' 프로그램의 첫 머리에, 통상의 프로그램 제목과 같은 글자크기로 화면 상단에 '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을 표시하고, 그 화면 하단에는 통상의 자막과 같은 글자크기로 별지3 기재 정정보도요구문을 시청자들이 그 내용을 충분히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자막으로 표시하면서 진행자로 하여금 빠르지 않은 속도로 낭독하는 방식으로 방송하고, 이 사건 판결 확정 후 최초로 방송되는 'TV조선 뉴스 12' 프로그램의 첫 머리에, 통상의 프로그램 제목과 같은 글자크기로 화면 상단에 '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을 표시하고, 그 화면 하단에는 통상의 자막과 같은 글자크기로 별지4 기재 정정보도요구문을 시청자들이 그 내용을 충분히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자막으로 표시하면서 진행자로 하여금 빠르지 않은 속도로 낭독하는 방식으로 방송하고, 이 사건 판결 확정 후 최초로 방송되는 'TV조선 뉴스9' 프로그램의 첫 머리에, 통상의 프로그램 제목과 같은 글자크기로 화면 상단에 '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을 표시하고, 그 화면 하단에는 통상의 자막과 같은 글자크기로 별지5 기재 정정보도요구문을 시청자들이 그 내용을 충분히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자막으로 표시하면서 진행자로 하여금 빠르지 않은 속도로 낭독하는 방식으로 방송하고, 이 사건 판결 확정 후 최초로 방송되는 'TV조선 뉴스7' 프로그램의 첫 머리에, 통상의

프로그램 제목과 같은 글자크기로 화면 상단에 '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을 표시하고, 그 화면 하단에는 통상의 자막과 같은 글자크기로 별지6 기재 정정보도요구문을 시청자들이 그 내용을 충분히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자막으로 표시하면서 진행자로 하여금 빠르지 않은 속도로 낭독하는 방식으로 방송하고,

나. 피고 주식회사 채널에이는, 이 사건 판결 확정 후 최초로 방송되는 '채널에이 뉴스' 프로그램의 첫 머리에, 통상의 프로그램 제목과 같은 글자크기로 화면 상단에 '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을 표시하고, 그 화면 하단에는 통상의 자막과 같은 글자크기로 별지7 기재 정정보도요구문을 시청자들이 그 내용을 충분히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자막으로 표시하면서 진행자로 하여금 빠르지 않은 속도로 낭독하는 방식으로 방송하고, 이 사건 판결 확정 후 최초로 방송되는 '채널에이 뉴스 특급' 프로그램의 첫 머리에, 통상의 프로그램 제목과 같은 글자크기로 화면 상단에 '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을 표시하고, 그 화면 하단에는 통상의 자막과 같은 글자크기로 별지8 기재 정정보도요구문을 시청자들이 그 내용을 충분히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자막으로 표시하면서 진행자로 하여금 빠르지 않은 속도로 낭독하는 방식으로 방송하라.

4. 만약 피고들이 위 제3항 기재 각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제3항 기재 기간만료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일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5.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1980. 10. 26.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인 함북 회령시에서 화교인 아버지 B와 어머니 C의 1남 1녀 중 장남 유○○으로 출생하였고, 2004. 3. 10.경 북한을 탈출한 후 중국, 라오스, 태국을 경유하여 2004. 4. 25. 인천공항을 통해 대한민국에 입국한 중국 국적의 화교이다.

2) 피고 주식회사 조선방송(이하 '피고 조선방송'이라 한다), 피고 주식회사 채널에이(이하 '피고 채널에이'라 한다)는 각 방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의 방송사업자이다.

나. 원고의 대한민국 입국 후 활동 등

1) 원고에 대한 북한이탈주민의 인정과 정착지원 등

가) 원고는 대한민국 입국 후 보호시설 등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본명이 '유○○'인 중국 국적의 재북 화교라는 신분을 숨기고, 북한 국적을 가진 '유△△'이라고 가장하여 진술함으로

써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북한이탈주민법'이라고 한다)이 정한 '북한이탈주민'[69]으로 인정받았고, 2004. 7. 2. 서울가정법원에서 취적허가를 받아 2004. 7. 15. 취적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04. 8.경까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시설인 하나원에서 사회적응교육을 받았고, 통일부는 원고를 북한이탈주민법이 정한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여 원고는 그때부터 2013. 3. 13.까지 정착지원금, 교육지원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75,640,900원을 지급받고, 주거지원 명목으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였으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로 2009. 8. 11.부터 2011. 5. 20.까지 합계 9,444,610원을 지급받았다.

2) 원고의 개명과 여권발급 등

가) 원고는 2007. 5.경 중국에서 중국 국적자로서 호구증을 발급받았고, 2008. 1.경 유학 명목으로 영국으로 출국한 후 '조△△'이라는 이름으로 난민신청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08. 12. 15. 및 2009. 2. 6. 송파구청 민원여권과 사무실에서 한글 성명 '유△△'로 기재된 여권을 각각 발급받았고, 주민등록번호를 2009. 2. 6. '800918-1○○○○○○'에서 '800918-1□□□□□□'으로, 2009. 8. 20. 위 '800918-1□□□□□□'에서 '801026-1△△△△△△'로 각 정정하였다.

다) 원고는 2010. 9. 30. 이름을 '유△△'에서 'A'로 개명하였고, 2010. 11. 7. 송파구청 민원여권과 사무실에서 한글 성명 'A'로 기재된 여권을 발급받아 2011. 6. 19.경부터 2012. 10. 30.경까지 출·입국 과정에서 위 여권을 출입국관리 공무원에게 제시하였다.[70]

3) 원고의 입국 후 학력 및 경력과 탈북자 관련 활동

가) 원고는 2007. 3.경 연세대학교 ○○학과 3학년에 편입한 후 탈북자 출신 대학생을 중심으로 구성된 동아리인 '연세대 통일한마당'에, 2008.경 '새롭고 하나된 조국을 위한 모임'에, 2009.경 남·북한 청년들의 모임인 '영한우리'에 각 가입하여 탈북자 관련 활동을 하였고, 2011. 2.경 같은 대학을 졸업하였다.

나) 원고는 2011. 6. 9.부터 서울시청 복지정책과 ○○팀에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되어 재직하였고, 2012. 3.경부터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에 입학하여 △△학(석사 과정)을 전공하였다.

4) 원고의 중국 방문

한편 원고는 2005. 4.경부터 2012. 10.경까지 약 13회 가량 중국을 방문하였다.

---

69) 북한이탈주민법 제2조 제1호는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는 북한을 벗어나기 전에 이미 중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위 법률이 정한 북한이탈주민이나 위 법률이 정한 보호 및 지원을 받는 보호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70) 앞서 보듯 원고는 중국 국적자로서 설사 취적을 하였더라도 별도의 국적취득 절차 없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므로 결국 여권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을 발급받아 이를 사용한 것이 된다.

다. 원고에 대한 불기소처분 등

1)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10. 3. 29. 원고에 대하여 '2007. 2. 7.부터 2009. 8. 20.까지 송금브로커와 함께 북한이탈주민 등 700여 명으로부터 외국환 해외 송금 부탁을 받고 원고와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중국으로 송금해주는 등 총 1,646회에 걸쳐 합계 26억 4,000만 원 상당의 무등록 외국환 업무를 하였다는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에 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

2) 원고는 '2006. 5. 23., 2007. 5. 5., 2007. 7. 27. ~ 2007. 9. 9. 각 통일부장관의 승인 없이 북한에 방문하였다는 혐의'로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0년 형제29085호로 입건되었으나, 같은 검찰청 검사는 2010. 7. 26. 원고에 대하여 불기소처분(2006. 5. 23. 및 2007. 5. 5. 미승인 북한방문의 점에 관하여는 공소시효 도과로 인한 공소권없음, 나머지 미승인 북한방문의 점은 혐의없음)을 하였다.

라. 원고에 대한 간첩 등 국가보안법위반 혐의의 수사 및 기소

1) D의 대한민국 입국 및 국가정보원의 조사

가) 국가정보원은 2011. 2.경 탈북자 김○○으로부터 '원고가 화교임에도 탈북자로 가장하여 연세대학교에 다니고 있다, 원고의 아버지와 여동생 D도 곧 남한으로 들어오려고 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였다.

나) 북한에서 태어나고 자란 중국 국적의 화교인 D는 2012. 10. 30. 제주공항을 통해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D는 중앙합동신문센터 조사 초기에 자신과 원고의 화교 신분을 숨기고 허위진술을 하였다.

다) 이후 D는 2012. 11. 5. 조사를 받으면서 화교 신분을 인정하였고 그때부터 독방에 수용되었으며, 국가정보원장은 이로부터 171일이 지난 2013. 4. 24. 비보호결정을 하면서 D의 수용을 해제하였다. D는 위 수용기간 동안 자신 또는 원고의 국가보안법위반 혐의에 관하여 다수의 진술서,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특별사법경찰관(국가정보원 수사관)으로부터 4회의 참고인 조사를, 검사로부터 8회의 참고인 조사를 각각 받았다.

라) 한편, 원고의 아버지 B가 D를 위하여 선임한 변호사들이 2013. 2. 4.부터 2013. 3. 6.까지 5회에 걸쳐 중앙합동신문센터에 접견신청을 하였는데, 국가정보원장은 'D가 참고인 신분으로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의 대상이 아니고, D가 변호인을 만나려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접견을 모두 불허하였다.

2) 국가보안법위반 등의 혐의에 관한 원고의 체포·구속 및 기소

국가정보원은 2013. 1. 10. '원고는 북한 보위부에 인입되었고,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탈북자들의 신원정보를 탐지·수집한 다음 이를 보위부에 전달하였다'는 등의 국가보안법위반(간첩) 혐의를 포함하여 다수의 국가보안법위반 등 피의사실로 원고를 체포·구속하였고, 2013. 1. 29. 위 피의사실 관련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2013. 2. 26. 원고를 국가보안법위반 등으로 기소하였다(이하 위 공소사실에 대한 수사 및 재판을 포괄하여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마. 제1심 형사판결의 선고

1) 관련 형사사건의 제1심 법원은 2013. 8. 22. 국가보안법위반 부분 공소사실 모두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고, 북한이탈주민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위반, 여권불실기재 및 여권법위반, 불실기재여권행사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여, 원고를 징역 1년에 처하되,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186호, 이하 '제1심 형사판결'이라고 한다).

2) 위 제1심 형사판결에서 법원은 국가보안법위반 관련 공소사실 전반에 관한 가장 직접적이고 유력한 증거는 D가 수사기관 및 증거보전절차(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초기170호)에서 한 각 진술이라고 전제한 다음, D가 특별사법경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작성한 각 진술서, 자술서, 확인서 및 반성문(이하 'D 진술서 등'이라 한다)은 당시 피의자의 지위에 있었던 D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임에도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아니하여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고, 특별사법경찰관이 D에 대하여 작성한 각 진술조서(이하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라 한다) 중 원고와 D가 공범관계에 있는 공소사실에 관한 부분(이하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중 공범 부분'이라 한다)은 원고가 그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능력이 없고, 증거능력이 부인된 부분을 제외하고 D가 수사기관 및 증거보전절차에서 한 각 진술은 객관적인 증거와 모순되거나 일관되지 아니한 부분이 있는 등 그대로 신빙하기 어려우며,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국가보안법위반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3) 원고와 검사 모두 제1심 형사판결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였다.

바. 증거위조 사건의 발생, 항소심 계속 중 피고들의 각 보도 및 상소심 판결의 선고

1) 증거위조 사건의 발생 등

검사는 관련 형사사건의 항소심에서 원고가 북한에 체류하였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화룡시 공안국 명의의 원고에 대한 출입경기록, 화룡시 공안국 명의의 사실조회 회신 공문 사본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는데, 중국대사관 측이 위 증거들이 위조된 것이라고 확인하면서 결국 위 증거들을 철회하기에 이르렀다(이하 '증거위조 사건'이라 한다).

2) 항소심 계속 중 피고들의 각 보도

가) 언론사들은 원고의 체포·구속 내지 기소 무렵부터 관련 형사사건을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혐의)사건' 내지 '탈북위장 간첩(혐의)사건' 등으로 지칭하면서 원고의 대한민국 입국, 입국 후 행적, 여동생인 D에 대한 조사, 관련 수사의 경과, 간첩 혐의 등 공소사실의 내용 등에 관하여 보도하였고, 관련 형사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화제가 되기 시작하였다.

나) 위 증거위조 사건이 발생한 이후, 언론사들은 이를 이른바 '국정원 증거조작사건' 내지 '국정원 간첩조작사건' 등으로 지칭하며 이에 관한 다수의 보도를 하면서 관련 형사사건의 내용과 그 재판 경과는 한층 더 주목을 받게 되었고, 이른바 '보수성향 언론사'와 '진보성향 언론사'는 관련 형사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보도하면서

도 관련 형사사건에서 증거위조 사건이 차지하는 비중이나 의미에 관하여 상당히 대비되는 관점의 기사를 보도하고, 관련 형사사건 전반에 관한 논평이나 의견표명 역시 사뭇 상반된 시각에서 보도하였다.

다) 피고 조선방송은 별지1 목록 및 각 보도내용 기재와 같이 2014. 3. 4.부터 2014. 4. 3.까지 피고 조선방송의 뉴스 프로그램에서 관련 형사사건에 관한 보도를 하였고(이하 '피고 조선방송의 대상보도'라 하고, 각 보도를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는 별지1 목록 기재 구분번호로 표시한다), 피고 채널에이는 별지2 목록 및 각 보도내용 기재와 같이 2014. 3. 4.부터 2014. 3. 11.까지 피고 채널에이의 뉴스 프로그램에서 관련 형사사건에 관한 보도를 하였다(이하 '피고 채널에이의 대상보도'라 하고, 각 보도를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는 별지2 목록 기재 구분번호로 표시한다).

3) 항소심 형사판결의 선고

가) 검사는 관련 형사사건의 항소심에서 국가보안법위반 부분 중 일부 및 북한이탈주민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위반 부분(이와 상상적 경합에 있는 사기의 점은 추가)에 관한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였고, 법원은 2014. 4. 11. 위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였다.

나) 항소심 법원은 2014. 4. 25. 제1심 형사판결의 유죄 부분과 무죄 부분 중 공소사실이 변경된 국가보안법위반 부분을 직권파기하고 나머지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국가보안법위반 부분 공소사실 모두 및 북한이탈주민보호및정착에관한법률위반 부분 중 5년 초과 지원금에 관한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적용법률에 관한 법리오해)로 판단하고, 사기, 북한이탈주민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위반(위 5년 이내 지원금에 관한 부분)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위 5년 초과 지원금에 관한 부분), 여권불실기재 및 여권법위반, 불실기재여권행사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여 원고를 징역 1년에 처하되,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서울고등법원 2013노2728호, 이하 '항소심 형사판결'이라 한다)하였다.

다) 항소심 법원은 위 판결에서 D 진술서 등,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중 공범 부분은 제1심 형사판결의 판단과 마찬가지로 증거능력이 없고,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중 나머지 부분 및 검사가 D에 대하여 작성한 각 진술조서는 D가 부당하게 장기간 계속된 사실상의 구금 상태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 채 심리적 불안감과 위축 속에서 수사관의 회유에 넘어가 진술한 것으로서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다고 보기 어려워 증거능력이 없고, 증거보전절차에서 D가 한 진술은 증거보전기일에서 비공개결정의 선고가 되지 않아 비공개사유를 알 수 없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증거능력이 없으며, 나머지 증거는 신빙성이 없거나 증명력이 낮아 국가보안법위반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4) 상고심 판결의 선고

원고와 검사 모두 항소심 형사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5. 10. 29. 상고를 모두 기각(대법원 2014도5939호)하여 위 항소심 형사판결이 확정되었다.

사. 관련 형사사건 이후 기타 정황

1) 관련 형사사건을 담당하던 대공수사국 처장, 대공수사팀 과장을 비롯한 국가정보원 소속 공무원 등은 증거위조 사건과 관련하여 2013. 9. 27.자 이○○ 명의 확인서 및 사실확인서, 화룡시 공안국 명의 출입경기록, 화룡시 공안국 명의 회신 공문, 일사적답복 및 거보재료, 2013. 12. 17.자 이○○ 명의 확인서, 연변조선족자치주 공안국 명의 출입경기록 등에 관한 모해증거위조, 허위공문서작성, 사문서위조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 위 문서 중 일부 부분에 대하여는 무죄로 판단되었으나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모두 유죄가 인정되었다[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합351, 471(병합), 774(병합), 979(병합)호,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14노3430호, 상고심: 대법원 2015도9010호].

2) 한편, 원고는 2013. 8. 26.부터 2015. 3. 2.까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 정신과에서 공황장애, 우울성장애 등으로 통원치료를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을가 제1호증의 기재, 을나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정정보도청구 및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일반론(관련 법리)

가. 사실 적시 여부의 판단 및 허위성의 증명책임

언론의 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란 반드시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할 것은 아니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 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족하다. 신문 등 언론매체가 특정인에 대한 기사를 게재한 경우 그 기사가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인지의 여부는 일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와의 연관 하에서 기사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사가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다가 당해 기사의 배경이 된 사회적 흐름 속에서 당해 표현이 가지는 의미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37647 판결 참조).

한편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 등의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피해자는 당해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하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나. 언론보도의 진실성의 인정 기준

언론보도의 진실성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고, 또한 복잡한 사실관계를 알기 쉽게 단순하게 만드는 과정에서 일부 특정한 사실관계를 압축, 강조하거나 대중의 흥미를 끌기 위하여 실제 사실관계에 장식을 가하는 과정에서 다소의 수사적 과장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아 보도내용의 중요부분이 진실에 합치한다면 그 보도의 진실성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275 판결 참조).

다. 위법성조각의 요건 및 그 증명책임과 범죄혐의사실의 보도에 관한 언론사의 주의의무

신문 등 언론매체가 사실을 적시하여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그 증명이 없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되,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어디까지나 명예훼손 행위를 한 신문 등 언론매체에 있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29379 판결 참조). 여기서 보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보도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다35199 판결 참조).

한편 보도 내용이 수사기관이나 그에 준하는 국가기관 등에 의하여 수사 또는 조사가 진행중인 범죄혐의사실에 관한 것일 경우, 일반 독자들로서는 보도된 범죄혐의사실의 진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별다른 방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언론기관이 가지는 권위와 그에 대한 신뢰에 기하여 보도 내용을 그대로 진실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고, 언론매체의 보도가 가지는 광범위하고도 신속한 전파력으로 인하여 사후 정정보도나 반박보도 등의 조치에 의한 피해구제만으로는 사실상 충분한 명예회복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 보통이므로, 보도 내용의 진실 여하를 불문하고 그러한 보도 자체만으로도 범죄혐의자나 피해자 또는 그 주변 인물들이 입게 되는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범죄혐의사실을 보도함에 있어 언론기관으로서는 보도에 앞서 범죄혐의사실의 진실성을 뒷받침할 적절하고도 충분한 취재를 하여야 함은 물론이고, 보도 내용 또한 객관적이고도 공정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무죄추정의 원칙에 입각하여 보도의 형식 여하를 불문하고 혐의에 불과한 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암시하거나 독자들로 하여금 유죄의 인상을 줄 우려가 있는 용어나 표현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5다55510 판결 참조).

3. 피고 조선방송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 조선방송은, ① 1-가 보도의 제목 및 본문에서 '간첩 공무원'이라는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였고, 원고가 어학연수를 목적으로 영국에 방문한 것을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도피한 것으로 보도하였고, 원고가 영국에서 난민자 카드를 통해 생활지원금을 받은 시기에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생활비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양국에서 이중으로 생활비를 지급받은 것처럼 보도하였고, ② 1-나 보도의 제목 및 본문에서도 '간첩 공무원'이라는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였고, 원고가 북한 신분증을 위조하여 제시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러한 사실이 있다고 허위로 보도하였고, ③ 1-다 보도에서도 원고가 어학연수를 목적으로 영국에 방문한 것을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도피한 것으로 보도하였고, 원고가 영국에서 난민자 카드를 통해 생활지원금을 받은 시기에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생활비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양국에서 이중으로 생활비를 지급받은 것처럼 보도하였고, ④ 1-라 보도에서 앵커와 북한전략센터 대표 E와의 대담 내용을 보도하면서, 원고는 북한에 거주하는 화교인데 북한의 실상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사람들은 보통 북한 국가안전보위부(이하 '보위부'라 한다)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고, 원고가 탈북한 후 다시 북한에 들어간 정황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보위부와 연계된 간첩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보도하여 원고가 실제로 간첩인 것처럼 허위보도하였고, ⑤ 1-마, 1-바 보도에서 원고가 탈북 대학생 장학사업을 하는 우양재단 관계자로부터 탈북자 출신 안보강사 18명의 신원정보를 입수하고, 북한 인권운동단체에서 탈북자 26명의 개인정보도 확보해 별도의 파일로 관리하였다고 보도하였으나 이는 모두 허위이고, ⑥ 1-사 보도에서 원고가 해외유엔인권세미나 등 출장목적으로 해외를 나갔던 것임에도 원고가 어려운 형편에 해외여행을 모두 12차례나 다녔다고 의혹을 제기하였고, ⑦ 1-아 보도에서 F 전 국정원장이 국회 혁신연대모임 특강에서 "A 씨 간첩 맞다고 본다."라고 한 발언을 그대로 보도하여 원고가 실제 간첩이라고 허위보도를 하였다.

2) 따라서 피고 조선방송은 위 각 허위보도에 대한 정정보도(원고는 1-사 보도에 대하여는 정정보도를 구하지 않는다)를 하고, 해당 보도를 삭제하고, 위와 같은 허위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정정보도청구에 관한 판단

1) 위 각 보도의 내용이 사실적 주장에 관한 것인지 여부

원고가 위 각 보도 중 정정보도를 구하고 있는 부분은, ① 원고가 실제로 간첩행위를 한 공무원인지 여부, ② 원고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영국으로 도피한 것인지 여부, ③ 원고가 영국에서 난민자 카드를 통해 생활지원금을 받은 시기에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생활비를 지급받았는지 여부, ④ 원고가 보위부와 연계된 간첩인지 여부, ⑤ 원고가 탈북자 출신 안보강사의 신원정보 등 탈북자 정보를 입수해서 별도로 관리하였는지 여부, ⑥ 원고가 총

12회에 걸쳐 해외여행을 다녔는지 여부 등에 관한 내용이다.

위 법리에 비추어 앞서 살펴본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위 각 내용은 모두 증거에 의하여 그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으로 봄이 타당하다.

2) 적시된 사실의 허위성 여부

가) 1-가, 1-나, 1-다, 1-마, 1-바, 1-사, 1-아 보도에 관하여

(1) 앞서 살펴본 각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정이 인정된다.

① 북한이탈주민으로 인정받은 후 서울시 공무원으로 재직한 원고가 간첩행위를 하였다는 혐의에 관한 관련 형사사건은 국가안보에 관한 공적인 영역에 속하고 다수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는 등 사회적 관심 사안이었다. 이에 따라 각 언론사들은 원고의 체포·구속 내지 기소 무렵부터 관련 형사사건을 '서울시 공무원 간첩(혐의)사건' 내지 '탈북위장 간첩(혐의)사건' 등으로 지칭하면서 관련 수사의 경과, 재판 과정 등에 관하여 보도하였다. 피고 조선방송이 관련 형사사건을 '간첩 공무원 사건'으로 지칭한 것은 이 사건을 다른 사건과 구분해서 특정하기 위하여 사실관계를 압축, 강조한 제목을 사용한 것에 불과하고, 이러한 제목을 사용하였다고 하여 관련 형사사건의 결과와 관계없이 원고를 간첩으로 단정하여 보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② 피고 조선방송은 원고가 영국에 간 경위에 관하여 검찰의 의견을 인용하며,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거나 간첩활동에 염증을 느껴 제3국으로의 도피를 생각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하였는데, 이는 전제한 바와 같이 검찰의 견해를 인용하여 전달한 것에 불과하고, 특히 1-다 보도에서는 영어 공부를 위해서 영국에 간 것이라는 원고의 해명도 함께 실어 보도하기도 하였다.

③ 관련 형사사건의 각 판결문에 따르면 원고가 영국에 체류하면서 난민자 카드를 통해 생활지원금을 지급받은 기간에 대한민국 정부, 서울시, 송파구 등으로부터 생계주거급여, 정착지원금 등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의 주거지에서 이루어진 압수수색에서 발견된 원고 명의의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맹원증은 위조된 신분증이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④ 원고는 연세대학교 통일한마당 회원 명부, 평강팀 명단, 2009 UN 보고서를 위한 정치범, 고문, 여성, 아동 증언내용 표, 영한우리 장학금 신청서 사본, 영한우리 장학금 신청자 명단, 2012. 2. 영한우리 준·정회원 명단, 통일미래를 준비하며 잘 정착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청년들 명단, 북한이탈주민(수급자) 상담 카드, 대한민국교육개발원 추천 명단 등을 소지하고 있었고 여기에 상당수 탈북자들의 신상 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 다만 제1심 및 항소심 형사판결 모두 위 정보가 기재된 명단 등의 소지만으로 원고가 이를 보위부에 전달할 목적으로 탐지·수집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판단 하에 간첩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원고가 상당수 탈북자들의 신상 정보가 기재된 여러 문건 등을 소지 내지 보관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허위라고 볼 수 없다.

⑤ 1-마, 1-바의 각 보도는 '원고가 탈북자의 신원정보를 별도의 파일로 관리'하였다고 보도하였는데, 원고가 위와 같이 상당수 탈북자들의 신상 정보가 기재된 여러 문건 등을 소지 내지 보관하고 있었던 이상, 설령 이를 별도 파일로 분류하여 보관하거나 특별히 관리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표현은 사소한 오류 내지 다소간의 과장 및 수사적 표현으로 보인다.

⑥ 1-사 보도 중 '원고가 영국 외에도 모두 12차례에 걸쳐 해외여행을 다녔던 것으로 밝혀졌다'는 부분은 원고가 12회에 걸쳐 해외를 다녀왔다는 전제사실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는 이상, 그 표현을 '여행'이라고 한 것만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는 사소한 오류 내지 다소간의 과장 및 수사적 표현으로 보인다.

⑦ 1-아 보도는 F 전 국정원장이 국회 혁신연대모임 특강에서 발언한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거나 요약 보도한 것에 불과하여 보도내용은 위 발언자의 개인적인 견해에 불과하다는 점을 전제로 한 보도라 할 것이므로, 그 보도에 어떠한 허위가 개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 이상의 각 사정을 종합해보면, 위 각 보도는 관련 형사사건의 수사 및 재판의 진행경과, 수사기관의 입장과 이에 대한 원고의 해명 등을 기초로 한 것으로, 보도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일부 특정한 사실관계를 압축, 강조하는 과정에서 세부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에 불과하고, 중요한 부분은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1-라 보도에 관하여

(1) 피고 조선방송은, 1-라 보도는 소속 기자가 취재한 정식보도가 아니라, 앵커와 외부출연자와의 대담을 통해 외부출연자의 정치적 의견이 보도된 것에 불과하므로, 이에 대한 언론사의 책임은 면제되거나 대폭 감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언론사는 취재활동을 통해 취재원으로부터 취재대상에 관한 정보를 취득하고 그 취재결과를 편집하여 언론사가 사실적 주장이나 의견의 판단주체이자 전달주체로서, 직접 이를 보도하는 통상적인 방식 외에 소속 기자 등 내부인사가 아닌 외부인사를 초대하여 인터뷰 또는 대담의 형식으로 외부인사의 식견, 견해 등을 보도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방식의 보도는 당해 언론사의 소위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거나 나아가 반대되는 내용까지 보도함으로써 시청자들에게 다양한 관점과 시각을 제시할 수 있고, 사회가 점차 고도화되고 시청자들이 관심을 가지는 사항이 더욱 전문화되면서 언론사의 인적 구성이나 물적 기반만으로는 취재대상에 관한 완벽한 취재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제3자의 식견, 견해 등을 전달

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신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으며, 방송, 신문, 잡지 등의 미디어를 언론사만이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공론의 장(場)'으로 일반 대중에게 널리 공개하고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토론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여 일반 대중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명(발표의 자유)하고 그것을 전파할 자유(전달의 자유)를 더욱 두텁게 보장하는 계기로 삼을 수도 있다.

그러나 한편 헌법 제21조 4항은 언론의 자유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강조하고 있고, 언론중재법은 언론사의 언론보도 또는 그 매개로 인하여 침해되는 명예 또는 권리나 그 밖의 법익에 관한 다툼에 관한 구제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언론의 자유와 공적 책임 간의 조화를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제1조), 언론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하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사회적 책임을 규정하는 한편(제4조 제1항), 정정보도의 대상을 '언론보도등', 즉 언론의 보도 또는 매개라고 규정하면서도(제14조 제1항), 달리 당해 보도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취재·작성한 주체를 구분하고 있지는 않다. 또한, 언론이 가지는 정보전달의 전파력과 우리 사회가 언론에 대하여 가지는 신뢰에 비추어 외부인사의 사실적 주장이나 의견이 언론매체를 통하여 전달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비교할 때, 일반 시청자에 대한 설득력이나 파급력은 물론 그 진위 판단에 이르게 되는 결과적인 측면에서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다. 한편 언론사의 일련의 보도 중에서 통상적인 방식의 일반 기사와 외부인사의 인터뷰 등에 의한 보도를 형식적으로 구별하여 후자에 관하여는 언론사의 면책이 폭넓게 인정된다고 한다면 앞서 본 언론의 공적·사회적 책임을 부당하게 축소하여 상충하는 권리와 법익의 균형 있는 조화 속에서 피해자 구제제도를 확립하려는 언론중재법의 목적에 반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언론사가 섭외 및 대본편집권한 등을 통하여 외부인사의 견해 등을 취사선택하고 그 보도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상황에서, 외부인사의 발언에 의견표명 외에도 사실의 적시가 포함되어 있고, 그것이 단순히 의견을 표명하기 위한 전제 정도를 넘어서는 사실로서 허위임이 명백하다면 이러한 인터뷰를 보도한 언론사로서는 허위 사실의 보도로 인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살펴본 각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정이 인정된다.

① 1-라 보도는 북한전략센터 대표인 E를 초대하여 앵커들과 대담을 통해 관련 형사사건에 대한 E의 의견을 청취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는데, 위 보도에서 E의 언급에는 '일부러 간첩을 잡으려고 그렇게 키워놨는지', '북한에 거주한다는 것뿐이지, 중국에 마음대로 갈 수가 있고…정상은 아니라는 거죠', '완벽하게 거짓말을 해서 국정원의 조사 스크리닝을 속여 넘겼다', '거의 사기범죄자인데다가 모든 행적이 믿을 수 없다', '간첩혐의', '보위부에 한 발을 담그고 있다', '보위부에서 역으로

화교를 간첩으로 활용한다', '보위부는 다 화교들에게 임무를 준다', '화교들은 보위부하고 연계가 됐다고 봐야한다', '이거는 뭐 객관적으로 간첩을 했다 안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간첩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다 드러났다', '무사히 북한국경을 통과했다는 것은 보위부의 묵과가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원고가 간첩이라고 거의 확신하는 내용의 E의 발언이 그대로 보도되었다.

② 한편, 일반 시청자로서는 탈북자 출신으로 북한전략센터 대표인 E의 발언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별다른 방도가 없기 때문에, 북한의 실상을 직접 경험한 E가 언론사의 뉴스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밝히는 관련 형사사건에 관한 분석을 객관적인 정보라고 받아들이기 쉽다고 할 것이다.

③ 원고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북한으로부터의 잠입 또는 북한으로의 탈출과 관련하여, 원고가 2006.경 북한 함북 회령시에 있는 원고의 집에 가 체류하던 중 북한 보위부 공작원 활동을 제안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06. 6. 22. 탈북자 신원자료 수집 등의 지령을 받고 대한민국에 잠입한 사실[2006. 6. 22.자 국가보안법위반(특수잠입 · 탈출)], 2007. 8. 중순경 두만강을 도강하여 북한으로 탈출한 사실[2007. 8. 중순경 국가보안법위반(잠입 · 탈출)], 2011. 7. 초순경 두만강을 도강하여 북한으로 탈출한 사실[2011. 7. 초순경 국가보안법위반(특수잠입 · 탈출)], 2012. 1. 24. 아버지인 B와 함께 택시를 타고 중국-북한 국경지대로 출발하여 북한으로 탈출한 사실[2012. 1. 24.자 국가보안법위반(특수잠입 · 탈출)], 2012. 10. 30. 공작임무 등의 지령을 받고 여동생인 D와 함께 대한민국에 잠입한 사실[2012. 10. 30.자 국가보안법위반(특수잠입 · 탈출)]로 기소되었으나,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가 확정되었다.

④ 또한, 원고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국가기밀의 탐지 · 수집 · 누설 · 전달과 관련하여, 원고가 2007.경부터 탈북자 모임에 가입하여 이들과 다양한 교류를 하고 2011. 6. 9.부터는 서울시청 공무원으로 재직하여 탈북자 관련 업무를 처리하면서 탈북자들의 신원정보라는 국가기밀을 체계적으로 탐지 · 수집하던 중, 2011. 2.경 D를 통하여 탈북자 50여 명의 신원정보를 북한 보위부 반탐부부장 G에게 전달한 사실[2011. 2.경 국가보안법위반(간첩)], 2011. 5.경 D를 통하여 탈북자 70~90여 명의 신원정보를 위 G에게 전달한 사실[2011. 5.경 국가보안법위반(간첩)], 2012. 7.경 D를 통하여 탈북자 50~60여 명의 신원정보를 위 G에게 전달한 사실[2012. 7.경 국가보안법위반(간첩)]로 기소되었으나,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가 확정되었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1-라 보도 중 원고가 보위부와 연계된 간첩이라는 취지의 내용은 허위임이 입증되었다고 할 것이다.

3) 소결론

가) 위와 같이 1-라 보도를 통해 허위 사실이 보도됨으로써 원고는 명예가 훼손되는 피해를 입었으므로, 언론중재법 제14조 내지 민법 제764조에 기하여 원고에게 피고 조선방송에 대하여 1-라 보도의 위 허위 사실에 관한 정정보도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나) 따라서 1-라 보도의 허위 내용과 아울러 보도의 분량, 표현 방법,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원고가 구하는 범위 내에서 별지3의 정정보도요구문을 별지의 정정보도문과 같이 수정하여 주문과 같은 방법으로 보도하도록 한다(아울러 피고 조선방송이 위 정정보도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일 1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간접강제금을 명한다).

다.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1)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1-라 보도에 허위 사실이 적시되어, 원고는 위 보도로 인해 사회적 평가가 저하됨으로써 명예가 훼손되는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조선방송은 원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 조선방송이 1-라 보도를 통해 허위보도를 한 것이 위법한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살펴본 각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1-라 보도는 피고 조선방송이 선정한 탈북자로서 북한 관련 분야의 전문가인 E가 그의 경험, 지식과 견해를 투영시켜 관련 형사사건에 관하여 사실적 주장이나 의견을 표명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점, ② 언론사는 외부인사의 인터뷰 또는 대담에 대하여 '외부인사의 개인적인 견해에 불과하므로 사실과 다를 수 있다' 또는 '본사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내용을 함께 언급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위와 같은 언급만으로 허위 보도에 따른 언론사의 책임이 감면된다고 할 것인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1-라 보도에서는 이러한 취지의 기재마저 찾아볼 수 없는 점, ③ 언론사로서는 외부인사의 인터뷰 또는 대담을 보도하기에 앞서 원칙적으로 당해 보도내용의 진위 여부에 관한 적절한 조사를 할 의무가 있는 점, ④ 1-라 보도 당시 이미 관련 형사사건의 제1심 형사판결이 선고된 상태였으므로, 피고 조선방송으로서는 1-라 보도에 진실하지 아니한 사실적 주장이 포함되었다고 충분히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위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확인하지 아니한 채 이를 그대로 보도한 점, ⑤ 1-라 보도는 북한의 일반적인 실상에만 기초하여 원고가 간첩이고 간첩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한 것으로서, 관련 형사사건에 관한 국민의 알 권리나 올바른 여론 형성에 기여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1-라 보도가 외부인사와의 대담이라는 사정만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고, 피고 조선방송이 1-라 보도의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도 없다.

3) 피고 조선방송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제1심 형사판결로 간첩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정반대로 원고를 간첩이라고 주장하는 사실이 적시된 1-라 보도가 이루어짐으로써 원고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된 점을 비롯하여 1-라 보도의 내용, 표현 방식, 1-라 보도에서 허위 사실

의 적시가 차지하는 정도 등을 고려하되, 한편 소속 기자 등이 행하는 통상적인 방식에 의한 보도가 아닌 외부인사와의 대담을 통한 보도인 점, 당시 관련 형사사건에 대하여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이어서 간첩 공소사실에 대한 무죄가 확정되지는 않았던 점, 원고의 신분 및 행적 등에 있어 간첩으로서의 의심을 살만한 정황이 일부 있었던 것은 사실인 점,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국가보안법위반 부분 공소사실 모두에 대하여 무죄를 확정하는 대법원의 판결이 선고되고 이에 대한 보도가 후속되면서 사후적으로 원고의 명예 회복이 다소간 이루어졌다고 보이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자료 액수는 500만 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4) 따라서 피고 조선방송은 원고에게 위자료 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4. 9. 2.부터 피고 조선방송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7.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보도삭제청구에 관한 판단

1) 명예는 생명, 신체와 함께 매우 중대한 보호법익이고 인격권으로서의 명예권은 물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배타성을 가지는 권리라고 할 것이므로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의 인격적 가치에 관하여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인 명예를 위법하게 침해당한 자는 손해배상(민법 제751조) 또는 명예회복을 위한 처분(민법 제764조)을 구할 수 있는 이외에 인격권으로서 명예권에 기초하여 가해자에 대하여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침해행위를 배제하거나 장래에 생길 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침해행위의 금지를 구할 수도 있다(대법원 2005. 1. 17. 자 2003마1477 결정 참조). 이때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 기사삭제청구의 당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표현내용이 진실이 아니거나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기사로 인해 현재 원고들의 명예가 중대하고 현저하게 침해받고 있는 상태에 있는지 여부를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이라는 두 가치를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다60950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조선방송의 대상보도 중 1-라 보도의 일부 내용이 허위로 인정되기는 하나, 1-라 보도는 국가의 안보와 직결되는 간첩문제에 관한 보도로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인 점, 1-라 보도는 원고가 보위부와 연계된 간첩이라고 의심된다는 내용이기는 하나 그러한 의심의 기초가 된 북한의 실상에 관한 내용은 보도할 가치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1-라 보도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가 중대하고 현저하게 침해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따라서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을 비교·형량할 때 1-라 보도가 삭제되어야 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보도 삭제 및 이행강제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또한 피고 조선방송의 대상보도 중 1-라 보도를 제외한 나머지 보도는 허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나온 원고의 보도 삭제 및 이행강제금 청구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피고 채널에이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 채널에이는, ① 2-가 보도에서 원고가 어학연수를 목적으로 영국에 방문한 것을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도피한 것처럼 보도하였고, 원고가 영국에서 난민자 카드를 통해 생활지원금을 받은 시기에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생활비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양국에서 이중으로 생활비를 지급받은 것처럼 보도하였고, ② 2-나 보도의 제목과 본문에서 'A는 간첩맞다'는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였고, ③ 2-다 보도에서 탈북난민인권연합 대표 H와 북한전략센터 대표 E와의 인터뷰를 통해 원고가 보위부의 지휘를 받고 있는 간첩임이 분명하다는 취지로 보도하였고, ④ 2-라 보도에서 앵커와 전문가들의 대담을 통해 원고가 간첩임은 분명하나 단지 증거가 부족할 뿐이라는 취지의 허위보도를 하였다.

2) 따라서 피고 채널에이는 위 각 허위보도에 대한 정정보도(원고는 2-라 보도에 대하여는 정정보도를 구하지 않는다)를 하고, 해당 보도를 삭제하고, 위와 같은 허위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정정보도청구에 관한 판단

1) 위 각 보도의 내용이 사실적 주장에 관한 것인지 여부

원고가 위 각 보도 중 정정보도를 구하고 있는 부분은, ① 원고가 실제로 간첩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② 원고가 수사시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영국으로 도피한 것인지 여부, ③ 원고가 영국에서 난민자 카드를 통해 생활지원금을 받은 시기에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생활비를 지급받았는지 여부, ④ 원고가 보위부와 연계된 간첩인지 여부 등에 관한 내용이다.

위 법리에 비추어 앞서 살펴본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위 각 내용은 모두 증거에 의하여 그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으로 봄이 타당하다.

2) 적시된 사실의 허위성 여부

가) 앞서 살펴본 각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정이 인정된다.

① 피고 채널에이는 원고가 영국에 간 경위에 관하여 검찰의 의견을 인용하며, 원고가 탈북자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것에 대해 국정원이 내사를 시작하자마자 망명을 시도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고 보도하였는데, 이는 검찰의 견해를 그대로 전달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전제하였고, 특히 2-가 보도에서는 원고가 검찰조사를 받으면서 영국에서 편하게 생활하려고 망명 신청을 했다고 진술했다고 보도하여 원고의 진술을 함께 보도하였다.

② 관련 형사사건의 각 판결문에 따르면 원고가 영국에 체류하면서 난민자 카드를 통해 생활지원금을 지급받은 기간에 대한민국 정부, 서울시, 송파구 등으로부터 생계주거급여, 정착지원금 등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의 주거지에서 이루어진 압수

수색에서 발견된 원고 명의의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맹원증은 위조된 신분증이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③ 2-나 보도는 국정원이 조작했다는 증거서류를 전달한 국정원 측 협조자 조선족 김모 씨가 검찰 조사 후 자살을 시도했다는 사실에 대한 내용인데, 위 김모 씨가 자살을 시도하면서 남긴 유서에 'A 씨는 간첩이 맞다'고 기재한 것을 그대로 보도한 것에 불과하다. 위 보도 중 'A는 간첩 맞다'는 제목 및 본문의 표현은 유서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다.

④ 2-다 보도는 피고 채널에이가 탈북난민인권연합 대표 H, 북한전략센터 대표 E를 초대하여 앵커와의 대담 형식으로 인터뷰를 진행한 것인데, 위 보도 중 원고를 간첩으로 확신한다는 일부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 채널에이는 위 H, E가 북한 사정에 정통한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그 주장이나 의견이 주관적이고 사실과 다를 수 있는 점을 감안해 방송 중에 '원고는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현재 2심이 진행 중입니다. 본 내용은 탈북자 개인의 사견임을 밝힙니다.'라는 자막을 상당시간 동안 함께 방송하였다. 또, 위 프로그램을 진행한 앵커는 위 출연자들의 발언이 주관적으로 흐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중간에 적절히 개입하였고, '개인 생각이시죠', '법적인 견해는 절대로 아닙니다', '사견임을 전제로' 등 수차례에 걸쳐 출연자 개인의 견해임을 주지시키기도 하였다.

⑤ 2-라 보도는 피고 채널에이가 진보와 보수 성향의 대학교수, 판·검사 출신 변호사 등을 패널로 초청해 토론을 진행한 것인데, 위 보도의 주된 내용은 원고가 간첩인지 여부가 아니라 국정원의 증거조작의혹에 관한 것이었다. 구체적으로 국정원이 증거 위조를 했는지, 증거위조를 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위조 여부를 보고받거나 지시한 사람이 있는지, 중국정부가 위조됐다고 밝힌 문서는 대한민국 법원에서 증거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등이 토론의 주제로 다루어졌다. 2-라 보도는 국정원이 증거를 조작했다는 상황을 강도 높게 비판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고, 따라서 이러한 보도내용이 원고의 명예와 직접적으로 관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이상의 각 사정을 종합해보면, 위 각 보도는 관련 형사사건의 수사 및 재판의 진행경과, 수사기관의 입장과 이에 대한 원고의 해명 등을 기초로 하였고, 원고의 간첩혐의와 관련된 외부인사들의 대담 및 토론은 모두 개인적인 견해로 사실과 다를 수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졌다. 그렇다면 위 각 보도는 그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소결론

따라서 위 정정보도청구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다.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1) 피고 채널에이의 대상보도 내용이 허위라고 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나온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다.

2) 가사 적시된 사실 중 허위인 부분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피고 채널에이의 대상보도는 모두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 그 목적이 공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관련 형사사건의 수사 및 재판의 진행경과, 수사기관의 입장과 이에 대한 원고의 해명 등을 토대로 한 것이어서, 피고 채널에이가 그 사실이 중요한 부분에 있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라. 보도삭제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채널에이의 대상보도가 모두 허위라고 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나온 원고의 보도 삭제 및 이행강제금 청구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조선방송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피고 채널에이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정정보도문

1. 제목

[티브이조선 특보] 탈북자 명단 북으로 넘어갔다면? 관련 정정보도문

2. 본문

티브이조선(피고 주식회사 조선방송)은 2014. 3. 5. 티브이조선 특보에서 위 제목의 방송을 통하여 북한의 실상 등에 비추어보면 A가 북한 국가안전보위부와 연계된 간첩이라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A가 북한 국가안전보위부와 연계되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간첩 혐의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무죄가 확정되었으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별지 1, 2〉 방송내용 생략

〈별지 3~8〉 요구하는 정정보도문 생략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7. 20. 선고 2016가합500622 판결(확정)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가 의혹 사실이 존재한다는 점에 대해 이해관계자의 일방적인 진술 외 객관적인 자료나 근거를 제출하지 못한다면 상당성이 부정된다

- 원고 : 의정부지방검찰청 외 1명
- 피고 : 주식회사 뉴시스 외 1명

[사실관계]

피고들은 2015년 9월 21자 및 같은 해 10월 6일자 〈뉴시스〉에 「검찰간부 구내식당에 갑질 '의혹'」 및 「의정부지검 이상한 구내식당 업체선정…특혜의혹도」 각 제하의 기사를 통해 원고 구내식당 업체 변경 및 선정 과정에 검찰간부의 권한남용 및 부당한 영향력 행사가 있었다고 보도했다. 이에 원고들은 먼저 피고에게 허위사실을 보도했다며 정정보도를 청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절했다. 그러자 원고들은 소제기에 앞서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하였으나 조정불성립결정된 바 있다(2015서울조정3980). 이후 피고들은 2015년 12월 15일자 〈뉴시스〉에 「비판보도 취재거부, 비협조로 일관하는 검찰」이라는 제목으로 언론중재위원회가 위 기사가 객관적 진실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취지로 후속보도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구내식당 업체 변경에 검찰 간부인 원고 A의 권한남용이 없었고, 언론중재위원회의 결정 취지를 왜곡하여 보도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 기사삭제를, 원고 A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심리 결과, 재판부는 구내식당 업체선정에 원고 A의 영향력 행사를 인정하기 어렵고,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며 원고들의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 청구를 인용하였고, 원고 A에게 500만 원의 손해배상 지급을 명하였다. 다만, 공익적 목적에서 작성된 공공의 이해에 관한 보도인바 기사삭제청구는 기각하였다.

[판결요지]

(1) 상당성 여부에 대한 판단

구내식당 운영업체 선정방식이 변경된 원인이 원고 A와 전 구내식당 운영업체 사이의 사적인 갈등에 기한 것이라거나 신규 구내식당 운영업체 선정 과정에 원고 A가 부당하게 개입하였다는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객관적인 자료나 근거를 피고들이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들은 보도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적절하고도 충분한 추가조사 없이 전 운영업체 측의 일방적인 진술에만 의존하여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신규 구내식당 운영업체 선정과정 및 경위에 대한 의혹을 담은 이 사건 기사는 피고들의 자의적인 해석을 바탕으로 한 것이고, 의혹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취재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허위사실 적시 부분에 관하여 피고들이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 기사삭제청구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각 기사는 공직자의 도덕성이나 그 업무처리가 정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를 감시, 견제하기 위한 목적에서 작성된 것으로서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기사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반론보도 및 정정보도청구를 인용함으로써 독자들에게 올바른 판단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일방적 의혹제기에 의한 원고들의 인격권 침해가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기사의 삭제청구를 인용할 정도로 위 각 기사로 인한 원고들의 인격권 침해가 중대한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결문

사 건	2016가합500622 정정보도 등
원 고	1. 의정부지방검찰청
	2. A
피 고	1. 주식회사 뉴시스
	2. B
변론종결	2016. 6. 15.
판결선고	2016. 7. 20.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뉴시스는,
   가.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뉴시스통신사(http://www.newsis.com)의 홈페이지 초기화면 기사목록 상단 중간 부분에,
      (1) 별지1-1 기재 반론보도문 중 제목을 별지3 기재 원보도 기사의 제목과 같은 크기로 [ ] 안에 표시하여 72시간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별지1-1 기재 반론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고,
      (2) 별지2-1 기재 정정보도문 중 제목을 별지3 기재 원보도 기사의 제목과 같은 크기로 [ ] 안에 표시하여 72시간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별지2-1 기재 정정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고,
      (3) 반론 및 정정 대상 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별지1-1, 2-1 기재 각 반론보도문 및 정정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고, 위 72시간 게재 후에는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하고,

나. 위 가.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원고들에게 각 위 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1일 1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들은 각자 원고 A에게 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7.부터 2016. 7.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1. 피고 주식회사 뉴시스는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72시간 이내에,
   가. 피고 주식회사 뉴시스의 인터넷신문 홈페이지에 게재한 2015. 9. 21.자 제목 [검찰간부 구내식당에 갑질 의혹] 기사, 2015. 10. 6.자 제목 [의정부지검 이상한 구내식당 업체선정...특혜 의혹도] 기사, 2015. 12. 15.자 제목 [비판보도 취재거부, 비협조로 일관하는 검찰] 기사를 홈페이지 및 기사 데이터베이스에서 삭제하고,
   나. 뉴시스통신사(http://www.newsis.com)의 홈페이지 초기화면 기사목록 앞부분에,
      (1) 별지1-2 기재 반론보도문 중 제목을 [ ] 안에 표시하여 72시간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별지1-2 기재 반론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고,
      (2) 별지2-2 기재 정정보도문 중 제목을 [ ] 안에 표시하여 72시간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별지2-2 기재 정정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고,
      (3) 반론 및 정정 대상 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별지1-2, 2-2 기재 각 반론보도문 및 정정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고, 위 72시간 게재 후에는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하고,
   다. 위 가.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원고들에게 위 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1일 1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들은 각자 원고 A에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1) 원고 의정부지방검찰청은 경기 북부 및 강원 철원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이고, 원고 A는 별지3 원보도 기재 기사에 'A검사'로 지칭된 의정부지방검찰청의 차장검사로 근무하던 자이다.

(2) 피고 주식회사 뉴시스(이하 '피고 뉴시스'라 한다)는 민영 뉴스통신사로서 인터넷 신문, 뉴스 제공업 등을 영위하는 언론사이고, 피고 B는 피고 뉴시스 소속 기자로서 의정부지방검찰청의 출입기자이다. 피고 뉴시스는 피고 B가 작성한 별지3 원보도 기재 각 기사를 뉴시스 홈페이지(http://www.newsis.com)에 각 게재하였다.

나. 원고 A는 2015. 3. 3.경 의정부지방검찰청 구내식당 측에 토스트 300개를 구매할 의사로 이를 다음날까지 만들어 줄 수 있는지 문의하였으나, 구내식당 측은 시간, 인력 등의 부족으로 토스트 제조가 어렵다며 이를 거절하였다.

다. (1) 2015. 3. 16.~20.경 실시된 2015년도 구내식당 직원만족도 설문조사 결과보고에 의하면(갑 7호증), 설문 참여자들이 구내식당에서 판매를 원하는 간식메뉴로서 토스트·샌드위치가 최다 선정되었는데, 이에 대해 구내식당 측은 종전에 라면과 토스트를 간식으로 제공하다가 수요가 일정하지 않다는 이유로 토스트 판매를 중단한 상태였으나, 하루 전에 사전 주문한다면 토스트를 포함한 어떠한 메뉴라도 공급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2) 위 설문조사 결과보고에 의하면, 구내식당 이용의 만족도를 '매우 양호, 양호, 보통, 불량, 매우 불량'의 5단계로 나누어 물어본 결과, 총 182명의 설문 참여자 가운데 '보통 이상'으로 응답한 비율은 97.81%이었고, '양호 이상'으로 응답한 비율은 74.18%로 조사되었다.

라. (1) 'C'는 2002년경부터 약 14년 동안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계속해서 계약을 갱신해 가며 위 구내식당을 운영해 오던 업체인데, 2015. 4. 7.경 당해 계약기간이 만료하였다.

(2) 원고 의정부지방검찰청은 차회부터는 공개경쟁을 통해 구내식당 운영업체를 선정하기로 하고, 구내식당 운영업체를 선정하는 권한을 가진 구내식당 운영위원회의 구성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구내식당 위탁업체 선정계획안을 2015. 5. 26.경 마련하였다.

① 구내식당 운영위원회의 명칭을 '구내식당 관리위원회'로 변경함.

② 구내식당 관리위원회의 위원을 위원장인 사무국장, 총무과장, 사건과장, 집행과장, 위원장이 지명하는 6급이하 직급대표 7명 등 총 11명이었던 것을 형사1부장, 공안부장, 각부 선임검사 7명, 실무관·계약직이 포함된 6급 이하 직급대표 6명, 청원경찰, 방호원 각 1명을 더해 총 22명으로 2배 증원함.

③ 그에 따라 구내식당 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사무국장에서 차장검사로 격상함.

④ 의결 시, '가·부 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는 규정을 '가·부 동수일 경우, 위원들의 의견 청취 후 위원장이 결정한다'로 변경함. 모든 위원들은 1인 1의결권을 행사함.

마. (1) 위 선정계획안에 의하면, 위탁업체에 대한 세부평가항목 가운데 '검찰청 등 동종사업 운영경험' 항목에 대하여 '7년 이상'인 경우 최고 10점부터 '3년 미만'인 경우 4점까지의 점수가 배점되어 있다(총합 100점).

(2) 원고 의정부지방검찰청 총무과 소속 재무계의 담당 직원은 'C' 측에게, 검찰청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은 편이고, 평가항목에 기존 구내식당 운영실적에 대한 배점도 있음을 알리면서 입찰에 참여할 것을 독려하였으나, 'C'는 2015. 6. 22. 공개경쟁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다고

통보하였다.

바. (1) 원고 의정부지방검찰청은 2015. 6. 1. 구내식당 운영자 모집 공고를 하였다.

(2) 위 모집 공고에서는 '2. 급식대상인원 및 구내식당 규모 ※ 식대: 조식 3,000원, 중식 3,000원, 석식 4,000원(우리청 구내식당 운영위원회 심의에 따라 식대조정 가능)'으로 안내하면서, 공모참가 자격으로 '공모에 참가하려는 자는 아래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참가하여야 함- 공모참가신청서, 이력서 및 운영계획서를 접수 마감일까지 제출한 자'라고 기재하였고, 공모참가신청서류로 '1. 공모참가신청서, 2. 구내식당 운영계획서, 3. 이력서(일반양식), 4. 업체소개서(일반양식, 최근 7년내 집단급식 운영실적 또는 근무경력 증명서류 포함), 5. 요식업 관련 자격증(해당자에 한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위 모집공고를 보고, 'D', 'E', 'F'의 3개 업체가 제안서를 제출하였고, 2015. 7. 1. 구내식당 관리위원회 위원 및 참관인 등 총 31명이 참석한 관리위원회에서 'E'와 'F'가 동수 득표하였다. 2015. 7. 2. 관리위원들로부터 2차 의견을 수렴한 결과, 'E'가 구내식당 운영업체로 최종 결정되었다.

(4) 한편, 위 각 업체들의 제안서에서 'D'는 '기존 식대를 유지하되, 가스비를 전액 청에서 부담하는 안'을 제시하였고, 'E'는 '중식대를 3,500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F'는 '조식과 중식대를 각 3,500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제시하였다.

사. (1) 피고 B는 2015. 9.경 기존 구내식당 운영업체 팀장인 G와 '오랫동안 수의계약 방식으로 구내식당을 운영해 왔고, 구내식당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음에도 차장검사가 주문한 토스트를 만들어 주지 않아 구내식당 운영업체 선정방식이 공개입찰 방식으로 변경된 것'이라는 취지의 인터뷰를 하게 되었다.

(2) 피고 B는 G와의 인터뷰를 마친 후 원고 A와 의정부지방검찰청 총무과에 G가 언급한 구내식당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자료요청을 했으나, 원고들은 이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3) 원고 A는 2015. 9. 8. 피고 B를 포함한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그 자리에서 '직원들의 불만이 있고, 오랫동안 수의계약을 해 와, 공개입찰로 전환하였다'는 취지로 위 운영업체 교체이유 등을 설명하였다.

(4) 그 자리에서 피고 B는 '그와 다른 취지의 제보를 들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으나, 원고 A에게 토스트 주문 배경 등에 관해 추가로 질문을 하거나 인터뷰 요청을 하지는 않았다.

아. 피고 B는 2015. 9. 21.자로 [검찰간부 구내식당에 갑질 '의혹']이라는 제목의 기사(이하 '이 사건 제1기사'라 한다)를 별지3 원보도 기재와 같이 작성하여 보도하고, 이어서 2015. 10. 6.자로 [의정부지검 이상한 구내식당 업체선정...특혜의혹도]라는 제목의 기사(이하 '이 사건 제2기사'라 한다)를 위 원보도 기재와 같이 작성하여 보도하였다.

자. (1) 원고들은 2015. 10. 26. 피고 뉴시스에 이 사건 제1, 2 기사에 관하여 별지1-2, 별지2-2 중 해당부분 기재와 같은 취지로 정정보도를 해 줄 것을 청구했으나, 피고 뉴시스는 이를 거절하였다.

(2) 이에 원고들은 언론중재위원회에 위와 같은 내용의 정정보도를 구하는 조정신청을 하였다.

(3) 언론중재위원회 심리 과정에서 중재부장은 '피고 B가 제3자의 진술로 인용 보도한 설문조사 만족도 결과에는 오류가 있으나, 원고 A가 토스트 300개를 구내식당 측에 주문하고, 신규 업체에 책정된 중식대가 기 공고된 3,000원에서 3,500원으로 인상된 것은 사실인 점, 원고들 측의 반론보도가 미흡한 점'을 감안해 반론보도를 게재하는 내용의 조정안을 제시하였으나, 원고 측이 이를 수용하지 아니하였다.

(4) 이에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중재법 제21조 제3항에 따라 당사자 사이의 합의 불능 등 조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2015. 12. 1. 조정불성립결정을 하였다.

차. 피고 B는 2015. 12. 15.자로 [비판보도 취재거부, 비협조로 일관하는 검찰]이라는 제목의 기사(이하 '이 사건 제3기사'라 한다)를 별지3 원보도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작성하여 보도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5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1) 이 사건 제1기사에서, 원고 A가 권한을 남용해 구내식당 측에 검찰청 직원들이 간식으로 먹을 토스트 300개를 만들어 제공하라는 무리한 요구를 하였고, 그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원고 A와 구내식당 업체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였으며, 그 갈등이 원인이 되어 의정부지방검찰청 구내식당 운영업자 선정방식이 이전 운영업자에게 의도적으로 불리하게 변경됨으로써 이전 운영업자가 더 이상 구내식당 운영을 맡지 못하고 폐업하게 되었다는 취지(이하 '적시사실 ① 부분'이라 한다)의 허위의 기사를, (2) 이 사건 제2기사에서, 참가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부적격 업체가 새로운 구내식당 운영업체로 선정되었고, 원고 A가 구내식당 운영업체 선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목적으로 구내식당 관리위원회의 조직을 인위적으로 변경하였으며, 새롭게 선정된 업체에 매출을 증대시킬 수 있는 특혜를 부여하였다는 취지(이하 '적시사실 ② 부분'이라 한다)의 허위의 기사를, (3) 이 사건 제3기사에서, 언론중재위원회가 이 사건 제1, 2기사를 모두 진실한 내용의 보도라고 판단한 결과 원고들의 정정보도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이하 '적시사실 ③ 부분'이라 한다)의 허위의 기사를 작성·보도함으로써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피해를 입혔으므로, 피고 뉴시스는 제1기사의 적시사실 ① 부분에 대하여 별지1-2 기재와 같은 반론보도문을, 제2, 3기사의 적시사실 ②, ③ 부분에 대하여는 별지2-2 기재와 같은 정정보도문을 각 게재할 의무가 있고, 피고들은 손해배상으로 각자 원고 A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원고 A가 구내식당에 토스트 300개를 주문한 사실, 그 후 구내식당 운영업체 선정방식이 수의계

약에서 공개입찰 방식으로 변경된 사실, 공개입찰 공고시 업체의 참가요건으로 7년 내의 운영실적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운영실적이 전무한 신생업체가 새로운 구내식당 운영업체로 선정된 사실, 공개입찰 공고와는 달리 새로운 업체가 제공하는 중식 가격이 3,000원에서 3,500원으로 인상된 사실 등 이 사건 제1, 2기사에 적시된 개개의 사실은 모두 진실에 부합한다. 피고들은 이와 같은 사실을 전제로 위 구내식당 운영업체 변경 경위에 대해 언론으로서 의혹 제기라는 의견표명을 한 것에 불과하고, 위 각 기사에는 원고들의 반론이 이미 게재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각 기사들은 반론보도 및 정정보도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또한, 이 사건 각 기사는 공공기관인 의정부지방검찰청의 구내식당 운영업체 선정과 관련한 비위 사실에 관한 것으로서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이라는 공익적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어서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피고들은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3. 반론보도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 등으로 인해 피해를 받은 자는 해당 언론보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3월내에 그 보도 내용에 관한 반론보도를 언론사등에게 청구할 수 있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이라 한다) 제16조 제3항, 제14조 제1항). 반론보도청구권은 언론사에 대하여 언론사의 보도내용을 진실에 부합되게 시정할 것을 요구하는 권리가 아니라 그 보도내용에 대하여 피해자가 주장하는 반박내용을 보도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로서(대법원 1986. 1. 28. 선고 85다카1973 판결, 헌법재판소 1991. 9. 16. 선고 89헌마165 결정 등 참조), 위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언론보도와 개별적 연관성을 가지는 자가 일정한 기간 안에 반론보도 의무자에게 반론보도문의 게재를 요청하면 족하고, 당해 언론사는 원문보도의 진위 여부나 청구자의 구체적인 손해 여부에 관계없이 이에 응하여 반론보도문을 게재하여야 하며, 법원의 재판절차에 있어서도 이러한 형식적인 요건의 구비 여부만이 심리의 대상이 된다. 다만, 언론중재법 제16조 제4항에 의하면, 피해자가 반론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거나, 청구된 반론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언론사등은 반론보도청구를 거부할 수 있을 뿐이다.

(2) 한편, 반론보도청구는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를 대상으로 하므로, 그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려면 먼저 원고들이 반론보도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적시사실 ① 부분이 사실적 주장에 관한 것인지 단순한 의견표명인지를 먼저 가려보아야 한다. 여기에서 사실적 주장이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명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증거에 의하여 그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을 말하는데, 이러한 개념이 반드시 명확한 것은 아니다. 언론보도는 대개 사실적 주장과 의견표명이 혼재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구별기준 자체가 일의적이라고 할 수 없고, 양자를 구별할 때에는 당해 원보도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구독자가 보통의 주의로 원보도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사용

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방법 뿐만 아니라 당해 원보도가 게재한 문맥의 보다 넓은 의미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및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한편,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에 관한 보도내용이 소문이나 제3자의 말, 보도를 인용하는 방법으로 단정적인 표현이 아닌 전문 또는 추측한 것을 기사화한 형태로 표현하였지만, 그 표현 전체의 취지로 보아 그 사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11. 27.선고 2007도5312 판결 등 참조).

나. 적시사실 ① 부분이 사실적 주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들은, 적시사실 ① 부분은 원고 A가 토스트 300개를 구내식당에 주문한 행위가 권한남용에 해당한다는 점을 지적하는 기사로서 토스트 주문 행위를 두고 '갑질'이라고 표현하거나 '부당한 요구'라고 평가한 것은 반론보도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실에 대한 의견표명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관련법리에 이 사건 제1기사의 전체 내용, 문구, 적시 방법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반론보도를 구하는 적시사실 ① 부분은, '원고 A가 이전의 구내식당 운영업체에 대해 다량의 토스트 주문이라는 무리한 요구를 하였다가, 그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를 못마땅하게 여겨, 이용자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던 기존 운영업체를 축출하기 위해 일부러 구내식당 운영업체 선정방식을 변경한 것이다'라는 관념을 갖게 한다. 또한 이는 제3자인 이전 운영업자의 진술을 인용하여 전문 또는 추측한 것을 기사화한 형태로 표현되기는 하였지만, 그 표현 전체의 취지는 '구내식당 운영업체가 교체된 원인은 결국 원고 A의 권한 남용 행위로 인한 것'이라는 사실을 강하게 암시하는바, 이는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원고들은 위 기사로 인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구내식당 운영업체를 축출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는 피해를 입었으므로, 위 기사의 진위 여부를 불문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은 위 기사에 대한 반론보도를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다. 반론보도를 거부할 사유가 있는지 여부

(1) 피고들은, 이 사건 제1기사는 이전 구내식당 운영업자의 진술 및 제보 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것으로서 전반적인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는 이상 원고들이 구하는 반론보도내용은 명백히 사실에 반한다거나, 구내식당 운영업체 변경 경위에 관한 원고들의 입장은 이미 원보도문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원고들은 반론보도를 구할 이익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살피건대, 반론보도청구에 대한 거부사유로서의 '청구된 반론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한다'는 의미는 그 주장 내용이 사회 보편적인 경험칙이나 역사적 사실, 자연과학적인 현상, 일반적인 과학적 원리나 공식 등에 반하는 것으로서 통상적인 교양을 갖춘 독자라면 특별한 조사나 검증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서도 허위임을 곧바로 알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원고들은 별지1-2 기재와 같이 기존 운영업체가 공개입찰에 참가하지 아니한 경

위, 정확한 구내식당 만족도 조사 결과, 토스트 주문 배경 경위에 관한 반론보도를 구하고 있는바, 원고들이 요구하는 반론보도의 내용이 일반적인 독자의 입장에서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반론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정당한 이익을 갖지 않는 경우'라 함은 채권자가 구하는 반론보도의 내용이 이미 대상기사를 보도한 당해 매체를 통하여 대상기사와 같은 비중으로 충분한 반론보도가 이루어져 반론보도의 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을 말하는 것인데(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3다28439 판결 참조), 원고 A와 기존 구내식당 업체 사이의 갈등의 계기가 되었다고 지적된 토스트 주문 배경, 직원들의 구내식당 만족도 설문 조사결과에 대한 정확한 수치 등은 구내식당 운영업체 선정방식이 부당하게 변경되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사실관계임에도 그에 대한 설시가 없는 등 이 사건 제1기사에 원고들의 반론이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 뉴시스는 이 사건 제1기사의 적시사실 ① 부분에 대하여 반론보도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그 반론보도의 내용과 방법에 관하여 살피건대, 법원은 청구인이 구하는 반론보도의 전체적인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청구인의 명예나 권리가 최대한 회복될 수 있도록 적절히 수정하여 이를 인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원고들이 구하는 반론보도의 내용과 방법, 이 사건 보도의 분량 및 그 표현방식,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해 원고들이 구하는 별지1-2 기재 반론보도문을 별지1-1 기재와 같이 수정하여 게재하고, 반론보도문의 게재방법, 간접강제방법 등도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4. 정정보도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정정보도청구는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한 경우에 허용되므로 그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려면 원고들이 정정보도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적시사실 ②, ③ 부분이 사실적 주장에 관한 것인지 단순한 의견표명인지를 먼저 가려보아야 하고, 그 판단 기준에 관하여는 위 3의 가.(2)항 기재와 같다.

나. 이 사건 제2기사에 대한 판단

(1) 사실의 적시 해당 여부

이 사건 기사의 전체 내용, 문구, 적시 방법 등을 종합해 볼 때, 원고들이 정정보도를 구하고 있는 적시사실 ② 부분은, 원고들이 참가자격 및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를 신규 운영업체로 선정하고, 그 과정에서 원고 A가 업체선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구내식당 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을 차장검사로 변경하는 등 운영위원회 구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였으며, 신

규 선정업체에 대하여 중식대를 인상하는 방법으로 특혜를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허위사실 해당 여부

그런데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보면, 이 부분 기사의 내용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정정보도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

(가) 구내식당 위탁업체 모집공고의 문언 상 참가 자격으로서 반드시 최근 7년 내 집단급식 운영실적이 있을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는 해석되지 아니하고, 다만, 운영 실적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증명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구내식당 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사무국장에서 차장검사로 변경된 것은, 구내식당 관리위원회의 위원을 기존의 일반직 직원 11명에서 검사들을 비롯한 다양한 직급의 구성원이 포함된 22인의 위원으로 그 저변을 확대한 데 따른 불가피한 조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위원들은 모두 평등하게 1인 1의결권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고, 관리위원회 규정상 의결이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 위원장이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관련 규정이 개정되어, 위원장인 원고 A가 업체 선정을 좌우할 수 있는 구조라고 보기는 어렵다.

(4) 모집공고에는 구내식당 관리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식대 조정이 가능하다고 애초부터 공시되어 있었고, 그에 따라 입찰에 참가한 3개 업체 중 최종 선정업체를 포함한 2개 업체가 중식대 인상을 제안하고, 나머지 업체도 식대 인상 대신 가스비를 전액 청에서 부담할 것을 제안하는 등 어떠한 식으로든 업체의 수익을 보전하기 위한 식대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선정업체인 E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위 식대 인상이 단행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 제3기사(적시사실 ③ 부분)에 대한 판단

(1) 사실의 적시 여부

이 사건 기사 중 적시사실 ③ 부분의 내용, 문구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들이 정정보도를 구하고 있는 적시사실 ③ 부분은, 언론중재위원회가 이 사건 제1, 제2기사에 보도된 내용이 모두 진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그와 같은 전제에서 원고들의 정정보도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내용의 중재불성립 결정을 하였다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2) 허위사실 해당 여부

그런데, 위 기초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심리 과정에서 조정위원 일부는 이 사건 제1, 제2기사에 보도된 내용에 일부 오류가 있음을 지적하였던 사실,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중재법 제21조 제3항에 따라 당사자들 사이의 합의불능 등 조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현저한 사정이 있다는 이유로 조정불성립 결정을 하였을 뿐 정정보도청구 대상 기사가 객관적 진실에 부합하여 원고들의 정정보도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한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해보면, 적시사실

③ 부분은 언론중재위원회의 결정 취지를 진실과는 다르게 왜곡하여 보도한 허위보도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정정보도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 뉴시스는 이 사건 제2기사의 적시사실 ② 부분 및 제3기사의 적시사실 ③ 부분에 대하여 정정보도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그 정정보도의 내용과 방법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들이 구하는 정정보도의 내용과 방법, 이 사건 보도의 분량 및 그 표현방식,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해 원고들이 구하는 별지2-2 기재 정정보도문을 별지 2-1 기재 정정보도문 기재와 같이 수정하여 게재하도록 하고, 정정보도문의 게재방법, 간접강제 방법 등도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5. 이 사건 각 기사의 삭제 청구에 관한 판단

명예는 생명, 신체와 함께 매우 중대한 보호법익이고 인격권으로서의 명예권은 물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배타성을 가지는 권리라고 할 것이므로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의 인격적 가치에 관하여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인 명예를 위법하게 침해당한 자는 손해배상(민법 제751조) 또는 명예회복을 위한 처분(민법 제764조)을 구할 수 있는 이외에 인격권으로서 명예권에 기초하여 가해자에 대하여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침해행위를 배제하거나 장래에 생길 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침해행위의 금지를 구할 수도 있다(대법원 2005. 1. 17.자 2003마1477 결정 참조).
한편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 기사삭제 청구의 당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표현내용이 진실이 아니거나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기사로 인해 현재 원고의 명예가 중대하고 현저하게 침해받고 있는 상태에 있는지 여부를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이라는 두 가치를 비교·형량하면서 판단하면 될 것이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다60950 판결 등 취지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사건 각 기사는 공직자의 도덕성이나 그 업무처리가 정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를 감시, 견제하기 위한 목적에서 작성된 것으로서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기사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반론보도 및 정정보도 청구를 인용함으로써 독자들에게 올바른 판단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일방적 의혹제기에 의한 원고들의 인격권 침해가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기사의 삭제 청구를 인용할 정도로 위 각 기사로 인한 원고들의 인격권 침해가 중대한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6. 원고 A의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해자의 특정 여부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거나 또는 두문자나 이니셜만 사용한 경우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

위 사정을 종합해 볼 때 그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면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21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제1, 제2기사의 내용 및 문구 등을 당시 의정부지방검찰청의 검사 배치 현황에 비추어 살펴보면, 2015. 2.경 부임한 고위 간부로서, 구내식당 운영관리위원회 위원장직을 수행하게 된 것은 당시 의정부지방검찰청의 유일한 차장검사인 원고 A로 귀결되므로, 위 각 기사에서 지목하는 'A검사'는 원고 A로 특정된다고 할 것이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제2, 제3기사 중 적시사실 ②, ③ 부분이 허위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 사건 제1기사 중 적시사실 ① 부분이 허위사실인지 보건대, 적시사실 ① 부분이 단순한 의견의 표명이 아닌 구내식당 운영업체 선정방식 변경원인에 대한 사실적 주장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 허위성의 입증은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부담한다고 할 것이나,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자는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고 피해자는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성의 증명을 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다60950 판결 등 참조). 피고들이 제출한 을 제1호증은 C 측 팀장인 G가 구내식당 교체 배경에 대해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었거나 자신의 주관적인 판단 하에 추측한 내용을 일방적으로 기재한 것에 불과하여 신뢰하기 어렵고, 특정 업체가 수의계약을 통해 14년 동안이나 독점적으로 구내식당을 운영해 오던 것을 시정하여 공개입찰 방식으로 업체를 선정하기로 하고, 그 선정을 위한 심사과정에도 내부 구성원들이 보다 폭넓게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게 한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거나 이상하다고 할 수 없으며, 인터뷰 과정에서 종전 운영업체 관계자가 말한 것과 달리 만족도 조사 결과도 95%가 만족한다는 의견을 낸 것이 아니라 '보통 이상'으로 응답한 사람이 95%였던 것으로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양호 이상'으로 응답한 사람은 74%에 그쳤고, 달리 이를 소명할 자료가 없으므로, 적시사실 ① 부분은 허위사실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기사로 인해, 청렴성과 공정성을 갖출 것이 요구되는 검찰의 고위 간부인 원고 A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됨으로써 위 원고가 손해를 입게 되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각자 위 원고에게 그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2) 피고들의 위법성 조각 항변에 관한 판단

(가) 공직자의 도덕성·청렴성이나 그 업무처리가 정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는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에 대한 감시와 비판 기능은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아니 되는바, 공직자 또는 공직 사회에 대한 감시와 비판 기능의 수행을 그 사명의 하나로

하는 언론보도의 특성에 비추어, 언론보도의 내용이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직자의 생활이나 공직 수행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어떤 의혹을 가질 만한 충분하고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그 사항의 공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언론보도를 통하여 위와 같은 의혹사항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고 조사를 촉구하는 등의 감시와 비판행위는 언론자유의 중요한 내용 중의 하나인 보도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언론보도로 인하여 공직자의 사회적 평가가 다소 저하될 수 있다고 하여 바로 공직자에 대한 명예훼손이 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나,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도 그 언론보도의 내용이나 표현방식, 의혹사항의 내용이나 공익성의 정도, 공직자 또는 공직 사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정도, 취재과정이나 취재로부터 보도에 이르기까지의 사실확인을 위한 노력의 정도, 기타 주위의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언론보도가 공직자 또는 공직 사회에 대한 감시·비판·견제라는 정당한 언론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비록 공직자 또는 공직 사회에 대한 감시·비판·견제의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언론보도는 명예훼손이 된다.

또한, 민사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명이 있으면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고, 또한 위 사실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언론매체의 보도를 통한 명예훼손에 있어서 행위자가 보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보도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05.12. 선고 2004다35199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구내식당 운영업체 선정방식이 변경된 원인이 원고 A와 'C' 사이의 사적인 갈등에 기한 것이라거나 신규 구내식당 운영업체 선정 과정에 원고 A가 부당하게 개입하였다는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객관적인 자료나 근거를 피고들이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들은 보도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적절하고도 충분한 추가조사 없이 'C' 측의 일방적인 진술에만 의존하여 이 사건 제1기사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신규 구내식당 운영업체 선정과정 및 경위에 대한 의혹을 담은 이 사건 제2기사는 피고들의 자의적인 해석을 바탕으로 한 것이고, 의혹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취재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허위사실 적시 부분에 관하여 피고들이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다. 손해배상의 범위

나아가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각 기사의 취재 경위, 보도의 동기, 보도 형식 및 횟수, 표현 방법, 이 사건 기사 중 허위부분이 차지하는 정도 및 원고 A가 입었을 피해의 정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들이 원고 A에게 지급할 손해배상액을 5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므로, 피고들은 위 손해배상금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 A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분명한 2016. 1. 27.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범위나 존부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7.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를 초과하는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1-1〉 반론보도문

○ 제목: 의정부지방검찰청의 본보 2015. 9. 21.자 기사 『검찰간부 구내식당에 갑질 의혹』에 대한 반론보도문

○ 본문: 의정부지방검찰청은 본보 2015. 9. 21.자 『검찰간부 구내식당에 갑질 의혹』이라는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반론을 제기하고 있으므로, 이를 게재합니다.

- 의정부지방검찰청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구내식당을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방식에 의하여 결정하고자, 14년째 수의계약으로 구내식당을 운영해 온 기존 사업자와의 계약기간 만료 이후에 새로운 사업자를 결정함에 있어 그 선정절차를 수의계약 방식에서 공개입찰 방식으로 변경하였음.
- 기존 사업자에게 선정자 평가항목으로 '기존의 검찰청 식당 운영실적 등'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려 입찰에 참가할 것을 독려하였고, 기존 사업자의 공개입찰 참가가 제한되지 아니하였음에도, 기존 사업자는 입찰참가를 포기하였음.
- 기존 사업자의 구내식당 운영과 관련한 의정부지방검찰청의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만족' 의견이 95%인 것은 아니고, '양호 이상'으로 응답한 비율이 74%인 것으로 조사되었음.
- 2015. 2. 25. 부임한 A검사가 구내식당에 대하여 수시로 불만을 토로한 사실은 없음

- A검사는 2015. 3. 3. 구내식당 운영이 어렵고, 토스트를 간식 메뉴로 판다는 얘기를 듣고 구내식당 운영에 도움을 주고자, 사비를 들여 외부업체가 아닌 구내식당에 직원들 간식용 토스트를 하루 전에 주문한 것인데, 구내식당 측으로부터 직원들 일손이 부족해 많은 양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고 하루에 30개씩의 토스트만 제공할 수 있다는 답변을 듣고, 외부 업체에 토스트를 대신한 핫도그를 주문한 사실이 있었을 뿐 A검사와 종전 구내식당 사업자 사이에 특별한 갈등이 있을만한 사정은 없었음.

〈별지 1-2〉 요구하는 반론보도문 생략

〈별지 2-1〉 정정보도문

○ 제목: 본보 2015. 10. 6.자 기사 『의정부지검 이상한 구내식당 업체선정...특혜의혹도』 및 2015. 12. 15.자 기사 『비판보도에 취재거부, 비협조로 일관하는 검찰』에 대하여 정정보도문을 게재합니다.

○ 본문

1. 피고 뉴시스는 2015. 10. 6.자 『의정부지검 이상한 구내식당 업체선정...특혜의혹도』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의정부지방검찰청이 구내식당 공개경쟁 입찰공고에 기재된 '최근 7년 이내의 집단급식 운영실적 또는 근무경력의 증명'을 요하는 참가자격을 무시한 채 설립한 지 1년여 밖에 안 된 신생업체를 최종 위탁업체로 선정하였고, 구내식당 선정운영위원회의 위원장직을 기존의 사무국장에서 A검사로 격상시켜 사실상 A검사가 업체 선정에 관여하도록 했으며, 신규 업체 선정 후 수요가 많은 중식 가격을 공고 내용과 다르게 인상시켜 줌으로써 해당 업체에 대하여 매출인상의 특혜를 제공하였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였다.

   그런데, 해당 보도내용과 관련한 사실확인 결과,

   ① 공개입찰 모집공고에 기재된 '최근 7년 이내 운영실적 제출' 요건은 참가자격 요건이 아니고, 동종 업체 운영경력이 있는 경우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므로, 의정부지방검찰청이 구내식당 위탁업체 모집공고에 기재된 참가자격 요건을 무시한 채 설립된 지 1년여 정도가 경과한 신생업체를 최종 위탁업체로 선정하였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② 구내식당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직을 기존의 사무국장에서 차장검사로 격상시킨 것은 부장검사를 포함해 직급별 대표를 늘리는 방식으로 위원회 조직이 확대된 것에 따른 조치일 뿐이고, 구내식당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직급별 대표 22명이 동등한 의결권을 행사하여 다수결에 의한 의사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어 의사결정 구조상 특정인이 사업자 선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으며, 위 기사에 보도된 신규업체도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선정되었으므로, A검사가 신규업체 선정에 결정적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구내식당 운영위원회 위원장직을 차장검사로 격상시켰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③ 신규업체의 중식 가격인상은 구내식당 위탁업체 모집 공고 당시 이미 예고된 내용으로서, 입찰에 참여한 3개 업체 중 신규업체를 포함한 2개 업체에서 중식 가격 인상을 제안하였

고, 구내식당 관리위원회에서는 사업자로 선정된 업체의 중식 가격 인상 제안에 대해 논의를 거친 후 이를 수용하는 방식으로 중식 가격을 인상한 것일 뿐이므로, 해당 업체에 대하여 매출 인상의 특혜를 제공하였다는 취지의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2. 피고 뉴시스는 2015. 12. 15.자 『비판보도에 취재거부, 비협조로 일관하는 검찰』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의정부지방검찰청이 언론중재위원회에 본사가 2015. 9. 21.자로 보도한 『검찰 감부 구내식당에 갑질 의혹』 기사 및 2015. 10. 6.자로 보도한 『의정부지검 이상한 구내식당 업체선정...특혜의혹도』 기사에 대하여 정정보도 요청을 했으나, 언론중재위원회에서는 본사의 보도내용을 모두 사실로 판단한 결과, 의정부지방검찰청의 정정보도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내용의 중재 불성립 결정을 하였다고 보도하였다.

   그런데 해당 보도내용과 관련한 사실확인 결과, 언론중재위원회는 본사의 보도내용 중 A검사가 토스트를 주문하고, 신규업체의 중식가격이 모집공고에 기재된 가격보다 인상된 점은 사실이라는 점을 전제로 의정부지방검찰청의 반론보도를 게재하는 조정안을 양측에 제시했으나, 의정부지방검찰청이 이를 수용하지 아니하였고, 그 결과 언론중재위원회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 불능 등 조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함을 이유로 조정불성립 결정을 하게 된 것이므로, 언론중재위원회가 본사의 기존 기사내용이 모두 진실함을 전제로 의정부지방검찰청의 정정보도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취지의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별지 2-2〉 요구하는 정정보도문 생략

〈별지 3〉 대상기사 생략

제주지방법원 2016. 8. 18. 선고 2015가합1648, 2015가합1655(병합) 판결

소송물인 이행청구권이 있음을 주장하는 자에게 원고적격이 있는 것과 같이 정정보도청구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지자체감사위원회는 원고적격이 있다

- 원고 :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외 1명
- 피고 : 한국방송공사 외 1명

[사실관계]

피고는 2015년 7월 21일자 KBS 〈뉴스9〉 프로그램에서 「감사위에 사전 로비?」라는 제목으로 원고 감사위원회 위원장(원고 A)이 감사기간 중 감사대상자를 만났음에도 만난 적이 없다고 말하였고 취재진의 사실 확인에 답변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보도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취재기자에게 답변한 내용과 달리 보도하였다며 정정보도 및 인터넷 다시보기(VOD) 중 원고들과 관련된 부분의 삭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심리 결과, 먼저 원고 위원회에 원고적격이 없다는 피고들의 본안전항변에 관해 1심 법원은 이 사건 소는 이행의 소로서 정정보도청구권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자에게 원고적격이 있다며 위 피고들의 항변을 배척하였다. 나아가 원고 A가 보도 당일 취재기자에게 소명자료를 가지고 위원회에 방문한 감사대상자를 만나 소명을 들었다고 답변한 점을 확인하고, 정정보도 게재 및 원고 A에 대한 손해배상 800만 원을 명하였다. 그러나 피고 케이비에스미디어에 대한 정정보도 및 인터넷 다시보기 일부 삭제에 대한 청구는 피고적격 내지 고의 · 과실이 없어 기각하였다.
이후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2심 법원이 항소를 기각하자(광주고등법원(제주) 2016나10546), 피고가 상고하여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2017다227929).
한편, 원고들은 소제기에 앞서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하여 직권조정결정(반론보도)이 내려졌으나(2015제주조정26 · 27, 2015제주조정28 · 29(병합)), 피고 측 이의신청으로 자동소제기된 바 있다.

[판결요지]

□ **지자체 소속 감사위원회의 원고적격에 대한 판단**
이행의 소에서는 소송물인 이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주장하는 자에게 원고적격이 있는 것이므로, 원고 위원회가 피고들에 대하여 정정보도의 이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이상 정정보도청구의 소의 원고적격을 인정할 수 있다.

□ **평가의 전제사실이 허위인 경우 정정보도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 위원회 위원장인 원고 A가 감사기간 중에 감사대상자인 C를 만난 것이 부적절한 행위였는지는 평가의 문제이므로, 이러한 의견표명이 타당한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원고 위원회가 담당하는 업무와 원고 A의 지위 등에 비추

어 사실관계가 진실하다면 이러한 의견표명은 허용된다. 그러나 이 사건 보도는, 원고 A가 C를 만난 것이 부적절했다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해 원고 A가 ① 감사기간 중 C를 만난 적이 없다고 말하였고, ② 만남 여부를 묻는 취재진의 연락에 답변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당사자인 원고 A뿐만 아니라 원고 위원회 또한 그 공정성에 대한 의심을 받게 되는 등 명예가 훼손되는 피해를 입었다고 보이므로, ①, ② 부분에 대한 정정보도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다.

판결문

사 건	2015가합1648 정정보도 등 2015가합1655(병합) 정정보도 등
원 고	1.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2. A
피 고	1. 한국방송공사 2. 케이비에스미디어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7. 7.
판결선고	2016. 8. 18.

주 문

1. 피고 한국방송공사는, 이 판결 확정 후 7일 이내에 방송하는 KBS 뉴스9 지방뉴스 프로그램의 진행 중에 진행자로 하여금 별지1 기재 정정보도문을 통상적인 진행 속도로 1회 낭독하게 하되, 낭독하는 동안 위 정정보도문의 제목과 내용을 시청자들이 알아볼 수 있는 크기로 계속 표시하라.
2. 피고 한국방송공사는 원고 A에게 800만 원을 지급하라.
3. 원고들의 피고 한국방송공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케이비에스미디어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한국방송공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한국방송공사가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케이비에스미디어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1. 피고 한국방송공사(이하 '피고 공사'라고 한다)는 별지2 기재 정정보도문을 KBS 제주1-TV 9시뉴스 9시 40분, KBS뉴스9 지방뉴스 프로그램에서 진행자가 통상적인 진행 속도보다 빠르지 않게 낭독하되, 멘트가 진행되는 동안 위 정정보도문의 내용을 시청자들이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크기의 자막으로 계속 표시하며, 화면은 파란색 바탕에 흰색 자막으로 한다.
2. 가. 피고 케이비에스미디어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피고 회사의 홈페이지(http://jeju.kbs.co.kr/news/index.html)의 홈페이지 KBS 제주 뉴스투데이 초기화면의 기사목록 앞부분에 별지2 기재 정정보도문 제목을 [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위 정정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별지3 기재 보도의 본문 하단에도 위 정정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한다.

   나. 또한 별지3 기재 보도의 다시보기(VOD) 화면 중 원고들과 관련된 부분은 삭제하는 것으로 편집하여 게재하되, 별지2 기재 정정보도문의 다시보기(VOD) 화면은 정정보도 기간 중 48시간 게재하고, 48시간 게재 후에는 기사 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3. 피고들은 원고 A에게 800만 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이하 '원고 위원회'라고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와 그 소속기관 등 및 그 기관에 속한 사람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 점검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속 기구이다. 원고 A는 원고 위원회의 위원장이다.

2) 피고 공사는 공정하고 건전한 방송문화를 정착시키고 국내외 방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방송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 회사는 국내외 인터넷 방송, 원고 공사 저작물의 판권 및 관리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문제되는 보도 전의 사실관계

1) 피고 공사의 B 기자가 2015. 7. 20. 원고 위원회의 제주도 해양수산연구원 감사 결과 감사대상인 해양수산국장 C에게 비위사실에 비해 가벼운 처분이 이루어졌다는 내용의 보도를 하였다.

2) 다음날인 2015. 7. 21. 13:00경 B 기자가 원고 A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해양수산국장을 만나서 무슨 말을 했느냐고 질문하였고, 원고 A가 "C 국장이 추가 소명자료를 가지고 감사위원회에 방문하여 소명을 들었다"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3) 이어 2015. 7. 21. 15:00경 B 기자가 원고 A의 집무실에 찾아가 원고 A, 원고 위원회 감사과장 D에게 원고 위원회의 해양수산연구원 감사 결과와 C에 대한 처분의 경위에 관하여 취재하였다. 당시 B 기자와 원고 A 사이에 아래와 같은 대화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 B 기자: 전화로 여쭤봤지만 C 국장님 만나서 무슨 얘기 하셨는지도 좀 궁금하고.
> 원고 A: 감사위원회의를 하잖아 하고나면은 그때 C 국장이 와가지고 위원회의에서 그런 그 자기가 감사회 대비를 아직 못했다 그랬던 것 같애. 소명자료가 있다. 그걸 나중에 제출해라 하고 가져왔어요. 제출한 내용.
> (중략)
> B 기자: 그러면 C 국장님 만나서는 무슨 얘기 하셨는지.
> 원고 A: C 국장이 와가지고 무슨 얘기 했냐?
> B 기자: 아니 위원장님이 만나서요.
> 원고 A: 나만 만난 게 아니지 우리 직원들하고 그쪽 직원하고 같이 와서 본인 입장을 얘기할 거 아니야. 억울하다. 주변에서 무슨 인사철만 되면 자기를 음해하고 옛날에도 무슨 검찰 조사 많이 받았다 하소연을 한 거지 쉽게 말하면. 그러면 우리는 그거하고는 상관없는 거 아냐 이번 건은. 필요한 자료 소명자료 있으면 내라. 두 건이나 가져왔지. (중략) 그때 이제 그게 우리는 뭐냐면 이 사람이 감사 지적을 받아가지고 징계처분을 받으면 가능한 한 소명의 기회를 확실하게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자료 있으면 다시 가져와라 하고 의결도 한 번 늦췄잖아요. 그것 때문에. 의결 늦추면서 자기가 소명자료 갖고 오겠다고 해서 가져왔어. 그걸 가지고 그 다음 회의 때 검토하게 하고.

4) B 기자가 2015. 7. 21. 17:49경 원고 A의 휴대전화로 "위원장님 바쁘신가봅니다. 아까 뵀던 KBS B입니다. 다름아니고 C국장님은 지난 9일 위원장님 따로 만난 사실 인정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얘기를 들어봐야 할 것 같아 전화드렸습니다. 연락 없으시면 인정하시는 걸로 알겠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원고 A가 같은 날 20:25경 "행사땜에~~^^ 주관적 판단은 위험~~!!"이라는 답장을 보냈다.

다. 문제되는 보도 내용

B 기자가 2015. 7. 21. KBS '뉴스9'에서 [감사위에 사전 로비?]라는 제목으로 별지3 원보도 기재와 같은 보도(이하 '이 사건 보도'라고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가 제1 내지 4호증, 제5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은, 원고 위원회는 이 사건 보도의 피해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행의 소에서는 소송물인 이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주장

하는 자에게 원고적격이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1977. 8. 23. 선고 75다1676 판결, 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3다44387, 44394 판결 등 참조), 원고 위원회가 피고들에 대하여 정정보도의 이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이상 정정보도청구의 소의 원고적격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피고들은, 합의제 행정기관인 원고 위원회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감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이라고 한다) 제14조 제3항은 국가·지방자치단체,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해당 업무에 대하여 그 기관 또는 단체를 '대표'하여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합의제 행정기관이 소를 제기할 경우 행정기관 내부의 의사결정방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원고 위원회의 설립근거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도 그러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 한국방송공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정정보도청구

1) 원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 공사가 B 기자의 취재에 응한 원고 A에게서 감사기간 중 C를 만난 경위에 관하여 들었음에도 ① 원고 A가 C를 만난 사실을 부인하였고, ② 이에 관하여 취재진의 연락에 답변하지 않았다는 각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이 사건 보도를 함으로써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피해를 입혔으므로, 피고들은 별지2 기재와 같은 정정보도를 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언론중재법 제14조의 정정보도청구는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한 경우에 허용되므로, 그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려면 원고가 정정보도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원보도가 사실적 주장에 관한 것인지 단순한 의견표명인지를 먼저 가려보아야 한다. 여기에서 사실적 주장이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명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증거에 의하여 그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을 말한다(대법원 2011. 9. 2. 선고 2009다5264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보도 중 원고들이 문제삼는 것은 원고 A가 ① 감사기간 중 C를 만난 적이 없다고 말하였고, ② 이에 관하여 묻는 취재진의 연락에 답변하지 않았다는 부분으로(이하 각 '①, ② 부분'이라고 한다), 모두 증거에 의하여 그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실관계의 적시에 해당한다.

다) 허위사실인지 여부

위 인정사실과 같이 원고 A가 B 기자에게 이 사건 보도 당일인 2015. 7. 21. 13:00경

전화로, 또 같은 날 15:00경 원고 위원회 집무실에 찾아온 B 기자를 만나 'C가 원고 위원회에 찾아와 원고 A 등 감사위원을 만나고 소명자료를 제출하였다'고 이야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보도 중 ①, ② 부분은 허위사실에 해당한다.

라) 이 사건 보도로 원고들이 피해를 입었는지 여부

원고 위원회 위원장인 원고 A가 감사기간 중에 감사대상자인 C를 만난 것이 부적절한 행위였는지는 평가의 문제이므로, 이러한 의견표명이 타당한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원고 위원회가 담당하는 업무와 원고 A의 지위 등에 비추어 사실관계가 진실하다면 이러한 의견표명은 허용된다. 그러나 이 사건 보도는, 원고 A가 C를 만난 것이 부적절했다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해 원고 A가 ① 감사기간 중 C를 만난 적이 없다고 말하였고, ② 만남 여부를 묻는 취재진의 연락에 답변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보도는 시청자들에게 원고 A가 부적절한 만남을 숨기기 위해 거짓말을 했고 부적절한 만남이 C의 경징계 처분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인상을 준다. 결국 이와 같은 허위보도로 당사자인 원고 A뿐만 아니라 원고 위원회 또한 그 공정성에 대한 의심을 받게 되는 등 명예가 훼손되는 피해를 입었다고 보이므로, ①, ② 부분에 대한 정정보도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다. 나아가 정정보도의 내용과 방법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들이 구하는 정정보도의 내용과 방법, 이 사건 보도의 분량 및 그 표현방식,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해 원고들이 구하는 별지2 기재 정정보도문을 별지1 기재 정정보도문 기재와 같이 수정하여 방송하도록 하고, 정정보도문의 방송방법도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나. 원고 A의 손해배상청구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사건 보도 중 ①, ② 부분이 허위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보도로 청렴성과 공정성을 갖출 것이 요구되는 원고 위원회의 위원장인 원고 A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됨으로써 원고 A가 손해를 입었음은 경험법칙상 명백하므로, 피고 공사는 원고 A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2) 손해배상의 범위

나아가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 보도의 취재 경위, 보도의 동기, 보도 형식과 횟수, 표현 방법, 이 사건 보도 중 허위부분이 차지하는 정도, 원고 A가 입었을 피해의 정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 공사가 원고 A에게 지급할 손해배상액을 800만 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공사는 원고 A에게 8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정정보도청구

원고들이 피고 회사를 상대로 정정보도를 구하는 청구원인을 분명히 밝히지 아니하였으나,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아래와 같이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1) 언론중재법상 정정보도청구

언론중재법의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3. "방송사업자"란 「방송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및 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말한다.
> 5. "신문사업자"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신문사업자를 말한다.
> 7.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란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정기간행물사업자 중 잡지 또는 기타간행물을 발행하는 자를 말한다.
> 9. "뉴스통신사업자"란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뉴스통신사업자를 말한다.
> 11. "인터넷신문사업자"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인터넷신문사업자를 말한다.
> 12. "언론사"란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를 말한다.
> 18. "인터넷뉴스서비스"란 언론의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전자간행물을 말한다. 다만, 인터넷신문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 19.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란 제18호에 따른 전자간행물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 21.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를 말한다.
>
> **제14조(정정보도 청구의 요건)** ①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등이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해당 언론보도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언론사,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이하 "언론사등"이라 한다)에게 그 언론보도등의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위 규정에 따르면, 언론중재법상 정정보도청구의 상대방은 제14조 제1항에 규정된 언론사등에 한정된다. 그런데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고 회사가 언론중재법 제14조 제1항에 규정된 언론사등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이 이 부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민법상 정정보도청구

민법 제764조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

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불법행위에 관한 규정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고의·과실로 인한 위법행위일 것을 요한다.

그러나 피고 회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이 사건 보도를 하여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나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 회사는 피고 공사와의 계약에 따라 피고 공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피고 공사의 방송업무의 결과 만들어진 저작물을 그 홈페이지에 등록하였을 뿐 이 사건 보도의 내용에는 관여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손해배상청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회사가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할 고의 또는 그에 대한 과실로 이 사건 보도에 관여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원고들이 이 부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공사에 대한 청구는 각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1〉 정정보도문

○ 제목 : 본 방송 2015. 7. 21.자 보도 '해양수산연구원 감사결과 사전로비?'에 대한 정정보도

○ 본문 : 본 방송은 2015. 7. 21.자 뉴스9 '감사위에 사전 로비?'라는 제목으로 제주도 해양수산연구원에 대한 감사기간 중 해양수산연구원장이었던 제주도 C 국장이 감사위원회를 찾아 위원장을 만났으나, A 감사위원장은 감사기간 중 C 국장을 만난 적도 없다고 답변하였고, 사실 확인을 위한 취재기자의 연락에는 답변하지 않았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보도내용과 관련한 사실확인 결과, A 감사위원장은 보도 당일인 2015. 7. 21. 13:00경 본 방송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감사기간에 감사위원회에 소명자료를 제출하기 위해 찾아온 C 국장을 만난 사실이 있다'라고 밝혔고, 같은 날 15:00경 위원장 집무실에서 취재기자에게 같은 내용의 설명을 한 사실이 있어 위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끝.

〈별지 2〉 요구하는 정정보도문 생략

〈별지 3〉 대상기사 생략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 9. 25. 선고 2014가합9860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11. 4. 선고 2015나2060748 판결(확정)

일부의 삭제만을 명하는 경우 본래 기사의 취지가 왜곡되고 잔존 기사가 기사로서의 가치가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 전체 삭제를 명할 수 있다

- 원고(피항소인) : A
- 피고(항 소 인) : 주식회사 이엠디 외 B

[사실관계]

피고들은 2014년 4월 14일부터 2015년 4월 20일까지 〈법무경찰신문〉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 및 「○○○ A, 중국에서 시한부 종말론 재산 갈취 물의」 등의 제목으로 원고가 자신을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실과 가정파괴를 조장하며 대가를 받고 폭력적인 시위를 하고 있다고 수차례 보도하였다. 이에 원고는 명예훼손 및 초상권 침해, 모욕적인 표현으로 인한 인격권 침해를 사유로 손해배상과 함께 각 기사 전체 삭제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심리 결과, 1심 법원은 공인이 아닌 원고의 종교적 행적은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 사건 보도의 공익성을 부인하였고, 일부 표현행위가 모욕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여 의견표명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 기사삭제 및 손해배상 500만 원을 명하였다. 이에 피고들이 항소하였으나, 2심 법원 역시 같은 이유로 1심 판단을 유지하는 한편, 1심에서 기사삭제를 명하는 범위가 불분명하여 이 부분에 한하여 변경 판결하였다. 이후 피고들이 상고하였으나 상고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됐다(대법원 2016다269810).
한편, 원고는 소제기에 앞서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하였으나 조정불성립결정된 바 있다(2014서울조정908 · 909 · 910, 2014서울조정911 · 912 · 913(병합)).

[판결요지]

□ **종교인이 행한 종교적 행위의 공익성에 대한 판단**

원고의 지위, 직업 등에 비추어 원고는 사회 및 대중에 영향을 줄 정도의 공공의 인물이 아닐 뿐만 아니라 원고의 중국 하얼빈에서의 발언 및 행적, 원고의 △△△ 교회에 대한 시위 활동 등이 공적인 관심 사항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의 △△△ 교회에 대한 시위 등을 통하여 헤이트 스피치의 문제점을 환기시켜 그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는 등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기사를 보도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 **기사삭제의 범위에 대한 판단**

위 각 기사의 내용 중 일부만이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있다 할 것이나, 위 각 기사의 일부의 삭제만을 명하는 경우 원래의 기사의 취지가 본래의 뜻과 달리 받아들여지게 될 수도 있는 점, 그 기사의 전체적 내용, 삭제해야

할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 등에 비추어 볼 때 나머지 기사가 기사로서의 가치도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기사는 전체적으로 삭제를 명함이 상당하다.

1심 판결문

사 건 2014가합9860 손해배상(기)
원 고 A
피 고 1. 주식회사 이엠디
2. B
변론종결 2015. 8. 21.
판결선고 2015. 9. 25.

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0.부터 2015. 9.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주식회사 이엠디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7일 이내에 별지 목록 1, 2 기재 인터넷 기사를 각 삭제하라.
3. 피고 주식회사 이엠디가 위 2.항 기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위 2.항 기재 기한 다음날부터 위 의무를 모두 이행하는 날까지 1일 5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5. 소송비용 중 2/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6.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주식회사 이엠디(이하, '피고 이엠디'라 한다)는 이 판결 확정 후 별지 목록 1, 2 기재 인터넷 기사를 각 삭제하라.

3. 피고 이엠디가 위 2.항 기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위 2.항 기재 기한 다음날부터 위 의무를 모두 이행하는 날까지 1일 1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 교회 피해자 대책모임'(이하 '○○○'라 한다)의 회원이자 △△△ 교회 피해자들의 모임 단체인 시○○○의 대표이고, 피고 이엠디는 인터넷신문 출판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인터넷신문 '법무경찰신문'(http://www.112news.co.kr, 이하에서는 홈페이지 주소를 생략한다)을 운영하고 있으며, 피고 B는 법무경찰신문 소속 기자이다.

나. 피고들의 별지 목록 1, 2 기재 기사의 보도

피고들은 별지 목록 1, 2 기재와 같이 2014. 4. 14.부터 2015. 4. 20.까지 법무경찰신문 홈페이지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라는 등의 제목으로 22개의 기사(이하 별지 목록 1 기재 기사를 '이 사건 제1기사'라 하고, 별지 목록 2 기재 기사를 '이 사건 제2기사'라 하며,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기사'라 한다)를 보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 16 내지 22, 34 내지 37, 4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자신을 '재림 예수'라고 주장한 적이 없음에도 피고들이 법무경찰신문 홈페이지에 원고가 자신을 '재림 예수'라고 주장한다는 등의 허위 사실이 담긴 이 사건 제1기사를 보도한 행위는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고 초상권을 침해하며, 원고에 대한 모욕적인 표현이 담긴 이 사건 제2기사를 보도한 행위는 원고의 인격권 및 초상권을 침해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청구취지 제1항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이엠디는 청구취지 제2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기사를 각 삭제할 의무가 있으며, 위 기사 삭제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청구취지 재3항 기재와 같이 이행강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① ㉮ 별지 목록 1 순번 ⑮ 기사 중 순번 54 내용 등은 원고를 대상으로 작성한 내용이 아니고, ㉯ 별지 목록 1 순번 ⑮ 기사 중 순번 52, 53 내용 등은 의견 표명에 불과할 뿐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며, ㉰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기사의 내용은 진실한 사실일 뿐만 아니라 그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명예훼손의 위법성이 조각되고, ② 이 사건 기사의 보도로 인하여 원고의 인격권 및 초상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를 다투고 있다.

3. 이 사건 제1기사가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는지 여부

가. 원고가 기사에서 특정되었는지 여부

(1) 별지 목록 1 순번 ② 기사 중 순번 4 내용

이른바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명예훼손의 내용이 그 집단에 속한 특정인에 대한 것이라고는 해석되기 힘들고 집단표시에 의한 비난이 개별구성원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지만,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구성원 수가 적거나 당시의 주위 정황 등으로 보아 집단 내 개별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때에는 집단 내 개별구성원이 피해자로서 특정된다고 보아야 하고, 그 구체적 기준으로는 집단의 크기, 집단의 성격과 집단 내에서의 피해자의 지위 등을 들 수 있다(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다35199 판결 등 참조).

돌아와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별지 목록 1 순번 ② 기사는 '○○○ A, 중국에서 시한부 종말론 · 재산 갈취 물의'라는 제목을 사용하고 있는 점, ② 원고는 ○○○의 주요 회원으로서 △△△ 교회에 대한 시위 활동을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점, ③ 같은 기사에서 원고의 사진을 게시하면서 이에 대한 설명글로 '○○○ 회원이자 시○○○ 대표인 A 씨가 경기도 고양시의 한 거리에서 시위를 열고 있다'는 내용을 덧붙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위 기사의 내용은 ○○○라는 집단 내의 개별구성원인 원고를 특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 별지 목록 1 순번 ⑨ 기사 중 순번 30 내용 중 후단, 순번 ⑭ 기사 중 순번 51 내용 중 후단, 순번 ⑮ 기사 중 순번 54 내용

갑 제11, 19, 2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목록 1 순번 ⑨ 기사 중 순번 30 내용 중 '몇몇 교계 언론들은 언론이 해야 할 가장 기본이 되는 의무조차 소홀히 한 채 헤이트 스피치 보도행태를 일삼고 있다.'는 부분, 같은 목록 순번 ⑭ 기사 중 순번 51 내용 중 '○○○ 일부 회원들은 아내와 자녀들을 상대로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다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이 다수 차지했다.'는 부분, 순번 ⑮ 기사 중 순번 54 내용 부분은 그 내용 및 문장의 전후 관계 등에 비추어 그 비판의 대상이 교계 언론, 개신교 기성교단, 원고를 제외한 ○○○의 일부 회원들인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 부분 기사 내용이 객관적으로 원고에 대한 표현이라는 점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나. 사실의 적시 여부

(1) 관련 법리

민법상 불법행위가 되는 명예훼손이란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 인격적 가치에 대하여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하고, 그와 같은 객관적인 평가를 침해하는 것인 이상,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표현행위에 의하여도 성립할 수 있다. 다만 단순한 의견 개진만으로는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가 저해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의견 또는 논평의 표명이 사실의 적시를 전제로 하지 않은 순수한 의견 또는 논평일 경우에는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성립되지 아니하나, 한편 여기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란 반드시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할 것은 아니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 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99다620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신문이나 잡지의 어떤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불법행위가 되는지의 여부는 일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와의 연관하에서 기사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사가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다가 당해 기사의 배경이 된 사회적 흐름 속에서 당해 표현이 가지는 의미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8다18925 판결 등 참조).

(2) 별지 1 순번 ② 기사 중 순번 4 내용 중 전단, 순번 ⑨ 기사 중 순번 29 내용, 순번 ⑪ 기사 중 순번 46 내용, 순번 ⑫ 기사 중 순번 47 내용, 순번 ⑮ 기사 중 순번 52 내용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일반 독자가 읽는 방법을 전제로 위 기사(갑 제4, 11, 16, 17, 20호증)의 제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 의미, 전체적 흐름, 문구의 연결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내용은 '원고가 가정파괴를 주동하는 등의 집회를 하고 있다.', '원고가 ○○○ 대표인 C 목사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1천만 원을 건넨 뒤 △△△ 교회를 상대로 하는 시위 활동을 하고 있다.', '원고가 대가를 받고 △△△ 교회를 상대로 시위 활동을 하고 있다.'는 취지의 사실 등을 간접적, 묵시적으로 적시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고, 위 기사 내용 중 의견 또는 논평에 해당하는 표현이 일부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사실상 원고의 명예를 해치는 사실을 암시하는 것으로서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별지 목록 1 순번 ⑮ 기사 중 순번 53 내용

갑 2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별지 목록 1 순번 53 내용은 인용표시를 통하여 범죄 심리학자들의 의견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바, 이 부분 내용은 독자들에게 원고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에 대한 소개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

(1) 관련 법리

'진실한 사실'이라고 함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3다52142 판결 등 참조).

한편, 허위 기사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당하였다고 주장하며 기사삭제 등을 청구하는 피해자는 그 기사가 진실하지 아니하다는 데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다60950 판결 등 참조).

(2) 원고의 중국 하얼빈에서의 행적 및 '하얼빈 선언문'에 관한 기사가 허위 사실을 적시하였는지 여부(별지 목록 1 순번 ①, ③ 내지 ⑩, ⑰ 기사)을 제5, 51, 66 내지 73, 75, 77, 79호증의 각 기재, 을 제96호증의 1의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피고 B는 원고가 중국 하얼빈에서 자신을 예수라고 주장하면서 기행을 하였을 당시에 함께 있었던 D 등 관련 당사자들의 진술 등에 근거하여 이 부분 기사를 작성한 것으로서 그 내용에 다소 과장이 있을 수 있으나 기본적인 내용은 사실에 기반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관련 당사자들의 진술 등의 내용이 당시 상황에 대하여 직접 경험한 사람이 아니면 그와 같이 진술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인 점, ③ 2007. 11. 29. 대전 △△△ 교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중국 하얼빈에서 생긴 일'(을 제5호증의1, 이하 '하얼빈 선언문'이라 한다)에 기재된 출생일, 출생지 등의 인적사항이 원고의 인적사항과 일치하는 점, ④ 위 하얼빈 선언문의 내용에서 글쓴이의 중국 하얼빈에서의 행적이 위 관련 당사자들의 진술 등에 근거한 원고의 행적과 그 시기가 일치하고, 그 행위태양 및 경과가 매우 유사한 점, ⑤ 이에 반하여 원고는 중국 하얼빈에서의 행적 및 하얼빈 선언문에 관한 이 부분 기사가 허위라는 점에 관한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2007. 11.경 중국 하얼빈에서 약 20명의 사람들에게 자신이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고, 헌금 등의 재물을 요구하는 등의 기행을 하다가 중국 공안에 의하여 한국으로 추방되었다는 내용 및 원고가 2007. 11. 29. 자신이 '재림 예수'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하얼빈 선언문을 인터넷에 게시한 내용 등은 진실한 사실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의 시위 활동 전의 행적, 시위활동 및 그 목적에 관한 기사가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는지 여부(별지 목록 1 순번 ①, ②, ⑪ 내지 ⑯ 기사)

앞서 본 사실관계와 을 제1, 6 내지 12, 22, 27 내지 30, 43, 55, 56, 81, 82, 83, 94, 100, 102, 104, 111, 114, 116, 117호증의 각 기재, 을 제78, 103, 113호증의 각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그 사용을 인정한 네이버 블로그의 ID 중 일부 ID인 'cj*****' 명의로 '나 ○○의 뿌리'라는 내용이 담긴 글(을 제38호증)이 게시되었고, 또다른 ID인 'gh*****' 명의의 블로그 등에서 '○○의 뿌리'가 출판한 책을 나눠준다고 내용이 담긴 글(을 제26호증)이 게시된 적이 있는 등 원고는 2007.

11.경부터 '○○의 뿌리' 라는 등의 닉네임으로 여러 블로그를 운영하며 원고가 '재림 예수'라는 취지가 담긴 글을 게시하였던 점, ② 원고가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ID : gh***** 등)에서 원고는 자신이 '재림 예수'이고, △△△ 교회를 멸망시키기 위하여 재림하였다는 주장을 암시할 수 있는 글(을 제27호증 등)을 여러 차례 게시한 점, ③ 원고는 2013. 11.경부터 △△△ 교회를 상대로 시위 및 집회 활동을 하기 시작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은 원고의 시위 및 집회 활동의 구체적인 태양을 알 수 있는 게시물, 사진 등으로 비교적 객관적인 자료인 점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원고가 2007. 11.경 중국에서 추방된 이후 인터넷 상에서 자신이 '재림 예수'이고, 자신이 재림한 목적이 △△△ 교회를 멸망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한다는 내용 및 원고가 2013. 11.경부터 다소 과격한 표현 및 방법으로 △△△ 교회를 비판하는 시위 및 집회 활동을 하고 있다는 내용 등은 진실한 사실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별지 목록 1 순번 ② 기사 중 순번 4 내용이 허위 사실인지 여부

앞서 본 사실관계와 을 제10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 및 ○○○는 △△△ 교회의 교리 등을 비판하면서 다소 과격한 방법으로 시위 및 집회활동을 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가정파괴를 목적으로 하거나 이를 주동하는 집회 활동을 하는 것으로는 보이지는 않는 점, ②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4. 4. 15. ○○○가 △△△ 교회를 비판할 목적으로 만든 '대국민 호소문'을 인터넷 등에 게시 및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결정(위 법원 2013카합2701호, 을 제101호)을 한 사실은 있으나, 위 법원이 위와 같이 결정한 이유는 대국민 호소문의 내용이 허위사실이라서가 아니라 △△△ 교회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인 점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는 가정폭력 가해자가 피해자로 둔갑해 가정파괴를 주동하는 집회를 개최하며, 법원에서 허위사실로 판명된 문서를 온라인에 유포해 특정단체에 대한 증오심을 유발한다'는 이 부분 기사 내용은 허위 사실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라. 위법성 조각 여부

(1) 관련 법리

언론·출판을 통해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라는 것이 증명되면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고, 또한 그 진실성이 증명되지 아니하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되,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어디까지나 명예훼손을 한 신문 등 언론매체에 있다. 그리고 그 표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적시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8다1892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제1기사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여부

앞서 본 사실관계와 갑 제15, 33호증의 각 기재, 갑 제42호증의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의 지위, 직업 등에 비추어 원고는 사회 및 대중에 영향을 줄 정도의 공공의 인물이 아닐 뿐만 아니라 원고의 중국 하얼빈에서의 발언 및 행적, 원고의 △△△ 교회에 대한 시위 활동 등이 공적인 관심 사항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② 피고들은 이 사건 기사를 보도하면서 원고의 2007. 11.경 중국 하얼빈에서의 발언 및 행적 등에 관하여 매우 상세하고 비중 있게 보도하고 있는 점, ③ 피고들은 2014. 4. 14. 부터 2014. 7. 28.까지 단기간에 원고의 과거 발언 및 행적 등에 관하여 4차례 걸쳐 중복적으로 보도한 점, ④ 피고들은 이 사건 기사를 보도하게 된 목적은 헤이트 스피치의 문제점을 환기시키고, 그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들은 원고의 과거 발언, 행적 및 시위 활동 등에 대하여만 주로 보도함에 비하여 헤이트 스피치와 관련된 다른 사례나 인물에 관한 보도는 그 비중이 거의 없거나 매우 낮은 점, ⑤ 원고가 2013. 11.경 무렵부터 △△△ 교회에 대한 시위 등을 지속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시위 활동 등이 신속한 보도를 요하는 사항이 아니라고 할 것이고, 피고들은 2014. 4. 14.부터 2015. 4. 20.까지 이 사건 기사를 보도하였음에 비추어 그 기사의 내용에 대하여 원고에게 취재나 확인을 충분히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제1기사에 원고의 반론을 실질적으로 반영하지 않은 점, ⑥ 피고들은 이 사건 제1기사에서 원고에 대하여 공격적이고, 부정적이며, 인신공격적인 표현을 여러 차례 사용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의 △△△ 교회에 대한 시위 등을 통하여 헤이트 스피치의 문제점을 환기시키고, 그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는 등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기사를 보도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마.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제1기사는 비록 그 기사 내용 중 일부가 원고를 직접 적시하지 않고 있고[위 3. 가. (2) 부분], 의견을 소개한 부분을 포함하고 있지만[위 3. 나. (3) 부분], 그 각 기사의 전체적인 문맥상 독자들에게 원고가 2007. 11.경부터 자신을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실과 가정파괴를 조장하며 대가를 받고 폭력적인 시위를 하고 있다는 등의 사실을 적시하고 있고, 그와 같이 적시된 각 사실은 원고의 평판, 신용, 품성, 도덕성 등과 관련한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화된 것이라고 보이므로, 피고들은 이 부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행위에 관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4. 이 사건 제2기사가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표현행위자가 타인에 대하여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만일 표현행위의 형식 및 내용 등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거나 혹은 타인의 신상에 관하여 다소간의 과장을 넘어서서 사실을 왜곡하는 공표행위를 함으로써 그 인격권을 침해한다면, 이는 명예훼손과는 별개 유형의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5다65494 판결 등 참조).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 기사삭제 청구의 당부를 판단할 때는 그 표현내용이 진실이 아니거나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기사로 인해 현재 원고의 명예가 중대하고 현저하게 침해받고 있는 상태에 있는지를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이라는 두 가치를 비교·형량하면서 판단하면 되는 것이고, 피고가 그 기사가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등의 사정은 형사상 명예훼손죄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하는 사유는 될지언정 기사삭제를 구하는 방해배제청구권을 저지하는 사유로는 될 수 없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다60950 판결 등 참조).

나. 인격권 침해 여부

앞서 본 사실관계와 갑 제10, 12, 13, 35, 36, 3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제2기사에서 원고에 대하여 '암적인 사이비적 존재', '전형적인 사기범', '폭력을 선동하는 히틀러 같은 위험 인물', '막가파식 증오 선동 집회', '사회적 문제아', '점점 더 망상이 심해질 가능성이 높다', '망상장애와 리플리 증후군 증세가 결합된 것 같다.', '치료가 어렵다.', '사고 장애가 심각한 수위', '과대망상이 사고 장애하고 연결되면서 지금 이런 모습이 된 것 같다.'는 등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러한 표현은 비록 전문가의 의견 등을 기재한 것이지만, 그 표현행위의 형식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성품, 도덕성 등에 대하여 확대, 과장한 표현으로서 모욕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여 의견표명으로서의 한계를 일탈하였고, 이 사건 제2기사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항이 아닐 뿐만 아니라 반복적인 기사로 인해 현재 원고의 명예가 중대하고 현저하게 침해받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제2기사의 보도로 인하여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다.

5. 별지 목록 1 순번 ② 및 별지 목록 2 순번 ④ 기사가 원고의 초상권을 침해하였는지

가. 관련 법리

초상권이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둘러싸고 서로 다른 두 방향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안에서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이익형량을 통하여 침해행위의 최종적인 위법성이 가려지는바, 이러한 이익형량과정에서, 첫째 침해행위의 영역에 속하는 고려

요소로는 침해행위로 달성하려는 이익의 내용 및 그 중대성, 침해행위의 필요성과 효과성, 침해행위의 보충성과 긴급성, 침해방법의 상당성 등이 있고, 둘째 피해이익의 영역에 속하는 고려요소로는 피해법익의 내용과 중대성 및 침해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보호가치 등이 있다. 그리고 일단 권리의 보호영역을 침범함으로써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평가된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16280 판결 등 참조).

나. 초상권 침해 여부

갑 제4, 13, 37호증의 기재 및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은 2014. 5. 8. 별지 목록 1 순번 ② 기사 및 2014. 5. 31. 별지 목록 2 순번 ④ 기사를 각 보도하면서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의 얼굴이 노출된 사진을 게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초상권을 침해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앞서 본 사실관계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원고의 시위를 통하여 헤이트 스피치에 대한 문제를 공론화한다는 피고들의 입장을 고려하더라도 그것이 초상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원고의 인격적 이익보다 반드시 우월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② 불특정 다수가 아무런 제한 없이 조회를 할 수 있는 법무경찰신문 홈페이지에 위 기사를 게시하면서 원고의 사진을 포함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③ 원고의 사진을 포함하더라도 원고의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하는 등으로 원고의 법익 침해를 최소화하였어야 함에도 그와 같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 침해행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그 침해법익의 중대성에 비하여 우월하다고 할 수 없고, 그 침해방법 및 정도도 상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기사로 인한 초상권 침해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

6.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 및 그 범위

이 사건 기사의 보도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고, 인격권 및 초상권이 침해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살펴 본 피고들의 이 사건 기사의 보도 경위, 반복성, 명예훼손, 인격권 및 초상권 침해의 내용, 원고의 지위 및 영향력, 법무경찰신문이 언론기관으로서 차지하는 사회적 비중과 영향력에 비추어 원고에 대한 인격권 및 초상권 침해의 실제 파급효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받아야 할 위자료를 500만 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명예훼손 등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금 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불법행위일인 2015. 4. 20.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

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9.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7. 게시물삭제 및 이행강제금 청구에 관한 판단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피고 이엠디는 이 사건 기사의 보도를 통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원고의 인격권 및 초상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이 판결 확정일부터 7일 이내에 별지 목록 1, 2 기재 각 인터넷 기사를 삭제할 의무가 있고, 피고 이엠디가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원고에게 위 기한 다음날부터 위 삭제의무를 모두 이행하는 날까지 1일 5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이행강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8.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목록 1, 목록 2〉 대상기사 생략

2심 판결문

사 건	2015나2060748 손해배상(기)
원고, 피항소인	A
피고, 항소인	1. 주식회사 이엠디 2. B
제 1 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 9. 25. 선고 2014가합9860 판결
변 론 종 결	2016. 9. 30.
판 결 선 고	2016. 11. 4.

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71].
2.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0.부터 2015. 9. 25.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 주식회사 이엠디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7일 이내에 별지 목록 1, 2 기재 각 인터넷 기사의 각 '삭제 범위'란 기재 기사를 삭제하라.
4. 피고 주식회사 이엠디가 제3항 기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제1항 기재 기한 다음날부터 위 의무를 모두 이행하는 날까지 1일 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5.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6.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7.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주식회사 이엠디는 이 판결 확정 후 별지 목록 1, 2 기재 각 인터넷 기사를 삭제하라.
3. 피고 이엠디가 제2항 기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제2항 기재 기한 다음날부터 위 의무를 모두 이행하는 날까지 1일 1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 교회 피해자 대책모임'(이하 '○○○'라 한다)의 회원이자 △△△ 교회 피해자들의 모임

71) 제1심 판결의 주문은 별지 목록 1, 2 기재 인터넷 기사의 '주요부분'란 부분만의 삭제를 명하는 것인지, 별지 목록 1, 2 기재 각 인터넷 기사의 전체의 삭제를 명하는 것인지 불분명하므로, 주문과 같이 변경판결을 하기로 한다.

단체인 시○○○의 대표이고, 피고 주식회사 이엠디(이하 '피고 이엠디'라고 한다)는 인터넷신문 출판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인터넷신문 '법무경찰신문'(http://www.112news.co.kr, 이하에서는 홈페이지 주소를 생략한다)을 운영하고 있으며, 피고 B는 법무경찰신문 소속 기자이다.

나. 피고들의 별지 목록 1, 2 기재 각 기사의 보도

피고들은 별지 목록 1, 2 기재와 같이 2014. 4. 14.부터 2015. 4. 20.까지 법무경찰신문 홈페이지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라는 등의 제목으로 20개의 기사(이하 별지 목록 1 기재 기사를 '이 사건 제1기사'라 하고, 별지 목록 2 기재 기사를 '이 사건 제2기사'라 하며,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기사'라 한다)[72]를 보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13, 16 내지 22, 34 내지 37, 4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자신을 '재림 예수'라고 주장한 적이 없음에도 피고들이 법무경찰신문 홈페이지에 원고가 자신을 '재림 예수'라고 주장한다는 등의 허위 사실이 담긴 이 사건 제1기사를 보도한 행위는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고 초상권을 침해하며, 원고에 대한 모욕적인 표현이 담긴 이 사건 제2기사를 보도한 행위는 원고의 인격권 및 초상권을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이엠디는 이 사건 각 기사 전체를 삭제할 의무가 있으며, 위 각 기사 삭제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① 이 사건 기사 중 일부는 원고가 아닌 C 목사나, ○○○에 대한 기사이므로 원고와 개별적 연관성이 없어 그 부분 삭제를 구할 수 없고, ② 이 사건 기사 중 일부 내용은 의견 표명에 불과할 뿐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며, ③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기사의 내용은 진실한 사실일 뿐만 아니라 그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명예훼손의 위법성이 조각되고, ④ 이 사건 기사의 보도로 인하여 원고의 인격권 및 초상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를 다투고 있다.

---

72) 별지 목록 2 순번 ① 기사는 별지 목록 1 순번 ⑧ 기사와, 별지 목록 2 순번 ⑤ 기사는 별지 목록 1 순번 ⑩ 기사와 동일한바, 다만 원고는 각 기사의 어떤 부분은 명예훼손에 해당하고, 어떤 부분은 모욕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하면서, 별지 목록 1, 2로 나누어 청구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판단하기로 한다.

3. 이 사건 제1기사가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는지 여부

가. 기본 법리

명예는 생명, 신체와 함께 매우 중대한 보호법익이고 인격권으로서의 명예권은 물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배타성을 가지는 권리라고 할 것이므로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의 인격적 가치에 관하여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인 명예를 위법하게 침해당한 자는 손해배상 또는 명예회복을 위한 처분을 구할 수 있는 이외에 인격권으로서 명예권에 기초하여 가해자에 대하여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침해행위를 배제하거나 장래에 생길 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침해행위의 금지를 구할 수도 있다 할 것이고, 표현행위에 대한 사전억제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검열을 금지하는 헌법 제21조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엄격하고 명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허용된다고 할 것인바, 출판물에 대한 발행 · 판매 등의 금지는 위와 같은 표현행위에 대한 사전억제에 해당하고, 그 대상이 종교단체에 대한 평가나 비판 등의 표현행위에 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표현행위에 대한 사전금지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지만, 다만 그와 같은 경우에도 그 표현내용이 진실이 아니거나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며, 또한 피해자에게 중대하고 현저하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표현행위는 그 가치가 피해자의 명예에 우월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하고, 그에 대한 유효적절한 구제수단으로서 금지의 필요성도 인정되므로 이러한 실체적인 요건을 갖춘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사전금지가 허용된다(대법원 2005. 1. 17.자 2003마1477 결정).

이미 발생한 침해에 대한 배제를 구하는 것은 침해행위의 사전금지를 구하는 것과는 구별되어야 하는 것이나, 양자는 특정한 표현 자체를 존재하지 못하도록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점에서 표현의 자유에 미치는 효과에 차이가 없는 점에서 동일하므로 침해행위의 배제를 구하는 경우에도 침해행위의 사전금지를 구하는 경우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원고와 각 기사와의 개별적 연관성 여부

(1) 문제되는 부분 중 개별적 연관성이 인정되는 부분

이 사건 제1기사 중 별지 목록 1 순번 ① 기사(이하 기사를 '순번'으로만 표시한다) 중 1번째, 2번째 및 7번째 문단, 순번 ② 기사 중 순번 4 내용(1번째 문단), 순번 ⑨ 기사 중 4번째 내지 10번째 문단, 순번 ⑪ 기사 중 5번째 및 6번째 문단, 순번 ⑫ 기사 중 3번째 문단, 순번 ⑮ 기사 중 순번 54(7번째 문단) 부분은 그 비판의 대상이 ○○○의 일부 회원들, 교계 언론, 개신교 기성교단, C 목사이거나 대법원의 판례를 소개하는 것으로서 일응 원고와 개별적 연관성이 없어 보이나, 앞서 본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순번 ① 기사 부분은 원고에 대한 기사를 게재하기 위한 전제사실로써 ○○○나 C 목사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 순번 ② 기사는 "○○○ A, 중국에서 시한부 종말론 · 재산 갈취 물의"라는 제목을, 순번 ⑨ 기사는 "하얼빈에서 시한부 종말

론 외쳤던 A 씨, 한국서 활개"라는 제목을, 순번 ⑪ 기사는 "A 씨 中종교사기 후 한국서도 '재림주' 포교활동에 주력"이라는 제목을, 순번 ⑫ 기사는 "상복입고 관공서 드나들며 시위… 시민들 눈살에도 '나 몰라라'"라는 제목을 사용하고 있는 점, (c) 원고는 ○○○의 주요 회원으로서 △△△ 교회에 대한 시위 활동을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점, (d) 순번 ②, ⑫ 기사의 경우 원고의 사진을 게시하면서 이에 대한 설명글로 원고가 '시○○○ 대표'라던가 자칭 "재림 예수"라는 표현을 덧붙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기사에서 위와 같이 원고가 아닌 ○○○ 등 다른 단체나 사람에 대한 기사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고 그 대부분이 원고의 행적에 대한 내용이며, 원고를 비판하기 위한 수단 내지는 전제사실로 기재한 것에 불과할 뿐이어서, 위 각 부분이 원고와 개별적 관련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문제되는 부분 중 개별적 연관성이 부정되는 부분

순번 ⑭ 기사 중 순번 51(11번째 문단) 내용의 "○○○ 카페의 부운영자인 A 씨의 경우, 최근 미신고 옥외집회, 저작권법 위반,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거나 검찰에 의해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사건인 10여건을 넘는다"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기사 내용은 모두 ○○○나 ○○○의 일부 회원들에 대한 것에 불과하고, 그 내용이 ○○○라는 집단 내의 개별구성원인 원고를 특정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순번 ⑭ 기사 중 원고와 관련된 위 순번 51(11번째 문단)의 앞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기사는 모두 원고와 개별적 관련성이 없어, 원고로서는 이 부분 기사의 삭제를 구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다. 사실의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여부

(1) 관련 법리

민법상 불법행위가 되는 명예훼손이란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 인격적 가치에 대하여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하고, 그와 같은 객관적인 평가를 침해하는 것인 이상,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표현행위에 의하여도 성립할 수 있다. 다만 단순한 의견 개진만으로는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가 저해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의견 또는 논평의 표명이 사실의 적시를 전제로 하지 않은 순수한 의견 또는 논평일 경우에는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성립되지 아니하나, 한편 여기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란 반드시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할 것은 아니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 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99다620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신문이나 잡지의 어떤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불법행위가 되는지의 여부는 일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와의 연관하에서 기사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

여 그 기사가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다가 당해 기사의 배경이 된 사회적 흐름 속에서 당해 표현이 가지는 의미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8다18925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일반 독자가 읽는 방법을 전제로 위 기사 각 기사의 제목, 사용된 허위의 통상적 의미, 전체적 흐름, 문구의 연결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순번 ⑮ 기사 중 순번 53 내용은 인용표시를 통하여 범죄 심리학자들의 의견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독자들에게 원고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소개 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나머지 기사 부분은 '원고가 가정파괴를 주동하는 등의 집회를 하고 있다.', '원고가 ○○○ 대표인 C 목사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1천만 원을 건넨 뒤 △△△ 교회를 상대로 하는 시위 활동을 하고 있다.', '원고가 대가를 받고 △△△ 교회를 상대로 시위 활동을 하고 있다.', '원고가 재림 예수라고 자칭하며 하얼빈 선언을 통해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고, 헌금 등을 갈취하였다.'는 취지의 사실 등을 간접적, 묵시적으로 적시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고, 위 기사 내용 중 앞서 본 바와 같이 의견 또는 논평에 해당하는 표현이 일부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사실상 원고의 명예를 해치는 사실을 암시하는 것으로서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진실성 여부

(1) 관련 법리

'진실한 사실'이라고 함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3다52142 판결 등 참조).

한편, 허위 기사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당하였다고 주장하며 기사삭제 등을 청구하는 피해자는 그 기사가 진실하지 아니하다는 데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다60950 판결 등 참조).

(2) 원고의 중국 하얼빈에서의 행적 및 '하얼빈 선언문'에 관한 기사가 허위 사실을 적시하였는지 여부(순번 ①, ③ 내지 ⑩, ⑰ 기사)

을제5, 51, 66 내지 73, 75, 77, 79호증의 각 기재, 을제96호증의 1의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피고 B는 원고가 중국 하얼빈에서 자신을 예수라고 주장하면서 기행을 하였을 당시에 함께 있었던 D 등 관련 당사자들의 진술 등에 근거하여 이 부분 기사를 작성한 것으로서 그 내용에 다소 과장이 있을 수 있으나 기본적인 내용은 사실에 기반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관련 당사자들의 진술 등의 내용이 당시 상황에 대하여 직접 경험한 사람이 아니면 그와 같이 진술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인 점, ③ 2007. 11. 29. 대전 △△△ 교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중국 하얼빈에서 생긴 일'(을제5호증의 1, 이하 '하얼빈 선언문'이라 한다)에 기재된 출생일, 출생지 등의 인적사항이 원고의 인적사

항과 일치하는 점, ④ 위 하얼빈 선언문의 내용에서 글쓴이의 중국 하얼빈에서의 행적이 위 관련 당사자들의 진술 등에 근거한 원고의 행적과 그 시기가 일치하고, 그 행위태양 및 경과가 매우 유사한 점, ⑤ 이에 반하여 원고는 중국 하얼빈에서의 행적 및 하얼빈 선언문에 관한 이 부분 기사가 허위라는 점에 관한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2007. 11.경 중국 하얼빈에서 약 20명의 사람들에게 자신이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고, 헌금 등의 재물을 요구하는 등의 기행을 하다가 중국 공안에 의하여 한국으로 추방되었다는 내용 및 원고가 2007. 11. 29. 자신이 '재림 예수'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하얼빈 선언문을 인터넷에 게시한 내용 등은 진실한 사실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의 시위 활동 전의 행적, 시위활동 및 그 목적에 관한 기사가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는지 여부(순번 ①, ②, ⑪ 내지 ⑯ 기사)

앞서 본 사실관계와 을제1, 6 내지 12, 22, 27 내지 30, 43, 55, 56, 81, 82, 83, 94, 100, 102, 104, 111, 114, 116, 117호증의 각 기재, 을제78, 103, 113호증의 각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그 사용을 인정한 네이버 블로그의 ID 중 일부 ID인 'cj*****' 명의로 '나 ○○의 뿌리'라는 내용이 담긴 글(을제38호증)이 게시되었고, 또다른 ID인 'gh*****' 명의의 블로그 등에서 '○○의 뿌리'가 출판한 책을 나눠준다고 내용이 담긴 글(을제26호증)이 게시된 적이 있는 등 원고는 2007. 11.경부터 '○○의 뿌리'라는 등의 닉네임으로 여러 블로그를 운영하며 원고가 '재림 예수'라는 취지가 담긴 글을 게시하였던 점, ② 원고가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ID : gh***** 등)에서 원고는 자신이 '재림 예수'이고, △△△ 교회를 멸망시키기 위하여 재림하였다는 주장을 암시 할 수 있는 글(을제27호증 등)을 여러 차례 게시한 점, ③ 원고는 2013. 11.경부터 △△△ 교회를 상대로 시위 및 집회 활동을 하기 시작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은 원고의 시위 및 집회 활동의 구체적인 태양을 알 수 있는 게시물, 사진 등으로 비교적 객관적인 자료인 점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원고가 2007. 11.경 중국에서 추방된 이후 인터넷 상에서 자신이 '재림 예수'이고, 자신이 재림한 목적이 △△△ 교회를 멸망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한다는 내용 및 원고가 2013. 11.경부터 다소 과격한 표현 및 방법으로 △△△ 교회를 비판하는 시위 및 집회 활동을 하고 있다는 내용 등은 진실한 사실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순번 ② 기사 중 순번 4 내용이 허위 사실인지 여부

앞서 본 사실관계와 을제10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 및 ○○○는 △△△ 교회의 교리 등을 비판하면서 다소 과격한 방법으로 시위 및 집회활동을 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가정파괴를 목적으로 하거나 이를 주동하는 집회 활동을 하는 것으로는 보이지는 않는 점, ②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4. 4. 15. ○○○가 △△△ 교회를 비판할 목적으로 만든 '대국민 호소문'을 인터넷 등에 게시 및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결정(위 법원

2013카합2701호)을 한 사실은 있으나, 위 법원이 위와 같이 결정한 이유는 대국민 호소문의 내용이 허위사실이라서가 아니라 △△△ 교회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인 점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는 가정폭력 가해자가 피해자로 둔갑해 가정파괴를 주동하는 집회를 개최하며, 법원에서 허위사실로 판명된 문서를 온라인에 유포해 특정 단체에 대한 증오심을 유발한다'는 이 부분 기사 내용은 허위 사실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가 제출한 을제119 내지 12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번복하여 이 부분 기사 내용이 사실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마. 위법성 조각 여부

(1) 관련 법리

언론·출판을 통해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라는 것이 증명되면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고, 또한 그 진실성이 증명되지 아니하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되,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어디까지나 명예훼손을 한 신문 등 언론매체에 있다. 그리고 그 표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적시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8다1892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제1기사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여부

앞서 본 사실관계와 갑제15, 33호증의 각 기재, 갑제42호증의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의 지위, 직업 등에 비추어 원고는 사회 및 대중에 영향을 줄 정도의 공공의 인물이 아닐 뿐만 아니라 원고의 중국 하얼빈에서의 발언 및 행적, 원고의 △△△ 교회에 대한 시위 활동 등이 공적인 관심 사항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② 피고들은 이 사건 기사를 보도하면서 원고의 2007. 11.경 중국 하얼빈에서의 발언 및 행적 등에 관하여 매우 상세하고 비중 있게 보도하고 있는 점, ③ 피고들은 2014. 4. 14.부터 2014. 7. 28.까지 단기간에 원고의 과거 발언 및 행적 등에 관하여 4차례 걸쳐 중복적으로 보도한 점, ④ 피고들은 이 사건 기사를 보도하게 된 목적은 헤이트 스피치의 문제점을 환기시키고, 그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들은 원고의 과거 발언, 행적 및 시위 활동 등에 대하여만 주로 보도함에 비하여 헤이트 스피치와 관련된 다른 사례나 인물에 관한 보도는 그 비중이 거의 없거나 매우 낮은 점, ⑤ 원고가 2013. 11.경 무렵부터 △△△ 교회에 대한 시위 등을 지속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시위 활동 등이 신속한 보도를 요하는 사항이 아니라고 할 것이고, 피고들은 2014. 4. 14.부터 2015. 4. 20.까지 이 사건

기사를 보도하였음에 비추어 그 기사의 내용에 대하여 원고에게 취재나 확인을 충분히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제1기사에 원고의 반론을 실질적으로 반영하지 않은 점, ⑥ 피고들은 이 사건 제1기사에서 원고에 대하여 공격적이고, 부정적이며, 인신공격적인 표현을 여러 차례 사용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의 △△△ 교회에 대한 시위 등을 통하여 헤이트 스피치의 문제점을 환기시키고, 그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는 등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기사를 보도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는 "제한적 공적 인물"로서 '△△△ 교회 척결을 목적으로 한 종교적 목적의 헤이트 스피치' 행위와 관련하여 공적 인물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여기서 '제한적 공적 인물'은 관련 문제의 해결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특별한 공적 논쟁의 전면에 자발적으로 나선 사람을 말한다고 주장한다[73].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기사의 대부분은 원고의 △△△ 교회 척결을 목적으로 한 종교적 목적의 헤이트 스피치의 문제점을 환기시키는 내용이 아니라 원고가 자칭 '재림 예수'로서의 과거 발언, 행적, 기행 등을 지적하는 내용이 대부분인 점, 원고가 △△△ 교회 피해자들의 모임 단체인 시○○○의 대표라 하더라도 시○○○의 교세, 사회적 영향력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행적 등이 공적 관심사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원고가 △△△ 교회 홈페이지에 하얼빈 선언문을 게재할 당시 및 블로그 등을 운영함에 있어서도 닉네임 등을 사용하는 등 실명을 밝히지 않았는바, 특별한 공적 논쟁의 전면에 자발적으로 나선 자로 평가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를 피고들이 주장하는 '제한적 공적 인물'이라고 보기도 어렵다할 것이다.

바.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제1기사 중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의 개별적 연관성이 부정되는 순번 ⑭ 기사의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기사들은, 비록 그 기사 내용 중 일부가 원고를 직접 적시하지 않고 있고 의견을 소개한 부분을 포함하고 있지만, 그 각 기사의 전체적인 문맥상 독자들에게 원고가 2007. 11.경부터 자신을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실과 가정파괴를 조장하며 대가를 받고 폭력적인 시위를 하고 있다는 등의 사실을 적시하고 있고, 그와 같이 적시된 각 사실은 원고의 평판, 신용, 품성, 도덕성 등과 관련한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화된 것이라고 보이므로, 피고들은 이 부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행위에 관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73) 피고들이 이 법원에 제출한 제한적 공적 인물에 대한 논문에는, 제한적 공적 인물의 예로 "연예인이나 운동선수"를 들고 있을 뿐이다.

4. 이 사건 제2기사가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표현행위자가 타인에 대하여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만일 표현행위의 형식 및 내용 등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거나 혹은 타인의 신상에 관하여 다소간의 과장을 넘어서서 사실을 왜곡하는 공표행위를 함으로써 그 인격권을 침해한다면, 이는 명예훼손과는 별개 유형의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5다65494 판결 등 참조).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 기사삭제 청구의 당부를 판단할 때는 그 표현내용이 진실이 아니거나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기사로 인해 현재 원고의 명예가 중대하고 현저하게 침해받고 있는 상태에 있는지를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이라는 두 가치를 비교·형량하면서 판단하면 되는 것이고, 피고가 그 기사가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등의 사정은 형사상 명예훼손죄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하는 사유는 될지언정 기사삭제를 구하는 방해배제청구권을 저지하는 사유로는 될 수 없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다60950 판결 등 참조).

나. 인격권 침해 여부

앞서 본 사실관계와 갑제10, 12, 13, 35, 36, 3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제2기사에서 원고에 대하여 '암적인 사이비적 존재', '전형적인 사기범', '폭력을 선동하는 히틀러 같은 위험 인물', '막가파식 증오 선동 집회', '사회적 문제아', '점점 더 망상이 심해질 가능성이 높다', '망상장애와 리플리 증후군 증세가 결합된 것 같다.', '치료가 어렵다.', '사고 장애가 심각한 수위', '과대망상이 사고 장애하고 연결되면서 지금 이런 모습이 된 것 같다.'는 등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러한 표현은 비록 전문가의 의견 등을 기재한 것이지만, 그 표현행위의 형식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성품, 도덕성 등에 대하여 확대, 과장한 표현으로서 모욕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여 의견표명으로서의 한계를 일탈하였다 할 것이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2기사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항이 아닐 뿐만 아니라 반복적인 기사로 인해 현재 원고의 명예가 중대하고 현저하게 침해받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제2기사의 보도로 인하여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다.

다만, 삭제의 범위와 관련하여서는, 별지 목록 2 순번 ① 기사는 별지 목록 1 순번 ⑧ 기사와 동일하고, 별지 목록 2 순번 ⑤ 기사는 별지 목록 1 순번 ⑩ 기사와 동일한바, 위 각 기사의 전체를 삭제하여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별지 목록 2 순번 ②, ③, ④ 기사는 위 각 기사의 내용 중 일부만이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있다 할 것이나, 위 각 기사의 일부의 삭제만을 명하는 경우 원래의 기사의 취지가 본래의 뜻과 달리 받아들여지게 될 수도 있는 점, 그 기사의 전체적 내용, 삭제해야 할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 등에 비추어 볼 때 나머지 기사가 기사로서의 가치도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기사는 전체적으로 삭제를 명함이 상당하다.

5. 별지 목록 1 순번 ② 및 별지 목록 2 순번 ④ 기사가 원고의 초상권을 침해하였는지

가. 관련 법리

초상권이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둘러싸고 서로 다른 두 방향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안에서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이익형량을 통하여 침해행위의 최종적인 위법성이 가려지는바, 이러한 이익형량과정에서, 첫째 침해행위의 영역에 속하는 고려요소로는 침해행위로 달성하려는 이익의 내용 및 그 중대성, 침해행위의 필요성과 효과성, 침해행위의 보충성과 긴급성, 침해방법의 상당성 등이 있고, 둘째 피해이익의 영역에 속하는 고려요소로는 피해법익의 내용과 중대성 및 침해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보호가치 등이 있다. 그리고 일단 권리의 보호영역을 침범함으로써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평가된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16280 판결 등 참조).

나. 초상권 침해 여부

갑제4, 13, 37호증의 기재 및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은 2014. 5. 8. 별지 목록 1 순번 ② 기사 및 2014. 5. 31. 별지 목록 2 순번 ④ 기사를 각 보도하면서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의 얼굴이 노출된 사진을 게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초상권을 침해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앞서 본 사실관계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원고의 시위에 대한 보도를 통하여 헤이트 스피치에 대한 문제를 공론화한다는 피고들의 입장을 고려하더라도 그것이 초상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원고의 인격적 이익보다 반드시 우월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② 불특정 다수가 아무런 제한 없이 조회를 할 수 있는 법무경찰신문 홈페이지에 위 기사를 게시하면서 원고의 사진을 포함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③ 원고의 사진을 포함하더라도 원고의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하는 등으로 원고의 법익 침해를 최소화하였어야 함에도 그와 같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 침해행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그 침해법익의 중대성에 비하여 우월하다고 할 수 없고, 그 침해방법 및 정도도 상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기사로 인한 초상권 침해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

6.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 및 그 범위

이 사건 기사의 보도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고, 인격권 및 초상권이 침해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살펴 본 피고들의 이 사건 기사의 보도 경위, 반복성,

명예훼손, 인격권 및 초상권 침해의 내용, 원고의 지위 및 영향력, 법무경찰신문이 언론기관으로서 차지하는 사회적 비중과 영향력에 비추어 원고에 대한 인격권 및 초상권 침해의 실제 파급효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받아야 할 위자료를 5,000,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명예훼손 등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금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불법행위일인 2015. 4. 20.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선고일인 2015. 9.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7. 게시물삭제 및 이행강제금 청구에 관한 판단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피고 이엠디는 이 사건 기사의 보도를 통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원고의 인격권 및 초상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이 판결 확정일부터 7일 이내에 별지 목록 1 순번 ⑭ 기사 중 원고와 관련된 앞서 본 11번째 문단의 앞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기사 부분을 제외한 별지 목록 1 기재 각 인터넷 기사 및 별지 목록 2 인터넷 기사 전체를 삭제할 의무가 있고, 피고 이엠디가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원고에게 위 기한 다음날부터 위 삭제의무를 모두 이행하는 날까지 1일 5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이행강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8.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변경하여 판결한다.

〈별지 목록 1, 목록 2〉 대상기사 생략

언론중재위원회 안내

서 울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15층
대표전화 : 02) 397-3114
상담전화 : 02) 397-3000, 3010, 3100
FAX : 02) 397-3089

지 역

부산사무소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 739, 6층
전화 051) 759-7083~4 / FAX 051) 759-7093

대구사무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126, 5층
전화 053) 763-0020~1 / FAX 053) 763-0242

광주사무소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중앙로 110, 5층
전화 062) 676-0360~1 / FAX 062) 676-0362

대전사무소 대전광역시 서구 도산로 450, 5층
전화 042) 525-0778~9 / FAX 042) 525-0768

경기사무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78, 8층
전화 031) 211-9027, 9022 / FAX 031) 212-0223

강원사무소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6, 8층
전화 033) 255-2878~9 / FAX 033) 255-2872

충북사무소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64, 404호
전화 043) 286-8083, 8081 / FAX 043) 286-8084

전북사무소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전라감영로 72, 303호
전화 063) 288-0010, 0981 / FAX 063) 288-0980

경남사무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95번길 5, 601호
전화 055) 263-1787, 1780 / FAX 055) 263-1769

제주사무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북5길 6, 4층
전화 064) 722-3328, 3352 / FAX 064) 726-3201

2016년도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2017년 6월 27일 인쇄
2017년 6월 30일 발행

발 행 인 양인석
발 행 언론중재위원회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15층
편 저 언론중재위원회 교육본부 교육콘텐츠팀
전 화 02) 397-3061~5
팩 스 02) 397-3069
홈페이지 http://www.pac.or.kr

이 책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한 것입니다.
저작권법에 따라 이 책에 수록된 글의 무단 복제와 전재 및 상업적 이용을 금합니다.